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베트남”)(이하 총칭하여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와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더 넓어지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과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경제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국 간의 경제 발전의 상이한 수준을 인식하고,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며,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시키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기본협정에 따르는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1.2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의 상품무역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

나.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것

다. 양 당사국의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양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라. 지식재산권을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 그리고

마. 이 협정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 증진을 위한 틀을 수립하는 것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양 당사국 간의 어떠한 국제법적 의무로부터도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서로 즉시 협의한다.

제1.4조

의무의 범위

이 협정에 따른 의무 및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 정부 또는 당국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에 의한 준수를 보장한다.

제1.5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동 기본협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을 말한다.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세계무역기구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법 및 규정이란 관세 · 부과금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금지 · 제한 및 각 당사국 관세영역의 경계를 넘는 통제된 물품의 이동에 대한 그 밖의 유사한 통제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 수출, 통과 또는 환적에 관하여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운영하고 집행하는 법과 규정을 말한다.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 · 신탁 · 파트너십 · 단독소유기업 · 합작투자 ·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로서 주해 및 보충적 규정을 포함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당시 발효 중이며 수시로 개정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률 주석에 정의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표기방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7.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법적 실체를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헌법과 개정되는 바에 따른 「베트남 국적에 관한 법」상 의미에서 베트남의 시민인 모든 인

원산지 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제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그 국내 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1다의「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대우

제 2.2 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3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허표를 개정하기 원한다면 언제라도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외교공한을 통하여 신속하게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 그에 규정된 일방적 가속화에 따라 그 당사국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철회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어느 시점에서든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라 한다)을 인하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 2.4 조
동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 이는 한쪽 당사국이 다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가.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인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관세를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 또는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수준 중 더 낮은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제3절
특별 제도

제2.5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이 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그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아니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로 한쪽 당사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및 광고물[1],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1] 정의 및 내용은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규제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세관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처음에 정하여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7.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인이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하여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할 증거를 수입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8. 제8장(서비스무역) 및 제9장(투자)을 조건으로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경제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을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2]

나. 어떠한 당사국도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어떠한 당사국도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담보를 포함한 어떠한 의무의 해제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운송선이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1.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고속도로 및 철로의 안전 또는 보안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당사국이 통관 항구를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가 나가는 것이 가능한 항구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어떤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제4절
비관세조치

제2.8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통합된 1994년도 GATT 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 협정 제8.1조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3. 당사국이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음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하는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소비되지 아니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

4. 당사국이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격설정, 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로 협의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항은 당사국이 제5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규제당국과 그 인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7. 제5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제2.9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3]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러하게 한다.

제2.10조

[3] 이 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정의를 적용한다.

행정 수수료 및 형식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상의 자국의 의무와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제2.11조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2.12조
관세율할당 운영 및 이행

1. 부록 2-가-1에 규정된 대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수립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그리고 수입허가협정 및 그 밖의 모든 관련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운영한다.

2.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운영 조치 및 이행이 일관되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차별을 유발하기 위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관세율할당 체계를 통한 수입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도록 보장한다.

제5절
일반 및 제도 규정

제2.13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에 처하여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1994년도 GATT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를 포함하는 1994년도 GATT에 따라 그 당사국은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의 채택에 대하여,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즉시 협의한다.

제2.14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대한 장벽을 다루고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다.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다음 사항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

1)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그러한 개정과 부속서 2-가, 또는

2) 부속서 2-가와 국가상품분류체계

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리고

마.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호부터 라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는 것

제6절
정의

제2.15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 파열, 천공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소비된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소비되거나, 또는

나. 상품의 가치, 형태 또는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형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제조된 것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 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이 수출될 것

나.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이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환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킬 것

그러나 이는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선택 상품으로서, 소책자, 팸플릿, 전단지, 거래 카탈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1"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완전히 철폐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Y-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아. 당사국 양허표 제1절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2.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 제2절상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제2절상의 그 연도에 규정된 관세율에 따른다.

3.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다음을 반영한다.

가. 제1절에 관해서는, 2012년 1월 1일에 유효한 각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과 2012년 1월 1일에 유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의 자국의 특혜 관세율 중 낮은 것, 그리고

나. 제2절에 관해서는, 2015년 1월 1일의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특혜 관세율

4.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5.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퍼센트 포인트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한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6.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1년차**란 제17.8조(발효)에서 규정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7.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을 위하여,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 제1항의 나호, 다호, 라호, 마호, 바호 또는 사호에 따른 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가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 동일 상품에 대한 관세와 다른 경우, 더 낮은 관세가 이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적용된다.

9. 양 당사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전환이 이 부속서상 관세양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보장한다.

일반 주해

한국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양허단계: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S-1, B-1, C 및 R을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S-1"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B-1"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일까지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실행 관세율[4]의 20퍼센트 이상만큼 인하한다.[5]

다. 단계별 양허유형 "C"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6년 1월 1까지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실행 관세율의 50퍼센트 이상만큼 인하한다[6]. 그리고

라. 단계별 양허유형 "R"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실행 관세율" 이란 2005년 1월 1일 기준 한국의 적용 세율을 말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인하된 관세율이 기준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인하된 관세율이 기준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베트남 관세양허표

1. 베트남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VN"라 한다)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V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V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VN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V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양허단계: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S-2, S-3, A 및 B-2를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S-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S-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17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17년 1월 1일까지 20퍼센트로 인하되고,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그 인하된 세율이 유지되고, 2021년 1월 1일까지 0에서 5퍼센트로 인하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50퍼센트 이하로 인하한다. 그리고

라. 단계별 양허유형 "B-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021년 1월 1일 전에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되며, 2021년 1월 1일까지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실행 관세율[7]의 20퍼센트 이상만큼 인하한다.[8]

[7]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란 2005년 1월 1일 기준 베트남의 적용 세율을 말한다.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인하된 관세율이 기준관세율보다 높은 경우 기준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부록 2-가-1

한국의 관세율 할당 운영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베트남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 대신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베트남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베트남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 (메트릭톤)
1	10,000
2	11,000
3	12,100
4	13,310
5	14,641
6	15,000

이행 6년차 후부터, 쿼터 내 물량은 이행 6년차의 물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의 제1항 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그리고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 0306161090, 0306169090, 0306171090, 0306179090, 0306261000, 0306271000 및 1605219000.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0102292000	육우(肉牛)	40	B-1
0102392000	육우(肉牛)	40	B-1
0102909020	육우(肉牛)	40	B-1
0106202000	자라	8	Y-5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B-1
0201201000	갈비	40	B-1
0201209000	기타	40	B-1
0201300000	뼈 없는 것	40	B-1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40	B-1
0202201000	갈비	40	E
0202209000	기타	40	E
0202300000	뼈 없는 것	40	E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2.5	B-1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2.5	B-1
0203191000	삼겹살	22.5	E
0203199000	기타	22.5	E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25	B-1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B-1
0203291000	삼겹살	25	Y-10
0203299000	기타	25	Y-10
0206100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Y-3
0206210000	혀	18	Y-3
0206220000	간	18	Y-3
0206291000	꼬리	18	B-1
0206292000	족	18	B-1
0206299000	기타	18	B-1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B-1
0206410000	간	18	B-1
0206491000	족	18	B-1
0206499000	기타	18	B-1
0206800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B-1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B-1
020711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18	B-1
0207119000	기타	18	B-1
0207121000	중량이 550 그램 이하인 것	20	B-1
0207129000	기타	20	B-1
0207131010	다리	18	E
0207131020	가슴	18	E
0207131030	날개	18	E
0207131090	기타	18	E
0207132010	간	22.5	B-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0207132090	기타	27	E
0207141010	다리	20	E
0207141020	가슴	20	E
0207141030	날개	20	E
0207141090	기타	20	E
0207142010	간	20	Y-3
0207142090	기타	20	Y-3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B-1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B-1
0207441000	절단육	18	B-1
0207451000	절단육	18	E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B-1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B-1
0207541000	절단육	18	B-1
0207551000	절단육	18	E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B-1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18	B-1
0207603100	절단육	18	B-1
0207604100	절단육	18	E
021011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B-1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30	B-1
0210190000	기타	25	B-1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20	Y-3
0210991020	돼지의 것	20	Y-3
0301119000	기타		
	- 열대어	10	B-1
	- 기타	10	S-1
0301190000	기타		
	- 열대어	10	B-1
	- 기타	10	S-1
0301921000	실뱀장어(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Y-1
0301929000	기타		
	- 실뱀장어	10	S-1
	- 기타	27% 또는 1,879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030194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10	E
030194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E
030195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10	E
0301992000	방어	10	Y-5
0301994010	치어(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Y-1
0301994090	기타	28% 또는 2,052 원/kg, 양자 중	E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고액(율)	
0301995000	붕장어	10	Y-5
0301996000	갯장어	10	Y-3
0301997000	먹장어	10	Y-5
0301998000	넙치류	10	E
0301999010	능성어	10	E
0301999020	복어	10	E
0301999030	틸라피아	10	E
0301999040	볼락(적어를 포함한다)	10	E
0301999051	치어(양식용으로 한정한다)	0	Y-1
0301999059	기타	28	E
0301999060	숭어	10	E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Hexagrammos)종・아그라무스(Agrammus)종]	10	E
0301999095	민어	28	E
0301999099	기타	10	E
03022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20	B-1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20	Y-3
0302240000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20	Y-3
0302290000	기타	20	Y-3
03023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20	Y-3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20	Y-3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20	B-1
03023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20	Y-3
0302390000	기타	20	Y-3
0302420000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20	E
03024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20	E
03024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20	E
0302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0	S-1
03025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20	E
030256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20	E
0302590000	기타		
	- 기타	20	E
03027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20	E
03027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20	E
03027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20	E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0302790000	기타	20	E
0302820000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20	E
0302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20	E
0302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20	E
0302850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	20	E
0302891000	방어	20	Y-3
0302892000	갈치	20	E
0302896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는 제외한다]	20	E
0302899010	삼치	20	E
0302899020	복어	20	E
0302899030	병어	20	E
0302899040	아귀	20	E
0302899090	기타	20	E
030323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Y-10
030324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	E
03032500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10	E
0303290000	기타	10	Y-10
0303310000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10	Y-3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10	Y-3
0303340000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10	Y-3
0303390000	기타	10	S-1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10	S-1
0303430000	가다랑어나 줄무늬 버니토	10	S-1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10	S-1
03034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10	S-1
0303490000	기타	10	S-1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10	S-1
03035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10	Y-3
03035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10	B-1
03035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10	Y-10
03035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10	E
03035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0	E
03036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10	S-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030367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25	E
030368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10	E
0303699000	기타	25	E
0303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10	S-1
0303821000	가오리	10	Y-5
0303822000	홍어	10	E
0303892000	갈치	10	E
0303893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Branchiostegus Japonicus)]	10	S-1
0303893090	기타	10	Y-10
0303895000	조기	10	E
0303896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28	E
0303897000	삼치	10	E
0303898000	복어	10	Y-5
0303899050	볼낙(적어를 포함한다)	10	Y-5
0303899060	아귀	10	E
0303899070	먹장어(대서양, 태평양)	10	Y-5
0303899091	민어	43	E
0303899099	기타	10	E
0305202000	건조 어란(魚卵)	20	Y-3
0305592000	멸치	20	B-1
0305631000	멸치젓	20	Y-5
03056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20	Y-3
0305696000	조기	20	Y-5
0305699000	기타	20	Y-5
03057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Y-3
0305729000	기타		
	4.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의 것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20	B-1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 멸치젓	20	S-1
	5.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의 것은 제외한다]의 것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20	B-1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S-1
	6. 명태의 것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S-1
	7. 조기의 것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S-1
	8. 복어의 것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S-1
	9. 갯장어의 것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S-1
	10. 까나리의 것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S-1
	11. 베도라치(실치를 포함한다)의 것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S-1
	18. 기타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S-1
0305790000	기타		
	5.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의 것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20	Y-1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 멸치젓	20	Y-10
	6.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의 것은 제외한다]의 것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20	Y-1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Y-10
	7. 명태의 것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Y-10
	8. 조기의 것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Y-10
	9. 복어의 것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Y-10
	10. 갯장어의 것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Y-10
	11. 까나리의 것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Y-10
	12. 베도라치(실치를 포함한다)의 것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Y-10
	19. 기타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20	Y-10
0306143090	기타	14	B-1
0306149090	기타	14	Y-10
0306161090	기타	20	부록 2-가-1 참조
0306169090	기타	20	부록 2-가-1 참조
0306171090	기타	20	부록 2-가-1 참조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0306179090	기타	20	부록 2-가-1 참조
0306241010	꽃게	20	B-1
0306241020	대게	20	B-1
0306241090	기타	20	S-1
030626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20	부록 2-가-1 참조
0306262000	건조한 것	20	B-1
030626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8% 또는 2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30627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20	부록 2-가-1 참조
0306272000	건조한 것	20	B-1
030627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38% 또는 2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Y-10
0307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20	S-1
0307411000	갑오징어	10	Y-5
0307412000	오징어	10	B-1
0307491010	갑오징어	10	B-1
0307491020	오징어	22	B-1
03074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10	B-1
0307493000	건조한 것	10	B-1
0307494020	오징어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0	B-1
0307712010	종패용	0	Y-1
0307712090	기타	20	Y-3
0307714000	바지락	20	S-1
0307791030	바지락	20	Y-5
0307791040	피조개	20	Y-5
0307791090	기타	20	Y-5
0307793020	바지락	20	Y-5
0307793090	기타	20	Y-3
03078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20	B-1
0307891000	냉동한 것	20	S-1
03078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20	Y-3
0307991900	기타	20	Y-10
0307993900	기타	20	Y-3
0308291000	냉동한 것	20	Y-5
0308302000	냉동한 것	20	Y-3
0308902090	기타	20	Y-3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36	B-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36	B-1
0401401000	냉동크림	36	B-1
0401409000	기타	36	B-1
0401501000	냉동크림	36	B-1
0401509000	기타	36	B-1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176	B-1
0402101090	기타	176	B-1
0402109000	기타	176	B-1
0402211000	전지분유	176	B-1
0402219000	기타	176	B-1
0402290000	기타	176	B-1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	89	B-1
0402919000	기타	89	B-1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煉乳)	89	B-1
0402999000	기타	89	B-1
0403101000	액체 상태인 것	36	B-1
0403102000	냉동한 것	36	B-1
0403109000	기타	36	B-1
0403901000	버터밀크	89	B-1
0403902000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20	Y-3
0403909000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20	Y-3
0404101011	사료용	20	S-1
0404101019	기타	20	S-1
0404101091	사료용	20	S-1
0404101099	기타	20	S-1
0404102111	사료용	20	S-1
0404102119	기타	20	S-1
0404102121	사료용	20	S-1
0404102129	기타	20	S-1
0404102131	사료용	20	S-1
0404102139	기타	20	S-1
0404102191	사료용	20	S-1
0404102199	기타	20	S-1
0404102910	사료용	20	S-1
0404102990	기타	20	S-1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36	E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36	E
0405100000	버터	89	B-1
0405900000	기타	89	B-1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36	E
0406101020	크림 치즈	36	E
0406101090	기타	36	E
0406102000	커드(curd)	20	Y-3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36	B-1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36	B-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 (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20	Y-3
0406901000	체더 치즈(Cheddar cheese)	36	E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36	E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	36	E
0406904000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	36	E
0406909000	기타	36	E
04071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7	B-1
0407190000	기타	27	B-1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0	Y-3
0407290000	기타	20	Y-3
0407900000	기타	20	Y-3
0408910000	건조한 것	20	Y-3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에 한정한다]의 것	41.6	B-1
0408999000	기타	20	Y-3
0409000000	천연꿀	243% 또는 1,864 원/kg, 양자 중 고액(율)	Y-15
0506902000	뼛가루	20	Y-3
0507901110	전지(全枝)	20	B-1
0507901190	기타	20	B-1
0507901200	녹각	20	B-1
0602109000	기타	8	Y-5
0602901090	기타	8	Y-5
0602909090	기타	8	S-1
0603110000	장미	25	Y-10
0603120000	카네이션	25	Y-10
0603131000	심비디움(Cymbidiums)	25	Y-10
0603132000	팔레놉시스(Phalaenopsis)	20	S-1
0603139000	기타	20	S-1
0603140000	국화	25	Y-10
0603150000	백합[릴리움(Lilium)종]	20	S-1
0603194000	안개초	20	S-1
0603199000	기타	20	Y-5
0603900000	기타	20	S-1
0701100000	종자용	304	B-1
0701900000	기타	304	B-1
070200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0	S-1
0703101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3201000	껍질을 깐 것	360% 또는 1,800 원/kg,	E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양자 중 고액(율)	
0703209000	기타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410000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20	S-1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20	S-1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20	S-1
0709517000	양송이 버섯	20	Y-3
0709592000	표고버섯	20	S-1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9609000	기타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09930000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20	S-1
0709999000	기타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은 제외한다]	20	S-1
0710801000	양파	20	S-1
0710802000	마늘	27	Y-10
071080700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	E
0711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1905091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200000	양파	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712391020	표고버섯	20	Y-5
0712901000	마늘	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Y-10
0712902010	고사리	30% 또는 1,807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0712902030	파	20	Y-5
0712902040	당근	20	S-1
0712902050	호박	20	Y-5
0712902070	토란줄기	20	Y-5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370	B-1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370	B-1
0713311000	종자용	607.5	B-1
0713319000	기타	607.5	B-1
0713321000	종자용	420.8	B-1
0713329000	기타	420.8	Y-15
0713331000	종자용	27	E
0713339000	기타	27	E
07133400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나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27	B-1
0713350000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27	B-1
0713390000	기타	27	B-1
0713400000	렌즈콩	20	Y-5
0714101000	신선한 것	887.4	E
0714102010	칩	887.4	E
0714102020	펠릿(pellet)	887.4	B-1
0714102090	기타	887.4	E
0714103000	냉장한 것	887.4	E
0714104000	냉동한 것	45	E
0714201000	신선한 것	385% 또는 338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0714202000	건조한 것	385	B-1
0714203000	냉장한 것	385	B-1
0714204000	냉동한 것	20	Y-5
0714209000	기타	385	B-1
0714301000	냉동한 것	20	Y-5
0714309000	기타	385	C
0714401000	냉동한 것	20	Y-5
0714409000	기타	385	C
0714501000	냉동한 것	20	Y-5
0714509000	기타	385	C
0714901010	냉동한 것	20	Y-5
0714901090	기타	18	Y-5
0714909010	냉동한 것	20	Y-5
0714909090	기타	385	C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8	Y-5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8	Y-5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45	B-1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30	Y-1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19.4% 또는 1,470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219.4% 또는 1,470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080290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566.8% 또는 2,664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0802901020	껍데기를 벗긴 것	566.8% 또는 2,664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0803100000	플랜틴(plantain)	30	E
0803900000	기타	30	Y-10
0804100000	대추야자	30	B-1
0804300000	파인애플	30	Y-10
0804501000	구아바(guava)	30	Y-10
0804502000	망고(mango)	30	Y-10
0804503000	망고스틴(mangosteen)	30	Y-10
0805100000	오렌지	50	E
0805201000	감귤	144	E
0805209000	기타	144	E
0805501000	레몬(시트러스 리몬, 시트러스 리머늄)	20	S-1
0805900000	기타	144	E
0806100000	신선한 것	45	B-1
0806200000	건조한 것	20	S-1
0807190000	기타	20	S-1
0807200000	포포(papaw)[파파야(papaya)]	30	Y-10
0808100000	사과	45	E
0808300000	배	45	E
08092100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20	S-1
0809290000	기타	20	S-1
080930000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5	B-1
0809402000	슬로(sloe)	20	S-1
0810100000	초본류 딸기	20	S-1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20	S-1
0810600000	두리안(durian)	45	Y-10
0810701000	단감	45	B-1
0810709000	기타	20	S-1
0810903000	대추	611.5% 또는 5,800 원/kg,	B-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양자 중 고액(율)	
0810905000	매실	20	S-1
0810909000	기타	45	Y-10
0811100000	초본류 딸기	20	S-1
0811901000	밤	30	B-1
0811902000	대추	30	B-1
0811903000	잣	30	B-1
0811909000	기타	30	Y-10
0812100000	체리	20	S-1
0812901000	초본류 딸기	20	S-1
0813300000	사과	45	B-1
0813401000	감	50	B-1
0813402000	대추	611.5% 또는 5,800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0813409000	기타	45	Y-10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20	S-1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20	Y-5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513.6	E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3.6	E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율)	E
091011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091011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Y-10
0910119000	기타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Y-10
091012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Y-1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고액(율)	
0910122000	건조한 것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Y-10
0910129000	기타	377.3% 또는 931 원/kg, 양자 중 고액(율)	Y-10
1003101000	맥주보리	513	C
10031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 원/kg, 양자 중 고액(율)	C
10031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 원/kg, 양자 중 고액(율)	C
1003109000	기타	299.7	C
1003901000	맥주보리	513	C
1003902000	겉보리	324% 또는 326 원/kg, 양자 중 고액(율)	C
1003903000	쌀보리	299.7% 또는 361 원/kg, 양자 중 고액(율)	C
1003909000	기타	299.7	C
1005902000	팝콘	630	C
1005909000	기타	328	C
1006100000	벼	-	R
1006201000	메현미	-	R
1006202000	찰현미	-	R
1006301000	멥쌀	-	R
1006302000	찹쌀	-	R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	R
1008100000	메밀	256.1	B-1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800.3	C
10085000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800.3	C
1008600000	라이밀(triticale)	800.3	C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800.3	C
1102901000	보릿가루	260	C
1102902000	쌀가루	-	R
1102909000	기타	800.3	C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1103110000	밀로 만든 것	20	S-1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2.9	B-1
1103191000	보리로 만든 것	260	C
1103192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C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	R
1103199000	기타	800.3	C
1103201000	밀로 만든 것	20	S-1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	R
1103203000	보리로 만든 것	20	S-1
1103209000	기타	20	S-1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C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	R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233	C
1104199000	기타	800.3	C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554.8	C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167	B-1
1104291000	율무로 만든 것	800.3	C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126	C
1104299000	기타	800.3	C
1104301000	쌀로 만든 것	5	Y-5
1105100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가루	304	B-1
1105200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 및 펠릿(pellet)	304	B-1
1106201000	칡뿌리의 것	8	Y-5
1106209000	기타	8	Y-5
1106300000	제 8 류 물품의 것	8	Y-5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269	C
1107201000	훈연(燻煙)한 것	269	C
1108110000	밀로 만든 것	50.9	B-1
1108121000	식품용	226	B-1
1108129000	기타	226	B-1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455	B-1
1108141000	식품용	455	E
1108149000	기타	455	E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241.2	Y-15
1108199000	기타	800.3	C
1108200000	이눌린(inulin)	800.3	C
1201101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1201109000	기타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1201902000	사료용	487% 또는	B-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1903000	콩나물용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1201909000	기타	487% 또는 956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120230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B-1
1202302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B-1
12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230.5	B-1
12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30.5	B-1
1207400000	참깨	630% 또는 6,660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1207991000	들깨	20	Y-3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222.8	B-1
1211201190	기타	222.8	B-1
1211201210	본삼	222.8	B-1
1211201290	기타	222.8	B-1
1211201310	본삼	754.3	B-1
1211201390	기타	754.3	B-1
1211202120	타브렛이나 캡슐	18	S-1
1211202210	가루	754.3	B-1
1211202220	타브렛이나 캡슐	754.3	B-1
1211202290	기타	754.3	B-1
1211209100	인삼잎과 줄기	754.3	B-1
1211209200	종자	754.3	B-1
1211209900	기타	754.3	B-1
1212211010	건조한 것	20	B-1
1212212010	건조한 것	20	B-1
1212212020	염장한 것	20	B-1
1212213010	건조한 것	20	B-1
1212215010	염장한 것	20	Y-10
1212215090	기타	20	B-1
1212219099	기타	20	B-1
1212291090	기타		
	- 건조한 것	20	B-1
1212292090	기타		
	- 건조한 것	20	B-1
	- 염장한 것	20	B-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1212293090	기타		
	- 건조한 것	20	B-1
1212295090	기타		
	- 기타	20	B-1
1212299099	기타	20	Y-10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20	S-1
1214909090	기타	20	S-1
1301909000	기타	3	Y-5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20	S-1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754.3	B-1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754.3	B-1
1302191290	기타	754.3	B-1
1302191900	기타	20	B-1
1401101000	맹종죽(孟宗竹)	8	S-1
1401102000	청환죽(青丸竹)	8	S-1
1401109000	기타	8	Y-5
1507901010	식품용	5	Y-5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	5	E
1507901090	기타	5	E
1507909000	기타	5	Y-5
1514191000	정제유(精製油)	5	E
1514199000	기타	5	E
151499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5	E
1514991020	겨자유	5	E
1514999000	기타	5	E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630% 또는 12,060 원/kg, 양자 중 고액(율)	B-1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C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5	Y-3
1516201010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	20	S-1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36	B-1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20	S-1
1516202090	기타	8	Y-5
1601001000	소시지	18	B-1
1601009000	기타	30	B-1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30	B-1
1602321010	삼계탕	30	B-1
1602321090	기타	30	E
1602329000	기타	30	E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B-1
1602399000	기타	30	B-1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B-1
1602419000	기타	27	B-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B-1
1602429000	기타	27	B-1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30	E
1602499000	기타	27	E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72	B-1
1602509000	기타	72	B-1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30	B-1
1603002000	육즙	30	B-1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Y-5
1604141011	기름에 담근 것	20	E
1604141012	삶은 것	20	E
1604141019	기타	20	Y-10
1604141021	기름에 담근 것	20	E
1604141022	삶은 것	20	E
1604141029	기타	20	E
1604141031	기름에 담근 것	20	E
1604141032	삶은 것	20	E
1604141039	기타	20	E
1604149000	기타	20	Y-10
1604179000	기타	20	Y-5
1604199090	기타	20	Y-5
1604204010	게맛의 것	20	Y-5
1604204090	기타	20	Y-5
1604209000	기타	20	Y-5
1605219000	기타	20	부록 2-가-1 참조
1605519000	기타	20	Y-5
1605529000	기타	20	Y-5
1605541090	기타	20	Y-5
1605542091	조미오징어	20	B-1
1605542099	기타	20	Y-5
1605559000	기타	20	Y-5
1605561090	기타	20	Y-5
1605562090	기타	20	Y-3
1605569090	기타	20	Y-5
1605579000	기타	20	Y-5
1605589000	기타	20	Y-3
1605592090	기타	20	Y-5
1605599090	기타	20	Y-5
1605629000	기타	20	Y-5
1605639000	기타	20	Y-3
1605699000	기타	20	Y-5
17019100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30	B-1
1701990000	기타	30	B-1
1702301000	포도당	8	Y-3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1702401000	포도당	8	Y-3
1702601000	과당	8	Y-3
1702901000	인조꿀	243	B-1
1702902000	캐러멜당	8	Y-3
1702903000	맥아당	8	Y-3
1702909000	기타	8	Y-3
1806902290	기타	-	R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20	Y-3
1806902999	기타	-	R
1806903091	낟알 모양의 쌀	8	B-1
1806903099	기타	8	Y-3
1901101010	조제 분유	36	B-1
1901101090	기타	40	B-1
1901201000	쌀가루의 것	-	R
1901209000	기타	-	R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30	B-1
19019020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것	36	E
19019020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는 것	36	E
1901909091	쌀가루의 것	-	R
1901909099	기타	-	R
1902191000	국수	5	Y-3
1902192000	당면	20	Y-5
1904109000	기타	5.4	Y-3
1904201000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의 것	20	S-1
1904209000	기타	5.4	Y-3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50	B-1
1904901090	기타	8	B-1
1904909000	기타	8	Y-3
1905901050	쌀과자	8	Y-5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8	Y-3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30	B-1
2001909040	스위트콘	20	S-1
2001909060	마늘	30	B-1
2001909070	양파	30	B-1
2001909090	기타	30	C
2004100000	감자	18	Y-5
200580000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15	Y-3
2005991000	김치	20	B-1
2006001000	마롱 글라세(marrons glacés)	30	B-1
2006002000	파인애플	30	B-1
2006003000	생강	30	C
200791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20	Y-5
2007991000	잼・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30	B-1
2008119000	기타	63.9	B-1
2008200000	파인애플	45	Y-1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2008301000	유자	45	B-1
2008309000	기타	45	B-1
2008400000	배	45	B-1
2008500000	살구	20	S-1
2008600000	체리	20	S-1
2008800000	초본류 딸기	20	S-1
200893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45	B-1
200897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50	Y-10
2008971090	기타	45	B-1
2008972000	과실 샐러드	20	S-1
2008979000	기타	45	Y-10
2008991000	포도	45	B-1
2008992000	사과	45	C
2008993000	팝콘	45	B-1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45	B-1
2008999000	기타	45	Y-10
2009110000	냉동한 것	54	C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	S-1
2009190000	기타	54	C
2009311000	레몬주스	20	Y-5
2009312000	라임주스	20	S-1
2009319000	기타	20	S-1
2009392000	라임주스	20	S-1
2009399000	기타	20	Y-5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50	B-1
2009490000	기타	20	Y-5
2009690000	기타	20	S-1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	S-1
200981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50	B-1
2009891010	복숭아주스	50	B-1
2009891090	기타	50	Y-10
2101201000	설탕・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20	Y-3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40	C
2101209019	기타	40	C
2101209090	기타	40	C
2103100000	간장	8	Y-5
2103901010	된장	8	S-1
2103901020	춘장	8	Y-5
2103901030	고추장	20	S-1
2103909030	혼합조미료	45	B-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2103909040	메주	13% 또는 52 원/kg, 양자 중 고액(율)	S-1
2103909090	기타	45	B-1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30	B-1
2106101000	두부	8	Y-5
2106903021	홍삼차	754.3	B-1
2106903029	기타	754.3	B-1
2106904010	김	8	S-1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것	8	S-1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을 초과하고 100 분의 70 이하인 것	8	S-1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을 초과하는 것	8	S-1
2106909050	향미(香味)용 조제품	8	Y-5
2202901000	인삼음료	8	Y-5
2202902000	과실주스 음료	9	Y-5
2203000000	맥주	30	Y-5
2206002090	기타	15	Y-5
2207101000	조주정(粗酒精)	10	Y-5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270	B-1
2208201000	꼬냑	15	Y-5
2208209000	기타	15	Y-5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20	Y-5
2208309000	기타	20	Y-5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0	Y-5
220850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20	Y-5
2208600000	보드카	20	Y-5
2208709000	기타	20	Y-5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 2208.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20	Y-5
2208909000	기타	20	Y-5
2301209000	기타	5	Y-3
2308009000	기타	20	Y-5
2309902010	무기물 또는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50.6	B-1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50.6	B-1
2309902099	기타	50.6	Y-10
2309909000	기타	50.6	B-1
2523100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5	Y-3
25232100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Y-3
2523290000	기타	5	Y-3
2523901000	슬래그(slag) 시멘트	5	Y-3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3	Y-3
2710129000	기타	5	Y-3
2710191090	기타	5	Y-3
2710192010	등유	3	Y-3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2710192020	제트 연료유	3	Y-3
2710192090	기타	5	Y-3
2710193000	경유	3	Y-3
27101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3	Y-3
2710194020	중유(벙커비유)	3	Y-3
2710194030	벙커시유	3	Y-3
2710194090	기타	5	Y-3
2710195010	조유(粗油)	7	Y-3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7	Y-3
2710201010	자동차 휘발유	5	Y-3
2710201090	기타	5	Y-3
2710209190	기타	5	Y-3
2710209210	등유	5	Y-3
2710209220	제트 연료유	5	Y-3
2710209290	기타	5	Y-3
2710209300	경유	5	Y-3
27102094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	5	Y-3
2710209420	중유(벙커비유)	5	Y-3
2710209430	벙커시유	5	Y-3
2710209490	기타	5	Y-3
2710209510	조유(粗油)	7	Y-3
2710209520	윤활유 기유(基油)	7	Y-3
2815110000	고체	5.5	Y-3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8	Y-3
2852102000	소호 제 2918.11 호, 제 2931.00 호, 제 2932.99 호, 제 2934.99.9090 호, 제 3201.90.2000 호, 제 3201.90.4000 호, 제 3206.50 호, 제 3707.90 호, 제 3822.00.1091 호나 제 3822.00.2091 호의 것		
	- 제 2934.99.90 호의 것(기타)	6.5	Y-5
	- 제 3707.90.2100 호의 것(천연색 사진용)	6.5	Y-5
	- 제 3707.90.2920 호의 것(인쇄제판용)	6.5	Y-5
	- 제 3707.90.3100 호의 것(천연색 사진용)	6.5	Y-5
2852902000	소호 제 2842.10.1000 호, 제 2934.99.2000 호, 제 2934.99.9090 호, 제 3201.90 호, 제 3824.90.2100 호, 제 3824.90.2200 호 또는 제 3824.90.2490 호부터 제 3824.90.9090 호까지의 것		
	- 소호 제 2934.99.9090 호의 것	6.5	Y-5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Y-3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Y-3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	5.5	Y-3
2905122090	기타	5.5	Y-3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5	Y-3
2905140000	그 밖의 부탄올	5.5	Y-3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5.5	Y-3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5.5	Y-3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5.5	Y-3
2905430000	만니톨	8	S-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8	S-1
2907111000	페놀	5.5	Y-3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5.5	Y-3
291020000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5.5	Y-3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5.5	Y-3
2914110000	아세톤	5.5	Y-3
2915210000	초산	5.5	Y-3
2915310000	초산에틸	5.5	S-1
2915320000	초산비닐	5.5	Y-3
2915339000	기타	5.5	Y-3
2916111000	아크릴산	6.5	Y-3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6.5	Y-3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6.5	Y-3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6.5	Y-3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6.5	Y-3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6.5	Y-3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6.5	Y-3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6.5	Y-3
2917329000	기타	6.5	Y-3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이소데실	6.5	Y-3
2917350000	무수프탈산	6.5	Y-3
2917391000	이소프탈산	6.5	Y-3
2934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Y-3
2934999090	기타	6.5	Y-3
3002109030	소호 제 2925.29 호, 제 2933.29 호, 제 2934.99 호, 제 2937.90.1000 호, 제 3002.90.3010 호나 제 3907.20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소호 제 2934.99.9090 호의 것	6.5	Y-5
	- 소호 제 3907.20.2000 호의 것	6.5	Y-5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2	Y-3
3102109000	기타	6.5	Y-3
3301904520	홍삼에서 추출한 것	754.3	B-1
3305100000	샴푸	5	Y-3
3305901000	헤어린스	5	Y-3
3401119000	기타	6.5	Y-3
3401191090	기타	6.5	Y-3
340120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6.5	Y-3
3505103000	배소전분	385.7	C
3505104010	식품용	385.7	B-1
3505104090	기타	385.7	B-1
3505105010	식품용	385.7	B-1
3505105090	기타	385.7	B-1
3505109010	식품용	385.7	B-1
3505109090	기타	385.7	B-1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201.2	C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201.2	C
3505209000	기타	201.2	C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	6.5	Y-3
3706105020	포지티브	6.5% 또는 182 원/m	Y-3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	6.5	Y-3
3707902920	인쇄제판용	6.5	Y-3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	6.5	Y-3
38099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6.5	Y-3
3811210000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5	Y-3
3812200000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6.5	Y-3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나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5	Y-3
3823110000	스테아르산	8	Y-5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8	Y-3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3	Y-3
3901101000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6.5	Y-5
3901109000	기타	6.5	Y-5
3901201000	펄프의 것	6.5	Y-3
3901209000	기타	6.5	Y-5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6.5	Y-5
3901900000	기타	6.5	Y-3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6.5	Y-3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6.5	Y-3
3903909000	기타	6.5	Y-3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	Y-3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6.5	Y-3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8	Y-3
390610000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6.5	Y-3
3906909000	기타	8	Y-3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6.5	Y-3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6.5	Y-3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6.5	Y-3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6.5	Y-3
3908103000	폴리아미드 -11, -12, -6,9, -6,10 또는 -6,12	6.5	Y-3
3908900000	기타	6.5	Y-3
4002709000	기타	8	Y-3
4007001000	고무실	5	Y-3
4407101000	삼나무	5	Y-5
4407102000	미송	5	Y-5
4407103000	적송	5	Y-5
4407104000	전나무	5	Y-5
4407105000	낙엽송	5	Y-5
4407107000	가문비나무	5	Y-5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4407108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5	E
4407109000	기타	5	Y-5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5	Y-3
4407220000	비롤라(Virola)·임부아(Imbuia)와 발사(Balsa)	5	Y-3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5	E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와 아란(Alan)	5	Y-5
4407270000	사팰리(Sapelli)	5	Y-3
4407280000	이로코(Iroko)	5	Y-3
4407291000	케루잉(Keruing)·라민(Ramin)·카풀(Kapur)·종콩(Jongkong)·멜바우(Merbau)·제루통(Jelutong)과 켐파스(Kempas)	5	Y-5
4407292000	티크(Teak)	5	Y-3
44072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시뽀(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꼬레(Makoré)·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와 아조베(Azobé)	5	Y-3
4407299000	기타	5	E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5	Y-5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5	Y-5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5	Y-3
4407940000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5	Y-3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5	Y-3
4407991010	자단(rosewood)	5	Y-3
4407991020	흑단(ebony wood)	5	Y-3
4407991040	호두나무	5	Y-3
4407991090	기타	5	Y-3
4407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5	Y-3
4407993010	사시나무	5	Y-3
4407993020	포플러	5	Y-3
4407993040	느릅나무	5	Y-3
4407993050	자작나무	5	Y-3
4407993060	피나무	5	Y-3
4407994000	오동나무	5	Y-3
4407999010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5	Y-5
4407999090	기타	5	E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B-1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S-1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S-1
4410119000	기타	8	Y-1
4410199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8	B-1
441019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Y-5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8	Y-5
4410199090	기타	8	Y-5
4410900000	기타	8	Y-5
44111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B-1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8	E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35 그램 초과 0.5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8	S-1
441112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며, 마루판을 제외한다)	8	S-1
4411129000	기타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8	S-1
44111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B-1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8	E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35 그램 초과 0.5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8	S-1
441113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하며, 마루판을 제외한다)	8	S-1
4411139000	기타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8	S-1
44111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B-1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8	E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35 그램 초과 0.5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8	S-1
4411142010	마루판	8	B-1
4411142090	기타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8	S-1
4411149000	기타		
	- 섬유판(1 세제곱센티미터당 밀도가 0.5 그램 초과 0.8 그램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8	Y-1
441192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Y-10
4411922010	마루판	8	B-1
441193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8	E
4411932010	마루판	8	B-1
4411932090	기타	8	S-1
4411939000	기타	8	Y-5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44119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35 그램 초과하고 0.5 그램 이하인 것	8	S-1
4412101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S-1
441210102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가.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		
	-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B-1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B-1
	-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S-1
	나.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S-1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S-1
	-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S-1
	다.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인 것을 제외한다)		
	-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S-1
	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과 적어도 한 층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로 된 것을 제외한 것	8	S-1
	3. 그 밖의 것(기타)		
	-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열거한 열대산 목재의 것, 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로 된 것 및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을 제외한 것	8	S-1
4412102000	마루판	8	B-1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8	Y-5
4412109090	기타	8	Y-5
4412311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Y-5
4412312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이상 4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S-1
4412313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Y-5
4412314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B-1
441231500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B-1
441231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B-1
441231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Y-5
4412321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Y-5
4412322000	두께가 3.2 밀리미터 이상 4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Y-5
4412323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Y-5
4412324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Y-10
441232500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상 12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Y-10
4412326000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 15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Y-10
4412327000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Y-7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4412391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Y-5
4412391090	기타	10	Y-7
4412399010	두께가 6 밀리미터 미만인 것	8	Y-5
4412399090	기타	10	Y-7
4412941000	블록보드(blockboard)		
	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	8	Y-1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로 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합판	8	Y-1
	- 마루판	8	Y-1
	- 기타(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8	Y-1
	2. 그 밖의 것(기타)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	8	Y-1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로 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합판(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	8	Y-1
	- 합판(기타)	8	Y-1
	- 마루판	8	Y-1
	- 기타(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8	Y-1
4412942000	라민보드(laminboard)		
	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	8	S-1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인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합판	8	S-1
	- 마루판	8	B-1
	- 기타(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8	S-1
	2. 그 밖의 것(기타)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	8	S-1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인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합판(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	8	S-1
	- 합판(기타)	8	S-1
	- 마루판	8	B-1
	- 기타(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8	S-1
4412943000	배튼보드(battenboard)		
	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활엽수 목재의 것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	8	S-1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인 것을 제외한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것으로 한정한다]		
	- 합판	8	S-1
	- 마루판	8	B-1
	- 기타(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8	S-1
	2. 그 밖의 것(기타)		
	가. 적어도 한개의 플라이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의 것	8	S-1
	나. 기타[적어도 한층은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인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합판(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의 것)	8	S-1
	- 합판(기타)	8	S-1
	- 마루판	8	B-1
	- 기타(베니어패널 및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8	S-1
441299101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S-1
4412991019	기타	8	S-1
441299102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S-1
4412991029	기타	8	S-1
441299103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Y-5
4412991039	기타	8	S-1
4412991041	마루판[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B-1
4412991042	마루판(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8	B-1
4412991043	기타[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S-1
4412991049	기타	8	S-1
4412992010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의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Y-5
4412992090	기타	8	Y-5
4412993010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S-1
4412993090	기타	8	S-1
441299911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S-1
4412999119	기타	8	S-1
441299919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Y-7
4412999199	기타	8	S-1
441299921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B-1
4412999219	기타	8	B-1
4412999291	각 플라이가 6 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Y-5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4412999299	기타	8	Y-5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8	Y-5
5106101000	순모의 것	8	Y-1
5106109000	기타	8	Y-1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8	Y-1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Y-1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Y-1
5106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Y-1
5106209000	기타	8	Y-1
5107101000	순모의 것	8	Y-1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Y-1
51071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Y-1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8	Y-1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8	Y-1
5107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8	Y-1
51072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8	Y-1
5108100000	카드(card)한 것	8	Y-1
5108200000	코움(comb)한 것	8	Y-1
5109101000	양모사	8	Y-1
51091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Y-1
5109901000	양모사	8	Y-1
51099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8	Y-1
51100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8	Y-1
5111111000	양모로 만든 것	13	Y-1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8	Y-1
5204190000	기타	8	Y-1
52052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219000	기타	8	Y-1
52052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229000	기타	8	Y-1
52052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239000	기타	8	Y-1
52052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249000	기타	8	Y-1
520526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269000	기타	8	Y-1
520527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279000	기타	8	Y-1
520528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289000	기타	8	Y-1
52054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419000	기타	8	Y-1
52054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5205429000	기타	8	Y-1
52054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439000	기타	8	Y-1
52054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449000	기타	8	Y-1
520546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469000	기타	8	Y-1
520547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479000	기타	8	Y-1
520548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8	Y-1
5205489000	기타	8	Y-1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Y-1
52082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10	Y-1
540233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Y-1
5402339000	기타	8	Y-1
5402440000	탄성사		
	- 폴리에스테르의 것, 기타	8	Y-1
	- 기타	8	Y-1
540247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8	Y-1
5402479000	기타	8	Y-1
5402499000	기타	8	Y-1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Y-1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Y-1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13	Y-1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13	Y-1
6109903010	티셔츠	13	Y-1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Y-1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3. 기타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Y-1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Y-1
6202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Y-1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Y-1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Y-1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Y-1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Y-1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Y-1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Y-1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13	Y-1
62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Y-1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3	Y-1
6204629000	기타	13	Y-1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13	Y-1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3	Y-1
6212109000	기타	13	Y-1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8	Y-1
6216009000	기타	8	Y-1
6901003000	타일	8	Y-3
6907901000	자기제의 것	8	Y-3
6907909000	기타	8	Y-3
6908909000	기타	8	Y-3
6909110000	자기제의 것	8	Y-3
6910101000	세면대	8	Y-3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8	Y-3
700521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Y-3
700521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하고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8	Y-3
7408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8	Y-3
8408101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Y-3
8408102000	출력이 30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2,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8	Y-3
840810300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8	Y-3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8	Y-3
8409993010	출력이 300 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Y-5
8409993020	출력이 30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2,000 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8	Y-5
8413303000	선박용	8	Y-5
8482102000	내경이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3	Y-10
8482109000	기타	8	Y-10
8506101000	망간건전지	13	Y-3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13	Y-3
8544429090	기타		
	- 전압이 80 볼트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그 밖의 것)	8	Y-7
8544499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		
	- 고무 절연전선	8	Y-7
8544499090	기타		
	- 전압이 80 볼트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고무 절연전선의 것)	8	Y-7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8	Y-3
8712001000	경기용	8	Y-3
8712009010	화물운반용	8	Y-3
8712009020	삼륜자전거	8	Y-3
8712009090	기타	8	Y-3
8714911000	프레임	8	Y-3
8714912000	포크	8	Y-3
8714919000	그 밖의 부분품	8	Y-3
8714921000	휠 림	8	Y-3
8714922000	스포크	8	Y-3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8	Y-3
8714932000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 휠(sprocket-wheel)	8	Y-3
8714941000	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	8	Y-3
8714942000	그 밖의 브레이크	8	Y-3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8	Y-3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714950000	안장	8	Y-3
8714961000	페달	8	Y-3
8714962000	크랭크 기어(crankgear)	8	Y-3
8714969000	이들의 부분품	8	Y-3
8714990000	기타	8	Y-3
9406001000	목재로 만든 것	8	Y-5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101211000	농가 사육용	0	0	0	0
0101219000	기타	0	0	0	0
0101291000	경주말	0	0	0	0
0101299000	기타	0	0	0	0
0101301000	번식용	0	0	0	0
0101309000	기타	0	0	0	0
0101900000	기타	0	0	0	0
0102211000	젖소	0	0	0	0
0102212000	육우(肉牛)	0	0	0	0
0102219000	기타	0	0	0	0
0102291000	젖소	0	0	0	0
0102299000	기타	0	0	0	0
0102311000	젖소	0	0	0	0
0102312000	육우	0	0	0	0
0102319000	기타	0	0	0	0
0102391000	젖소	0	0	0	0
0102399000	기타	0	0	0	0
0102901010	젖소	0	0	0	0
0102901020	육우	0	0	0	0
0102901090	기타	0	0	0	0
0102909010	젖소	0	0	0	0
0102909090	기타	0	0	0	0
0103100000	번식용	0	0	0	0
010391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0	0	0	0
0103920000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	0
0104101000	번식용	0	0	0	0
0104109000	기타	0	0	0	0
0104201000	젖산양	0	0	0	0
0104209000	기타	0	0	0	0
0105111000	번식용	0	0	0	0
0105119000	기타	0	0	0	0
0105120000	칠면조	0	0	0	0
0105131000	번식용	0	0	0	0
0105139000	기타	0	0	0	0
0105140000	거위	0	0	0	0
0105150000	기니아새	0	0	0	0
0105941000	번식용	0	0	0	0
0105949000	기타	0	0	0	0
0105991010	번식용	0	0	0	0
0105991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105992000	칠면조	0	0	0	0
0105999000	기타	0	0	0	0
0106110000	영장류	0	0	0	0
010612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0	0	0	0
0106122000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0	0	0	0
010613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0	0	0	0
0106141000	번식용	0	0	0	0
0106149000	기타	0	0	0	0
0106191000	개	0	0	0	0
0106193000	사슴	0	0	0	0
0106194000	곰	0	0	0	0
0106195010	번식용	0	0	0	0
0106195090	기타	0	0	0	0
0106196010	번식용	0	0	0	0
0106196090	기타	0	0	0	0
0106199000	기타	0	0	0	0
0106201000	뱀	0	0	0	0
0106203000	거북	0	0	0	0
0106209000	기타	0	0	0	0
0106310000	맹금류	0	0	0	0
0106320000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	0	0	0
0106330000	타조와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 (Dromaius novaehollandiae)]	0	0	0	0
0106390000	기타	0	0	0	0
0106411000	꿀벌	0	0	0	0
0106419000	기타	0	0	0	0
0106490000	기타	0	0	0	0
0106901000	양서류	0	0	0	0
0106903010	갯지렁이	0	0	0	0
0106903020	실지렁이	0	0	0	0
0106903090	기타	0	0	0	0
0106909000	기타	0	0	0	0
02041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	0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	0
0204230000	뼈 없는 것	0	0	0	0
020430000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	0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	0
0204430000	뼈 없는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2045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204502000	냉동한 것	0	0	0	0
02050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205002000	냉동한 것	0	0	0	0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261000	절단육	0	0	0	0
0207262010	간	0	0	0	0
0207262090	기타	0	0	0	0
0207271000	절단육	0	0	0	0
0207272010	간	0	0	0	0
0207272090	기타	0	0	0	0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442010	간	0	0	0	0
0207442090	기타	0	0	0	0
0207452010	간	0	0	0	0
0207452090	기타	0	0	0	0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542010	간	0	0	0	0
0207542090	기타	0	0	0	0
0207552010	간	0	0	0	0
0207552090	기타	0	0	0	0
0207603210	간	0	0	0	0
0207603290	기타	0	0	0	0
0207604210	간	0	0	0	0
0207604290	기타	0	0	0	0
0208100000	토끼의 것	0	0	0	0
0208300000	영장류의 것	0	0	0	0
020840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0	0	0	0
0208402000	물개 · 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	0	0	0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	0	0	0
020860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0	0	0	0
0208901000	사슴의 것	0	0	0	0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0	0	0	0
0208909090	기타	0	0	0	0
0209100000	돼지의 것	0	0	0	0
0209900000	기타	0	0	0	0
0210209000	기타	0	0	0	0
0210910000	영장류의 것	0	0	0	0
021092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210922000	물개・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0	0	0	0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	0	0	0
0210991010	소의 것	0	0	0	0
0210991030	가금(家禽)류의 것	0	0	0	0
0210991090	기타	0	0	0	0
0210999010	면양 또는 산양의 것	0	0	0	0
0210999020	가금(家禽)류의 것	0	0	0	0
0210999090	기타	0	0	0	0
0301111000	비단잉어	0	0	0	0
03019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0	0	0	0
0301912000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	0
03019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0	0	0	0
0301999070	미꾸라지	0	0	0	0
0301999080	메기	0	0	0	0
0301999092	붕어	0	0	0	0
0301999093	연어	0	0	0	0
0301999094	초어	0	0	0	0
0301999096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는 제외한다]	0	0	0	0
03021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0	0	0	0
0302112000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	0
030213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 (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 (Oncorhynchus rhodurus)]				
030214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0	0	0
0302190000	기타	0	0	0	0
03022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0	0	0	0
03023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0	0	0	0
03023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0	0	0	0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	0	0	0
03024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0	0	0
03024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 (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0	0	0	0
03024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0	0	0	0
0302450000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0	0	0	0
03025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	0
03025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	0	0	0
03025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0	0	0
0302590000	기타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0	0	0	0
030274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0	0	0	0
0302810000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	0	0	0
0302893000	붕장어	0	0	0	0
0302894000	갯장어	0	0	0	0
0302895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0	0	0	0
0302901000	간	0	0	0	0
0302902000	어란(魚卵)	0	0	0	0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0	0	0	0
0303120000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 (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 (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0	0	0	0
030313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314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 (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 (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 (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	0
0303190000	기타	0	0	0	0
0303260000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0	0	0	0
03033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0	0	0	0
03034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 (Thunnus alalunga)]	0	0	0	0
03034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0	0	0	0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	0	0	0
030364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	0
030365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	0	0	0
030366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 (Urophycis)종]	0	0	0	0
0303691000	새꼬리민태	0	0	0	0
0303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0	0	0
0303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0	0	0	0
0303891000	은대구	0	0	0	0
0303894000	붕장어	0	0	0	0
0303899010	보리멸	0	0	0	0
0303899020	홍살치	0	0	0	0
0303899030	달고기	0	0	0	0
0303899040	임연수어	0	0	0	0
0303899080	밀크피쉬	0	0	0	0
0303899092	까나리	0	0	0	0
030389909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	0	0	0	0
0303901000	간	0	0	0	0
0303902010	명란	0	0	0	0
0303902090	기타	0	0	0	0
03043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	0	0	0
03043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0	0	0	0
03043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	0	0	0
0304390000	기타	0	0	0	0
03044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 (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3044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	0
0304431000	가자미	0	0	0	0
0304439000	기타	0	0	0	0
0304440000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0	0	0	0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0	0	0
030446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0	0	0
0304491000	붕장어	0	0	0	0
0304492000	참다랑어	0	0	0	0
0304499000	기타	0	0	0	0
0304511000	연육	0	0	0	0
0304519000	기타	0	0	0	0
0304521000	연육	0	0	0	0
0304529000	기타	0	0	0	0
0304531000	연육	0	0	0	0
0304539000	기타	0	0	0	0
0304541000	연육	0	0	0	0
0304549000	기타	0	0	0	0
0304551000	연육	0	0	0	0
0304559000	기타	0	0	0	0
0304591010	연육	0	0	0	0
0304591090	기타	0	0	0	0
0304592010	연육	0	0	0	0
0304592090	기타	0	0	0	0
0304593010	연육	0	0	0	0
0304593090	기타	0	0	0	0
0304599010	연육	0	0	0	0
0304599090	기타	0	0	0	0
03046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	0	0	0
03046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0	0	0	0
03046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4690000	기타	0	0	0	0
03047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0	0	0
0304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	0
03047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	0	0	0
03047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0	0	0	0
03047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0	0	0
0304790000	기타	0	0	0	0
03048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0	0	0
03048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	0
0304831000	가자미	0	0	0	0
0304839000	기타	0	0	0	0
03048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0	0	0
03048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0	0	0
030486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0	0	0
0304871000	참다랑어	0	0	0	0
0304879000	기타	0	0	0	0
0304891000	붕장어의 것	0	0	0	0
0304892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의 것	0	0	0	0
0304893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은 제외한다]의 것	0	0	0	0
0304894000	쥐치의 것	0	0	0	0
0304899000	기타	0	0	0	0
0304911000	냉동 연육	0	0	0	0
0304919000	기타	0	0	0	0
0304921000	냉동 연육	0	0	0	0
030492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4931000	냉동 연육	0	0	0	0
0304939000	기타	0	0	0	0
0304941000	냉동 연육	0	0	0	0
0304949000	기타	0	0	0	0
0304951000	냉동 연육	0	0	0	0
0304959000	기타	0	0	0	0
0304991000	냉동 연육	0	0	0	0
0304999000	기타	0	0	0	0
0305100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305201000	간	0	0	0	0
0305203000	훈제 어란(魚卵)	0	0	0	0
0305204010	명태의 것	0	0	0	0
0305204020	조기의 것	0	0	0	0
0305204030	청어의 것	0	0	0	0
0305204090	기타	0	0	0	0
0305311000	건조한 것	0	0	0	0
030531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5321000	건조한 것	0	0	0	0
030532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5391000	건조한 것	0	0	0	0
03053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54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0	0	0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0	0	0
030543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	0
03054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 [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0305491000	멸치	0	0	0	0
0305492000	명태	0	0	0	0
0305499000	기타	0	0	0	0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0	0	0
0305593000	명태(북어)	0	0	0	0
0305594000	조기(굴비)	0	0	0	0
0305595000	복어	0	0	0	0
0305596000	갯장어	0	0	0	0
0305597000	까나리	0	0	0	0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0	0	0	0
0305599000	기타	0	0	0	0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0	0	0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0	0	0
0305639000	기타	0	0	0	0
0305691000	연어	0	0	0	0
0305692000	송어	0	0	0	0
0305693000	갈치	0	0	0	0
0305694000	정어리	0	0	0	0
0305695000	고등어	0	0	0	0
0305697000	전갱이	0	0	0	0
0305698000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	0	0	0	0
0305711000	훈제한 것	0	0	0	0
0305712000	건조한 것	0	0	0	0
0305721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의 것	0	0	0	0
0305729000	기타				
	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hucho)]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2. 연어[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는 제외한다]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3.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4.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 기타	0	0	0	0
	5.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의 것은 제외한다]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6. 명태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7. 조기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 복어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9. 갯장어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10. 까나리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11. 베도라치(실치를 포함한다)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12. 송어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13. 갈치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14. 정어리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15. 고등어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16. 전갱이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7.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18. 기타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0305790000	기타				
	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2.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3. 연어[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는 제외한다]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4.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5.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 기타	0	0	0	0
	6.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의 것은 제외한다]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7. 명태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 조기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9. 복어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10. 갯장어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11. 까나리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12. 베도라치(실치를 포함한다)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13. 송어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것은 제외한다)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14. 갈치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15. 정어리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16. 고등어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17. 전갱이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18. 꽁치(학꽁치를 포함한다)의 것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다. 염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염수장한 것	0	0	0	0
	19. 기타				
	가. 훈제한 것	0	0	0	0
	나. 건조한 것(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0306111000	훈제한 것	0	0	0	0
0306119000	기타	0	0	0	0
03061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121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	0	0	0
0306129000	기타	0	0	0	0
0306141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141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6141090	기타	0	0	0	0
0306142010	훈제한 것	0	0	0	0
0306142090	기타	0	0	0	0
0306143010	훈제한 것	0	0	0	0
0306149010	훈제한 것	0	0	0	0
0306151000	훈제한 것	0	0	0	0
0306159000	기타	0	0	0	0
0306161010	훈제한 것	0	0	0	0
0306169010	훈제한 것	0	0	0	0
0306171010	훈제한 것	0	0	0	0
0306179010	훈제한 것	0	0	0	0
0306191000	훈제한 것	0	0	0	0
0306199000	기타	0	0	0	0
0306211000	훈제한 것	0	0	0	0
0306219000	기타	0	0	0	0
03062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221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	0	0	0
0306229000	기타	0	0	0	0
0306242000	건조한 것	0	0	0	0
030624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624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244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	0	0	0
0306244090	기타	0	0	0	0
030625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	0	0	0
0306252000	건조한 것	0	0	0	0
030625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6254000	훈제한 것	0	0	0	0
0306264000	훈제한 것	0	0	0	0
0306274000	훈제한 것	0	0	0	0
030629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	0	0	0
0306292000	건조한 것	0	0	0	0
0306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6294000	훈제한 것	0	0	0	0
0307111010	종패용	0	0	0	0
0307111090	기타	0	0	0	0
0307119000	기타	0	0	0	0
0307191000	냉동한 것	0	0	0	0
0307192000	건조한 것	0	0	0	0
0307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7194000	훈제한 것	0	0	0	0
0307291000	냉동한 것	0	0	0	0
0307292000	건조한 것	0	0	0	0
0307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7294000	훈제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	0	0	0
0307391000	냉동한 것	0	0	0	0
0307392000	건조한 것	0	0	0	0
0307393000	훈제한 것	0	0	0	0
0307399000	기타	0	0	0	0
0307494010	갑오징어	0	0	0	0
0307494020	오징어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7511000	낙지	0	0	0	0
0307512000	주꾸미	0	0	0	0
0307519000	기타	0	0	0	0
0307591010	문어	0	0	0	0
0307591020	낙지	0	0	0	0
0307591030	주꾸미	0	0	0	0
0307591090	기타	0	0	0	0
0307592000	건조한 것	0	0	0	0
0307593000	훈제한 것	0	0	0	0
0307599000	기타	0	0	0	0
0307601000	훈제한 것	0	0	0	0
0307609000	기타	0	0	0	0
0307711010	치패(稚貝)	0	0	0	0
0307711090	기타	0	0	0	0
0307713000	새조개	0	0	0	0
0307719000	기타	0	0	0	0
0307791010	새조개	0	0	0	0
0307791020	개량조개	0	0	0	0
0307792010	개량조개	0	0	0	0
0307792020	바지락	0	0	0	0
0307792090	기타	0	0	0	0
0307793010	개량조개	0	0	0	0
030779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7794019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	0	0	0
0307794090	기타	0	0	0	0
0307892000	건조한 것	0	0	0	0
0307894000	훈제한 것	0	0	0	0
0307911000	소라	0	0	0	0
0307912010	종패용	0	0	0	0
0307912090	기타	0	0	0	0
0307913000	개아지살	0	0	0	0
0307914000	재첩	0	0	0	0
0307919000	기타	0	0	0	0
0307991100	개아지살	0	0	0	0
0307991200	소라	0	0	0	0
0307992100	개아지살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7992900	기타	0	0	0	0
0307993100	소라	0	0	0	0
03079941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79941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0	0	0	0
0307994900	기타	0	0	0	0
03081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	0	0	0
0308191000	냉동한 것	0	0	0	0
0308192000	건조한 것	0	0	0	0
0308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8194000	훈제한 것	0	0	0	0
0308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	0	0	0
0308292000	건조한 것	0	0	0	0
0308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8294000	훈제한 것	0	0	0	0
030830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	0	0	0
0308303000	건조한 것	0	0	0	0
03083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8305000	훈제한 것	0	0	0	0
0308901011	종묘(種苗)	0	0	0	0
0308901019	기타	0	0	0	0
0308901090	기타	0	0	0	0
0308902010	우렁쉥이(멍게)	0	0	0	0
0308903010	우렁쉥이(멍게)	0	0	0	0
0308903090	기타	0	0	0	0
03089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8905000	훈제한 것	0	0	0	0
0403903000	케피어(kephir)	0	0	0	0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	0	0	0
0408110000	건조한 것	0	0	0	0
0408190000	기타	0	0	0	0
0410001000	거북알	0	0	0	0
0410002000	칼새둥지	0	0	0	0
0410003000	로열젤리	0	0	0	0
0410009000	기타	0	0	0	0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 웨이스트(waste)	0	0	0	0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0502902000	염소털	0	0	0	0
0502909000	기타	0	0	0	0
0504001010	소의 것	0	0	0	0
0504001090	기타	0	0	0	0
0504002000	방광	0	0	0	0
0504003000	위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505100000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0	0	0	0
0505901000	깃털 가루	0	0	0	0
0505909000	기타	0	0	0	0
0506100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506901010	호랑이의 것	0	0	0	0
0506901020	소의 것	0	0	0	0
0506901090	기타	0	0	0	0
0506909000	기타	0	0	0	0
0507101000	상아	0	0	0	0
0507102000	서각	0	0	0	0
0507109000	기타	0	0	0	0
0507902010	귀갑(龜甲)과 귀판(龜板)	0	0	0	0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0	0	0	0
0507902030	천산갑(穿山甲)	0	0	0	0
0507902040	발굽과 발톱	0	0	0	0
0507902090	기타	0	0	0	0
0508001000	산호	0	0	0	0
0508002010	진주패각	0	0	0	0
0508002020	청패각(전복)	0	0	0	0
0508002030	첩패각과 지첩패각	0	0	0	0
0508002040	야광패각(소라)	0	0	0	0
0508002050	트로커스(Trocus) 패각	0	0	0	0
0508002060	아고야(Agoya) 패각	0	0	0	0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이아스네보사(Megalonaiasnervosa), 앰브레마프리카타(Amblemaplicata), 콰드루라 콰드루라 (Quadrula quadrula)종]	0	0	0	0
0508002090	기타	0	0	0	0
0508009000	기타	0	0	0	0
0510001000	용연향(ambergris)	0	0	0	0
0510002000	해리향(castoreum)	0	0	0	0
0510003000	사향	0	0	0	0
0510004000	우황	0	0	0	0
0510005000	오령지	0	0	0	0
0510009010	췌장	0	0	0	0
0510009020	담즙	0	0	0	0
0510009030	합개(蛤蚧)	0	0	0	0
0510009090	기타	0	0	0	0
0511100000	소의 정액	0	0	0	0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brine shrimp) 알	0	0	0	0
0511911090	기타	0	0	0	0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0511919000	기타	0	0	0	0
0511991000	동물의 피	0	0	0	0
0511992010	돼지의 정액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511992090	기타	0	0	0	0
0511993010	소의 것	0	0	0	0
0511993020	돼지의 것	0	0	0	0
0511993090	기타	0	0	0	0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0	0	0	0
0511995011	정돈한 것	0	0	0	0
0511995019	기타	0	0	0	0
0511995020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0	0	0	0
0511999010	잠종(蠶種)	0	0	0	0
0511999020	누에번데기	0	0	0	0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 3 류 물품의 사제는 제외한다)	0	0	0	0
0511999040	원피의 페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0	0	0	0
0511999090	기타	0	0	0	0
0601101000	튤립의 것	0	0	0	0
0601102000	백합의 것	0	0	0	0
0601103000	달리아의 것	0	0	0	0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0	0	0	0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0	0	0	0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0	0	0	0
0601107000	프리지어의 것	0	0	0	0
0601108000	수선화의 것	0	0	0	0
0601109000	기타	0	0	0	0
0601201000	튤립의 것	0	0	0	0
0601202000	백합의 것	0	0	0	0
0601203000	달리아의 것	0	0	0	0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0	0	0	0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0	0	0	0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0	0	0	0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0	0	0	0
0601208000	프리지어의 것	0	0	0	0
0601209010	수선화의 것	0	0	0	0
0601209090	기타	0	0	0	0
0602101000	과일나무의 것	0	0	0	0
0602201000	사과나무	0	0	0	0
0602202000	배나무	0	0	0	0
0602203000	복숭아나무	0	0	0	0
0602204000	포도나무	0	0	0	0
0602205000	감나무	0	0	0	0
0602206000	귤나무	0	0	0	0
0602207010	밤나무	0	0	0	0
0602207020	호두나무	0	0	0	0
0602207030	잣나무	0	0	0	0
06022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0602901010	난초	0	0	0	0
0602901020	카네이션	0	0	0	0
0602901030	구즈마니아	0	0	0	0
0602901040	안개초	0	0	0	0
0602901050	국화	0	0	0	0
0602901060	선인장류	0	0	0	0
0602902011	분재용	0	0	0	0
0602902019	기타	0	0	0	0
0602902020	낙엽송	0	0	0	0
0602902030	삼나무	0	0	0	0
0602902040	편백	0	0	0	0
0602902050	리기테다	0	0	0	0
0602902061	분재용	0	0	0	0
0602902069	기타	0	0	0	0
0602902071	분재용	0	0	0	0
0602902079	기타	0	0	0	0
0602902081	분재용	0	0	0	0
0602902089	기타	0	0	0	0
0602902091	분재용	0	0	0	0
0602902099	기타	0	0	0	0
0602909010	목단	0	0	0	0
0602909020	동백	0	0	0	0
0602909030	뽕나무	0	0	0	0
0602909040	버섯의 종균(種菌)	0	0	0	0
0603191000	튤립	0	0	0	0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0	0	0	0
0604201000	이끼와 지의(地衣)	0	0	0	0
0604202010	은행잎	0	0	0	0
0604202090	기타	0	0	0	0
0604209000	기타	0	0	0	0
0604901000	이끼와 지의(地衣)	0	0	0	0
0604909000	기타	0	0	0	0
0703102000	쪽파	0	0	0	0
0703901000	리크(leek)	0	0	0	0
0703909000	기타	0	0	0	0
0704901000	양배추	0	0	0	0
0704902000	배추	0	0	0	0
0704909000	기타	0	0	0	0
0705110000	결구(結球) 상추	0	0	0	0
0705190000	기타	0	0	0	0
07052100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705290000	기타	0	0	0	0
0706101000	당근	0	0	0	0
0706102000	순무	0	0	0	0
0706901000	무	0	0	0	0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0	0	0	0
0706903000	더덕	0	0	0	0
0706904000	도라지	0	0	0	0
0706909000	기타	0	0	0	0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0	0	0
0708200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0	0	0	0
0708900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0	0	0	0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0	0	0	0
070940000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0	0	0	0
0709519000	기타	0	0	0	0
0709591000	송이버섯	0	0	0	0
0709593000	영지버섯	0	0	0	0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0	0	0	0
0709594090	기타	0	0	0	0
0709595000	팽이버섯	0	0	0	0
0709596000	송로(松露)	0	0	0	0
0709599000	기타	0	0	0	0
0709700000	시금치류	0	0	0	0
0709910000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0	0	0	0
0709920000	올리브	0	0	0	0
0709991000	고사리	0	0	0	0
0709992000	고비	0	0	0	0
0709999000	기타				
	- 기타	0	0	0	0
0710100000	감자	0	0	0	0
071021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0	0	0
0710220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0	0	0	0
0710290000	기타	0	0	0	0
0710300000	시금치류	0	0	0	0
0710400000	스위트콘	0	0	0	0
0710803000	죽순	0	0	0	0
0710804000	당근	0	0	0	0
0710805000	고사리	0	0	0	0
0710806000	송이버섯	0	0	0	0
0710809000	기타	0	0	0	0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0	0	0	0
0711200000	올리브	0	0	0	0
0711400000	오이류	0	0	0	0
07115100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711591000	송로(松露)	0	0	0	0
0711599000	기타	0	0	0	0
0711903000	죽순	0	0	0	0
0711904000	당근	0	0	0	0
0711905010	고사리	0	0	0	0
0711905020	고비	0	0	0	0
0711905099	기타	0	0	0	0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0	0	0	0
0712311000	양송이 버섯	0	0	0	0
0712319000	기타	0	0	0	0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0	0	0	0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0	0	0	0
0712391010	송이버섯	0	0	0	0
0712391030	영지버섯	0	0	0	0
0712391040	느타리버섯	0	0	0	0
0712391050	팽이버섯	0	0	0	0
0712391090	기타	0	0	0	0
0712392000	송로(松露)	0	0	0	0
0712902020	무	0	0	0	0
0712902060	양배추	0	0	0	0
0712902080	고구마줄기	0	0	0	0
0712902093	감자	0	0	0	0
0712902094	고비	0	0	0	0
0712902095	더덕	0	0	0	0
0712902099	기타	0	0	0	0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0	0	0	0
0713101000	종자용	0	0	0	0
0713102000	사료용	0	0	0	0
0713109000	기타	0	0	0	0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0	0	0	0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0	0	0	0
071360000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0	0	0	0
0713900000	기타	0	0	0	0
0801110000	말린 것	0	0	0	0
08011200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1190000	기타	0	0	0	0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5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25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6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26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70000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0	0	0	0
0802800000	빈랑자(areca nut)	0	0	0	0
0802902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2902020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909000	기타	0	0	0	0
0804200000	무화과	0	0	0	0
0804400000	아보카도(avocado)	0	0	0	0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0	0	0	0
0805502010	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	0	0	0	0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0	0	0	0
0807110000	수박	0	0	0	0
0808400000	마르멜로(quince)	0	0	0	0
0809100000	살구	0	0	0	0
0809401000	자두	0	0	0	0
0810200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loganberry)	0	0	0	0
0810300000	흑색・백색이나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0	0	0	0
081040000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0	0	0	0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이나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0	0	0	0
0812909000	기타	0	0	0	0
0813100000	살구	0	0	0	0
0813200000	프룬(prune)	0	0	0	0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0	0	0	0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	0	0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0	0	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	0	0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0	0	0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0	0	0	0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0	0	0	0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0	0	0	0
0903000000	마테(maté)	0	0	0	0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5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905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6110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라니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0	0	0	0
0906191000	계피[신나모멈 제이라니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을 제외한다]	0	0	0	0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0	0	0	0
0906201000	계피	0	0	0	0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0	0	0	0
0907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7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8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8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8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8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9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9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9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9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961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0	0	0	0
090961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0	0	0	0
090961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	0	0	0
090962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0	0	0	0
090962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0	0	0	0
090962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	0	0	0
0910200000	사프란(saffron)	0	0	0	0
0910300000	심황[강황(薑黃)]	0	0	0	0
0910911000	카레	0	0	0	0
0910919000	기타	0	0	0	0
0910991000	타임, 월계수의 잎	0	0	0	0
0910999000	기타	0	0	0	0
1001110000	종자	0	0	0	0
1001190000	기타	0	0	0	0
1001911000	메슬린(meslin)	0	0	0	0
1001919000	기타	0	0	0	0
1001991010	메슬린(meslin)	0	0	0	0
1001991090	기타	0	0	0	0
1001992010	메슬린(meslin)	0	0	0	0
1001992090	기타	0	0	0	0
1001999010	메슬린(meslin)	0	0	0	0
1001999090	기타	0	0	0	0
1002100000	종자	0	0	0	0
1002900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004100000	종자	0	0	0	0
1004900000	기타	0	0	0	0
1005100000	종자용	0	0	0	0
1005901000	사료용	0	0	0	0
1007100000	종자	0	0	0	0
1007900000	기타	0	0	0	0
1008211000	조	0	0	0	0
1008219000	기타	0	0	0	0
1008291000	조	0	0	0	0
1008299000	기타	0	0	0	0
1008300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0	0	0	0
1101001000	밀가루	0	0	0	0
1101002000	메슬린(meslin) 가루	0	0	0	0
1102200000	옥수수가루	0	0	0	0
1102903000	호밀가루	0	0	0	0
1104309000	기타	0	0	0	0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107209000	기타	0	0	0	0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0	0	0	0
1203000000	코프라(copra)	0	0	0	0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0	0
1205109000	기타	0	0	0	0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0	0	0	0
1205909000	기타	0	0	0	0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20710000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0	0	0	0
1207210000	종자	0	0	0	0
1207291000	사료용	0	0	0	0
1207299000	기타	0	0	0	0
1207300000	피마자	0	0	0	0
1207500000	겨자씨	0	0	0	0
1207600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0	0	0	0
1207700000	멜론 종자	0	0	0	0
1207910000	양귀비씨	0	0	0	0
1207992000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0	0	0	0
1207999000	기타	0	0	0	0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0	0	0	0
1208900000	기타	0	0	0	0
1209100000	사탕무 종자	0	0	0	0
12092100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0	0	0	0
1209230000	페스큐(fescue) 종자	0	0	0	0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0	0	0
1209250000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	0	0	0
1209291000	루핀(lupine) 종자	0	0	0	0
1209292000	수단그래스(Sudan grass) 종자	0	0	0	0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orchard grass) 종자	0	0	0	0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timothy grass) 종자	0	0	0	0
1209299000	기타	0	0	0	0
1209300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0	0	0
1209911010	양파 종자	0	0	0	0
1209911090	기타	0	0	0	0
1209912000	무 종자	0	0	0	0
1209913000	고추나 단고추류의 종자[카프시쿰 아눔 (Capsicum annuum)]	0	0	0	0
1209914000	양배추 종자	0	0	0	0
1209915000	토마토 종자	0	0	0	0
1209919000	기타	0	0	0	0
1209991010	참나무 종자	0	0	0	0
1209991090	기타	0	0	0	0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0	0	0	0
1209993000	담배 종자	0	0	0	0
1209994000	잔디 종자	0	0	0	0
1209999000	기타	0	0	0	0
1210100000	홉(hop)[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 모양 또는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0	0	0	0
1210201000	홉(hop)	0	0	0	0
1210202000	루플린(lupulin)	0	0	0	0
1211202110	가루	0	0	0	0
1211202190	기타	0	0	0	0
1211300000	코카잎	0	0	0	0
1211400000	양귀비줄기	0	0	0	0
1211901000	부자(附子)	0	0	0	0
1211902000	황련(黃連)	0	0	0	0
1211903000	원지(遠志)	0	0	0	0
1211904000	패모(貝母)	0	0	0	0
1211905000	두충(杜沖)	0	0	0	0
1211906000	감초	0	0	0	0
1211909010	사인(砂仁)	0	0	0	0
1211909020	산조인(酸棗仁)	0	0	0	0
1211909030	사군자(使君子)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211909040	용안육(龍眼肉)	0	0	0	0
1211909050	산사자(山査子)	0	0	0	0
1211909060	연자육(蓮子肉)	0	0	0	0
1211909070	박하	0	0	0	0
1211909080	초피(椒皮)	0	0	0	0
1211909091	건조한 도라지	0	0	0	0
1211909092	구기자	0	0	0	0
1211909093	오미자	0	0	0	0
1211909099	기타	0	0	0	0
1212211020	냉장한 것	0	0	0	0
1212211030	냉동한 것	0	0	0	0
1212211090	기타	0	0	0	0
1212212030	냉장한 것	0	0	0	0
1212212040	냉동한 것	0	0	0	0
1212212090	기타	0	0	0	0
1212213020	냉장한 것	0	0	0	0
1212213030	냉동한 것	0	0	0	0
1212213090	기타	0	0	0	0
1212214010	신선한 것	0	0	0	0
1212214020	냉장한 것	0	0	0	0
1212214030	냉동한 것	0	0	0	0
1212214090	기타	0	0	0	0
1212215020	냉장한 것	0	0	0	0
1212215030	냉동한 것	0	0	0	0
1212216010	냉동한 것	0	0	0	0
1212216090	기타	0	0	0	0
1212217011	냉동한 것	0	0	0	0
1212217019	기타	0	0	0	0
1212217021	냉동한 것	0	0	0	0
1212217029	기타	0	0	0	0
1212217031	냉동한 것	0	0	0	0
1212217039	기타	0	0	0	0
1212218011	냉동한 것	0	0	0	0
1212218019	기타	0	0	0	0
1212218021	냉동한 것	0	0	0	0
1212218029	기타	0	0	0	0
1212218031	냉동한 것	0	0	0	0
1212218039	기타	0	0	0	0
1212219011	냉동한 것	0	0	0	0
1212219019	기타	0	0	0	0
1212219091	냉동한 것	0	0	0	0
1212291010	냉동한 것	0	0	0	0
1212291090	기타				
	-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212292010	냉동한 것	0	0	0	0
1212292090	기타				
	- 기타	0	0	0	0
1212293010	냉동한 것	0	0	0	0
1212293090	기타				
	- 기타	0	0	0	0
1212294010	냉동한 것	0	0	0	0
1212294090	기타	0	0	0	0
1212295010	냉동한 것	0	0	0	0
1212295090	기타				
	- 냉장한 것	0	0	0	0
1212296010	냉동한 것	0	0	0	0
1212296090	기타	0	0	0	0
1212297011	냉동한 것	0	0	0	0
1212297019	기타	0	0	0	0
1212297021	냉동한 것	0	0	0	0
1212297029	기타	0	0	0	0
1212297031	냉동한 것	0	0	0	0
1212297039	기타	0	0	0	0
1212298011	냉동한 것	0	0	0	0
1212298019	기타	0	0	0	0
1212298021	냉동한 것	0	0	0	0
1212298029	기타	0	0	0	0
1212298031	냉동한 것	0	0	0	0
1212298039	기타	0	0	0	0
1212299011	냉동한 것	0	0	0	0
1212299019	기타	0	0	0	0
1212299091	냉동한 것	0	0	0	0
1212910000	사탕무	0	0	0	0
12129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0	0	0	0
1212930000	사탕수수	0	0	0	0
1212940000	치커리(chicory) 뿌리	0	0	0	0
1212992000	구약구(kuyaku) 뿌리	0	0	0	0
1212993000	꽃가루	0	0	0	0
1212996000	살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또는 자두의 핵(核)	0	0	0	0
1212999000	기타	0	0	0	0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1214101000	사료용	0	0	0	0
1214109000	기타	0	0	0	0
1214909011	사료용	0	0	0	0
1214909019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301200000	아라비아 검	0	0	0	0
1301901000	올레오레진(oleoresin)	0	0	0	0
1301902010	쉘락(shellac)	0	0	0	0
1301902090	기타	0	0	0	0
1302110000	아편	0	0	0	0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0	0	0	0
1302130000	홉(hop)으로 만든 것	0	0	0	0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0	0	0	0
1302191190	기타	0	0	0	0
1302192000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	0	0	0	0
1302193000	생칠(生漆)	0	0	0	0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0	0	0	0
1302199020	콜라 추출물(extract)	0	0	0	0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0	0	0	0
1302199099	기타	0	0	0	0
1302200000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0	0	0	0
1302311000	실 한천	0	0	0	0
1302312000	가루 한천	0	0	0	0
1302319000	기타	0	0	0	0
13023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302390000	기타	0	0	0	0
1401201000	쪼개거나 뽑아서 늘린 것	0	0	0	0
1401209000	기타	0	0	0	0
1401901000	칡줄기껍질	0	0	0	0
1401909000	기타	0	0	0	0
1404200000	면(綿) 린터(linter)	0	0	0	0
1404901000	조각용 종자・껍질 및 너트(예: 상아야자)	0	0	0	0
1404902010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0	0	0	0
1404902020	삼지닥나무(edgeworthia papyriferu) 껍질	0	0	0	0
1404902090	기타	0	0	0	0
1404903010	떡갈잎	0	0	0	0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0	0	0	0
1404903090	기타	0	0	0	0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kapok)・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404905000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piassava)・카우치 그라스(couch-grass) 및 이스틸리(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1404906010	오배자(五倍子)	0	0	0	0
1404906020	아몬드 헐(almond hull)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404906090	기타	0	0	0	0
1404909000	기타	0	0	0	0
15011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0	0	0	0
1501109000	기타	0	0	0	0
15012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0	0	0	0
1501209000	기타	0	0	0	0
1501900000	기타	0	0	0	0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0	0	0	0
1502101090	기타	0	0	0	0
1502109000	기타	0	0	0	0
15029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0	0	0	0
1502901090	기타	0	0	0	0
1502909000	기타	0	0	0	0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0	0	0	0
1503009000	기타	0	0	0	0
1504101000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0	0	0	0
1504109000	기타	0	0	0	0
150420000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0	0	0	0
1504301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0	0	0	0
1504309000	기타	0	0	0	0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0	0	0	0
1505009000	기타	0	0	0	0
1506001000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0	0	0	0
1506009000	기타	0	0	0	0
1507101000	식품용	0	0	0	0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	0	0	0	0
1507109000	기타	0	0	0	0
1508100000	조유(粗油)	0	0	0	0
1508901000	정제유(精製油)	0	0	0	0
1508909000	기타	0	0	0	0
1509100000	버진(virgin)	0	0	0	0
1509900000	기타	0	0	0	0
15100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1511100000	조유(粗油)	0	0	0	0
1511901000	팜 올레인(palm olein)	0	0	0	0
151190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0	0	0	0
1511909000	기타	0	0	0	0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0	0	0	0
1512112000	잇꽃유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0	0	0	0
1512191020	잇꽃유	0	0	0	0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0	0	0	0
1512199020	잇꽃유	0	0	0	0
151221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512291000	정제유(精製油)	0	0	0	0
1512299000	기타	0	0	0	0
1513110000	조유(粗油)	0	0	0	0
1513191000	정제유(精製油)	0	0	0	0
1513199000	기타	0	0	0	0
1513211000	팜핵유(palm kernel oil)	0	0	0	0
1513212000	바바수유(babassu oil)	0	0	0	0
1513291010	팜핵유(palm kernel oil)	0	0	0	0
1513291020	바바수유(babassu oil)	0	0	0	0
1513299000	기타	0	0	0	0
1514110000	조유(粗油)	0	0	0	0
151491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0	0	0	0
1514912000	겨자유	0	0	0	0
1515110000	조유(粗油)	0	0	0	0
1515190000	기타	0	0	0	0
1515210000	조유(粗油)	0	0	0	0
1515290000	기타	0	0	0	0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0	0	0	0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0	0	0	0
1515909030	호호바유(jojoba oil)와 그 분획물	0	0	0	0
1515909040	동유(tung oil)와 그 분획물	0	0	0	0
1515909090	기타	0	0	0	0
1516101000	우지(牛脂)와 그 분획물	0	0	0	0
1516102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0	0	0	0
1516109000	기타	0	0	0	0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0	0	0	0
151620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0	0	0	0
1516202010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0	0	0	0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0	0	0	0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0	0	0	0
151620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0	0	0	0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0	0	0	0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0	0	0	0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0	0	0	0
1517902000	쇼트닝	0	0	0	0
1517909000	기타	0	0	0	0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0	0	0	0
1518002000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	0	0	0	0
1518009010	사료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518009090	기타	0	0	0	0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및 글리세롤 폐액(廢液)	0	0	0	0
1521101000	카나버 왁스	0	0	0	0
1521102000	팜왁스	0	0	0	0
1521109000	기타	0	0	0	0
1521901000	경납(鯨蠟)	0	0	0	0
1521902000	밀랍(蜜蠟)	0	0	0	0
1521909000	기타	0	0	0	0
1522001010	천연의 것	0	0	0	0
1522001090	기타	0	0	0	0
1522009000	기타	0	0	0	0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2209000	기타	0	0	0	0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2319000	기타	0	0	0	0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2909000	기타	0	0	0	0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0	0	0	0
1603004000	어류의 즙	0	0	0	0
1603009000	기타	0	0	0	0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19000	기타	0	0	0	0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29000	기타	0	0	0	0
1604139000	기타	0	0	0	0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59000	기타	0	0	0	0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69000	기타	0	0	0	0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91010	꽁치	0	0	0	0
1604191020	전갱이	0	0	0	0
1604191090	기타	0	0	0	0
1604199010	쥐치포	0	0	0	0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paste)	0	0	0	0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marinade)	0	0	0	0
1604203000	생선소시지	0	0	0	0
1604310000	캐비아	0	0	0	0
1604320000	캐비아 대용물	0	0	0	0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101091	붉은대게살	0	0	0	0
1605101099	기타	0	0	0	0
16051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605211000	빵가루를 입힌 것	0	0	0	0
1605290000	기타	0	0	0	0
16053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309000	기타	0	0	0	0
16054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409000	기타	0	0	0	0
16055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39000	기타	0	0	0	0
160554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4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6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6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6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8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9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91090	기타	0	0	0	0
1605592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59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6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619000	기타	0	0	0	0
16056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6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6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701121000	당도(糖度)가 98.5 도 이하인 것	0	0	0	0
1701122000	당도(糖度)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0	0	0	0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0	0	0	0
1701141000	당도(糖度)가 98.5 도 이하인 것	0	0	0	0
1701142000	당도(糖度)가 98.5 도를 초과하는 것	0	0	0	0
1702111000	유당(乳糖)	0	0	0	0
1702119000	유당(乳糖)시럽	0	0	0	0
1702191000	유당(乳糖)	0	0	0	0
1702199000	유당(乳糖)시럽	0	0	0	0
1702201000	단풍당	0	0	0	0
1702202000	단풍당시럽	0	0	0	0
1702302000	포도당시럽	0	0	0	0
1702402000	포도당시럽	0	0	0	0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0	0	0	0
1702602000	과당시럽	0	0	0	0
1703101000	주정 제조용	0	0	0	0
17031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703901000	주정 제조용	0	0	0	0
1703909000	기타	0	0	0	0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0	0	0	0
1704902010	드롭스(drops)	0	0	0	0
1704902020	캐러멜	0	0	0	0
1704902090	기타	0	0	0	0
1704909000	기타	0	0	0	0
1801001000	생 것	0	0	0	0
1801002000	볶은 것	0	0	0	0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0	0	0	0
1802009000	기타	0	0	0	0
1803100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0	0	0	0
180320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0	0	0	0
180400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0	0	0	0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0	0	0	0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806209090	기타	0	0	0	0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0	0	0	0
1806319000	기타	0	0	0	0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0	0	0	0
1806329000	기타	0	0	0	0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0	0	0	0
1806902111	조제 분유의 것	0	0	0	0
1806902119	기타	0	0	0	0
1806902191	오트밀의 것	0	0	0	0
1806902199	기타	0	0	0	0
1806902210	보릿가루의 것	0	0	0	0
1806902920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의 것	0	0	0	0
1806902991	오트밀의 것	0	0	0	0
1806902992	보릿가루의 것	0	0	0	0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의 것	0	0	0	0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806909090	기타	0	0	0	0
1901109010	오트밀의 것	0	0	0	0
1901109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901202000	보릿가루의 것	0	0	0	0
1901909010	오트밀	0	0	0	0
1901909092	보릿가루의 것	0	0	0	0
1902111000	스파게티	0	0	0	0
1902112000	마카로니	0	0	0	0
1902119000	기타	0	0	0	0
1902193000	냉면	0	0	0	0
1902199000	기타	0	0	0	0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1902301010	라면	0	0	0	0
1902301090	기타	0	0	0	0
1902309000	기타	0	0	0	0
1902400000	쿠스쿠스(couscous)	0	0	0	0
1903001000	타피오카	0	0	0	0
1903009000	기타	0	0	0	0
1904101000	콘 플레이크(corn flake)	0	0	0	0
1904102000	콘 칩	0	0	0	0
1904103000	튀긴 쌀	0	0	0	0
1904300000	불거 밀(bulgur wheat)	0	0	0	0
1905100000	귀리빵	0	0	0	0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0	0	0	0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0	0	0	0
1905400000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0	0	0	0
1905901010	빵	0	0	0	0
1905901020	건빵	0	0	0	0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0	0	0	0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0	0	0	0
1905901090	기타	0	0	0	0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0	0	0	0
1905909090	기타	0	0	0	0
2001100000	오이류	0	0	0	0
2001909010	쪽파	0	0	0	0
2001909020	토마토	0	0	0	0
2001909030	꽃양배추	0	0	0	0
2001909050	염교(rakkyo)	0	0	0	0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0	0	0	0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 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002909000	기타	0	0	0	0
2003104000	양송이 버섯	0	0	0	0
2003109000	기타	0	0	0	0
2003901000	표고버섯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003902000	송이버섯	0	0	0	0
2003903000	송로(松露)	0	0	0	0
2003909000	기타	0	0	0	0
2004901000	스위트콘	0	0	0	0
2004909000	기타	0	0	0	0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	0	0	0	0
2005109000	기타	0	0	0	0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0	0	0	0
2005209000	기타	0	0	0	0
20054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0	0	0
2005511000	녹두	0	0	0	0
2005512000	팥	0	0	0	0
2005519000	기타	0	0	0	0
2005591000	녹두	0	0	0	0
2005592000	팥	0	0	0	0
2005599000	기타	0	0	0	0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	0	0	0
2005700000	올리브	0	0	0	0
2005910000	죽순	0	0	0	0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0	0	0	0
2005999000	기타	0	0	0	0
2006004000	연 뿌리	0	0	0	0
2006005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0	0	0
2006006010	껍질을 제거한 콩	0	0	0	0
2006006090	기타	0	0	0	0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	0	0	0
2006008000	올리브	0	0	0	0
200600901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0	0	0	0
2006009020	죽순	0	0	0	0
2006009030	그 밖의 채소의 것	0	0	0	0
2006009090	기타	0	0	0	0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0	0	0	0
2007919000	기타	0	0	0	0
2007999000	기타	0	0	0	0
2008111000	피넛 버터	0	0	0	0
2008191000	밤	0	0	0	0
2008192000	코코넛	0	0	0	0
2008199000	기타	0	0	0	0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2008709000	기타	0	0	0	0
2008910000	팜 하트(palm heart)	0	0	0	0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	0	0	0
2009290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009391000	레몬주스	0	0	0	0
2009500000	토마토주스	0	0	0	0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	0	0	0
2009790000	기타	0	0	0	0
2009891020	딸기주스	0	0	0	0
2009892000	채소 주스	0	0	0	0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2009901090	기타	0	0	0	0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0	0	0	0
2009909000	기타	0	0	0	0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0	0	0	0
2101119000	기타	0	0	0	0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0	0	0	0
2101129010	밀크・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0	0	0	0
2101129090	기타	0	0	0	0
2101301000	보리로 만든 것	0	0	0	0
2101309000	기타	0	0	0	0
2102101000	양조효모	0	0	0	0
2102102000	증류효모	0	0	0	0
2102103000	제빵효모	0	0	0	0
2102104000	배양효모	0	0	0	0
2102109000	기타	0	0	0	0
2102201000	불활성 효모	0	0	0	0
2102202000	누룩	0	0	0	0
2102203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0	0	0	0
2102203090	기타	0	0	0	0
2102204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0	0	0	0
2102204090	기타	0	0	0	0
2102209000	기타	0	0	0	0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0	0	0	0
2103201000	토마토 케찹	0	0	0	0
2103202000	토마토 소스	0	0	0	0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0	0	0	0
2103302000	조제한 겨자	0	0	0	0
2103901090	기타	0	0	0	0
2103909010	마요네스	0	0	0	0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0	0	0	0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0	0	0	0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0	0	0	0
2104103000	채소로 만든 것	0	0	0	0
2104109000	기타	0	0	0	0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105001090	기타	0	0	0	0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0	0	0	0
2105009090	기타	0	0	0	0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0	0	0	0
2106109030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0	0	0	0
2106901010	콜라 베이스	0	0	0	0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0	0	0	0
2106901090	기타	0	0	0	0
210690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106903011	인삼차	0	0	0	0
2106903019	기타	0	0	0	0
2106904090	기타	0	0	0	0
2106909010	커피크리머	0	0	0	0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0	0	0	0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0	0	0	0
2106909060	도토리 가루	0	0	0	0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의 것[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106909091	로열젤리와 벌꿀조제품	0	0	0	0
2106909099	기타	0	0	0	0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	0	0	0	0
2201901000	얼음과 눈	0	0	0	0
2201909000	기타	0	0	0	0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0	0	0	0
2202109000	기타	0	0	0	0
2202903000	식혜	0	0	0	0
2202909000	기타	0	0	0	0
220410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0	0	0	0
2204211000	붉은 포도주	0	0	0	0
2204212000	흰 포도주	0	0	0	0
2204219000	기타	0	0	0	0
2204291000	붉은 포도주	0	0	0	0
2204292000	흰 포도주	0	0	0	0
2204299000	기타	0	0	0	0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0	0	0	0
220510000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0	0	0	0
2205900000	기타	0	0	0	0
2206001010	사과주	0	0	0	0
2206001020	배술	0	0	0	0
2206001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206002010	청주	0	0	0	0
2206002020	약주	0	0	0	0
2206002030	탁주	0	0	0	0
2206009010	와인쿨러(제 2009 호나 제 2202 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2206009090	기타	0	0	0	0
2207109090	기타	0	0	0	0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0	0	0	0
2208302000	버본 위스키	0	0	0	0
2208303000	라이(rye) 위스키	0	0	0	0
2208701000	인삼주	0	0	0	0
2208702000	오가피주	0	0	0	0
2208904000	소주	0	0	0	0
2208906000	고량주	0	0	0	0
2208907000	데낄라	0	0	0	0
2209001000	양조식초	0	0	0	0
2209009000	기타	0	0	0	0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0	0	0	0
2301102000	수지박(greaves)	0	0	0	0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0	0	0	0
2302100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0	0	0	0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0	0	0	0
2302401000	쌀에서 나온 것	0	0	0	0
2302409000	기타	0	0	0	0
2302500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0	0	0	0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0	0	0	0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0	0	0	0
2303301000	사료용	0	0	0	0
2303309000	기타	0	0	0	0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생기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410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490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30650000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60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909000	기타	0	0	0	0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0	0	0	0
2308001000	도토리	0	0	0	0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0	0	0	0
2308003000	목화씨 껍질	0	0	0	0
2309101000	개사료	0	0	0	0
2309102000	고양이 사료	0	0	0	0
2309901010	양돈용	0	0	0	0
2309901020	양계용	0	0	0	0
2309901030	어류용	0	0	0	0
2309901040	축우용	0	0	0	0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0	0	0	0
2309901099	기타	0	0	0	0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0	0	0	0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0	0	0	0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0	0	0	0
2309903030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0	0	0	0
2309903090	기타	0	0	0	0
2401101000	황색종(種)	0	0	0	0
2401102000	버어리(burley)종(種)	0	0	0	0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0	0	0	0
2401109000	기타	0	0	0	0
2401201000	황색종(種)	0	0	0	0
2401202000	버어리(burley)종(種)	0	0	0	0
2401203000	오리엔트종(種)	0	0	0	0
2401209000	기타	0	0	0	0
2401301000	잎의 주맥(主脈)	0	0	0	0
2401302000	잎 부스러기	0	0	0	0
2401309000	기타	0	0	0	0
2402101000	시가(cigar)	0	0	0	0
2402102000	셔루트(cheroot)	0	0	0	0
2402103000	시가릴로(cigarillo)	0	0	0	0
2402201000	필터담배	0	0	0	0
2402209000	기타	0	0	0	0
2402900000	기타	0	0	0	0
2403110000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0	0	0	0
2403191000	파이프 담배	0	0	0	0
240319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403911000	판상엽(板狀葉)	0	0	0	0
2403919000	기타	0	0	0	0
2403991000	씹는 담배	0	0	0	0
2403992000	코 담배	0	0	0	0
2403993000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0	0	0	0
2403999000	기타	0	0	0	0
2501001010	암염(岩鹽)	0	0	0	0
2501001020	천일염	0	0	0	0
2501009010	식염	0	0	0	0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0	0	0	0
2501009090	기타	0	0	0	0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50300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0	0	0	0
2504101000	인상(鱗狀)흑연	0	0	0	0
2504102000	토상(土狀)흑연	0	0	0	0
2504109000	기타	0	0	0	0
2504901000	인상(鱗狀)흑연	0	0	0	0
2504902000	토상(土狀)흑연	0	0	0	0
2504909000	기타	0	0	0	0
2505100000	규사	0	0	0	0
2505901010	점토사	0	0	0	0
2505901020	장석사(長石砂)	0	0	0	0
2505901090	기타	0	0	0	0
2505909000	기타	0	0	0	0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0.06 미만인 것	0	0	0	0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0.06 이상이고 100 분의 0.1 이하인 것	0	0	0	0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 분의 0.1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250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0	0	0
2506209000	기타	0	0	0	0
2507001010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0	0	0	0
2507001090	기타	0	0	0	0
2507002010	와목점토(蛙目粘土)	0	0	0	0
2507002020	목절점토(木節粘土)	0	0	0	0
2507002090	기타	0	0	0	0
2507009000	기타	0	0	0	0
2508100000	벤토나이트(bentonite)	0	0	0	0
2508300000	내화(耐火)점토	0	0	0	0
2508401000	산성백토	0	0	0	0
2508402000	탈색토(奪色土)와 표포토(漂布土)	0	0	0	0
2508409000	기타	0	0	0	0
2508501000	홍주석(紅柱石)	0	0	0	0
2508502000	남정석(藍晶石)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508503000	규선석(硅線石)	0	0	0	0
2508600000	멀라이트(mullite)	0	0	0	0
2508701000	샤모트(chamotte)	0	0	0	0
2508702000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0	0	0	0
2509000000	초크	0	0	0	0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0	0	0	0
25101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0	0	0	0
2510109000	기타	0	0	0	0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0	0	0	0
25102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0	0	0	0
2510209000	기타	0	0	0	0
251110000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0	0	0	0
251120000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0	0	0	0
25120000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 및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513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석(빔스키)을 포함한다]	0	0	0	0
2513109000	기타	0	0	0	0
2513201010	금강사(金剛砂)	0	0	0	0
2513201020	천연 커런덤(corundum)	0	0	0	0
2513201030	천연 석류석	0	0	0	0
2513201090	기타	0	0	0	0
2513202010	금강사(金剛砂)	0	0	0	0
2513202020	천연 커런덤(corundum)	0	0	0	0
2513202030	천연 석류석	0	0	0	0
2513202090	기타	0	0	0	0
25140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0	0	0
2514009000	기타	0	0	0	0
2515111000	대리석	0	0	0	0
2515112000	트래버틴(travertine)	0	0	0	0
2515121000	대리석	0	0	0	0
2515122000	트래버틴(travertine)	0	0	0	0
251520000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碑石)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설화 석고(alabaster)	0	0	0	0
2516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0	0	0
2516120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	0	0	0
251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0	0	0
2516209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5169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0	0	0
2516909000	기타	0	0	0	0
2517101000	자갈	0	0	0	0
2517102000	쇄석(碎石)	0	0	0	0
2517109000	기타	0	0	0	0
251720000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에 언급된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51730000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0	0	0	0
25174100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0	0	0	0
2517491000	현무암으로 만든 것	0	0	0	0
2517492000	화강암으로 만든 것	0	0	0	0
2517499000	기타	0	0	0	0
2518100000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0	0	0	0
2518200000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0	0	0	0
251830000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0	0	0	0
2519100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0	0	0	0
2519901000	용융(溶融) 또는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0	0	0	0
2519902000	천연 산화마그네슘	0	0	0	0
2519909000	기타	0	0	0	0
2520101000	석고	0	0	0	0
2520102000	무수(無水)석고	0	0	0	0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0	0	0	0
2520209000	기타	0	0	0	0
2521001000	석회석	0	0	0	0
2521009000	기타	0	0	0	0
2522100000	생석회(生石灰)	0	0	0	0
2522200000	소석회(消石灰)	0	0	0	0
2522300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0	0	0	0
2523300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0	0	0	0
2523909000	기타	0	0	0	0
2524100000	청(靑)석면	0	0	0	0
2524901000	갈(褐)석면	0	0	0	0
2524902000	백(白)석면	0	0	0	0
2524909000	기타	0	0	0	0
2525100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0	0	0	0
2525200000	운모 가루	0	0	0	0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waste)	0	0	0	0
2526101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	0	0	0
25261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0	0	0	0
2528001000	천연 붕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528002000	붕산칼슘	0	0	0	0
2528003000	염화붕산마그네슘	0	0	0	0
2528004000	천연 붕산	0	0	0	0
2528009000	기타	0	0	0	0
2529100000	장석(長石)	0	0	0	0
2529211000	가루	0	0	0	0
2529219000	기타	0	0	0	0
2529221000	가루	0	0	0	0
2529229000	기타	0	0	0	0
2529301000	백류석(白榴石)	0	0	0	0
2529302000	하석(霞石)	0	0	0	0
2529303000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0	0	0	0
2530101000	질석(蛭石)	0	0	0	0
2530102000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	0	0	0	0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0	0	0	0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0	0	0	0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0	0	0	0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	0	0	0	0
2530904000	주사(朱沙)	0	0	0	0
2530905000	납석(蠟石)	0	0	0	0
2530906000	불석(沸石)	0	0	0	0
2530907000	명반석(明礬石)	0	0	0	0
2530908000	규회석(硅灰石)	0	0	0	0
2530909010	도석(陶石)	0	0	0	0
2530909020	견운모(絹雲母)	0	0	0	0
2530909030	어스컬러(earth colour)	0	0	0	0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0	0	0	0
2530909050	천연 빙정석(氷晶石)과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	0	0	0	0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0	0	0	0
2530909099	기타	0	0	0	0
2601111000	적(赤)철광	0	0	0	0
2601112000	자(磁)철광	0	0	0	0
2601119000	기타	0	0	0	0
2601121000	적(赤)철광	0	0	0	0
2601122000	자(磁)철광	0	0	0	0
2601129000	기타	0	0	0	0
2601200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0	0	0	0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0	0
260300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0700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1001000	흑중석(wolframite)	0	0	0	0
2611002000	회중석(scheelite)	0	0	0	0
2611009000	기타	0	0	0	0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3100000	배소(焙燒)한 것	0	0	0	0
2613900000	기타	0	0	0	0
2614001000	금홍석(rutile)	0	0	0	0
2614002000	예추석(anatase)	0	0	0	0
2614009000	기타	0	0	0	0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精鑛)[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0	0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7903000	베릴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7904000	비스무트(bismuth)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7909000	기타	0	0	0	0
261800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0	0	0	0
2619001010	용광로 슬래그(slag)	0	0	0	0
2619001090	기타	0	0	0	0
2619002000	드로스(dross)	0	0	0	0
2619003000	스케일링(scaling)	0	0	0	0
2619009000	기타	0	0	0	0
26201100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0	0	0	0
2620190000	기타	0	0	0	0
26202100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0	0	0	0
2620290000	기타	0	0	0	0
2620300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262060000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0	0	0	0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0	0	0	0
2620990000	기타	0	0	0	0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0	0	0	0
2621900000	기타	0	0	0	0
2701110000	무연탄	0	0	0	0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0	0	0	0
2701122000	그 밖의 코크스용 탄	0	0	0	0
2701129010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2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0	0	0	0
2701129090	기타	0	0	0	0
2701190000	그 밖의 석탄	0	0	0	0
2701201000	연탄	0	0	0	0
2701202000	조개탄(ovoid)	0	0	0	0
2701209000	기타	0	0	0	0
2702100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0	0	0	0
2702200000	응결시킨 갈탄	0	0	0	0
27030010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0	0	0	0
2703002000	응결시킨 것	0	0	0	0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0	0	0	0
2704001090	기타	0	0	0	0
2704002000	반성(半成) 코크스	0	0	0	0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0	0	0	0
270500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0	0	0	0
2706001000	콜타르(coal tar)	0	0	0	0
2706002000	갈탄 타르나 토탄 타르	0	0	0	0
2706009000	기타	0	0	0	0
2707100000	벤조올(벤젠)	0	0	0	0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0	0	0	0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0	0	0	0
2707400000	나프탈렌	0	0	0	0
27075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707910000	크레오소트(creosote)유	0	0	0	0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0	0	0	0
2707992000	안트라센(anthracene)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707993000	페놀(석탄산)	0	0	0	0
2707999000	기타	0	0	0	0
2708100000	피치(pitch)	0	0	0	0
2708200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0	0	0	0
270900101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796 을 초과하고 0.841 이하인 것	0	0	0	0
270900102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1 을 초과하고 0.847 이하인 것	0	0	0	0
270900103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47 을 초과하고 0.855 이하인 것	0	0	0	0
270900104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55 를 초과하고 0.869 이하인 것	0	0	0	0
270900105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69 를 초과하고 0.885 이하인 것	0	0	0	0
270900106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85 를 초과하고 0.899 이하인 것	0	0	0	0
270900107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899 를 초과하고 0.904 이하인 것	0	0	0	0
2709001080	섭씨 15 도에서 비중이 0.904 를 초과하고 0.966 이하인 것	0	0	0	0
2709001090	기타	0	0	0	0
2709002000	역청유(瀝青油)	0	0	0	0
2710122000	항공 휘발유	0	0	0	0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0	0	0	0
2710124000	나프타	0	0	0	0
2710125000	엔・지・엘(NGL)	0	0	0	0
2710191010	제트 연료유	0	0	0	0
2710192030	노르말 파라핀(normal paraffin)	0	0	0	0
2710196000	신전유(extender oil)	0	0	0	0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0	0	0	0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0	0	0	0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0	0	0	0
2710197210	실린더오일	0	0	0	0
2710197220	스핀들(spindle)오일	0	0	0	0
2710197230	기어오일	0	0	0	0
2710197240	터빈오일	0	0	0	0
2710197250	냉동기오일	0	0	0	0
2710197310	콤파운드오일	0	0	0	0
2710197320	유동파라핀	0	0	0	0
2710197330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0	0	0	0
2710197410	방청유(anti-corrosive oil)	0	0	0	0
2710197420	절삭유	0	0	0	0
2710197430	세척유	0	0	0	0
2710197440	주형이형유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0	0	0	0
2710197510	프로세스유	0	0	0	0
2710197520	전기전열유	0	0	0	0
2710197530	열처리유	0	0	0	0
2710197540	열매체유	0	0	0	0
2710197900	기타	0	0	0	0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0	0	0	0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0	0	0	0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0	0	0	0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0	0	0	0
2710198090	기타	0	0	0	0
2710199000	기타	0	0	0	0
2710201020	항공 휘발유	0	0	0	0
271020103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0	0	0	0
2710201040	나프타	0	0	0	0
2710201050	엔・지・엘(NGL)	0	0	0	0
2710209110	제트 연료유	0	0	0	0
2710209230	노르말 파라핀(normal paraffin)	0	0	0	0
2710209600	신전유(extender oil)	0	0	0	0
2710209711	항공기용 기관오일	0	0	0	0
2710209712	자동차용 기관오일	0	0	0	0
2710209713	선박용 기관오일	0	0	0	0
2710209721	실린더오일	0	0	0	0
2710209722	스핀들(spindle)오일	0	0	0	0
2710209723	기어오일	0	0	0	0
2710209724	터빈오일	0	0	0	0
2710209725	냉동기오일	0	0	0	0
2710209731	콤파운드오일	0	0	0	0
2710209732	유동파라핀	0	0	0	0
2710209733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0	0	0	0
2710209741	방청유	0	0	0	0
2710209742	절삭유	0	0	0	0
2710209743	세척유	0	0	0	0
2710209744	주형이형유	0	0	0	0
2710209745	유압브레이크유	0	0	0	0
2710209751	프로세스유	0	0	0	0
2710209752	전기전열유	0	0	0	0
2710209753	열처리유	0	0	0	0
2710209754	열매체유	0	0	0	0
2710209790	기타	0	0	0	0
27102098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0	0	0	0
2710209820	칼슘을 첨가한 것	0	0	0	0
27102098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0	0	0	0
2710209840	리튬을 첨가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710209890	기타	0	0	0	0
2710209900	기타	0	0	0	0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0	0	0	0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0	0	0
2710911090	기타	0	0	0	0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0	0	0	0
2710912090	기타	0	0	0	0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0	0	0	0
271091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 및 벙커시유의 것	0	0	0	0
2710914090	기타	0	0	0	0
271091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0	0	0	0
2710919000	기타	0	0	0	0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항공 휘발유 및 제트 연료유의 것	0	0	0	0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0	0	0	0
2710991090	기타	0	0	0	0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0	0	0	0
2710992090	기타	0	0	0	0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0	0	0	0
2710994010	경질(輕質)중유(벙커에이유)・중유(벙커비유) 및 벙커시유의 것	0	0	0	0
2710994090	기타	0	0	0	0
2710995000	조유(粗油)・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및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0	0	0	0
2710999000	기타	0	0	0	0
2711110000	천연가스	0	0	0	0
2711120000	프로판	0	0	0	0
2711130000	부탄	0	0	0	0
2711141000	에틸렌	0	0	0	0
2711142000	프로필렌	0	0	0	0
2711143000	부틸렌	0	0	0	0
2711144000	부타디엔	0	0	0	0
2711190000	기타	0	0	0	0
2711210000	천연가스	0	0	0	0
2711290000	기타	0	0	0	0
2712101000	바셀린	0	0	0	0
2712109000	기타	0	0	0	0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712901010	슬랙왁스와 스케일왁스	0	0	0	0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털린왁스	0	0	0	0
2712901090	기타	0	0	0	0
2712909010	몬탄왁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712909020	토탄왁스	0	0	0	0
2712909030	세레신왁스	0	0	0	0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0	0	0	0
2712909090	기타	0	0	0	0
2713110000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0	0	0	0
2713120000	하소(煆燒)한 것	0	0	0	0
2713200000	석유역청(瀝青)	0	0	0	0
2713900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0	0	0	0
2714100000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 또는 유모 혈암(油母 頁巖)과 타르샌드(tar sand)	0	0	0	0
2714901000	천연의 역청(瀝青)과 아스팔트	0	0	0	0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0	0	0	0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0	0	0	0
2715001000	컷백(cut-back)	0	0	0	0
2715002000	아스팔트・역청(瀝青)・피치(pitch) 또는 타르의 에멀션(emulsion)이나 안정분산액	0	0	0	0
2715003000	매스틱(mastic)	0	0	0	0
2715009000	기타	0	0	0	0
2716000000	전기에너지	0	0	0	0
2801100000	염소	0	0	0	0
2801200000	요드	0	0	0	0
2801301000	플루오르	0	0	0	0
2801302000	브롬	0	0	0	0
2802001000	승화황(昇華黃)	0	0	0	0
2802002000	침강황(沈降黃)	0	0	0	0
2802003000	콜로이드황	0	0	0	0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0	0	0	0
2803009011	이차전지 제조용	0	0	0	0
2803009019	기타	0	0	0	0
2803009090	기타	0	0	0	0
2804100000	수소	0	0	0	0
2804210000	아르곤	0	0	0	0
2804291000	헬륨	0	0	0	0
2804292000	네온	0	0	0	0
2804293000	크립톤	0	0	0	0
2804294000	크세논	0	0	0	0
2804299000	기타	0	0	0	0
2804300000	질소	0	0	0	0
2804400000	산소	0	0	0	0
2804501000	붕소	0	0	0	0
2804502000	텔루르	0	0	0	0
2804610000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2804690000	기타	0	0	0	0
2804701000	황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04709000	기타	0	0	0	0
2804800000	비소	0	0	0	0
2804900000	셀렌	0	0	0	0
2805110000	나트륨	0	0	0	0
2805120000	칼슘	0	0	0	0
2805190000	기타	0	0	0	0
2805301000	세륨그룹	0	0	0	0
2805302000	테르븀그룹	0	0	0	0
2805303000	에르븀그룹	0	0	0	0
2805304000	이트륨	0	0	0	0
2805305000	스칸듐	0	0	0	0
2805309000	기타	0	0	0	0
2805400000	수은	0	0	0	0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0	0	0	0
2806200000	클로로황산	0	0	0	0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2807001090	기타	0	0	0	0
2807002000	발연황산	0	0	0	0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2808001090	기타	0	0	0	0
2808002000	황질산	0	0	0	0
2809100000	오산화인	0	0	0	0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2809201090	기타	0	0	0	0
2809202010	메타인산	0	0	0	0
2809202020	피로인산	0	0	0	0
2809202090	기타	0	0	0	0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0	0	0	0
2810001090	기타	0	0	0	0
2810002000	오르토붕산	0	0	0	0
2810003000	메타붕산	0	0	0	0
2810009000	기타	0	0	0	0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2811119000	기타	0	0	0	0
2811191000	황화수소	0	0	0	0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0	0	0	0
2811193000	술파민산	0	0	0	0
2811194000	과염소산	0	0	0	0
2811195000	염소산	0	0	0	0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0	0	0	0
2811197000	아인산	0	0	0	0
2811198000	비산	0	0	0	0
2811199010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청산)	0	0	0	0
2811199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11210000	이산화탄소	0	0	0	0
2811221000	화이트카본	0	0	0	0
2811229010	실리카겔	0	0	0	0
2811229090	기타	0	0	0	0
2811291000	일산화탄소	0	0	0	0
2811292000	아산화질소	0	0	0	0
2811293000	이산화질소	0	0	0	0
2811294000	삼산화비소	0	0	0	0
2811295000	오산화비소	0	0	0	0
2811299000	기타	0	0	0	0
2812101010	삼염화요드	0	0	0	0
281210102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0	0	0	0
281210103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0	0	0	0
2812101040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	0	0	0	0
281210105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0	0	0	0
2812101060	설퍼 디클로라이드	0	0	0	0
2812101090	기타	0	0	0	0
2812102010	티오닐 클로라이드	0	0	0	0
281210202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0	0	0	0
281210203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0	0	0	0
2812102090	기타	0	0	0	0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0	0	0	0
281290200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0	0	0	0
2812909000	기타	0	0	0	0
2813100000	이황화탄소	0	0	0	0
2813901020	오황화인	0	0	0	0
2813901090	기타	0	0	0	0
2813902010	오황화비소	0	0	0	0
2813902090	기타	0	0	0	0
2813903000	황화규소	0	0	0	0
2813909000	기타	0	0	0	0
2814100000	무수(無水)암모니아	0	0	0	0
2814200000	암모니아수	0	0	0	0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0	0	0	0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0	0	0	0
2815302000	과산화칼륨	0	0	0	0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0	0	0	0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0	0	0	0
2816400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0	0	0	0
2817001000	산화아연	0	0	0	0
2817002000	과산화아연	0	0	0	0
2818101000	선별된 알갱이 모양	0	0	0	0
2818109000	기타	0	0	0	0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18301000	알루미나겔	0	0	0	0
2818309000	기타	0	0	0	0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0	0	0	0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0	0	0	0
2819901090	기타	0	0	0	0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0	0	0	0
2820100000	이산화망간	0	0	0	0
2820901000	일산화망간	0	0	0	0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0	0	0	0
2820909000	기타	0	0	0	0
2821101000	산화철	0	0	0	0
2821102000	수산화철	0	0	0	0
2821200000	어스컬러(earth colour)	0	0	0	0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0	0	0	0
2822001091	이차전지 제조용	0	0	0	0
2822001099	기타	0	0	0	0
2822002010	수산화제일코발트	0	0	0	0
2822002090	기타	0	0	0	0
2823001000	아나타스형	0	0	0	0
2823009000	기타	0	0	0	0
282410000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0	0	0	0
282490100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0	0	0	0
2824909000	기타	0	0	0	0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0	0	0	0
2825109010	히드라진	0	0	0	0
2825109020	히드라진과 무기염	0	0	0	0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0	0	0	0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아민염산염)	0	0	0	0
2825109049	기타	0	0	0	0
2825201000	산화리튬	0	0	0	0
2825202000	수산화리튬	0	0	0	0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0	0	0	0
2825309000	기타	0	0	0	0
2825401000	산화니켈	0	0	0	0
2825402000	수산화니켈	0	0	0	0
2825501000	산화구리	0	0	0	0
28255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825502090	기타	0	0	0	0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0	0	0	0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0	0	0	0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0	0	0	0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0	0	0	0
2825800000	산화안티모니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25901010	산화칼슘	0	0	0	0
2825901020	산화텅스텐	0	0	0	0
2825901030	산화석	0	0	0	0
2825901090	기타	0	0	0	0
2825902010	수산화칼슘	0	0	0	0
2825902020	수산화망간	0	0	0	0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0	0	0	0
2825902040	수산화석	0	0	0	0
2825902090	기타	0	0	0	0
2825903010	과산화니켈	0	0	0	0
2825903090	기타	0	0	0	0
2825909000	기타	0	0	0	0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0	0	0	0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0	0	0	0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륨	0	0	0	0
2826193090	기타	0	0	0	0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0	0	0	0
2826195000	텅스텐 헥사플루오라이드(WF6)	0	0	0	0
2826199000	기타	0	0	0	0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0	0	0	0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0	0	0	0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0	0	0	0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0	0	0	0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0	0	0	0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0	0	0	0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륨	0	0	0	0
2826909000	기타	0	0	0	0
2827100000	염화암모늄	0	0	0	0
2827200000	염화칼슘	0	0	0	0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0	0	0	0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0	0	0	0
2827350000	니켈 염화물	0	0	0	0
2827391000	구리염화물	0	0	0	0
2827399000	기타	0	0	0	0
2827411000	산화염화구리	0	0	0	0
282741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827412090	기타	0	0	0	0
2827491000	산화염화물	0	0	0	0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0	0	0	0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0	0	0	0
2827512000	브롬화칼륨	0	0	0	0
2827591000	브롬화칼슘	0	0	0	0
282759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0	0	0	0
2827609010	요드화칼륨	0	0	0	0
2827609090	기타	0	0	0	0
2828100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0	0	0	0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0	0	0	0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0	0	0	0
2828901090	기타	0	0	0	0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0	0	0	0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0	0	0	0
2828902090	기타	0	0	0	0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0	0	0	0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0	0	0	0
2829191000	염소산칼륨	0	0	0	0
2829192000	염소산바륨	0	0	0	0
2829199000	기타	0	0	0	0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0	0	0	0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0	0	0	0
2829901090	기타	0	0	0	0
2829902010	브롬산염	0	0	0	0
2829902020	과브롬산염	0	0	0	0
2829902030	요오드산염	0	0	0	0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0	0	0	0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0	0	0	0
2830109000	기타	0	0	0	0
2830901000	황화물	0	0	0	0
2830902000	폴리황화물	0	0	0	0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0	0	0	0
2831102000	술폭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술폭실산나트륨)	0	0	0	0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0	0	0	0
2831902000	술폭실산염	0	0	0	0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0	0	0	0
2832109000	기타	0	0	0	0
2832201000	아황산 암모늄	0	0	0	0
2832202000	아황산 칼륨	0	0	0	0
2832203000	아황산 칼슘	0	0	0	0
2832209000	기타	0	0	0	0
2832301000	티오황산 암모늄	0	0	0	0
2832302000	티오황산 나트륨	0	0	0	0
2832303000	티오황산 칼륨	0	0	0	0
2832309000	기타	0	0	0	0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0	0	0	0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0	0	0	0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33199000	기타	0	0	0	0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0	0	0	0
2833221000	이차전지 제조용	0	0	0	0
2833229000	기타	0	0	0	0
2833240000	황산니켈	0	0	0	0
2833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833259000	기타	0	0	0	0
2833270000	황산바륨	0	0	0	0
2833291000	황산철	0	0	0	0
2833292010	이차전지 제조용	0	0	0	0
2833292090	기타	0	0	0	0
2833293010	이차전지 제조용	0	0	0	0
2833293090	기타	0	0	0	0
2833299000	기타	0	0	0	0
2833300000	명반	0	0	0	0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0	0	0	0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0	0	0	0
2833403000	과황산칼슘	0	0	0	0
2833409000	기타	0	0	0	0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0	0	0	0
2834109000	기타	0	0	0	0
2834210000	질산칼륨	0	0	0	0
2834291000	질산바륨	0	0	0	0
2834299000	기타	0	0	0	0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0	0	0	0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0	0	0	0
2835101090	기타	0	0	0	0
2835102000	아인산염	0	0	0	0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0	0	0	0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0	0	0	0
2835240000	인산칼륨	0	0	0	0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0	0	0	0
2835260000	그 밖의 인산칼슘	0	0	0	0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0	0	0	0
2835299000	기타	0	0	0	0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0	0	0	0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0	0	0	0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0	0	0	0
2835399000	기타	0	0	0	0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0	0	0	0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0	0	0	0
2836400000	탄산칼륨	0	0	0	0
2836500000	탄산칼슘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36600000	탄산바륨	0	0	0	0
2836910000	탄산리튬	0	0	0	0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0	0	0	0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0	0	0	0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0	0	0	0
2836991031	이차전지 제조용	0	0	0	0
2836991039	기타	0	0	0	0
2836991090	기타	0	0	0	0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0	0	0	0
2837111000	시안화나트륨	0	0	0	0
2837112000	산화시안화나트륨	0	0	0	0
2837191010	시안화칼륨	0	0	0	0
2837191020	시안화구리	0	0	0	0
2837191030	시안화아연	0	0	0	0
2837191090	기타	0	0	0	0
2837192000	산화시안화물	0	0	0	0
2837201000	페로시안화물	0	0	0	0
2837202000	페리시안화물	0	0	0	0
2837209000	기타	0	0	0	0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0	0	0	0
2839190000	기타	0	0	0	0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0	0	0	0
2839902000	규산바륨	0	0	0	0
2839909000	기타	0	0	0	0
2840110000	무수물(無水物)	0	0	0	0
2840190000	기타	0	0	0	0
2840200000	그 밖의 붕산염	0	0	0	0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0	0	0	0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0	0	0	0
2841501000	크롬산칼륨	0	0	0	0
2841509000	기타	0	0	0	0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0	0	0	0
2841691000	아망간산염	0	0	0	0
2841692000	망간산염	0	0	0	0
2841693000	과망간산염	0	0	0	0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0	0	0	0
2841800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0	0	0	0
2841901000	주석산염	0	0	0	0
2841902010	티탄산바륨	0	0	0	0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0	0	0	0
2841902030	티탄산납	0	0	0	0
2841902090	기타	0	0	0	0
2841903000	안티몬산염	0	0	0	0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41905000	바나듐산염	0	0	0	0
2841906000	비스무트산염	0	0	0	0
2841909000	기타	0	0	0	0
2842101000	알루미노실리케이트	0	0	0	0
2842109000	기타	0	0	0	0
2842901000	셀렌산염	0	0	0	0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겹염이나 착염	0	0	0	0
2842905000	셀렌의 겹염이나 착염	0	0	0	0
2842909000	기타	0	0	0	0
2843101000	콜로이드 은	0	0	0	0
2843102000	콜로이드 금	0	0	0	0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0	0	0	0
2843109000	기타	0	0	0	0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2843219000	기타	0	0	0	0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2843299000	기타	0	0	0	0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0	0	0	0
2843309000	기타	0	0	0	0
2843901000	아말감(amalgam)	0	0	0	0
2843909010	백금 화합물	0	0	0	0
2843909090	기타	0	0	0	0
2844101000	천연 우라늄	0	0	0	0
2844102000	분산물(分散物)(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844109000	기타	0	0	0	0
2844201000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	0	0	0	0
2844202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844209000	기타	0	0	0	0
2844301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844309000	기타	0	0	0	0
2844401000	방사성원소	0	0	0	0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0	0	0	0
2844403000	분산물(分散物)(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844409000	기타	0	0	0	0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	0	0	0
284510000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	0	0	0
2845901000	중수소	0	0	0	0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45909000	기타	0	0	0	0
2846100000	세륨화합물	0	0	0	0
2846901000	산화이트륨	0	0	0	0
2846909000	기타	0	0	0	0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2847009000	기타	0	0	0	0
2848001000	인동(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0	0	0	0
2848002000	인화알루미늄	0	0	0	0
2848009000	기타	0	0	0	0
2849100000	탄화칼슘	0	0	0	0
2849200000	탄화규소	0	0	0	0
2849901000	복탄화물	0	0	0	0
2849909010	탄화텅스텐	0	0	0	0
2849909090	기타	0	0	0	0
2850001000	수소화물	0	0	0	0
2850002000	질화물	0	0	0	0
2850003000	아지드화물	0	0	0	0
2850004000	규화물	0	0	0	0
2850005000	붕화물	0	0	0	0
2852101000	소호 제 2825.90 호, 제 2827.39 호, 제 2827.49 호, 제 2827.60 호, 제 2830.90 호, 제 2833.29 호, 제 2834.29 호, 제 2835.39 호, 제 2837.19 호, 제 2837.20 호, 제 2841.50 호, 제 2842.10 호, 제 2842.90 호, 제 2843.90 호, 제 2848.00 호, 제 2849.90 호, 제 2850.00 호나 제 2853.00 호의 것	0	0	0	0
2852102000	소호 제 2918.11 호, 제 2931.00 호, 제 2932.99 호, 제 2934.99.9090 호, 제 3201.90.2000 호, 제 3201.90.4000 호, 제 3206.50 호, 제 3707.90 호, 제 3822.00.1091 호나 제 3822.00.2091 호의 것				
	- 기타	0	0	0	0
2852103000	소호 제 2934.99.2000 호, 제 3822.00.1092 호나 제 3822.00.2092 호의 것	0	0	0	0
2852104000	소호 제 3502.90 호나 제 3504.00 호의 것	0	0	0	0
2852105000	소호 제 3822.00.101 호, 제 3822.00.102 호, 제 3822.00.1093 호, 제 3822.00.201 호, 제 3822.00.202 호나 제 3822.00.2093 호의 것	0	0	0	0
2852106000	소호 제 3822.00.1099 호나 제 3822.00.2099 호의 것	0	0	0	0
2852901000	소호 제 2830.90 호, 제 2835.39 호, 제 2842.10.9000 호, 제 2848.00 호, 제 2849.90 호나 제 2850.00 호의 것	0	0	0	0
2852902000	소호 제 2842.10.1000 호, 제 2934.99.2000 호, 제 2934.99.9090 호, 제 3201.90 호, 제 3824.90.2100 호, 제 3824.90.2200 호나 제 3824.90.2490 호부터 제 3824.90.9090 호까지의 것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 기타	0	0	0	0
2852903000	소호 제 3501.90 호의 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의 것(커피크리머 제조용은 제외한다)	0	0	0	0
2852904000	소호 제 3502.90 호나 제 3504.00 호의 것	0	0	0	0
2853001000	증류수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0	0	0	0
2853002000	압축공기	0	0	0	0
2853003000	아말감(amalgam)	0	0	0	0
285300401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0	0	0	0
2853004090	기타	0	0	0	0
2853005000	알칼리 아미드	0	0	0	0
2853009000	기타	0	0	0	0
2901101000	부탄	0	0	0	0
2901102000	헥산	0	0	0	0
2901103000	헵탄	0	0	0	0
2901109000	기타	0	0	0	0
2901210000	에틸렌	0	0	0	0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0	0	0	0
2901230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0	0	0
2901241000	1,3-부타디엔	0	0	0	0
2901242000	이소프렌	0	0	0	0
2901291000	헥센	0	0	0	0
2901292000	옥텐	0	0	0	0
2901299000	기타	0	0	0	0
2902110000	시클로헥산	0	0	0	0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0	0	0	0
2902199000	기타	0	0	0	0
2902200000	벤젠	0	0	0	0
2902300000	톨루엔	0	0	0	0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0	0	0	0
2902420000	메타-크실렌	0	0	0	0
2902430000	파라-크실렌	0	0	0	0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0	0	0	0
2902500000	스티렌	0	0	0	0
2902600000	에틸벤젠	0	0	0	0
2902700000	큐멘	0	0	0	0
2902901000	나프탈렌	0	0	0	0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0	0	0	0
2902903000	메틸스티렌	0	0	0	0
2902909000	기타	0	0	0	0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0	0	0	0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0	0	0	0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0	0	0	0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0	0	0	0
2903140000	사염화탄소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0	0	0	0
2903199000	기타	0	0	0	0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0	0	0	0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0	0	0	0
2903290000	기타	0	0	0	0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0	0	0	0
2903391000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0	0	0	0
2903392000	브로모에탄(1,2-디브로모에탄은 제외한다)	0	0	0	0
2903393000	요드메탄	0	0	0	0
2903394000	헥사플루오르에탄(CFC-116)	0	0	0	0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0	0	0	0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르에탄(HFC-134a)	0	0	0	0
2903397000	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0	0	0	0
2903399000	기타	0	0	0	0
2903710000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	0	0	0
29037200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0	0	0	0
290373000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0	0	0	0
290374000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0	0	0	0
29037500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0	0	0	0
2903761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하론-1211)	0	0	0	0
2903762000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하론-1301)	0	0	0	0
2903763000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하론-2402)	0	0	0	0
2903771000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	0	0	0	0
2903772000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	0	0	0
2903773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0	0	0	0
2903774010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0	0	0	0
2903774020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0	0	0	0
2903775000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0	0	0	0
2903776010	펜타클로로플루오르에탄(CFC-111)	0	0	0	0
2903776020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CFC-112)	0	0	0	0
2903777010	헵타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CFC-211)	0	0	0	0
2903777020	헥사클로로디플루오르프로판(CFC-212)	0	0	0	0
2903777030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르프로판(CFC-213)	0	0	0	0
2903777040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프로판(CFC-214)	0	0	0	0
2903777050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	0	0	0	0
2903777060	디클로로헥사플루오르프로판(CFC-216)	0	0	0	0
2903777070	클로로헵타플루오르프로판(CFC-217)	0	0	0	0
2903779000	기타	0	0	0	0
29037800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0	0	0	0
2903791110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21)	0	0	0	0
2903791120	클로로플루오르메탄(HCFC-31)	0	0	0	0
290379121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0	0	0	0
2903791290	기타	0	0	0	0
2903791300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03792000	불소와 염소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에탄 또는 프로판의 유도체	0	0	0	0
2903799000	기타	0	0	0	0
290381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0	0	0	0
2903820000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0	0	0	0
2903890000	기타	0	0	0	0
2903911000	클로로벤젠	0	0	0	0
2903919000	기타	0	0	0	0
2903921000	헥사클로로벤젠(ISO)	0	0	0	0
2903922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0	0	0	0
2903991000	염화벤질	0	0	0	0
29039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0	0	0	0
2903992090	기타	0	0	0	0
29039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0	0	0	0
2903999000	기타	0	0	0	0
2904101000	벤젠 술폰산	0	0	0	0
2904109000	기타	0	0	0	0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0	0	0	0
2904209010	니트로벤젠	0	0	0	0
2904209020	4-니트로비페닐과 이들의 염	0	0	0	0
2904209090	기타	0	0	0	0
2904901000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0	0	0	0
2904902000	파라-니트로클로로벤젠	0	0	0	0
2904903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0	0	0	0
2904909000	기타	0	0	0	0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0	0	0	0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0	0	0	0
2905169000	기타	0	0	0	0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0	0	0	0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0	0	0	0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0	0	0	0
2905191000	헵틸알코올	0	0	0	0
2905192000	노닐알코올	0	0	0	0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0	0	0	0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0	0	0	0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0	0	0	0
2905199020	2-프로필 헵틸 알코올	0	0	0	0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0	0	0	0
2905199090	기타	0	0	0	0
2905221000	게라니올・시트로네롤・리날롤・로디놀 및 네롤	0	0	0	0
2905229000	기타	0	0	0	0
2905290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0	0	0	0
2905391000	1,4-부탄디올	0	0	0	0
2905399000	기타	0	0	0	0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0	0	0	0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0	0	0	0
2905450000	글리세롤	0	0	0	0
2905490000	기타	0	0	0	0
2905510000	에스클로비놀(INN)	0	0	0	0
2905590000	기타	0	0	0	0
2906110000	멘톨	0	0	0	0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0	0	0	0
2906131000	스테롤	0	0	0	0
2906132000	이노시톨	0	0	0	0
2906191000	보르네올	0	0	0	0
2906192000	테르피네올	0	0	0	0
2906199000	기타	0	0	0	0
2906210000	벤질알코올	0	0	0	0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0	0	0	0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0	0	0	0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0	0	0	0
2906299000	기타	0	0	0	0
2907112000	페놀의 염	0	0	0	0
2907121000	크레졸	0	0	0	0
2907122000	크레졸의 염	0	0	0	0
2907131000	옥틸페놀	0	0	0	0
2907132000	노닐페놀	0	0	0	0
2907139000	기타	0	0	0	0
2907151000	나프톨	0	0	0	0
2907152000	나프톨의 염	0	0	0	0
2907191000	티몰	0	0	0	0
290719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0	0	0	0
2907199000	기타	0	0	0	0
2907211000	레소르시놀	0	0	0	0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0	0	0	0
2907221000	히드로퀴논	0	0	0	0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0	0	0	0
2907232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의 염	0	0	0	0
2907291000	카테콜	0	0	0	0
2907299000	기타	0	0	0	0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0	0	0	0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0	0	0	0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0	0	0	0
2908199000	기타	0	0	0	0
2908910000	디노셉(ISO)과 그 염	0	0	0	0
29089200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0	0	0	0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이들의 염	0	0	0	0
2908992000	페놀술폰산	0	0	0	0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0	0	0	0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0	0	0	0
2908999000	기타	0	0	0	0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0	0	0	0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0	0	0	0
2909192000	메틸터샤리 부틸에테르	0	0	0	0
2909199000	기타	0	0	0	0
2909201000	시네올	0	0	0	0
2909209000	기타	0	0	0	0
2909301000	아니솔	0	0	0	0
2909302000	아네톨	0	0	0	0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0	0	0	0
2909304000	앰브렛 머스크	0	0	0	0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0	0	0	0
29093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09309090	기타	0	0	0	0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0	0	0	0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0	0	0	0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알킬에테르	0	0	0	0
2909449000	기타	0	0	0	0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0	0	0	0
2909499000	기타	0	0	0	0
2909501000	오이게놀	0	0	0	0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0	0	0	0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0	0	0	0
2909509000	기타	0	0	0	0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0	0	0	0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0	0	0	0
2909603000	메틸에틸케톤퍼록사이드	0	0	0	0
2909609000	기타	0	0	0	0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0	0	0	0
2910400000	디엘드린(ISO, INN)	0	0	0	0
2910900000	기타	0	0	0	0
2911001010	아세탈	0	0	0	0
2911001020	헤미아세탈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11009000	기타	0	0	0	0
2912110000	메탄알(포름알데히드)	0	0	0	0
2912120000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0	0	0	0
2912191000	시트로넬알데히드	0	0	0	0
2912192000	시틀알	0	0	0	0
2912193000	부탄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이성체)	0	0	0	0
2912199000	기타	0	0	0	0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0	0	0	0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0	0	0	0
2912293000	신남알데히드	0	0	0	0
2912294000	알파아밀신남알데히드	0	0	0	0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0	0	0	0
2912299000	기타	0	0	0	0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0	0	0	0
29124200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0	0	0	0
2912491000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0	0	0	0
2912499000	기타	0	0	0	0
2912501000	트리옥산	0	0	0	0
2912502000	파라알데히드	0	0	0	0
2912503000	메타알데히드	0	0	0	0
2912509000	기타	0	0	0	0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0	0	0	0
291300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0	0	0	0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0	0	0	0
2914191000	3,3-디메틸-2-부타논(피나콜론)	0	0	0	0
2914199000	기타	0	0	0	0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0	0	0	0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0	0	0	0
2914231000	이오논	0	0	0	0
2914232000	메틸이오논	0	0	0	0
2914291000	자스몬	0	0	0	0
2914299000	기타	0	0	0	0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0	0	0	0
2914390000	기타	0	0	0	0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0	0	0	0
2914409000	기타	0	0	0	0
2914501000	케톤-페놀	0	0	0	0
2914509000	기타	0	0	0	0
2914610000	안트라퀴논	0	0	0	0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0	0	0	0
2914699010	퀴논알코올・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14699090	기타	0	0	0	0
2914701000	케톤 머스크	0	0	0	0
2914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14709090	기타	0	0	0	0
2915110000	포름산	0	0	0	0
2915121000	포름산 칼슘	0	0	0	0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0	0	0	0
2915129000	기타	0	0	0	0
2915131000	포름산 메틸	0	0	0	0
2915132000	2-에틸헥실클로로포메이트	0	0	0	0
2915139000	기타	0	0	0	0
2915240000	무수(無水)초산	0	0	0	0
2915291000	초산칼슘	0	0	0	0
2915292000	초산나트륨	0	0	0	0
2915293000	초산코발트	0	0	0	0
2915299000	기타	0	0	0	0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0	0	0	0
2915391000	초산아밀	0	0	0	0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0	0	0	0
2915393000	초산메틸	0	0	0	0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0	0	0	0
2915395000	초산 2-에톡시에틸	0	0	0	0
2915399000	기타	0	0	0	0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0	0	0	0
2915409000	기타	0	0	0	0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5702010	스테아르산	0	0	0	0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0	0	0	0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0	0	0	0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0	0	0	0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0	0	0	0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0	0	0	0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0	0	0	0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0	0	0	0
2915702090	기타	0	0	0	0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0	0	0	0
2915909010	2-에틸헥소산	0	0	0	0
2915909090	기타	0	0	0	0
2916119000	기타	0	0	0	0
291612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16139000	기타	0	0	0	0
2916149000	기타	0	0	0	0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6152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6153000	리놀렌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6160000	비나파크릴(ISO)	0	0	0	0
2916190000	기타	0	0	0	0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0	0	0	0
2916202000	시클로 펜테닐 초산	0	0	0	0
2916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16209090	기타	0	0	0	0
2916311000	벤조산	0	0	0	0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0	0	0	0
2916313000	벤조산벤질	0	0	0	0
291631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16319090	기타	0	0	0	0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0	0	0	0
2916322000	염화벤조일	0	0	0	0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0	0	0	0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0	0	0	0
2916391000	계피산	0	0	0	0
2916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16399090	기타	0	0	0	0
2917111000	옥살산	0	0	0	0
2917112000	옥살산의 염	0	0	0	0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0	0	0	0
2917121000	아디프산	0	0	0	0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0	0	0	0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0	0	0	0
2917123090	기타	0	0	0	0
2917131000	아젤라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7132000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7140000	무수말레산	0	0	0	0
2917191000	말레산	0	0	0	0
2917192000	숙신산	0	0	0	0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0	0	0	0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0	0	0	0
2917195000	말론산 디이소프로필	0	0	0	0
2917199000	기타	0	0	0	0
2917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	0	0	0	0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디데실	0	0	0	0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헵틸	0	0	0	0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0	0	0	0
2917349000	기타	0	0	0	0
2917361000	테레프탈산	0	0	0	0
2917369000	기타	0	0	0	0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0	0	0	0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리테이트(T.O.T.M)	0	0	0	0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0	0	0	0
2917399000	기타	0	0	0	0
2918111000	락트산	0	0	0	0
2918112000	락트산의 염	0	0	0	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0	0	0	0
2918120000	타르타르산	0	0	0	0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0	0	0	0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0	0	0	0
2918140000	시트르산	0	0	0	0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0	0	0	0
2918151090	기타	0	0	0	0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0	0	0	0
2918161000	글루콘산	0	0	0	0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0	0	0	0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0	0	0	0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0	0	0	0
2918191010	말산	0	0	0	0
2918191090	기타	0	0	0	0
2918192010	말산의 염	0	0	0	0
2918192090	기타	0	0	0	0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0	0	0	0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0	0	0	0
2918193090	기타	0	0	0	0
2918194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0	0	0	0
2918199000	기타	0	0	0	0
2918211000	살리실산	0	0	0	0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0	0	0	0
2918212090	기타	0	0	0	0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0	0	0	0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염	0	0	0	0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0	0	0	0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0	0	0	0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0	0	0	0
2918231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18232000	그 밖의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0	0	0	0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0	0	0	0
2918299010	갈산	0	0	0	0
2918299020	파라히드록시 나프토산	0	0	0	0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0	0	0	0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8299090	기타	0	0	0	0
2918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18309000	기타	0	0	0	0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89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18999000	기타	0	0	0	0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0	0	0	0
291990101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19901019	기타	0	0	0	0
2919901020	글리세로인산	0	0	0	0
2919901090	기타	0	0	0	0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0	0	0	0
2919909000	기타	0	0	0	0
29201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0119000	기타	0	0	0	0
2920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0199010	0.0-디메틸-0-(3-메틸-4-니트로페닐)티오포스페이트	0	0	0	0
2920199090	기타	0	0	0	0
2920901010	황산디메틸	0	0	0	0
2920901020	황산디에틸	0	0	0	0
2920901090	기타	0	0	0	0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와 질산에스테르의 것	0	0	0	0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0	0	0	0
2920904010	디메틸 포스파이트	0	0	0	0
2920904020	디에틸 포스파이트	0	0	0	0
292090403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0	0	0	0
2920904040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0	0	0	0
2920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0909090	기타	0	0	0	0
2921111010	메틸아민	0	0	0	0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21112010	디메틸아민	0	0	0	0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0	0	0	0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0	0	0	0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0	0	0	0
2921191000	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0	0	0	0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0	0	0	0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0	0	0	0
2921199020	클로르메틴(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0	0	0	0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0	0	0	0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0	0	0	0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0	0	0	0
292119906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0	0	0	0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0	0	0	0
2921199090	기타	0	0	0	0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0	0	0	0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0	0	0	0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0	0	0	0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0	0	0	0
2921229000	기타	0	0	0	0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0	0	0	0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0	0	0	0
2921299000	기타	0	0	0	0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0	0	0	0
2921309000	기타	0	0	0	0
2921411000	아닐린	0	0	0	0
2921412000	아닐린의 염	0	0	0	0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0	0	0	0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0	0	0	0
292142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1429090	기타	0	0	0	0
2921431000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0	0	0	0
2921432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0	0	0	0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0	0	0	0
2921439010	톨루이딘	0	0	0	0
292143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1439099	기타	0	0	0	0
2921441000	디페닐아민	0	0	0	0
2921449000	기타	0	0	0	0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0	0	0	0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0	0	0	0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0	0	0	0
2921459090	기타	0	0	0	0
2921460000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이들의 염	0	0	0	0
29214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1499000	기타	0	0	0	0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0	0	0	0
2921512000	엔-(1,3-디메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0	0	0	0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0	0	0	0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0	0	0	0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0	0	0	0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0	0	0	0
2921519090	기타	0	0	0	0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0	0	0	0
2921599010	벤지딘	0	0	0	0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0	0	0	0
2921599030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0	0	0	0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0	0	0	0
2921599090	기타	0	0	0	0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0	0	0	0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0	0	0	0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0	0	0	0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0	0	0	0
2922131000	트리에탄올아민	0	0	0	0
2922132000	트리에탄올아민의 염	0	0	0	0
2922140000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0	0	0	0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0	0	0	0
2922193010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0	0	0	0
2922193020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0	0	0	0
2922193090	기타	0	0	0	0
2922194000	에틸디에탄올아민	0	0	0	0
2922195000	메틸디에탄올아민	0	0	0	0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0	0	0	0
2922199000	기타	0	0	0	0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0	0	0	0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0	0	0	0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0	0	0	0
292221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0	0	0	0
2922299010	메타-아미노페놀	0	0	0	0
292229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0	0	0	0
2922299030	아미노 크레졸	0	0	0	0
2922299040	페네티딘과 이들의 염	0	0	0	0
2922299090	기타	0	0	0	0
2922310000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이들의 염	0	0	0	0
2922392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이들의 염	0	0	0	0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0	0	0	0
2922399000	기타	0	0	0	0
2922411000	리신	0	0	0	0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0	0	0	0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0	0	0	0
2922421000	글루탐산	0	0	0	0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0	0	0	0
2922423000	그 밖의 글루탐산의 염	0	0	0	0
2922431000	안트라닐산	0	0	0	0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0	0	0	0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0	0	0	0
2922491000	글리신	0	0	0	0
2922492000	알라닌	0	0	0	0
2922493000	류우신	0	0	0	0
2922494000	바린	0	0	0	0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0	0	0	0
2922496000	페닐글리신	0	0	0	0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0	0	0	0
2922499000	기타	0	0	0	0
2922501000	세린	0	0	0	0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0	0	0	0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디올	0	0	0	0
2922504000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0	0	0	0
29225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2509090	기타	0	0	0	0
2923101000	콜린	0	0	0	0
2923102000	콜린의 염	0	0	0	0
2923201000	레시틴	0	0	0	0
2923202000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0	0	0	0
2923900000	기타	0	0	0	0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0	0	0	0
2924121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0	0	0	0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0	0	0	0
2924123000	포스파미돈(ISO)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0	0	0	0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0	0	0	0
2924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4199090	기타	0	0	0	0
29242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4219000	기타	0	0	0	0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0	0	0	0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0	0	0	0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0	0	0	0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0	0	0	0
2924291090	기타	0	0	0	0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0	0	0	0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0	0	0	0
2924299091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및 이오메프롤	0	0	0	0
2924299092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4299099	기타	0	0	0	0
2925111000	사카린	0	0	0	0
2925112000	사카린의 염	0	0	0	0
2925120000	구루테치미드(INN)	0	0	0	0
2925191000	프탈이미드	0	0	0	0
2925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5199090	기타	0	0	0	0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0	0	0	0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0	0	0	0
2925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5299090	기타	0	0	0	0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0	0	0	0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0	0	0	0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0	0	0	0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0	0	0	0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0	0	0	0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0	0	0	0
2926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6909099	기타	0	0	0	0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0	0	0	0
2927001900	기타	0	0	0	0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0	0	0	0
2927002990	기타	0	0	0	0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0	0	0	0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0	0	0	0
2928009010	페릴랄틴	0	0	0	0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0	0	0	0
29280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8009099	기타	0	0	0	0
292910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0	0	0	0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	0	0	0	0
2929109000	기타	0	0	0	0
2929901000	이소시안화물	0	0	0	0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0	0	0	0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 포스포르 아미데이트	0	0	0	0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0	0	0	0
2929906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	0	0	0	0
2929909000	기타	0	0	0	0
29302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0201090	기타	0	0	0	0
29302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0202090	기타	0	0	0	0
2930301000	티우람모노술파이드	0	0	0	0
2930302000	티우람디술파이드	0	0	0	0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0	0	0	0
2930400000	메티오닌	0	0	0	0
2930501000	캡타폴(ISO)	0	0	0	0
2930502000	메타미도포스(ISO)	0	0	0	0
2930901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0	0	0	0
2930902010	티오우레아	0	0	0	0
2930902020	티오카르바닐리드	0	0	0	0
2930902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0902099	기타	0	0	0	0
2930903010	티오알코올	0	0	0	0
2930903020	티오페놀	0	0	0	0
2930903030	엔,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티올	0	0	0	0
293090304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2930904010	티오디글리콜(INN)[비스(2-하이드록시에틸) 술파이드]	0	0	0	0
2930904020	티오아닐린	0	0	0	0
2930904090	기타	0	0	0	0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틸술파이드	0	0	0	0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술파이드	0	0	0	0
2930905030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0	0	0	0
2930905040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0	0	0	0
2930905050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0	0	0	0
2930905060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0	0	0	0
2930905070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0	0	0	0
2930905081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0	0	0	0
293090508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	0	0	0	0
2930905090	기타	0	0	0	0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0	0	0	0
2930907000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0	0	0	0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포노포스)	0	0	0	0
2930909010	티오산	0	0	0	0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0	0	0	0
2930909030	시스테인	0	0	0	0
2930909040	시스틴	0	0	0	0
2930909050	글루타티온	0	0	0	0
2930909060	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0	0	0	0
293090907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 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를 포함한 화합물	0	0	0	0
2930909080	디티오카르본산염(크산틴산염)	0	0	0	0
2930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0909099	기타	0	0	0	0
2931100000	테트라메칠납과 테트라에칠납	0	0	0	0
2931200000	트리부틸틴 화합물	0	0	0	0
2931901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0	0	0	0
2931901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0	0	0	0
2931901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0	0	0	0
2931901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한정한다)				
2931901099	기타	0	0	0	0
2931902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	0	0	0	0
29319022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0	0	0	0
29319023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0	0	0	0
29319024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0	0	0	0
29319025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0	0	0	0
2931902911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	0	0	0
2931902912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0	0	0	0
2931902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0	0	0	0
2931902914	디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0	0	0	0
2931902915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1902919	기타	0	0	0	0
2931903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0	0	0	0
2931903090	기타	0	0	0	0
2931904010	메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0	0	0	0
2931904020	메틸포스피닐디클로라이드	0	0	0	0
2931904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0	0	0	0
2931904040	에틸포스피닐디클로라이드	0	0	0	0
2931904090	기타	0	0	0	0
2931909010	디부틸 틴 옥사이드	0	0	0	0
29319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0	0	0	0
293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1909099	기타	0	0	0	0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0	0	0	0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0	0	0	0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0	0	0	0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0	0	0	0
2932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2199000	기타	0	0	0	0
2932201010	쿠마린	0	0	0	0
2932201020	메틸쿠마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32201030	에틸쿠마린	0	0	0	0
2932209010	노나락톤	0	0	0	0
2932209020	운데카락톤	0	0	0	0
2932209030	부티로락톤	0	0	0	0
2932209040	산토닌	0	0	0	0
2932209050	페놀프탈레인	0	0	0	0
2932209060	글루쿠로노락톤	0	0	0	0
2932209070	탈수소초산과 그 염	0	0	0	0
2932209080	아세틸케텐(디케텐)	0	0	0	0
29322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2209099	기타	0	0	0	0
2932910000	이소사프롤	0	0	0	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0	0	0	0
2932930000	피페로날	0	0	0	0
2932940000	사프롤	0	0	0	0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0	0	0	0
2932991000	디옥산	0	0	0	0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0	0	0	0
2932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2999090	기타	0	0	0	0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메틸아미노피라조론-5)	0	0	0	0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0	0	0	0
2933119030	설피린	0	0	0	0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0	0	0	0
293311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3119099	기타	0	0	0	0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0	0	0	0
2933199010	페닐부타존	0	0	0	0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0	0	0	0
29331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3199099	기타	0	0	0	0
2933211000	히단토인	0	0	0	0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0	0	0	0
2933291000	리시딘	0	0	0	0
2933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3299090	기타	0	0	0	0
2933311000	피리딘	0	0	0	0
2933312000	피리딘의 염	0	0	0	0
2933321000	피페리딘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0	0	0	0
2933330000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 (INN), 이들의 염	0	0	0	0
2933391000	이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	0	0	0	0
293339300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0	0	0	0
2933394000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0	0	0	0
2933395000	퀴뉴클리딘-3-올	0	0	0	0
2933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3399090	기타	0	0	0	0
2933410000	레보파놀(INN)과 그 염	0	0	0	0
2933491000	피비니움파모에이트	0	0	0	0
29334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3499090	기타	0	0	0	0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0	0	0	0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이들의 염	0	0	0	0
29335400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 이들의 염	0	0	0	0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 및 지페프롤(INN), 이들의 염	0	0	0	0
2933591100	5-플루오르우라실	0	0	0	0
2933591910	피리미딘	0	0	0	0
2933591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3591999	기타	0	0	0	0
2933592010	피페라진	0	0	0	0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0	0	0	0
2933592030	아디프산 피페라진	0	0	0	0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0	0	0	0
2933592090	기타	0	0	0	0
2933599000	기타	0	0	0	0
2933610000	멜라민	0	0	0	0
2933691000	염화시아눌	0	0	0	0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0	0	0	0
29336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3699099	기타	0	0	0	0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0	0	0	0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0	0	0	0
2933791000	이사틴	0	0	0	0
2933792000	2- 히드록시퀴놀린	0	0	0	0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0	0	0	0
2933799000	기타	0	0	0	0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이들의 염	0	0	0	0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0	0	0	0
2933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3999090	기타	0	0	0	0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0	0	0	0
29341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4109090	기타	0	0	0	0
2934201000	벤조티아졸	0	0	0	0
2934202000	머캡프토 벤조티아졸	0	0	0	0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린 디술파이드	0	0	0	0
2934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4209090	기타	0	0	0	0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0	0	0	0
2934309000	기타	0	0	0	0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이들의 염	0	0	0	0
2934991000	모르포린	0	0	0	0
2934992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0	0	0	0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포란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35002000	5-아미노-2-메틸-엔-페닐벤젠 술폰아미드	0	0	0	0
2935003000	파라-톨루이딘-3-술폰아닐리드	0	0	0	0
2935004000	2-아미노-엔-에틸벤젠 술폰아닐리드	0	0	0	0
2935006000	술파메톡사졸	0	0	0	0
2935007000	술파메톡신	0	0	0	0
2935008010	술파민	0	0	0	0
2935008020	술파피리딘	0	0	0	0
2935008030	술파디아진	0	0	0	0
2935008040	술파메라진	0	0	0	0
2935008050	술파티아졸	0	0	0	0
2935008090	기타	0	0	0	0
293500902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5009090	기타	0	0	0	0
2936210000	비타민 A 와 그 유도체	0	0	0	0
2936220000	비타민 B1 과 그 유도체	0	0	0	0
2936230000	비타민 B2 와 그 유도체	0	0	0	0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그 유도체	0	0	0	0
2936250000	비타민 B6 와 그 유도체	0	0	0	0
2936260000	비타민 B12 와 그 유도체	0	0	0	0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0	0	0	0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0	0	0	0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0	0	0	0
2936279000	기타	0	0	0	0
2936281000	초산알파토코페롤	0	0	0	0
2936289000	기타	0	0	0	0
2936291010	비타민 B9	0	0	0	0
2936291090	기타	0	0	0	0
2936292000	비타민 D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36293000	비타민 H 와 그 유도체	0	0	0	0
2936294000	비타민 K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그 유도체	0	0	0	0
2936299000	기타	0	0	0	0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6909000	기타	0	0	0	0
2937111000	소호 제 2933.9 호나 제 2934.9 호의 것	0	0	0	0
2937119000	기타	0	0	0	0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0	0	0	0
2937191000	소호 제 2933.9 호나 제 2934.9 호의 것	0	0	0	0
2937199000	기타	0	0	0	0
2937211000	코르티손	0	0	0	0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0	0	0	0
2937213000	프레드니손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37214000	프레드니소론	0	0	0	0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0	0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0	0	0
2937292000	소호 제 2914.50 호의 것	0	0	0	0
2937299000	기타	0	0	0	0
2937501000	소호 제 2918.19 또는 제 2918.9 호의 것	0	0	0	0
2937502000	소호 제 2934.9 호의 것	0	0	0	0
2937509000	기타	0	0	0	0
2937901000	소호 제 2933.9 호나 제 2934.9 호의 것	0	0	0	0
2937902100	에피네프린	0	0	0	0
2937902910	소호 제 2922.50 호의 것	0	0	0	0
2937902990	기타	0	0	0	0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0	0	0	0
2937909000	기타	0	0	0	0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0	0	0	0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0	0	0	0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0	0	0	0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0	0	0	0
2938903000	사포닌	0	0	0	0
2938904000	스테비오사이드	0	0	0	0
2938909000	기타	0	0	0	0
2939111000	모르핀	0	0	0	0
2939112000	에틸모르핀	0	0	0	0
2939113000	코데인	0	0	0	0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전중량의 100 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9119000	기타	0	0	0	0
2939190000	기타	0	0	0	0
293920000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0	0	0	0
2939411000	에페드린	0	0	0	0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0	0	0	0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0	0	0	0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0	0	0	0
2939430000	캐친(INN)과 그 염	0	0	0	0
29394400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0	0	0
2939490000	기타	0	0	0	0
2939510000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0	0	0
2939590000	기타	0	0	0	0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0	0	0	0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0	0	0	0
2939621000	엘고타민(INN)	0	0	0	0
2939629000	엘고타민(INN)의 염	0	0	0	0
2939631000	리세르그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0	0	0	0
2939690000	기타	0	0	0	0
2939910000	코카인・에크코닌・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에스테르 및 이들의 그 밖의 유도체	0	0	0	0
2939991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	0	0	0	0
2939992000	아레코린	0	0	0	0
2939993000	피페린	0	0	0	0
2939994000	니코틴과 그 염	0	0	0	0
2939999000	기타	0	0	0	0
2940001010	갈락토오스	0	0	0	0
2940001020	소르보오스	0	0	0	0
2940001030	키실로오스	0	0	0	0
2940001090	기타	0	0	0	0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0	0	0	0
2940002090	기타	0	0	0	0
2941101000	페니실린 지(G) 칼륨	0	0	0	0
2941109010	페니실린 지(G) 나트륨	0	0	0	0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V)	0	0	0	0
2941109090	기타	0	0	0	0
29412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41209000	기타	0	0	0	0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0	0	0	0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0	0	0	0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0	0	0	0
2941309000	기타	0	0	0	0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2941501000	에리즈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0	0	0	0
2941509000	기타	0	0	0	0
2941902000	11-알파클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틸렌-5-옥시테트라시클린-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0	0	0	0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0	0	0	0
2941909020	레더마이신	0	0	0	0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0	0	0	0
2941909040	류코마이신	0	0	0	0
294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41909099	기타	0	0	0	0
2942001000	케텐	0	0	0	0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0	0	0	0
2942009090	기타	0	0	0	0
3001201000	선(腺) 추출물	0	0	0	0
3001202000	간장 추출물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001203000	담낭 추출물	0	0	0	0
3001204000	췌장 추출물	0	0	0	0
3001205000	위장 추출물	0	0	0	0
3001209000	기타	0	0	0	0
3001901010	인체의 것	0	0	0	0
3001901090	기타	0	0	0	0
3001902010	웅담	0	0	0	0
3001902090	기타	0	0	0	0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0	0	0	0
3001909020	인체의 것	0	0	0	0
3001909090	기타	0	0	0	0
300210100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0	0
3002102010	헤모글로빈	0	0	0	0
3002102020	글로불린(globulin)	0	0	0	0
3002103000	트롬빈(thrombin)과 프로트롬비나제(prothrombinase)	0	0	0	0
3002109010	면역혈청	0	0	0	0
3002109020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3002109030	소호 제 2925.29 호, 제 2933.29 호, 제 2934.99 호, 제 2937.90.1000 호, 제 3002.90.3010 호 또는 제 3907.20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기타	0	0	0	0
3002109040	소호 제 2937.90.9000 호의 것	0	0	0	0
3002109050	소호 제 3002.90.3020 호의 것	0	0	0	0
3002109090	기타	0	0	0	0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2301000	구제역 백신	0	0	0	0
3002309000	기타	0	0	0	0
3002901000	사람의 피	0	0	0	0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2903010	색시톡신(saxitoxin)	0	0	0	0
3002903020	리신(ricin)	0	0	0	0
3002903090	기타	0	0	0	0
3002904000	미생물 배양체	0	0	0	0
3002905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0	0	0	0
3002906000	살균소	0	0	0	0
3002907000	소호 제 2933.29 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0	0	0	0
3002908000	소호 제 3002.10.1000 호, 제 3002.10.20 호나 제 3002.10.3000 호의 것	0	0	0	0
3002909000	기타	0	0	0	0
3003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것)를 함유하는 것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	0	0	0
3003201000	항결핵제와 항암제	0	0	0	0
3003209010	클로람 페니콜제제	0	0	0	0
3003209090	기타	0	0	0	0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0	0	0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0	0	0	0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0	0	0	0
3003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0	0	0	0
3003393000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0	0	0	0
3003394000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0	0	0	0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0	0	0	0
3003396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0	0	0	0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0	0	0	0
3003398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0	0	0	0
3003399000	기타	0	0	0	0
3003401000	항암제	0	0	0	0
3003409110	모르핀제제	0	0	0	0
3003409120	키닌제제	0	0	0	0
3003409130	테오브로민제제	0	0	0	0
3003409210	카페인제제	0	0	0	0
3003409220	스트리키닌제제	0	0	0	0
3003409230	에페드린제제	0	0	0	0
3003409310	코카인제제	0	0	0	0
3003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0	0	0	0
3003409330	니코틴제제	0	0	0	0
3003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0	0	0	0
3003409500	아레코린제제	0	0	0	0
3003409600	피페린제제	0	0	0	0
3003409900	기타	0	0	0	0
30039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0	0	0	0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0	0	0	0
3003909200	항히스타민제제	0	0	0	0
3003909300	비타민제제	0	0	0	0
3003909400	녹용제제	0	0	0	0
3003909500	인삼제제	0	0	0	0
3003909600	로열젤리 제제	0	0	0	0
3003909900	기타	0	0	0	0
3004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0	0	0	0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	0	0	0
30042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0	0	0	0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0	0	0	0
30042092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0	0	0	0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0	0	0	0
3004209900	기타	0	0	0	0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0	0	0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0	0	0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0	0	0	0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0	0	0	0
3004392000	수액선 호르몬제제	0	0	0	0
3004393000	갑상선과 부갑상선 호르몬제제	0	0	0	0
3004394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0	0	0	0
3004395000	부신수질 호르몬제제	0	0	0	0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0	0	0	0
3004397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0	0	0	0
3004399000	기타	0	0	0	0
3004401000	항암제	0	0	0	0
3004409110	모르핀제제	0	0	0	0
3004409120	키닌제제	0	0	0	0
3004409130	테오브로민제제	0	0	0	0
3004409210	카페인제제	0	0	0	0
3004409220	스트리크닌제제	0	0	0	0
3004409230	에페드린제제	0	0	0	0
3004409310	코카인제제	0	0	0	0
3004409320	맥각알카로이드제제	0	0	0	0
3004409330	니코틴제제	0	0	0	0
30044094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0	0	0	0
3004409500	아레코린제제	0	0	0	0
3004409600	피페린제제	0	0	0	0
3004409900	기타	0	0	0	0
3004501000	비타민 A 제제	0	0	0	0
3004502010	비타민 B1 제제	0	0	0	0
3004502090	기타	0	0	0	0
3004503000	비타민 C 제제	0	0	0	0
3004504000	비타민 D 제제	0	0	0	0
3004505000	비타민 E 제제	0	0	0	0
3004506000	비타민 H 제제	0	0	0	0
3004507000	비타민 K 제제	0	0	0	0
3004509000	기타	0	0	0	0
3004901000	항결핵제·구충제 및 항암제	0	0	0	0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0	0	0	0
3004909200	항히스타민제제	0	0	0	0
3004909300	녹용제제	0	0	0	0
3004909400	인삼제제	0	0	0	0
3004909500	로열젤리 제제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004909900	기타	0	0	0	0
3005101000	반창고	0	0	0	0
3005109000	기타	0	0	0	0
3005901000	탈지면	0	0	0	0
3005902000	거즈	0	0	0	0
3005903000	붕대	0	0	0	0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0	0	0	0
3005909000	기타	0	0	0	0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0	0	0	0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0	0	0	0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0	0	0	0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0	0	0	0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0	0	0	0
3006105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0	0	0	0
3006105090	기타	0	0	0	0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0	0	0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0	0	0	0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	0	0	0	0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	0	0	0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	0	0	0
3006403000	뼈 형성용 시멘트	0	0	0	0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0	0	0	0
3006600000	호르몬, 제 2937 호의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0	0	0
3006700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0	0	0	0
30069100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0	0	0	0
3006921010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6921090	기타	0	0	0	0
300692201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	0	0	0	0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0	0	0	0
3006922031	색시톡신(saxitoxin)	0	0	0	0
3006922032	리신(ricin)	0	0	0	0
3006922090	기타	0	0	0	0
3006923000	제 3003 호 또는 제 3004 호의 것	0	0	0	0
3006924000	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것	0	0	0	0
3006925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0	0	0	0
3101001010	구아노(guano)	0	0	0	0
3101001090	기타	0	0	0	0
3101002000	식물성 비료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1010030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0	0	0	0
3102210000	황산암모늄	0	0	0	0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0	0	0	0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0	0	0	0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102501000	천연의 것	0	0	0	0
3102509000	기타	0	0	0	0
3102600000	질산칼슘과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0	0	0	0
3102800000	요소와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0	0	0	0
3102909000	기타	0	0	0	0
3103100000	과인산석회	0	0	0	0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0	0	0	0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0.2 이상으로 한정한다)	0	0	0	0
3103903000	그 밖의 인산석회	0	0	0	0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0	0	0	0
3103909000	기타	0	0	0	0
3104200000	염화칼륨	0	0	0	0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2 이하인 것	0	0	0	0
3104309000	기타	0	0	0	0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0 이하인 것	0	0	0	0
3104901090	기타	0	0	0	0
3104909000	기타	0	0	0	0
3105100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	0	0	0
3105200000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0	0	0	0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0	0	0	0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과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0	0	0	0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0	0	0	0
3105590000	기타	0	0	0	0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0	0	0	0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0	0	0	0
3105909000	기타	0	0	0	0
320110000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0	0	0	0
3201200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201901010	망그로브 추출물(extract)	0	0	0	0
3201901020	미로보란 추출물(extract)	0	0	0	0
3201901030	수마크 추출물(extract)	0	0	0	0
3201901040	감비어 추출물(extract)	0	0	0	0
3201901090	기타	0	0	0	0
3201902000	탄닌(탄닌산)과 그 염	0	0	0	0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나 에스테르	0	0	0	0
3201904000	그 밖의 탄닌의 유도체	0	0	0	0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0	0	0	0
3202102000	염화 알킬술폰	0	0	0	0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0	0	0	0
3202109000	기타	0	0	0	0
3202901000	무기유연제	0	0	0	0
3202902000	인조 탈회제	0	0	0	0
3202909000	기타	0	0	0	0
3203001100	천연 인디고(indigo)	0	0	0	0
3203001910	로그우드(logwood)	0	0	0	0
3203001920	백단향(白檀香)	0	0	0	0
3203001930	엽록소	0	0	0	0
3203001990	기타	0	0	0	0
3203002010	코치니엘(cochineal)	0	0	0	0
3203002020	커미즈(kermes)	0	0	0	0
3203002030	세피아(sepia)	0	0	0	0
3203002090	기타	0	0	0	0
32030030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0	0	0	0
3204119000	기타	0	0	0	0
3204121000	산성염료와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22000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50000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92000	래피드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93000	황화염료 및 황화 건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99000	기타	0	0	0	0
3204200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0	0	0	0
320490101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204901090	기타	0	0	0	0
3204909000	기타	0	0	0	0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0	0	0	0
3205009000	기타	0	0	0	0
3206110000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0	0	0	0
3206190000	기타	0	0	0	0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0	0	0	0
3206411000	군청	0	0	0	0
3206419000	기타	0	0	0	0
3206421000	리도폰(lithopone)	0	0	0	0
3206429000	기타	0	0	0	0
3206491000	아연회	0	0	0	0
3206492000	광물성 블랙	0	0	0	0
3206493000	어스칼러(colored earth)	0	0	0	0
3206494000	용해성 반다이케브라운	0	0	0	0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0	0	0	0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0	0	0	0
3206499000	기타	0	0	0	0
320650000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0	0	0	0
320710000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0	0	0
3207201000	법랑과 유약	0	0	0	0
3207202000	슬립	0	0	0	0
3207209000	기타	0	0	0	0
3207301000	금으로 만든 것	0	0	0	0
3207302000	백금으로 만든 것	0	0	0	0
3207303000	팔라듐으로 만든 것	0	0	0	0
3207304000	은으로 만든 것	0	0	0	0
3207309000	기타	0	0	0	0
32074000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208101010	에나멜	0	0	0	0
3208101090	기타	0	0	0	0
320810200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0	0	0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0	0	0	0
3208201011	에나멜	0	0	0	0
3208201019	기타	0	0	0	0
32082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0	0	0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0	0	0	0
3208202011	에나멜	0	0	0	0
3208202019	기타	0	0	0	0
3208202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0	0	0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208901011	에나멜	0	0	0	0
3208901019	기타	0	0	0	0
32089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0	0	0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0	0	0	0
3208909011	에나멜	0	0	0	0
3208909019	기타	0	0	0	0
3208909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0	0	0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0	0	0	0
3209101011	에나멜	0	0	0	0
3209101019	기타	0	0	0	0
32091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0	0	0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0	0	0	0
3209102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0	0	0
3209901011	에나멜	0	0	0	0
3209901019	기타	0	0	0	0
3209901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0	0	0
3209909011	에나멜	0	0	0	0
3209909019	기타	0	0	0	0
3209909020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0	0	0
3210001011	에나멜	0	0	0	0
3210001019	기타	0	0	0	0
3210001091	에나멜	0	0	0	0
3210001099	기타	0	0	0	0
3210002010	오일 바니시(varnish)	0	0	0	0
3210002020	락・천연 검이나 천연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arnish)와 래커(lacquer)	0	0	0	0
3210002030	역청질・피치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arnish)	0	0	0	0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액상 바니시(varnish)	0	0	0	0
3210003010	디스템퍼(distemper)	0	0	0	0
3210003090	기타	0	0	0	0
3211000000	조제 드라이어	0	0	0	0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0	0	0	0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0	0	0	0
3212909000	기타	0	0	0	0
3213101000	유성 물감	0	0	0	0
3213102000	수성 물감	0	0	0	0
3213109000	기타	0	0	0	0
3213901000	유성 물감	0	0	0	0
3213902000	수성 물감	0	0	0	0
3213909000	기타	0	0	0	0
32141010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0	0	0	0
3214101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0	0	0	0
3214109000	기타	0	0	0	0
3214900000	기타	0	0	0	0
3215110000	흑색	0	0	0	0
3215190000	기타	0	0	0	0
3215901000	필기용 잉크	0	0	0	0
3215902000	제도용 잉크	0	0	0	0
3215903000	복사용 잉크	0	0	0	0
3215904010	유성	0	0	0	0
3215904020	수성	0	0	0	0
3215904030	유성 및 수성 겸용	0	0	0	0
3215905000	금속성 잉크	0	0	0	0
3215906010	유성	0	0	0	0
3215906020	수성	0	0	0	0
3215906030	유성 및 수성 겸용	0	0	0	0
3215909000	기타	0	0	0	0
3301120000	오렌지유	0	0	0	0
3301130000	레몬유	0	0	0	0
3301190000	기타	0	0	0	0
3301240000	박하[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유	0	0	0	0
33012500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0	0	0	0
3301291000	바닐라유	0	0	0	0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0	0	0	0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0	0	0	0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0	0	0	0
3301299000	기타	0	0	0	0
3301300000	레지노이드(resinoid)	0	0	0	0
3301901000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0	0	0	0
3301902000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0	0	0	0
3301903000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0	0	0	0
3301904100	아편에서 추출한 것	0	0	0	0
3301904200	감초에서 추출한 것	0	0	0	0
3301904300	홉(hop)에서 추출한 것	0	0	0	0
3301904400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0	0	0	0
3301904510	백삼에서 추출한 것	0	0	0	0
3301904530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0	0	0	0
3301904600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0	0	0	0
3301904700	생칠(生漆)에서 추출한 것	0	0	0	0
3301904800	기타	0	0	0	0
3302101000	식품공업용	0	0	0	0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302102019	기타	0	0	0	0
3302102090	기타	0	0	0	0
3302900000	기타	0	0	0	0
3303001000	향수	0	0	0	0
3303002000	화장수	0	0	0	0
3304101000	립스틱	0	0	0	0
3304109000	기타	0	0	0	0
3304201000	아이섀도	0	0	0	0
3304209000	기타	0	0	0	0
3304301000	네일에나멜	0	0	0	0
3304309000	기타	0	0	0	0
3304911000	페이스파우다	0	0	0	0
3304912000	베이비파우다(탈쿰파우다를 포함한다)	0	0	0	0
3304919000	기타	0	0	0	0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0	0	0	0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0	0	0	0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0	0	0	0
3304999000	기타	0	0	0	0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0	0	0	0
3305300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0	0	0	0
3305902000	헤어크림	0	0	0	0
3305909000	기타	0	0	0	0
3306100000	치약	0	0	0	0
3306201011	70 덱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0	0
3306201019	기타	0	0	0	0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를 초과하는 것	0	0	0	0
3306209000	기타	0	0	0	0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0	0	0	0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0	0	0	0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0	0	0	0
3307109000	기타	0	0	0	0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0	0	0	0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0	0	0	0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0	0	0	0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0	0	0	0
3307490000	기타	0	0	0	0
3307901000	탈모제	0	0	0	0
3307902000	향낭	0	0	0	0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0	0	0	0
3307909000	기타	0	0	0	0
3401111000	약용비누	0	0	0	0
3401191010	세탁비누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0	0	0	0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3402110000	음이온성	0	0	0	0
3402120000	양이온성	0	0	0	0
340213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402139000	기타	0	0	0	0
3402190000	기타	0	0	0	0
3402201000	조제 세제	0	0	0	0
3402202000	조제 청정제	0	0	0	0
3402209000	기타	0	0	0	0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0	0	0	0
3402902000	조제 세제	0	0	0	0
3402903000	조제 청정제	0	0	0	0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0	0	0	0
34031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0	0	0	0
3403119000	기타	0	0	0	0
3403191000	조제 절삭유	0	0	0	0
3403192000	볼트 또는 너트 방출제	0	0	0	0
3403193000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0	0	0	0
3403194000	이형(mold release) 조제품	0	0	0	0
3403195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0	0	0	0
3403199000	기타	0	0	0	0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0	0	0	0
34039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0	0	0	0
3403919000	기타	0	0	0	0
3403991000	조제 절삭유	0	0	0	0
3403992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0	0	0	0
3403999000	기타	0	0	0	0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0	0	0	0
3404901010	클로로 파라핀왁스	0	0	0	0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0	0	0	0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0	0	0	0
3404901090	기타	0	0	0	0
3404902000	조제 왁스	0	0	0	0
340510000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0	0	0
340520000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0	0	0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0	0	0	0
340540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및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연마용 조제품				
3405901010	초크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405901020	규조토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405901090	기타	0	0	0	0
3405909000	기타	0	0	0	0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0	0	0	0
3407002000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0	0	0	0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0	0	0	0
3501101000	커피 크리머 제조용	0	0	0	0
3501109000	기타	0	0	0	0
3501901110	커피 크리머 제조용	0	0	0	0
3501901190	기타	0	0	0	0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0	0	0	0
3501902000	카세인 글루(casein glue)	0	0	0	0
3502110000	건조한 것	0	0	0	0
3502190000	기타	0	0	0	0
350220000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0	0	0	0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0	0	0	0
3502909000	기타	0	0	0	0
3503001010	젤라틴	0	0	0	0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0	0	0	0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isinglass)	0	0	0	0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0	0	0	0
3504001010	펩톤(peptone)	0	0	0	0
3504001020	펩톤(peptone) 유도체	0	0	0	0
3504002010	케라틴	0	0	0	0
3504002020	핵산단백질	0	0	0	0
3504002030	유리단백질	0	0	0	0
3504002090	기타	0	0	0	0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	0	0	0	0
3505101000	덱스트린	0	0	0	0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0	0	0	0
350610100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506109000	기타	0	0	0	0
3506910000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0	0	0	0
3506991000	비엔나 글루(glue)	0	0	0	0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glue)	0	0	0	0
3506993000	규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0	0	0	0
3506999000	기타	0	0	0	0
350710000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507901010	트립신	0	0	0	0
3507901020	키모트립신	0	0	0	0
3507901030	알파아밀라제	0	0	0	0
3507901040	리파제	0	0	0	0
3507901090	기타	0	0	0	0
3507902000	펩신	0	0	0	0
3507903000	맥아효소	0	0	0	0
3507904010	파파인	0	0	0	0
3507904020	브로멜라인	0	0	0	0
3507904030	피신	0	0	0	0
3507906010	아밀라제	0	0	0	0
3507906020	프로테아제	0	0	0	0
3507907000	펙틱효소	0	0	0	0
3507908000	시토크롬 시(C) 산화효소	0	0	0	0
3507909000	기타	0	0	0	0
3601001000	흑색화약	0	0	0	0
3601002000	무연화약	0	0	0	0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0	0	0	0
3603001000	도화선	0	0	0	0
3603002000	도폭선	0	0	0	0
3603003000	뇌관	0	0	0	0
3603004000	점화기	0	0	0	0
3603005000	전기뇌관	0	0	0	0
3604100000	불꽃제품	0	0	0	0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0	0	0	0
3604909000	기타	0	0	0	0
3605001000	황린(黃燐) 성냥	0	0	0	0
3605009000	기타	0	0	0	0
3606100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0	0	0	0
3606901010	메타 연료	0	0	0	0
3606901020	헥사민	0	0	0	0
3606901030	고체 알코올	0	0	0	0
3606901090	기타	0	0	0	0
3606902010	라이터 돌	0	0	0	0
3606902090	기타	0	0	0	0
3606909010	라이터 돌	0	0	0	0
3606909090	기타	0	0	0	0
3701100000	엑스선용	0	0	0	0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0	0	0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3701309100	인쇄제판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1309910	천문용	0	0	0	0
37013099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1309991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	0	0	0	0
3701309999	기타	0	0	0	0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37019191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1919910	천문용	0	0	0	0
37019199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1919990	기타	0	0	0	0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37019991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1999910	천문용	0	0	0	0
37019999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1999990	기타	0	0	0	0
3702100000	엑스선용	0	0	0	0
3702311110	네거티브	0	0	0	0
3702311120	포지티브	0	0	0	0
3702311210	네거티브	0	0	0	0
3702311220	포지티브	0	0	0	0
3702311910	네거티브	0	0	0	0
3702311920	포지티브	0	0	0	0
370231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31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31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319090	기타	0	0	0	0
3702321110	네거티브	0	0	0	0
3702321120	포지티브	0	0	0	0
3702321210	네거티브	0	0	0	0
3702321220	포지티브	0	0	0	0
3702321910	네거티브	0	0	0	0
3702321920	포지티브	0	0	0	0
370232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32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32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0	0	0
3702329090	기타	0	0	0	0
3702391110	네거티브	0	0	0	0
3702391120	포지티브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702391210	네거티브	0	0	0	0
3702391220	포지티브	0	0	0	0
3702391910	네거티브	0	0	0	0
3702391920	포지티브	0	0	0	0
370239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39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39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399090	기타	0	0	0	0
3702411010	네거티브	0	0	0	0
3702411020	포지티브	0	0	0	0
370241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41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41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41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419090	기타	0	0	0	0
3702421010	네거티브	0	0	0	0
3702421020	포지티브	0	0	0	0
370242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42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42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429090	기타	0	0	0	0
3702431010	네거티브	0	0	0	0
3702431020	포지티브	0	0	0	0
370243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43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43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439090	기타	0	0	0	0
3702441010	네거티브	0	0	0	0
3702441020	포지티브	0	0	0	0
370244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44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44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449090	기타	0	0	0	0
3702521010	네거티브	0	0	0	0
3702521020	포지티브	0	0	0	0
370252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52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52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529090	기타	0	0	0	0
3702530000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3702541010	네거티브	0	0	0	0
3702541020	포지티브	0	0	0	0
370254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54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54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549090	기타	0	0	0	0
3702551010	네거티브	0	0	0	0
3702551020	포지티브	0	0	0	0
370255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55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55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559090	기타	0	0	0	0
3702561010	네거티브	0	0	0	0
3702561020	포지티브	0	0	0	0
370256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56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56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56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569090	기타	0	0	0	0
3702961010	네거티브	0	0	0	0
3702961020	포지티브	0	0	0	0
370296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96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96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96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969090	기타	0	0	0	0
3702971010	네거티브	0	0	0	0
3702971020	포지티브	0	0	0	0
370297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97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97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97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979090	기타	0	0	0	0
3702981010	네거티브	0	0	0	0
3702981020	포지티브	0	0	0	0
3702982000	인쇄제판용	0	0	0	0
3702983000	인쇄회로기판용	0	0	0	0
3702989010	광전녹음용	0	0	0	0
3702989020	항공촬영용	0	0	0	0
3702989090	기타	0	0	0	0
3703101010	엑스선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703101020	심전계용	0	0	0	0
3703101030	사진복사용	0	0	0	0
3703101040	기록용	0	0	0	0
3703101090	기타	0	0	0	0
3703109010	엑스선용	0	0	0	0
3703109020	심전계용	0	0	0	0
3703109030	사진복사용	0	0	0	0
3703109040	기록용	0	0	0	0
3703109090	기타	0	0	0	0
3703201000	엑스선용	0	0	0	0
3703202000	심전계용	0	0	0	0
3703203000	사진복사용	0	0	0	0
3703204000	기록용	0	0	0	0
3703209000	기타	0	0	0	0
3703901000	엑스선용	0	0	0	0
3703902000	심전계용	0	0	0	0
3703903000	사진복사용	0	0	0	0
3703904000	기록용	0	0	0	0
3703909000	기타	0	0	0	0
3704001110	뉴스용	0	0	0	0
370400112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704001190	기타	0	0	0	0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엽서·그림엽서·카드 및 캘린더 제작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3704001900	기타	0	0	0	0
3704002000	사진 인화지·판지와 직물	0	0	0	0
3705101000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0	0	0	0
3705109000	기타	0	0	0	0
3705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3705902010	엑스선 촬영한 것	0	0	0	0
3705902020	도서를 복사한 것	0	0	0	0
3705902030	서류를 복사한 것	0	0	0	0
3705903000	마이크로필름	0	0	0	0
3705909010	학술연구용	0	0	0	0
3705909020	천문용	0	0	0	0
3705909030	항공촬영용	0	0	0	0
3705909090	기타	0	0	0	0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0	0	0	0
3706102000	뉴스용	0	0	0	0
3706103010	편집용 필름(rush)	0	0	0	0
37061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0	0	0	0
37061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 제작자가 만든 영화	0	0	0	0
3706105010	네거티브	0	0	0	0
3706106010	네거티브	0	0	0	0
3706106020	포지티브	0	0	0	0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0	0	0	0
3706902000	뉴스용	0	0	0	0
3706903010	편집용 필름(rush)	0	0	0	0
37069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0	0	0	0
37069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0	0	0	0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 제작자가 만든 영화	0	0	0	0
3706905010	네거티브	0	0	0	0
3706905020	포지티브	0	0	0	0
3706906010	네거티브	0	0	0	0
3706906020	포지티브	0	0	0	0
3707100000	감광유제	0	0	0	0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370790102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	0	0	0
3707901090	기타	0	0	0	0
3707902910	엑스선용	0	0	0	0
3707902990	기타	0	0	0	0
3707903910	엑스선용	0	0	0	0
3707903920	인쇄제판용	0	0	0	0
3707903990	기타	0	0	0	0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0	0	0	0
3707909200	조색제	0	0	0	0
3707909300	세정제	0	0	0	0
3707909400	섬광재료	0	0	0	0
3707909900	기타	0	0	0	0
3801101000	이차전지 제조용	0	0	0	0
3801109000	기타	0	0	0	0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0	0	0	0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0	0	0	0
3801900000	기타	0	0	0	0
3802100000	활성탄	0	0	0	0
3802901010	활성 규조토	0	0	0	0
3802901020	활성토	0	0	0	0
3802901090	기타	0	0	0	0
3802902000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0	0	0	0
380300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804001000	액체 상태인 것	0	0	0	0
3804009000	기타	0	0	0	0
3805101000	검테레빈유	0	0	0	0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0	0	0	0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0	0	0	0
3805900000	기타	0	0	0	0
3806101000	로진(rosin)	0	0	0	0
3806102000	수지산	0	0	0	0
3806201000	로진염	0	0	0	0
3806202000	수지산염	0	0	0	0
3806209000	기타	0	0	0	0
3806300000	에스테르 검(ester gum)	0	0	0	0
3806902000	런검(gum)	0	0	0	0
3806903000	로진스피릿과 로진유	0	0	0	0
3806909000	기타	0	0	0	0
3807001000	목(木)타르・목(木)타르유와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0	0	0	0
3807002000	목(木)나프타	0	0	0	0
3807003000	식물성 피치(pitch)	0	0	0	0
3807009010	목초액	0	0	0	0
3807009090	기타	0	0	0	0
38085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08509000	기타	0	0	0	0
38089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08919000	기타	0	0	0	0
3808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08929000	기타	0	0	0	0
3808931000	제초제	0	0	0	0
3808932000	발아억제제	0	0	0	0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0	0	0	0
3808940000	소독제	0	0	0	0
3808991000	살서제(쥐약)	0	0	0	0
3808999000	기타	0	0	0	0
380910000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809910000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0	0	0
38099200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0	0	0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0	0	0	0
3810109000	기타	0	0	0	0
3810901000	납붙임・땜질이나 용접용의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0	0	0	0
3810909000	기타	0	0	0	0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811190000	기타	0	0	0	0
3811290000	기타	0	0	0	0
3811900000	기타	0	0	0	0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812103000	티우람 술파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812105000	머캡프토 벤조티아졸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술파이드(DM)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812109000	기타	0	0	0	0
3812301000	산화방지 조제품	0	0	0	0
38123020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0	0	0	0
3813001000	소화기용 조제품	0	0	0	0
3813002000	소화기용 장전물	0	0	0	0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0	0	0	0
3814001010	아세톤·초산메틸과 메탄올 혼합물	0	0	0	0
3814001020	초산에틸·부틸알코올과 톨루엔 혼합물	0	0	0	0
3814001090	기타	0	0	0	0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3814002190	기타	0	0	0	0
3814002900	기타	0	0	0	0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0	0	0	0
3815121000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	0	0	0	0
3815122000	팔라듐이나 팔라듐화합물의 것	0	0	0	0
3815129000	기타	0	0	0	0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이나 철화합물의 것	0	0	0	0
3815192000	티타늄이나 티타늄화합물의 것	0	0	0	0
3815199000	기타	0	0	0	0
3815901000	반응시작제	0	0	0	0
3815909000	기타	0	0	0	0
3816001000	내화시멘트	0	0	0	0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0	0	0	0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0	0	0	0
3816009000	기타	0	0	0	0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0	0	0	0
3818002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0	0	0	0
3819001000	유압제동액	0	0	0	0
3819002000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0	0	0	0
3820001000	부동(不凍) 조제품	0	0	0	0
3820002000	조제 제빙액	0	0	0	0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인간이나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조제 배양제				
3822001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0	0
3822001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0	0
3822001013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0	0
3822001019	기타	0	0	0	0
3822001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2001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0	0
3822001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0	0
3822001093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2001099	기타	0	0	0	0
3822002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0	0
3822002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0	0
3822002013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이나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0	0	0	0
3822002019	기타	0	0	0	0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2002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0	0	0	0
3822002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0	0	0	0
3822002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web)[제 48 류의 주 제 8 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2002099	기타	0	0	0	0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0	0	0	0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 퍼센트인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 퍼센트인 것	0	0	0	0
3822003058	소호 제 3706.10.1000 호, 제 3706.10.5020 호 및 제 3706.90.6020 호의 것	0	0	0	0
3822003059	소호 제 3706.10.2000 호 및 제 3706.90.2000 호의 것	0	0	0	0
3822003060	소호 제 3706.10.3010 호, 제 3706.10.4000 호, 제 3706.90.3010 호 및 제 3706.90.4000 호의 것	0	0	0	0
3822003061	소호 제 3706.10.3020 호 및 제 3706.90.3020 호의 것	0	0	0	0
3822003062	소호 제 3706.10.3030 호 및 제 3706.90.3030 호의 것	0	0	0	0
3822003063	소호 제 3706.10.5010 호 및 제 3706.90.6010 호의 것	0	0	0	0
3822003064	소호 제 3706.10.6010 호의 것	0	0	0	0
3822003065	소호 제 3706.10.6020 호의 것	0	0	0	0
3822003066	소호 제 3706.90.1000 호 및 제 3706.90.5020 호의 것	0	0	0	0
3822003067	소호 제 3706.90.5010 호의 것	0	0	0	0
3823120000	올레인산	0	0	0	0
3823130000	톨유(tall oil) 지방산	0	0	0	0
3823191000	팔미트산	0	0	0	0
3823199000	기타	0	0	0	0
3823701000	세틸 알코올	0	0	0	0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0	0	0	0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0	0	0	0
3823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3709090	기타	0	0	0	0
382410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4300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4400000	시멘트용・ 모르타르용이나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0	0	0	0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0	0	0	0
3824600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본 재료로 한 세정제	0	0	0	0
3824719000	기타	0	0	0	0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이나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0	0	0	0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4770000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이나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나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0	0	0	0
3824790000	기타	0	0	0	0
3824810000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0	0	0	0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 (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0	0	0	0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0	0	0	0
3824901000	크롬광 배소물	0	0	0	0
3824902100	진공관의 게터(getter)	0	0	0	0
3824902200	탄소저항 조제품이나 세라믹솔리드 저항 조제품	0	0	0	0
38249024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4902490	기타	0	0	0	0
38249031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0	0	0	0
3824903200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0	0	0	0
38249033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0	0	0	0
3824903400	알킬(메틸・에틸・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0	0	0	0
38249035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 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0	0	0	0
3824903600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딕 디할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0	0	0	0
38249037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38249038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 또는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0	0	0	0
3824903911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엔, 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 또는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0	0	0	0
3824903919	기타	0	0	0	0
382490392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2-티올 또는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0	0	0	0
3824903930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그룹 이외에는 더 이상의 탄소원자가 없는 탄소화합물 그룹에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로 주로 구성된 화학품의 기타 혼합물	0	0	0	0
3824903990	기타	0	0	0	0
3824904100	혼합 폴리에틸렌글리콜	0	0	0	0
3824904200	이온교환체	0	0	0	0
3824904300	스케일방지제	0	0	0	0
3824904400	바니시(varnish)경화제나 글루(glue)의 경화제	0	0	0	0
3824905100	잉크제거제	0	0	0	0
3824905200	등사판 원지수정제	0	0	0	0
3824905300	수정액	0	0	0	0
382490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0	0	0	0
382490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0	0	0	0
3824906300	소다석회	0	0	0	0
3824906400	수화실리카겔	0	0	0	0
3824906500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0	0	0	0
3824906600	세라믹콘덴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0	0	0	0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0	0	0	0
3824907200	염화파라핀	0	0	0	0
3824907300	소포제	0	0	0	0
3824907400	발포제	0	0	0	0
3824907500	조제 탄산칼슘	0	0	0	0
3824907600	액정용 조제품	0	0	0	0
382490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0	0	0	0
3824908010	메틸에틸케톤 퍼록사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824908090	기타	0	0	0	0
3824909010	미량요소비료(제 31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0	0	0	0
3824909030	추잉껌 베이스	0	0	0	0
3824909050	나프텐산,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0	0	0	0
3824909061	니코틴을 함유한 것	0	0	0	0
3824909069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824909090	기타	0	0	0	0
3825100000	생활폐기물	0	0	0	0
3825200000	하수 찌꺼기	0	0	0	0
3825301000	제 3005 호의 것	0	0	0	0
3825302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0	0	0	0
3825303000	소호 제 4015.11 호의 것	0	0	0	0
3825304000	소호 제 9018.3 호의 것	0	0	0	0
3825410000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5490000	기타	0	0	0	0
3825500000	금속세정액・유압액・브레이크액과 부동액 폐기물	0	0	0	0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5690000	기타	0	0	0	0
3825900000	기타	0	0	0	0
382600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0	0	0	0
3902900000	기타	0	0	0	0
3903110000	발포성의 것	0	0	0	0
3903190000	기타	0	0	0	0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0	0	0	0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0	0	0	0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0	0	0	0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0	0	0	0
3904220000	가소화한 것	0	0	0	0
3904400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0	0	0	0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0	0	0	0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0	0	0	0
3904690000	기타	0	0	0	0
3904900000	기타	0	0	0	0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0	0	0	0
3905190000	기타	0	0	0	0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0	0	0	0
3905290000	기타	0	0	0	0
3905910000	공중합체(共重合體)	0	0	0	0
3905990000	기타	0	0	0	0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0	0	0	0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0	0	0	0
3907201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0	0	0	0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0	0	0	0
3907209000	기타	0	0	0	0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3907309000	기타	0	0	0	0
3907500000	알키드수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90760000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0	0	0	0
3907700000	폴리(락트산)	0	0	0	0
3907910000	불포화의 것	0	0	0	0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0	0	0	0
3907999000	기타	0	0	0	0
3909101000	요소수지	0	0	0	0
3909102000	티오요소수지	0	0	0	0
3909200000	멜라민수지	0	0	0	0
3909300000	그 밖의 아미노수지	0	0	0	0
3909400000	페놀수지	0	0	0	0
3909500000	폴리우레탄	0	0	0	0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3910009010	실리콘오일	0	0	0	0
3910009020	실리콘고무	0	0	0	0
3910009090	기타	0	0	0	0
3911101000	석유수지	0	0	0	0
3911102000	쿠마론・인덴이나 쿠마론-인덴수지	0	0	0	0
3911103000	폴리테르펜	0	0	0	0
3911901000	폴리술파이드	0	0	0	0
3911902000	폴리술폰	0	0	0	0
3911903000	푸란수지	0	0	0	0
3911909000	기타	0	0	0	0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0	0	0	0
3912120000	가소화한 것	0	0	0	0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0	0	0	0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0	0	0	0
3912319000	기타	0	0	0	0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0	0	0	0
3912399000	기타	0	0	0	0
3912901000	재생 셀룰로오스	0	0	0	0
3912909000	기타	0	0	0	0
3913101000	알긴산 나트륨	0	0	0	0
3913102000	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	0	0	0	0
3913109000	기타	0	0	0	0
3913901000	경화단백질	0	0	0	0
3913902010	염화고무	0	0	0	0
3913902020	염산고무	0	0	0	0
3913902030	산화고무	0	0	0	0
3913902040	환화고무	0	0	0	0
3913902090	기타	0	0	0	0
3913909010	덱스트란	0	0	0	0
3913909090	기타	0	0	0	0
3914001000	양이온성의 것	0	0	0	0
39140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915101000	제조 당시 필름·시트(sheet)·판 및 박(箔) 상태의 것	0	0	0	0
3915102000	제조 당시 파이프 및 호스 상태의 것	0	0	0	0
3915109000	기타	0	0	0	0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로 만든 것	0	0	0	0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15905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	0	0	0
3915909000	기타	0	0	0	0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690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	0	0	0
3916909000	기타	0	0	0	0
391710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0	0	0	0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0	0	0	0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29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	0	0	0
3917299000	기타	0	0	0	0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319000	기타	0	0	0	0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329000	기타	0	0	0	0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339000	기타	0	0	0	0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7399000	기타	0	0	0	0
3917400000	연결구류	0	0	0	0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0	0	0	0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18109000	기타	0	0	0	0
391890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919900000	기타	0	0	0	0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20430000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0	0	0	0
3920490000	기타	0	0	0	0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20590000	기타	0	0	0	0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	0	0	0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	0	0	0
392071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	0	0	0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	0	0	0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0	0	0	0
3920799000	기타	0	0	0	0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0	0	0	0
3920920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	0	0	0
39209300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0	0	0	0
39209400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0	0	0	0
3920991000	항공기용	0	0	0	0
3920999010	폴리이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20999090	기타	0	0	0	0
3921110000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2112000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2113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	0	0	0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	0	0	0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21191090	기타	0	0	0	0
392119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21192090	기타	0	0	0	0
392119301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21193090	기타	0	0	0	0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	0	0	0
3921194090	기타	0	0	0	0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0	0	0	0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	0	0	0
3921195090	기타	0	0	0	0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0	0	0	0
392119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	0	0	0
392119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92119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0	0	0	0
3921199090	기타	0	0	0	0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21904010	경질의 것	0	0	0	0
3921904020	연질의 것	0	0	0	0
392190501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21905090	기타	0	0	0	0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	0	0	0
3921906090	기타	0	0	0	0
392190701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	0	0	0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0	0	0	0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0	0	0	0
3921907090	기타	0	0	0	0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0	0	0	0
392190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	0	0	0
392190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0	0	0	0
392190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0	0	0	0
392190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	0	0	0
3921909090	기타	0	0	0	0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0	0	0	0
3922102000	세면대	0	0	0	0
3922103000	설거지통	0	0	0	0
3922200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0	0	0	0
3922901000	비데	0	0	0	0
3922909000	기타	0	0	0	0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0	0	0	0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392330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392340000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3923500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3923900000	기타	0	0	0	0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0	0	0	0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0	0	0	0
3924902000	탁상보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3924909000	기타	0	0	0	0
392510000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252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0	0	0	0
392530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3925900000	기타	0	0	0	0
3926101000	필통과 지우개	0	0	0	0
3926102000	바인더와 앨범	0	0	0	0
3926109000	기타	0	0	0	0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0	0	0	0
3926300000	가구・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0	0	0	0
392640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0	0	0	0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0	0	0	0
3926902000	부채와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살과 자루 및 살과 자루의 부분품	0	0	0	0
3926903000	레이블과 태그	0	0	0	0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0	0	0	0
3926905000	그림틀・사진틀・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0	0	0	0
3926909000	기타	0	0	0	0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4001211000	알 · 에스 · 에스 1 엑스	0	0	0	0
4001212000	알 · 에스 · 에스 1 호	0	0	0	0
4001213000	알 · 에스 · 에스 2 호	0	0	0	0
4001214000	알 · 에스 · 에스 3 호	0	0	0	0
4001215000	알 · 에스 · 에스 4 호	0	0	0	0
4001216000	알 · 에스 · 에스 5 호	0	0	0	0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0	0	0	0
4001290000	기타	0	0	0	0
4001301000	치클검(chicle gum)	0	0	0	0
4001309000	기타	0	0	0	0
4002110000	라텍스	0	0	0	0
4002190000	기타	0	0	0	0
4002201000	라텍스	0	0	0	0
4002209000	기타	0	0	0	0
4002311000	라텍스	0	0	0	0
4002319000	기타	0	0	0	0
4002391000	라텍스	0	0	0	0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0	0	0	0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0	0	0	0
4002410000	라텍스	0	0	0	0
4002490000	기타	0	0	0	0
4002510000	라텍스	0	0	0	0
4002590000	기타	0	0	0	0
4002601000	라텍스	0	0	0	0
4002609000	기타	0	0	0	0
4002701000	라텍스	0	0	0	0
4002801000	라텍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002809000	기타	0	0	0	0
4002910000	라텍스	0	0	0	0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0	0	0	0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0	0	0	0
4002993000	티오플라스트(TM)	0	0	0	0
4002999000	기타	0	0	0	0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나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과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0	0	0	0
4005101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	0	0	0	0
4005109000	기타	0	0	0	0
4005200000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0	0	0
4005910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	0	0	0	0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0	0	0	0
4005999000	기타	0	0	0	0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0	0	0	0
4006901000	고무막대(rod)	0	0	0	0
4006902000	고무관	0	0	0	0
4006903000	고무형재(形材)	0	0	0	0
4006904000	고무디스크・링과 와셔	0	0	0	0
4006905000	고무실	0	0	0	0
4006909000	기타	0	0	0	0
4007002000	고무끈	0	0	0	0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0	0	0	0
4008119000	기타	0	0	0	0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0	0	0	0
4008199000	기타	0	0	0	0
40082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0	0	0	0
4008219000	기타	0	0	0	0
40082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0	0	0	0
4008299000	기타	0	0	0	0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	0	0	0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0	0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	0	0	0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0	0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	0	0	0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0	0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	0	0	0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0	0
40101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0	0	0	0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0	0	0	0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010199000	기타	0	0	0	0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010390000	기타	0	0	0	0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0	0	0	0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0	0	0	0
4011109000	기타	0	0	0	0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0	0	0
4011201090	기타	0	0	0	0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0	0	0
4011202090	기타	0	0	0	0
4011209000	기타	0	0	0	0
4011300000	항공기용	0	0	0	0
4011400000	모터사이클용	0	0	0	0
4011500000	자전거용	0	0	0	0
4011610000	농경용이나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0	0	0	0
40116200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0116300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4011690000	기타	0	0	0	0
4011920000	농경용이나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0	0	0	0
40119300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011940000	건설용이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011990000	기타	0	0	0	0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	0	0	0
401212000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	0	0	0	0
4012130000	항공기용	0	0	0	0
4012190000	기타	0	0	0	0
4012201000	항공기용	0	0	0	0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	0	0	0
40122090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	0	0	0	0
4012209090	기타	0	0	0	0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0	0	0	0
4012901020	쿠션 타이어	0	0	0	0
4012901030	타이어트래드	0	0	0	0
4012901040	타이어 플랩	0	0	0	0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0	0	0	0
4012909020	쿠션 타이어	0	0	0	0
4012909030	타이어트래드	0	0	0	0
4012909040	타이어 플랩	0	0	0	0
4012909090	기타	0	0	0	0
401310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	0	0	0
401310200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	0	0	0	0
4013200000	자전거용	0	0	0	0
4013901000	항공기용	0	0	0	0
4013909010	모터싸이클이나 모터스쿠터용	0	0	0	0
4013909020	산업용 차량이나 농경용 기계의 것	0	0	0	0
4013909090	기타	0	0	0	0
4014100000	콘돔	0	0	0	0
4014901000	젖꼭지	0	0	0	0
4014909000	기타	0	0	0	0
4015110000	외과용	0	0	0	0
4015190000	기타	0	0	0	0
4015901000	잠수복	0	0	0	0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0	0	0	0
4015909000	기타	0	0	0	0
4016100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0	0	0	0
4016910000	바닥깔개와 매트	0	0	0	0
4016920000	지우개	0	0	0	0
4016930000	개스킷(gasket)·와셔(washer)와 그 밖의 실(seal)	0	0	0	0
40169400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016952000	베개	0	0	0	0
4016953000	쿠션	0	0	0	0
4016959000	기타	0	0	0	0
4016991010	기구・비행선・비행기계류・글라이더・연과 로토슈트의 부품	0	0	0	0
4016991090	기타	0	0	0	0
4016992000	고무밴드	0	0	0	0
4016993000	병마개	0	0	0	0
4016999000	기타	0	0	0	0
4017001000	경질고무	0	0	0	0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0	0	0	0
41012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0	0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101501011	카우하이드(cow hide)	0	0	0	0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0	0	0
4101501013	옥스하이드(ox hide)	0	0	0	0
4101501014	불하이드(bull hide)	0	0	0	0
4101501019	기타	0	0	0	0
4101501021	카우하이드(cow hide)	0	0	0	0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0	0	0	0
4101501023	옥스하이드(ox hide)	0	0	0	0
4101501024	불하이드(bull hide)	0	0	0	0
4101501029	기타	0	0	0	0
4101501090	기타	0	0	0	0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101901011	송아지의 원피	0	0	0	0
4101901019	기타	0	0	0	0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0	0	0	0
4101901099	기타	0	0	0	0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10210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	0	0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0	0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10229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0	0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103201010	뱀의 원피	0	0	0	0
4103201020	도마뱀의 원피	0	0	0	0
4103201030	악어의 원피	0	0	0	0
4103201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0	0	0	0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103901010	장어류의 원피	0	0	0	0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0	0	0	0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0	0	0	0
4103901090	기타	0	0	0	0
410390201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0	0	0	0
4103902090	기타	0	0	0	0
4104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0	0	0
4104190000	기타	0	0	0	0
41044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0	0	0
4104490000	기타	0	0	0	0
410510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410530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41062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41062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41063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41063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4106400000	파충류의 원피	0	0	0	0
41069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41069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4107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0	0	0	0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0	0	0
4107190000	기타	0	0	0	0
41079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0	0	0	0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0	0	0
4107990000	기타	0	0	0	0
4112000000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0	0	0	0
4113100000	산양의 가죽	0	0	0	0
4113200000	돼지의 가죽	0	0	0	0
4113300000	파충류의 가죽	0	0	0	0
4113900000	기타	0	0	0	0
4114100000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0	0	0	0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0	0	0	0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0	0	0	0
4115100000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411520000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0	0	0	0
4201001000	파충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1009010	안장과 안장용 방석	0	0	0	0
4201009020	고삐줄	0	0	0	0
4201009030	끈	0	0	0	0
4201009040	재갈	0	0	0	0
4201009090	기타	0	0	0	0
42021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1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1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1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111050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111090	기타	0	0	0	0
42021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0	0	0	0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0	0	0	0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0	0	0	0
42021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121090	기타	0	0	0	0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4202191000	판지로 만든 것	0	0	0	0
4202199000	기타	0	0	0	0
42022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2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2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2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211050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211090	기타	0	0	0	0
42022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0	0	0	0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0	0	0	0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0	0	0	0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221090	기타	0	0	0	0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4202291000	판지로 만든 것	0	0	0	0
420229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2023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3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3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3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311050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311090	기타	0	0	0	0
42023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0	0	0	0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0	0	0	0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0	0	0	0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321090	기타	0	0	0	0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4202391000	판지로 만든 것	0	0	0	0
4202399000	기타	0	0	0	0
42029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9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9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9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911050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911090	기타	0	0	0	0
4202912000	콤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0	0	0	0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0	0	0	0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0	0	0	0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0	0	0	0
4202921090	기타	0	0	0	0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4202991000	판지로 만든 것	0	0	0	0
4202999000	기타	0	0	0	0
4203101010	코트류	0	0	0	0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0	0	0	0
4203101050	조끼류	0	0	0	0
4203101060	바지류	0	0	0	0
4203101070	스커트류	0	0	0	0
4203101080	오버롤류	0	0	0	0
4203101090	기타	0	0	0	0
4203102010	코트류	0	0	0	0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0	0	0	0
4203102050	조끼류	0	0	0	0
4203102060	바지류	0	0	0	0
4203102070	스커트류	0	0	0	0
4203102080	오버롤류	0	0	0	0
4203102090	기타	0	0	0	0
4203103010	코트류	0	0	0	0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203103050	조끼류	0	0	0	0
4203103060	바지류	0	0	0	0
4203103070	스커트류	0	0	0	0
4203103080	오버롤류	0	0	0	0
4203103090	기타	0	0	0	0
4203109010	코트류	0	0	0	0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0	0	0	0
4203109050	조끼류	0	0	0	0
4203109060	바지류	0	0	0	0
4203109070	스커트류	0	0	0	0
4203109080	오버롤류	0	0	0	0
4203109090	기타	0	0	0	0
4203211000	야구장갑	0	0	0	0
4203212000	골프장갑	0	0	0	0
4203213000	스키장갑	0	0	0	0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0	0	0	0
4203215000	배팅장갑	0	0	0	0
4203216000	테니스장갑	0	0	0	0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0	0	0	0
4203219000	기타	0	0	0	0
4203291000	작업용 장갑	0	0	0	0
4203292000	방한용 장갑	0	0	0	0
4203293000	운전용 장갑	0	0	0	0
4203299000	기타	0	0	0	0
420330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330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330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330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4203301090	기타	0	0	0	0
4203309000	기타	0	0	0	0
4203400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0	0	0	0
4205001110	벨트	0	0	0	0
4205001190	기타	0	0	0	0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0	0	0	0
4205002110	벨트	0	0	0	0
4205002190	기타	0	0	0	0
4205002900	그 밖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0	0	0	0
4206001000	캣거트(catgut)	0	0	0	0
4206009000	기타	0	0	0	0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양・ 인도・중국・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이나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301801000	친칠라의 것	0	0	0	0
4301802000	오파섬(opossum)의 것	0	0	0	0
4301803000	라쿤(raccoon)의 것	0	0	0	0
4301804000	코요테의 것	0	0	0	0
4301805000	토끼의 것	0	0	0	0
4301806000	사향뒤쥐의 것	0	0	0	0
4301809000	기타	0	0	0	0
430190000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0	0	0	0
4302110000	밍크의 것	0	0	0	0
4302191000	비버(beaver)의 것	0	0	0	0
4302192000	사향뒤쥐의 것	0	0	0	0
4302193000	여우의 것	0	0	0	0
4302195000	친칠라의 것	0	0	0	0
4302196000	오파섬(opossum)의 것	0	0	0	0
4302197000	라쿤(raccoon)의 것	0	0	0	0
4302198000	코요테의 것	0	0	0	0
4302199010	면양의 것	0	0	0	0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와 이와 유사한 어린 양・인도・중국・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302199090	기타	0	0	0	0
4302201000	밍크의 것	0	0	0	0
4302202000	토끼의 것	0	0	0	0
4302203000	비버(beaver)의 것	0	0	0	0
4302204000	사향뒤쥐의 것	0	0	0	0
4302205000	여우의 것	0	0	0	0
4302207000	친칠라의 것	0	0	0	0
4302209010	오파섬(opossum)의 것	0	0	0	0
4302209020	라쿤(raccoon)의 것	0	0	0	0
4302209030	코요테의 것	0	0	0	0
4302209090	기타	0	0	0	0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303101100	밍크의 것	0	0	0	0
4303101200	토끼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0	0	0	0
4303101400	비버(beaver)의 것	0	0	0	0
4303101500	사향뒤쥐의 것	0	0	0	0
4303101600	여우의 것	0	0	0	0
4303101800	친칠라의 것	0	0	0	0
4303101910	오파섬(opossum)의 것	0	0	0	0
4303101920	라쿤(raccoon)의 것	0	0	0	0
4303101930	코요테의 것	0	0	0	0
4303101990	기타	0	0	0	0
4303102100	밍크의 것	0	0	0	0
4303102200	토끼의 것	0	0	0	0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0	0	0	0
4303102400	비버(beaver)의 것	0	0	0	0
4303102500	사향뒤쥐의 것	0	0	0	0
4303102600	여우의 것	0	0	0	0
4303102800	친칠라의 것	0	0	0	0
4303102910	오파섬(opossum)의 것	0	0	0	0
4303102920	라쿤(raccoon)의 것	0	0	0	0
4303102930	코요테의 것	0	0	0	0
4303102990	기타	0	0	0	0
4303900000	기타	0	0	0	0
4304001000	인조모피	0	0	0	0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0	0	0	0
4401100000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01210000	침엽수류	0	0	0	0
4401221000	펄프 제조용	0	0	0	0
4401229000	기타	0	0	0	0
4401310000	목재 펠릿(pellet)	0	0	0	0
4401390000	기타	0	0	0	0
4402101000	성형 목탄	0	0	0	0
4402109000	기타	0	0	0	0
4402901000	성형 목탄	0	0	0	0
4402909000	기타	0	0	0	0
4403101000	열대산 목재	0	0	0	0
4403102000	활엽수	0	0	0	0
4403109000	침엽수	0	0	0	0
4403201000	삼나무	0	0	0	0
440320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0	0	0	0
4403202020	헴록(Hemlock)	0	0	0	0
4403203000	적송	0	0	0	0
4403204000	전나무	0	0	0	0
4403205000	낙엽송	0	0	0	0
4403207000	가문비나무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403208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0	0	0
4403209000	기타	0	0	0	0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0	0
4403491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와 아란(Alan)	0	0	0	0
4403492010	티크(Teak)	0	0	0	0
4403492020	케루잉(Keruing)	0	0	0	0
4403492030	카풀(Kapur)	0	0	0	0
4403492040	제루통(Jelutong)	0	0	0	0
4403492090	기타	0	0	0	0
4403493000	오꾸메(Okoumé)·오베체(Obeche)·사팰리(Sapelli)·시뽀(Sipo)·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마코레(Makoré)와 이로코(Iroko)	0	0	0	0
4403494000	티아마(Tiama)·만소니아(Mansonia)·이롬바(Ilomba)·디베토우(Dibétou)·림바(Limba)와 아조베(Azobé)	0	0	0	0
4403495000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0	0	0	0
4403499000	기타	0	0	0	0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의 것	0	0	0	0
4403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	0	0	0	0
4403991010	자단(rosewood)	0	0	0	0
4403991020	흑단(ebony wood)	0	0	0	0
4403991040	물푸레나무	0	0	0	0
4403991050	호두나무	0	0	0	0
4403991090	기타	0	0	0	0
4403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0	0	0	0
4403993010	사시나무	0	0	0	0
4403993020	포플러	0	0	0	0
4403993030	단풍나무	0	0	0	0
4403993040	느릅나무	0	0	0	0
4403993050	자작나무	0	0	0	0
4403993060	피나무	0	0	0	0
4403994000	오동나무	0	0	0	0
4403999011	말라스(Malas)	0	0	0	0
4403999012	타운(Taun)	0	0	0	0
4403999019	기타	0	0	0	0
4403999090	기타	0	0	0	0
4404102000	목재의 봉	0	0	0	0
4404109000	기타	0	0	0	0
4404202000	목재의 봉	0	0	0	0
4404209000	기타	0	0	0	0
4405000000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406100000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0	0	0	0
4406900000	기타	0	0	0	0
440810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0	0	0	0
4408109100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109200	무늬목	0	0	0	0
4408109910	삼나무	0	0	0	0
4408109920	미송	0	0	0	0
4408109930	적송	0	0	0	0
4408109940	전나무	0	0	0	0
4408109950	낙엽송	0	0	0	0
4408109960	가문비나무	0	0	0	0
440810997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0	0	0	0
4408109990	기타	0	0	0	0
4408313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0	0	0	0
4408319011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319012	무늬목	0	0	0	0
4408319019	기타	0	0	0	0
4408319021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319022	무늬목	0	0	0	0
4408319029	기타	0	0	0	0
440839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0	0	0	0
4408399011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399012	무늬목	0	0	0	0
4408399019	기타	0	0	0	0
4408399021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399022	무늬목	0	0	0	0
4408399029	기타	0	0	0	0
4408399031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399032	무늬목	0	0	0	0
4408399039	기타	0	0	0	0
4408399041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399042	무늬목	0	0	0	0
4408399049	기타	0	0	0	0
4408399051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399052	무늬목	0	0	0	0
4408399059	기타	0	0	0	0
4408399091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399092	무늬목	0	0	0	0
4408399099	기타	0	0	0	0
4408901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408909150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909160	무늬목	0	0	0	0
4408909191	자단(rosewood)	0	0	0	0
4408909192	흑단(ebony wood)	0	0	0	0
4408909193	물푸레나무	0	0	0	0
4408909194	호두나무	0	0	0	0
4408909195	참나무	0	0	0	0
4408909199	기타	0	0	0	0
4408909210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909220	무늬목	0	0	0	0
4408909290	기타	0	0	0	0
4408909370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909380	무늬목	0	0	0	0
4408909391	사시나무	0	0	0	0
4408909392	포플러	0	0	0	0
4408909393	단풍나무	0	0	0	0
4408909394	느릅나무	0	0	0	0
4408909395	자작나무	0	0	0	0
4408909396	피나무	0	0	0	0
4408909410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909420	무늬목	0	0	0	0
4408909490	기타	0	0	0	0
4408909912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909913	무늬목	0	0	0	0
4408909914	바보엔(baboen)	0	0	0	0
4408909919	기타	0	0	0	0
4408909991	합판 제조용	0	0	0	0
4408909992	무늬목	0	0	0	0
4408909999	기타	0	0	0	0
4409100000	침엽수류	0	0	0	0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409290000	기타	0	0	0	0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4410129000	기타	0	0	0	0
4410191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4410191090	기타	0	0	0	0
441112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하며, 마루판을 제외한다)	0	0	0	0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35 그램 초과 0.5 그램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0	0	0	0
4411129000	기타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0	0	0	0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35 그램 초과 0.5 그램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0	0	0	0
4411132000	기계적 가공을 하거나 표면을 피복한 것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하며, 마루판을 제외한다)	0	0	0	0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35 그램 초과 0.5 그램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0	0	0	0
4411139000	기타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0	0	0	0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35 그램 초과 0.5 그램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0	0	0	0
4411142090	기타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0	0	0	0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35 그램 초과 0.5 그램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0	0	0	0
4411149000	기타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0	0	0	0
	- 섬유판(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35 그램 초과 0.5 그램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0	0	0	0
4411922090	기타	0	0	0	0
4411929000	기타	0	0	0	0
4411941000	기계적 가공이나 표면을 피복하지 않은 것				
	-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35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4411949000	기타	0	0	0	0
441400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0	0	0	0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0	0	0	0
4415200000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과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0	0	0	0
4416000000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 및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0	0	0	0
44170000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신발의 나무로 만든 골	0	0	0	0
4418100000	창・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0	0	0	0
4418200000	문 및 문틀과 문지방	0	0	0	0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0	0	0	0
4418500000	지붕을 이는 판자	0	0	0	0
4418600000	기둥과 들보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41871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0	0	0	0
4418719000	기타	0	0	0	0
441872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0	0	0	0
4418729000	기타	0	0	0	0
441879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0	0	0	0
4418799000	기타	0	0	0	0
4418901000	셀룰러우드패널	0	0	0	0
4418909000	기타	0	0	0	0
4419001000	대접(공기)	0	0	0	0
441900201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419002090	기타	0	0	0	0
4419009000	기타	0	0	0	0
4420101000	작은 조각상	0	0	0	0
4420109000	기타	0	0	0	0
4420901000	마르퀘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0	0	0	0
4420902010	담배상자	0	0	0	0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0	0	0	0
442090203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0	0	0	0
4420902090	기타	0	0	0	0
4420909010	담배용 상자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0	0	0	0
4420909020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0	0	0	0
4420909090	기타	0	0	0	0
4421100000	옷걸이	0	0	0	0
4421901010	보빈	0	0	0	0
4421901090	기타	0	0	0	0
442190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못	0	0	0	0
4421903000	이쑤시개	0	0	0	0
442190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0	0	0	0
4421905000	부채 및 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과 자루(살과 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0	0	0	0
4421909000	기타	0	0	0	0
4501100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501900000	기타	0	0	0	0
450200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이나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0	0	0	0
4503100000	마개	0	0	0	0
4503900000	기타	0	0	0	0
4504100000	블록・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504900000	기타	0	0	0	0
4601211000	매트류	0	0	0	0
4601212000	발	0	0	0	0
4601221000	매트류	0	0	0	0
4601222000	발	0	0	0	0
4601291000	매트류	0	0	0	0
4601292000	발	0	0	0	0
4601921000	은죽발장(폭이 35 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601929000	기타	0	0	0	0
46019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601941000	은죽발장(폭이 35 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601949000	기타	0	0	0	0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시트(sheet) 모양의 물품	0	0	0	0
4601999000	기타	0	0	0	0
4602111000	바구니	0	0	0	0
4602112000	쟁반·접시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0	0	0	0
4602119000	기타	0	0	0	0
46021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602191000	골풀제품	0	0	0	0
4602199000	기타	0	0	0	0
4602900000	기타	0	0	0	0
47010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470100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0	0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4703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3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3211000	반표백한 것	0	0	0	0
4703212000	표백한 것	0	0	0	0
4703291000	반표백한 것	0	0	0	0
4703292000	표백한 것	0	0	0	0
4704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4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42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42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500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0	0	0
4706100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0	0	0
4706200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0	0	0
4706301000	기계펄프	0	0	0	0
4706302000	화학펄프	0	0	0	0
4706303000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0	0	0	0
4706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70691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0	0
470692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470692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0	0
4706931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470693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0	0	0	0
4707100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0	0	0	0
470720000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707300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잡지와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0	0	0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0	0
48010000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480210000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0	0	0	0
480220000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0	0	0	0
4802400000	벽지용 원지(原紙)	0	0	0	0
480254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541090	기타	0	0	0	0
480254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549090	기타	0	0	0	0
480255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551020	복사용지	0	0	0	0
480255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0	0
4802551040	팬시지	0	0	0	0
4802551090	기타	0	0	0	0
480255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559090	기타	0	0	0	0
480256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561020	복사용지	0	0	0	0
480256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0	0
4802561040	팬시지	0	0	0	0
4802561090	기타	0	0	0	0
480256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569090	기타	0	0	0	0
480257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571020	복사용지	0	0	0	0
480257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0	0
4802571040	팬시지	0	0	0	0
4802571090	기타	0	0	0	0
480257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579090	기타	0	0	0	0
480258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802581020	팬시지	0	0	0	0
4802581090	기타	0	0	0	0
4802582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582090	기타	0	0	0	0
480258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589090	기타	0	0	0	0
480261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611020	복사용지	0	0	0	0
480261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0	0
4802611040	팬시지	0	0	0	0
4802611090	기타	0	0	0	0
480261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619090	기타	0	0	0	0
480262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621020	복사용지	0	0	0	0
480262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0	0
4802621040	팬시지	0	0	0	0
4802621090	기타	0	0	0	0
480262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629090	기타	0	0	0	0
480269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691020	복사용지	0	0	0	0
4802691030	전산용지와 폼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0	0
4802691040	팬시지	0	0	0	0
4802691090	기타	0	0	0	0
480269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2699090	기타	0	0	0	0
4803001000	화장지나 안면용 티슈스톡	0	0	0	0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	0	0	0
4803009000	기타	0	0	0	0
4804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4804190000	기타	0	0	0	0
4804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4804290000	기타	0	0	0	0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0	0
480431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0	0	0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0	0	0	0
4804319000	기타	0	0	0	0
480439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0	0	0	0
4804392000	콘덴서지와 판지	0	0	0	0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0	0	0	0
4804399000	기타	0	0	0	0
48044110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0	0
4804411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80441901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0	0
4804419090	기타	0	0	0	0
4804421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0	0
4804421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480442103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4804421090	기타	0	0	0	0
4804429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0	0
4804429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480442903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4804429090	기타	0	0	0	0
4804491000	중량이 1 제곱미터당 200 그램 미만인 것	0	0	0	0
4804499000	기타	0	0	0	0
4804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480452100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0	0	0	0
4804522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4804523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4804529000	기타	0	0	0	0
4804590000	기타	0	0	0	0
48051100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	0	0	0
48051200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0	0	0	0
4805190000	기타	0	0	0	0
480524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5249000	기타	0	0	0	0
480525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5259000	기타	0	0	0	0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0	0	0	0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0	0	0	0
4805500000	펠트지와 판지	0	0	0	0
480591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5919010	콘덴서지와 판지	0	0	0	0
4805919090	기타	0	0	0	0
480592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5929000	기타	0	0	0	0
480593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0	0	0	0
4805939000	기타	0	0	0	0
4806100000	황산지	0	0	0	0
4806200000	내지지(耐脂紙)	0	0	0	0
4806300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	0	0	0
4806401000	글라신지(glassine paper)	0	0	0	0
4806409000	기타	0	0	0	0
480700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80810000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808401000	자루(sack)용	0	0	0	0
4808409000	기타	0	0	0	0
4808900000	기타	0	0	0	0
4809201000	한 겹의 것	0	0	0	0
4809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0	0	0
4809901000	전사지	0	0	0	0
4809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 이상의 것	0	0	0	0
4809902090	기타	0	0	0	0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0	0
4809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0	0
4809909000	기타	0	0	0	0
481013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종이와 판지	0	0	0	0
4810139000	기타	0	0	0	0
481014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종이와 판지	0	0	0	0
4810149000	기타	0	0	0	0
4810191000	인쇄용 또는 필기용 종이와 판지	0	0	0	0
4810199000	기타	0	0	0	0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0	0	0	0
4810290000	기타	0	0	0	0
481031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481031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4810319000	기타	0	0	0	0
481032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481032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4810329000	기타	0	0	0	0
4810390000	기타	0	0	0	0
4810921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4810921090	기타	0	0	0	0
4810922000	아이보리판지	0	0	0	0
4810929000	기타	0	0	0	0
4810991000	지형지	0	0	0	0
4810992000	여과지	0	0	0	0
4810999000	기타	0	0	0	0
4811101000	루핑지	0	0	0	0
4811109000	기타	0	0	0	0
4811410000	셀프접착지	0	0	0	0
4811490000	기타	0	0	0	0
4811511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며 265 그램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이하인 것				
481151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11519019	기타	0	0	0	0
4811519090	기타	0	0	0	0
4811590000	기타	0	0	0	0
481160000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이나 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0	0	0	0
4811901010	괘선・선이나 방안선을 그은 것	0	0	0	0
4811901090	기타	0	0	0	0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0	0	0	0
4811902090	기타	0	0	0	0
48120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필터슬래브와 필터플레이트	0	0	0	0
481310000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	0	0	0
481320000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	0	0	0
4813900000	기타	0	0	0	0
4814201000	벽지	0	0	0	0
4814202000	린크라스타	0	0	0	0
4814209000	기타	0	0	0	0
4814901010	갈포섬유로 만든 것	0	0	0	0
4814901090	기타	0	0	0	0
4814909000	기타	0	0	0	0
4816201000	한 겹의 것	0	0	0	0
4816202000	두 겹 이상의 것	0	0	0	0
4816901000	전사지	0	0	0	0
4816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4816902090	기타	0	0	0	0
4816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0	0	0	0
4816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0	0
4816905000	등사원지	0	0	0	0
4816909000	기타	0	0	0	0
4817100000	봉투	0	0	0	0
4817200000	봉함엽서・우편엽서와 통신용카드	0	0	0	0
481730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818100000	화장지	0	0	0	0
4818200000	손수건・클렌징티슈나 안면용 화장지와 타월	0	0	0	0
481830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0	0	0	0
48185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	0	0	0	0
4818900000	기타	0	0	0	0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81920000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0	0	0
481930000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819400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0	0	0	0
4819501000	액체 포장에 적합한 것	0	0	0	0
4819509000	기타	0	0	0	0
4819600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820100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4820200000	연습장	0	0	0	0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와 서류철 표지	0	0	0	0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	0	0	0
482050000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0	0	0	0
4820900000	기타	0	0	0	0
4821100000	인쇄한 것	0	0	0	0
4821900000	기타	0	0	0	0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0	0	0	0
4822900000	기타	0	0	0	0
4823200000	여과용 종이와 판지	0	0	0	0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와 다이알	0	0	0	0
48236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823690000	기타	0	0	0	0
48237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나 프레스한 제품	0	0	0	0
4823901010	구멍을 뚫은 카드	0	0	0	0
4823901090	기타	0	0	0	0
4823902000	전기절연지	0	0	0	0
4823903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23903019	기타	0	0	0	0
482390302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23903029	기타	0	0	0	0
4823903090	기타	0	0	0	0
4823905000	자카드(Jacquard) 직기용 구멍을 뚫은 종이	0	0	0	0
482390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23909019	기타	0	0	0	0
4823909090	기타	0	0	0	0
4901101000	국문판	0	0	0	0
4901109000	기타	0	0	0	0
4901911000	국문판	0	0	0	0
4901919000	기타	0	0	0	0
4901991000	국문판	0	0	0	0
4901999000	기타	0	0	0	0
4902101010	신문	0	0	0	0
4902101090	기타	0	0	0	0
4902109000	기타	0	0	0	0
4902901010	잡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902901090	기타	0	0	0	0
4902909010	잡지	0	0	0	0
4902909090	기타	0	0	0	0
490300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	0	0	0
490400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905100000	지구의	0	0	0	0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	0	0	0
4905919000	기타	0	0	0	0
4905990000	기타	0	0	0	0
4906001000	설계도	0	0	0	0
4906002000	도안	0	0	0	0
4906009000	기타	0	0	0	0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0	0	0	0
4907009000	기타	0	0	0	0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0	0	0	0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쿠션 플로어링 시트(sheet)용의 것	0	0	0	0
4908909000	기타	0	0	0	0
4909000000	인쇄된 엽서나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이나 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나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910001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0	0	0	0
4910009000	기타	0	0	0	0
491110000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0	0	0	0
4911919000	기타	0	0	0	0
4911990000	기타	0	0	0	0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002001010	20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0	0	0
5002001020	20 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5.56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0	0	0
5002001030	25.56 데시텍스를 초과하고 28.89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0	0	0
5002001040	28.89 데시텍스를 초과하고 36.67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0	0	0
5002001050	36.67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0	0	0	0
5002002000	옥사(doupion silk)	0	0	0	0
5002009000	기타	0	0	0	0
5003001100	누에고치 웨이스트	0	0	0	0
5003001200	풀솜	0	0	0	0
5003001300	비수	0	0	0	0
5003001400	생피저	0	0	0	0
5003001900	기타	0	0	0	0
5003009100	페니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003009200	견노일(부렛)	0	0	0	0
5003009900	기타	0	0	0	0
500400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0	0	0	0
5005001000	견수방사	0	0	0	0
5005002000	견방사	0	0	0	0
5005003000	견방주사	0	0	0	0
5006001000	견사	0	0	0	0
5006002000	견수방사	0	0	0	0
5006003000	견방사	0	0	0	0
5006004000	견방주사	0	0	0	0
5006005000	누에의 거트(gut)	0	0	0	0
5007100000	견 노일(noil) 직물	0	0	0	0
5007201000	생지견직물	0	0	0	0
5007202010	홀치기가공	0	0	0	0
5007202020	사틴	0	0	0	0
5007202030	크렙 데신(crepe de chine)	0	0	0	0
5007202090	기타	0	0	0	0
5007209000	기타	0	0	0	0
5007901000	생지견직물	0	0	0	0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0	0	0	0
5007903000	그 밖의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0	0	0	0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0	0	0	0
5007909000	기타	0	0	0	0
5101110000	깎은 양모	0	0	0	0
5101190000	기타	0	0	0	0
5101210000	깎은 양모	0	0	0	0
5101290000	기타	0	0	0	0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0	0	0	0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0	0
5102190000	기타	0	0	0	0
5102200000	동물의 거친 털	0	0	0	0
51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	0	0	0
5103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5103300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51040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0	0
5105100000	카드(card)한 양모	0	0	0	0
5105210000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5105291000	순모울톱	0	0	0	0
5105292000	혼방울톱	0	0	0	0
5105293000	조사	0	0	0	0
5105299000	기타	0	0	0	0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105390000	기타	0	0	0	0
5105400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0	0	0	0
5111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0	0	0	0
5111191000	양모로 만든 것	0	0	0	0
5111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0	0	0	0
51112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1113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111900000	기타	0	0	0	0
5112111000	양모로 만든 것	0	0	0	0
5112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0	0	0	0
5112191000	양모로 만든 것	0	0	0	0
5112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0	0	0	0
51122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11230000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112900000	기타	0	0	0	0
511300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1001000	실면(實綿)	0	0	0	0
5201009010	섬유 길이가 23.2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5201009020	섬유 길이가 23.2 밀리미터 이상 25.4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5201009030	섬유 길이가 25.4 밀리미터 이상 28.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5201009050	섬유 길이가 28.5 밀리미터 이상 34.9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5201009060	섬유 길이가 34.9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5202100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	0	0	0
5202910000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0	0
5202990000	기타	0	0	0	0
520300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4200000	소매용	0	0	0	0
52051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5119000	기타	0	0	0	0
5205121010	370.37 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5205121090	기타	0	0	0	0
520512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2051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5139000	기타	0	0	0	0
52051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5149000	기타	0	0	0	0
52051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5159000	기타	0	0	0	0
52053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5319000	기타	0	0	0	0
5205321010	370.37 데시텍스 이하 232.56 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 수 이상 43 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0	0	0	0
5205321090	기타	0	0	0	0
5205329000	기타	0	0	0	0
52053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5339000	기타	0	0	0	0
52053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5349000	기타	0	0	0	0
52053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5359000	기타	0	0	0	0
52061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119000	기타	0	0	0	0
52061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129000	기타	0	0	0	0
52061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139000	기타	0	0	0	0
52061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149000	기타	0	0	0	0
52061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159000	기타	0	0	0	0
52062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219000	기타	0	0	0	0
52062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229000	기타	0	0	0	0
52062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239000	기타	0	0	0	0
52062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249000	기타	0	0	0	0
52062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259000	기타	0	0	0	0
52063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319000	기타	0	0	0	0
52063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329000	기타	0	0	0	0
52063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206339000	기타	0	0	0	0
52063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349000	기타	0	0	0	0
52063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359000	기타	0	0	0	0
520641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419000	기타	0	0	0	0
520642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429000	기타	0	0	0	0
520643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439000	기타	0	0	0	0
520644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449000	기타	0	0	0	0
520645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6459000	기타	0	0	0	0
520710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7109000	기타	0	0	0	0
5207901000	표백하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0	0	0	0
5207909000	기타	0	0	0	0
52081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1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81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0	0	0	0
52082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2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2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83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3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3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83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084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4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43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84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20851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520000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5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8599000	기타	0	0	0	0
52091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091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91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092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092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92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093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09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93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094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09420000	데님(denim)	0	0	0	0
52094300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94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095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095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95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101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01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10199000	기타	0	0	0	0
52102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02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10299000	기타	0	0	0	0
52103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0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103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104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0491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1049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2105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05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111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11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111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11200000	표백한 것	0	0	0	0
52113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13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113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114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1420000	데님(denim)	0	0	0	0
5211430000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114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11510000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1520000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11590000	그 밖의 직물	0	0	0	0
52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5212120000	표백한 것	0	0	0	0
5212130000	염색한 것	0	0	0	0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212150000	날염한 것	0	0	0	0
5212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5212220000	표백한 것	0	0	0	0
5212230000	염색한 것	0	0	0	0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212250000	날염한 것	0	0	0	0
5301100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0	0	0	0
5301210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0	0	0	0
5301290000	기타	0	0	0	0
5301301000	아마의 토우(tow)	0	0	0	0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530210000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0	0	0	0
5302901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5302902010	대마의 토우(tow)	0	0	0	0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5303101000	황마	0	0	0	0
530310200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0	0	0	0
5303901010	황마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303901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	0	0	0	0
5303909010	황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0	0	0	0
5303909090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0	0	0	0
5305001010	생 것	0	0	0	0
5305001090	기타	0	0	0	0
5305002010	생 것	0	0	0	0
5305002090	기타	0	0	0	0
5305003010	생 것	0	0	0	0
5305003090	기타	0	0	0	0
5305009010	생 것	0	0	0	0
5305009090	기타	0	0	0	0
5306101000	순아마사	0	0	0	0
5306102000	혼방아마사	0	0	0	0
5306201000	순아마사	0	0	0	0
5306202000	혼방아마사	0	0	0	0
5307101000	황마사	0	0	0	0
5307109000	기타	0	0	0	0
5307201000	황마사	0	0	0	0
5307209000	기타	0	0	0	0
5308100000	코이어(coir)사	0	0	0	0
5308200000	대마사	0	0	0	0
5308901000	라미(ramie)사	0	0	0	0
5308909000	기타	0	0	0	0
5309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309190000	기타	0	0	0	0
5309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309290000	기타	0	0	0	0
5310101000	황마직물	0	0	0	0
5310109000	기타	0	0	0	0
5310901000	황마직물	0	0	0	0
5310909000	기타	0	0	0	0
5311001000	라미(ramie)의 것	0	0	0	0
5311002000	대마의 것	0	0	0	0
5311003000	종이실(paper yarn)의 것	0	0	0	0
5311009000	기타	0	0	0	0
5401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1109000	기타	0	0	0	0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0	0	0	0
5401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401209000	기타	0	0	0	0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0	0	0	0
5402191012	어망사	0	0	0	0
5402191019	기타	0	0	0	0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0	0	0	0
5402191022	어망사	0	0	0	0
5402191029	기타	0	0	0	0
5402191090	기타	0	0	0	0
5402199000	기타	0	0	0	0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2311010	나일론 6 의 것	0	0	0	0
5402311020	나일론 66 의 것	0	0	0	0
5402311090	기타	0	0	0	0
5402319000	기타	0	0	0	0
5402321010	나일론 6 의 것	0	0	0	0
5402321020	나일론 66 의 것	0	0	0	0
5402321090	기타	0	0	0	0
5402329000	기타	0	0	0	0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5402390000	기타	0	0	0	0
5402440000	탄성사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5402451010	나일론 6 의 것	0	0	0	0
5402451020	나일론 66 의 것	0	0	0	0
5402451090	기타	0	0	0	0
5402459000	기타	0	0	0	0
540246100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0	0	0	0
5402469000	기타	0	0	0	0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25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2599000	기타	0	0	0	0
54026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0	0	0	0
5402699000	기타	0	0	0	0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403311000	텍스처드사	0	0	0	0
5403319000	기타	0	0	0	0
5403321000	텍스처드사	0	0	0	0
5403329000	기타	0	0	0	0
5403331000	텍스처드사	0	0	0	0
5403339000	기타	0	0	0	0
5403391000	텍스처드사	0	0	0	0
5403399000	기타	0	0	0	0
5403411000	텍스처드사	0	0	0	0
5403419000	기타	0	0	0	0
5403421000	텍스처드사	0	0	0	0
5403429000	기타	0	0	0	0
5403491000	텍스처드사	0	0	0	0
5403499000	기타	0	0	0	0
5404110000	탄성사	0	0	0	0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4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0	0	0	0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0	0	0	0
5404199000	기타	0	0	0	0
5404901000	스트립 모양의 것	0	0	0	0
5404909000	기타	0	0	0	0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0	0	0	0
5405009000	기타	0	0	0	0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0	0	0	0
5406002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	0	0	0	0
5407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0	0	0	0
540730000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0	0	0	0
5407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407420000	염색한 것	0	0	0	0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407440000	날염한 것	0	0	0	0
5407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407520000	염색한 것	0	0	0	0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407540000	날염한 것	0	0	0	0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407612000	염색한 것	0	0	0	0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407614000	날염한 것	0	0	0	0
54076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407692000	염색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407694000	날염한 것	0	0	0	0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719000	기타	0	0	0	0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729000	기타	0	0	0	0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739000	기타	0	0	0	0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749000	기타	0	0	0	0
54078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819000	기타	0	0	0	0
54078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829000	기타	0	0	0	0
54078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839000	기타	0	0	0	0
54078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849000	기타	0	0	0	0
5407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919000	기타	0	0	0	0
5407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929000	기타	0	0	0	0
54079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939000	기타	0	0	0	0
54079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0	0	0	0
5407949000	기타	0	0	0	0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0	0	0	0
5408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408220000	염색한 것	0	0	0	0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408240000	날염한 것	0	0	0	0
5408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408320000	염색한 것	0	0	0	0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408340000	날염한 것	0	0	0	0
5501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501301000	아크릴의 것	0	0	0	0
5501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5501900000	기타	0	0	0	0
55020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02002010	44,000 데시텍스 미만의 것	0	0	0	0
5502002020	44,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0	0	0	0
5502009000	기타	0	0	0	0
550311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	0	0	0
5503119000	기타	0	0	0	0
550319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	0	0	0
5503199000	기타	0	0	0	0
5503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	0	0	0
5503209010	폴리 트리메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0	0	0	0
5503209090	기타	0	0	0	0
5503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	0	0	0
5503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0	0	0	0
5503301090	기타	0	0	0	0
5503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	0	0	0
5503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0	0	0	0
5503302090	기타	0	0	0	0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5503900000	기타	0	0	0	0
5504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	0	0	0
550410200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0	0	0	0
5504109000	기타	0	0	0	0
5504901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04902000	리오셀(lyocell)의 것	0	0	0	0
5504909000	기타	0	0	0	0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0	0	0	0
55052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0	0	0	0
5506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	0	0	0
5506109000	기타	0	0	0	0
5506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	0	0	0
55062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506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	0	0	0
5506301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0	0	0	0
5506301090	기타	0	0	0	0
5506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	0	0	0
5506302020	콘쥬게이트 단면인 것	0	0	0	0
5506302090	기타	0	0	0	0
5506900000	기타	0	0	0	0
55070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0	0	0	0
550700102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0	0	0	0
5507001090	기타	0	0	0	0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07009000	기타	0	0	0	0
5508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508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08109000	기타	0	0	0	0
5508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0	0	0	0
5508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08209000	기타	0	0	0	0
5509111000	강력사	0	0	0	0
5509119000	기타	0	0	0	0
5509121000	강력사	0	0	0	0
5509129000	기타	0	0	0	0
5509211000	강력사	0	0	0	0
5509219000	기타	0	0	0	0
5509221000	강력사	0	0	0	0
5509229000	기타	0	0	0	0
5509311000	아크릴의 것	0	0	0	0
55093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09321000	아크릴의 것	0	0	0	0
55093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09410000	단사	0	0	0	0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550951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0	0	0	0
550952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	0	0	0
5509530000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0	0	0	0
5509590000	기타	0	0	0	0
5509611000	아크릴의 것	0	0	0	0
55096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09621000	아크릴의 것	0	0	0	0
55096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09691010	아크릴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509691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09692010	아크릴의 것	0	0	0	0
55096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09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09919000	기타	0	0	0	0
5509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09929000	기타	0	0	0	0
5509990000	기타	0	0	0	0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0119000	기타	0	0	0	0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0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0129000	기타	0	0	0	0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02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0209000	기타	0	0	0	0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0309000	기타	0	0	0	0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0909000	기타	0	0	0	0
5511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511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11109000	기타	0	0	0	0
55112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5112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11209000	기타	0	0	0	0
5511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1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1309000	기타	0	0	0	0
55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2191000	염색한 것	0	0	0	0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512193000	날염한 것	0	0	0	0
5512211000	아크릴의 것	0	0	0	0
55122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12290000	기타	0	0	0	0
5512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12919000	기타	0	0	0	0
55129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512999000	기타	0	0	0	0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0	0	0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	0	0	0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	0	0	0
5513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13192010	아크릴의 것	0	0	0	0
5513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13199000	기타	0	0	0	0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0	0	0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	0	0	0
5513239000	기타	0	0	0	0
5513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13292010	아크릴의 것	0	0	0	0
5513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13299000	기타	0	0	0	0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0	0	0
55133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13392010	아크릴의 것	0	0	0	0
55133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13399000	기타	0	0	0	0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0	0	0
5513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13492010	아크릴의 것	0	0	0	0
5513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13499000	기타	0	0	0	0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0	0	0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	0	0	0
5514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14192010	아크릴의 것	0	0	0	0
5514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	0	0	0
5514199000	기타	0	0	0	0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한정한다]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	0	0	0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	0	0	0
5514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14292010	아크릴의 것	0	0	0	0
5514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14299000	기타	0	0	0	0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0	0	0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	0	0	0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	0	0	0
5514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14492010	아크릴의 것	0	0	0	0
5514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14499000	기타	0	0	0	0
55151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5119000	기타	0	0	0	0
55151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5129000	기타	0	0	0	0
551513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5139000	기타	0	0	0	0
55151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5199000	기타	0	0	0	0
55152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5219000	기타	0	0	0	0
55152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5229000	기타	0	0	0	0
55152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5299000	기타	0	0	0	0
5515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5919000	기타	0	0	0	0
55159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5999000	기타	0	0	0	0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119000	기타	0	0	0	0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12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5161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139000	기타	0	0	0	0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149000	기타	0	0	0	0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219000	기타	0	0	0	0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229000	기타	0	0	0	0
55162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239000	기타	0	0	0	0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249000	기타	0	0	0	0
55163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319000	기타	0	0	0	0
55163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329000	기타	0	0	0	0
55163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3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339000	기타	0	0	0	0
55163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3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349000	기타	0	0	0	0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4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419000	기타	0	0	0	0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429000	기타	0	0	0	0
55164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439000	기타	0	0	0	0
55164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4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449000	기타	0	0	0	0
55169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9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516919000	기타	0	0	0	0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929000	기타	0	0	0	0
55169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9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939000	기타	0	0	0	0
55169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0	0	0	0
55169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0	0	0	0
5516949000	기타	0	0	0	0
56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601290000	기타	0	0	0	0
5601301000	섬유의 플록(flock)	0	0	0	0
5601309000	기타	0	0	0	0
5602101000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	0	0	0	0
5602102000	스티치 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0	0	0	0
5602211000	피아노 펠트(felt)	0	0	0	0
5602219000	기타	0	0	0	0
560229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602900000	기타	0	0	0	0
5603111000	침투・도포・피복이나 적층한 것	0	0	0	0
5603119000	기타	0	0	0	0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이나 적층한 것	0	0	0	0
5603129000	기타	0	0	0	0
5603131000	침투・도포・피복이나 적층한 것	0	0	0	0
5603139000	기타	0	0	0	0
5603141000	침투・도포・피복이나 적층한 것	0	0	0	0
5603149000	기타	0	0	0	0
56039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56039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560393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560394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초과인 것	0	0	0	0
5604100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604901000	모조 캣거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또는 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나 도포한 것)	0	0	0	0
5604909000	기타	0	0	0	0
560500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실・스트립(strip)이나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6001000	짐프사(Gimped yarn)	0	0	0	0
5606002000	셔닐사(chenille yarn)	0	0	0	0
5606003000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0	0	0	0
5606009000	기타	0	0	0	0
5607210000	포장용 끈	0	0	0	0
5607290000	기타	0	0	0	0
5607410000	포장용 끈	0	0	0	0
5607490000	기타	0	0	0	0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60790100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607909000	기타	0	0	0	0
56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608119000	기타	0	0	0	0
56081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608199000	기타	0	0	0	0
5608901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608909000	기타	0	0	0	0
5609001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609002000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면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0	0	0
56090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609009000	기타	0	0	0	0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210000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0	0	0	0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0	0	0	0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250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57032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	0	0	0
570330000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704900000	기타	0	0	0	0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5801101000	파일(pile)직물	0	0	0	0
5801102000	셔닐(chenille)직물	0	0	0	0
58012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0	0	0	0
58012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0	0	0	0
58012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0	0	0	0
5801260000	셔닐(chenille)직물	0	0	0	0
58012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0	0	0	0
5801272000	절단된 것	0	0	0	0
58013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0	0	0	0
58013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0	0	0	0
58013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0	0	0	0
5801360000	셔닐(chenille)직물	0	0	0	0
58013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0	0	0	0
5801372000	절단된 것	0	0	0	0
58019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80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5802190000	기타	0	0	0	0
58022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0	0	0	0
5802300000	터프트(tuft)한 직물	0	0	0	0
58030000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0	0	0	0
580410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5804102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804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804109000	기타	0	0	0	0
580421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8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5804292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804299000	기타	0	0	0	0
5804300000	손으로 만든 레이스	0	0	0	0
58050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5805001090	기타	0	0	0	0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0	0	0	0
5806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5806102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806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806109000	기타	0	0	0	0
580620000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8063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806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806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5806392000	식물성섬유(면은 제외한다)로 만든 것	0	0	0	0
5806399000	기타	0	0	0	0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0	0	0	0
5807101000	레이블(label)	0	0	0	0
5807109000	기타	0	0	0	0
5807901000	레이블(label)	0	0	0	0
5807909000	기타	0	0	0	0
580810000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0	0	0	0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trimming)	0	0	0	0
5808909000	기타	0	0	0	0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5810100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8109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810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810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81100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58110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5811003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8110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811009000	기타	0	0	0	0
59011000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0	0	0	0
5901901000	투사포(tracing cloth)	0	0	0	0
5901902000	회화용 켄버스	0	0	0	0
5901903000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0	0	0	0
5902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0	0	0	0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	0	0	0
5902900000	기타	0	0	0	0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0	0	0	0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0	0	0	0
5903900000	기타	0	0	0	0
5904100000	리놀륨	0	0	0	0
5904900000	기타	0	0	0	0
5905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90610000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0	0	0	0
5906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	0	0	0
5906990000	기타	0	0	0	0
5907001000	건성유의 조제품이나 기름을 도포하거나 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0	0	0	0
5907002000	극장용 배경,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0	0	0	0
5907009000	기타	0	0	0	0
5908001000	심지	0	0	0	0
5908009000	기타	0	0	0	0
5909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5910000000	전동(transmission)용이나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나,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5911101000	세폭(細幅)직물로 만든 것	0	0	0	0
5911109000	기타	0	0	0	0
591120000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591131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0	0	0	0
5911320000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911900000	기타	0	0	0	0
6001101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001109000	기타	0	0	0	0
60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001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0019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001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0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0	0	0	0
6002900000	기타	0	0	0	0
60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00320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003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003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003900000	기타	0	0	0	0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004900000	기타	0	0	0	0
6005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6005220000	염색한 것	0	0	0	0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	0	0	0
6005240000	날염한 것	0	0	0	0
6005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6005320000	염색한 것	0	0	0	0
6005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	0	0	0
6005340000	날염한 것	0	0	0	0
6005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6005420000	염색한 것	0	0	0	0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	0	0	0
6005440000	날염한 것	0	0	0	0
6005900000	기타	0	0	0	0
6006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006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6006220000	염색한 것	0	0	0	0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	0	0	0
6006240000	날염한 것	0	0	0	0
6006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6006320000	염색한 것	0	0	0	0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	0	0	0
6006340000	날염한 것	0	0	0	0
6006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6006420000	염색한 것	0	0	0	0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0	0	0	0
6006440000	날염한 것	0	0	0	0
6006900000	기타	0	0	0	0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31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199000	기타	0	0	0	0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499000	기타	0	0	0	0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1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5909000	기타	0	0	0	0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690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106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6909000	기타	0	0	0	0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7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7999000	기타	0	0	0	0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191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8199000	기타	0	0	0	0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8999000	기타	0	0	0	0
6109101000	티셔츠	0	0	0	0
6109109000	기타	0	0	0	0
6109901010	티셔츠	0	0	0	0
6109901090	기타	0	0	0	0
6109902010	티셔츠	0	0	0	0
6109902090	기타	0	0	0	0
6109903090	기타	0	0	0	0
6109909010	티셔츠	0	0	0	0
6109909090	기타	0	0	0	0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0	0	0	0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0	0	0	0
6110190000	기타	0	0	0	0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110909000	기타	0	0	0	0
6111201000	의류	0	0	0	0
6111202000	부속품	0	0	0	0
6111301000	의류	0	0	0	0
6111302000	부속품	0	0	0	0
6111901000	의류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111902000	부속품	0	0	0	0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209000	기타	0	0	0	0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3001000	제 5903 호의 것	0	0	0	0
6113002000	제 5906 호의 것	0	0	0	0
6113003000	제 5907 호의 것	0	0	0	0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490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114909000	기타	0	0	0	0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1.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0	0	0	0
	2.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 기타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53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5309000	기타	0	0	0	0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0	0	0	0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16921000	작업용 장갑	0	0	0	0
6116929000	기타	0	0	0	0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7109000	기타	0	0	0	0
6117801000	넥타이류	0	0	0	0
6117809000	기타	0	0	0	0
6117900000	부분품	0	0	0	0
6201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11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1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1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1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1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19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1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1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21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2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2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29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2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2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2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3299000	기타	0	0	0	0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4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0	0	0	0
6203429000	기타	0	0	0	0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19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199000	기타	0	0	0	0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299000	기타	0	0	0	0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399000	기타	0	0	0	0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499000	기타	0	0	0	0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599000	기타	0	0	0	0
6204621000	데님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0	0	0	0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699000	기타	0	0	0	0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2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5909000	기타	0	0	0	0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0	0	0	0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199000	기타	0	0	0	0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99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819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208192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8199000	기타	0	0	0	0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8991000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6208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8999000	기타	0	0	0	0
6209201000	의류	0	0	0	0
6209202000	부속품	0	0	0	0
6209301000	의류	0	0	0	0
6209302000	부속품	0	0	0	0
62099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9901090	기타	0	0	0	0
6209902000	부속품	0	0	0	0
6210101000	제 5602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102000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2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2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2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3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3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3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4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4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4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501000	제 59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502000	제 5906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0503000	제 5907 호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1119000	기타	0	0	0	0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1129000	기타	0	0	0	0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1209000	기타	0	0	0	0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0	0	0	0
6211329000	기타	0	0	0	0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11399000	기타	0	0	0	0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0	0	0	0
6211429000	기타	0	0	0	0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11499000	기타	0	0	0	0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2209000	기타	0	0	0	0
6212300000	코르슬렛(corselette)	0	0	0	0
6212900000	기타	0	0	0	0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0	0	0	0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6001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0	0	0	0
6217100000	부속품	0	0	0	0
6217900000	부분품	0	0	0	0
6301100000	전기모포	0	0	0	0
6301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0	0	0	0
6301300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0	0	0	0
6301400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0	0	0	0
630190000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0	0	0	0
6302101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2109000	기타	0	0	0	0
63022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30240000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0	0	0	0
63025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25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2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29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3191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3199000	기타	0	0	0	0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0	0	0	0
6304190000	기타	0	0	0	0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0	0	0	0
630492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	0	0	0
6304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	0	0	0
6304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	0	0	0
630510000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53200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305390000	기타	0	0	0	0
630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6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6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6300000	돛	0	0	0	0
6306401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64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6901000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69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69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30710000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0	0	0	0
6307200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0	0	0	0
6307901000	신발류 끈	0	0	0	0
6307902000	보자기	0	0	0	0
6307903000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0	0	0	0
6307909000	기타	0	0	0	0
630800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0	0	0	0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0	0	0	0
6310100000	선별한 것	0	0	0	0
6310900000	기타	0	0	0	0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0	0	0	0
6401921000	스키부츠	0	0	0	0
6401929010	고무로 만든 것	0	0	0	0
6401929090	기타	0	0	0	0
6401991010	고무로 만든 것	0	0	0	0
6401991090	기타	0	0	0	0
6401999000	기타	0	0	0	0
6402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와 스노보드부츠	0	0	0	0
6402190000	기타	0	0	0	0
6402200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402911000	방한화	0	0	0	0
640291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6402919000	기타	0	0	0	0
6402991000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0	0	0	0
6402992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6402999000	기타	0	0	0	0
6403120000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와 스노보드부츠	0	0	0	0
6403190000	기타	0	0	0	0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40340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403511000	드레스화	0	0	0	0
6403519000	기타	0	0	0	0
6403591000	드레스화	0	0	0	0
640359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403911000	드레스화	0	0	0	0
6403912000	등산화	0	0	0	0
6403913000	편상화(lace-boots)	0	0	0	0
640391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6403919000	기타	0	0	0	0
6403991000	드레스화	0	0	0	0
6403992000	등산화	0	0	0	0
6403993000	편상화(lace-boots)	0	0	0	0
6403994000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6403999000	기타	0	0	0	0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6404191000	실내화	0	0	0	0
6404199000	기타	0	0	0	0
6404201000	실내화	0	0	0	0
6404209000	기타	0	0	0	0
640510000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0	0	0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6405900000	기타	0	0	0	0
6406101000	갑피	0	0	0	0
6406102000	부분품	0	0	0	0
6406201000	바깥바닥	0	0	0	0
6406202000	뒷굽	0	0	0	0
6406901000	목재로 만든 것	0	0	0	0
6406909010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	0	0	0	0
6406909020	힐 쿠션	0	0	0	0
6406909030	각반	0	0	0	0
6406909040	레깅스	0	0	0	0
6406909090	기타	0	0	0	0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0	0	0	0
650200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6505001000	헤어네트	0	0	0	0
6505009011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50500901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505009021	운동모	0	0	0	0
6505009022	베레모	0	0	0	0
6505009029	기타	0	0	0	0
6505009090	기타	0	0	0	0
6506100000	안전모자	0	0	0	0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6506991000	가죽으로 만든 것	0	0	0	0
6506992000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6506999000	기타	0	0	0	0
6507000000	모자용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과 턱끈	0	0	0	0
660110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0	0	0	0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0	0	0	0
6601991000	지팡이 겸용 우산	0	0	0	0
6601992000	양산	0	0	0	0
6601999000	기타	0	0	0	0
6602001000	지팡이	0	0	0	0
6602002000	시트스틱(seat-stick)	0	0	0	0
6602003000	채찍・승마용 채찍	0	0	0	0
6602009000	기타	0	0	0	0
660320000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0	0	0	0
6603900000	기타	0	0	0	0
670100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깃털의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와 깃촉(quill)은 제외한다]	0	0	0	0
6702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6702901000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702902000	종이로 만든 것	0	0	0	0
6702909000	기타	0	0	0	0
6703001010	세척・정돈한 것	0	0	0	0
6703001090	기타	0	0	0	0
6703009000	기타	0	0	0	0
6704110000	전체가발	0	0	0	0
6704191000	부분가발	0	0	0	0
6704192000	가수염	0	0	0	0
6704193000	가눈썹	0	0	0	0
6704194000	가속눈썹	0	0	0	0
6704199000	기타	0	0	0	0
6704201000	전체가발	0	0	0	0
6704202000	부분가발	0	0	0	0
6704203000	가수염	0	0	0	0
6704204000	가눈썹	0	0	0	0
6704205000	가속눈썹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704209000	기타	0	0	0	0
670490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6801000000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0	0	0	0
680210000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과 가루	0	0	0	0
6802211000	대리석	0	0	0	0
6802212000	트래버틴(travertine)	0	0	0	0
6802213000	설화석고(alabaster)	0	0	0	0
6802230000	화강암	0	0	0	0
6802291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0	0	0	0
6802299000	기타	0	0	0	0
6802911000	대리석	0	0	0	0
6802912000	트래버틴(travertine)	0	0	0	0
6802913000	설화석고(alabaster)	0	0	0	0
6802920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0	0	0	0
6802930000	화강암	0	0	0	0
6802990000	그 밖의 돌	0	0	0	0
6803001000	벼루	0	0	0	0
6803009000	기타	0	0	0	0
680410000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이나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6804210000	합성하거나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804220000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0	0	0	0
6804230000	천연석으로 만든 것	0	0	0	0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0	0	0	0
680510000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680520000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680530000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6806101000	슬래그 울(slag wool)	0	0	0	0
6806102000	암면(rock wool)	0	0	0	0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0	0	0	0
6806109000	기타	0	0	0	0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큐라이트(vermiculite)	0	0	0	0
6806202000	팽창점토	0	0	0	0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0	0	0	0
6806209000	기타	0	0	0	0
6806901000	내화피복재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806909000	기타	0	0	0	0
6807100000	롤 모양인 것	0	0	0	0
6807900000	기타	0	0	0	0
68080000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이나 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809110000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0	0	0	0
6809190000	기타	0	0	0	0
6809900000	그 밖의 제품	0	0	0	0
6810111000	블록	0	0	0	0
6810112000	벽돌	0	0	0	0
6810191000	타일	0	0	0	0
6810192000	판석	0	0	0	0
6810193000	기와(지붕타일)	0	0	0	0
6810199000	기타	0	0	0	0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6810991000	빔(beam)과 거더(girder)	0	0	0	0
6810992000	파일	0	0	0	0
6810993000	전신주	0	0	0	0
6810994000	철도 침목	0	0	0	0
6810995000	관	0	0	0	0
6810999000	기타	0	0	0	0
6811401010	지붕・천장・벽이나 바닥재용	0	0	0	0
6811401090	기타	0	0	0	0
6811402010	지붕・천장・벽이나 바닥재용	0	0	0	0
6811402090	기타	0	0	0	0
6811403000	관・관의 연결구류	0	0	0	0
6811409010	지붕・천장・벽이나 바닥재용	0	0	0	0
6811409090	기타	0	0	0	0
681181000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0	0	0	0
6811820000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0	0	0	0
6811891000	관・관의 연결구류	0	0	0	0
6811899000	기타	0	0	0	0
6812801000	의류・의류부속품・신발과 모자류	0	0	0	0
6812802000	종이・표지용 판지와 펠트(felt)	0	0	0	0
6812803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0	0	0	0
6812809000	기타	0	0	0	0
6812910000	의류・의류부속품・신발과 모자류	0	0	0	0
6812920000	종이・표지용 판지와 펠트(felt)	0	0	0	0
6812930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812990000	기타	0	0	0	0
6813201010	자동차용	0	0	0	0
6813201090	기타	0	0	0	0
6813202010	자동차용	0	0	0	0
6813202090	기타	0	0	0	0
6813209010	자동차용	0	0	0	0
6813209090	기타	0	0	0	0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0	0	0	0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0	0	0	0
6813899000	기타	0	0	0	0
6814100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6814900000	기타	0	0	0	0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0	0	0	0
6815102000	탄소섬유	0	0	0	0
6815109000	기타	0	0	0	0
6815200000	이탄(泥炭)제품	0	0	0	0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백운석이나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0	0	0	0
6815990000	기타	0	0	0	0
6901001000	벽돌	0	0	0	0
6901002000	블록	0	0	0	0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0	0	0	0
6901009090	기타	0	0	0	0
6902100000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이나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6902200000	알루미나・실리카나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6902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6902909000	기타	0	0	0	0
6903101000	레토르트(retort)	0	0	0	0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0	0	0	0
6903102090	기타	0	0	0	0
6903103000	반응그릇	0	0	0	0
6903104000	머플	0	0	0	0
6903105000	노즐	0	0	0	0
6903106000	플러그(plug)	0	0	0	0
6903107000	관(管)	0	0	0	0
6903108000	막대(bar, rod)	0	0	0	0
6903109000	기타	0	0	0	0
6903201000	레토르트(retort)	0	0	0	0
6903202000	도가니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903203000	반응그릇	0	0	0	0
6903204000	머플	0	0	0	0
6903205000	노즐	0	0	0	0
6903206000	플러그(plug)	0	0	0	0
6903207000	관(管)	0	0	0	0
6903208000	막대(bar, rod)	0	0	0	0
6903209000	기타	0	0	0	0
6903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6903909010	레토르트(retort)	0	0	0	0
6903909020	도가니	0	0	0	0
6903909030	반응그릇	0	0	0	0
6903909040	머플	0	0	0	0
6903909050	노즐	0	0	0	0
6903909060	플러그(plug)	0	0	0	0
6903909070	관(管)	0	0	0	0
6903909080	막대(bar, rod)	0	0	0	0
6903909090	기타	0	0	0	0
6904100000	건축용 벽돌	0	0	0	0
6904900000	기타	0	0	0	0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0	0	0	0
6905901000	굴뚝통·굴뚝갓과 굴뚝용 내장재	0	0	0	0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0	0	0	0
6905909000	기타	0	0	0	0
6906001000	관(管)·도관(導管)과 홈통	0	0	0	0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0	0	0	0
6907101000	자기제의 것	0	0	0	0
6907109000	기타	0	0	0	0
6908101000	자기제의 것	0	0	0	0
6908109000	기타	0	0	0	0
6908901000	자기제의 것	0	0	0	0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0	0	0	0
6909190000	기타	0	0	0	0
6909900000	기타	0	0	0	0
6910102000	목욕통	0	0	0	0
6910104000	소변기	0	0	0	0
6910109000	기타	0	0	0	0
6910900000	기타	0	0	0	0
6911101000	커피 세트나 티세트	0	0	0	0
6911102000	공기, 대접과 접시	0	0	0	0
6911109000	기타	0	0	0	0
6911901000	가정용품	0	0	0	0
6911902000	화장용품	0	0	0	0
6911909000	기타	0	0	0	0
6912001010	커피 세트나 티세트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912001020	공기, 대접과 접시	0	0	0	0
6912001090	기타	0	0	0	0
6912002000	가정용품	0	0	0	0
6912003000	화장용품	0	0	0	0
6912009000	기타	0	0	0	0
69131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과 흉상	0	0	0	0
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0	0	0	0
6913109090	기타	0	0	0	0
6913901000	조각상・작은 소각상과 흉상	0	0	0	0
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0	0	0	0
6913909090	기타	0	0	0	0
6914101000	화분	0	0	0	0
6914109000	기타	0	0	0	0
6914901000	화분	0	0	0	0
6914909000	기타	0	0	0	0
7001001000	괴(塊)	0	0	0	0
7001002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깨진 유리	0	0	0	0
7002100000	구(球)	0	0	0	0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0	0	0	0
7002209000	기타	0	0	0	0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0	0	0	0
7002319000	기타	0	0	0	0
70023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0	0	0	0
7002390000	기타	0	0	0	0
700312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2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2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하고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2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2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2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2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00319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9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9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하고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9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9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9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319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00320000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0	0	0	0
7003300000	프로파일(profile)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00420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20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20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하고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20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20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20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20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00490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902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초과하고 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903000	두께가 3 밀리미터 초과하고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90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90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90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4907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00510101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10102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10103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10104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00510201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10202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10203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10204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005109010	두께가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10902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10903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10904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005211000	두께가 2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214000	두께가 4 밀리미터 초과하고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215000	두께가 5 밀리미터 초과하고 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216000	두께가 6 밀리미터 초과하고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217010	두께가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217020	두께가 10 밀리미터 초과하고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5217030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0	0	0	0
7005291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	0	0	0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0	0	0	0
7005291091	맑은 유리	0	0	0	0
7005291092	저철분 유리	0	0	0	0
7005291099	기타	0	0	0	0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0	0	0	0
7005292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	0	0	0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005292091	맑은 유리	0	0	0	0
7005292092	저철분 유리	0	0	0	0
7005292099	기타	0	0	0	0
7005293010	맑은 유리	0	0	0	0
7005293020	저철분 유리	0	0	0	0
7005293090	기타	0	0	0	0
7005294010	맑은 유리	0	0	0	0
7005294020	저철분 유리	0	0	0	0
7005294090	기타	0	0	0	0
7005295010	맑은 유리	0	0	0	0
7005295020	저철분 유리	0	0	0	0
7005295090	기타	0	0	0	0
7005296010	맑은 유리	0	0	0	0
7005296020	저철분 유리	0	0	0	0
7005296090	기타	0	0	0	0
7005297010	맑은 유리	0	0	0	0
7005297020	저철분 유리	0	0	0	0
7005297090	기타	0	0	0	0
7005298010	맑은 유리	0	0	0	0
7005298020	저철분 유리	0	0	0	0
7005298090	기타	0	0	0	0
7005299010	맑은 유리	0	0	0	0
7005299020	저철분 유리	0	0	0	0
7005299090	기타	0	0	0	0
7005300000	망입(網入) 유리	0	0	0	0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0	0	0	0
700600200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0	0	0	0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0	0	0	0
7006009000	기타	0	0	0	0
700711100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7112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007191000	두께가 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07192000	두께가 8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007211000	총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0	0	0	0
7007212000	총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0	0	0	0
7007291000	총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0	0	0	0
7007292000	총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0	0	0	0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0	0	0	0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009910000	틀이 붙지 않은 것	0	0	0	0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0	0	0	0
7010100000	앰플	0	0	0	0
701020000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0	0	0	0
7010900000	기타	0	0	0	0
7011100000	전등용	0	0	0	0
7011201000	천연색용	0	0	0	0
7011209000	기타	0	0	0	0
7011900000	기타	0	0	0	0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0	0	0	0
701322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0	0	0
7013280000	기타	0	0	0	0
701333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0	0	0
7013370000	기타	0	0	0	0
70134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0	0	0
70134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0	0	0	0
7013490000	기타	0	0	0	0
70139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0	0	0
7013990000	기타	0	0	0	0
7014001000	실드빔 램프(sealed beam lamp)의 것	0	0	0	0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0	0	0	0
7014009020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0	0	0	0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0	0	0	0
7015901000	선글라스용	0	0	0	0
7015902000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7015909000	기타	0	0	0	0
7016100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16901000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16909010	레드라이트(leaded light)	0	0	0	0
7016909020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0	0	0	0
7016909090	기타	0	0	0	0
7017100000	석영유리나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0	0	0	0
701720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0	0	0	0
7017900000	기타	0	0	0	0
7018101000	비드(bead)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018102000	모조 진주	0	0	0	0
7018103000	모조 귀석과 반귀석	0	0	0	0
7018104000	모조 산호	0	0	0	0
7018109000	기타	0	0	0	0
7018200000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0	0	0	0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0	0	0	0
7018909000	기타	0	0	0	0
7019110000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19120000	로빙(roving)	0	0	0	0
7019190000	기타	0	0	0	0
7019310000	매트(mat)	0	0	0	0
7019320000	얇은 시트(sheet)(보일)	0	0	0	0
7019390000	기타	0	0	0	0
7019400000	로빙(roving) 직물	0	0	0	0
701951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19520000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19590000	기타	0	0	0	0
7019901000	글라스울(glass wool)	0	0	0	0
7019909000	기타	0	0	0	0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0	0	0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석영 도가니	0	0	0	0
702000101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0	0	0	0
7020001019	기타	0	0	0	0
7020001090	기타	0	0	0	0
7020009000	기타	0	0	0	0
7101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7101102000	가공한 것	0	0	0	0
7101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7101220000	가공한 것	0	0	0	0
7102100000	선별하지 않은 것	0	0	0	0
710221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또는 갈린 것	0	0	0	0
7102290000	기타	0	0	0	0
710231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또는 갈린 것	0	0	0	0
7102390000	기타	0	0	0	0
710310000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0	0	0	0
7103911000	공업용	0	0	0	0
7103919010	루비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103919020	사파이어	0	0	0	0
7103919030	에메랄드	0	0	0	0
7103991000	공업용	0	0	0	0
7103999010	오팔	0	0	0	0
7103999020	비취	0	0	0	0
7103999030	옥수(玉髓)	0	0	0	0
7103999040	수정	0	0	0	0
7103999090	기타	0	0	0	0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0	0	0	0
7104201000	다이아몬드	0	0	0	0
7104209000	기타	0	0	0	0
7104901010	다이아몬드	0	0	0	0
7104901020	인조수정	0	0	0	0
7104901090	기타	0	0	0	0
7104909010	다이아몬드	0	0	0	0
7104909090	기타	0	0	0	0
7105101000	천연의 것	0	0	0	0
7105102000	합성한 것	0	0	0	0
7105901000	석류석의 것	0	0	0	0
7105909000	기타	0	0	0	0
7106100000	가루	0	0	0	0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7106919000	기타	0	0	0	0
710692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0	0	0	0
7106922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0	0	0	0
7106923000	선	0	0	0	0
7106929000	기타	0	0	0	0
710700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0	0	0	0
7107002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0	0	0	0
7107003000	선	0	0	0	0
7107004000	관(管)과 중공(中空)봉	0	0	0	0
7107009000	기타	0	0	0	0
7108110000	가루	0	0	0	0
7108121000	럼프(lump)・빌릿(billet)과 알갱이	0	0	0	0
7108129000	기타	0	0	0	0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7108131090	기타	0	0	0	0
710813901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0	0	0	0
710813902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0	0	0	0
7108139090	기타	0	0	0	0
7108200000	화폐용	0	0	0	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110190000	기타	0	0	0	0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7110290000	기타	0	0	0	0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7110390000	기타	0	0	0	0
71104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7110490000	기타	0	0	0	0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이나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11230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0	0	0	0
7112911000	잔재물의 것	0	0	0	0
7112919000	기타	0	0	0	0
7112921000	잔재물의 것	0	0	0	0
7112929000	기타	0	0	0	0
7112991000	잔재물의 것	0	0	0	0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 및 스크랩(scrap)의 것	0	0	0	0
7112999000	기타	0	0	0	0
7113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7113191000	백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113192000	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113199000	기타	0	0	0	0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0	0	0	0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0	0	0	0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0	0	0	0
7113209000	기타	0	0	0	0
7114111000	식탁용	0	0	0	0
7114112000	화장실용	0	0	0	0
7114113000	사무실용 및 책상용	0	0	0	0
7114114000	끽연용	0	0	0	0
7114119000	기타	0	0	0	0
7114191000	식탁용	0	0	0	0
7114192000	화장실용	0	0	0	0
7114193000	사무실용 및 책상용	0	0	0	0
7114194000	끽연용	0	0	0	0
7114199000	기타	0	0	0	0
7114201000	식탁용	0	0	0	0
7114202000	화장실용	0	0	0	0
7114203000	사무실용 및 책상용	0	0	0	0
7114204000	끽연용	0	0	0	0
7114209000	기타	0	0	0	0
711510000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115901010	백금 도가니	0	0	0	0
7115901090	기타	0	0	0	0
7115909010	금으로 만든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0	0	0	0
7115909020	은으로 만든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다)	0	0	0	0
7115909090	기타	0	0	0	0
7116101000	천연진주로 만든 것	0	0	0	0
7116102000	양식진주로 만든 것	0	0	0	0
7116201000	공업용	0	0	0	0
7116209010	신변장식용	0	0	0	0
7116209090	기타	0	0	0	0
71171100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0	0	0	0
7117191000	목걸이	0	0	0	0
7117192000	팔찌	0	0	0	0
7117193000	귀걸이	0	0	0	0
7117194000	브로치	0	0	0	0
7117195000	반지	0	0	0	0
7117196000	신변장식용 체인	0	0	0	0
7117199000	기타	0	0	0	0
7117900000	기타	0	0	0	0
7118100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0	0	0	0
7118901000	금화	0	0	0	0
7118902000	은화	0	0	0	0
7118909000	기타	0	0	0	0
7201101000	주물용	0	0	0	0
7201102000	제강용	0	0	0	0
7201109000	기타	0	0	0	0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01501000	합금선철	0	0	0	0
7201502000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0	0	0	0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202190000	기타	0	0	0	0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202291000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이상인 것	0	0	0	0
7202299000	기타	0	0	0	0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0	0	0	0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202490000	기타	0	0	0	0
720250000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0	0	0	0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0	0	0	0
720270000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0	0	0	0
720280000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0	0	0	0
72029100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silico-titanium)				
720292000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0	0	0	0
7202930000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	0	0	0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02999000	기타	0	0	0	0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0	0	0
7203900000	기타	0	0	0	0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0	0
7204290000	기타	0	0	0	0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204410000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과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7204490000	기타	0	0	0	0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0	0	0
7205101000	숏(shot)	0	0	0	0
7205102000	그릿(grit)	0	0	0	0
7205109000	기타	0	0	0	0
7205210000	합금강의 것	0	0	0	0
7205290000	기타	0	0	0	0
7206100000	잉곳(ingot)	0	0	0	0
7206900000	기타	0	0	0	0
7207111000	블룸(bloom)	0	0	0	0
7207112000	빌릿(billet)	0	0	0	0
7207121000	슬래브	0	0	0	0
7207122000	시트바(sheet bar)	0	0	0	0
7207190000	기타	0	0	0	0
7207201000	블룸(bloom)	0	0	0	0
7207202000	빌릿(billet)	0	0	0	0
7207203000	슬래브	0	0	0	0
7207204000	시트바(sheet bar)	0	0	0	0
7207209000	기타	0	0	0	0
7208101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7208109000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8259000	기타	0	0	0	0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8269000	기타	0	0	0	0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8279000	기타	0	0	0	0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836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8379000	기타	0	0	0	0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8389000	기타	0	0	0	0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8399000	기타	0	0	0	0
7208400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0	0	0	0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8519000	기타	0	0	0	0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8529000	기타	0	0	0	0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8539000	기타	0	0	0	0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8549000	기타	0	0	0	0
7208900000	기타	0	0	0	0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9159000	기타	0	0	0	0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9169000	기타	0	0	0	0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9179000	기타	0	0	0	0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9189000	기타	0	0	0	0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9259000	기타	0	0	0	0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9269000	기타	0	0	0	0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9279000	기타	0	0	0	0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09289000	기타	0	0	0	0
7209900000	기타	0	0	0	0
721011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7210120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10200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0	0	0	0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10309000	기타	0	0	0	0
7210410000	물결 모양의 것	0	0	0	0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10491090	기타	0	0	0	0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10499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210500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10690000	기타	0	0	0	0
72107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0	0	0	0
72107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0	0	0	0
72109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109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10909000	기타	0	0	0	0
7211130000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11149000	기타	0	0	0	0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11199000	기타	0	0	0	0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11239000	기타	0	0	0	0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11299000	기타	0	0	0	0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11909000	기타	0	0	0	0
7212101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7212102000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12209000	기타	0	0	0	0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12301090	기타	0	0	0	0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12309090	기타	0	0	0	0
72124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인 것	0	0	0	0
72124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인 것	0	0	0	0
72125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125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12509000	기타	0	0	0	0
7212600000	클래드(clad)한 것	0	0	0	0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0	0	0	0
72132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0	0	0	0
7213911090	기타	0	0	0	0
7213919000	기타	0	0	0	0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213991090	기타	0	0	0	0
7213999000	기타	0	0	0	0
7214100000	단조(鍛造)한 것	0	0	0	0
7214201000	철근	0	0	0	0
7214209000	기타	0	0	0	0
721430000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0	0	0	0
7214999000	기타	0	0	0	0
721510000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5500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5900000	기타	0	0	0	0
7216101000	유(U)형강	0	0	0	0
7216102000	아이(I)형강	0	0	0	0
7216103000	에이치(H)형강	0	0	0	0
7216210000	엘(L)형강	0	0	0	0
7216220000	티(T)형강	0	0	0	0
7216310000	유(U)형강	0	0	0	0
7216320000	아이(I)형강	0	0	0	0
7216333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16334000	높이가 300 밀리미터 이상 6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6335000	높이가 60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216401000	엘(L)형강	0	0	0	0
7216402000	티(T)형강	0	0	0	0
7216500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0	0	0	0
7216690000	기타	0	0	0	0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0	0	0	0
7216990000	기타	0	0	0	0
7217100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721720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17301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17309000	기타	0	0	0	0
7217900000	기타	0	0	0	0
7218101000	잉곳(ingot)	0	0	0	0
7218109000	기타	0	0	0	0
7218911000	슬래브	0	0	0	0
7218912000	시트바(sheet bar)	0	0	0	0
721891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218991000	블룸(bloom)	0	0	0	0
7218992000	빌릿(billet)	0	0	0	0
7218999000	기타	0	0	0	0
72191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111090	기타	0	0	0	0
7219119000	기타	0	0	0	0
72191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121090	기타	0	0	0	0
7219129000	기타	0	0	0	0
721913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131090	기타	0	0	0	0
7219139000	기타	0	0	0	0
721914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141090	기타	0	0	0	0
7219149000	기타	0	0	0	0
72192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211090	기타	0	0	0	0
7219219000	기타	0	0	0	0
72192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221090	기타	0	0	0	0
7219229000	기타	0	0	0	0
721923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231090	기타	0	0	0	0
7219239000	기타	0	0	0	0
721924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241090	기타	0	0	0	0
7219249000	기타	0	0	0	0
72193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311090	기타	0	0	0	0
7219319000	기타	0	0	0	0
72193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321090	기타	0	0	0	0
7219329000	기타	0	0	0	0
721933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7219331090	기타	0	0	0	0
7219339000	기타	0	0	0	0
721934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341090	기타	0	0	0	0
7219349000	기타	0	0	0	0
721935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351090	기타	0	0	0	0
7219359000	기타	0	0	0	0
721990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19901090	기타	0	0	0	0
7219909000	기타	0	0	0	0
722011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20111090	기타	0	0	0	0
7220119000	기타	0	0	0	0
722012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20121090	기타	0	0	0	0
7220129000	기타	0	0	0	0
722020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20201090	기타	0	0	0	0
7220209000	기타	0	0	0	0
7220901010	니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3 이상인 것	0	0	0	0
7220901090	기타	0	0	0	0
7220909000	기타	0	0	0	0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0	0
7222190000	기타	0	0	0	0
7222200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22300000	그 밖의 봉	0	0	0	0
7222400000	형강(形鋼)	0	0	0	0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	0	0	0
7224101000	잉곳(ingot)	0	0	0	0
7224109000	기타	0	0	0	0
7224901000	블룸(bloom)	0	0	0	0
7224902000	빌릿(billet)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224903000	슬래브	0	0	0	0
7224904000	시트바(sheet bar)	0	0	0	0
7224909000	기타	0	0	0	0
7225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0	0
7225190000	기타	0	0	0	0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253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의 것	0	0	0	0
72253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의 것	0	0	0	0
7225309099	기타	0	0	0	0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25409091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의 것	0	0	0	0
7225409092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의 것	0	0	0	0
7225409099	기타	0	0	0	0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509000	기타	0	0	0	0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25919090	기타	0	0	0	0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25929019	기타	0	0	0	0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 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0	0	0	0
7225929099	기타	0	0	0	0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999000	기타	0	0	0	0
7226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0	0
7226190000	기타	0	0	0	0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691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의 것	0	0	0	0
7226912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의 것	0	0	0	0
7226919000	기타	0	0	0	0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 미크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이나 전해 도포한 것	0	0	0	0
722699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이나 도포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226999000	기타	0	0	0	0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0	0
7227901000	내열강의 것	0	0	0	0
7227909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이고 전 중량의 100 분의 0.003 미만의 것	0	0	0	0
722790902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3 이상의 것	0	0	0	0
7227909090	기타	0	0	0	0
7228100000	고속도강의 봉	0	0	0	0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봉	0	0	0	0
7228300000	기타의 봉(열간압연·열간인발하거나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0	0	0	0
7228400000	기타의 봉(단조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0	0	0	0
722850000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28601000	철근(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	0	0	0	0
7228609000	기타	0	0	0	0
7228701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008 이상의 것	0	0	0	0
7228701090	기타	0	0	0	0
7228709000	기타	0	0	0	0
7228800000	중공(中空)드릴봉	0	0	0	0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0	0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9901090	기타	0	0	0	0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9902090	기타	0	0	0	0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9909090	기타	0	0	0	0
7301101000	유(U)형	0	0	0	0
7301109000	기타	0	0	0	0
7301201000	유(U)형강	0	0	0	0
7301202000	에이치(H)형강	0	0	0	0
7301203000	아이(I)형강	0	0	0	0
7301209000	기타	0	0	0	0
7302101010	열처리한 것	0	0	0	0
7302101090	기타	0	0	0	0
7302102010	열처리한 것	0	0	0	0
7302102090	기타	0	0	0	0
7302103010	열처리한 것	0	0	0	0
7302103090	기타	0	0	0	0
7302104010	열처리한 것	0	0	0	0
7302104090	기타	0	0	0	0
7302300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7302400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	0	0	0
7302900000	기타	0	0	0	0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로 만든 것	0	0	0	0
7303001090	기타	0	0	0	0
7303002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0	0	0	0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0	0
7304190000	기타	0	0	0	0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0	0	0	0
73042300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0	0	0	0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4290000	기타	0	0	0	0
73043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0	0
7304390000	기타	0	0	0	0
73044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0	0
7304490000	기타	0	0	0	0
73045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0	0
7304590000	기타	0	0	0	0
7304900000	기타	0	0	0	0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 초과하고 1,422.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305120000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5190000	기타	0	0	0	0
73052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0	0	0	0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0	0	0	0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 것	0	0	0	0
7305319000	기타	0	0	0	0
7305390000	기타	0	0	0	0
7305900000	기타	0	0	0	0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6190000	기타	0	0	0	0
7306211000	케이싱	0	0	0	0
7306212000	튜빙	0	0	0	0
7306291000	케이싱	0	0	0	0
7306292000	튜빙	0	0	0	0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0	0	0	0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0	0	0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0	0
7306301090	기타	0	0	0	0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0	0	0	0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0	0	0	0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306302090	기타	0	0	0	0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30650000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0	0	0	0
7306611090	기타	0	0	0	0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0	0
730661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0	0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0	0	0	0
7306691090	기타	0	0	0	0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0	0
730669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0	0
7306901000	이중권(double wall) 강관	0	0	0	0
7306909000	기타	0	0	0	0
730711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0	0	0	0
7307190000	기타	0	0	0	0
7307210000	플랜지(flange)	0	0	0	0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0	0	0
7307229000	기타	0	0	0	0
73072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0	0	0	0
7307290000	기타	0	0	0	0
7307910000	플랜지(flange)	0	0	0	0
73079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철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0	0	0	0
7307929000	기타	0	0	0	0
7307930000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0	0	0	0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에 상관없다)	0	0	0	0
7307999000	기타	0	0	0	0
7308100000	다리와 교량	0	0	0	0
7308200000	탑과 격자주(格子柱)	0	0	0	0
73083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0	0	0	0
7308400000	비계(飛階)・차단기・지주나 갱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0	0	0	0
7308901000	수문	0	0	0	0
7308909000	기타	0	0	0	0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731010000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0	0	0	0
7310210000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0	0	0	0
7310290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311001000	용적이 30 리터 이하인 것	0	0	0	0
7311002000	용적이 30 리터 초과하고 100 리터 이하인 것	0	0	0	0
7311003000	용적이 1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312101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0	0
7312101019	기타	0	0	0	0
7312101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0	0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0	0
7312101099	기타	0	0	0	0
7312102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0	0
7312102019	기타	0	0	0	0
7312102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0	0	0	0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0	0
7312102099	기타	0	0	0	0
7312900000	기타	0	0	0	0
7313001000	유자선(有刺銑)	0	0	0	0
7313009000	기타	0	0	0	0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141400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14190000	기타	0	0	0	0
731420000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314390000	기타	0	0	0	0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0	0
7314490000	기타	0	0	0	0
73145000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0	0	0	0
7315110000	롤러체인(roller chain)	0	0	0	0
7315120000	그 밖의 체인	0	0	0	0
7315190000	부분품	0	0	0	0
7315200000	스키드체인(skid chain)	0	0	0	0
7315810000	스터드링크(stud-link)	0	0	0	0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15890000	기타	0	0	0	0
7315900000	그 밖의 부분품	0	0	0	0
7316001000	닻	0	0	0	0
7316002000	부분품	0	0	0	0
7317001011	도금・도포하거나 페인트한 것	0	0	0	0
7317001019	기타	0	0	0	0
7317001021	도금・도포하거나 페인트한 것	0	0	0	0
7317001029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317002000	압정	0	0	0	0
7317003000	제도용이나 사무용 핀	0	0	0	0
7317004000	파형 못	0	0	0	0
7317005000	스테이플	0	0	0	0
7317009000	기타	0	0	0	0
7318110000	코치 스크루(coach screw)	0	0	0	0
73181200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0	0	0	0
7318130000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0	0	0	0
7318140000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0	0	0	0
7318151000	머신스크루(screw)	0	0	0	0
7318152000	볼트(bolt)	0	0	0	0
7318153000	볼트(bolt)와 너트(nut)(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18159000	기타	0	0	0	0
7318160000	너트(nut)	0	0	0	0
7318190000	기타	0	0	0	0
7318210000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0	0	0	0
7318220000	그 밖의 와셔(washer)	0	0	0	0
7318230000	리벳(rivet)	0	0	0	0
7318240000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0	0	0	0
7318290000	기타	0	0	0	0
7319401000	안전핀	0	0	0	0
7319402000	반도체 웨이퍼나 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핀	0	0	0	0
7319409000	기타	0	0	0	0
7319901010	수봉침	0	0	0	0
7319901020	수편침	0	0	0	0
7319901090	기타	0	0	0	0
7319909000	기타	0	0	0	0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0	0	0	0
7320102000	기관차 및 철도 차량용 판상 스프링	0	0	0	0
7320109000	기타	0	0	0	0
7320201000	자동차용	0	0	0	0
7320202000	충격 흡수용	0	0	0	0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	0	0	0	0
7320204000	가구용	0	0	0	0
7320209000	기타	0	0	0	0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0	0	0	0
7320909000	그 밖의 스프링	0	0	0	0
73211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0	0	0	0
7321120000	액체연료용	0	0	0	0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0	0	0	0
73218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0	0	0	0
7321820000	액체연료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0	0	0	0
7321900000	부분품	0	0	0	0
7322111000	방열기	0	0	0	0
7322112000	부분품	0	0	0	0
7322191000	방열기	0	0	0	0
7322192000	부분품	0	0	0	0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0	0	0	0
7322909010	공기가열기	0	0	0	0
7322909020	온풍배분기	0	0	0	0
7322909030	부분품	0	0	0	0
732310000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732391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0	0	0	0
732392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0	0	0	0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0	0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0	0	0	0
7323990000	기타	0	0	0	0
7324101000	설거지통	0	0	0	0
7324102000	세면대	0	0	0	0
7324210000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0	0
7324299000	기타	0	0	0	0
7324901000	화장용 세트	0	0	0	0
7324908000	기타	0	0	0	0
7324909000	부분품	0	0	0	0
732510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0	0	0	0
73259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7325991000	주철로 만든 것	0	0	0	0
7325992000	주강으로 만든 것	0	0	0	0
7325993000	합금강으로 만든 것	0	0	0	0
7325999000	기타	0	0	0	0
73261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7326190000	기타	0	0	0	0
73262000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0	0	0	0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bobbin)	0	0	0	0
7326909000	기타	0	0	0	0
7401001000	구리의 매트(mat)	0	0	0	0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0	0	0	0
7402001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0	0	0	0
7402002000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	0	0	0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0	0	0	0
7403120000	와이어바(wire-bar)	0	0	0	0
7403130000	빌릿(billet)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403191000	슬래브	0	0	0	0
7403192000	잉곳(ingot)	0	0	0	0
7403199000	기타	0	0	0	0
74032100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0	0	0	0
74032200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0	0	0	0
7403291010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0	0	0	0
7403291020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0	0	0	0
7403299000	기타	0	0	0	0
740400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40500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0	0	0	0
7406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0	0	0	0
7406201000	층상조직인 가루	0	0	0	0
7406202000	플레이크(flake)	0	0	0	0
7407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7407210000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07291000	구리-주석 합금(청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07292010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07292020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0	0	0	0
7407299000	기타	0	0	0	0
7408190000	기타	0	0	0	0
7408210000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08221000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08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0	0	0	0
7408291000	구리-주석 합금(청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08299000	기타	0	0	0	0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7409119000	기타	0	0	0	0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7409199000	기타	0	0	0	0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7409219000	기타	0	0	0	0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7409299000	기타	0	0	0	0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7409319000	기타	0	0	0	0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7409399000	기타	0	0	0	0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7409401090	기타	0	0	0	0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7409402090	기타	0	0	0	0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7409909000	기타	0	0	0	0
7410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41012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0	0	0	0
7410219000	기타	0	0	0	0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0	0	0	0
7410229000	기타	0	0	0	0
7411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7411210000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11221000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11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0	0	0	0
7411291000	구리-주석 합금(청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11299000	기타	0	0	0	0
7412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741220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7415101000	귀금속을 도금・피복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415109000	기타	0	0	0	0
7415210000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0	0	0	0
7415290000	기타	0	0	0	0
7415330000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0	0	0	0
7415390000	기타	0	0	0	0
7418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7418109010	식탁용품 · 주방용품	0	0	0	0
741810902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7418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0	0	0	0
7418109091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용	0	0	0	0
7418109099	기타	0	0	0	0
7418201000	위생용품	0	0	0	0
7418202000	부분품	0	0	0	0
7419101000	체인	0	0	0	0
7419102000	부분품	0	0	0	0
7419910000	주조・주형・압착하거나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419991010	클로스(cloth)	0	0	0	0
7419991090	기타	0	0	0	0
7419992000	구리로 만든 스프링	0	0	0	0
7419999000	기타	0	0	0	0
7501100000	니켈의 매트(mat)	0	0	0	0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8 이상인 것	0	0	0	0
7501201090	기타	0	0	0	0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8 이상인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501209090	기타	0	0	0	0
7502101000	음극	0	0	0	0
7502109000	기타	0	0	0	0
7502200000	니켈 합금	0	0	0	0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504001000	가루	0	0	0	0
7504002000	플레이크(flake)	0	0	0	0
7505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7505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5052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75052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506101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	0	0	0	0
7506102000	박(箔)	0	0	0	0
7506201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	0	0	0	0
7506202000	박(箔)	0	0	0	0
7507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7507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507200000	관(管) 연결구류	0	0	0	0
750810000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 및 망	0	0	0	0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0	0	0	0
75089020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75089020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508909000	기타	0	0	0	0
76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0	0	0	0
7601201000	캐스팅 얼로이(casting alloy)	0	0	0	0
7601202000	빌릿(billet)	0	0	0	0
7601209000	기타	0	0	0	0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60310000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0	0	0	0
7603201000	가루	0	0	0	0
7603202000	플레이크(flake)	0	0	0	0
7604101000	막대(bar, rod)	0	0	0	0
760410201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0	0	0	0
7604102090	기타	0	0	0	0
7604210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0	0	0	0
7604291000	막대(bar, rod)	0	0	0	0
7604299000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0	0	0	0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605190000	기타	0	0	0	0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605290000	기타	0	0	0	0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760611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7606919000	기타	0	0	0	0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7607119000	기타	0	0	0	0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7607199000	기타	0	0	0	0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7607209000	기타	0	0	0	0
7608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0	0	0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609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	0	0	0
76101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0	0	0	0
7610901000	구조물	0	0	0	0
7610908000	기타	0	0	0	0
7610909000	부분품	0	0	0	0
7611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0	0	0	0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0	0	0	0
7612909010	용적이 1 리터 미만인 것	0	0	0	0
7612909020	용적이 1 리터 이상 20 리터 미만인 것	0	0	0	0
7612909030	용적이 20 리터 이상인 것	0	0	0	0
7613001000	압축가스용	0	0	0	0
7613002000	액화가스용	0	0	0	0
761410000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0	0	0	0
7614900000	기타	0	0	0	0
7615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761510901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0	0	0	0
7615109020	식탁용품・주방용품	0	0	0	0
7615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0	0	0	0
7615109090	부분품	0	0	0	0
7615201000	위생용품	0	0	0	0
7615202000	부분품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616100000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76169100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0	0	0	0
7616991000	보빈(bobbin)	0	0	0	0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pouch)	0	0	0	0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knob)	0	0	0	0
7616999090	기타	0	0	0	0
780110100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7801109000	기타	0	0	0	0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0	0	0	0
7801991000	정제하지 않은 납	0	0	0	0
7801992010	납-주석 합금	0	0	0	0
7801992090	기타	0	0	0	0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804111000	시트(sheet)와 스트립	0	0	0	0
7804112000	박(箔)	0	0	0	0
7804190000	기타	0	0	0	0
7804201000	가루	0	0	0	0
7804202000	플레이크(flake)	0	0	0	0
7806001000	납으로 만든 용기	0	0	0	0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0	0	0	0
7806003010	막대(bar, rod)	0	0	0	0
7806003020	프로파일(profile)	0	0	0	0
7806003030	선(線)	0	0	0	0
7806004010	관(管)	0	0	0	0
7806004020	관(管) 연결구류	0	0	0	0
7806009000	기타	0	0	0	0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0	0	0	0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0	0	0	0
7901202000	아연-구리 합금	0	0	0	0
7901209000	기타	0	0	0	0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903100000	아연 더스트(dust)	0	0	0	0
7903901000	가루	0	0	0	0
7903902000	플레이크(flake)	0	0	0	0
7904001000	막대(bar, rod)	0	0	0	0
7904002000	프로파일(profile)	0	0	0	0
7904003000	선(線)	0	0	0	0
7905001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905002000	박(箔)	0	0	0	0
7907001000	홈통・지붕덮개・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0	0	0	0
7907002010	관(管)	0	0	0	0
7907002020	관(管) 연결구류	0	0	0	0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0	0	0	0
7907009090	기타	0	0	0	0
80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0	0	0	0
8001200000	주석 합금	0	0	0	0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003001010	합금하지 않은 것	0	0	0	0
8003001090	기타	0	0	0	0
8003002010	합금하지 않은 것	0	0	0	0
8003002090	기타	0	0	0	0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0	0	0	0
8007002000	판・쉬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007003010	박(箔)	0	0	0	0
8007003021	가루	0	0	0	0
8007003022	플레이크(flake)	0	0	0	0
8007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	0	0	0
8007009000	기타	0	0	0	0
8101100000	가루	0	0	0	0
8101940000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	0	0	0
8101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0	0	0	0
8101969000	기타	0	0	0	0
8101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1991010	막대(bar, rod)	0	0	0	0
8101991020	프로파일(profile)	0	0	0	0
810199103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0	0	0	0
8101991040	박(箔)	0	0	0	0
8101999000	기타	0	0	0	0
8102100000	가루	0	0	0	0
8102940000	몰리브데늄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	0	0	0
8102951000	막대(bar, rod)	0	0	0	0
8102952000	프로파일(profile)	0	0	0	0
8102953000	판・시트(sheet)와 스트립	0	0	0	0
8102954000	박(箔)	0	0	0	0
8102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0	0	0	0
8102969000	기타	0	0	0	0
8102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102990000	기타	0	0	0	0
8103201000	괴(塊)	0	0	0	0
8103202000	가루	0	0	0	0
8103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3900000	기타	0	0	0	0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0	0	0	0
8104190000	기타	0	0	0	0
8104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4301000	줄밥(rasping)·연삭설(tuming) 및 알갱이	0	0	0	0
8104302000	가루	0	0	0	0
8104901000	막대(bar, rod)	0	0	0	0
8104909000	기타	0	0	0	0
8105201000	코발트의 괴(塊)	0	0	0	0
8105202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0	0	0	0
8105203000	가루	0	0	0	0
8105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5900000	기타	0	0	0	0
8106001010	비스무트의 괴(塊)	0	0	0	0
810600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6001030	가루	0	0	0	0
8106009000	기타	0	0	0	0
8107201000	카드뮴의 괴(塊)	0	0	0	0
8107202000	가루	0	0	0	0
8107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7900000	기타	0	0	0	0
8108201000	괴(塊)	0	0	0	0
8108202000	가루	0	0	0	0
8108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8901000	판과 스트립	0	0	0	0
8108902000	관(管)	0	0	0	0
8108909000	기타	0	0	0	0
8109201000	괴(塊)	0	0	0	0
8109202000	가루	0	0	0	0
8109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9901010	관(管)	0	0	0	0
8109901020	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0	0	0	0
8109901030	봉	0	0	0	0
8109901090	기타	0	0	0	0
8109909000	기타	0	0	0	0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0	0	0	0
8110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10900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0	0
8112120000	괴(塊), 가루	0	0	0	0
811213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12190000	기타	0	0	0	0
8112210000	괴(塊), 가루	0	0	0	0
81122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12290000	기타	0	0	0	0
8112510000	괴(塊), 가루	0	0	0	0
81125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12590000	기타	0	0	0	0
8112921000	게르마늄	0	0	0	0
8112922000	바나듐	0	0	0	0
8112923000	갈륨	0	0	0	0
8112924000	하프늄	0	0	0	0
8112925000	인듐	0	0	0	0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0	0	0	0
8112927000	레늄	0	0	0	0
8112929000	기타	0	0	0	0
8112991000	게르마늄	0	0	0	0
8112992000	바나듐	0	0	0	0
8112993000	갈륨	0	0	0	0
8112994000	하프늄	0	0	0	0
8112995000	인듐	0	0	0	0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0	0	0	0
8112997000	레늄	0	0	0	0
8112999000	기타	0	0	0	0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0	0
8201100000	가래와 삽	0	0	0	0
8201300000	곡괭이・픽스(picks)・괭이 및 쇠스랑	0	0	0	0
820140000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0	0	0	0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0	0	0	0
8201600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0	0	0	0
8201901000	낫	0	0	0	0
8201902000	초절기(草切機)	0	0	0	0
8201903000	제재(製材)용 쐐기	0	0	0	0
8201904000	포크	0	0	0	0
8201909000	기타	0	0	0	0
8202101000	목재용	0	0	0	0
8202102000	금속용	0	0	0	0
82021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202200000	띠톱의 날	0	0	0	0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0	0	0	0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을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0	0	0	0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나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것	0	0	0	0
8202392090	기타	0	0	0	0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8202399000	부분품	0	0	0	0
8202400000	체인톱의 날	0	0	0	0
8202911000	쇠톱의 날	0	0	0	0
8202919000	기타	0	0	0	0
8202991000	사파이어 잉곳(ingot) 절단용	0	0	0	0
8202999000	기타	0	0	0	0
8203101000	톱날용	0	0	0	0
8203109000	기타	0	0	0	0
8203201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0	0	0	0
8203202000	집게	0	0	0	0
8203203000	핀셋	0	0	0	0
8203204000	못뽑기	0	0	0	0
8203209000	기타	0	0	0	0
8203300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0	0	0	0
8203401000	파이프커터(pipe-cutter)	0	0	0	0
8203402000	볼트크로퍼(bolt cropper)와 클리퍼	0	0	0	0
8203403000	천공펀치	0	0	0	0
8203409000	기타	0	0	0	0
8204110000	조절할 수 없는 것	0	0	0	0
8204120000	조절할 수 있는 것	0	0	0	0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8205101000	드릴링용	0	0	0	0
8205102000	드레딩(threading)용	0	0	0	0
8205103000	태핑용(tapping)	0	0	0	0
8205109000	기타	0	0	0	0
8205200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0	0	0	0
820530000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0	0	0	0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0	0	0	0
8205510000	가정용 공구	0	0	0	0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	0	0	0	0
8205592000	땜인두	0	0	0	0
8205593000	그리스 건(grease gun)	0	0	0	0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0	0	0	0
8205596000	미장용과 도장용 공구	0	0	0	0
8205597000	시계 제조용 공구	0	0	0	0
820559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205600000	블로램프(blow lamp)	0	0	0	0
8205701000	바이스(vice)	0	0	0	0
8205702000	클램프(clamp)	0	0	0	0
8205709000	기타	0	0	0	0
8205901000	모루	0	0	0	0
8205902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	0	0	0	0
8205909010	이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	0	0	0	0
8205909090	기타	0	0	0	0
820600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0	0	0	0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0	0	0	0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8207199000	부분품	0	0	0	0
8207201000	인발(引拔)용	0	0	0	0
8207202000	압출용	0	0	0	0
8207301000	프레싱(pressing)용	0	0	0	0
8207302000	스탬핑(stamping)용	0	0	0	0
8207303000	펀칭(punching)용	0	0	0	0
8207309000	기타	0	0	0	0
8207401000	태핑용(tapping)	0	0	0	0
8207402000	드레딩(threading)용	0	0	0	0
8207409000	기타	0	0	0	0
8207501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0	0	0	0
8207501090	기타	0	0	0	0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brace bit)	0	0	0	0
8207509000	기타	0	0	0	0
8207601000	리머(reamer)	0	0	0	0
8207602000	랩(lap)	0	0	0	0
8207603000	브로치(broach)	0	0	0	0
8207609000	기타	0	0	0	0
8207701000	기어커터	0	0	0	0
8207702000	밀링커터	0	0	0	0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gear cutting hob)	0	0	0	0
8207704000	로터리파일	0	0	0	0
8207709000	기타	0	0	0	0
8207801000	선반용 공구	0	0	0	0
8207809000	기타	0	0	0	0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0	0	0	0
8207909000	기타	0	0	0	0
8208100000	금속 가공용	0	0	0	0
8208200000	목재 가공용	0	0	0	0
8208300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0	0	0	0
8208400000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 기계의 것	0	0	0	0
8208900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209001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으로 감마코팅 처리된 것	0	0	0	0
8209001040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0	0	0	0
8209001090	기타	0	0	0	0
8209002010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0	0	0	0
8209002040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0	0	0	0
8209002090	기타	0	0	0	0
8210001000	분쇄기 및 마쇄기	0	0	0	0
8210002000	추출기 및 압착기	0	0	0	0
8210003000	비터(beater) 및 믹서	0	0	0	0
8210004000	세절기 및 커터	0	0	0	0
8210005000	오프너·코르커 및 실러	0	0	0	0
8210008000	그 밖의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0	0	0	0
8210009000	부분품	0	0	0	0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0	0	0	0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0	0	0	0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0	0	0	0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0	0	0	0
8211940000	칼날	0	0	0	0
821195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0	0	0	0
8212100000	면도기	0	0	0	0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212900000	그 밖의 부분품	0	0	0	0
8213001000	가정용·사무용 가위	0	0	0	0
8213002010	재단용 가위	0	0	0	0
8213002020	이발용 가위	0	0	0	0
8213002090	기타	0	0	0	0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0	0	0	0
8213004000	가위날	0	0	0	0
8213009000	기타	0	0	0	0
8214101000	연필깎이	0	0	0	0
8214109000	기타	0	0	0	0
8214200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0	0	0	0
8214901000	이발기	0	0	0	0
821490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붙이,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0	0	0	0
8214909000	기타	0	0	0	0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0	0	0	0
8215911000	스푼	0	0	0	0
8215912000	포크	0	0	0	0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0	0	0	0
8215915000	각종 집게	0	0	0	0
8215919000	기타	0	0	0	0
8215991000	스푼	0	0	0	0
8215992000	포크	0	0	0	0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0	0	0	0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0	0	0	0
8215995000	각종 집게	0	0	0	0
8215999000	기타	0	0	0	0
8301100000	자물쇠	0	0	0	0
830120000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0	0	0	0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0	0	0	0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0	0	0	0
8301401090	기타	0	0	0	0
8301409000	기타	0	0	0	0
8301500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0	0	0	0
8301600000	부분품	0	0	0	0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0	0	0	0
8302100000	경첩	0	0	0	0
8302200000	카스터(castor)	0	0	0	0
830230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8302411000	문이나 창에 적합한 것	0	0	0	0
8302419000	기타	0	0	0	0
8302420000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302491000	트렁크・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용구에 적합한 것	0	0	0	0
8302499000	기타	0	0	0	0
83025000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0	0	0	0
8302600000	자동도어 폐지기	0	0	0	0
8303001000	금고	0	0	0	0
8303009000	기타	0	0	0	0
8304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0	0	0	0
830510000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0	0	0	0
830520000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0	0	0	0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0	0	0
830610000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0	0	0	0
8306290000	기타	0	0	0	0
830630100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0	0	0	0
8306302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0	0	0	0
8307100000	철강으로 만든 것	0	0	0	0
830790000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0	0	0	0
8308101000	훅(hook)	0	0	0	0
8308102000	아이(eye)와 아일릿(eyelet)	0	0	0	0
830820000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0	0	0	0
8308901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	0	0	0	0
8308902000	버클(buckle)과 버클(buckle)걸쇠	0	0	0	0
8308903000	구슬	0	0	0	0
8308904000	스팽글(spangle)	0	0	0	0
8308909000	기타	0	0	0	0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0	0	0	0
8309901000	캔뚜껑(E.O.E)	0	0	0	0
8309909000	기타	0	0	0	0
83100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311109000	기타	0	0	0	0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311209000	기타	0	0	0	0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땜납	0	0	0	0
8311309090	기타	0	0	0	0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311909000	기타	0	0	0	0
8401100000	원자로	0	0	0	0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0	0	0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0	0	0	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	0	0	0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0	0	0	0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0	0	0	0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0	0	0	0
8402199000	기타	0	0	0	0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0	0	0	0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0	0	0	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0	0	0	0
840310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0	0	0	0
8403102000	석탄을 사용하는 것	0	0	0	0
840310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03109000	기타	0	0	0	0
8403900000	부분품	0	0	0	0
8404101000	연료절약기	0	0	0	0
8404102000	과열기	0	0	0	0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0	0	0	0
8404104000	가스회수기	0	0	0	0
8404109000	기타	0	0	0	0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0	0	0	0
8404901000	보일러용 응축기의 것	0	0	0	0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것	0	0	0	0
8404909000	기타	0	0	0	0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0	0	0	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0	0	0	0
84051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0	0	0	0
8405104000	산소 발생기	0	0	0	0
8405109000	기타	0	0	0	0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0	0	0	0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0	0	0	0
84059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의 것	0	0	0	0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0	0	0	0
8405909000	기타	0	0	0	0
8406103000	출력이 2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06109000	기타	0	0	0	0
84068110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초과하고 1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06812000	출력이 100 메가와트 초과하고 300 메가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06813000	출력이 30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06820000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0	0	0	0
8406909000	기타	0	0	0	0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0	0	0	0
8407210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	0	0	0	0
8407290000	기타	0	0	0	0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0	0	0	0
8407319000	기타	0	0	0	0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0	0	0	0
8407329000	기타	0	0	0	0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0	0	0	0
8407339000	기타	0	0	0	0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0	0	0	0
8407349000	기타	0	0	0	0
8407901000	철도차량용	0	0	0	0
8407909000	기타	0	0	0	0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0	0	0	0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것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 초과하고 4,000 시시 이하인 것	0	0	0	0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 시시 초과하고 10,000 시시 이하인 것	0	0	0	0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08901010	철도용 기관차의 내연기관	0	0	0	0
8408901090	기타	0	0	0	0
8408909021	출력이 400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기용[분당 회전수(알피엠)가 1,500 이나 1,800 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8909029	기타	0	0	0	0
8408909030	제 8429 호용 내연기관	0	0	0	0
8408909090	기타	0	0	0	0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	0	0	0	0
8409911000	제 87 류의 차량용	0	0	0	0
8409912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용	0	0	0	0
8409919000	기타	0	0	0	0
8409991000	철도차량용	0	0	0	0
8409992000	제 87 류의 차량용	0	0	0	0
8409993030	출력이 2,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0	0	0	0
8409999010	발전용	0	0	0	0
8409999090	기타	0	0	0	0
8410111000	수력터빈	0	0	0	0
8410119000	기타	0	0	0	0
8410120000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10130000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0	0	0	0
8410901090	기타	0	0	0	0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0	0	0	0
8410909090	기타	0	0	0	0
8411111000	항공기용	0	0	0	0
8411119010	선박용	0	0	0	0
8411119090	기타	0	0	0	0
8411121000	항공기용	0	0	0	0
8411129010	선박용	0	0	0	0
8411129090	기타	0	0	0	0
8411211000	항공기용	0	0	0	0
8411219010	선박용	0	0	0	0
8411219090	기타	0	0	0	0
8411221000	항공기용	0	0	0	0
8411229010	선박용	0	0	0	0
8411229090	기타	0	0	0	0
8411811000	항공기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11819010	선박용	0	0	0	0
8411819090	기타	0	0	0	0
8411821000	항공기용	0	0	0	0
8411829010	선박용	0	0	0	0
8411829090	기타	0	0	0	0
8411911000	항공기용	0	0	0	0
8411919000	기타	0	0	0	0
8411991000	항공기용	0	0	0	0
8411999000	기타	0	0	0	0
84121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	0	0	0	0
8412101090	기타	0	0	0	0
8412109000	기타	0	0	0	0
8412211000	액압실린더	0	0	0	0
8412219000	기타	0	0	0	0
8412290000	기타	0	0	0	0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0	0	0	0
8412390000	기타	0	0	0	0
8412800000	기타	0	0	0	0
84129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	0	0	0	0
8412901090	기타	0	0	0	0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0	0	0	0
8412909000	기타	0	0	0	0
8413110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0	0	0	0
8413190000	기타	0	0	0	0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413301000	항공기용	0	0	0	0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용	0	0	0	0
8413304000	제 87 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0	0	0	0
8413309000	기타	0	0	0	0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0	0	0	0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0	0	0	0
8413509010	플런저 펌프	0	0	0	0
8413509020	피스톤 펌프	0	0	0	0
8413509030	다이아프램 펌프	0	0	0	0
8413509090	기타	0	0	0	0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0	0	0	0
8413609010	기어 펌프	0	0	0	0
8413609020	베인 펌프	0	0	0	0
8413609030	스크루 펌프	0	0	0	0
8413609090	기타	0	0	0	0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0	0	0	0
8413709010	터빈 펌프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13709020	볼류트 펌프	0	0	0	0
8413709090	기타	0	0	0	0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0	0	0	0
8413819000	기타	0	0	0	0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0	0	0	0
8413911000	급유용 펌프의 것	0	0	0	0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0	0	0	0
8413913000	왕복 펌프의 것	0	0	0	0
8413914000	원심 펌프의 것	0	0	0	0
8413915000	로터리 펌프의 것	0	0	0	0
8413919000	기타	0	0	0	0
8413920000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0	0	0	0
8414101000	항공기용	0	0	0	0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도달진공도가 9×10-³토르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414109090	기타	0	0	0	0
841420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0	0	0	0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0	0	0	0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0	0	0	0
8414400000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0	0	0	0
8414511000	항공기용	0	0	0	0
8414519000	기타	0	0	0	0
8414591000	항공기용	0	0	0	0
8414599000	기타	0	0	0	0
8414601000	항공기용	0	0	0	0
8414609000	기타	0	0	0	0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14809110	항공기용	0	0	0	0
8414809190	기타	0	0	0	0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미만인 것	0	0	0	0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 킬로와트 이상 373 킬로와트 미만인 것	0	0	0	0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 킬로와트 이상인 것	0	0	0	0
8414809900	기타	0	0	0	0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0	0	0	0
8414909010	냉장설비용 압축기의 것	0	0	0	0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은 제외한다)	0	0	0	0
8414909090	기타	0	0	0	0
8415101011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0	0	0	0
8415101012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0	0	0	0
8415101021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0	0	0	0
8415101022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0	0	0	0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미만인 것	0	0	0	0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 킬로와트 이상인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1520000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	0	0	0	0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0	0	0	0
8415900000	부분품	0	0	0	0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0	0	0	0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 리터 초과하고 1,500 리터 미만인 것	0	0	0	0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 리터 이상인 것	0	0	0	0
8416201000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0	0	0	0
8416202000	기체연료용	0	0	0	0
8416209000	기타	0	0	0	0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0	0	0	0
8416901000	노용 버너의 것	0	0	0	0
8416909000	기타	0	0	0	0
8417101010	철광석용	0	0	0	0
8417101090	기타	0	0	0	0
8417102010	철강용	0	0	0	0
8417102090	기타	0	0	0	0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0	0	0	0
8417801010	시멘트용	0	0	0	0
8417801020	유리용	0	0	0	0
8417801030	도자기용	0	0	0	0
8417801090	기타	0	0	0	0
8417802000	이화학용	0	0	0	0
8417809000	기타	0	0	0	0
8417900000	부분품	0	0	0	0
8418101010	용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0	0	0	0
8418101020	용량이 200 리터 초과하고 400 리터 이하인 것	0	0	0	0
8418101030	용량이 4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18109000	기타	0	0	0	0
8418211000	용량이 200 리터 미만인 것	0	0	0	0
8418212000	용량이 200 리터 이상 400 리터 미만인 것	0	0	0	0
8418213000	용량이 400 리터 이상인 것	0	0	0	0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18299000	기타	0	0	0	0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18501000	쇼케이스	0	0	0	0
84185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18610000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0	0	0	0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0	0	0	0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0	0	0	0
8418692020	아이스큐버	0	0	0	0
8418692030	냉수기	0	0	0	0
8418692090	기타	0	0	0	0
8418693000	열펌프	0	0	0	0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0	0	0	0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0	0	0	0
8418999000	기타	0	0	0	0
84191100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0	0	0	0
8419190000	기타	0	0	0	0
8419200000	내과용・외과용이나 실험실용 살균기	0	0	0	0
8419310000	농산물용	0	0	0	0
8419320000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이나 판지용	0	0	0	0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핀 드라이어	0	0	0	0
8419399000	기타	0	0	0	0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0	0	0	0
8419501000	항공기용	0	0	0	0
8419509000	기타	0	0	0	0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0	0	0	0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0	0	0	0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	0	0	0	0
8419899010	가열기	0	0	0	0
8419899020	냉각기	0	0	0	0
8419899030	증발기	0	0	0	0
8419899040	응축기	0	0	0	0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0	0	0	0
8419899060	고온항온기나 저온항온기	0	0	0	0
8419899070	항온항습기	0	0	0	0
8419899080	공기조절기	0	0	0	0
8419899090	기타	0	0	0	0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중합기의 것	0	0	0	0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0	0	0	0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이나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0	0	0	0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0	0	0	0
8419909040	내과용・외과용이나 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0	0	0	0
8419909090	기타	0	0	0	0
8420101000	제지용	0	0	0	0
8420102000	직물용	0	0	0	0
8420103000	가죽용	0	0	0	0
8420104000	고무용이나 플라스틱용	0	0	0	0
84201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20910000	실린더	0	0	0	0
8420990000	기타	0	0	0	0
8421110000	크림분리기	0	0	0	0
8421120000	의류탈수기	0	0	0	0
8421191000	내과용・외과용이나 이화학용	0	0	0	0
8421192000	식품공업용	0	0	0	0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	0	0	0	0
8421199000	기타	0	0	0	0
8421211000	가정형	0	0	0	0
8421219010	수영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0	0	0	0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0	0	0	0
8421219090	기타	0	0	0	0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0	0	0	0
842123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0	0	0	0
8421232000	항공기용	0	0	0	0
8421239000	기타	0	0	0	0
8421291000	낙농용	0	0	0	0
8421292000	유해성 폐수처리용	0	0	0	0
8421293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421294000	항공기용	0	0	0	0
8421299000	기타	0	0	0	0
8421311000	제 87 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0	0	0	0
8421312000	항공기용	0	0	0	0
8421319000	기타	0	0	0	0
8421391000	가정형	0	0	0	0
8421392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0	0	0	0
8421399010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	0	0	0	0
842139902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421399030	항공기용	0	0	0	0
8421399090	기타	0	0	0	0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0	0	0	0
8421991000	제 87 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0	0	0	0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것	0	0	0	0
8421999020	정수기 교체용 필터	0	0	0	0
842199903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421999090	기타	0	0	0	0
8422110000	가정형	0	0	0	0
8422190000	기타	0	0	0	0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0	0	0	0
842230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0	0	0	0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함용이나 봉지용 기계	0	0	0	0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이나 레이블 첨부용 기계	0	0	0	0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22309000	기타	0	0	0	0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0	0	0	0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0	0	0	0
8422409020	자동결속기	0	0	0	0
8422409030	진공포장기	0	0	0	0
8422409090	기타	0	0	0	0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0	0	0	0
8422902000	그 밖의 포장기계의 것	0	0	0	0
8422909000	기타	0	0	0	0
842310000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 저울	0	0	0	0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0	0	0	0
8423202000	피드미터(feed meter)나 피드웨이어(feed weigher)	0	0	0	0
8423209000	기타	0	0	0	0
842330000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0	0	0	0
842381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8423820000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초과하고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8423891000	트럭 스케일	0	0	0	0
8423899000	기타	0	0	0	0
8423901010	정확도 등급을 가진 분동	0	0	0	0
8423901090	기타	0	0	0	0
8423909000	저울의 부분품	0	0	0	0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8424201000	스프레이건	0	0	0	0
8424202010	로보트형	0	0	0	0
8424202090	기타	0	0	0	0
8424209000	기타	0	0	0	0
8424301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0	0	0	0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0	0	0	0
8424309000	기타	0	0	0	0
8424811000	자주식(自走式) 방제기	0	0	0	0
8424812000	그 밖의 방제기	0	0	0	0
8424819000	기타	0	0	0	0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424899000	기타	0	0	0	0
8424901000	소화기의 것	0	0	0	0
8424902000	스프레이건의 것	0	0	0	0
8424903000	방제기의 것	0	0	0	0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424909090	기타	0	0	0	0
8425111010	체인블록	0	0	0	0
8425111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25112010	체인블록	0	0	0	0
8425112090	기타	0	0	0	0
8425190000	기타	0	0	0	0
842531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25319000	기타	0	0	0	0
8425391000	갱구용 와인딩 기어,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25399000	기타	0	0	0	0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0	0	0	0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0	0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0	0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426110000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0	0	0	0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0	0	0	0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	0	0	0
8426190000	기타	0	0	0	0
8426200000	타워크레인(tower crane)	0	0	0	0
8426301000	문형 크레인	0	0	0	0
8426302000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0	0	0	0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0	0	0	0
8426491000	신축붐식(telescopic boom type)	0	0	0	0
8426492000	앵글식(latticed boom type)	0	0	0	0
8426499000	기타	0	0	0	0
842691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	0	0	0
8426991000	선박의 데릭(derrick)	0	0	0	0
8426999000	기타	0	0	0	0
8427101000	카운트 밸런스식의 것	0	0	0	0
8427102000	카운트 밸런스식이 아닌 것	0	0	0	0
8427109000	기타	0	0	0	0
8427201010	적재중량이 3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0	0
8427201020	적재중량이 3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427209000	기타	0	0	0	0
8427901000	수동식 펠릿(pallet) 트럭	0	0	0	0
8427909000	기타	0	0	0	0
8428101000	리프트	0	0	0	0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0	0	0	0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0	0	0	0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0	0	0	0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0	0	0	0
8428320000	그 밖의 버켓형	0	0	0	0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 미터 미만인 것	0	0	0	0
8428331020	분당 속도가 240 미터 이상인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28332000	컨베이어	0	0	0	0
8428390000	기타	0	0	0	0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0	0	0	0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0	0	0	0
842860000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0	0	0	0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기관차나 화차의 트레버서·화차 경사기와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	0	0	0
8428909000	기타	0	0	0	0
8429111000	불도저(bulldozer)	0	0	0	0
8429112000	앵글도저(angledozer)	0	0	0	0
8429190000	기타	0	0	0	0
842920000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0	0	0	0
8429300000	스크래퍼(scraper)	0	0	0	0
8429401000	탬핑머신(tamping machine)	0	0	0	0
8429402000	로드롤러(road roller)	0	0	0	0
8429511010	로우더	0	0	0	0
8429511020	백호우 로우더	0	0	0	0
8429511030	스키드스티어 로우더	0	0	0	0
8429511090	기타	0	0	0	0
8429519000	기타	0	0	0	0
8429521010	휠 타입의 것	0	0	0	0
8429521020	무한궤도식의 것	0	0	0	0
8429521090	기타	0	0	0	0
8429529000	기타	0	0	0	0
8429591000	메커니컬 셔블(shovel)	0	0	0	0
8429599000	기타	0	0	0	0
843010000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0	0	0	0
843020000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0	0	0	0
8430310000	자주식(自走式)	0	0	0	0
8430390000	기타	0	0	0	0
8430411000	천공용 기계	0	0	0	0
8430412000	시굴용 기계	0	0	0	0
8430491000	시추기	0	0	0	0
8430499000	기타	0	0	0	0
8430500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30610000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0	0	0	0
8430690000	기타	0	0	0	0
843110000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0	0	0	0
843120000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0	0	0	0
8431310000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에스컬레이터의 것	0	0	0	0
8431390000	기타	0	0	0	0
8431411000	엑스커베이터(excavator)의 것	0	0	0	0
843141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31420000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0	0	0	0
8431430000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0	0	0
8431491000	유압브레이커	0	0	0	0
8431492000	크러셔(crusher)	0	0	0	0
8431499000	기타	0	0	0	0
8432100000	플라우(쟁기)	0	0	0	0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0	0	0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0	0	0	0
8432292000	제초기	0	0	0	0
8432299000	기타	0	0	0	0
8432301000	파종기	0	0	0	0
8432302000	식부기(植付機)	0	0	0	0
8432303000	이식기	0	0	0	0
8432309000	기타	0	0	0	0
8432401000	퇴비 살포기	0	0	0	0
8432402000	비료 살포기	0	0	0	0
8432800000	그 밖의 기계	0	0	0	0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0	0	0	0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0	0	0	0
8432909000	기타	0	0	0	0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33190000	기타	0	0	0	0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0	0	0	0
8433300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0	0	0	0
8433400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 결속기를 포함한다]	0	0	0	0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0	0	0	0
8433520000	그 밖의 탈곡기	0	0	0	0
8433530000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0	0	0	0
8433590000	기타	0	0	0	0
8433601000	새의 알 선별기	0	0	0	0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0	0	0	0
8433609090	기타	0	0	0	0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0	0	0	0
8433902000	풀베는 기계의 것	0	0	0	0
8433909000	기타	0	0	0	0
8434100000	착유기	0	0	0	0
8434201000	균질기	0	0	0	0
8434209000	기타	0	0	0	0
8434901000	착유기의 것	0	0	0	0
8434902000	균질기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34909000	기타	0	0	0	0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0	0	0	0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0	0	0	0
8435103000	과실주스 제조용 균질기	0	0	0	0
8435109000	기타	0	0	0	0
8435900000	부분품	0	0	0	0
8436101000	사료절단기	0	0	0	0
8436102000	사료분쇄기	0	0	0	0
8436103000	사료배합기	0	0	0	0
8436109000	기타	0	0	0	0
8436211000	부란기	0	0	0	0
8436219000	기타	0	0	0	0
8436290000	기타	0	0	0	0
8436800000	그 밖의 기계	0	0	0	0
84369100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0	0	0	0
8436990000	기타	0	0	0	0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0	0	0	0
8437109000	기타	0	0	0	0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0	0	0	0
843780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기계	0	0	0	0
8437901000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나 선별기용의 것	0	0	0	0
8437909000	기타	0	0	0	0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0	0	0	0
8438109000	기타	0	0	0	0
8438200000	과자・코코아나 초콜릿 제조용 기계	0	0	0	0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0	0	0	0
8438400000	양조용 기계	0	0	0	0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0	0	0	0
8438509000	기타	0	0	0	0
8438600000	과실・견과나 채소의 조제용 기계	0	0	0	0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0	0	0	0
8438809000	기타	0	0	0	0
8438900000	부분품	0	0	0	0
8439101000	쇄목기	0	0	0	0
8439102000	절단기	0	0	0	0
8439103000	스트레이너	0	0	0	0
8439104000	프레스빠데(press-pate)기	0	0	0	0
8439105000	비터(beater)	0	0	0	0
8439109000	기타	0	0	0	0
8439201000	초지 준비기	0	0	0	0
8439202000	초지기	0	0	0	0
84392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39301000	종이・판지를 감는 기계	0	0	0	0
8439302000	표면 가공기	0	0	0	0
8439303000	침투 가공기	0	0	0	0
8439309000	기타	0	0	0	0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0	0	0	0
8439990000	기타	0	0	0	0
8440101000	제본용 재봉기	0	0	0	0
8440102000	제본용 접는 기계	0	0	0	0
8440109000	기타	0	0	0	0
8440901000	제본용 재봉기의 것	0	0	0	0
8440909000	기타	0	0	0	0
8441100000	절단기	0	0	0	0
8441201000	종이백이나 봉지 제조용 기계	0	0	0	0
8441202000	봉투 제조기	0	0	0	0
844130000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이나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441400000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0	0	0	0
8441801000	종이나 판지의 트리밍기	0	0	0	0
8441809000	기타	0	0	0	0
8441900000	부분품	0	0	0	0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와 장치	0	0	0	0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0	0	0	0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0	0	0	0
8442304000	사진 식자기	0	0	0	0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 기계류, 장치와 장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8442309000	기타	0	0	0	0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0	0	0	0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 및 장치의 것	0	0	0	0
8442409000	기타	0	0	0	0
844250000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이나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0	0	0	0
844311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312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않은 상태의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3130000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0	0	0	0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0	0	0	0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제외한다]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0	0	0	0
84431700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0	0	0	0
8443191000	직물날염기	0	0	0	0
8443192000	그 밖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륨이나 그 밖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 문자를 반복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그 밖의 인쇄기	0	0	0	0
8443199000	기타	0	0	0	0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0	0	0	0
8443311020	도트 프린터	0	0	0	0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0	0	0	0
8443311090	기타	0	0	0	0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나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소호 제 8443.31.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0	0	0	0
8443321020	도트 프린터	0	0	0	0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0	0	0	0
8443321090	기타	0	0	0	0
8443322000	팩시밀리	0	0	0	0
8443323000	텔레프린터	0	0	0	0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443325090	기타	0	0	0	0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443391090	기타	0	0	0	0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0	0	0	0
8443393020	밀착식	0	0	0	0
8443394000	열식 복사기	0	0	0	0
8443399000	기타	0	0	0	0
8443911010	자동급지기	0	0	0	0
8443911020	접기용, 풀칠용, 천공용 및 지철용의 기계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43911030	연속번호기	0	0	0	0
8443911090	기타	0	0	0	0
8443919000	기타	0	0	0	0
8443991000	소호 제 8443.31.10 호나 제 8443.32.10 호의 것	0	0	0	0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0	0	0	0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0	0	0	0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0	0	0	0
8443994020	종이공급기	0	0	0	0
8443994030	분류기	0	0	0	0
8443994090	기타	0	0	0	0
8443995000	소호 제 8443.31.4000 호, 제 8443.32.5010 호, 제 8443.32.5090 호, 제 8443.39.1010 호나 제 8443.39.1090 호의 것	0	0	0	0
8443999000	기타	0	0	0	0
8444001000	방사(紡絲)기	0	0	0	0
8444002000	연신(drawing)기	0	0	0	0
8444003000	텍스처(texture)기	0	0	0	0
8444004000	절단기	0	0	0	0
8444009000	기타	0	0	0	0
844511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0	0	0	0
844512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0	0	0	0
8445130000	연조기나 조방기	0	0	0	0
8445191000	혼타면기	0	0	0	0
8445192000	래프성형기	0	0	0	0
8445193000	조면기	0	0	0	0
8445199000	기타	0	0	0	0
8445201010	정방기	0	0	0	0
8445201090	기타	0	0	0	0
8445202010	정방기	0	0	0	0
8445202090	기타	0	0	0	0
8445203000	견방용	0	0	0	0
8445209000	기타	0	0	0	0
8445301000	필라멘트사용	0	0	0	0
8445302000	방적사용	0	0	0	0
8445309000	기타	0	0	0	0
8445401000	콘 와인더	0	0	0	0
8445402000	치즈 와인더	0	0	0	0
8445409000	기타	0	0	0	0
8445901000	정경기	0	0	0	0
8445902000	정경호부기	0	0	0	0
8445903000	통경기	0	0	0	0
8445904000	연경기	0	0	0	0
8445909000	기타	0	0	0	0
844610000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46211000	면직기	0	0	0	0
8446212000	모직기	0	0	0	0
8446213000	견직기	0	0	0	0
8446219000	기타	0	0	0	0
8446290000	기타	0	0	0	0
8446301010	면직기	0	0	0	0
8446301020	견직기	0	0	0	0
8446301030	타올직기	0	0	0	0
8446301090	기타	0	0	0	0
8446302010	면직기	0	0	0	0
8446302020	견직기	0	0	0	0
8446302030	타올직기	0	0	0	0
8446302090	기타	0	0	0	0
8446303010	면직기	0	0	0	0
8446303020	견직기	0	0	0	0
8446303030	타올직기	0	0	0	0
8446303090	기타	0	0	0	0
8446309010	면직기	0	0	0	0
8446309020	견직기	0	0	0	0
8446309030	타올직기	0	0	0	0
8446309090	기타	0	0	0	0
8447111000	양말편기	0	0	0	0
8447119000	기타	0	0	0	0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47201010	수(手)편직기(반자동 횡(橫)편직기를 포함한다)	0	0	0	0
8447201020	자동 횡(橫)편직기	0	0	0	0
8447201090	기타	0	0	0	0
8447202010	랏셀기	0	0	0	0
8447202020	트리코트기	0	0	0	0
8447202090	기타	0	0	0	0
8447209000	기타	0	0	0	0
8447901000	레이스기	0	0	0	0
8447902010	자동자수기	0	0	0	0
8447902090	기타	0	0	0	0
8447903000	결망기	0	0	0	0
8447909000	기타	0	0	0	0
8448111000	도비(dobby)기	0	0	0	0
8448112000	자카드기	0	0	0	0
8448113000	카드 천공기	0	0	0	0
8448119000	기타	0	0	0	0
8448191000	경사용 빔스탠드 또는 크릴(creel)	0	0	0	0
8448192000	자동정지기	0	0	0	0
8448193000	경사연접기	0	0	0	0
8448199010	실 제조용 보조기계(조면기는 제외한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48199090	기타	0	0	0	0
8448201000	방사 니플	0	0	0	0
8448209000	기타	0	0	0	0
8448310000	침포	0	0	0	0
8448321000	카드기(carding machine)용[가닛와이어(garnet wire)는 제외한다]	0	0	0	0
8448329000	기타	0	0	0	0
8448331000	스핀들 플라이어	0	0	0	0
8448339010	스핀들	0	0	0	0
8448339020	스피닝링	0	0	0	0
8448339030	링트래블러	0	0	0	0
8448391000	경사빔	0	0	0	0
8448399000	기타	0	0	0	0
8448420000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0	0	0	0
8448491000	셔틀	0	0	0	0
8448499000	기타	0	0	0	0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0	0	0	0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0	0	0	0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0	0	0	0
8448519000	기타	0	0	0	0
8448590000	기타	0	0	0	0
8449001010	펠트모자 제조용 기계	0	0	0	0
8449001090	기타	0	0	0	0
8449002000	모자제조용 형(型)	0	0	0	0
8449009000	부분품	0	0	0	0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0	0	0	0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50190000	기타	0	0	0	0
8450200000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기계	0	0	0	0
8450900000	부분품	0	0	0	0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0	0	0	0
8451210000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8451290000	기타	0	0	0	0
8451301000	스팀 프레스	0	0	0	0
8451309000	기타	0	0	0	0
8451401000	세척기	0	0	0	0
8451402000	표백기	0	0	0	0
8451403000	염색기	0	0	0	0
845150100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	0	0	0	0
8451502000	절단기	0	0	0	0
8451509000	기타	0	0	0	0
8451801000	열처리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51802000	폭출기(幅出機)	0	0	0	0
8451803000	머서라이징(mercerizing)기	0	0	0	0
8451809010	방축가공기	0	0	0	0
8451809020	도포기나 침투기	0	0	0	0
8451809030	기모기(起毛機)	0	0	0	0
8451809040	패딩기	0	0	0	0
8451809090	기타	0	0	0	0
8451901000	드라이크리닝기의 것	0	0	0	0
8451902000	건조기의 것	0	0	0	0
8451909000	기타	0	0	0	0
8452101010	직진형	0	0	0	0
8452101020	지그재그형	0	0	0	0
8452101030	프리암식	0	0	0	0
8452101090	기타	0	0	0	0
8452102000	수동식	0	0	0	0
8452211000	신발 제조용	0	0	0	0
8452212000	포장대 봉함용	0	0	0	0
8452213000	가죽이나 그 밖의 후물용	0	0	0	0
8452214000	모피용	0	0	0	0
8452219000	기타	0	0	0	0
8452291000	신발 제조용	0	0	0	0
8452292000	포장대 봉함용	0	0	0	0
8452293000	가죽이나 그 밖의 후물용	0	0	0	0
8452294000	모피용	0	0	0	0
8452299000	기타	0	0	0	0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0	0	0	0
845290100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0	0	0	0
8452909000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0	0	0	0
8453101000	유피준비기계	0	0	0	0
8453102000	유피기계	0	0	0	0
8453103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0	0	0	0
8453201000	신발 제조기계	0	0	0	0
8453202000	신발 수선기계	0	0	0	0
8453800000	그 밖의 기계	0	0	0	0
8453900000	부분품	0	0	0	0
8454100000	전로	0	0	0	0
845420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0	0	0	0
8454301010	다이케스팅기	0	0	0	0
8454301090	기타	0	0	0	0
8454309000	기타	0	0	0	0
8454901000	전로의 것	0	0	0	0
8454909000	기타	0	0	0	0
8455100000	관 압연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55210000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0	0	0	0
8455220000	냉간(冷間) 압연기	0	0	0	0
8455301000	주조제의 것	0	0	0	0
8455302000	단조제의 것	0	0	0	0
8455309000	기타	0	0	0	0
8455900000	그 밖의 부분품	0	0	0	0
8456103000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0	0	0	0
8456109000	기타	0	0	0	0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0	0	0	0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0	0	0	0
8456301090	기타	0	0	0	0
8456309000	기타	0	0	0	0
8456901000	워터제트 절단기	0	0	0	0
8456909000	기타	0	0	0	0
8457101000	수직형	0	0	0	0
8457102000	수평형	0	0	0	0
8457103000	문형	0	0	0	0
8457109000	기타	0	0	0	0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0	0	0	0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0	0	0	0
8458110000	수치제어식	0	0	0	0
8458190000	기타	0	0	0	0
8458910000	수치제어식	0	0	0	0
8458990000	기타	0	0	0	0
845910000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0	0	0	0
8459210000	수치제어식	0	0	0	0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0	0	0	0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0	0	0	0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0	0	0	0
8459299000	기타	0	0	0	0
8459310000	수치제어식	0	0	0	0
8459390000	기타	0	0	0	0
8459401000	지그 보링머신	0	0	0	0
8459402000	수평 보링머신	0	0	0	0
8459409000	기타	0	0	0	0
8459510000	수치제어식	0	0	0	0
8459590000	기타	0	0	0	0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0	0	0	0
845961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0	0	0	0
8459619000	기타	0	0	0	0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0	0	0	0
845969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0	0	0	0
8459694000	프로필 밀링머신	0	0	0	0
8459699000	기타	0	0	0	0
8459701000	태핑머신(tapping machine)	0	0	0	0
8459709000	그 밖의 나사절삭기	0	0	0	0
8460110000	수치제어식	0	0	0	0
8460190000	기타	0	0	0	0
8460211000	원통연삭기	0	0	0	0
8460212000	내면연삭기	0	0	0	0
8460213000	무심연삭기	0	0	0	0
846021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0	0	0	0
8460219000	기타	0	0	0	0
8460291000	원통연삭기	0	0	0	0
8460292000	내면연삭기	0	0	0	0
8460293000	무심연삭기	0	0	0	0
846029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0	0	0	0
8460299000	기타	0	0	0	0
8460310000	수치제어식	0	0	0	0
8460390000	기타	0	0	0	0
8460401000	호닝머신(honing machine)	0	0	0	0
8460402000	래핑머신(lapping machine)	0	0	0	0
8460900000	기타	0	0	0	0
846120000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0	0	0	0
8461300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0	0	0	0
8461401010	수치제어식	0	0	0	0
8461401090	기타	0	0	0	0
8461402000	기어연삭기나 기어완성가공기	0	0	0	0
8461500000	톱기계나 절단기	0	0	0	0
8461900000	기타	0	0	0	0
8462101000	에어해머	0	0	0	0
8462109000	기타	0	0	0	0
8462210000	수치제어식	0	0	0	0
8462290000	기타	0	0	0	0
8462310000	수치제어식	0	0	0	0
8462390000	기타	0	0	0	0
8462411000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462412000	낫칭기(notching machine)	0	0	0	0
8462491000	펀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462492000	낫칭기(notching machine)	0	0	0	0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0	0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초과하고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0	0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 초과하고 1,000 메트릭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이하인 것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 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0	0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 메트릭톤 초과하고 1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0	0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 메트릭톤 초과하고 3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0	0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 메트릭톤 초과하고 6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0	0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 메트릭톤 초과하고 1,500 메트릭톤 이하인 것	0	0	0	0
8462991090	기타	0	0	0	0
8462999000	기타	0	0	0	0
846310000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63200000	나사 전조기	0	0	0	0
8463300000	선 가공기	0	0	0	0
8463900000	기타	0	0	0	0
8464100000	톱기계	0	0	0	0
8464201000	광학유리용이나 안경유리용	0	0	0	0
8464202000	그 밖의 유리용	0	0	0	0
8464209000	기타	0	0	0	0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0	0	0	0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0	0	0	0
8464903000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0	0	0	0
8464909000	기타	0	0	0	0
8465101000	목재 가공용	0	0	0	0
8465109000	기타	0	0	0	0
8465911000	목재 가공용	0	0	0	0
8465919000	기타	0	0	0	0
8465921000	목재 가공용	0	0	0	0
8465929000	기타	0	0	0	0
8465931000	목재 가공용	0	0	0	0
8465939000	기타	0	0	0	0
8465941000	목재 가공용	0	0	0	0
8465949000	기타	0	0	0	0
8465951000	목재 가공용	0	0	0	0
8465959000	기타	0	0	0	0
8465961000	목재 가공용	0	0	0	0
8465969000	기타	0	0	0	0
8465991000	목재 가공용	0	0	0	0
8465999000	기타	0	0	0	0
846610000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66201000	항공기용	0	0	0	0
8466209000	기타	0	0	0	0
8466300000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0	0	0	0
8466910000	제 8464 호의 기계용	0	0	0	0
8466920000	제 8465 호의 기계용	0	0	0	0
8466930000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0	0	0	0
8466940000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0	0	0	0
8467111000	착암기	0	0	0	0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0	0	0	0
8467113000	그라인더	0	0	0	0
8467114000	임팩트 렌치	0	0	0	0
8467115000	드릴	0	0	0	0
8467119000	기타	0	0	0	0
8467191000	착암기	0	0	0	0
8467199000	기타	0	0	0	0
8467210000	각종 드릴	0	0	0	0
8467220000	톱	0	0	0	0
8467290000	기타	0	0	0	0
8467810000	체인톱	0	0	0	0
8467891010	소호 제 8430.49 호나 제 8479.10 호의 것	0	0	0	0
8467891020	소호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나 제 8479.89.9091 호의 것	0	0	0	0
8467891090	기타	0	0	0	0
8467899000	기타	0	0	0	0
8467910000	체인톱의 것	0	0	0	0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0	0	0	0
8467990000	기타	0	0	0	0
8468100000	수지식 취관(吹管)	0	0	0	0
8468201000	가스 용접기	0	0	0	0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0	0	0	0
8468209000	기타	0	0	0	0
8468800000	그 밖의 기기	0	0	0	0
8468900000	부분품	0	0	0	0
8469001010	워드프로세싱 머신	0	0	0	0
8469001020	자동타자기	0	0	0	0
8469002000	그 밖의 전동식 타자기	0	0	0	0
8469003000	그 밖의 수동식 타자기	0	0	0	0
8470103010	17 단위 미만인 것	0	0	0	0
8470103020	17 단위 이상인 것	0	0	0	0
8470104010	소호 제 8472.90.9000 호의 것	0	0	0	0
8470104090	기타	0	0	0	0
8470211000	17 단위 미만인 것	0	0	0	0
8470212000	17 단위 이상인 것	0	0	0	0
8470290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70300000	그 밖의 계산기	0	0	0	0
8470500000	금전 등록기	0	0	0	0
8470901000	우편요금계기	0	0	0	0
8470902000	표권 발행기	0	0	0	0
8470903000	회계기	0	0	0	0
8470909000	기타	0	0	0	0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0	0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0	0
8471419000	기타	0	0	0	0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0	0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0	0
8471491090	기타	0	0	0	0
8471499000	기타	0	0	0	0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0	0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 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 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0	0	0	0
8471509000	기타	0	0	0	0
8471601010	문자(표식) 판독장치	0	0	0	0
8471601020	키 입력장치	0	0	0	0
8471601030	마우스	0	0	0	0
8471601040	스캐너	0	0	0	0
8471601090	기타	0	0	0	0
8471602000	출력장치	0	0	0	0
8471603020	비디오텍스나 텔레텍스	0	0	0	0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0	0	0	0
8471603090	기타	0	0	0	0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 및 롬)	0	0	0	0
8471702010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0	0	0	0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0	0	0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0	0	0	0
8471702032	디브이디(DVD) 드라이브	0	0	0	0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0	0	0	0
8471702039	기타	0	0	0	0
8471702090	기타	0	0	0	0
8471709000	기타	0	0	0	0
8471800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71900000	기타	0	0	0	0
8472100000	등사기	0	0	0	0
8472301000	편지 분류기	0	0	0	0
8472302000	소인기	0	0	0	0
8472309000	기타	0	0	0	0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0	0	0	0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0	0	0	0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 및 입금기	0	0	0	0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0	0	0	0
8472901090	기타	0	0	0	0
8472902000	등사용과 인쇄용 자동제판기	0	0	0	0
8472903000	표권발행기	0	0	0	0
8472904000	연필절삭기	0	0	0	0
8472905000	서류절단기	0	0	0	0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0	0	0	0
8472909000	기타	0	0	0	0
8473101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와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473102000	워드프로세싱머신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73109000	기타	0	0	0	0
8473210000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나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0	0	0
8473291000	소호 제 8470.30 호의 기계의 것	0	0	0	0
8473293000	소호 제 8470.50 호의 기계의 것	0	0	0	0
8473294000	소호 제 8470.90 호의 기계의 것	0	0	0	0
8473301000	자기헤드	0	0	0	0
8473302000	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0	0	0	0
8473304010	사운드카드	0	0	0	0
8473304020	비디오 카드	0	0	0	0
8473304030	멀티미디어 카드	0	0	0	0
8473304050	통신접속카드	0	0	0	0
8473304060	디램 모듈	0	0	0	0
8473304090	기타	0	0	0	0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 8542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0	0	0	0
8473309090	기타	0	0	0	0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소호 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와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소호 제 8472.90.1050 호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8473409000	기타	0	0	0	0
8473501000	소호 제 8470.10 호, 제 8470.21 호나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473509000	기타	0	0	0	0
847410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나 세척기	0	0	0	0
8474201000	파쇄나 분쇄능력이 시간당 20 톤 이하인 것	0	0	0	0
8474209000	기타	0	0	0	0
8474311000	배처 플랜트	0	0	0	0
8474319000	기타	0	0	0	0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0	0	0	0
8474329000	기타	0	0	0	0
8474390000	기타	0	0	0	0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0	0	0	0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나 성형기	0	0	0	0
8474809000	기타	0	0	0	0
8474900000	부분품	0	0	0	0
847510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 또는 밸브나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0	0	0	0
8475210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0	0	0	0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	0	0	0	0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	0	0	0	0
8475299000	기타	0	0	0	0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기계의 것	0	0	0	0
8475909000	기타	0	0	0	0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0	0	0	0
8476290000	기타	0	0	0	0
8476811000	식품 자동판매기	0	0	0	0
8476819000	기타	0	0	0	0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0	0	0	0
8476893000	담배 자동판매기	0	0	0	0
8476894000	화폐 교환기	0	0	0	0
8476899000	기타	0	0	0	0
8476900000	부분품	0	0	0	0
8477101000	고무 공업용	0	0	0	0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0	0	0	0
8477201000	고무 공업용	0	0	0	0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	0	0	0	0
8477300000	취입 성형기	0	0	0	0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0	0	0	0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나 그 밖의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8477590000	기타	0	0	0	0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0	0	0	0
8477900000	부분품	0	0	0	0
8478100000	기계류	0	0	0	0
8478900000	부분품	0	0	0	0
8479101000	모올타르나 콘크리트 살포기	0	0	0	0
8479102000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0	0	0	0
8479109000	기타	0	0	0	0
847920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류	0	0	0	0
847930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와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0	0	0	0
847940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0	0	0	0
8479501000	소호 제 8479.81 호, 제 8479.82 호, 제 8479.89.9010 호, 제 8479.89.9030 호, 제 8479.89.9040 호, 제 8479.89.9060 호나 제 8479.89.9091 호의 것	0	0	0	0
8479502000	소호 제 8479.89.9080 호의 것	0	0	0	0
8479509000	기타	0	0	0	0
8479600000	증발식 에어쿨러	0	0	0	0
8479710000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0	0	0	0
8479790000	기타	0	0	0	0
8479811000	금속 세척기	0	0	0	0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479812090	기타	0	0	0	0
8479813000	권선기	0	0	0	0
847981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0	0	0	0
8479819000	기타	0	0	0	0
8479821000	혼합기	0	0	0	0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0	0	0	0
8479823000	균질기	0	0	0	0
8479824000	교반기	0	0	0	0
8479829000	기타	0	0	0	0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79891090	기타	0	0	0	0
8479899010	프레스 또는 압출기	0	0	0	0
8479899020	선박용이나 어업용 기기	0	0	0	0
847989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나 튜불러리베팅(tubular revetting)기	0	0	0	0
847989904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	0	0	0	0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0	0	0	0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0	0	0	0
8479899080	조상기(釣上機)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79899091	제 87 류의 차량용	0	0	0	0
8479899092	전자부품장착기	0	0	0	0
8479899099	기타	0	0	0	0
8479901010	냉방기기의 것(카쿨러 부분품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479901020	가정형 기기의 것	0	0	0	0
8479901030	제 87 류의 차량의 것	0	0	0	0
8479902000	소호 제 8479.89.9080 호의 것	0	0	0	0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	0	0	0
8479904000	소호 제 8479.7 호의 것	0	0	0	0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0	0	0	0
84799090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이나 조제용 기계의 것	0	0	0	0
847990903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의 것	0	0	0	0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0	0	0	0
8479909050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체・시프팅기・균질기・유화기나 교반기의 것	0	0	0	0
8479909060	프레스 또는 압출기의 것	0	0	0	0
8479909070	선박용 또는 어업 기기의 것	0	0	0	0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의 것	0	0	0	0
8479909090	기타	0	0	0	0
8480100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0	0	0	0
8480200000	주형 베이스	0	0	0	0
8480300000	주형 제조용 모형	0	0	0	0
84804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0	0	0	0
8480490000	기타	0	0	0	0
8480500000	유리 성형용 주형	0	0	0	0
8480600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0	0	0	0
84807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0	0	0	0
8480790000	기타	0	0	0	0
8481100000	감압밸브	0	0	0	0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0	0	0	0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0	0	0	0
8481300000	체크(논리턴) 밸브	0	0	0	0
8481400000	안전밸브	0	0	0	0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0	0	0	0
8481801030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0	0	0	0
8481801090	기타	0	0	0	0
8481802000	탭・코크와 트랩	0	0	0	0
8481809000	기타	0	0	0	0
8481901000	액튜에이터	0	0	0	0
8481909000	기타	0	0	0	0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0	0	0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0	0	0
848250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0	0	0
8482800000	기타[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482910000	볼・니들 및 롤러	0	0	0	0
8482990000	기타	0	0	0	0
8483101000	항공기용	0	0	0	0
8483109010	제 87 류의 차량용	0	0	0	0
8483109090	기타	0	0	0	0
8483201000	항공기용	0	0	0	0
8483209000	기타	0	0	0	0
8483301000	항공기용	0	0	0	0
8483309000	기타	0	0	0	0
8483401010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0	0	0	0
8483401090	기타	0	0	0	0
8483409010	기어	0	0	0	0
8483409020	기어박스	0	0	0	0
8483409030	무단변속기	0	0	0	0
8483409041	제 87 류의 차량용	0	0	0	0
8483409049	기타	0	0	0	0
8483409090	기타	0	0	0	0
8483501000	항공기용	0	0	0	0
8483509000	기타	0	0	0	0
8483601000	항공기용	0	0	0	0
8483602000	풍력발전기용	0	0	0	0
8483609000	기타	0	0	0	0
8483901000	항공기용	0	0	0	0
8483902000	풍력발전기용	0	0	0	0
8483909000	기타	0	0	0	0
8484101000	제 87 류의 차량용	0	0	0	0
8484109000	기타	0	0	0	0
8484200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0	0	0	0
8484900000	기타	0	0	0	0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86102000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0	0	0	0
8486103010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	0	0	0	0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나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0	0
8486103090	기타	0	0	0	0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0	0
8486104019	기타	0	0	0	0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 또는 세척하는 기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86104029	기타	0	0	0	0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0	0	0
848610502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식 노(爐)와 오븐	0	0	0	0
84861050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0	0	0	0
8486109000	기타	0	0	0	0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0	0	0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것	0	0	0	0
8486202290	기타	0	0	0	0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0	0	0
8486202390	기타	0	0	0	0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0	0	0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	0	0	0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0	0
8486205190	기타	0	0	0	0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0	0	0	0
8486205990	기타	0	0	0	0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0	0	0
8486206020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0	0	0	0
8486206090	기타	0	0	0	0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0	0	0	0
8486208110	반도체재료의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	0	0	0
848620812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0	0	0	0
8486208190	기타	0	0	0	0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0	0	0	0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0	0	0
8486208490	기타	0	0	0	0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	0	0	0	0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	0	0	0	0
8486209190	기타	0	0	0	0
848620920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 및 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0	0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나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0	0	0	0
8486209320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 또는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0	0	0	0
8486209390	기타	0	0	0	0
8486209400	웨이퍼·캐리어나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0	0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0	0	0	0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86209900	기타	0	0	0	0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기	0	0	0	0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0	0	0
84863030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0	0	0	0
8486303020	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0	0	0	0
8486303030	방전 방식에 의한 것	0	0	0	0
8486303042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건식 식각기	0	0	0	0
8486303043	그 밖의 건식식각기	0	0	0	0
8486303049	기타	0	0	0	0
8486304010	연마기나 광택기	0	0	0	0
8486304090	기타	0	0	0	0
848630501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0	0	0	0
8486305019	기타	0	0	0	0
8486305020	도포 및 현상기	0	0	0	0
8486305041	물리적 방식의 것	0	0	0	0
8486305042	화학적 방식의 것	0	0	0	0
8486305049	기타	0	0	0	0
8486305051	물리적 방식의 것	0	0	0	0
8486305052	화학적 방식의 것	0	0	0	0
8486305059	기타	0	0	0	0
8486306010	실(seal), 쇼트, 스페이서나 액정 디스펜서	0	0	0	0
8486306020	스크라이빙 머신	0	0	0	0
8486306030	패널 어셈블러	0	0	0	0
8486306090	기타	0	0	0	0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0	0	0	0
8486308000	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이나 분무용 기기	0	0	0	0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보트	0	0	0	0
8486309090	기타	0	0	0	0
8486401010	패턴형성기(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나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	0	0	0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하거나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	0	0	0
8486401030	포토레지스트를 도포 및 현상 또는 경화시키는 기계	0	0	0	0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하거나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0	0	0	0
8486401090	기타	0	0	0	0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 및 와이어접착기	0	0	0	0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하거나 제거시키는 기계	0	0	0	0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0	0	0	0
8486402039	기타	0	0	0	0
8486402040	납볼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기계	0	0	0	0
8486402070	사출식 또는 압축식의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0	0	0	0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 웨이퍼, 캐리어나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0	0	0	0
8486402091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	0	0	0
8486402092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 외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0	0	0	0
8486402093	웨이퍼의 절단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연결접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기	0	0	0	0
8486402094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爐)와 오븐	0	0	0	0
8486402099	기타	0	0	0	0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카셋트, 상자와 그 밖의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0	0	0	0
8486403090	기타	0	0	0	0
8486901010	소호 제 8486.10.1000 호, 제 8486.10.2000 호, 제 8486.10.3010 호, 제 8486.10.3020 호, 제 8486.10.4011 호, 제 8486.10.4021 호, 제 8486.10.5010 호, 제 8486.10.5020 호나 제 8486.10.5030 호의 것	0	0	0	0
8486901020	소호 제 8486.10.3090 호, 제 8486.10.4019 호, 제 8486.10.4029 호나 제 8486.10.9000 호의 것	0	0	0	0
8486902010	소호 제 8486.20.1000 호, 제 8486.20.2100 호, 제 8486.20.2210 호, 제 8486.20.2310 호, 제 8486.20.2390 호, 제 8486.20.3000 호, 제 8486.20.4000 호, 제 8486.20.5110 호, 제 8486.20.5910 호, 제 8486.20.6010 호, 제 8486.20.6020 호, 제 8486.20.6090 호, 제 8486.20.7000 호, 제 8486.20.8110 호, 제 8486.20.8120 호, 제 8486.20.8410 호, 제 8486.20.8420 호, 제 8486.20.9110 호, 제 8486.20.9120 호, 제 8486.20.9190 호, 제 8486.20.9200 호, 제 8486.20.9310 호, 제 8486.20.9320 호, 제 8486.20.9400 호, 제 8486.20.9500 호, 제 8486.20.9600 호의 것	0	0	0	0
8486902020	소호 제 8486.20.2290 호, 제 8486.20.5190 호, 제 8486.20.5990 호, 제 8486.20.8190 호, 제 8486.20.8490 호, 제 8486.20.9390 호나 제 8486.20.9900 호의 것	0	0	0	0
8486903010	소호 제 8486.30.1000 호나 제 8486.30.2000 호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86903020	소호 제 8486.30.3010 호, 제 8486.30.3020 호, 제 8486.30.3030 호, 제 8486.30.3042 호, 제 8486.30.3043 호, 제 8486.30.3049 호, 제 8486.30.4010 호, 제 8486.30.4090 호, 제 8486.30.6020 호, 제 8486.30.7000 호, 제 8486.30.8000 호, 제 8486.30.9020 호나 제 8486.30.9090 호의 것	0	0	0	0
8486903030	소호 제 8486.30.5011 호, 제 8486.30.5019 호, 제 8486.30.5020 호, 제 8486.30.5041 호, 제 8486.30.5042 호, 제 8486.30.5049 호, 제 8486.30.5051 호, 제 8486.30.5052 호, 제 8486.30.5059 호, 제 8486.30.6010 호, 제 8486.30.6030 호나 제 8486.30.6090 호의 것	0	0	0	0
8486904010	소호 제 8486.40.1010 호, 제 8486.40.1020 호, 제 8486.40.1030 호, 제 8486.40.2010 호, 제 8486.40.2031 호, 제 8486.40.2070 호, 제 8486.40.2080 호, 제 8486.40.2091 호, 제 8486.40.2094 호, 제 8486.40.2095 호, 제 8486.40.3010 호, 제 8486.40.3090 호, 제 8486.40.4011 호, 제 8486.40.4012 호나 제 86.40.4020 호의 것	0	0	0	0
8486904020	소호 제 8486.40.1040 호, 제 8486.40.1090 호, 제 8486.40.2020 호, 제 8486.40.2039 호, 제 8486.40.2040 호, 제 8486.40.2050 호, 제 8486.40.2061 호, 제 8486.40.2062 호, 제 8486.40.2063 호, 제 8486.40.2092 호, 제 8486.40.2093 호, 제 8486.40.2099 호나 제 8486.40.9000 호의 것	0	0	0	0
8487100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0	0	0	0
8487901000	제 87 류의 차량용	0	0	0	0
8487909010	오일 실링	0	0	0	0
8487909090	기타	0	0	0	0
8501101000	직류 전동기	0	0	0	0
8501102000	교류 전동기	0	0	0	0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0	0	0	0
8501201000	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고 100 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01202000	출력이 100 와트를 초과하고 750 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01203000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131101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01311090	기타	0	0	0	0
8501312000	직류 발전기	0	0	0	0
8501321000	직류 전동기	0	0	0	0
8501322000	직류 발전기	0	0	0	0
8501331000	직류 전동기	0	0	0	0
8501332000	직류 발전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01341000	직류 전동기	0	0	0	0
8501342000	직류 발전기	0	0	0	0
8501401000	출력이 100 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01402000	출력이 100 와트를 초과하고 750 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01403000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01404000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1510000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01520000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01531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01532000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5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01534000	출력이 1,5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16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16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16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163100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0	0
8501639000	기타	0	0	0	0
8501640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2111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112000	출력이 750 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120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131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0	0
8502131090	기타	0	0	0	0
8502132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134000	출력이 3,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220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20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203010	400 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0	0	0	0
8502203090	기타	0	0	0	0
850220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231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31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3130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31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2391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392000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8502393000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394000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2400000	회전변환기	0	0	0	0
8503001000	전동기의 것	0	0	0	0
8503002010	풍력발전기용	0	0	0	0
8503002090	기타	0	0	0	0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0	0	0	0
8504101010	전류가 1 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101020	전류가 1 암페어를 초과하고 20 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102000	전류가 20 암페어를 초과하고 60 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103000	전류가 60 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0	0	0	0
850421901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21902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0	0	0	0
8504229010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229020	용량이 1,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229030	용량이 5,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230000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0	0	0	0
8504312000	전압 조정기	0	0	0	0
850431901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319020	용량이 100 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00 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319040	용량이 500 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0	0	0	0
8504322000	전압 조정기	0	0	0	0
8504329010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329020	용량이 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0	0	0	0
8504332000	전압 조정기	0	0	0	0
8504339010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339020	용량이 3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04339040	용량이 1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0	0	0	0
8504342000	전압 조정기	0	0	0	0
8504349010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2,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349030	용량이 2,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0	0
8504401090	기타	0	0	0	0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0	0
8504402019	기타	0	0	0	0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0	0
8504402099	기타	0	0	0	0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0	0
8504403090	기타	0	0	0	0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0	0
8504404090	기타	0	0	0	0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0	0
8504405090	기타	0	0	0	0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0	0	0	0
8504409019	기타	0	0	0	0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0	0
8504409099	기타	0	0	0	0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0	0
8504501090	기타	0	0	0	0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0	0
8504502090	기타	0	0	0	0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0	0	0	0
8504509090	기타	0	0	0	0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 8504.40 호・제 8504.50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 8534 호의 한 개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04909000	기타	0	0	0	0
8505111000	알니코(alnico)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05119000	기타	0	0	0	0
8505191000	산화철의 것	0	0	0	0
8505199000	기타	0	0	0	0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0	0	0	0
8505901000	전자석	0	0	0	0
850590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클램프・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0	0	0	0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0	0	0	0
8505909000	부분품	0	0	0	0
8506109000	기타	0	0	0	0
850630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0	0	0	0
850640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0	0	0	0
8506500000	리튬으로 만든 것	0	0	0	0
8506600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0	0	0	0
8506801000	산화아연으로 만든 것	0	0	0	0
8506809000	기타	0	0	0	0
8506900000	부분품	0	0	0	0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0	0	0	0
850720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0	0	0	0
850730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0	0	0	0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0	0	0	0
8507500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0	0	0	0
8507600000	리튬이온 축전지	0	0	0	0
8507803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0	0	0	0
8507809000	기타	0	0	0	0
8507901000	격리판	0	0	0	0
8507909000	기타	0	0	0	0
8508110000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0	0	0	0
8508191000	가정용의 것	0	0	0	0
8508199000	기타	0	0	0	0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0	0	0	0
8508701000	소호 제 8508.11.0000 호나 제 8508.19.1000 호의 것	0	0	0	0
8508702000	소호 제 8508.19.9000 호나 제 8508.60.0000 호의 것	0	0	0	0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이나 채소즙 추출기	0	0	0	0
8509801000	커피분쇄기	0	0	0	0
8509802000	얼음분쇄기	0	0	0	0
8509803000	바닥광택기	0	0	0	0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0	0	0	0
8509809000	기타	0	0	0	0
8509900000	부분품	0	0	0	0
8510100000	면도기	0	0	0	0
8510200000	이발기	0	0	0	0
8510300000	모발제거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10901000	면도기의 것	0	0	0	0
8510902000	이발기의 것	0	0	0	0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0	0	0	0
8511101000	항공기용	0	0	0	0
8511109000	기타	0	0	0	0
8511201000	항공기용	0	0	0	0
8511209000	기타	0	0	0	0
8511301000	항공기용	0	0	0	0
8511309000	기타	0	0	0	0
8511401000	항공기용	0	0	0	0
8511409000	기타	0	0	0	0
8511501000	항공기용	0	0	0	0
8511509000	기타	0	0	0	0
8511801000	항공기용	0	0	0	0
8511809000	기타	0	0	0	0
8511901000	항공기용	0	0	0	0
8511909000	기타	0	0	0	0
851210000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 또는 시각 신호용 기구	0	0	0	0
8512201000	조명용 기구	0	0	0	0
8512202000	시각신호용 기구	0	0	0	0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0	0	0	0
851240000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0	0	0	0
8512900000	부분품	0	0	0	0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0	0	0	0
8513102000	손전등	0	0	0	0
8513109000	기타	0	0	0	0
8513900000	부분품	0	0	0	0
8514101000	실험실용	0	0	0	0
8514102000	금속공업용	0	0	0	0
8514103000	식품공업용	0	0	0	0
8514109000	기타	0	0	0	0
8514201000	실험실용	0	0	0	0
8514202000	금속공업용	0	0	0	0
8514203000	식품공업용	0	0	0	0
8514209000	기타	0	0	0	0
851430000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0	0	0	0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514409000	기타	0	0	0	0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8514909000	기타	0	0	0	0
8515110000	납땜용 인두와 건(gun)	0	0	0	0
8515190000	기타	0	0	0	0
8515211010	로보트형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15211090	기타	0	0	0	0
8515212010	로보트형	0	0	0	0
8515212090	기타	0	0	0	0
8515213010	로보트형	0	0	0	0
8515213090	기타	0	0	0	0
8515219010	로보트형	0	0	0	0
8515219090	기타	0	0	0	0
8515291000	점 용접기기	0	0	0	0
8515292000	봉합 용접기기	0	0	0	0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0	0	0	0
8515299000	기타	0	0	0	0
8515311010	로보트형	0	0	0	0
8515311090	기타	0	0	0	0
8515319010	로보트형	0	0	0	0
8515319090	기타	0	0	0	0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0	0	0	0
8515399000	기타	0	0	0	0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0	0	0	0
8515802000	전자빔용 기기	0	0	0	0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 기기	0	0	0	0
8515809000	기타	0	0	0	0
8515901000	용접기의 것	0	0	0	0
8515909000	기타	0	0	0	0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0	0	0	0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0	0	0	0
8516290000	기타	0	0	0	0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0	0	0	0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0	0	0	0
8516330000	손 건조기	0	0	0	0
8516400000	전기다리미	0	0	0	0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0	0	0	0
8516601000	전기오븐	0	0	0	0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516609000	기타	0	0	0	0
8516710000	커피나 차를 끓이는 기기	0	0	0	0
8516720000	토스터	0	0	0	0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0	0	0	0
8516799000	기타	0	0	0	0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0	0	0	0
8516900000	부분품	0	0	0	0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0	0
8517121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0	0
8517122090	기타	0	0	0	0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0	0
8517123090	기타	0	0	0	0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0	0
8517124090	기타	0	0	0	0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0	0	0	0
8517129090	기타	0	0	0	0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0	0	0	0
8517189000	기타	0	0	0	0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0	0	0	0
8517619000	기타	0	0	0	0
8517621000	텔레프린터	0	0	0	0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0	0	0	0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0	0	0	0
8517622090	기타	0	0	0	0
8517623110	단국장치	0	0	0	0
8517623120	중계장치	0	0	0	0
8517623190	기타	0	0	0	0
8517623210	단국장치	0	0	0	0
8517623220	중계장치	0	0	0	0
8517623290	기타	0	0	0	0
8517623310	광중계장치	0	0	0	0
8517623320	광단국장치	0	0	0	0
8517623390	기타	0	0	0	0
8517623410	에이/디(A/D), 디/에이(D/A)변환기	0	0	0	0
8517623420	코덱	0	0	0	0
85176234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	0	0	0
8517623490	기타	0	0	0	0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	0	0	0	0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	0	0	0	0
8517623590	기타	0	0	0	0
8517623900	기타	0	0	0	0
8517624010	키-폰	0	0	0	0
8517624020	영상전신기기	0	0	0	0
8517624090	기타	0	0	0	0
85176250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	0	0	0	0
8517626010	인쇄전신기기	0	0	0	0
8517626020	영상전신기기	0	0	0	0
8517626031	워키토키 세트	0	0	0	0
8517626039	기타	0	0	0	0
8517626040	모사전송기기	0	0	0	0
8517626050	무선통신용 교환기	0	0	0	0
8517626060	무선통신용 중계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17626090	기타	0	0	0	0
8517627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0	0	0
8517629000	기타	0	0	0	0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0	0	0	0
8517691211	휴대용 무선호출기	0	0	0	0
8517691219	기타	0	0	0	0
8517691290	기타	0	0	0	0
8517691900	기타	0	0	0	0
8517692000	영상전화기	0	0	0	0
8517699000	기타	0	0	0	0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0	0	0	0
8517701021	키패드	0	0	0	0
8517701022	케이스	0	0	0	0
8517701029	기타	0	0	0	0
8517701090	기타	0	0	0	0
8517702000	소호 제 8517.61 호의 것	0	0	0	0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0	0	0	0
8517703021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0	0	0	0
8517703022	사설통신용 교환기의 것	0	0	0	0
8517703029	기타	0	0	0	0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0	0	0	0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0	0	0	0
8517703039	기타	0	0	0	0
8517703041	영상전신기기의 것	0	0	0	0
8517703049	기타	0	0	0	0
851770305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0	0	0	0
851770306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것(소호 제 8517.70.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51770307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0	0	0	0
8517703090	기타	0	0	0	0
8517704011	호출용・경보용이나 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	0	0	0	0
8517704019	기타	0	0	0	0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0	0	0	0
8517704090	기타	0	0	0	0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 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8109000	기타	0	0	0	0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 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 킬로헤르츠까지이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18299000	기타	0	0	0	0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0	0	0	0
8518309000	기타	0	0	0	0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0	0	0	0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0	0	0	0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소호 제 8518.10.1000 호・제 8518.29.1000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8909000	기타	0	0	0	0
8519201000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0	0	0	0
8519309000	기타	0	0	0	0
8519500000	전화응답기	0	0	0	0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9812210	자동차용	0	0	0	0
8519812220	휴대용(제 85 류 소호주 제 1 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519812290	기타	0	0	0	0
8519812310	자동차용	0	0	0	0
8519812320	휴대용	0	0	0	0
8519812390	기타	0	0	0	0
8519812900	기타	0	0	0	0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9814111	자동차용	0	0	0	0
8519814112	휴대용	0	0	0	0
8519814119	기타	0	0	0	0
8519814190	기타	0	0	0	0
8519814210	자동차용	0	0	0	0
8519814220	휴대용	0	0	0	0
8519814290	기타	0	0	0	0
8519814310	릴형	0	0	0	0
8519814390	기타	0	0	0	0
8519815010	릴형	0	0	0	0
8519815020	디스크형	0	0	0	0
8519815030	카세트형	0	0	0	0
8519815090	기타	0	0	0	0
851981900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상관없다)				
8519891010	확성기를 갖추지 않은 것	0	0	0	0
8519891090	기타	0	0	0	0
8519892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8519899010	그 밖의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989902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8521101000	폭이 12.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21102000	폭이 12.7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521901000	디스크형	0	0	0	0
8521909000	기타	0	0	0	0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0	0	0	0
8522901010	오디오 녹음용	0	0	0	0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0	0	0	0
8522901090	기타	0	0	0	0
8522902000	레이저 픽업	0	0	0	0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와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한 개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2909090	기타	0	0	0	0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8523291110	폭이 4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523291120	폭이 4 밀리미터 초과하고 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523291130	폭이 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23291210	플로피 디스크	0	0	0	0
8523291290	기타	0	0	0	0
8523291900	기타	0	0	0	0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0	0
8523292119	기타	0	0	0	0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0	0
8523292129	기타	0	0	0	0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0	0
8523292139	기타	0	0	0	0
8523292211	비디오 녹화된 것	0	0	0	0
8523292219	기타	0	0	0	0
8523292221	비디오 녹화된 것	0	0	0	0
8523292229	기타	0	0	0	0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0	0	0	0
8523292239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0	0
8523292919	기타	0	0	0	0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0	0	0	0
8523292992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3292999	기타	0	0	0	0
8523410000	기록이 안 된 것	0	0	0	0
8523491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0	0
8523491019	기타	0	0	0	0
85234910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0	0	0	0
8523491031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3491039	기타	0	0	0	0
8523499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0	0
8523499019	기타	0	0	0	0
8523499091	비디오 녹화된 것	0	0	0	0
8523499092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3499099	기타	0	0	0	0
852351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0	0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0	0
8523512190	기타	0	0	0	0
8523512910	비디오 녹화된 것	0	0	0	0
8523512920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3512990	기타	0	0	0	0
8523521000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카드와 그 부분품	0	0	0	0
8523529000	기타와 그 부분품	0	0	0	0
852359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0	0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0	0
8523592190	기타	0	0	0	0
8523592910	비디오 녹화된 것	0	0	0	0
8523592920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3592990	기타	0	0	0	0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0	0	0	0
852380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0	0	0	0
8523802100	축음기용 레코드판	0	0	0	0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23802290	기타	0	0	0	0
8523802910	비디오 녹화된 것	0	0	0	0
8523802920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3802990	기타	0	0	0	0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0	0	0	0
8525502000	텔레비전용	0	0	0	0
8525509000	기타	0	0	0	0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0	0	0	0
8525602000	텔레비전용	0	0	0	0
8525609000	기타	0	0	0	0
8525801010	녹화기용	0	0	0	0
8525801020	모니터용	0	0	0	0
8525801090	기타	0	0	0	0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0	0	0	0
8525802090	기타	0	0	0	0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0	0	0	0
8526101000	항공기용	0	0	0	0
8526109000	기타	0	0	0	0
8526911010	항공기용	0	0	0	0
8526911090	기타	0	0	0	0
8526912010	항공기용	0	0	0	0
8526912090	기타	0	0	0	0
8526913010	항공기용	0	0	0	0
8526913020	자동차용	0	0	0	0
8526913090	기타	0	0	0	0
8526914000	로란 리시버	0	0	0	0
8526919010	항공기용	0	0	0	0
8526919020	자동차용	0	0	0	0
8526919090	기타	0	0	0	0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0	0	0	0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0	0	0	0
8527131000	카세트형	0	0	0	0
8527132000	디스크형	0	0	0	0
852713300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0	0	0	0
8527139000	기타	0	0	0	0
8527190000	기타	0	0	0	0
8527211000	카세트형	0	0	0	0
8527212000	디스크형	0	0	0	0
852721300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0	0	0	0
8527219000	기타	0	0	0	0
8527290000	기타	0	0	0	0
8527911010	카세트형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27911020	디스크형	0	0	0	0
8527911030	카셋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0	0	0	0
8527911090	기타	0	0	0	0
8527919000	기타	0	0	0	0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527990000	기타	0	0	0	0
852841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5284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8491090	기타	0	0	0	0
85284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8492090	기타	0	0	0	0
8528511000	액정모니터	0	0	0	0
8528519000	기타	0	0	0	0
8528591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8591090	기타	0	0	0	0
8528592010	진단용 텔레비전 모니터(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8592090	기타	0	0	0	0
8528610000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528690000	기타	0	0	0	0
8528711010	천연색	0	0	0	0
852871102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	0	0	0	0
8528712010	수직해상도 720 선 이상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	0	0	0	0
8528712090	기타	0	0	0	0
8528719010	천연색	0	0	0	0
8528719020	흑백이나 그 밖의 단색	0	0	0	0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0	0	0	0
8528721020	디지털의 것	0	0	0	0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0	0	0	0
8528722020	디지털의 것	0	0	0	0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0	0	0	0
8528723020	디지털의 것	0	0	0	0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0	0	0	0
8528724020	디지털의 것	0	0	0	0
8528729000	기타	0	0	0	0
8528731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37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0	0	0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7 센티미터 이상 45.72 센티미터 미만인 것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0	0	0	0
8528739000	기타	0	0	0	0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	0	0	0	0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나 무선원격조절기용	0	0	0	0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	0	0	0	0
8529109290	기타	0	0	0	0
8529109300	무선전화용과 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0	0	0	0
8529109900	기타	0	0	0	0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0	0	0	0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나 무선원격조절기의 것	0	0	0	0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0	0	0	0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0	0	0	0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0	0	0	0
8529909610	천연색 튜너	0	0	0	0
8529909620	흑백이나 단색 튜너	0	0	0	0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0	0	0	0
852990964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0	0	0	0
8529909649	기타	0	0	0	0
8529909650	그 밖의 흑백이나 단색용 부품	0	0	0	0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나 디지털카메라용(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529909920	소호 제 8528.51 호・제 8528.41.0000 호나 제 8528.61.0000 호의 것	0	0	0	0
8529909990	기타	0	0	0	0
8530101010	지상장치용	0	0	0	0
8530101090	기타	0	0	0	0
8530109000	기타	0	0	0	0
8530800000	그 밖의 기기	0	0	0	0
8530900000	부분품	0	0	0	0
8531101000	도난경보기	0	0	0	0
8531102000	화재경보기	0	0	0	0
8531103000	가스경보기	0	0	0	0
8531104000	전기식의 벨	0	0	0	0
8531105000	사이렌	0	0	0	0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0	0	0	0
85312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0	0	0	0
8531201090	기타	0	0	0	0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0	0	0
8531801010	셀룰러 통신망을 이용한 휴대전화용의 것	0	0	0	0
8531801090	기타	0	0	0	0
853180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31901000	소호 제 8531.10 호의 것	0	0	0	0
8531902000	소호 제 8531.20 호의 것	0	0	0	0
8531909000	기타	0	0	0	0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0	0
8532210000	탄탈륨의 것	0	0	0	0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0	0	0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0	0	0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0	0	0
8532250000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0	0	0
8532290000	기타	0	0	0	0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0	0	0	0
8532309000	기타	0	0	0	0
8532901000	고정식	0	0	0	0
8532902000	가변식	0	0	0	0
8532909000	기타	0	0	0	0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33211000	칩형	0	0	0	0
8533219000	기타	0	0	0	0
8533291000	칩형	0	0	0	0
8533299000	기타	0	0	0	0
8533310000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33390000	기타	0	0	0	0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0	0	0	0
8533402000	써머스터	0	0	0	0
8533403000	바리스터	0	0	0	0
8533409000	기타	0	0	0	0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0	0	0	0
8533909000	그 밖의 것	0	0	0	0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inductance), 저항기와 축전지 등]이 형성된 것	0	0	0	0
8534002000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0	0	0	0
8534009000	기타	0	0	0	0
8535100000	퓨즈	0	0	0	0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0	0	0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0	0	0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0	0	0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이상인 것	0	0	0	0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0	0	0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0	0	0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 킬로볼트 이상 200 킬로볼트 미만인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35304000	정격전압이 200 킬로볼트 이상인 것	0	0	0	0
853540000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0	0	0	0
8535901000	커넥터	0	0	0	0
8535902000	터미널	0	0	0	0
8535909000	기타	0	0	0	0
8536101000	관형	0	0	0	0
8536109000	기타	0	0	0	0
8536200000	자동차단기	0	0	0	0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0	0	0	0
8536410000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36490000	기타	0	0	0	0
8536501000	회전형	0	0	0	0
8536502000	푸쉬 버튼형	0	0	0	0
8536503000	마이크로형	0	0	0	0
8536504000	전자개폐형(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0	0	0	0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 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0	0	0	0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 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36509090	기타	0	0	0	0
8536610000	램프홀더	0	0	0	0
8536691000	동축케이블과 인쇄회로용의 것	0	0	0	0
8536699000	기타	0	0	0	0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8536702000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0	0	0	0
8536703010	주조・주형・압착하거나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36703090	기타	0	0	0	0
8536901000	접속함	0	0	0	0
8536909010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0	0	0	0
8536909090	기타	0	0	0	0
8537101000	배전반	0	0	0	0
8537102000	자동제어반	0	0	0	0
8537109000	기타	0	0	0	0
8537201000	배전반	0	0	0	0
8537202000	자동제어반	0	0	0	0
8537209000	기타	0	0	0	0
853810000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538901000	개폐기의 것	0	0	0	0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38903000	계전기의 것	0	0	0	0
8538904000	자동제어반의 것	0	0	0	0
8538909000	기타	0	0	0	0
853910000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0	0	0	0
8539210000	텅스텐 할로겐의 것	0	0	0	0
8539221000	백열램프	0	0	0	0
8539222000	장식용 램프	0	0	0	0
8539223000	빔 램프	0	0	0	0
8539224000	집어(集魚)용 램프	0	0	0	0
8539229000	기타	0	0	0	0
8539290000	기타	0	0	0	0
8539310000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39321000	수은램프	0	0	0	0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0	0	0	0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0	0	0	0
8539391000	냉음극 형광램프	0	0	0	0
8539399000	기타	0	0	0	0
8539410000	아크램프	0	0	0	0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	0	0	0
8539491090	기타	0	0	0	0
8539492000	적외선 램프	0	0	0	0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0	0	0	0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0	0	0	0
8539909000	기타	0	0	0	0
8540110000	천연색	0	0	0	0
8540120000	단색	0	0	0	0
854020100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0	0	0	0
8540209000	기타	0	0	0	0
8540401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4040200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0	0	0	0
8540601000	천연색	0	0	0	0
8540609000	기타	0	0	0	0
8540710000	자전관(magnetron)	0	0	0	0
8540791000	속도변조관(klystron)	0	0	0	0
8540799000	기타	0	0	0	0
8540810000	수신관이나 증폭관	0	0	0	0
8540891000	송신기용 열전자관	0	0	0	0
8540892000	방전관	0	0	0	0
8540893000	디지트론	0	0	0	0
8540899000	기타	0	0	0	0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0	0	0	0
8540912000	전자총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40913000	새도우마스크	0	0	0	0
8540919000	기타	0	0	0	0
8540990000	기타	0	0	0	0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0	0
8541109000	기타	0	0	0	0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0	0
8541219000	기타	0	0	0	0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0	0
8541299000	기타	0	0	0	0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0	0
8541302000	사이리스터(thyristor)	0	0	0	0
8541303000	다이액(diac)	0	0	0	0
8541304000	트라이액(triac)	0	0	0	0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0	0
8541402010	레이저소자	0	0	0	0
8541402090	기타	0	0	0	0
8541409010	광전도 셀	0	0	0	0
8541409020	광전지(태양전지・포토다이오드・포토커플과 포토릴레이를 포함한다)	0	0	0	0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	0	0	0
8541409090	기타	0	0	0	0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0	0	0	0
8541502000	정류소자	0	0	0	0
8541509000	기타	0	0	0	0
8541601000	수정진동자	0	0	0	0
8541609000	기타	0	0	0	0
8541901000	리드프레임	0	0	0	0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0	0	0	0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0	0	0	0
8541909000	기타	0	0	0	0
854231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0	0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0	0
854231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0	0
8542321010	디램	0	0	0	0
8542321020	에스램	0	0	0	0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0	0	0	0
8542321090	기타	0	0	0	0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0	0
854232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0	0
854233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0	0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0	0
854233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0	0
854239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	0	0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42393000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0	0	0	0
8542901010	리드프레임	0	0	0	0
8542901090	기타	0	0	0	0
8542902010	리드프레임	0	0	0	0
8542902090	기타	0	0	0	0
8542903010	리드프레임	0	0	0	0
8542903090	기타	0	0	0	0
8543100000	입자가속기	0	0	0	0
8543200000	신호발생기	0	0	0	0
8543300000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이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0	0	0	0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0	0	0	0
8543702010	이온정수기	0	0	0	0
8543702020	미용기기	0	0	0	0
8543702030	오디오믹서	0	0	0	0
8543702040	이퀄라이저	0	0	0	0
8543702050	오존 발생기	0	0	0	0
8543702090	기타	0	0	0	0
8543703000	전자번역기나 전자사전	0	0	0	0
8543704010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0	0	0	0
8543704090	기타	0	0	0	0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0	0	0	0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를 포함한다)	0	0	0	0
8543709030	전기신경자극기	0	0	0	0
8543709090	기타	0	0	0	0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0	0	0	0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	0	0	0	0
8543909019	기타	0	0	0	0
8543909020	전자번역기나 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한 개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43909090	기타	0	0	0	0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0	0	0	0
8544119000	기타	0	0	0	0
8544190000	기타	0	0	0	0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0	0	0	0
854430000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이나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44421010	전기통신용	0	0	0	0
8544421090	기타	0	0	0	0
8544422010	전기통신용	0	0	0	0
8544422090	기타	0	0	0	0
8544429010	전기통신용	0	0	0	0
8544429090	기타				
	-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 전압이 80 볼트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고무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절연전선의 것)				
8544491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44491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44491090	기타	0	0	0	0
8544492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44492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44492090	기타	0	0	0	0
8544499011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44499012	전압이 80 볼트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				
	- 기타	0	0	0	0
8544499090	기타				
	- 전압이 8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 전압이 80 볼트 초과하고 1,000 볼트 이하인 것(기타의 것)	0	0	0	0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0	0	0	0
8544601090	기타	0	0	0	0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0	0	0	0
8544602090	기타	0	0	0	0
8544603090	기타	0	0	0	0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0	0	0	0
8545110000	노(爐)용	0	0	0	0
8545190000	기타	0	0	0	0
8545200000	브러시	0	0	0	0
8545901000	탄소봉	0	0	0	0
8545909000	기타	0	0	0	0
8546101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46102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46201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46202000	정격전압이 1,000 볼트 초과하고 10 킬로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46203000	정격전압이 10 킬로볼트 초과하고 100 킬로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46204000	정격전압이 100 킬로볼트 초과하고 300 킬로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46205000	정격전압이 300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4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	0	0	0	0
8546909000	기타	0	0	0	0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0	0	0	0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0	0	0	0
8547900000	기타	0	0	0	0
8548101000	소호 제 3824.90 호의 것	0	0	0	0
8548102000	소호 제 7204.21 호, 제 7204.29 호, 제 7204.30 호나 제 7204.49 호의 것	0	0	0	0
8548103000	소호 제 7404.00 호의 것	0	0	0	0
8548104010	소호 제 7503.00 호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48104020	소호 제 7902.00 호의 것	0	0	0	0
8548105000	소호 제 7802.00 호의 것	0	0	0	0
8548106010	소호 제 8107.30 호의 것	0	0	0	0
8548106020	소호 제 8111.00 호의 것	0	0	0	0
8548107000	소호 제 8506.10 호, 제 8506.30 호, 제 8506.40 호, 제 8506.50 호, 제 8506.60 호나 제 8506.80 호의 것	0	0	0	0
8548109000	기타	0	0	0	0
85489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0	0	0	0
8548909000	기타	0	0	0	0
8601100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	0	0	0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0	0	0	0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0	0	0	0
8602900000	기타	0	0	0	0
8603101000	객차	0	0	0	0
8603102000	화차	0	0	0	0
8603901000	객차	0	0	0	0
8603902000	화차	0	0	0	0
8604001000	공작차(workshop)	0	0	0	0
8604002000	기중기차(crane)	0	0	0	0
8604003000	검사차	0	0	0	0
8604004000	궤도검사차	0	0	0	0
8604009000	기타	0	0	0	0
8605001010	침대차	0	0	0	0
8605001090	기타	0	0	0	0
8605002000	수하물차	0	0	0	0
8605003000	우편차	0	0	0	0
8605004000	병원차	0	0	0	0
8605009000	기타	0	0	0	0
860610000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0	0	0	0
860630000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606911000	단열용이나 냉동용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606919000	기타	0	0	0	0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606990000	기타	0	0	0	0
8607110000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0	0	0	0
8607120000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0	0	0	0
8607191000	차축	0	0	0	0
8607192000	차륜	0	0	0	0
8607193000	윤축(輪軸)	0	0	0	0
8607199000	기타	0	0	0	0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607290000	기타	0	0	0	0
8607301000	훅(hook)	0	0	0	0
8607302000	연결장치	0	0	0	0
8607303000	완충장치	0	0	0	0
8607309000	기타	0	0	0	0
8607910000	기관차용	0	0	0	0
8607990000	기타	0	0	0	0
86080010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0	0	0	0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안전이나 교통 관제용 기기	0	0	0	0
8608009000	부분품	0	0	0	0
8609001000	액체 운반용	0	0	0	0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	0	0	0	0
8609003000	일반화물 운반용	0	0	0	0
8609004000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0	0	0	0
8609005000	냉동용과 냉장용	0	0	0	0
8609009000	기타	0	0	0	0
8701100000	보행운전형 트랙터	0	0	0	0
8701201000	신차	0	0	0	0
8701202000	중고차	0	0	0	0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0	0	0	0
8701901010	신차	0	0	0	0
8701901020	중고차	0	0	0	0
8701909110	50 마력 미만인 것	0	0	0	0
8701909190	기타	0	0	0	0
8701909900	기타	0	0	0	0
8702101010	신차	0	0	0	0
8702101020	중고차	0	0	0	0
8702102010	신차	0	0	0	0
8702102020	중고차	0	0	0	0
8702103010	신차	0	0	0	0
8702103020	중고차	0	0	0	0
8702901010	신차	0	0	0	0
8702901020	중고차	0	0	0	0
8702902010	신차	0	0	0	0
8702902020	중고차	0	0	0	0
8702903010	신차	0	0	0	0
8702903020	중고차	0	0	0	0
8703101000	설상주행용	0	0	0	0
8703102000	골프용차	0	0	0	0
8703109000	기타	0	0	0	0
8703217000	신차	0	0	0	0
8703218000	중고차	0	0	0	0
8703227000	신차	0	0	0	0
8703228000	중고차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703231010	신차	0	0	0	0
8703231020	중고차	0	0	0	0
8703239010	신차	0	0	0	0
8703239020	중고차	0	0	0	0
8703241010	신차	0	0	0	0
8703241020	중고차	0	0	0	0
8703249010	신차	0	0	0	0
8703249020	중고차	0	0	0	0
8703317000	신차	0	0	0	0
8703318000	중고차	0	0	0	0
8703321010	신차	0	0	0	0
8703321020	중고차	0	0	0	0
8703329010	신차	0	0	0	0
8703329020	중고차	0	0	0	0
8703337000	신차	0	0	0	0
8703338000	중고차	0	0	0	0
8703907000	전기자동차	0	0	0	0
8703909000	기타	0	0	0	0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704211010	신차	0	0	0	0
8704211020	중고차	0	0	0	0
8704219010	냉동차와 냉장차	0	0	0	0
8704219020	탱크차	0	0	0	0
8704219090	기타	0	0	0	0
8704221011	신차	0	0	0	0
8704221012	중고차	0	0	0	0
8704221091	신차	0	0	0	0
8704221092	중고차	0	0	0	0
8704229010	냉동차와 냉장차	0	0	0	0
8704229020	탱크차	0	0	0	0
8704229090	기타	0	0	0	0
8704231010	신차	0	0	0	0
8704231020	중고차	0	0	0	0
8704239010	냉동차와 냉장차	0	0	0	0
8704239020	탱크차	0	0	0	0
8704239090	기타	0	0	0	0
8704311010	신차	0	0	0	0
8704311020	중고차	0	0	0	0
8704319010	냉동차와 냉장차	0	0	0	0
8704319020	탱크차	0	0	0	0
8704319090	기타	0	0	0	0
8704321010	신차	0	0	0	0
8704321020	중고차	0	0	0	0
8704329010	냉동차와 냉장차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704329020	탱크차	0	0	0	0
8704329090	기타	0	0	0	0
8704901010	신차	0	0	0	0
8704901020	중고차	0	0	0	0
8704909010	냉동차와 냉장차	0	0	0	0
8704909020	탱크차	0	0	0	0
8704909090	기타	0	0	0	0
8705101000	신축붐식(telescopic boom type)	0	0	0	0
8705102000	앵글식(latticed boom type)	0	0	0	0
8705109000	기타	0	0	0	0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0	0	0	0
8705300000	소방차	0	0	0	0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0	0	0	0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0	0	0	0
8705901090	기타	0	0	0	0
8705909010	구난차	0	0	0	0
8705909020	도로청소차	0	0	0	0
8705909030	이동공작차	0	0	0	0
8705909040	이동방송차	0	0	0	0
8705909050	이동진료차	0	0	0	0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0	0	0	0
8705909070	제설차	0	0	0	0
8705909090	기타	0	0	0	0
8706001010	소호 제 8701.20 호나 제 8701.90.10 호의 것	0	0	0	0
8706001090	기타	0	0	0	0
8706002000	제 8702 호의 것	0	0	0	0
8706003000	제 8703 호의 것	0	0	0	0
8706004000	제 8704 호의 것	0	0	0	0
8706005000	제 8705 호의 것	0	0	0	0
8707100000	제 8703 호의 차량용	0	0	0	0
8707901010	소호 제 8701.20 호나 제 8701.90.10 호의 것	0	0	0	0
8707901090	기타	0	0	0	0
8707902000	제 8702 호의 것	0	0	0	0
8707903000	제 8704 호의 것	0	0	0	0
8707904000	제 8705 호의 것	0	0	0	0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0	0	0	0
8708210000	안전벨트	0	0	0	0
8708290000	기타	0	0	0	0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0	0	0	0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0	0	0	0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0	0	0	0
8708309000	기타	0	0	0	0
870840000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0	0	0	0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0	0	0	0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0	0	0	0
87089100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0	0	0	0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0	0	0	0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0	0	0	0
8708940000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과 운전박스, 그 부분품	0	0	0	0
8708951000	에어백	0	0	0	0
8708959000	기타	0	0	0	0
8708991010	제 8701 호의 것	0	0	0	0
8708991020	제 8702 호의 것	0	0	0	0
8708991030	제 8703 호의 것	0	0	0	0
8708991040	제 8704 호의 것	0	0	0	0
8708991050	제 8705 호의 것	0	0	0	0
8708999000	기타	0	0	0	0
8709110000	전기식	0	0	0	0
8709190000	기타	0	0	0	0
8709900000	부분품	0	0	0	0
8710001000	전차	0	0	0	0
8710002000	그 밖의 장갑차량	0	0	0	0
8710009000	부분품	0	0	0	0
8711101000	모터사이클	0	0	0	0
8711102000	모페드	0	0	0	0
8711103000	사이드카	0	0	0	0
8711109000	기타	0	0	0	0
8711201000	모터사이클	0	0	0	0
8711202000	사이드카	0	0	0	0
8711209000	기타	0	0	0	0
8711301000	모터사이클	0	0	0	0
8711302000	사이드카	0	0	0	0
8711309000	기타	0	0	0	0
8711401000	모터사이클	0	0	0	0
8711402000	사이드카	0	0	0	0
8711409000	기타	0	0	0	0
8711501000	모터사이클	0	0	0	0
8711502000	사이드카	0	0	0	0
8711509000	기타	0	0	0	0
8711901000	모터사이클	0	0	0	0
8711902000	사이드카	0	0	0	0
8711909000	기타	0	0	0	0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713900000	기타	0	0	0	0
8714101000	안장	0	0	0	0
8714109000	기타	0	0	0	0
871420000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0	0	0	0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0	0	0	0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이나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	0	0	0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0	0	0	0
8716390000	기타	0	0	0	0
8716400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	0	0	0
8716801000	손수레	0	0	0	0
8716802000	우마차	0	0	0	0
8716803000	썰매	0	0	0	0
8716809000	기타	0	0	0	0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0	0	0	0
8716909000	기타	0	0	0	0
8801001010	글라이더	0	0	0	0
8801001020	행글라이더	0	0	0	0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0	0	0	0
8801009090	기타	0	0	0	0
8802111000	군용	0	0	0	0
8802119000	기타	0	0	0	0
8802121000	군용	0	0	0	0
8802129000	기타	0	0	0	0
8802201000	프로펠러식	0	0	0	0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0	0
8802203000	터보제트식	0	0	0	0
8802209000	기타	0	0	0	0
8802301000	프로펠러식	0	0	0	0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0	0
8802303000	터보제트식	0	0	0	0
8802309000	기타	0	0	0	0
8802401000	프로펠러식	0	0	0	0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	0	0	0	0
8802403000	터보제트식	0	0	0	0
8802409000	기타	0	0	0	0
8802601010	인공위성	0	0	0	0
8802601090	기타	0	0	0	0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0	0	0	0
8802603000	서보비틀(suborbital)	0	0	0	0
8803100000	프로펠러와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80320000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	0	0	0
8803301000	비행기의 것	0	0	0	0
8803302000	헬리콥터의 것	0	0	0	0
8803901000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의 것	0	0	0	0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것	0	0	0	0
8803909000	기타	0	0	0	0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0	0	0	0
8804002000	로토슈트(rotochute)	0	0	0	0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0	0	0	0
8804009020	로토슈트(rotochute)의 것	0	0	0	0
8805101010	군용과 경찰용	0	0	0	0
8805101090	기타	0	0	0	0
8805102010	군용과 경찰용	0	0	0	0
8805102090	기타	0	0	0	0
8805109010	군용과 경찰용	0	0	0	0
8805109090	기타	0	0	0	0
8805211010	군용과 경찰용	0	0	0	0
8805211090	기타	0	0	0	0
8805212010	군용과 경찰용	0	0	0	0
8805212090	기타	0	0	0	0
8805291010	군용과 경찰용	0	0	0	0
8805291090	기타	0	0	0	0
8805292010	군용과 경찰용	0	0	0	0
8805292090	기타	0	0	0	0
8901100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0	0	0	0
8901200000	탱커(tanker)	0	0	0	0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901901000	화물선	0	0	0	0
8901902000	화객선	0	0	0	0
8902001010	철강선	0	0	0	0
8902001020	에프・알・피(FRP)선	0	0	0	0
8902001030	목조선	0	0	0	0
8902001090	기타	0	0	0	0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0	0	0	0
8902002090	기타	0	0	0	0
8903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0	0	0	0
8903910000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0	0	0	0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	0	0	0	0
890399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904001000	예인선	0	0	0	0
8904002000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0	0	0	0
8904009000	기타	0	0	0	0
8905100000	준설선	0	0	0	0
8905201000	시추대	0	0	0	0
8905202000	작업대	0	0	0	0
8905209000	기타	0	0	0	0
8905901000	조명선	0	0	0	0
8905902000	소방선	0	0	0	0
8905903000	기중기선	0	0	0	0
8905904000	발전선	0	0	0	0
8905905000	해난구조선	0	0	0	0
8905906000	공작선	0	0	0	0
8905907000	시추선	0	0	0	0
8905908000	부선거(艀船渠)	0	0	0	0
8905909000	기타	0	0	0	0
8906100000	군함	0	0	0	0
8906900000	기타	0	0	0	0
8907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0	0	0	0
8907901000	부교(소호 제 8907.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907902000	탱크	0	0	0	0
8907903000	코퍼댐(coffer-dam)	0	0	0	0
8907904000	부잔교(landing stage)	0	0	0	0
8907905000	부표	0	0	0	0
8907906000	수로부표	0	0	0	0
8907909000	기타	0	0	0	0
8908001000	해체용 선박	0	0	0	0
8908009000	기타	0	0	0	0
9001101000	광섬유	0	0	0	0
9001102000	광섬유다발	0	0	0	0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0	0	0	0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0	0	0	0
9001300000	콘택트렌즈	0	0	0	0
9001401000	시력 교정용	0	0	0	0
9001409000	기타	0	0	0	0
9001501000	시력 교정용	0	0	0	0
9001509000	기타	0	0	0	0
9001901000	프리즘	0	0	0	0
9001902000	반사경	0	0	0	0
9001903000	그 밖의 렌즈	0	0	0	0
9001909000	기타	0	0	0	0
9002111000	사진기용	0	0	0	0
9002119010	촬영기와 비디오카메라용	0	0	0	0
9002119020	영사기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02119090	기타	0	0	0	0
9002191000	현미경용	0	0	0	0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	0	0	0	0
9002199000	기타	0	0	0	0
9002201000	사진기용	0	0	0	0
9002209000	기타	0	0	0	0
9002901000	사진기용	0	0	0	0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	0	0	0
9002909090	기타	0	0	0	0
90031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0	0	0	0
9003199000	기타	0	0	0	0
9003900000	부분품	0	0	0	0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0	0	0	0
9004109000	기타	0	0	0	0
9004901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0	0	0	0
9004901090	기타	0	0	0	0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0	0	0	0
9004909090	기타	0	0	0	0
9005100000	쌍안경	0	0	0	0
9005801000	단안경	0	0	0	0
9005802010	반사망원경	0	0	0	0
9005802020	굴절식 천체망원경	0	0	0	0
9005802030	자오의·적도의나 천정의와 경위의	0	0	0	0
9005802090	기타	0	0	0	0
9005809000	기타	0	0	0	0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0	0	0	0
9006100000	인쇄제판용 사진기	0	0	0	0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0	0	0	0
9006302000	공중측량용 사진기	0	0	0	0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이나 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0	0	0	0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0	0	0	0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0	0	0	0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0	0	0	0
9006409000	기타	0	0	0	0
9006511000	특수용도 사진기	0	0	0	0
9006519000	기타	0	0	0	0
9006521000	특수용도 사진기	0	0	0	0
90065290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이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06529090	기타	0	0	0	0
9006531000	특수용도 사진기	0	0	0	0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0	0	0	0
900653902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이나 그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9006539090	기타	0	0	0	0
9006591000	특수용도 사진기	0	0	0	0
9006599010	문서수록용 사진기(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셰이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06599090	기타	0	0	0	0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9006699000	기타	0	0	0	0
9006910000	카메라용	0	0	0	0
9006990000	기타	0	0	0	0
9007100000	촬영기	0	0	0	0
9007201000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0	0	0	0
9007209010	폭이 20 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0	0	0	0
9007209020	폭이 20 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용	0	0	0	0
9007910000	카메라용	0	0	0	0
9007920000	영사기용	0	0	0	0
900850100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0	0	0	0
9008502000	그 밖의 투영기	0	0	0	0
9008503000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0101000	인쇄 제판용	0	0	0	0
9010102000	마이크로필름용	0	0	0	0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9010109090	기타	0	0	0	0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0	0	0	0
9010509000	기타	0	0	0	0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0	0	0	0
9010901010	소호 제 9010.50.1000 호의 것	0	0	0	0
9010901090	기타	0	0	0	0
9010909000	기타	0	0	0	0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0	0
9011109000	기타	0	0	0	0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0	0	0	0
9011201090	기타	0	0	0	0
9011209000	기타	0	0	0	0
9011801000	편광 현미경	0	0	0	0
9011802000	금속 현미경	0	0	0	0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0	0	0	0
9011804000	생물 현미경	0	0	0	0
9011805000	비교 현미경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11809000	기타	0	0	0	0
9011901000	소호 제 9011.10.1000 호, 제 9011.20.1010 호의 것	0	0	0	0
9011909000	기타	0	0	0	0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12101090	기타	0	0	0	0
9012102000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	0	0	0
9012901000	소호 제 9012.10.1010 호의 것	0	0	0	0
9012909000	기타	0	0	0	0
901310000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0	0	0	0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0	0	0	0
9013801110	광전자식 시계용	0	0	0	0
9013801120	전자계산기용	0	0	0	0
9013801130	텔레비전용	0	0	0	0
9013801140	모니터용	0	0	0	0
9013801190	기타	0	0	0	0
9013801910	광전자식 시계용	0	0	0	0
9013801920	전자계산기용	0	0	0	0
9013801930	텔레비전용	0	0	0	0
9013801990	기타	0	0	0	0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0	0	0	0
9013803000	도어아이	0	0	0	0
9013809000	기타	0	0	0	0
9013901000	소호 제 9013.80.1120 호, 제 9013.80.1920 호의 것	0	0	0	0
9013909000	기타	0	0	0	0
9014101010	항공기용	0	0	0	0
9014101090	기타	0	0	0	0
9014102010	항공기용	0	0	0	0
9014102090	기타	0	0	0	0
9014109000	기타	0	0	0	0
901420000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0	0	0	0
9014800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0	0	0	0
9014901000	항공기용	0	0	0	0
9014909000	기타	0	0	0	0
9015100000	거리측정기	0	0	0	0
9015200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태코미터)	0	0	0	0
9015300000	수준기(水準器)	0	0	0	0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0	0	0	0
9015801000	토지 측량용	0	0	0	0
9015802000	수로 측량용	0	0	0	0
9015803000	해양 측량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15804000	수리 계측용	0	0	0	0
9015805000	기상 관측용	0	0	0	0
9015809000	기타	0	0	0	0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6001000	직시식	0	0	0	0
9016002000	전자식	0	0	0	0
9016008000	기타	0	0	0	0
9016009000	부분품이나 부속품	0	0	0	0
9017101000	플로터	0	0	0	0
9017109000	기타	0	0	0	0
9017201010	플로터	0	0	0	0
9017201090	기타	0	0	0	0
9017202010	플로터	0	0	0	0
9017202090	기타	0	0	0	0
9017203000	계산용구	0	0	0	0
9017209000	기타	0	0	0	0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0	0	0	0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0	0	0	0
9017303000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lipers)	0	0	0	0
9017309000	기타	0	0	0	0
9017801000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	0	0	0	0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9017809090	기타	0	0	0	0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한 개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와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9017909090	기타	0	0	0	0
9018111000	심전계	0	0	0	0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8120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0	0	0	0
9018130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0	0	0	0
901814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0	0	0	0
9018191000	뇌파계	0	0	0	0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0	0	0	0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0	0	0	0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0	0	0	0
9018198000	기타	0	0	0	0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0	0	0	0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9018321000	주사침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18322000	봉합침	0	0	0	0
9018329000	기타	0	0	0	0
9018391000	수혈세트나 수액세트	0	0	0	0
9018392000	카테터(catheter)	0	0	0	0
9018398000	기타	0	0	0	0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0	0	0	0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8491000	치과용 버(bur)	0	0	0	0
9018492000	치과용 유닛	0	0	0	0
9018493000	치석 제거기	0	0	0	0
9018498000	기타	0	0	0	0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8501000	안과용 기기	0	0	0	0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8901000	임신진단기	0	0	0	0
9018909010	그밖의 일반외과용 기기	0	0	0	0
9018909020	산부인과용 기기	0	0	0	0
901890903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18909040	인공신장기	0	0	0	0
9018909050	인공신장기용 투석기	0	0	0	0
9018909060	수의과용 기기	0	0	0	0
9018909080	기타	0	0	0	0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0	0	0	0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0	0	0	0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0	0	0	0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9201000	오존 흡입기	0	0	0	0
9019202000	산소 흡입기	0	0	0	0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0	0	0	0
9019204000	인공호흡기	0	0	0	0
9019208000	기타	0	0	0	0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20001000	가스마스크	0	0	0	0
902000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0	0	0	0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	0	0	0
9021210000	의치	0	0	0	0
9021290000	기타	0	0	0	0
9021310000	인조관절	0	0	0	0
9021390000	기타	0	0	0	0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0	0
9021901000	스크루・스테이블・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0	0	0	0
9021908000	기타	0	0	0	0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0	0	0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0	0	0	0
9022141030	뼈(골)밀도측정기	0	0	0	0
9022141090	기타	0	0	0	0
9022142000	수의과용	0	0	0	0
9022191000	물리나 화학시험용	0	0	0	0
9022192000	공업용	0	0	0	0
9022199000	기타	0	0	0	0
9022211010	감마사진기 장치	0	0	0	0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0	0	0	0
9022211030	코발트 치료기	0	0	0	0
9022211090	기타	0	0	0	0
9022212000	수의과용	0	0	0	0
9022291000	물리나 화학시험용	0	0	0	0
9022292000	공업용	0	0	0	0
9022299000	기타	0	0	0	0
9022300000	엑스선관	0	0	0	0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0	0	0	0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0	0	0	0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0	0	0	0
9022901090	기타	0	0	0	0
9022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23001000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0	0	0	0
9023009000	기타	0	0	0	0
9024101000	경도시험기	0	0	0	0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0	0	0	0
9024103000	압축시험기	0	0	0	0
9024104000	피로시험기	0	0	0	0
9024105000	만능시험기	0	0	0	0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볼이나 와이어의 접착력이나 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0	0	0	0
9024109000	기타	0	0	0	0
9024801010	신축시험기	0	0	0	0
9024801020	마모시험기	0	0	0	0
9024801090	기타	0	0	0	0
9024809010	탄성시험기	0	0	0	0
9024809020	소성시험기	0	0	0	0
9024809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9024909000	기타	0	0	0	0
9025111000	의료용이나 수의과용 온도계	0	0	0	0
9025119000	기타	0	0	0	0
9025191000	온도계	0	0	0	0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0	0	0	0
9025192090	기타	0	0	0	0
902580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0	0	0	0
9025802010	수은 기압계	0	0	0	0
9025802090	기타	0	0	0	0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0	0	0	0
9025803020	모발 습도계	0	0	0	0
9025803090	기타	0	0	0	0
9025809000	기타	0	0	0	0
9025901100	온도센서	0	0	0	0
9025901200	습도센서	0	0	0	0
9025901900	기타센서	0	0	0	0
9025909000	기타	0	0	0	0
9026101000	유량계	0	0	0	0
9026102000	액면계	0	0	0	0
9026109000	기타	0	0	0	0
9026201110	액체형	0	0	0	0
9026201120	금속형	0	0	0	0
9026201190	기타	0	0	0	0
9026201900	기타	0	0	0	0
9026209000	기타	0	0	0	0
9026801000	열측정계	0	0	0	0
9026802000	풍력계	0	0	0	0
9026809000	기타	0	0	0	0
9026901100	레벨센서	0	0	0	0
9026901200	유량이나 유속센서	0	0	0	0
9026901300	압력센서	0	0	0	0
9026901400	열센서(온도센서 및 열량센서를 제외한다)	0	0	0	0
9026901900	기타센서	0	0	0	0
9026909000	기타	0	0	0	0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0	0	0	0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0	0	0	0
9027301000	분광계	0	0	0	0
9027302000	분광광도계	0	0	0	0
9027303000	분광사진기	0	0	0	0
9027501000	편광계	0	0	0	0
9027502000	굴절계	0	0	0	0
9027503000	비색계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27504000	조도계	0	0	0	0
9027509000	기타	0	0	0	0
902780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이나 화학분석용 기기	0	0	0	0
9027802010	피・에이치(PH) 미터	0	0	0	0
9027802020	열량계	0	0	0	0
9027802030	점도계	0	0	0	0
9027802040	팽창계	0	0	0	0
9027802050	노출계	0	0	0	0
9027802090	기타	0	0	0	0
902790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0	0	0	0
9027909110	가스센서	0	0	0	0
9027909121	분진센서	0	0	0	0
9027909122	매연센서	0	0	0	0
9027909130	열량센서	0	0	0	0
9027909190	기타	0	0	0	0
90279099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9027909991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의 것	0	0	0	0
9027909999	기타	0	0	0	0
9028101010	디지털식	0	0	0	0
9028101090	기타	0	0	0	0
9028102000	검정용 계기	0	0	0	0
9028201010	디지털식	0	0	0	0
9028201090	기타	0	0	0	0
9028202000	검정용 계기	0	0	0	0
9028301010	전류가 50 암페어 이상인 것	0	0	0	0
9028301020	전류가 50 암페어 미만인 것	0	0	0	0
9028302000	검정용 계기	0	0	0	0
902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29101000	적산(積算)회전계	0	0	0	0
9029102000	생산량계	0	0	0	0
9029103000	택시미터	0	0	0	0
9029104000	주행거리계	0	0	0	0
9029105000	기계 등의 작동시간 지시용 적산(積算)계기	0	0	0	0
9029109000	기타	0	0	0	0
9029201010	시계식	0	0	0	0
9029201090	기타	0	0	0	0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	0	0	0	0
9029901100	속도센서	0	0	0	0
9029901200	회전센서	0	0	0	0
9029901900	기타센서	0	0	0	0
9029909000	기타	0	0	0	0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0	0	0	0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0	0	0	0
9030201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30202010	음극선관의 것	0	0	0	0
9030202090	기타	0	0	0	0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0	0	0	0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0	0	0	0
9030331000	전압계	0	0	0	0
9030332000	전류계	0	0	0	0
9030333000	회로계	0	0	0	0
9030334000	저항계	0	0	0	0
9030335000	검류계	0	0	0	0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0	0	0	0
9030339000	기타	0	0	0	0
9030391000	전압계	0	0	0	0
9030392000	전류계	0	0	0	0
9030393000	회로계	0	0	0	0
9030394000	저항계	0	0	0	0
9030395000	검류계	0	0	0	0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0	0	0	0
9030399000	기타	0	0	0	0
9030401000	누화계(cross-talk meter)	0	0	0	0
9030402000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0	0	0	0
9030403000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0	0	0	0
9030404000	잡음전압계(psophometer)	0	0	0	0
9030409000	기타	0	0	0	0
903082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0	0	0	0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30890000	기타	0	0	0	0
9030901100	전자기센서	0	0	0	0
9030901200	방사선센서	0	0	0	0
9030901900	기타센서	0	0	0	0
9030909010	소호 제 9030.82 호의 것(소호 제 9030.90 호의 센서를 포함한다)	0	0	0	0
9030909090	기타	0	0	0	0
9031100000	균형시험기	0	0	0	0
9031200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0	0	0	0
9031411000	포시미터	0	0	0	0
9031419000	기타	0	0	0	0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0	0	0	0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나 앵글게이지	0	0	0	0
9031493000	포시미터	0	0	0	0
9031494010	반도체 제조용	0	0	0	0
9031494090	기타	0	0	0	0
903149901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오염상태 측정용의 것	0	0	0	0
9031499090	기타	0	0	0	0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31802000	로드셀	0	0	0	0
90318090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0	0	0	0
9031809020	기어 테스터	0	0	0	0
9031809030	면적계	0	0	0	0
9031809040	구면계	0	0	0	0
9031809050	직물 검사장치	0	0	0	0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0	0	0	0
9031809070	흠, 균열 또는 그 밖의 결함 측정기	0	0	0	0
9031809080	동력시험기	0	0	0	0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	0	0	0	0
9031809099	기타	0	0	0	0
90319011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0	0
9031901119	기타의 것	0	0	0	0
9031901190	기타	0	0	0	0
903190129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0	0
9031901292	기타 반도체 제조용의 것	0	0	0	0
9031901299	기타	0	0	0	0
90319019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0	0
9031901919	기타의 것	0	0	0	0
9031901990	기타	0	0	0	0
9031909011	소호 제 9031.41 호, 제 9031.49.9010 호의 것	0	0	0	0
9031909019	기타의 것	0	0	0	0
9031909090	기타	0	0	0	0
9032101010	냉장고용	0	0	0	0
9032101020	항공기용	0	0	0	0
9032101090	기타	0	0	0	0
9032102000	고정식	0	0	0	0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0	0	0	0
9032811010	항공기용	0	0	0	0
9032811090	기타	0	0	0	0
9032812010	항공기용	0	0	0	0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0	0	0	0
9032812099	기타	0	0	0	0
9032819010	항공기용	0	0	0	0
9032819090	기타	0	0	0	0
9032891010	항공기용	0	0	0	0
9032891090	기타	0	0	0	0
9032892010	항공기용	0	0	0	0
9032892090	기타	0	0	0	0
9032893010	항공기용	0	0	0	0
9032893090	기타	0	0	0	0
9032899010	항공기용	0	0	0	0
9032899090	기타	0	0	0	0
9032901000	항공기용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32909000	기타	0	0	0	0
90330000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나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않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9101199000	기타	0	0	0	0
9101210000	자동권(自動捲)식	0	0	0	0
9101290000	기타	0	0	0	0
9101910000	전기구동식	0	0	0	0
9101990000	기타	0	0	0	0
9102111000	맹인용	0	0	0	0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9102119010	밧데리나 축전지 구동식	0	0	0	0
9102119090	기타	0	0	0	0
9102121000	밧데리나 축전지 구동식	0	0	0	0
9102129010	맹인용	0	0	0	0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9102129090	기타	0	0	0	0
9102191000	밧데리나 축전지 구동식	0	0	0	0
9102199010	맹인용	0	0	0	0
910219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9102199090	기타	0	0	0	0
9102211000	맹인용	0	0	0	0
91022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9102219000	기타	0	0	0	0
9102291000	맹인용	0	0	0	0
910229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9102299000	기타	0	0	0	0
9102911000	스톱워치	0	0	0	0
9102912000	맹인용	0	0	0	0
9102919010	밧데리나 축전지 구동식	0	0	0	0
9102919090	기타	0	0	0	0
9102991000	스톱워치	0	0	0	0
9102992000	맹인용	0	0	0	0
9102999000	기타	0	0	0	0
9103101000	여행용 시계	0	0	0	0
9103109000	기타	0	0	0	0
9103901000	여행용 시계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103909000	기타	0	0	0	0
9104001000	차량용	0	0	0	0
9104002000	항공기용	0	0	0	0
9104004000	선박용	0	0	0	0
9104009000	기타	0	0	0	0
9105110000	전기구동식	0	0	0	0
9105190000	기타	0	0	0	0
9105210000	전기구동식	0	0	0	0
9105290000	기타	0	0	0	0
9105910000	전기구동식	0	0	0	0
9105990000	기타	0	0	0	0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타임레코더(time-recorder)	0	0	0	0
9106901000	순찰시계	0	0	0	0
9106902000	타이머	0	0	0	0
9106903000	주차시간 기록계	0	0	0	0
9106909000	기타	0	0	0	0
9107001000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	0	0	0	0
9107009000	기타	0	0	0	0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0	0	0	0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9108190000	기타	0	0	0	0
9108200000	자동권(自動捲)식	0	0	0	0
9108900000	기타	0	0	0	0
9109100000	전기구동식	0	0	0	0
9109900000	기타	0	0	0	0
9110111000	밧데리나 축전지 구동식	0	0	0	0
9110112000	자동권(自動捲)식	0	0	0	0
9110119000	기타	0	0	0	0
9110121000	밧데리나 축전지 구동식	0	0	0	0
9110122000	자동권(自動捲)식	0	0	0	0
9110129000	기타	0	0	0	0
9110191000	밧데리나 축전지 구동식	0	0	0	0
9110192000	자동권(自動捲)식	0	0	0	0
9110199000	기타	0	0	0	0
9110901000	밧데리나 축전지 구동식	0	0	0	0
9110909000	기타	0	0	0	0
9111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0	0	0	0
9111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9111800000	그 밖의 케이스	0	0	0	0
911190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111909000	기타	0	0	0	0
9112200000	케이스	0	0	0	0
9112900000	부분품	0	0	0	0
9113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91132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9113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113902000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로 만든 것	0	0	0	0
9113909000	기타	0	0	0	0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0	0	0	0
9114300000	문자판	0	0	0	0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bridge)	0	0	0	0
9114900000	기타	0	0	0	0
9201101000	자동식	0	0	0	0
9201109000	기타	0	0	0	0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0	0	0	0
9201901000	하프시코드(harpsichord)	0	0	0	0
9201909000	기타	0	0	0	0
9202101000	바이올린	0	0	0	0
9202102000	첼로	0	0	0	0
9202109000	기타	0	0	0	0
9202901000	기타	0	0	0	0
9202902000	하프	0	0	0	0
9202903000	만도린	0	0	0	0
9202904000	밴조(banjo)	0	0	0	0
9202909000	기타	0	0	0	0
9205101000	트럼펫	0	0	0	0
9205102000	트럼본	0	0	0	0
9205109000	기타	0	0	0	0
9205901010	플루트	0	0	0	0
9205901020	클라리넷	0	0	0	0
9205901030	색소폰	0	0	0	0
9205901040	리코더(recorder)	0	0	0	0
9205901090	기타	0	0	0	0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0	0	0	0
9205902020	리드 오르간	0	0	0	0
9205902090	기타	0	0	0	0
9205903010	아코디언	0	0	0	0
9205903020	멜로디카	0	0	0	0
9205903090	기타	0	0	0	0
9205904000	하모니카	0	0	0	0
9205909000	기타	0	0	0	0
9206001000	북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206002000	목금	0	0	0	0
9206003000	심벌	0	0	0	0
9206004000	캐스터네츠	0	0	0	0
9206005000	마라카스(maracas)	0	0	0	0
9206006000	탬버린	0	0	0	0
9206009000	기타	0	0	0	0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0	0	0	0
9207103000	피아노	0	0	0	0
9207109000	기타	0	0	0	0
9207901000	기타	0	0	0	0
9207902000	아코디언	0	0	0	0
9207903000	리듬박스	0	0	0	0
9207909000	기타	0	0	0	0
9208100000	뮤지컬박스	0	0	0	0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0	0	0	0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0	0	0	0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0	0	0	0
9208904000	뮤지컬소(musical saw)	0	0	0	0
9208909000	기타	0	0	0	0
9209301000	금속선으로 만든 것	0	0	0	0
9209309000	기타	0	0	0	0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209920000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209940000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209991000	뮤지컬 무브먼트의 것	0	0	0	0
9209992000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와 각종 조율관(調律管)	0	0	0	0
9209993000	뮤지컬 박스용 메커니즘	0	0	0	0
9209999000	기타	0	0	0	0
9301101000	자주식(自走式)	0	0	0	0
9301109000	기타	0	0	0	0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0	0	0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0	0	0	0
9301902010	노리쇠작동	0	0	0	0
9301902020	반자동	0	0	0	0
9301902030	완전자동	0	0	0	0
9301902090	기타	0	0	0	0
9301903000	기관총	0	0	0	0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pistol)	0	0	0	0
9301904090	기타	0	0	0	0
9301909000	기타	0	0	0	0
9302001010	리볼버(revolver)	0	0	0	0
9302001021	반자동	0	0	0	0
9302001029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302001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0	0	0
9302001090	기타	0	0	0	0
9302009010	리볼버(revolver)	0	0	0	0
9302009021	반자동	0	0	0	0
9302009029	기타	0	0	0	0
9302009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0	0	0	0
9302009090	기타	0	0	0	0
9303100000	총구장전 화기	0	0	0	0
9303201011	펌프작동	0	0	0	0
9303201012	반자동	0	0	0	0
9303201019	기타	0	0	0	0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9303201090	기타	0	0	0	0
9303209011	펌프작동	0	0	0	0
9303209012	반자동	0	0	0	0
9303209019	기타	0	0	0	0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9303209090	기타	0	0	0	0
9303301010	단발	0	0	0	0
9303301020	반자동	0	0	0	0
9303301090	기타	0	0	0	0
9303309010	단발	0	0	0	0
9303309020	반자동	0	0	0	0
9303309090	기타	0	0	0	0
9303900000	기타	0	0	0	0
9304001000	공기총	0	0	0	0
9304009000	기타	0	0	0	0
9305101010	격발장치	0	0	0	0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0	0	0	0
9305101030	총열	0	0	0	0
9305101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와 가스완충기	0	0	0	0
930510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0	0
930510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0	0
9305101070	개머리판・손잡이와 플레이트	0	0	0	0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0	0	0	0
9305101090	기타	0	0	0	0
9305109010	격발장치	0	0	0	0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0	0	0	0
9305109030	총열	0	0	0	0
9305109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와 가스완충기	0	0	0	0
9305109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0	0
9305109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305109070	개머리판・손잡이와 플레이트	0	0	0	0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0	0	0	0
9305109090	기타	0	0	0	0
9305201000	산탄총의 총열	0	0	0	0
9305209010	라이플 총열	0	0	0	0
930520902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0	0
9305209090	기타	0	0	0	0
9305911010	격발장치	0	0	0	0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0	0	0	0
9305911030	총열	0	0	0	0
9305911040	피스톤・잠금러그(locking lug)와 가스완충기	0	0	0	0
930591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0	0	0	0
930591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0	0	0	0
9305911070	소염기와 그 부분품	0	0	0	0
9305911080	브리치(breech)・노리쇠와 노리쇠집	0	0	0	0
9305911090	기타	0	0	0	0
9305919000	기타	0	0	0	0
9305990000	기타	0	0	0	0
9306210000	탄약	0	0	0	0
9306290000	기타	0	0	0	0
9306301000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이나 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0	0	0	0
9306309000	기타	0	0	0	0
9306900000	기타	0	0	0	0
93070000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0	0	0
9401100000	항공기용 의자	0	0	0	0
9401200000	차량용 의자	0	0	0	0
9401302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9401303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0	0
9401309000	기타	0	0	0	0
940140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9401402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0	0
9401409000	기타	0	0	0	0
9401510000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9401591000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9401599000	기타	0	0	0	0
94016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0	0
9401619000	기타	0	0	0	0
94016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0	0
9401699000	기타	0	0	0	0
94017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0	0
9401719000	기타	0	0	0	0
94017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0	0	0	0
940179900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401801000	석재로 만든 것	0	0	0	0
9401809000	기타	0	0	0	0
9401901000	목재로 만든 것	0	0	0	0
9401902000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9401909000	기타	0	0	0	0
9402101010	치과용 의자	0	0	0	0
9402101020	안과용 의자	0	0	0	0
9402101090	기타	0	0	0	0
9402109010	이발용이나 미용실용 의자	0	0	0	0
9402109090	기타	0	0	0	0
9402901000	수술대	0	0	0	0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0	0	0	0
9402903000	분만대	0	0	0	0
9402908000	기타	0	0	0	0
9402909000	부분품	0	0	0	0
9403100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0	0	0	0
9403201000	침대	0	0	0	0
9403209000	기타	0	0	0	0
9403301000	책상	0	0	0	0
9403309000	기타	0	0	0	0
9403401000	식탁	0	0	0	0
9403409000	기타	0	0	0	0
9403501000	침대	0	0	0	0
9403509000	기타	0	0	0	0
9403601010	문갑	0	0	0	0
9403601020	화장대	0	0	0	0
9403601030	장롱	0	0	0	0
9403601090	기타	0	0	0	0
9403609010	문갑	0	0	0	0
9403609020	화장대	0	0	0	0
9403609030	장롱	0	0	0	0
9403609090	기타	0	0	0	0
9403701000	보행기	0	0	0	0
9403709000	기타	0	0	0	0
9403810000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9403890000	기타	0	0	0	0
9403900000	부분품	0	0	0	0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0	0	0	0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9404300000	침낭(sleeping bag)	0	0	0	0
9404900000	기타	0	0	0	0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0	0	0	0
9405109000	기타	0	0	0	0
94052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0	0	0	0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0	0	0	0
9405209000	기타	0	0	0	0
94053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0	0	0	0
9405309000	기타	0	0	0	0
9405401000	방폭형	0	0	0	0
9405402000	투광형	0	0	0	0
9405403000	가로등의 것	0	0	0	0
9405409000	기타	0	0	0	0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0	0	0	0
9405601000	네온관의 것	0	0	0	0
940560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0	0	0	0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0	0	0	0
9405609000	기타	0	0	0	0
9405911000	샹들리에용	0	0	0	0
9405919000	기타	0	0	0	0
9405921000	샹들리에용	0	0	0	0
9405929000	기타	0	0	0	0
9405991000	샹들리에용	0	0	0	0
9405999000	기타	0	0	0	0
9406009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406009020	철강으로 만든 것	0	0	0	0
940600903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0	0	0
9406009090	기타	0	0	0	0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0	0	0	0
9503001200	스쿠터	0	0	0	0
9503001300	페달차	0	0	0	0
9503001400	인형용 차	0	0	0	0
9503001800	기타	0	0	0	0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503002110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9503002120	고무로 만든 것	0	0	0	0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503002140	도자제의 것	0	0	0	0
9503002150	유리로 만든 것	0	0	0	0
9503002160	나무로 만든 것	0	0	0	0
9503002190	기타	0	0	0	0
9503002910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0	0	0	0
9503002990	기타	0	0	0	0
9503003110	전기식 기차	0	0	0	0
9503003190	부속품	0	0	0	0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소호 제 9503.00.31 호의 것은 제외한다)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0	0	0	0
9503003411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9503003419	기타	0	0	0	0
9503003491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9503003492	고무로 만든 것	0	0	0	0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503003494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9503003495	도자제의 것	0	0	0	0
9503003496	유리로 만든 것	0	0	0	0
9503003497	나무로 만든 것	0	0	0	0
9503003499	기타	0	0	0	0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0	0	0	0
9503003600	퍼즐	0	0	0	0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나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0	0	0	0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공・연과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9503003919	기타	0	0	0	0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소호 제 9503.00.319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9504201000	당구대	0	0	0	0
9504202000	당구공	0	0	0	0
9504209000	기타	0	0	0	0
950430000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0	0	0	0
9504400000	오락용 카드	0	0	0	0
950450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504509000	기타	0	0	0	0
9504901010	핀 테이블	0	0	0	0
9504901020	핀 세터	0	0	0	0
9504901030	볼링 볼	0	0	0	0
9504901040	레인	0	0	0	0
9504901050	볼링 핀	0	0	0	0
9504901090	기타	0	0	0	0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0	0	0	0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0	0	0	0
9504909010	비디오 게임용구의 것	0	0	0	0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0	0	0	0
9504909090	기타	0	0	0	0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505900000	기타	0	0	0	0
9506110000	스키	0	0	0	0
95061200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0	0	0	0
9506190000	기타	0	0	0	0
9506210000	세일보드(sailboard)	0	0	0	0
9506290000	기타	0	0	0	0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0	0	0	0
9506320000	골프공	0	0	0	0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0	0	0	0
9506399000	기타	0	0	0	0
9506401000	탁구대	0	0	0	0
9506402000	탁구라켓	0	0	0	0
9506403000	탁구공	0	0	0	0
9506409000	기타	0	0	0	0
95065100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0	0	0	0
9506599000	기타	0	0	0	0
95066100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0	0	0	0
9506621000	축구공	0	0	0	0
9506622000	농구공	0	0	0	0
9506623000	배구공	0	0	0	0
9506624000	핸드볼공	0	0	0	0
9506625000	미식축구용	0	0	0	0
9506629000	기타	0	0	0	0
9506691000	배드민턴 셔틀콕	0	0	0	0
9506692000	야구공	0	0	0	0
9506699000	기타	0	0	0	0
9506700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0	0	0	0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나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0	0	0	0
9506990000	기타	0	0	0	0
9507101000	유리섬유로 만든 것	0	0	0	0
9507102000	카본으로 만든 것	0	0	0	0
9507109000	기타	0	0	0	0
950720000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9507300000	낚시 릴	0	0	0	0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0	0	0	0
9507909000	기타	0	0	0	0
950810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0	0	0	0
9508900000	기타	0	0	0	0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0	0	0	0
9601901010	진주 양식용 핵	0	0	0	0
9601901090	기타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601902000	뿔로 된 것	0	0	0	0
9601903000	뼈로 된 것	0	0	0	0
9601904000	산호로 만든 것	0	0	0	0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0	0	0	0
9601909090	기타	0	0	0	0
9602001000	젤라틴 캡슐	0	0	0	0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예: 상아야자)와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0	0	0	0
9602009020	흑옥(광물성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호박·해포석·응결한 호박과 응결한 해포석의 가공품과 그 제품	0	0	0	0
9602009090	기타	0	0	0	0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9603210000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0	0	0	0
9603290000	기타	0	0	0	0
960330000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0	0	0	0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0	0	0	0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나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603900000	기타	0	0	0	0
96040000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0	0	0	0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이나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 및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96062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0	0	0	0
960622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0	0	0	0
9606291000	조개껍질로 만든 것	0	0	0	0
9606299000	기타	0	0	0	0
9606300000	단추의 몰드(mould)와 그 밖의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0	0	0	0
9607110000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0	0	0	0
960719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607199000	기타	0	0	0	0
960720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0	0	0	0
960720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607209000	기타	0	0	0	0
9608100000	볼펜	0	0	0	0
9608200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tip)으로 된 펜과 마커				
9608301000	만년필	0	0	0	0
9608309000	기타	0	0	0	0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propelling pencil)	0	0	0	0
9608402010	메커니컬 타입의 것	0	0	0	0
9608402090	기타	0	0	0	0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0	0	0	0
9608600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608911000	펜촉	0	0	0	0
9608912000	닙 포인트(nib point)	0	0	0	0
9608991000	부분품	0	0	0	0
9608999000	기타	0	0	0	0
9609101000	연필	0	0	0	0
9609102000	색연필	0	0	0	0
9609103000	크레용	0	0	0	0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609901000	크레용과 오일파스텔	0	0	0	0
9609902000	파스텔	0	0	0	0
9609903010	필기용	0	0	0	0
9609903090	기타	0	0	0	0
9609909000	기타	0	0	0	0
9610001000	석판	0	0	0	0
9610002000	흑판	0	0	0	0
9610009000	기타	0	0	0	0
9611001000	스탬프	0	0	0	0
9611002000	수동식 인쇄용 세트	0	0	0	0
9611009000	기타	0	0	0	0
9612101000	타자기용	0	0	0	0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0	0	0	0
9612109000	기타	0	0	0	0
9612200000	잉크 패드	0	0	0	0
96131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61320000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613800000	그 밖의 라이터	0	0	0	0
9613901000	압전식 점화 유닛	0	0	0	0
9613909000	기타	0	0	0	0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pipe bowl)	0	0	0	0
9614009000	기타	0	0	0	0
9615111000	빗	0	0	0	0
9615119000	기타	0	0	0	0
9615191000	빗	0	0	0	0

HSK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615199000	기타	0	0	0	0
9615901000	머리핀	0	0	0	0
9615909000	기타	0	0	0	0
961610000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0	0	0	0
9616200000	화장용 분첩과 패드	0	0	0	0
9617001000	보온병	0	0	0	0
9617002000	보온 도시락	0	0	0	0
9617008000	기타	0	0	0	0
9617009000	부분품	0	0	0	0
9618001000	마네킹 인형	0	0	0	0
9618002000	자동 인형	0	0	0	0
9618009000	기타	0	0	0	0
9619001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0	0	0	0
9619001090	기타	0	0	0	0
9619002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0	0	0	0
9619003010	소호 제 6108.21 호, 제 6108.22 호, 제 6108.29 호, 제 6111.20 호, 제 6111.30 호, 제 6111.90 호, 제 6209.20 호, 제 6209.30 호, 제 6209.90 호나 제 6210.50 호의 것	0	0	0	0
9619003020	제 6113 호, 소호 제 6208.91 호, 제 6208.92 호나 제 6208.99 호의 것	0	0	0	0
961900400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 63 류 주 2 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9619009000	기타	0	0	0	0
9701101000	회화	0	0	0	0
9701102000	데생	0	0	0	0
9701103000	파스텔	0	0	0	0
9701900000	기타	0	0	0	0
9702001000	판화	0	0	0	0
9702002000	인쇄화	0	0	0	0
9702003000	석판화	0	0	0	0
9703001000	조각	0	0	0	0
9703002000	조상(彫像)	0	0	0	0
9704001000	우표	0	0	0	0
9704009000	기타	0	0	0	0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이나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706001000	도자기류	0	0	0	0
9706002000	악기류	0	0	0	0
9706009000	기타	0	0	0	0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02071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Y-8
02071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Y-8
02071300	- -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Y-8
02071410	- - - 날개	20	Y-8
02071420	- - - 넓적다리	20	Y-8
02071499	- - - - 기타	20	Y-8
040721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30	E
04072910	- - - 오리의 것	30	E
04072990	- - - 기타	30	E
0407901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30	E
04079020	- - 오리의 것	30	E
04079090	- - 기타	30	E
12079100	- - 양귀비씨	10	E
13021110	- - - 아편가루	5	E
13021190	- - - 기타	5	E
17011200	- - 사탕무당	15	E
17011300	- -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15	E
17011400	- - 그 밖의 사탕수수당	15	E
1701910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15	E
17019911	- - - - 백색	15	E
17019919	- - - - 기타	15	E
17019990	- - - 기타	15	E
19011030	- - 대두 가루의 것	20	Y-5
19019031	- - - 유지방대체 밀크(milk)	10	S-2
19019039	- - - 기타		
1901903990	- - - - 기타	10	S-2
19019041	- - - 가루 모양	20	S-2
19019049	- - - 그 밖의 모양	20	S-2
19019099	- - - 기타	15	S-2
21069061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액체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S-2
21069062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그 밖의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S-2
21069064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액체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S-2
21069065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그 밖의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S-2
22030010	- 스타우트(stout)나 포터(porter)	35	E
22030090	- 기타[에일(ale)을 포함한다]	35	E
2204100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50	E
2204211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E
22042113	- - - -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E
22042114	- - - -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23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E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2204212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E
22042122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E
2204291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E
22042913	- - - -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고 100 분의 23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E
22042914	- - - - 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23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E
2204292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0	E
22042922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0	E
2204301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	A
2204302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	A
2205101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	A
2205102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	A
2205901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	A
2205902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	A
22060010	- 사과술 또는 배술	55	A
22060020	- 사케	55	A
22060030	- 토디(toddy)	55	A
22060040	- 샌디(shandy)	55	A
22060091	- - 그 밖의 라이스 와인(rice wine)[약용 라이스 와인(rice wind)을 포함한다]	55	A
22060099	- - 기타	55	A
22082050	- - 브랜디(brandy)	48	E
22082090	- - 기타	48	E
22083000	- 위스키류	48	E
22084000	-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물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주정	48	E
22085000	- 진(gin)과 제네바(geneva)	48	E
22086000	- 보드카	48	E
2208700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48	E
22089010	- -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samsu)(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4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	E
22089020	- -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samsu)(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	E
22089030	- - 그 밖의 삼수(samsu)(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4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	E
22089040	- - 그 밖의 삼수(samsu)(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	E
22089050	- -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4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	E
22089060	- -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	E
22089070	- - 비터(bitters)와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57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	E
22089080	- - 비터(bitters)와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57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	E
22089090	- - 기타	48	E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23099013	- - - 새우용으로 적합한 것	0	Y-1
24011010	- - 버지니아(virginia) 종(황색종으로 한정한다)	30	E
24011020	- - 버지니아 종(황색종의 것은 제외한다)	30	E
24011040	- - 버어리(burley) 종	30	E
24011050	- - 기타(황색종으로 한정한다)	30	E
24011090	- - 기타	30	E
24012010	- - 버지니아(virginia) 종(황색종으로 한정한다)	30	E
24012020	- - 버지니아 종(황색종은 제외한다)	30	E
24012030	- - 오리엔트 종	30	E
24012040	- - 버어리(burley) 종	30	E
24012050	- - 기타(황색종으로 한정한다)	30	E
24012090	- - 기타	30	E
24013010	- - 담배 주맥(主脈)	15	E
24013090	- - 기타	30	E
24021000	- 시가(cigar)·셔루트(cheroot) 및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0	E
24022010	- - 실로 묶은 수제 담배	135	E
24022020	- - 정향 궐련	135	E
24022090	- - 기타	135	E
24029010	- - 시가(cigar)·셔루트(cheroot) 및 시가릴로(cigarillo)(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135	E
24029020	- - 궐련(담배 대용물의 것)	135	E
24031100	- -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30	E
24031911	- - - - 앙 훈(Ang Hoon)	50	E
24031919	- - - - 기타	30	E
24031920	- - - 그 밖의 제조한 담배(궐련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0	E
24031990	- - - 기타	30	E
2403911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50	E
24039190	- - - 기타	50	E
24039910	- - -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30	E
24039930	- - - 제조한 담배 대용물	30	E
24039940	- - - 코 담배(건조하지 않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50	E
24039950	- - - 씹는 담배와 빠는 담배	50	E
24039990	- - - 기타	50	E
25010010	- 식탁염	30	E
25010020	- 암염(岩鹽)	30	E
25010050	- 바닷물	15	E
25010090	- 기타	10	E
25232100	-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5	B-2
25232910	- - - 착색된 시멘트	35	B-2
25232990	- - - 기타	35	B-2
2523300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32	S-3
2523900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32	S-3
27090020	- 콘덴세이트(condensates)	0	Y-1
27090090	- 기타	0	Y-1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27101211	- - - - 알・오・엔 97 이상의 것[유연(有鉛)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B-2
27101212	- - - - 알・오・엔 97 이상의 것[무연(無鉛)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B-2
27101213	- - - - 알・오・엔 90 이상이고 알・오・엔 97 미만의 것[유연(有鉛)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B-2
27101214	- - - - 알・오・엔 90 이상이고 알・오・엔 97 미만의 것[무연(無鉛)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B-2
27101215	- - - - 기타[유연(有鉛)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B-2
27101216	- - - - 기타[무연(無鉛)의 것으로 한정한다]	12	B-2
27101220	- - - 항공휘발유(제트 연료유의 것은 제외한다)	12	B-2
27101230	- - - 테트라프로필렌(tetrapropylene)	12	B-2
27101240	- - - 백정	12	B-2
27101250	- - - 저 방향성 용제(방향성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0 분의 1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B-2
27101260	- - - 그 밖의 휘발성 유기 용제	12	B-2
27101270	- - - 나프타(개질휘발유와 자동차 연료 혼합용의 그 밖의 조제품으로 한정한다)	12	B-2
27101280	- - - 그 밖의 알파 올레핀	12	B-2
27101290	- - - 기타	12	B-2
271091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20	S-2
27109900	- - 기타	20	S-2
28151100	- - 고체	10	S-2
28151200	- -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20	S-2
29173200	-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10	Y-10
29173300	- -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10	Y-10
29173410	- - -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10	S-2
29173490	- - - 기타	10	S-2
29224100	- - 라이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0	Y-1
29224220	- - - 글루타민산나트륨(엠에스지)	20	S-2
29224290	- - - 그 밖의 염	20	S-2
29411011	- - - 처리하지 않은 것	10	Y-7
29411019	- - - 기타	10	Y-10
29411020	- - 암피실린과 그 염	5	Y-7
30041015	- - - 페니실린 G(페니실린 G 벤자신을 제외한다), 페녹시메틸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염을 함유한 것	5	Y-7
30041016	- - -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또는 이들의 염을 함유한 것(복용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8	S-2
30042031	- - - 복용용의 것	5	Y-10
30042032	- - - 연고 형태의 것	5	Y-7
30042071	- - - 복용용의 것이나 연고 형태의 것	5	Y-10
30069210	- - - 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나 그 밖의 난치병 치료용의 약품의 것	14	E
30069290	- - - 기타	14	E
31031010	- - 사료용	6	S-2
31031090	- - 기타	6	S-2
31039010	- - 하소(煆燒)한 인산비료	6	S-2
31051010	- - 과인산석회와 하소(煆燒)한 인산비료	6	S-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31051020	- -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 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S-2
31051090	- - 기타	0	Y-1
31052000	- 세가지 비료 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6	Y-10
32081090	- - 기타		
3208109090	- - - 기타	10	S-2
32082090	- - 기타		
3208209090	- - - 기타	10	S-2
32089029	- - - 기타	10	S-2
32089090	- - 기타		
3208909090	- - - 기타	10	S-2
32091010	-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3209101090	- - - 내열성(耐熱性)이 섭씨 100 도 이하인 것	10	S-2
32091090	- - 기타	20	S-2
32099000	- 기타		
3209900090	- - 기타	10	S-2
32100050	- 폴리우레탄 타르 코팅제	20	S-2
32100099	- - 기타	20	S-2
33030000	향수와 화장수	18	S-2
33041000	- 입술화장용 제품류	22	S-3
33042000	- 눈화장용 제품류	25	S-3
33043000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22	Y-10
33049100	- -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	Y-10
33049920	- - - 여드름 억제 크림	10	Y-10
33049930	- - - 그 밖의 얼굴이나 피부용 크림과 로션	20	Y-10
33049990	- - - 기타	20	Y-10
33052000	-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18	S-2
33059000	- 기타	20	Y-10
33071000	- 면도용 제품류	22	S-3
3307300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20	Y-10
34011110	- - - 약용 제품	20	S-2
34011120	- - - 목욕용 비누	20	Y-10
34011130	- - - 기타(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펠트(felt) 또는 부직포의 것으로 한정한다)	20	Y-10
34011190	- - - 기타	20	S-2
34011910	- - -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펠트(felt)나 부직포의 것	25	S-3
34011990	- - - 기타	25	S-3
3401300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	S-3
34031919	- - - - 기타	17	S-2
34039919	- - - - 기타	20	S-2
34039990	- - - 기타	10	S-2
35069100	- -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14	S-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35069900	- - 기타	14	S-2
38251000	- 생활폐기물	20	E
38252000	- 하수 찌꺼기	20	E
38253010	- - 주사기・바늘・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20	E
38253090	- - 기타	20	E
38254100	-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20	E
38254900	- - 기타	20	E
3825500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20	E
3903204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10	S-2
3903304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8	S-2
39033060	- - 알갱이	3	Y-10
39041010	- - 단일폴리머(서스펜션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5	B-2
39041091	- - - 알갱이	10	Y-10
39042110	- - - 알갱이	8	Y-10
39042120	- - - 가루	7	Y-10
39042220	- - - 알갱이	8	Y-10
39051200	- - 물에 분산된 것	5	Y-5
39052100	- - 물에 분산된 것	10	S-2
39059910	- - - 물에 분산된 것	10	S-2
39061010	- - 분산액인 것	5	Y-10
39069020	- - 분산액인 것		
3906902010	- - - 물에 분산된 것	5	S-2
39174000	- 연결구류	15	S-2
39181011	- - - 타일	27	S-3
39181019	- - - 기타	27	S-3
39181090	- - 기타	27	S-3
39189011	- - - 타일(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7	S-3
39189013	- - - 기타(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7	S-3
39189014	-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27	S-3
39189019	- - - 기타	27	S-3
39189091	- - -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	27	S-3
39189092	-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27	S-3
39189099	- - - 기타	27	S-3
39191020	- -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		
3919102090	- - - 기타	12	S-2
39191090	- - 기타	12	S-2
39202010	- - 이축연신 폴리프로필렌(BOPP) 필름	5	Y-10
39202090	- - 기타		
3920209090	- - - 기타	7	S-2
39204300	- -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3920430090	- - - 기타	7	S-2
39221010	- - 목욕통	25	S-3
39221090	- - 기타	25	S-3
39222000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25	S-3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39229011	- - - 수세식 양변기의 부분품	25	S-3
39229012	- - - 수세식 양변기(이들의 메커니즘이 갖춰진 것으로 한정한다)	25	S-3
39229019	- - - 기타	25	S-3
39229090	- - 기타	25	S-3
3924100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27	S-3
39249010	- - 변기・소변기(휴대용)나 요강	27	S-3
39249090	- - 기타	27	S-3
39251000	-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5	S-3
392520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27	S-3
39253000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27	S-3
39259000	- 기타	20	S-2
39263000	- 가구・차체(coachwork)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20	S-2
4011100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25	B-2
40112010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25	B-2
40112090	- - 기타	10	Y-10
40114000	- 모터사이클용	35	S-3
40115000	- 자전거용	35	S-3
40119930	- - - 기타(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S-2
40119990	- - - 기타	10	S-2
4013101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30	B-2
40131019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10	B-2
4013102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30	B-2
40131029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10	B-2
40132000	- 자전거용	35	S-3
40139019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5	S-2
40139020	- - 모터사이클용	35	S-3
40139099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10	S-2
40161010	- - 의류 또는 의류 부속용 패딩	20	S-2
40161020	- - 바닥 타일과 벽 타일	20	S-2
40161090	- - 기타	20	Y-10
40169913	- - - - 틈마개용 재료(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10	B-2
40169914	- - - - 기타(제 8702 호・제 8703 호・제 8704 호, 제 8705 호나 제 8711 호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10	B-2
48010010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55 그램 이하인 것	20	Y-10
48010090	- 기타	20	B-2
48021000	-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20	B-2
48025490	- - - 기타	20	B-2
4802552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펠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 한 것 또는 작은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20	B-2
48025550	- - - 이형지의 원지	5	B-2
48025590	- - - 기타	20	B-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4802562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펠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 한 것 또는 작은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25	B-2
48025690	- - - 기타	20	B-2
48025790	- - - 기타	20	S-2
48025821	-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이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이고 다른 변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인 것	20	B-2
48025829	- - - - 기타	20	B-2
48025890	- - - 기타	20	B-2
4802613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펠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 한 것 또는 작은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20	B-2
48026190	- - - 기타	20	S-2
4802621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펠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 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하며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의 것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이고 다른 변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B-2
48026220	- - - 그 밖의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펠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 한 것 또는 작은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20	B-2
48026900	- - 기타		
4802690090	- - - 기타	20	S-2
48042190	- - - 기타	17	Y-10
48044190	- - - 기타	20	B-2
48052510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미만인 것	10	S-2
48052590	- - - 기타	10	Y-5
48142000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또는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25	S-3
48149000	- 기타	20	S-2
48191000	-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5	S-2
48192000	-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15	S-2
48211010	- - 보석용 라벨(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개인용품을 포함한다)	20	S-2
48211090	- - 기타	20	S-2
48219010	- - 보석용 라벨(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개인용품을 포함한다)	20	S-2
48219090	- - 기타	20	S-2
520812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Y-10
52081900	- - 그 밖의 직물	12	Y-3
52083900	- - 그 밖의 직물	12	Y-3
52085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12	Y-5
52085290	- - - 기타	12	Y-10
52092900	- - 그 밖의직물	12	S-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52094200	- - 데님(denim)	12	Y-10
52094900	- - 그 밖의직물	12	Y-3
52103900	- - 그 밖의직물	12	Y-5
52104100	- - 평직물(平織物)	12	Y-5
52111100	- - 평직물(平織物)	12	Y-5
52111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2	Y-10
52121300	- - 염색한 것	12	Y-3
54071090	- - 기타	12	Y-3
551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2	Y-3
55121900	- - 기타	12	Y-10
55129900	- - 기타	12	Y-3
55131900	- - 그 밖의 직물	12	Y-3
55151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12	Y-10
55151900	- - 기타	12	Y-3
55161200	- - 염색한 것	12	Y-3
560392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12	Y-10
560394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12	Y-3
5801909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12	Y-5
58019099	- - - 기타	12	S-2
5804109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12	Y-5
58041099	- - - 기타	12	S-2
60019100	- - 면으로 만든 것	12	S-2
60019991	- - - - 탄성사나 고무실을 함유한 것	12	Y-5
60019999	- - - - 기타	12	Y-3
60029000	- 기타	12	Y-3
6309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100	A
63101010	- -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50	B-2
63101090	- - 기타	50	B-2
63109010	- -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50	B-2
63109090	- - 기타	50	B-2
6406200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30	Y-5
68109100	-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35	S-3
6911100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35	E
69119000	- 기타	35	E
691200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35	S-3
70031220	- - - 기타[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것(1 ・ 2 ・ 3 이나 4 코너를 자른 것을 포함한다)]	40	S-3
70031290	- - - 기타	40	S-3
70031990	- - - 기타	40	S-3
70032000	-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40	S-3
70033000	- 프로파일(profile)	40	S-3
70042090	- - 기타	40	S-3
70049090	- - 기타	40	S-3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70051090	- - 기타	30	S-3
70052190	- - - 기타	40	S-3
70052990	- - - 기타	40	S-3
70053000	- 망입(網入) 유리	25	S-3
70060090	- 기타	30	S-3
70071110	- - - 제 87 류의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15	Y-10
70072110	- - - 제 87 류의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15	S-2
7008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25	S-3
70091000	-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15	Y-10
70099100	- - 틀이 붙지 않은 것	25	S-3
70099200	- - 틀이 붙은 것	30	S-3
70131000	- 유리 도자제의 것	35	E
701322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30	S-3
70132800	- - 기타	35	E
701333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30	S-3
70133700	- - 기타	35	E
701341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30	S-3
70134200	- -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로 만든 것	35	E
70134900	- - 기타	35	E
70139900	- - 기타	35	E
70161000	-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25	S-3
70169000	- 기타	45	S-3
70181000	-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 또는 반귀석과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30	S-3
70189000	- 기타		
7018900090	- - 기타	30	S-3
70200030	- 보온병이나 그 밖의 진공용기용 유리로 만든 내부 용기	40	Y-5
720711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	S-2
72071210	- - - 슬래브	0	Y-1
72071290	- - - 기타	7	S-2
72072029	- - - - 기타	7	S-2
72072099	- - - - 기타	7	S-2
72083600	-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Y-1
720854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Y-1
720915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7	S-2
72091600	- -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7	E
72091700	-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7	E
72091810	- - - 석도강판	0	Y-1
7209189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7	E
72091899	- - - - 기타	7	E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720925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7	B-2
72092600	- -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7	B-2
72092700	-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7	B-2
720928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7	B-2
72092890	- - - 기타	7	B-2
72099010	- - 물결 모양의 것	7	S-2
72099090	- - 기타	7	S-2
721011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5	B-2
72101190	- - - 기타	5	B-2
721012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5	E
72101290	- - - 기타	5	E
72103011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B-2
72103012	-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S-2
72103019	- - - 기타	5	Y-10
72103091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B-2
72103099	- - - 기타	5	Y-10
7210411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B-2
72104112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B-2
72104119	- - - - 기타	10	B-2
7210419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B-2
72104199	- - - - 기타	10	B-2
72104911	- - - - 철 아연 합금 코팅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Y-1
72104912	- - - - 기타(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B-2
72104913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B-2
72104919	- - - - 기타	10	B-2
7210499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B-2
72104999	- - - - 기타	10	B-2
7210611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B-2
72106112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B-2
72106119	- - - - 기타	10	B-2
7210619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B-2
72106199	- - - - 기타	10	B-2
7210691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S-2
72106912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S-2
72106919	- - - - 기타	10	S-2
72106991	- - - -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S-2
72106999	- - - - 기타	10	S-2
72111411	-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Y-1
72111412	- - - - 물결모양의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0	Y-1
72111419	- - - - 기타	0	Y-1
72111421	-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Y-1
72111422	- - - - 물결모양의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0	Y-1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72111429	- - - - 기타	0	Y-1
72111911	-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Y-1
72111912	- - - - 물결모양의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5	S-2
72111919	- - - - 기타	0	Y-1
72111921	-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Y-1
72111922	- - - - 물결모양의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5	S-2
72111923	- - - - 기타(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Y-1
72111929	- - - - 기타	0	Y-1
72131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7213100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50 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B-2
72139110	- - - 납땜 스틱 제조용의 것	5	Y-7
72139120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10	B-2
72139910	- - - 납땜 스틱 제조용의 것	5	S-2
72139920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10	B-2
72141011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Y-1
72141019	- - - 기타	0	Y-1
72141021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Y-1
72141029	- - - 기타	0	Y-1
7214203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15	B-2
72142039	- - - - 기타	0	Y-1
7214204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15	B-2
72142049	- - - - 기타	0	Y-1
7214205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15	B-2
72142059	- - - - 기타	0	Y-1
7214206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15	B-2
72142069	- - - - 기타	0	Y-1
721499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횡단면이 원형인 것은 제외한다)	0	Y-1
72149990	- - - 기타	0	Y-1
72155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횡단면이 원형인 것은 제외한다)	0	Y-1
72155091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15	E
72155099	- - - 기타	0	Y-1
72159010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15	B-2
72159090	- - 기타	0	Y-1
72161000	-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B-2
72162100	- - 엘(L)형강	10	B-2
72163100	- - 유(U)형강	10	B-2
72163200	- - 아이(I)형강	10	B-2
72163300	- - 에이치(H)형강	10	B-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72164000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B-2
72165010	- -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B-2
72165090	- - 기타	10	B-2
721661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10	B-2
72166900	- - 기타	10	B-2
721691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10	B-2
72169900	- - 기타	10	B-2
72171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15	B-2
72172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10	B-2
72173011	- -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10	S-2
72173019	- - - 기타	10	S-2
73063090	- - 기타		
7306309090	- - - 기타	10	B-2
730830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10	S-2
73089050	- - 선박용 레일	10	S-2
73089099	- - - 기타		
7308909990	- - - - 기타	10	S-2
731511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	35	S-3
731519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의 것	30	S-3
731589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	30	S-3
73159020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의 것	30	S-3
73181200	-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7318120090	- - - 기타	10	S-2
73181400	-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7318140090	- - - 기타	10	S-2
73181500	-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10	Y-7
73181600	- - 너트(nut)		
7318160090	- - - 기타	10	S-2
73181900	- - 기타	10	Y-7
73211100	-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15	B-2
73219010	- - 등유 스토브의 것	10	Y-7
73219020	- - 가스 연료를 이용한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의 것	10	B-2
73219090	- - 기타	10	Y-10
73242110	- - - 긴 욕조	35	S-3
73242190	- - - 기타	35	S-3
73242900	- - 기타	35	S-3
73269070	- - 편자, 승마구두 스퍼(spurs)	15	S-2
73269099	- - - 기타		
7326909990	- - - - 기타	15	S-2
74081110	-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4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10	Y-10
74081190	- - - 기타	5	Y-10
76061190	- - - 기타	0	Y-1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2032000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20	S-2
821300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25	S-3
82142000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25	Y-10
82152000	-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25	Y-5
83011000	- 자물쇠	25	B-2
83012000	-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25	S-3
83014090	- - 기타	25	S-3
83016000	- 부분품	25	S-3
83021000	- 경첩	20	Y-7
83022010	- - 지름(타이어를 포함한다)이 100 밀리미터 초과하고 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S-2
83022090	- - 기타	20	S-2
83024131	- - - - 잠금쇠	20	S-2
83024139	- - - - 기타	20	S-2
83024190	- - - 기타	20	S-2
83024910	- - - 마구용으로 적합한 것	20	Y-5
83024991	- - - - 잠금쇠	20	Y-10
83024999	- - - - 기타	20	S-2
83026000	- 자동도어 폐지기	17	S-2
8303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및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문서용 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25	B-2
83081000	- 훅(hook)·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27	B-2
83082000	-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20	S-2
83113020	- - 카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4.5 이상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합금강의 선	0	Y-1
83113090	- - 기타	25	B-2
84072110	- - - 출력이 22.38 킬로와트(30hp) 이하인 것	25	B-2
84073100	- -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50	E
84073211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30	S-3
84073212	-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45	S-3
84073219	- - - - 기타	30	S-3
84073221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30	S-3
84073222	-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45	E
84073229	- - - - 기타	30	S-3
84073310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25	S-3
84073320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32	E
84073390	- - - 기타	20	E
84073440	- - - - 보행운전형 트랙터로 실린더 용량이 1,100 시시 이하인 것	25	S-3
84073450	- - - - 제 8701 호의 그밖의 차량용	25	S-3
84073460	-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32	E
84073471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것	20	E
84073472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것	20	E
84073473	-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20	E
84073491	- - - - 보행운전형 트랙터로 실린더 용량이 1,100 시시 이하인 것	25	S-3
84073492	- - - - 제 8701 호의 그밖의 차량용	25	S-3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4073493	-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32	E
84073494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것	18	E
84073495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것	18	E
84073499	- - - - -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18	E
84081010	- - 출력이 22.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0	B-2
84082022	- - - -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3,500 시시 이하인 것	20	Y-3
84082023	- - - - 실린더 용량이 3,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5	Y-3
84082093	- - - 소호 제 8701.10 호의 차량용	25	Y-7
84082094	- - - -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것	20	B-2
8408209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3,500 시시 이하인 것	20	B-2
84082096	- - - - 실린더 용량이 3,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15	Y-7
8409913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27	B-2
8409913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27	B-2
84099134	- - - - 실린더 라이너	27	B-2
8409913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27	B-2
84099137	- - - - 피스톤	27	B-2
84099138	- - - - 피스톤 링과 피스톤핀	27	B-2
84099139	- - - - 기타	27	B-2
8409914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10	Y-7
8409914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10	Y-7
8409914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것으로 한정한다)	10	B-2
84099144	- - - - 그밖의 실린더 라이너	10	B-2
8409914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10	Y-7
84099146	- - - - 피스톤(외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B-2
84099147	- - - - 그밖의 피스톤	10	Y-7
84099148	- - - - 피스톤 링과 피스톤핀	10	B-2
84099149	- - - - 기타	10	Y-10
8409917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10	B-2
84099172	- - - - 실린더 블록	10	B-2
8409917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것으로 한정한다)	10	B-2
84099174	- - - - 그밖의 실린더 라이너	10	B-2
8409917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10	B-2
84099176	- - - - 피스톤(외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B-2
84099177	- - - - 그밖의 피스톤	10	B-2
84099178	- - - - 피스톤 링과 피스톤핀	10	B-2
84099179	- - - - 기타	10	B-2
8409993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15	B-2
8409993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15	B-2
84099933	- - - - 실린더 라이너	15	B-2
84099934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15	B-2
84099935	- - - - 피스톤	15	B-2
84099936	- - - - 피스톤 링과 피스톤핀	15	Y-7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4099939	- - - - 기타	15	B-2
8409994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10	B-2
8409994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10	B-2
8409994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것으로 한정한다)	10	Y-7
84099944	- - - - 그밖의 실린더 라이너	10	B-2
8409994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10	B-2
84099946	- - - - 피스톤(외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B-2
84099947	- - - - 그밖의 피스톤	10	B-2
84099948	- - - - 피스톤 링과 피스톤핀	10	B-2
84099949	- - - - 기타	10	B-2
8409997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10	S-2
84099972	- - - - 실린더 블록	10	S-2
8409997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것으로 한정한다)	10	S-2
84099974	- - - - 그밖의 실린더 라이너	10	Y-7
8409997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10	S-2
84099976	- - - - 피스톤(외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S-2
84099977	- - - - 그밖의 피스톤	10	S-2
84099978	- - - - 피스톤 링과 피스톤핀	10	S-2
84099979	- - - - 기타	10	S-2
84132010	- - 워터펌프	20	S-2
84132090	- - 기타	20	S-2
84136030	- - 워터펌프(유속이 8,000 m3/h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4136030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10	B-2
84137011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20	B-2
84137019	- - - 기타	20	B-2
84137031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S-2
84137039	- - - 기타	10	S-2
84137041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S-2
84137049	- - - 기타	10	B-2
84137051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S-2
84137059	- - - 기타	10	Y-10
84138111	- - 워터펌프(유속이 8,000 m3/h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413811110	- - - - 전기 작동식의 것	10	B-2
84139110	- - - 소호 제 8413.20.10 호의 펌프의 것	5	S-2
84139120	- - - 소호 제 8413.20.90 호의 펌프의 것	5	S-2
84139130	- - - 소호 제 8413.70.11 호와 제 8413.70.19 호의 펌프의 것	5	S-2
84139140	- - - 그밖의 원심펌프의 것	5	Y-10
84142010	- - 자전거 펌프	20	S-2
84142090	- - 기타	20	S-2
84143020	- - 자동차용 공기 조절기용	5	B-2
84143030	- - 기타(공기조절기용 실드 유닛으로 한정한다)	0	Y-1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4143040	- - 기타(냉장고 용량이 21.10 킬로와트 초과나 220 시시 이상의 회전당 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Y-1
84143090	- - 기타	0	Y-1
84145110	- - - 테이블 팬과 박스 팬	30	B-2
84145191	- - - - 보호용 차폐가 있는 것	25	B-2
84145199	- - - - 기타	25	B-2
8414902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제품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팬용	5	S-2
84149029	- - - 기타	17	S-2
84151010	- - 출력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30	Y-10
84152010	- - 출력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B-2
84152090	- - 기타	17	B-2
84158111	- - - - 출력이 21.1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Y-1
84158121	- - - - 출력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B-2
84158131	- - - - 출력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B-2
84158191	- - - - 출력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각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m3 를 초과하는 것		
8415819110	- - - - - 출력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17	B-2
84158193	- - - - - 출력이 21.10 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B-2
84158194	- - - - - 출력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B-2
84158221	- - - - 출력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B-2
84158231	- - - - 출력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B-2
84158291	- - - - 출력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B-2
84158311	- - - - 출력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각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m3 를 초과하는 것	0	Y-1
84158319	- - - - 기타	0	Y-1
84158321	- - - - 출력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S-3
84158329	- - - - 기타	17	S-2
84158331	- - - - 출력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S-3
84158339	- - - - 기타	17	S-2
84158391	- - - - 출력이 26.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25	S-3
84158399	- - - - 기타	17	S-2
84181010	- - 가정형	25	Y-10
84182100	- - 압축식	25	Y-10
84182900	- - 기타	35	B-2
84183010	- - 용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20	S-2
84183090	- - 기타	20	S-2
84184010	- - 용량이 200 리터 이하인 것	20	S-2
84184090	- - 기타	20	S-2
84185019	- - - 기타	12	S-2
84185099	- - - 기타	20	S-2
84211200	- - 의류탈수기	18	S-2
84213120	- - - 제 87 류의 자동차용의 것	10	S-2
84221100	- - 가정형의 것	20	Y-1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4501110	- - -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 킬로그램 이하인 것	25	S-3
84501190	- - - 기타	25	Y-10
84501200	- -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25	S-3
84501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25	S-3
84501990	- - - 기타	25	S-3
84502000	- 기계(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25	Y-10
84512100	- -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15	S-2
84521000	- 가정형 재봉기	25	B-2
84529011	- - - 요람(amrs and beds), 중심 프레임 부착여부에 상관없는 스탠드, 플라이 휠, 벨트 가드, 발판이나 페달	25	S-3
84529019	- - - 기타	25	S-3
84818051	- - - 플라스틱으로 되고 내부지름 1 센티미터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의 것	20	B-2
84818059	- - - 기타	20	B-2
84818061	- - - - 내부 지름이 5 센티미터 초과 40 센티미터 이하인 수동으로 작동하는 게이트 벨브	15	B-2
84818062	- - - - 기타	15	B-2
84818063	- - - 기타	15	B-2
84831024	- - - 제 8711 호의 차량용	20	Y-5
84831090	- - 기타	20	B-2
84839014	- - - 제 8711 호의 물품용	10	Y-5
84839015	- - - 제 87 류의 그밖의 물품용	5	Y-5
84839094	- - - 제 8711 호의 물품용	10	Y-5
84839095	- - - 제 87 류의 그밖의 물품용	5	Y-7
8501102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3	Y-5
85011029	- - - - 기타	25	Y-10
8501105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3	S-2
85011059	- - - - 기타	25	S-3
85011060	- - - 스핀들 모터	10	Y-7
85011091	-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3	Y-5
85011099	- - - - 기타	25	S-3
85012012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3	Y-7
85012019	- - - 기타	20	Y-7
8501202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3	Y-7
85012029	- - - 기타	20	Y-10
85013130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에 사용되는 모터	3	S-2
85013140	- - - 그 밖의 모터	20	S-2
85013150	- - - 발전기	20	S-2
8501401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3	B-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5014019	- - - 기타	20	B-2
8501402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3	B-2
85014029	- - - 기타	20	B-2
85016110	- - - 출력이 12.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20	B-2
85016120	- - - 출력이 12.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20	B-2
85021100	-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15	B-2
85022010	-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20	B-2
85042110	- - - 선로전압조정장치(자동 변환기), 용량이 5 킬로암페어 이하인 계기용 변압기	20	S-2
85042192	- - - - 용량이 10 킬로암페어를 초과하고 고압전력이 110 킬로볼트 이상인 것	5	S-2
85042193	- - - - 용량이 10 킬로암페어를 초과하고 고압전력이 66 킬로볼트 이상 110 킬로볼트 미만인 것	20	S-2
85042199	- - - - 기타	15	Y-10
85042211	- - - - 고압전력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것	25	S-3
85042219	- - - - 기타	25	S-3
85042292	- - - - 고압전력이 110 킬로볼트 이상인 것	5	Y-5
85042293	- - - - 고압전력이 66 킬로볼트 이상 110 킬로볼트 미만인 것	25	S-3
85042299	- - - - 기타	15	S-2
85043111	- - - - 전압이 110 킬로볼트 이상인 것	5	S-2
85043112	- - - - 전압이 66 킬로볼트 이상 110 킬로볼트 미만인 것	15	S-2
85043113	- - - - 전압이 1 킬로볼트 이상 66 킬로볼트 미만인 것	15	S-2
85043119	- - - - 기타	20	S-2
85043121	- - - - - 전압이 220 킬로볼트 이하인 전선용 변류기	5	S-2
85043122	- - - - - 기타	5	S-2
85043123	- - - - 전력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110 킬로볼트 미만인 것	15	S-2
85043124	- - - - 전압이 1 킬로볼트 이상 66 킬로볼트 미만인 것	15	S-2
85043129	- - - - 기타	20	S-2
85043140	- - - 중간 주파 변압기	5	Y-7
85043191	- - - - 장난감, 축소 모형 또는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20	S-2
85043192	- - - - 그밖의 매칭 변압기	20	S-2
85043199	- - - - 기타	20	S-2
85043211	- - - - 매칭 변압기	10	S-2
85043219	- - - - 기타	10	S-2
85043220	- - - 기타(장난감, 축소 모형이나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으로 한정한다)	20	S-2
85043241	- - - - 매칭 변압기	10	S-2
85043249	- - - - 기타	10	S-2
85043251	- - - - 매칭 변압기	10	S-2
85043259	- - - - 기타	10	S-2
85043311	- - - - 매칭 변압기	20	B-2
85043319	- - - - 기타	10	B-2
85043391	- - - - 매칭 변압기	10	B-2
85043399	- - - - 기타	10	B-2
85043411	- - - - - 매칭 변압기	10	S-2
85043412	- - - - - 기타	10	S-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5043413	- - - - - 매칭 변압기	10	S-2
85043414	- - - - - 기타	10	S-2
85043422	- - - - - 매칭 변압기	10	S-2
85043423	- - - - - 기타	10	S-2
85043424	- - - - - 매칭 변압기	10	S-2
85043429	- - - - - 기타	10	S-2
85061010	- - 외부 용적이 300 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25	B-2
85063000	-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20	S-2
85064000	- 산화은으로 만든 것	20	S-2
85065000	- 리튬으로 만든 것	20	S-2
85066010	- - 외부 용적이 300 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20	S-2
85068010	- - 아연 탄소(외부 용적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	B-2
85068091	- - - 외부 용적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25	B-2
85071092	- - - - 높이가 13 센티미터 이하인 것(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	25	Y-10
85071093	- - - - 기타	25	Y-10
85071094	- - - - 높이가 13 센티미터 이하인 것(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	20	Y-10
85071099	- - - - 기타	20	Y-10
85072091	- - - - 높이가 13 센티미터 초과 23 센티미터 이하인 것(터미널과 핸들을 제외한다)	25	Y-10
85072092	- - - - 기타	25	B-2
85072093	- - - - 높이가 13 센티미터 초과 23 센티미터 이하인 것(터미널과 핸들을 제외한다)	20	B-2
85072099	- - - - 기타	20	Y-10
85073090	- - 기타	20	S-2
85074090	- - 기타	20	S-2
85081100	- -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25	B-2
85081910	- - - 가정용으로 적합한 것	25	B-2
8509400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25	Y-5
85098010	- - 바닥광택기	25	S-3
85098090	- - 기타	25	B-2
85122020	- - 조립되지 않은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25	B-2
85122091	- - - 모터사이클용	25	B-2
85122099	- - - 기타	25	B-2
85161010	- -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20	B-2
85161030	- - 투입식 가열기	20	S-2
85162100	-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25	S-3
85162900	- - 기타	25	S-3
85163100	- - 헤어드라이어	25	S-3
85163200	- - 그 밖의 이용기기	25	S-3
85163300	- - 손 건조기	25	S-3
85164010	- - 상업용 스팀 다리미	20	Y-10
85164090	- - 기타	25	Y-10
851650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25	Y-10
85166010	- - 밥솥	20	Y-10
85166090	- - 기타	20	B-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5167100	- - 커피 또는 차를 끓이는 기기	25	Y-7
85167200	- - 토스터	25	Y-10
85167910	- - - 주전자	20	Y-10
85167990	- - - 기타	20	Y-7
85168030	- - 가정용 기기용	20	S-2
85169021	- - - 가정용 기기의 봉인된 전열판	3	S-2
85176292	-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10	Y-5
85184020	- - 유선전화 중계기	10	Y-10
85184030	- - 유선전화를 제외한 전화중계기	5	Y-5
85184040	- - 기타(입력 신호라인을 6 개 이상 가진 증폭기로서, 용량 증폭기의 구성요소의 유무는 상관없다)	10	Y-10
85184090	- - 기타	20	Y-5
85185010	- - 240 와트 이상의 동력을 가진것	10	Y-10
85185020	- - 기타[확성기를 가진 것으로 방송용에 적합한 것(전압이 50 볼트 이상 1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Y-5
85185090	- - 기타	20	Y-10
85192010	- -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25	S-3
85192020	- - 기타	25	B-2
8519300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25	S-3
85198110	- - - 포켓 사이즈형 카세트 레코더(치수가 170 밀리미터 x 100 밀리미터 x 4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25	S-3
85198120	- - - 카세트 레코더(증폭기가 장착되어 있고, 하나 이상의 확성기가 있는 것으로 외부전원으로만 작동하는 것)	25	S-3
85198130	- - -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30	B-2
8519814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10	B-2
85198149	- - - - 기타	25	B-2
85198169	- - - - 기타	25	S-3
85198179	- - - - 기타	25	B-2
85198199	- - - - 기타	20	S-2
85198911	- - - - 필름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인 것	10	B-2
85198912	- - - - 필름 폭이 16 밀리미터 이상인 것	10	B-2
85198920	- - - 레코드 플레이어(확성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25	S-3
85198990	- - - 기타	20	Y-5
85211090	- - 기타	30	S-3
85219019	- - - 기타	35	Y-10
85219099	- - - 기타	35	Y-5
85258010	- - 웹 카메라	15	Y-10
85258040	- - 텔레비전 카메라	5	Y-10
85271200	-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30	B-2
85271310	- - - 휴대용	30	B-2
85271390	- - - 기타	30	B-2
85271911	- - - - 휴대용	30	S-3
85271919	- - - - 기타	30	S-3
85271991	- - - - 휴대용	30	S-3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5271999	- - - - 기타	30	S-3
85272100	- -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25	Y-5
85272900	- - 기타	25	Y-10
85279110	- - - 휴대용	30	S-3
85279190	- - - 기타	30	S-3
85279210	- - - 휴대용	30	S-3
85279291	- - - - 주 작동식의 것	30	S-3
85279299	- - - - 기타	30	S-3
85279910	- - - 휴대용	30	S-3
85279991	- - - - 주 작동식의 것	30	S-3
85279999	- - - - 기타	30	S-3
85284910	- - - 천연색	12	Y-5
85285910	- - - 천연색	12	Y-10
85286990	- - - 기타	5	Y-3
85287191	- - - - 주 작동식의 것	35	S-3
85287199	- - - - 기타	25	S-3
85287210	- - - 배터리 작동식의 것	35	B-2
85287291	- - - - 음극선 방식	35	B-2
85287292	- - -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 발광다이오드(엘이디)와 그 밖의 평판디스플레이 방식	35	Y-10
85287299	- - - - 기타	35	B-2
85287300	- - 기타(단색)	25	Y-5
85291021	- - - 텔레비전 수신용	10	S-2
85291029	- - - 기타	10	Y-5
85291030	-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수신기용 망원경· 실내 소형 안테나 및 쌍극 안테나	15	Y-5
85291040	- - 안테나 필터와 분리기	10	Y-5
85361011	- - - 전자팬에 사용하는 것	25	S-3
85361012	- - - 기타(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25	S-3
85361013	- - - 차량용 퓨즈 블록	25	S-3
85361019	- - - 기타	25	S-3
85361091	- - - 전자팬에 사용하는 것	25	B-2
85361092	- - - 기타(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25	B-2
85361093	- - - 차량용 퓨즈 블록	25	B-2
85361099	- - - 기타	25	B-2
85362011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15	S-2
85362012	- - - 전류가 16 암페어 이상, 32 암페어 이하인 것	15	S-2
85362013	- - - 전류가 32 암페어 이상, 1,000 암페어 이하인 것	10	Y-10
85362019	- - - 기타	5	S-2
85362020	- - 제 8516 호의 전기가열식 가정용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	20	S-2
85362091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15	S-2
85362099	- - - 기타	15	S-2
85363020	- - 라디오 장치나 전자팬에 사용되는 것	25	S-3
85363090	- - 기타	15	S-2
85364110	- - - 디지털 계전기	3	Y-5
85364120	- - - 무선장비용	10	S-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5364130	- - - 전기 팬에 사용되는 것	10	S-2
85364140	- - - 기타(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10	S-2
85364190	- - - 기타	10	S-2
85364910	- - - 디지털 계전기	3	B-2
85364990	- - - 기타	10	Y-10
85365032	- - - 전기팬이나 라디오 장비에 적합한 것	15	Y-5
85365033	- - - 기타(정격 전류 용량이 16 암페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5	Y-5
85365039	- - - 기타	15	Y-5
85365040	- - 밥솥 또는 토스터 오븐용 미니어쳐 계폐기	15	Y-5
85365061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15	Y-5
85365069	- - - 기타	15	Y-5
85365092	- - - 전기팬에 적합한 것	15	Y-5
85365095	- - - 기타(전기 모터나 퓨즈 스위치용 시동기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Y-5
85365099	- - - 기타	10	Y-10
85366911	-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25	S-3
85366919	- - - - 기타	25	S-3
85366922	-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15	S-2
85366929	- - - - 기타	15	S-2
85366992	-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25	S-3
85366999	- - - - 기타	25	S-3
85369022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20	S-2
85369029	- - - 기타	20	S-2
85369032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20	S-2
85369039	- - - 기타	20	S-2
85369093	- - - - 전화기 패치패널	15	S-2
85369094	- - - - 기타	25	S-3
85369099	- - - 기타	20	S-2
85391010	- - 제 87 류 차량용	20	S-2
85392130	- - - 차량용	20	S-2
85392290	- - - 기타	25	S-3
85392920	- - - 차량용	25	S-3
85392950	- - - 기타(전력이 200 와트를 초과하고 300 와트 이하이며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25	S-3
85393110	- - - 소형 형광등 튜브	25	S-3
85393190	- - - 기타	25	S-3
85441110	- - - 래커나 에나멜로 외부 코팅한 것	15	Y-10
85441120	- - - 종이, 섬유 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로 외부가 도포된 것	15	S-2
85441190	- - - 기타	10	S-2
8544201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10	S-2
85442019	- - - 기타	10	S-2
8544202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10	S-2
85442029	- - - 기타	10	S-2
85443012	- - - -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 차량용	20	S-2
85443013	- - - - 기타	20	S-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5443014	- - - -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 차량용	20	S-2
85443019	- - - - 기타	20	S-2
85444212	- - - - 전화기, 전신과 전파 중계 케이블(기타)	3	Y-5
85444232	- - - - -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 차량용	15	S-2
85444233	- - - - - 기타	15	S-2
85444234	- - - - - 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 차량용	15	S-2
85444239	- - - - - 기타	15	S-2
85444291	-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전기 케이블(코어지름이 19.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Y-10
85444292	- - - - 그 밖의 전기 케이블(플라스틱으로 절연된 것)	15	S-2
85444299	- - - -기타	10	S-2
85444921	- - - -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의 제조에 쓰이는 차폐된 선	10	S-2
85444922	- -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전기 케이블(코어지름이 19.5 밀리미터 이하인 것)	15	S-2
85444923	- - - - - 그 밖의 전기 케이블(플라스틱으로 절연된 것)	15	Y-10
85444929	- - - - - 기타	10	S-2
85444932	- - - - 기타(플라스틱으로 절연된 것)	10	E
85444939	- - - - 기타	10	E
85444941	-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케이블	10	E
85444949	- - - - 기타	10	E
87011011	- - - 농업용	30	B-2
87011019	- - - 기타	30	B-2
87011091	- - - 농업용	10	S-2
87011099	- - - 기타	10	S-2
8702106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70	E
87021081	- - - - 총중량이 6 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70	E
87021089	- - - - 기타	70	E
87021090	- - - 기타	70	E
87029092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70	E
87029094	- - - - 기타	70	E
87029095	- - - 그 밖의 모터코치, 버스나 미니버스	70	E
87029099	- - - 기타	70	E
87031010	- - 골프용 차(골프 버기를 포함한다)	78	E
87031090	- - 기타	78	E
87032110	- - - 고카트(Go-carts)	78	E
87032124	- - - - - 사륜구동 방식	78	E
87032129	- - - - - 기타	78	E
87032191	- - - - 구급차	15	E
87032192	- - - - 모터홈(moter-homes)	78	E
87032199	- - - - 기타	78	E
87032219	- - - - 기타	78	E
87032292	- - - - 모터홈(moter-homes)	78	E
87032299	- - - - 기타	78	E
87032340	- - - 모터홈(moter-homes)	74	E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7032361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 이하인 것	78	E
87032362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78	E
87032363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78	E
87032364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74	E
87032391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 이하인 것	78	E
87032392	- - - - 실린더용량이 1,800 시시를 초과하고 2,000 시시 이하인 것	78	E
87032393	- - - - 실린더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78	E
87032394	- - - -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74	E
87032451	- - - - 사륜구동 방식	68	Y-10
87032459	- - - - 기타	74	E
87032470	- - - 모터홈(moter-homes)	74	E
87032491	- - - - 사륜구동 방식	68	E
87032499	- - - - 기타	74	E
87033120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스포츠형 다목적자동차(SUV)와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기타	78	E
87033150	- - - 모터홈(moter-homes)	78	E
87033191	- - - - 사륜구동 방식	78	E
87033199	- - - - 기타	78	E
87033252	- - - - - 사륜구동 방식	78	E
87033253	- - - - - 기타	78	E
87033254	- - - - - 사륜구동 방식	78	E
87033259	- - - - - 기타	78	E
87033260	- - - 모터홈(moter-homes)	78	E
87033292	- - - - - 사륜구동 방식	78	E
87033293	- - - - - 기타	78	E
87033294	- - - - - 사륜구동 방식	78	E
87033299	- - - - - 기타	78	E
87033353	- - - - - 사륜구동 방식	78	E
87033354	- - - - - 기타	78	E
87033355	- - - - - 사륜구동 방식	78	E
87033359	- - - - - 기타	78	E
87033370	- - - 모터홈(moter-homes)	78	E
87033391	- - - - 사륜구동 방식	78	E
87033399	- - - - 기타	78	E
87039012	- - - 고카트(Go-carts)	78	E
87039019	- - - - 기타	78	E
87039070	-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스포츠형 다목적자동차(SUV)와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기타	78	E
87039090	- - - 기타	78	E
87041023	- - -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65	E
87041024	- - -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고 10 톤 이하인 것	50	E
87041025	- - - 총중량이 10 톤을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30	E
87041026	- - -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고 24 톤 이하인 것	20	E
87041027	- - - 총중량이 24 톤을 초과하고 45 톤 이하인 것	10	E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7041028	- - - 총중량이 45 톤을 초과하는 것	0	Y-1
87042121	- - - - 냉장차(트럭)	15	E
87042122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7042123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15	E
87042124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15	E
87042125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15	E
87042129	- - - - 기타	68	E
87042221	- - - - - 냉장차(트럭)	15	S-2
8704222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S-2
8704222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15	S-2
8704222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15	E
8704222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15	E
87042229	- - - - - 기타	50	E
87042241	- - - - - 냉장차(트럭)	15	S-2
8704224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704224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15	E
8704224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15	E
8704224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15	E
87042251	- - - - - - 총중량이 6 톤을 초과하고 10 톤 이하인 것	50	E
87042259	- - - - - - 기타	30	Y-10
87042321	- - - - - 냉장차(트럭)	15	E
8704232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704232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15	E
8704232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15	E
8704232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15	E
87042329	- - - - - 기타	20	E
87042361	- - - - - 냉장차(트럭)	15	E
8704236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704236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15	E
8704236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15	E
8704236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15	E
87042366	- - - - - 덤프차	10	E
87042369	- - - - - 기타	15	E
87042381	- - - - - 냉장차(트럭)	0	Y-1
8704238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Y-1
8704238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0	Y-1
8704238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0	Y-1
8704238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0	Y-1
87042386	- - - - - 덤프차	0	Y-1
87042389	- - - - - 기타	0	Y-1
87043121	- - - - 냉장차(트럭)	15	E
87043122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7043123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15	E
87043124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15	E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7043125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15	E
87043129	- - - - 기타	68	E
87043221	- - - - - 냉장차(트럭)	15	E
8704322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704322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15	E
8704322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15	E
8704322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15	E
87043229	- - - - - 기타	50	E
87043241	- - - - - 냉장차(트럭)	15	E
8704324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704324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15	S-2
8704324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15	E
8704324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15	E
87043246	- - - - - - 총중량이 6 톤을 초과하고 10 톤 이하인 것	50	E
87043249	- - - - - - 기타	30	E
87043261	- - - - - 냉장차(트럭)	15	E
8704326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704326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15	E
8704326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15	E
8704326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15	E
87043269	- - - - - 기타	20	E
87043281	- - - - - 냉장차(트럭)	15	E
8704328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5	E
8704328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15	E
8704328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15	E
8704328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15	E
87043286	- - - - - 덤프차	10	E
87043289	- - - - - 기타	15	E
87043293	- - - - - 냉장차(트럭)	0	Y-1
87043294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Y-1
87043295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0	Y-1
87043296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0	Y-1
87043297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0	Y-1
87043298	- - - - - 덤프차	0	Y-1
87043299	- - - - - 기타	0	Y-1
87049091	- - -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68	E
87049092	- - -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고 10 톤 이하인 것	50	E
87049093	- - - 총중량이 10 톤을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30	E
87049094	- - -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고 45 톤 이하인 것	15	E
87049099	- - - 기타	0	Y-1
87060021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용의 것	30	E
87060029	- - 기타	30	E
87060031	- - 고카트(go-carts)와 골프차용(골프버기를 포함한다)	32	E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7060032	- - 구급차용	32	E
87060033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스포츠형 다목적자동차(SUV)와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용	32	E
87060039	- - 기타	32	E
87060040	- 제 8704 호의 차량용	30	E
87060050	- 제 8705 호의 차량용	10	E
87071010	- - 고카트(go-carts)와 골프차용(골프버기를 포함한다)	32	E
87071020	- - 구급차용	32	E
87071090	- - 기타	32	E
87079021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용의 것	27	E
87079029	- - - 기타	27	E
87079030	- - 제 8705 호의 차량용	10	E
87079090	- - 기타	27	E
87081090	- - 기타	20	S-2
87082912	-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15	B-2
87082914	- - - - 제 8702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15	B-2
87082919	- - - - 기타	15	B-2
87082920	- - - 안전벨트 부분품	20	B-2
87082993	- - - - - 인테리어트림 연결구류, 흙받기	15	Y-10
87082994	- - - - - 후드 로드	15	B-2
87082995	- - - - - 기타	15	B-2
87082996	- - - - - 인테리어트림 연결구류, 흙받기	15	B-2
87082997	- - - - - 후드 로드	15	B-2
87082998	- - - - - 기타	15	Y-10
87082999	- - - - 기타	15	Y-10
87083021	- - -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 디스크나 브레이크 파이프	20	S-2
87083029	- - - 기타	20	S-2
87083030	- - 브레이크 드럼・브레이크 디스크나 브레이크 파이프(제 8702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10	S-2
87083090	- - 기타	10	S-2
87084011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18	E
87084013	- - -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10	E
87084019	- - - 기타	10	E
87084026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20	Y-15
87084027	- - -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15	Y-15
87084029	- - - 기타	15	Y-15
87084091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10	S-2
87084092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10	S-2
87084099	- - - 기타	10	S-2
87085011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20	S-2
87085013	- - -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7	S-2
87085019	- - - 기타	10	Y-10
87085026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20	S-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7085027	- - -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10	Y-10
87085029	- - - 기타	10	S-2
87085093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10	S-2
87087016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15	Y-10
87087019	- - - 기타	20	B-2
87087022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25	S-3
87087029	- - - 기타	25	Y-5
87087032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20	S-2
87087039	- - - 기타	20	S-2
87087097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20	S-2
87087099	- - - 기타	20	S-2
87088016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20	S-2
87088017	- - - 소호 제 8704.10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7	Y-10
87088019	- - - 기타	7	Y-10
87088091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10	S-2
87088092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10	S-2
87088099	- - - 기타	5	S-2
87089116	-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20	S-2
87089117	- - - - 제 8702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10	Y-10
87089119	- - - - 기타	10	Y-10
87089191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10	Y-5
87089192	-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10	S-2
87089199	- - - - 기타	10	S-2
87089220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20	E
87089240	- - - 제 8702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8708924010	- - - - 소음기와 배기파이프(직류 소음기를 포함한다)	15	E
8708924090	- - - - 부분품	15	S-2
87089290	- - - 기타		
8708929010	- - - - 소음기와 배기파이프(직류 소음기를 포함한다)	15	E
8708929090	- - - - 부분품	15	S-2
87089360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20	S-2
87089370	- - -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차량용	10	Y-10
87089390	- - - 기타	10	S-2
87089410	- - - 에어백 어셈블리를 갖춘 운전대	20	S-2
87089495	-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25	S-3
87089499	- - - - 기타	15	Y-10
87089510	- -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10	Y-10
87089590	- - - 부분품	10	Y-10
87089910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15	Y-10
87089921	- - - - - 연료 탱크	15	Y-10
87089923	- - - - - 부분품	15	S-2
87089930	- - - - 가속기・ 브레이크나 클러치 페달	15	S-2
87089940	- - - - 배터리 캐리어나 트레이와 그들의 브래킷	15	S-2
87089950	- - - - 방열기 보호판(shroud)	15	S-2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7089961	- - - - - 제 8702 호의 차량용	15	S-2
87089962	- - - - - 제 8703 호의 차량용	17	S-2
87089963	- - - - - 제 8704 호의 차량용	10	S-2
87089970	- - - - 기타	15	Y-10
87089990	- - - 기타	15	S-2
87111012	- - -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75	E
87111013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과 모터스쿠터	75	E
87111019	- - - 기타	75	E
87111092	- - -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75	E
87111093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과 모터스쿠터	75	E
87111099	- - - 기타	75	E
87112010	- -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	75	E
87112020	- -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75	E
87112031	- - - - 실린더용량이 150 시시를 초과하고 200 시시 이하인 것	75	E
87112032	- - - - 실린더용량이 20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75	E
87112039	- - - - 기타	75	E
87112045	- - - - 실린더용량이 200 시시 이하인 것	75	E
87112049	- - - - 기타	75	E
87112051	- - - - 실린더용량이 150 시시를 초과하고 200 시시 이하인 것	75	E
87112052	- - - - 실린더용량이 20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75	E
87112059	- - - - 기타	75	E
87112090	- - - 기타	75	E
87113010	- -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	75	E
87113030	- - 기타(완전분해식 형태의 것)	75	E
87113090	- - 기타	75	E
87114010	- -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	75	E
87114020	- - 기타(완전분해식 형태의 것)	75	E
87114090	- - 기타	75	E
8711502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75	A
87115090	- - 기타	55	A
87119040	- - 사이드카	75	E
87119051	- - - 전기구동식의 모터사이클	70	E
87119052	- - - 기타(실린더용량이 200 시시 이하인 것)	70	E
87119053	- - - 기타(실린더용량이 200 시시를 초과하고 500 시시 이하인 것)	70	E
87119054	- - - 기타(실린더 용량이 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70	E
87119091	- - - 전기구동식의 모터사이클	65	E
87119099	- - - 기타	65	E
87120020	- 어린이용 자전거	45	E
87120030	- 그 밖의 자전거	45	E
87120090	- 기타	45	E
87141010	- - 안장	35	S-3
87141020	- - 스포크와 니플(spokes and nipples)	32	B-2
87141090	- - 기타	32	B-2
871491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45	S-3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양허유형
87149191	- - - - 포크(forks)용 부분품	40	B-2
87149199	- - - - 기타	40	B-2
871492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45	S-3
87149290	- - - 기타	40	B-2
871493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45	S-3
87149390	- - - 기타	45	Y-7
871494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45	S-3
87149490	- - - 기타	40	B-2
871495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45	S-3
87149590	- - - 기타	45	S-3
87149610	- - - 소호 제 8712.00.20 호의 자전거용	45	S-3
87149690	- - - 기타	45	S-3
87149911	- - - - 핸들 바(bars)・필라(pillars)・흙받기・반사경・캐리어・컨트롤케이블・램프 브래킷이나 브래킷용 러그, 그 밖의 부속품	45	S-3
87149912	- - - - 체인 휠과 크랭크, 그 밖의 부분품	45	S-3
87149991	- - - - 핸들 바(bars)・필라(pillars)・흙받기・반사경・캐리어・컨트롤케이블・램프 브래킷이나 브래킷용 러그, 그 밖의 부속품	45	Y-7
87149992	- - - - 체인 휠과 크랭크, 그 밖의 부분품	45	Y-7
89020021	- - 총톤수 26 톤이하인 것	10	S-2
89020022	- - 총톤수 26 톤을 초과하고 40 톤 미만의 것	10	S-2
89020023	- - 총톤수 40 톤 이상이고 250 톤 이하인 것		
8902002310	- - - 총톤수 40 톤 이상이고 101 톤 이하인 것	10	S-2
89020091	- - 총톤수 26 톤이하인 것	10	S-2
89020092	- - 총톤수 26 톤을 초과하고 40 톤 미만의 것	10	S-2
89020093	- - 총톤수 40 톤 이상이고 250 톤 이하인 것		
8902009310	- - - 총톤수 40 톤 이상이고 101 톤 이하인 것	10	S-2
94031000	-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20	S-2
94037090	- - 기타	20	S-2
94060011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5	S-2
94060019	- - 기타	15	S-2
94060092	- - 목재로 만든 것	15	S-2
94060094	- - 철강으로 만든 것	15	Y-10
94060095	- -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15	S-2
94060096	- - 콘크리트나 인조석으로 만든 것	15	S-2
94060099	- - 기타	15	Y-10
96061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25	Y-5
96061090	- - 기타	25	Y-10
960621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25	S-3
960622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25	S-3
96071100	-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20	S-2
96071900	- - 기타	20	Y-10
96162000	- 화장용 분첩과 패드	25	Y-10
96170010	-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	30	S-3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1012100	- - 번식용	0	0	0	0
01012900	- - 기타	0	0	0	0
01013010	- - 번식용	0	0	0	0
01013090	- - 기타	0	0	0	0
01019000	- 기타	0	0	0	0
01022100	- - 번식용	0	0	0	0
01022910	- - - 숫소(황소를 포함한다)	0	0	0	0
01022990	- - - 기타	0	0	0	0
01023100	- - 번식용	0	0	0	0
01023900	- - 기타	0	0	0	0
01029010	- - 번식용	0	0	0	0
01029090	- - 기타	0	0	0	0
01031000	- 번식용	0	0	0	0
01039100	- -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0	0	0	0
01039200	- -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	0	0
01041010	- - 번식용	0	0	0	0
01041090	- - 기타	0	0	0	0
01042010	- - 번식용	0	0	0	0
01042090	- - 기타	0	0	0	0
01051110	- - - 번식용 닭	0	0	0	0
01051190	- - - 기타	0	0	0	0
01051210	- - - 번식용 칠면조	0	0	0	0
01051290	- - - 기타	0	0	0	0
01051310	- - - 번식용 오리 새끼	0	0	0	0
01051390	- - - 기타	0	0	0	0
01051410	- - - 번식용 거위 새끼	0	0	0	0
01051490	- - - 기타	0	0	0	0
01051510	- - - 번식용 기니아새	0	0	0	0
01051590	- - - 기타	0	0	0	0
01059410	- - - 번식용 닭(싸움닭은 제외한다)	0	0	0	0
01059440	- - - 싸움닭	0	0	0	0
01059491	- - - - 중량이 2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01059499	- - - - 기타	0	0	0	0
01059910	- - - 번식용 오리	0	0	0	0
01059920	- - - 그 밖의 오리	0	0	0	0
01059930	- - - 번식용 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0	0	0	0
01059940	- - - 그 밖의 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0	0	0	0
01061100	- - 영장류	0	0	0	0
01061200	-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물), 물개・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01061300	-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0	0	0	0
01061400	- - 토끼	0	0	0	0
01061900	- - 기타	0	0	0	0
01062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0	0	0	0
01063100	- - 맹금류	0	0	0	0
01063200	- -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0	0	0	0
01063300	- - 타조,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0	0	0	0
01063900	- - 기타	0	0	0	0
01064100	- - 벌	0	0	0	0
01064900	- - 기타	0	0	0	0
01069000	- 기타	0	0	0	0
0201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	0
0201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	0
02013000	- 뼈 없는 것	0	0	0	0
0202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	0
0202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	0
02023000	- 뼈 없는 것	0	0	0	0
02031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	0
02031200	-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31900	- - 기타	0	0	0	0
0203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	0
02032200	-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32900	- - 기타	0	0	0	0
02041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4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	0
020422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	0
02042300	- - 뼈 없는 것	0	0	0	0
02043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44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0	0	0	0
020442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0	0	0	0
02044300	- - 뼈 없는 것	0	0	0	0
02045000	- 산양의 고기	0	0	0	0
02050000	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61000	-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62100	- - 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2062200	- - 간	0	0	0	0
02062900	- - 기타	0	0	0	0
02063000	-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64100	- - 간	0	0	0	0
02064900	- - 기타	0	0	0	0
02068000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69000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1430	- - - 간	0	0	0	0
02071491	- - - - 기계로 뼈를 발라내거나 분리한 육	0	0	0	0
020724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25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02072600	- -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2710	- - - 간	0	0	0	0
02072791	- - - - 기계로 뼈를 발라내거나 분리한 육	0	0	0	0
02072799	- - - - 기타	5	0	0	0
02074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4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4300	-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4400	-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4500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5100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5200	-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5300	-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5400	-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5500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076000	- 기니아새의 것	0	0	0	0
02081000	- 토끼의 것	0	0	0	0
02083000	- 영장류의 것	0	0	0	0
02084010	- -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0	0	0	0
02084090	- - 기타	0	0	0	0
02085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0	0	0	0
02086000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0	0	0	0
02089010	- - 개구리 다리	0	0	0	0
02089090	- - 기타	0	0	0	0
02091000	- 돼지의 것	0	0	0	0
02099000	- 기타	0	0	0	0
02101100	-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2101200	-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0	0	0	0
02101930	- - - 베이컨이나 뼈 없는 햄	0	0	0	0
02101990	- - - 기타	0	0	0	0
02102000	- 쇠고기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2109100	- - 영장류의 것	0	0	0	0
02109210	- - -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0	0	0	0
02109290	- - - 기타	0	0	0	0
02109300	-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0	0	0	0
02109910	- - - 냉동건조한 치킨 다이스(dice)	0	0	0	0
02109920	- - - 건조한 돼지 껍질	0	0	0	0
02109990	- - - 기타	0	0	0	0
03011110	- - - 치어	0	0	0	0
03011191	- - - - 비단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0	0	0	0
03011192	- - - -금붕어[카라시우스 아우라투스(Carassius auratus)]	0	0	0	0
03011193	- - - - 삼투어[베타 스플렌덴스(Beta splendens)]	0	0	0	0
03011194	- - - -오스카[아스토노투스 오셀라투스(Astonotus ocellatus)]	0	0	0	0
03011195	- - - - 아로와나[스클레로파게스 포르모수스(Scleropages formosus)]	0	0	0	0
03011199	- - - - 기타	0	0	0	0
03011910	- - - 치어	0	0	0	0
03011990	- - - 기타	0	0	0	0
030191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	0
03019200	- -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0	0	0	0
03019310	- - - 번식용(치어를 제외한다)	0	0	0	0
03019390	- - - 기타	0	0	0	0
030194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	0	0	0
030195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	0	0	0
03019911	- - - - 번식용	0	0	0	0
03019919	- - - - 기타	0	0	0	0
03019921	- - - - 번식용	0	0	0	0
03019929	- - - - 기타	0	0	0	0
03019931	- - - - 밀크피쉬(번식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03019939	- - - - 기타	0	0	0	0
03019940	- - - 기타(민물 어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30211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	0
030213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 (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 (Oncorhynchus rhodurus)]				
03021400	-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Hucho hucho)]	0	0	0	0
03021900	- - 기타	0	0	0	0
03022100	-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0	0	0	0
03022200	-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0	0	0	0
03022300	- - 서대[솔레아(Solea)종]	0	0	0	0
03022400	- -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0	0	0	0
03022900	- - 기타	0	0	0	0
030231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0	0	0	0
030232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0	0	0	0
03023300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0	0	0	0
030234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0	0	0	0
030235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	0	0	0
030236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	0	0	0
03023900	- - 기타	0	0	0	0
03024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	0	0	0	0
030242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0	0	0	0
030243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0	0	0	0
03024400	-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0	0	0	0
03024500	-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0	0	0	0
03024600	-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0	0	0	0
030247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0	0	0
03025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0	0	0
030252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	0
030253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	0	0	0
030254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255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0	0	0
030256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0	0	0	0
03025900	- - 기타	0	0	0	0
03027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	0	0	0
03027210	- - - 노랑꼬리 메기[판가시우스 판가시우스(Pangasius pangasius)]	0	0	0	0
03027290	- - - 기타	0	0	0	0
03027310	- - - 줄무늬 잉어[시리누스 시로서스(Cirrhinus cirrhosus)]	0	0	0	0
03027390	- - - 기타	0	0	0	0
03027400	- -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0	0	0	0
03027900	- - 기타	0	0	0	0
030281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	0	0	0
030282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0	0	0	0
030283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0	0	0
03028400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0	0	0	0
03028500	- - 돔[스파리대(Sparidae)과]	0	0	0	0
03028912	- - - - 긴 지느러미 게레치[펜타프리온 롱기마누스(Pentaprion longimanus)]	0	0	0	0
03028913	- - - - 황매퉁이[트라치노세팔루스 미오프스(Trachinocephalus myops)]	0	0	0	0
03028914	- - - - 리본피시[랩투라칸투스 사발라(Lepturacanthus savala)]・등갈민태[죠니우스 밸랑게리(Johnius belangerii)・황금리브민어[크리소치르 아우레우스(Chrysochir aureus)] 및 대안이석태[팬나히아 아네아(Pennahia anea)]	0	0	0	0
03028915	- - - - 줄무늬고등어[라스트렐리거 카나구르타(Rastrelliger kanagurta)]와 아일랜드고등어[라스트렐리거 파우니(Rastrelliger faughni)]	0	0	0	0
03028916	- - - - 고등가라지[메갈라스피스 코르딜라(Megalaspis cordyla)], 얼룩활치[디프란 펑타타(Drepane punctata)]와 큰꼬치고기[스피레나 바라쿠다(Sphyraena barracuda)]	0	0	0	0
03028917	- - - - 은병어[팜푸스 아르겐테우스(Pampus argenteus)와 흑병어[파라스트로마투스 니게르(Parastromatus niger)]	0	0	0	0
03028918	- - - - 맹그로브 홍돔[루트야누스 아르겐티마쿨라투스(Lutjanus argentimaculatus)]	0	0	0	0
03028919	- - - - 기타	0	0	0	0
03028922	- - - - 로후 [라베오 로히타(Labeo rohita)], 카틀라[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와 스왐프 바브[펀티우스 촐라(Puntius chola)]	0	0	0	0
03028924	- - - - 스네이크스킨 구라미[트리코가스터 팩토랄리스(Trichogaster pectoralis)]	0	0	0	0
03028926	- - - - 줄무늬 날가지숭어[폴리네무스 인디쿠스(Polynemus indicus)와 별도랑벤자리[포마다시스 아르겐테우스(Pomadasys argenteus)]	0	0	0	0
03028927	- - - - 힐사 샤드[테누아로사 일리샤(Tenualosa ilisha)]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28928	- - - - 왈라고메기[왈라고 아투(Wallago attu)]와 자이언트 리버 메기[스페라타 싱갈라(Sperata seenghala)]	0	0	0	0
03028929	- - - - 기타	0	0	0	0
03029000	- 간과 어란(魚卵)	0	0	0	0
03031100	-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	0	0	0	0
03031200	- -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 (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0	0	0	0
03031300	-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Hucho hucho)]	0	0	0	0
030314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 (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	0
03031900	- - 기타	0	0	0	0
030323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	0	0	0
030324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0	0	0	0
03032500	- -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0	0	0	0
03032600	- -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0	0	0	0
03032900	- - 기타	0	0	0	0
03033100	-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0	0	0	0
03033200	- -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0	0	0	0
03033300	- - 서대[솔레아(Solea)종]	0	0	0	0
03033400	- -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0	0	0	0
03033900	- - 기타	0	0	0	0
030341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0	0	0	0
030342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5	5	5	0
03034300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5	5	5	0
030344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0	0	0	0
030345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030346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0	0	0	0
03034900	- - 기타	5	5	5	0
03035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0	0	0
030353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0	0	0	0
03035400	-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5	0	0	0
03035500	-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0	0	0	0
03035600	-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0	0	0	0
030357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5	5	5	0
030363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0	0	0
030364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	0
030365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	0	0	0
030366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0	0	0	0
030367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0	0	0
030368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0	0	0	0
03036900	- - 기타	0	0	0	0
030381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0	0	0	0
030382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0	0	0	0
030383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0	0	0
03038400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0	0	0	0
03038912	- - - - 긴 지느러미 게레치[펜타프리온 롱기마누스(Pentaprion longimanus)]	0	0	0	0
03038913	- - - - 황매퉁이[트라치노세팔루스 미오프스(Trachinocephalus myops)]	0	0	0	0
03038914	- - - - 리본피쉬[랩투라칸투스 사발라(Lepturacanthus savala)]・등갈민태[죠니우스 밸랑게리(Johnius belangerii)・황금리브민어[크리소치르 아우레우스(Chrysochir aureus)] 및 대안이석태[팬나히아 아네아(Pennahia anea)]	0	0	0	0
03038915	- - - - 줄무늬고등어[라스트렐리거 카나구르타(Rastrelliger kanagurta)]와 아일랜드고등어[라스트렐리거 파우니(Rastrelliger faughni)]	0	0	0	0
03038916	- - - - 고등가라지[메갈라스피스 코르딜라(Megalaspis cordyla)], 얼룩활치[디프란 펑타타(Drepane punctata)]와 큰꼬치고기[스피레나 바라쿠다(Sphyraena barracuda)]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38917	- - - - 은병어[팜푸스 아르겐테우스(Pampus argenteus)와 흑병어[파라스트로마투스 니게르(Parastromatus niger)]	0	0	0	0
03038918	- - - - 맹그로브 홍돔[루트야누스 아르겐티마쿨라투스(Lutjanus argentimaculatus)]	0	0	0	0
03038919	- - - - 기타	5	5	5	0
03038922	- - - - 로후 [라베오 로히타(Labeo rohita)], 카틀라[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와 스왐프 바브[펀티우스 촐라(Puntius chola)]	0	0	0	0
03038924	- - - - 스네이크스킨 구라미[트리코가스터 팩토랄리스(Trichogaster pectoralis)]	0	0	0	0
03038926	- - - - 줄무늬 날가지숭어[폴리네무스 인디쿠스(Polynemus indicus)와 별도랑벤자리[포마다시스 아르겐테우스(Pomadasys argenteus)]	0	0	0	0
03038927	- - - - 힐사 샤드[테누아로사 일리샤(Tenualosa ilisha)]	0	0	0	0
03038928	- - - - 왈라고메기[왈라고 아투(Wallago attu)]와 자이언트 리버 메기[스페라타 싱갈라(Sperata seenghala)]	0	0	0	0
03038929	- - - - 기타	0	0	0	0
03039010	- - 간	0	0	0	0
03039020	- - 어란(魚卵)	0	0	0	0
03043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	0	0	0
030432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0	0	0	0
030433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	0	0	0
03043900	- - 기타	0	0	0	0
030441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0	0	0
030442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	0
03044300	-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0	0	0	0
030444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445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0	0	0
030446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0	0	0
03044900	- - 기타	0	0	0	0
03045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0	0	0	0
03045200	- - 연어과	0	0	0	0
030453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0	0	0	0
030454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0	0	0
030455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0	0	0
03045900	- - 기타	0	0	0	0
03046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0	0	0	0
030462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0	0	0	0
030463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0	0	0	0
03046900	- - 기타	0	0	0	0
03047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0	0	0
030472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0	0	0	0
030473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0	0	0	0
030474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0	0	0	0
030475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0	0	0
03047900	- - 기타	0	0	0	0
030481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0	0	0
030482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48300	-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0	0	0	0
030484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0	0	0
030485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0	0	0
030486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0	0	0
03048700	-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5	5	5	0
03048900	- - 기타	0	0	0	0
030491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0	0	0	0
030492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0	0	0	0
030493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0	0	0	0
030494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	0	0	0
030495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0	0	0	0
03049900	- - 기타	0	0	0	0
03051000	-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3052010	- - 그 밖의 민물어류의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3052090	- - 기타	0	0	0	0
03053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030532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0	0	0	0
03053910	- - - 민물 동갈치[세넨토돈 칸실라(Xenentodon cancila)]・범꼬리 촉수[유페네우스 비타투스(Upeneus vittatus)] 및 턱전갱이[울루아 멘테일스(Ulua mentalis)]	0	0	0	0
03053920	- - - 리본피쉬[랩투라칸투스 사발라(Lepturacanthus savala)]・등갈민태[죠니우스 밸랑게리(Johnius belangerii)・황금리브민어[크리소치르 아우레우스(Chrysochir aureus)] 및 대안이석태[팬나히아 아네아(Pennahia anea)]	0	0	0	0
03053990	- - - 기타	0	0	0	0
030541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0	0	0	0
030542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0	0	0	0
030543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	0	0	0
030544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0	0	0	0
03054900	- - 기타	0	0	0	0
03055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0	0	0
03055920	- - - 해수어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55990	- - - 기타	0	0	0	0
03056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 (Clupea pallasii)]	0	0	0	0
030562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0	0	0	0
030563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0	0	0	0
030564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 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 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 (Channa)종]	0	0	0	0
03056910	- - - 해수어	0	0	0	0
03056990	- - - 기타	0	0	0	0
03057100	- - 상어 지느러미	0	0	0	0
03057210	- - - 어류의 위	0	0	0	0
03057290	- - - 기타	0	0	0	0
03057900	- - 기타	0	0	0	0
03061100	-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 자수스(Jasus)종]	0	0	0	0
03061200	-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0	0	0	0
03061410	- - - 딱지가 연한 게(soft shell crabs)	0	0	0	0
03061490	- - - 기타	0	0	0	0
030615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	0	0	0
03061600	-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 (Crangon crangon)]	0	0	0	0
03061710	- - - 홍다리 얼룩새우(Penaeus monodon)	0	0	0	0
03061720	- - - 흰다리새우(Liptopenaeus vannamei)	0	0	0	0
03061730	- - - 담수산 새우(Macrobrachium rosenbergii)	0	0	0	0
03061790	- - - 기타	0	0	0	0
03061900	- -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3062110	- - - 번식용	0	0	0	0
03062120	- - - 기타(살아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306213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621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2199	- - - - 기타	0	0	0	0
03062210	- - - 번식용	0	0	0	0
03062220	- - - 기타(살아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306223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622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2299	- - - - 기타	0	0	0	0
030624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624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624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2499	- - - - 기타	0	0	0	0
030625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0	0	0	0
03062610	- - - 번식용	0	0	0	0
03062620	- - - 기타(살아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306263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6264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2649	- - - - 기타	0	0	0	0
030626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2699	- - - - 기타	0	0	0	0
03062711	- - - - 홍다리 얼룩새우(Penaeus monodon)	0	0	0	0
03062712	- - - - 흰다리새우(Liptopenaeus vannamei)	0	0	0	0
03062719	- - - - 기타	0	0	0	0
03062721	- - - - 홍다리 얼룩새우(Penaeus monodon)	0	0	0	0
03062722	- - - - 흰다리새우(Liptopenaeus vannamei)	0	0	0	0
03062729	- - - - 기타	0	0	0	0
03062731	- - - - 홍다리 얼룩새우(Penaeus monodon)	0	0	0	0
03062732	- - - - 흰다리새우(Liptopenaeus vannamei)	0	0	0	0
03062739	- - - - 기타	0	0	0	0
0306274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2749	- - - - 기타	0	0	0	0
030627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2799	- - - - 기타	0	0	0	0
030629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629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62930	- - -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0	0	0	0
030629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03062999	- - - - 기타	0	0	0	0
030711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71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71910	- - - 냉동한 것	0	0	0	0
03071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71930	- - - 훈제한 것	0	0	0	0
030721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72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72910	- - - 냉동한 것	0	0	0	0
03072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	0	0	0	0
030731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73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73910	- - - 냉동한 것	0	0	0	0
03073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	0	0	0	0
030741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74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74910	- - - 냉동한 것	5	5	5	0
03074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74930	- - - 훈제한 것	0	0	0	0
030751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75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75910	- - - 냉동한 것	0	0	0	0
03075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75930	- - - 훈제한 것	0	0	0	0
03076010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76020	- -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0	0	0	0
03076030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	0	0	0	0
030771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77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77910	- - - 냉동한 것	0	0	0	0
03077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	0	0	0	0
030781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78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78910	- - - 냉동한 것	0	0	0	0
03078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	0	0	0	0
030791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79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79910	- - - 냉동한 것	0	0	0	0
03079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	0	0	0	0
03079990	- - - 기타	0	0	0	0
030811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81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81910	- - - 냉동한 것	0	0	0	0
03081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81930	- - - 훈제한 것	0	0	0	0
03082110	-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82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82910	- - - 냉동한 것	0	0	0	0
03082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82930	- - - 훈제한 것	0	0	0	0
03083010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83020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83030	- - 냉동한 것	0	0	0	0
03083040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3083050	- - 훈제한 것	0	0	0	0
03089010	- - 살아 있는 것	0	0	0	0
03089020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	0	0	0
03089030	- - 냉동한 것	0	0	0	0
03089040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0	0	0	0
03089050	- - 훈제한 것	0	0	0	0
03089090	- - 기타	0	0	0	0
04011010	- - 액체 상태의 것	0	0	0	0
04011090	- - 기타	0	0	0	0
04012010	- - 액체 상태의 것	0	0	0	0
04012090	- - 기타	0	0	0	0
04014010	- - 액체 상태의 밀크	0	0	0	0
04014020	- - 냉동한 밀크	0	0	0	0
04014090	- - 기타	0	0	0	0
04015010	- - 액체 상태의 것	0	0	0	0
04015090	- - 기타	0	0	0	0
04021041	- - - 총중량이 20 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0	0	0	0
04021049	- - - 기타	0	0	0	0
04021091	- - - 총중량이 20 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0	0	0	0
04021099	- - - 기타	0	0	0	0
04022120	- - - 총중량이 20 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5	5	5	0
04022190	- - - 기타	0	0	0	0
04022920	- - - 총중량이 20 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5	0	0	0
04022990	- - - 기타	0	0	0	0
0402910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	0	0	0
04029900	- - 기타	0	0	0	0
04031020	- - 액체 상태의 것(농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04031090	- - 기타	0	0	0	0
04039010	- - 버터밀크	0	0	0	0
04039090	- - 기타	0	0	0	0
0404100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04049000	- 기타	0	0	0	0
04051000	- 버터	0	0	0	0
04052000	-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	0	0	0
04059010	- - 탈수 유지방	0	0	0	0
04059020	- - 버터오일	0	0	0	0
04059030	- - 버터기름	0	0	0	0
04059090	- - 기타	0	0	0	0
04061010	-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	0	0	0	0
04061020	- - 커드(curd)	0	0	0	0
04062010	- - 총중량이 20 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4062090	- - 기타	0	0	0	0
04063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0406400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0	0	0	0
04069000	- 그 밖의 치즈	0	0	0	0
040711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	0	0	0
04071910	- - - 오리의 것	0	0	0	0
04071990	- - - 기타	0	0	0	0
04081100	- - 건조한 것	0	0	0	0
04081900	- - 기타	0	0	0	0
04089100	- - 건조한 것	0	0	0	0
04089900	- - 기타	0	0	0	0
04090000	천연꿀	0	0	0	0
04100010	- 조류의 둥지	0	0	0	0
04100090	- 기타	0	0	0	0
0501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 웨이스트(waste)	0	0	0	0
05021000	- 돼지털・멧돼지털 또는 오소리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05029000	- 기타	0	0	0	0
050400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 및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이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5051010	- - 오리 깃털	0	0	0	0
05051090	- - 기타	0	0	0	0
05059010	- - 오리 깃털	0	0	0	0
05059090	- - 기타	0	0	0	0
05061000	-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5069000	- 기타	0	0	0	0
05071010	- - 서각, 아이보리(ib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	0	0	0
05071090	- - 기타	0	0	0	0
05079010	- - 뿔(horn)・사슴뿔・발굽・발톱과 부리	0	0	0	0
05079020	- - 귀갑(龜甲)	0	0	0	0
05079090	- - 기타	0	0	0	0
05080010	-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05080020	-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	0	0	0	0
05080090	- 기타	0	0	0	0
05100010	- 캔대리디즈(Cantharides)	0	0	0	0
05100020	- 사향	0	0	0	0
05100090	- 기타	0	0	0	0
05111000	- 소의 정액	0	0	0	0
05119100	- -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05119910	- - - 판매용 동물의 정액	0	0	0	0
05119920	- - - 잠종(蠶種)	0	0	0	0
05119930	- - - 해면 스펀지	0	0	0	0
05119990	- - - 기타	0	0	0	0
0601100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 및 근경(根莖)	0	0	0	0
06012010	- - 치커리(chicory)	0	0	0	0
06012020	- - 치커리(chicory) 뿌리	0	0	0	0
06012090	- - 기타	0	0	0	0
06021010	- - 난의 것	0	0	0	0
06021020	- - 고무나무의 것	0	0	0	0
06021090	- - 기타	0	0	0	0
06022000	-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06023000	-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06024000	-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06029010	- - 뿌리가 있는 꺾꽂이용 난과 접붙임용 난	0	0	0	0
06029020	- - 난의 묘목	0	0	0	0
06029040	- - 히비어 속의 발아시킨 그루터기	0	0	0	0
06029050	- - 히비어 속의 묘목	0	0	0	0
06029060	- - 히비어 속의 눈접용 접가지	0	0	0	0
06029070	- - 진퍼리꽃나무	0	0	0	0
06029090	- - 기타	0	0	0	0
06031100	- - 장미	0	0	0	0
06031200	- - 카네이션	0	0	0	0
06031300	- - 난	0	0	0	0
06031400	- - 국화	0	0	0	0
06031500	- - 백합[릴리움(Lilium)종]	0	0	0	0
06031900	- - 기타	0	0	0	0
06039000	- 기타	0	0	0	0
06042010	- - 이끼와 지의(地衣)	0	0	0	0
06042090	- - 기타	0	0	0	0
06049010	- - 이끼와 지의(地衣)	0	0	0	0
06049090	- - 기타	0	0	0	0
07011000	- 종자	0	0	0	0
07019000	- 기타	0	0	0	0
0702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7031011	- - - 증식용 인경(鱗莖)	0	0	0	0
07031019	- - - 기타	0	0	0	0
07031021	- - - 증식용 인경(鱗莖)	0	0	0	0
07031029	- - - 기타	0	0	0	0
07032010	- - 증식용 인경(鱗莖)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7032090	- - 기타	0	0	0	0
07039010	- - 증식용 인경(鱗莖)	0	0	0	0
07039090	- - 기타	0	0	0	0
07041010	- - 꽃양배추	0	0	0	0
07041020	- -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0	0	0	0
07042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0	0	0	0
07049011	- - - 라운드[드럼헤드(drumhead)]	0	0	0	0
07049019	- - - 기타	0	0	0	0
07049090	- - 기타	0	0	0	0
07051100	- - 결구(結球) 상추	0	0	0	0
07051900	- - 기타	0	0	0	0
07052100	- -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0	0	0	0
07052900	- - 기타	0	0	0	0
07061010	- - 당근	0	0	0	0
07061020	- - 순무	0	0	0	0
07069000	- 기타	0	0	0	0
0707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7081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0	0	0
07082010	- - 강낭콩	0	0	0	0
07082020	- - 긴 콩	0	0	0	0
07082090	- - 기타	0	0	0	0
07089000	-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0	0	0	0
07092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	0	0	0
07093000	- 가지(에그플랜트)	0	0	0	0
07094000	-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0	0	0	0
070951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	0	0	0
07095910	- - - 송로(松露)	0	0	0	0
07095990	- - - 기타	5	5	5	0
07096010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0	0	0	0
07096090	- - 기타	0	0	0	0
07097000	- 시금치류	0	0	0	0
07099100	- -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0	0	0	0
07099200	- - 올리브	0	0	0	0
07099300	- -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0	0	0	0
07099900	- - 기타	0	0	0	0
07101000	- 감자	0	0	0	0
07102100	-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0	0	0
07102200	- -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0	0	0	0
07102900	- - 기타	0	0	0	0
07103000	- 시금치류	0	0	0	0
07104000	- 스위트콘	0	0	0	0
07108000	- 그 밖의 채소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7109000	- 채소류의 혼합물	0	0	0	0
07112010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0	0	0	0
07112090	- - 기타	0	0	0	0
07114010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0	0	0	0
07114090	- - 기타	0	0	0	0
07115110	-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0	0	0	0
07115190	- - - 기타	0	0	0	0
07115910	-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0	0	0	0
07115990	- - - 기타	0	0	0	0
07119010	- - 스위트콘	0	0	0	0
07119020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0	0	0	0
07119031	-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0	0	0	0
07119039	- - - 기타	0	0	0	0
07119040	- - 양파(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7119050	- - 양파(이산화유황가스외의 것으로 보존처리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7119060	- - 기타(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7119090	- - 기타	0	0	0	0
07122000	- 양파	0	0	0	0
071231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	0	0	0
07123200	-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0	0	0	0
07123300	- -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0	0	0	0
07123910	- - - 송로(松露)	0	0	0	0
07123920	- - - 표고버섯(dong-gu)	0	0	0	0
07123990	- - - 기타	0	0	0	0
07129010	- - 마늘	0	0	0	0
07129090	- - 기타	0	0	0	0
07131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07131090	- - 기타	0	0	0	0
07132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07132090	- - 기타	0	0	0	0
071331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07133190	- - - 기타	0	0	0	0
071332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07133290	- - - 기타	0	0	0	0
071333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07133390	- - - 기타	0	0	0	0
071334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07133490	- - - 기타	0	0	0	0
071335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07133590	- - - 기타	0	0	0	0
071339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07133990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7134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07134090	- - 기타	0	0	0	0
07135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07135090	- - 기타	0	0	0	0
07136000	-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0	0	0	0
07139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07139090	- - 기타	0	0	0	0
07141011	- - - 건조한 칩	0	0	0	0
07141019	- - - 기타	0	0	0	0
07141091	- - - 냉동한 것	0	0	0	0
07141099	- - - 기타	0	0	0	0
07142010	- - 냉동한 것	0	0	0	0
07142090	- - 기타	0	0	0	0
07143010	- - 냉동한 것	0	0	0	0
07143090	- - 기타	0	0	0	0
07144010	- - 냉동한 것	0	0	0	0
07144090	- - 기타	0	0	0	0
07145010	- - 냉동한 것	0	0	0	0
07145090	- - 기타	0	0	0	0
07149011	- - - 냉동한 것	0	0	0	0
07149019	- - - 기타	0	0	0	0
07149091	- - - 냉동한 것	0	0	0	0
07149099	- - - 기타	0	0	0	0
08011100	- - 말린 것	0	0	0	0
08011200	-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11900	- - 기타	0	0	0	0
08012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12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13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13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1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21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2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22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3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23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4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24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5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25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6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08026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0	0	0	0
08027000	-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8028000	- 빈랑자(areca nut)	0	0	0	0
08029000	- 기타	0	0	0	0
08031000	- 플랜틴(plantain)	0	0	0	0
08039000	- 기타	0	0	0	0
08041000	- 대추야자	0	0	0	0
08042000	- 무화과	0	0	0	0
08043000	- 파인애플	0	0	0	0
08044000	- 아보카도(avocado)	0	0	0	0
08045010	- - 구아바(guava)	0	0	0	0
08045020	- - 망고(mango)	0	0	0	0
08045030	- - 망고스틴(mangosteen)	0	0	0	0
08051010	- - 신선한 것	0	0	0	0
08051020	- - 건조한 것	0	0	0	0
08052000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과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	0	0	0
0805400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0	0	0	0
08055000	-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과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0	0	0	0
08059000	- 기타	0	0	0	0
08061000	- 신선한 것	0	0	0	0
08062000	- 건조한 것	0	0	0	0
08071100	- - 수박	0	0	0	0
08071900	- - 기타	0	0	0	0
08072010	- - 마르디(mardi) 역교배 솔로(solo)[베틱 솔로(betik solo)]	0	0	0	0
08072090	- - 기타	0	0	0	0
08081000	- 사과	0	0	0	0
08083000	- 배	0	0	0	0
08084000	- 마르멜로(quince)	0	0	0	0
08091000	- 살구	0	0	0	0
08092100	- -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0	0	0	0
08092900	- - 기타	0	0	0	0
0809300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0	0	0	0
08094010	- - 자두	0	0	0	0
08094020	- - 슬로(sloe)	0	0	0	0
08101000	- 초본류 딸기	0	0	0	0
0810200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loganberry)	0	0	0	0
08103000	-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스베리(gooseberry)	0	0	0	0
08104000	-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0	0	0	0
08105000	- 키위프루트(kiwifruit)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8106000	- 두리안(durian)	0	0	0	0
08107000	- 감	0	0	0	0
08109010	- - 용안(longans)[마타쿠칭(mata kucing)을 포함한다]	0	0	0	0
08109020	- - 리치(lychees)	0	0	0	0
08109030	- - 람부탄(rambutan)	0	0	0	0
08109040	- - 랑삿(langsat), 스타프루트(starfruit)	0	0	0	0
08109050	- - 잭프루트(jackfruit)[쳄페닥과 낭까(cempedak and nangka)]	0	0	0	0
08109060	- - 타마린드(tamarinds)	0	0	0	0
08109091	- - - 살락(salacca)[스네이크 프루트(snake fruit)]	0	0	0	0
08109092	- - - 용과(dragon fruit)	0	0	0	0
08109093	- - - 사포딜라(sapodilla)[치쿠 프루트(ciku fruit)]	0	0	0	0
08109099	- - - 기타	0	0	0	0
08111000	- 초본류 딸기	0	0	0	0
0811200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스베리(gooseberry)	0	0	0	0
08119000	- 기타	0	0	0	0
08121000	- 체리	0	0	0	0
08129010	- - 초본류 딸기	0	0	0	0
08129090	- - 기타	0	0	0	0
08131000	- 살구	0	0	0	0
08132000	- 프룬(prune)	0	0	0	0
08133000	- 사과	0	0	0	0
08134010	- - 용안(longans)	0	0	0	0
08134020	- - 타마린드(tamarinds)	0	0	0	0
08134090	- - 기타	0	0	0	0
08135010	- - 전체 중량에서 캐슈너트(cashew nut)나 브라질너트(Brazil nuts)가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0	0	0	0
08135020	- - 전체 중량에서 그 밖의 견과류가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0	0	0	0
08135030	- - 전체 중량에서 대추야자가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0	0	0	0
08135040	- - 전체 중량에서 아보카도(avocado)나 오렌지나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과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가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0	0	0	0
08135090	- - 기타	0	0	0	0
08140000	감귤류의 껍질이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 또는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09011110	- - - 아라비카(Arabica) 종 더블유・아이・비(WIB) 또는 로부스타(Robusta) 종 오・아이・비(OIB)	0	0	0	0
09011190	- - - 기타	0	0	0	0
09011210	- - - 아라비카(Arabica) 종 더블유・아이・비(WIB) 또는 로부스타(Robusta) 종 오・아이・비(OIB)	0	0	0	0
09011290	- - - 기타	0	0	0	0
09012110	- -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9012120	- - -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12210	- -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0	0	0	0
09012220	- - -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19010	- -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0	0	0	0
09019020	- -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0	0	0	0
09021010	- - 잎	0	0	0	0
09021090	- - 기타	10	10	10	0
09022010	- - 잎	0	0	0	0
09022090	- - 기타	0	0	0	0
09023010	- - 잎	0	0	0	0
09023090	- - 기타	0	0	0	0
09024010	- - 잎	0	0	0	0
09024090	- - 기타	0	0	0	0
09030000	마테(maté)	0	0	0	0
09041110	- - - 백색	0	0	0	0
09041120	- - - 흑색	0	0	0	0
09041190	- - - 기타	0	0	0	0
09041210	- - - 백색	0	0	0	0
09041220	- - - 흑색	0	0	0	0
09041290	- - - 기타	0	0	0	0
09042110	-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0	0	0	0
09042190	- - - 기타	0	0	0	0
09042210	-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0	0	0	0
09042290	- - - 기타	0	0	0	0
09051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5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61100	- -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0	0	0	0
09061900	- - 기타	0	0	0	0
0906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71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7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81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81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82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82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83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83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92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92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93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093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096110	- - - 아니스(anise)의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09096120	- - - 바디안(badian)의 것	0	0	0	0
09096130	- - - 캐러웨이(caraway)의 것	0	0	0	0
09096190	- - - 기타	0	0	0	0
09096210	- - - 아니스(anise)의 것	0	0	0	0
09096220	- - - 바디안(badian)의 것	0	0	0	0
09096230	- - - 캐러웨이(caraway)의 것	0	0	0	0
09096290	- - - 기타	0	0	0	0
09101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	0	0	0
09101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0	0	0	0
09102000	- 사프란(saffron)	0	0	0	0
09103000	- 심황[강황(薑黃)]	0	0	0	0
09109110	- - - 카레	0	0	0	0
09109190	- - - 기타	0	0	0	0
09109910	- - - 타임, 월계수의 잎	0	0	0	0
09109990	- - - 기타	0	0	0	0
10011100	- - 종자	0	0	0	0
10011900	- - 기타	0	0	0	0
10019100	- - 종자	0	0	0	0
10019911	- - - - 메슬린(meslin)	0	0	0	0
10019919	- - - - 기타	0	0	0	0
10019990	- - - 기타	0	0	0	0
10021000	- 종자	0	0	0	0
10029000	- 기타	0	0	0	0
10031000	- 종자	0	0	0	0
10039000	- 기타	0	0	0	0
10041000	- 종자	0	0	0	0
10049000	- 기타	0	0	0	0
10051000	- 종자	0	0	0	0
10059010	- - 팝콘	0	0	0	0
10059090	- - 기타	0	0	0	0
10061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10061090	- - 기타	0	0	0	0
10062010	- - 타이 홈 말리(Hom Mali) 쌀	0	0	0	0
10062090	- - 기타	0	0	0	0
10063030	- - 찹쌀	0	0	0	0
10063040	- - 타이 홈 말리(Hom Mali) 쌀	0	0	0	0
10063091	- - - 반숙미	0	0	0	0
10063099	- - - 기타	0	0	0	0
10064010	- - 사료용의 것	0	0	0	0
10064090	- - 기타	0	0	0	0
10071000	- 종자	0	0	0	0
10079000	- 기타	0	0	0	0
10081000	- 메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0082100	- - 종자	0	0	0	0
10082900	- - 기타	0	0	0	0
10083000	- 카나리시드(canary seed)	0	0	0	0
10084000	-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0	0	0	0
10085000	-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0	0	0	0
10086000	- 라이밀(triticale)	0	0	0	0
10089000	- 그 밖의 곡물	0	0	0	0
11010010	- 밀가루	5	5	5	0
11010020	- 메슬린(meslin) 가루	0	0	0	0
11022000	- 옥수수가루	0	0	0	0
11029010	- - 쌀가루	0	0	0	0
11029020	- - 호밀가루	0	0	0	0
11029090	- - 기타	0	0	0	0
11031120	- - - 듀럼(Durum)이나 경질 세몰리나(semolina) 밀	0	0	0	0
11031190	- - - 기타	0	0	0	0
11031300	- - 옥수수로 만든 것	0	0	0	0
11031910	- - - 메슬린(meslin)의 것	0	0	0	0
11031920	- - - 쌀의 것	0	0	0	0
11031990	- - - 기타	0	0	0	0
11032000	- 펠릿(pellet)	0	0	0	0
11041200	- - 귀리로 만든 것	0	0	0	0
11041910	- - - 옥수수의 것	0	0	0	0
11041990	- - - 기타	0	0	0	0
11042200	- - 귀리로 만든 것	0	0	0	0
11042300	- - 옥수수로 만든 것	0	0	0	0
11042920	- - - 보리로 만든 것	0	0	0	0
11042990	- - - 기타	0	0	0	0
1104300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축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또는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1051000	-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가루	0	0	0	0
11052000	- 플레이크(flake)・알갱이 및 펠릿(pellet)	0	0	0	0
11061000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106201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의 것	0	0	0	0
11062021	- - - 거친 가루	0	0	0	0
11062029	- - - 기타	0	0	0	0
11062090	- - 기타	0	0	0	0
11063000	- 제 8 류 물품의 것	0	0	0	0
11071000	- 볶지 않은 것	0	0	0	0
11072000	- 볶은 것	0	0	0	0
11081100	- - 밀로 만든 것	0	0	0	0
11081200	- - 옥수수로 만든 것	5	5	5	0
11081300	- - 감자로 만든 것	0	0	0	0
1108140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1081910	- - - 사고(sago)	0	0	0	0
11081990	- - - 기타	0	0	0	0
11082000	- 이눌린(inulin)	0	0	0	0
1109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2011000	- 종자	0	0	0	0
12019000	- 기타	0	0	0	0
12023000	- 종자	0	0	0	0
12024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	0	0	0
12024200	- -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2030000	코프라(copra)	0	0	0	0
1204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205100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0	0	0	0
12059000	- 기타	0	0	0	0
1206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2071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0	0	0	0
12071020	- - 파종에 적합하지 않은 것	0	0	0	0
12072100	- - 종자	0	0	0	0
12072900	- - 기타	0	0	0	0
12073000	- 피마자	0	0	0	0
12074010	- - 식용인 것	0	0	0	0
12074090	- - 기타	0	0	0	0
12075000	- 겨자씨	0	0	0	0
12076000	-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0	0	0	0
12077000	- 멜론 종자	0	0	0	0
12079940	- - - 일리프 종자(Illipe nuts)	0	0	0	0
12079990	- - - 기타	0	0	0	0
12081000	- 대두로 만든 것	0	0	0	0
12089000	- 기타	0	0	0	0
12091000	- 사탕무 종자	0	0	0	0
12092100	- -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0	0	0	0
12092200	- -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0	0	0	0
12092300	- - 페스큐(fescue) 종자	0	0	0	0
12092400	- -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0	0	0	0
12092500	-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0	0	0	0
12092910	- - - 티머시 그라스(timothy grass) 종자	0	0	0	0
12092920	- - - 그 밖의 사탕무 종자	0	0	0	0
12092990	- - - 기타	0	0	0	0
12093000	-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0	0	0	0
12099110	- - - 양파 종자	0	0	0	0
12099190	- - - 기타	0	0	0	0
12099910	- - - 고무 나무 종자나 케나프(kenaf) 종자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2099990	- - - 기타	0	0	0	0
12101000	- 홉(hop)[잘게 부순 것 또는 가루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0	0	0	0
12102000	-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0	0	0	0
12112010	- -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된 형태의 것	0	0	0	0
12112090	- - 기타	0	0	0	0
12113010	- -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된 형태의 것	0	0	0	0
12113090	- - 기타	0	0	0	0
12114000	- 양귀비줄기	0	0	0	0
12119011	- - - 대마(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된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2119012	- - - 대마(그 밖의 모양에 한정한다)	0	0	0	0
12119013	- - - 로우웰피아 서펜티나(rauwolfia serpentina) 뿌리	0	0	0	0
12119014	- - - 기타(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2119019	- - - 기타	0	0	0	0
12119091	- - - 제충국(除蟲菊)(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된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2119092	- - - 제충국(除蟲菊)(그 밖의 모양에 한정한다)	0	0	0	0
12119094	- - - 백단향(白檀香)	0	0	0	0
12119095	- - - 침향나무[가하루(gaharu)] 칩	0	0	0	0
12119096	- - - 감초	0	0	0	0
12119097	- - - 페르세아속 나무의 껍질(Persea Kurzii Kosterm)	0	0	0	0
12119098	- - - 기타(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가루로 된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2119099	- - - 기타	0	0	0	0
12122110	- - - 유케마 종(Eucheuma spp.)	0	0	0	0
12122120	- - - 꼬시래기(Gracilaria lichenoides)	0	0	0	0
12122190	- - - 기타	5	5	5	0
12122911	- - - - 의료용의 것	0	0	0	0
12122919	- - - - 기타	0	0	0	0
12122920	- - - 기타(신선한 것・냉장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2122930	-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2129100	- - 사탕무	0	0	0	0
12129200	- -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0	0	0	0
12129310	- - - 재배용에 적합한 것	0	0	0	0
12129390	- - - 기타	0	0	0	0
12129400	- - 치커리(chicory) 뿌리	0	0	0	0
12129900	- - 기타	0	0	0	0
1213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1214100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2149000	- 기타	0	0	0	0
13012000	- 아라비아검	0	0	0	0
13019010	- - 벤자민검	0	0	0	0
13019020	- - 담마검(gum damar)	0	0	0	0
13019030	- - 대마 수지	0	0	0	0
13019040	- - 락(lac)	0	0	0	0
13019090	- - 기타	0	0	0	0
13021200	- - 감초로 만든 것	0	0	0	0
13021300	- - 홉(hop)으로 만든 것	0	0	0	0
13021920	- - - 대마의 추출물과 틴크제	0	0	0	0
13021930	- - - 그 밖의 약용 추출물	0	0	0	0
13021940	- - - 제충국(除蟲菊)이나 로테논(rotenonon)을 포함하는 식물 뿌리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0	0	0	0
13021950	- - - 일본(이나 중국) 락커(lacquer)(생칠)	0	0	0	0
13021990	- - - 기타	0	0	0	0
13022000	-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0	0	0	0
13023100	- - 한천	0	0	0	0
13023200	- -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3023910	- - - 카라기난(carrageenan)	0	0	0	0
13023990	- - - 기타	0	0	0	0
14011000	- 대나무	0	0	0	0
14012011	- - - 생 것	0	0	0	0
14012012	- - - 세척과 황화한 것	0	0	0	0
14012019	- - - 기타	0	0	0	0
14012021	- - - 지름이 12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14012029	- - - 기타	0	0	0	0
14012030	- - 스킨(skin)을 나눈 것	0	0	0	0
14012090	- - 기타	0	0	0	0
14019000	- 기타	0	0	0	0
14042000	- 면(綿) 린터(linter)	0	0	0	0
14049020	- - 주로 유연용이나 염색용의 것	0	0	0	0
14049030	- - 케이폭(kapok)	0	0	0	0
14049090	- - 기타	0	0	0	0
15011000	- 라드(lard)	0	0	0	0
15012000	- 그 밖의 돼지의 지방	0	0	0	0
15019000	- 기타	0	0	0	0
15021010	- - 식용인 것	0	0	0	0
15021090	- - 기타	0	0	0	0
15029010	- - 식용인 것	0	0	0	0
15029090	- - 기타	0	0	0	0
15030010	-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이나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5030090	- 기타	0	0	0	0
15041020	- - 고체 분획물	0	0	0	0
15041090	- - 기타	0	0	0	0
15042010	- - 고체 분획물	0	0	0	0
15042090	- - 기타	0	0	0	0
15043010	- - 고체 분획물	0	0	0	0
15043090	- - 기타	0	0	0	0
15050010	- 라놀린(lanolin)	0	0	0	0
15050090	- 기타	0	0	0	0
150600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5	5	5	0
15071000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5079010	- - 정제하지 않은 대두유의 분획물	0	0	0	0
15079090	- - 기타	0	0	0	0
15081000	- 조유(粗油)	0	0	0	0
15089010	- - 정제하지 않은 땅콩기름의 분획물	0	0	0	0
15089090	- - 기타	0	0	0	0
15091010	- - 순 중량이 3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	0	0	0
15091090	- - 기타	0	0	0	0
15099011	- - - 순 중량이 3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	0	0	0
15099019	- - - 기타	0	0	0	0
15099091	- - - 순 중량이 3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0	0	0	0
15099099	- - - 기타	0	0	0	0
15100010	- 조유(粗油)	0	0	0	0
15100020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0	0	0
15100090	- 기타	0	0	0	0
15111000	- 조유(粗油)	0	0	0	0
15119011	- - - 고체 분획물	0	0	0	0
15119019	- - - 기타	0	0	0	0
15119091	- - - 고체 분획물	0	0	0	0
15119092	- - - 기타(순 중량이 2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5119099	- - - 기타	0	0	0	0
15121100	- - 조유(粗油)	0	0	0	0
15121910	- - - 정제하지 않은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의 분획물	0	0	0	0
15121990	- - - 기타	0	0	0	0
15122100	-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5122910	- - - 정제하지 않은 목화씨유의 분획물	0	0	0	0
15122990	- - - 기타	0	0	0	0
15131100	- - 조유(粗油)	0	0	0	0
15131910	- - - 정제하지 않은 야자유의 분획물	0	0	0	0
15131990	- - - 기타	0	0	0	0
15132110	- - - 팜핵유(palm kernel oil)	0	0	0	0
15132190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5132911	- - - - 정제하지 않은 팜핵유(palm kernel oil)의 고체 분획물	0	0	0	0
15132912	- - - - 정제하지 않은 바바수유(babassu oil)의 고체 분획물	0	0	0	0
15132913	- - - - 기타[정제하지 않은 팜핵유(palm kernel olein)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5132914	- - - - 기타[정제하지 않은 바바수유(babassu oil)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5132991	- - - - 팜핵유(palm kernel oil)의 고체 분획물	0	0	0	0
15132992	- - - - 바바수유(babassu oil)의 고체 분획물	0	0	0	0
15132994	- - - - 팜핵올레인(palm kernel olein)[정제·표백 및 탈취(RBD)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5132995	- - - - 팜핵유(palm kernel oil)[정제·표백 및 탈취(RBD)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5132996	- - - - 기타[팜핵유(palm kernel oil)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5132997	- - - - 기타[바바수유(babassu oil)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5141100	- - 조유(粗油)	0	0	0	0
15141910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0	0	0
15141990	- - - 기타	0	0	0	0
15149110	- - -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0	0	0	0
15149190	- - - 기타	0	0	0	0
15149910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0	0	0
15149991	- - -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0	0	0	0
15149999	- - - - 기타	0	0	0	0
15151100	- - 조유(粗油)	0	0	0	0
15151900	- - 기타	0	0	0	0
15152100	- - 조유(粗油)	0	0	0	0
15152911	- - - - 고체 분획물	0	0	0	0
15152919	- - - - 기타	0	0	0	0
15152991	- - - - 고체 분획물	0	0	0	0
15152999	- - - - 기타	0	0	0	0
15153010	- - 조유(粗油)	0	0	0	0
15153090	- - 기타	0	0	0	0
15155010	- - 조유(粗油)	0	0	0	0
15155020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0	0	0
15155090	- - 기타	0	0	0	0
15159011	- - - 조유(粗油)	0	0	0	0
1515901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0	0	0
15159019	- - - 기타	0	0	0	0
15159021	- - - 조유(粗油)	0	0	0	0
1515902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0	0	0
15159029	- - - 기타	0	0	0	0
15159031	- - - 조유(粗油)	0	0	0	0
1515903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0	0	0
15159039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5159091	- - - 조유(粗油)	0	0	0	0
1515909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0	0	0	0
15159099	- - - 기타	0	0	0	0
15161010	- - 순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0	0	0	0
15161090	- - 기타	0	0	0	0
15162011	- - - 대두의 것	0	0	0	0
15162012	- - - 팜유의 과실의 것[조유(粗油)로 한정한다]	0	0	0	0
15162013	- - - 팜유의 과실의 것[조유(粗油)는 제외한다]	0	0	0	0
15162014	- - - 코코넛의 것	0	0	0	0
15162015	- - - 팜핵의 것[조유(粗油)로 한정한다]	0	0	0	0
15162016	- - - 팜핵의 것[정제·표백 및 탈취(RBD)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5162017	- - - 땅콩으로 만든 것	0	0	0	0
15162018	- - - 아마씨의 것	0	0	0	0
15162019	- - - 기타	0	0	0	0
15162021	- - - 땅콩, 대두, 팜유의 과실, 팜핵이나 코코넛으로 만든 것	0	0	0	0
15162022	- - - 아마씨의 것	0	0	0	0
15162023	- - - 올리브의 것	0	0	0	0
15162029	- - - 기타	0	0	0	0
15162051	- - - 정제되지 않은 것	0	0	0	0
15162052	- - - 정제·표백 및 탈취(RBD)된 것	0	0	0	0
15162059	- - - 기타	0	0	0	0
15162092	- - - 아마씨의 것	0	0	0	0
15162093	- - - 올리브의 것	0	0	0	0
15162094	- - - 대두의 것	0	0	0	0
15162095	- - - 경화(硬化) 피마자 유(opal wax)	0	0	0	0
15162096	- - - 정제·표백 및 탈취(RBD)된 팜 핵 스테아린(palm kerel stearin)	0	0	0	0
15162097	- - - 경화(硬化)되고 정제·표백 및 탈취(RBD)된 팜핵 스테아린(palm kerel stearin)이나 올레인	0	0	0	0
15162098	- - - 기타(땅콩, 팜유나 코코넛으로 만든 것)	0	0	0	0
15162099	- - - 기타	0	0	0	0
15171000	-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0	0	0	0
15179010	- - 이미테이션 기(ghee)	0	0	0	0
15179020	- - 액체 상태의 마가린	0	0	0	0
15179030	- -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용의 것	0	0	0	0
15179043	- - - 쇼트닝	5	5	5	0
15179044	- - - 이미테이션 라드	0	0	0	0
15179050	- - - 고체 혼합물이나 조제품	0	0	0	0
15179061	- - - - 전중량에서 땅콩기름의 비중이 높은 것	0	0	0	0
15179062	- - - - 전중량에서 천연 팜유의 비중이 높은 것	0	0	0	0
15179063	- - - - 전중량에서 그 밖의 팜유의 비중이 높은 것(순중량이 20 킬로그램 미만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5179064	- - - - 전중량에서 그 밖의 팜유의 비중이 높은 것(순중량이 20 킬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15179065	- - - - 전중량에서 팜핵유의 비중이 높은 것	0	0	0	0
15179066	- - - - 전중량에서 팜 핵 올레인(palm kernel olein)의 비중이 높은 것	0	0	0	0
15179067	- - - - 전중량에서 대두유의 비중이 높은 것	0	0	0	0
15179068	- - - - 전중량에서 일리프 오일의 비중이 높은 것	0	0	0	0
15179069	- - - - 기타	0	0	0	0
15179090	- - 기타	0	0	0	0
15180012	- - 동물성 지방과 기름	0	0	0	0
15180014	- - 땅콩, 대두, 팜이나 코코넛 유	0	0	0	0
15180015	- -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0	0	0	0
15180016	-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0	0	0	0
15180019	- - 기타	0	0	0	0
15180020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0	0	0	0
15180031	- - 팜유나 팜핵유 과실의 것	0	0	0	0
15180033	- - 아마씨의 것	0	0	0	0
15180034	- - 올리브의 것	0	0	0	0
15180035	- - 땅콩의 것	0	0	0	0
15180036	- - 대두나 코코넛의 것	0	0	0	0
15180037	- - 목화씨의 것	0	0	0	0
15180039	- - 기타	0	0	0	0
15180060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0	0	0	0
15200010	-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5200090	- 기타	0	0	0	0
15211000	- 식물성 납(蠟)	0	0	0	0
15219010	- - 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	0	0	0	0
15219020	- - 경납(鯨蠟)	0	0	0	0
15220010	- 데그라스(degras)	0	0	0	0
15220090	- 기타	0	0	0	0
1601001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10090	- 기타	0	0	0	0
16021010	- - 돼지고기를 함유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6021090	- - 기타	0	0	0	0
1602200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0	0	0	0
160231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23191	- - - - 기계로 뼈를 발라내거나 분리한 육	0	0	0	0
16023199	- - - - 기타	0	0	0	0
16023210	- - - 치킨 카레(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6023290	- - - 기타	0	0	0	0
16023900	- - 기타	0	0	0	0
160241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6024190	- - - 기타	0	0	0	0
160242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24290	- - - 기타	0	0	0	0
1602491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24919	- - - - 기타	0	0	0	0
160249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24999	- - - - 기타	0	0	0	0
16025000	- 소로 만든 것	0	0	0	0
16029010	- - 양고기 카레(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6029090	- - 기타	0	0	0	0
16030010	- 치킨의 것(허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6030020	- 치킨의 것(허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6030030	- 그 밖의 것(허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6030090	- 기타	0	0	0	0
160411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190	- - - 기타	0	0	0	0
160412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290	- - - 기타	0	0	0	0
1604131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319	- - - - 기타	0	0	0	0
160413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399	- - - - 기타	0	0	0	0
16041411	- - - - 다랑어	0	0	0	0
16041419	- - - - 기타	0	0	0	0
16041490	- - - 기타	0	0	0	0
160415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590	- - - 기타	0	0	0	0
160416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690	- - - 기타	0	0	0	0
160417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1790	- - - 기타	0	0	0	0
16041920	- - - 전갱이(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6041930	- - -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6041990	- - - 기타	0	0	0	0
1604201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2019	- - - 기타	0	0	0	0
1604202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2029	- - - 기타	0	0	0	0
1604209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42093	- - - 잘게 썰어 냉동한 것(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6042099	- - - 기타	0	0	0	0
16043100	- - 캐비아	0	0	0	0
16043200	- - 캐비아 대용물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6051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16051090	- - 기타	0	0	0	0
16052110	- - - 새우 페이스트(paste)	0	0	0	0
16052190	- - - 기타	0	0	0	0
16052910	- - - 새우 페이스트(paste)	0	0	0	0
16052990	- - - 기타	0	0	0	0
16053000	- 바닷가재	0	0	0	0
16054000	- 그 밖의 갑각류	0	0	0	0
16055100	- - 굴	0	0	0	0
16055200	-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	0	0	0
16055300	- - 홍합	0	0	0	0
16055400	- - 갑오징어와 오징어	0	0	0	0
16055500	- - 문어	0	0	0	0
16055600	- - 클램(clam), 새조개 및 피조개	0	0	0	0
16055700	- - 전복	0	0	0	0
16055800	-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0	0	0	0
16055900	- - 기타	0	0	0	0
16056100	- - 해삼	0	0	0	0
16056200	- - 성게	0	0	0	0
16056300	- - 해파리	0	0	0	0
16056900	- - 기타	0	0	0	0
17021100	- -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0	0	0	0
17021900	- - 기타	0	0	0	0
1702200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0	0	0	0
17023010	- - 포도당	0	0	0	0
17023020	- - 포도당시럽	0	0	0	0
1702400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이고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0	0	0	0
170250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0	0	0	0
17026010	- - 과당	0	0	0	0
17026020	- - 과당시럽	0	0	0	0
17029011	- -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0	0	0	0
17029019	- - - 기타	0	0	0	0
17029020	- -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1702903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맥아당은 제외한다)	0	0	0	0
17029040	- - 캐러멜당	0	0	0	0
17029091	- - - 시럽	0	0	0	0
17029099	- - - 기타	0	0	0	0
1703101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0	0	0	0
17031090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703901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0	0	0	0
17039090	- - 기타	0	0	0	0
17041000	-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10	10	10	0
17049010	- - 약용 원료가 첨가된 파스텔(pastilles)과 드롭스(drops)	5	0	0	0
17049020	- - 백색 초콜릿	10	10	10	0
17049091	- - - 부드러운 것(젤라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10	0
17049099	- - - 기타	10	10	10	0
180100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8020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및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0	0	0	0
1803100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0	0	0	0
18032000	-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0	0	0	0
1804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0	0	0	0
18050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18061000	-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8062010	- - 초콜릿 과자[블록 모양・슬래브 모양 또는 막대(bar)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8062090	- -기타	0	0	0	0
18063110	- - - 초콜릿 과자	10	10	10	0
18063190	- - - 기타	10	10	10	0
18063210	- - - 초콜릿 과자	10	10	10	0
18063290	- - - 기타	10	10	10	0
18069010	- - 초콜릿 과자[둥글넓적한(tablet) 것이나 알약(pastilles)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10	0
18069030	- -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0 이상이고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8069040	- -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고 100 분의 10 미만인 것으로 유아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8069090	- - 기타	10	10	10	0
19011010	- - 맥아 추출물(extract)	0	0	0	0
19011020	- -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것	5	5	5	0
19011091	- - - 의료용도 식품	0	0	0	0
19011099	- - - 기타	5	5	5	0
19012010	- -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9012020	- -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코코아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9012030	- - 기타(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9012040	- - 기타(코코아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9019011	- - - 의료용 식품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9019019	- - - 기타	0	0	0	0
19019020	- - 맥아 추출물(extract)	0	0	0	0
19019032	- - - 기타(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9019039	- - - 기타				
1901903910	- - - - 의료용도 식품	5	5	5	0
19019091	- - - 의료용도 식품	0	0	0	0
19021100	- - 새의 알을 넣은 것	0	0	0	0
19021920	- - - 라이스 버미셀리(Rice vermicelli) 비훈(bee hoon)	10	0	0	0
19021930	- - - 투명한 버미셀리(Transparent vermicelli)	0	0	0	0
19021940	- - - 국수	0	0	0	0
19021990	- - - 기타	10	0	0	0
19022010	- - 육(肉)이나 설육(屑肉)으로 속을 채운 것	0	0	0	0
19022030	- - 어류, 갑각류나 연체동물로 속을 채운 것	0	0	0	0
19022090	- - 기타	0	0	0	0
19023020	- - - 인스턴트 라이스 버미셀리(Rice vermicelli)	0	0	0	0
19023030	- - - 투명한 버미셀리(Transparent vermicelli)	0	0	0	0
19023040	- - 그 밖의 인스턴트 면류	10	10	10	0
19023090	- - 기타	0	0	0	0
19024000	- 쿠스쿠스(couscous)	0	0	0	0
190300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낟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19041010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10	0	0	0
19041090	- - 기타	10	10	10	0
19042010	-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0	0	0	0
19042090	- - 기타	0	0	0	0
19043000	- 불거 밀(bulgur wheat)	0	0	0	0
19049010	- - 쌀 조제품(사전 조리한 쌀을 포함한다)	0	0	0	0
19049090	- - 기타	10	0	0	0
19051000	- 귀리빵	0	0	0	0
19052000	- 진저브레드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19053110	- - -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10	10	10	0
19053120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10	10	10	0
19053200	- - 와플과 웨이퍼	10	10	10	0
19054010	- - 설탕, 꿀, 새의 알, 지방, 치즈나 과실을 함유하지 않은 것	0	0	0	0
19054090	- - 기타	0	0	0	0
19059010	- - 무가당 티딩(teething) 비스킷	0	0	0	0
19059020	- - 그 밖의 무가당 비스킷	10	0	0	0
19059030	- - 케이크	10	10	10	0
19059040	- - 파이	10	0	0	0
19059050	- - 밀가루가 없는 베이커리 제품	0	0	0	0
19059060	-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19059070	- - 성찬용 웨이퍼・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pap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19059080	- - 그 밖의 바삭바삭한 짭짤한 맛의 식품	10	10	10	0
19059090	- - 기타	10	10	10	0
20011000	- 오이류	0	0	0	0
20019010	- - 양파	0	0	0	0
20019090	- - 기타	0	0	0	0
20021010	- - 조리된 것(물에 찌거나 삶은 것은 제외한다)	0	0	0	0
20021090	- - 기타	0	0	0	0
20029010	- - 토마토 페이스트(paste)	0	0	0	0
20029020	- - 토마토 가루	0	0	0	0
20029090	- - 기타	0	0	0	0
2003100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	0	0	0
20039010	- - 송로(松露)	0	0	0	0
20039090	- - 기타	0	0	0	0
20041000	- 감자	0	0	0	0
20049010	- - 유아용	0	0	0	0
20049090	- - 기타	0	0	0	0
20051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20051090	- - 기타	0	0	0	0
2005201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20052019	- - - 기타	0	0	0	0
2005209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20052099	- - - 기타	0	0	0	0
20054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0	0	0	0
20055100	- - 껍데기를 벗긴 콩	0	0	0	0
200559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20055990	- - - 기타	0	0	0	0
20056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0	0	0	0
20057000	- 올리브	0	0	0	0
2005800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0	0	0	0
20059100	- - 죽순	0	0	0	0
200599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0
20059990	- - - 기타	0	0	0	0
200600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설탕에 절인 것이나 입힌 것]	0	0	0	0
20071000	- 균질화한 조제품	0	0	0	0
20079100	- - 감귤류의 과실	0	0	0	0
20079910	- - - 과실 페이스트(paste)(망고, 파인애플이나 딸기의 것을 제외한다)	0	0	0	0
20079990	- - - 기타	0	0	0	0
20081110	- - - 볶은 것	0	0	0	0
20081120	- - - 피넛 버터	0	0	0	0
20081190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0081910	- - - 캐슈너트(cashew nut)	0	0	0	0
20081990	- - - 기타	10	10	10	0
20082000	- 파인애플	0	0	0	0
20083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0	0	0	0
20083090	- - 기타	0	0	0	0
20084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0	0	0	0
20084090	- - 기타	0	0	0	0
20085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0	0	0	0
20085090	- - 기타	0	0	0	0
20086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0	0	0	0
20086090	- - 기타	0	0	0	0
20087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0	0	0	0
20087090	- - 기타	0	0	0	0
20088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0	0	0	0
20088090	- - 기타	0	0	0	0
20089100	- - 팜 하트(palm heart)	0	0	0	0
20089300	-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0	0	0	0
20089710	- - -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부분(과실이나 견과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0089720	- - - 기타(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0089790	- - - 기타	0	0	0	0
20089910	- - - 리치(lychees)	0	0	0	0
20089920	- - - 용안(longans)	0	0	0	0
20089930	- - -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부분(과실이나 견과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0089940	- - - 기타(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0089990	- - - 기타	10	0	0	0
20091100	- - 냉동한 것	0	0	0	0
20091200	-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	0	0	0
20091900	- - 기타	0	0	0	0
20092100	- -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	0	0	0
20092900	- - 기타	0	0	0	0
20093100	- -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	0	0	0
20093900	- - 기타	0	0	0	0
20094100	- -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	0	0	0
20094900	- - 기타	0	0	0	0
20095000	- 토마토주스	0	0	0	0
20096100	- -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0096900	- - 기타	0	0	0	0
20097100	- -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0	0	0	0
20097900	- - 기타	0	0	0	0
20098110	- - - 유아용	0	0	0	0
20098190	- - - 기타	0	0	0	0
20098910	- - - 블랙커런트(blackcurrant) 주스	0	0	0	0
20098991	- - - - 유아용	0	0	0	0
20098999	- - - - 기타	0	0	0	0
20099010	- - 유아용	0	0	0	0
20099090	- - 기타	0	0	0	0
21011110	- - - 인스턴트 커피	10	10	10	0
21011190	- - - 기타	0	0	0	0
21011210	- - - 볶은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페이스트(paste) 상태의 혼합물(식물성 지방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1011290	- - - 기타	0	0	0	0
21012010	- - 차・밀크 분말과 자당의 혼합물로 구성된 차 조제품	0	0	0	0
21012090	- - 기타	0	0	0	0
21013000	- 볶은 치커리(chicory)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및 그 농축물	0	0	0	0
21021000	- 활성 효모	0	0	0	0
21022000	- 불활성 효모,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0	0	0	0
2102300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0	0	0	0
21031000	- 간장	0	0	0	0
21032000	-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0	0	0	0
21033000	-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0	0	0	0
21039010	- - 칠리소스	10	0	0	0
21039030	- - 어간장	0	0	0	0
21039040	- - 그 밖의 혼합 양념과 조미료[벨라찬(belachan) 블라찬(blachan)을 포함한다]	10	10	10	0
21039090	- - 기타	10	10	10	0
21041011	- - - 유아용	0	0	0	0
21041019	- - - 기타	0	0	0	0
21041091	- - - 유아용	0	0	0	0
21041099	- - - 기타	0	0	0	0
21042011	- - - 유아용	0	0	0	0
21042019	- - - 기타	0	0	0	0
21042091	- - - 유아용	0	0	0	0
21042099	- - - 기타	0	0	0	0
210500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10	10	10	0
2106100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0	0	0	0
21069010	- - 건조한 두부와 두부 스틱(sticks)	0	0	0	0
21069020	- -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시럽	0	0	0	0
21069030	- - 비낙농 크리머(creamer)	5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1069041	- - - 가루 모양	0	0	0	0
21069049	- - - 기타	0	0	0	0
21069051	- - - 혼합 농축물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조제품	0	0	0	0
21069052	- - - 음료 제조용으로 물에 단순히 희석한 혼합 농축물	0	0	0	0
21069053	- - - 인삼을 기본재료로 한 물품	5	5	5	0
21069059	- - - 기타	5	5	5	0
21069066	- - - 기타(알코올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액체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1069067	- - - 기타(알코올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1069069	- - - 기타	0	0	0	0
21069070	- - 식이 보조제	5	5	5	0
21069080	- - 강화용 프리믹스(premixes)	0	0	0	0
21069091	- - - 그 밖의 화학품의 혼합물(식품가공에 사용하는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로 한정한다)	5	5	5	0
21069092	- - - 인삼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5	5	5	0
21069093	- - - 락타아제(lactase) 결핍 유아용 조제 식료품	0	0	0	0
21069094	- - - 그 밖의 유아용 조제 식료품	0	0	0	0
21069095	- - - 세리 카야(seri kaya)	0	0	0	0
21069096	- - - 그 밖의 의료용도 식품	0	0	0	0
21069098	- - - 그 밖의 향미가 첨가된 조제품	5	5	5	0
21069099	- - - 기타	5	5	5	0
22011000	- 광천수와 탄산수	0	0	0	0
22019010	- - 얼음과 눈	0	0	0	0
22019090	- - 기타	0	0	0	0
22021010	- - 향미를 첨가한 탄산이 든 광천수 또는 탄산수	0	0	0	0
22021090	- - 기타	0	0	0	0
22029010	- - 향미를 첨가한 초고온 처리(UHT)된 우유 음료	0	0	0	0
22029020	- - 두유 음료	0	0	0	0
22029030	- - 그 밖의 비탄산수(희석 없이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10	10	0
22029090	- - 기타	10	10	10	0
22071000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2072011	- - -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99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2072019	- - - 기타	0	0	0	0
22072090	- - 기타	0	0	0	0
220900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0	0	0	0
23011000	-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펠릿(pellet),수지박	0	0	0	0
23012010	- - 어류의 것(단백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23012020	- - 어류의 것(단백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0 이상인 것	5	5	5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으로 한정한다)				
23012090	- - 기타	5	5	5	0
23021000	- 옥수수에서 나온 것	0	0	0	0
23023000	- 밀에서 나온 것	0	0	0	0
23024010	- - 쌀에서 나온 것	0	0	0	0
23024090	- - 기타	0	0	0	0
23025000	-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0	0	0	0
2303101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이나 사고야자(sago)의 것	0	0	0	0
23031090	- - 기타	0	0	0	0
2303200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0	0	0	0
23033000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0	0	0	0
23040010	- 탈지(脫脂)한 대두의 고운 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3040090	- 기타	0	0	0	0
23050000	땅콩기름의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그 밖의 고형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리트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3061000	- 목화씨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2000	- 아마씨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3000	-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4110	- -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씨의 것	0	0	0	0
23064120	- -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colza)씨의 것	0	0	0	0
23064910	- - - 그 밖의 유채(rape)씨의 것	0	0	0	0
23064920	- - - 그 밖의 유채(colza)씨의 것	0	0	0	0
2306500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6000	-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0	0	0	0
23069010	- - 옥수수 씨눈의 것	0	0	0	0
23069090	- - 기타	0	0	0	0
23070000	와인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0	0	0	0
23080000	사료용 식물성 물질과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3091010	- - 육을 함유하는 것	0	0	0	0
23091090	- - 기타	0	0	0	0
23099011	- - - 가금(家禽)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23099012	- - - 돼지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23099014	- - - 영장류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23099019	- - - 기타	5	5	5	0
23099020	- - 프리믹스(사료 보조제나 사료 첨가제로 한정한다)	0	0	0	0
23099030	- - 기타(육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3099090	- - 기타	5	5	5	0
2502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503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0	0	0	0
25041000	-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5049000	- 기타	0	0	0	0
25051000	- 규사	0	0	0	0
25059000	- 기타	0	0	0	0
25061000	- 석영	0	0	0	0
25062000	- 규암	0	0	0	0
250700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5081000	- 벤토나이트(bentonite)	0	0	0	0
25083000	- 내화(耐火)점토	0	0	0	0
25084010	- - 표포토(漂布土)	0	0	0	0
25084090	- - 기타	0	0	0	0
25085000	-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硅線石)	0	0	0	0
25086000	- 멀라이트(mullite)	0	0	0	0
25087000	-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어스	0	0	0	0
25090000	초크	0	0	0	0
25101010	- - 인회석	0	0	0	0
25101090	- - 기타	0	0	0	0
25102010	- - 인회석	0	0	0	0
25102090	- - 기타	0	0	0	0
25111000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0	0	0	0
25112000	-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0	0	0	0
251200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 및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5131000	- 부석	0	0	0	0
25132000	-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0	0	0	0
251400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5151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0	0	0
25151210	- - - 블록	0	0	0	0
25151220	- - - 슬래브	0	0	0	0
25152000	- 에코신과 그 밖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앨러바스터	0	0	0	0
25161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0	0	0
25161210	- - - 블록	0	0	0	0
25161220	- - - 슬래브	0	0	0	0
2516201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0	0	0	0
25162020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0	0	0	0
25169000	-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	0	0	0	0
25171000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2000	-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에 열거된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5173000	- 타르 머캐덤(tar macadam)	0	0	0	0
25174100	- - 대리석으로 만든 것	0	0	0	0
25174900	- - 기타	0	0	0	0
25181000	-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0	0	0	0
25182000	-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0	0	0	0
25183000	-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0	0	0	0
2519100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0	0	0	0
25199010	- -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0	0	0	0
25199020	- - 기타	0	0	0	0
25201000	- 석고, 무수(無水)석고	0	0	0	0
25202010	- - 치과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25202090	- - 기타	0	0	0	0
25210000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25221000	- 생석회(生石灰)	0	0	0	0
25222000	- 소석회(消石灰)	0	0	0	0
25223000	- 수경성(水硬性) 석회	0	0	0	0
25231010	- - 백색 시멘트 제조용의 것	0	0	0	0
25231090	- - 기타	0	0	0	0
25241000	- 청(靑)석면	0	0	0	0
25249000	- 기타	0	0	0	0
25251000	-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0	0	0	0
25252000	- 운모 가루	0	0	0	0
25253000	- 운모 웨이스트(waste)	0	0	0	0
25261000	- 부수지 않은 것, 가루도 아닌 것	0	0	0	0
25262010	- - 활석 분말	0	0	0	0
25262090	- - 기타	0	0	0	0
25280000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5291000	- 장석(長石)	0	0	0	0
252921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0	0	0	0
25292200	-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2529300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閃長巖)	0	0	0	0
2530100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5302010	- - 키이저라이트	0	0	0	0
25302020	- - 에프소마이트	0	0	0	0
25309010	- - 유백제로 사용되는 규산지르코늄	0	0	0	0
25309090	- - 기타	0	0	0	0
26011100	- - 응결시키지 않은 것	0	0	0	0
26011200	- - 응결시킨 것	0	0	0	0
26012000	-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0	0	0	0
2602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0	0	0	0
2603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04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05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07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21000	-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22000	-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31000	- 배소(焙燒)한 것	0	0	0	0
26139000	- 기타	0	0	0	0
26140010	- 티타늄철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40090	- 기타	0	0	0	0
2615100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59000	- 기타	0	0	0	0
26161000	- 은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69000	- 기타	0	0	0	0
2617100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0	0	0	0
26179000	- 기타	0	0	0	0
2618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5	5	5	0
2619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26201100	- -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0	0	0	0
26201900	- - 기타	0	0	0	0
26202100	- -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0	0	0	0
26202900	- - 기타	0	0	0	0
26203000	-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0	0	0	0
2620400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6206000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0	0	0	0
26209100	-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0	0	0	0
26209910	- - - 슬래그(slag)와 주석의 하드헤드(hardhead)	0	0	0	0
26209990	- - - 기타	0	0	0	0
2621100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0	0	0	0
26219000	- 기타	0	0	0	0
27011100	- - 무연탄	0	0	0	0
27011210	- - - 점결탄	0	0	0	0
27011290	- - - 기타	0	0	0	0
27011900	- - 그 밖의 석탄	0	0	0	0
27012000	-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0	0	0	0
27021000	-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0	0	0	0
27022000	- 응결시킨 갈탄	0	0	0	0
27030010	- 토탄(응결시킨 것을 제외하며, 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7030020	- 응결시킨 토탄	0	0	0	0
27040010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7040020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7040030	-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0	0	0	0
2705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0	0	0	0
27060000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0	0	0	0
27071000	- 벤조올(벤젠)	0	0	0	0
27072000	- 톨루올(톨루엔)	0	0	0	0
27073000	- 크실롤(크실렌)	0	0	0	0
27074000	- 나프탈렌	0	0	0	0
27075000	-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7079100	- - 크레오소트(creosote)유	0	0	0	0
27079910	- - - 카본 블랙(carbon black) 공급 원료	0	0	0	0
27079990	- - - 기타	0	0	0	0
27081000	- 피치(pitch)	0	0	0	0
27082000	- 피치코크스(pitch cokes)	0	0	0	0
27090010	- 석유	0	0	0	0
27101920	- - - 톱트 크루즈(Topped crudes)	5	5	5	0
27101930	- - - 카본 블랙 공급 원료	0	0	0	0
27101941	- - - - 윤활유 재료원료	5	5	5	0
27101942	- - - - 항공기 엔진용의 윤활유	5	5	5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7101943	- - - - 그 밖의 윤활유	5	5	5	0
27101944	- - - - 윤활 그리스	5	5	5	0
27101950	- - - 유압 제동액	5	5	5	0
27101960	- - - 변환기와 차단기 유	5	5	5	0
27101971	- - - - 자동차용 디젤유	5	5	5	0
27101972	- - - - 그 밖의 디젤유	5	5	5	0
27101979	- - - - 연료유	0	0	0	0
27101981	- - - 항공유(제트연료)(인화점이 섭씨 23 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27101982	- - - 항공유(제트연료)(인화점이 섭씨 23 도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27101983	- - - 그 밖의 등유	5	5	5	0
27101989	- - - 그 밖의 중유와 조제품	5	5	5	0
27101990	- - - 기타	5	5	5	0
27102000	- 석유 및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0	0	0	0
27111100	- - 천연가스	0	0	0	0
27111200	- - 프로판	0	0	0	0
27111300	- - 부탄	0	0	0	0
27111410	- - - 에틸렌	0	0	0	0
27111490	- - - 기타	0	0	0	0
27111900	- - 기타	0	0	0	0
27112110	- - -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것	0	0	0	0
27112190	- - - 기타	0	0	0	0
27112900	- - 기타	0	0	0	0
27121000	- 석유젤리	0	0	0	0
2712200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7129010	- - 파라핀왁스	0	0	0	0
27129090	- - 기타	0	0	0	0
27131100	- -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0	0	0	0
27131200	- - 하소(煆燒)한 것	0	0	0	0
27132000	- 석유역청(瀝青)	0	0	0	0
27139000	-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0	0	0	0
27141000	- 역청질혈암 또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0	0	0	0
27149000	- 기타	0	0	0	0
27150000	역청질(瀝青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青), 석유역청(瀝青),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 컷백)]	0	0	0	0
27160000	전기에너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011000	- 염소	0	0	0	0
28012000	- 요드	0	0	0	0
28013000	- 플루오르, 브롬	0	0	0	0
28020000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	0	0	0	0
28030020	- 아세틸렌 블랙	0	0	0	0
28030040	- 그 밖의 카본 블랙	0	0	0	0
28030090	- 기타	0	0	0	0
28041000	- 수소	0	0	0	0
28042100	- - 아르곤	0	0	0	0
28042900	- - 기타	0	0	0	0
28043000	- 질소	0	0	0	0
28044000	- 산소	0	0	0	0
28045000	- 붕소, 텔루르	0	0	0	0
28046100	- -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28046900	- - 기타	0	0	0	0
28047000	- 인	0	0	0	0
28048000	- 비소	0	0	0	0
28049000	- 셀렌	0	0	0	0
28051100	- - 나트륨	0	0	0	0
28051200	- - 칼슘	0	0	0	0
28051900	- - 기타	0	0	0	0
2805300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8054000	- 수은	0	0	0	0
28061000	- 염화수소(염산)	0	0	0	0
28062000	- 클로로황산	0	0	0	0
28070000	황산, 발연황산	5	5	5	0
28080000	질산, 황질산	0	0	0	0
28091000	- 오산화인	0	0	0	0
28092031	- - - 차인산(次燐酸)	0	0	0	0
28092039	- - - 기타	0	0	0	0
28092091	- - - 차인산(次燐酸)	0	0	0	0
28092099	- - - 기타	0	0	0	0
28100000	붕소의 산화물, 붕산	0	0	0	0
28111100	-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0	0	0	0
28111910	- - - 비산	0	0	0	0
28111990	- - - 기타	0	0	0	0
28112100	- - 이산화탄소	0	0	0	0
28112210	- - - 이산화규소 분말	0	0	0	0
28112290	- - - 기타	0	0	0	0
28112910	- - - 오산화 비소	0	0	0	0
28112920	- - - 이산화황	0	0	0	0
28112990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121000	-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0	0	0	0
28129000	- 기타	0	0	0	0
28131000	- 이황화탄소	0	0	0	0
28139000	- 기타	0	0	0	0
28141000	- 무수(無水)암모니아	0	0	0	0
28142000	- 암모니아수	0	0	0	0
2815200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0	0	0	0
28153000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0	0	0	0
2816100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0	0	0	0
28164000	-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0	0	0	0
28170010	- 산화아연	0	0	0	0
28170020	- 과산화아연	0	0	0	0
28181000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8182000	-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0	0	0	0
28183000	- 수산화알루미늄	0	0	0	0
28191000	- 삼산화크로뮴	0	0	0	0
28199000	- 기타	0	0	0	0
28201000	- 이산화망간	0	0	0	0
28209000	- 기타	0	0	0	0
28211000	- 산화철과 수산화철	0	0	0	0
28212000	- 어스컬러(earth colour)	0	0	0	0
282200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0	0	0	0
28230000	산화티타늄	0	0	0	0
2824100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0	0	0	0
28249000	- 기타	0	0	0	0
28251000	-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이들의 무기염	0	0	0	0
2825200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0	0	0	0
28253000	-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0	0	0	0
28254000	-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0	0	0	0
28255000	-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0	0	0	0
28256000	-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0	0	0	0
28257000	-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0	0	0	0
28258000	- 산화안티모니	0	0	0	0
28259000	- 기타	0	0	0	0
28261200	-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0	0	0	0
28261900	- - 기타	0	0	0	0
2826300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0	0	0	0
28269000	- 기타	0	0	0	0
28271000	- 염화암모늄	0	0	0	0
28272010	- - 상업용의 것	0	0	0	0
28272090	- - 기타	0	0	0	0
28273100	- - 마그네슘 염화물	0	0	0	0
28273200	- - 알루미늄 염화물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273500	- - 니켈 염화물	0	0	0	0
28273910	- - - 바륨이나 코발트의 것	0	0	0	0
28273920	- - - 철의 것	0	0	0	0
28273990	- - - 기타	0	0	0	0
28274100	- - 구리의 것	0	0	0	0
28274900	- - 기타	0	0	0	0
28275100	-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0	0	0	0
28275900	- - 기타	0	0	0	0
28276000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0	0	0	0
28281000	- 상업용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0	0	0	0
28289010	-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0	0	0	0
28289090	- - 기타	0	0	0	0
28291100	- - 염소산나트륨	0	0	0	0
28291900	- - 기타	0	0	0	0
28299010	- - 과염소산나트륨	0	0	0	0
28299090	- - 기타	0	0	0	0
28301000	- 황화나트륨	0	0	0	0
28309010	- - 황화 카드뮴이나 황화 아연	0	0	0	0
28309090	- - 기타	0	0	0	0
28311000	-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0	0	0	0
28319000	- 기타	0	0	0	0
28321000	- 아황산나트륨	0	0	0	0
28322000	- 그 밖의 아황산염	0	0	0	0
28323000	- 티오황산염	0	0	0	0
28331100	- - 황산이나트륨	0	0	0	0
28331900	- - 기타	0	0	0	0
28332100	- - 황산마그네슘	0	0	0	0
28332210	- - - 상업용의 것	0	0	0	0
28332290	- - - 기타	0	0	0	0
28332400	- - 황산 니켈	0	0	0	0
28332500	- - 황산구리	0	0	0	0
28332700	- - 황산바륨	0	0	0	0
28332920	- - - 삼염기성황산연	0	0	0	0
28332930	- - - 크로뮴의 것	0	0	0	0
28332990	- - - 기타	0	0	0	0
28333000	- 명반	0	0	0	0
2833400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0	0	0	0
28341000	- 아질산염	0	0	0	0
28342100	- - 질산칼륨	0	0	0	0
28342910	- - - 비스무트의 것	0	0	0	0
28342990	- - - 기타	0	0	0	0
2835100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0	0	0	0
28352200	- -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352400	- - 인산칼륨	0	0	0	0
28352510	- - - 사료용	0	0	0	0
28352590	- - - 기타	0	0	0	0
28352600	- - 그 밖의 인산칼슘	0	0	0	0
28352910	- - - 삼나트륨의 것	0	0	0	0
28352990	- - - 기타	0	0	0	0
28353110	- - - 식품용	0	0	0	0
28353190	- - - 기타	0	0	0	0
28353910	- - - 피로인산사나트륨	0	0	0	0
28353990	- - - 기타	0	0	0	0
28362000	- 탄산이나트륨	0	0	0	0
2836300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0	0	0	0
28364000	- 탄산칼륨	0	0	0	0
28365000	- 탄산칼슘	5	5	5	0
28366000	- 탄산바륨	0	0	0	0
28369100	- - 탄산리튬	0	0	0	0
28369200	- - 탄산스트론튬	0	0	0	0
28369910	- - -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 암모늄	0	0	0	0
28369920	- - - 탄산납	0	0	0	0
28369990	- - - 기타	0	0	0	0
28371100	- - 염소산나트륨	0	0	0	0
28371900	- - 기타	0	0	0	0
28372000	- 시안착염	0	0	0	0
28391100	- - 메타규산나트륨	0	0	0	0
28391910	- - - 규산 나트륨	0	0	0	0
28391990	- - - 기타	0	0	0	0
28399000	- 기타	0	0	0	0
28401100	- - 무수물(無水物)	0	0	0	0
28401900	- - 기타	0	0	0	0
28402000	- 그 밖의 붕산염	0	0	0	0
2840300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0	0	0	0
28413000	- 중크롬산나트륨	0	0	0	0
28415000	-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0	0	0	0
28416100	- - 과망간산칼륨	0	0	0	0
28416900	- - 기타	0	0	0	0
28417000	- 몰리브덴산염	0	0	0	0
2841800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0	0	0	0
28419000	- 기타	0	0	0	0
28421000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0	0	0	0
28429010	- - 아비산나트륨	0	0	0	0
28429020	- - 구리나 크로뮴 염	0	0	0	0
28429030	- - 그 밖의 풀민산염, 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8429090	- - 기타	0	0	0	0
28431000	- 콜로이드 귀금속	0	0	0	0
28432100	- - 질산은	0	0	0	0
28432900	- - 기타	0	0	0	0
28433000	- 금 화합물	0	0	0	0
28439000	- 그 밖의 화합물, 아말감(amalgam)	0	0	0	0
28441010	- -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0	0	0	0
28441090	- - 기타	0	0	0	0
28442010	- -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0	0	0	0
28442090	- - 기타	0	0	0	0
28443010	- -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0	0	0	0
28443090	- - 기타	0	0	0	0
28444011	- - - 라듐과 그 염	0	0	0	0
28444019	- - - 기타	0	0	0	0
28444090	- - 기타	0	0	0	0
2844500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0	0	0	0
2845100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0	0	0	0
28459000	- 기타	0	0	0	0
28461000	- 세륨화합물	0	0	0	0
28469000	- 기타	0	0	0	0
28470010	- 액체 형태의 것	0	0	0	0
28470090	- 기타	0	0	0	0
28480000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0	0	0	0
28491000	- 탄화칼슘	0	0	0	0
28492000	- 탄화규소	0	0	0	0
28499000	- 기타	0	0	0	0
28500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0	0	0	0
28521010	- - 황산수은	0	0	0	0
28521020	-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수은 화합물	0	0	0	0
28521090	- - 기타	0	0	0	0
28529010	- - 수은 타닌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8529090	- - 기타	0	0	0	0
28530000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0	0	0	0
29011000	- 포화비환식탄화수소	0	0	0	0
29012100	- - 에틸렌	0	0	0	0
29012200	- - 프로펜(프로필렌)	0	0	0	0
29012300	- -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0	0	0	0
29012400	- -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012910	- - - 아세틸렌	0	0	0	0
29012990	- - - 기타	0	0	0	0
29021100	- - 시클로헥산	0	0	0	0
29021900	- - 기타	0	0	0	0
29022000	- 벤젠	0	0	0	0
29023000	- 톨루엔	0	0	0	0
29024100	- - 오르토-크실렌	0	0	0	0
29024200	- - 메타-크실렌	0	0	0	0
29024300	- - 파라-크실렌	0	0	0	0
29024400	- - 혼합크실렌이성체	0	0	0	0
29025000	- 스티렌	0	0	0	0
29026000	- 에틸벤젠	0	0	0	0
29027000	- 큐멘	0	0	0	0
29029010	- - 도데실벤젠	0	0	0	0
29029020	- - 그 밖의 알킬벤젠	0	0	0	0
29029090	- - 기타	0	0	0	0
29031110	- - - 염화 메틸	0	0	0	0
29031190	- - - 기타	0	0	0	0
29031200	-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0	0	0	0
29031300	-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0	0	0	0
29031400	- - 사염화탄소	0	0	0	0
29031500	-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0	0	0	0
29031910	- - - 1,2-디클로로프로판(프로필렌 디클로라이드)과 디클로로부탄	0	0	0	0
29031920	- - -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0	0	0	0
29031990	- - - 기타	0	0	0	0
29032100	-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0	0	0	0
29032200	- - 삼염화에틸렌	0	0	0	0
29032300	-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0	0	0	0
29032900	- - 기타	0	0	0	0
29033100	- -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0	0	0	0
29033910	- - - 메틸 브로마이드	0	0	0	0
29033990	- - - 기타	0	0	0	0
29037100	-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0	0	0	0
29037200	-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0	0	0	0
29037300	-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0	0	0	0
29037400	- -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0	0	0	0
29037500	-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0	0	0	0
290376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과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0	0	0	0
29037700	- -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0	0	0	0
29037800	-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0	0	0	0
29037900	- - 기타	0	0	0	0
29038100	-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포함한다]				
29038200	- - 앨드린(ISO), 클로르덴(ISO)과 헵타클로르(ISO)	0	0	0	0
29038900	- - 기타	0	0	0	0
29039100	-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과 파라-디클로로벤젠	0	0	0	0
29039200	- -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0	0	0	0
29039900	- - 기타	0	0	0	0
29041000	- 술폰화유도체,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0	0	0	0
29042010	- - 트리니트로톨루엔	0	0	0	0
29042090	- - 기타	0	0	0	0
29049000	- 기타	0	0	0	0
29051100	- - 메탄올(메틸알코올)	0	0	0	0
29051200	-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0	0	0	0
29051300	-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0	0	0	0
29051400	- - 그 밖의 부탄올	0	0	0	0
29051600	-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0	0	0	0
29051700	-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0	0	0	0
29051900	- - 기타	0	0	0	0
29052200	-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0	0	0	0
29052900	- - 기타	0	0	0	0
29053100	-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0	0	0	0
29053200	-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0	0	0	0
29053900	- - 기타	0	0	0	0
29054100	-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0	0	0	0
29054200	- - 펜타에리트리톨	0	0	0	0
29054300	- - 만니톨	0	0	0	0
29054400	-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0	0	0	0
29054500	- - 글리세롤	0	0	0	0
29054900	- - 기타	0	0	0	0
29055100	- - 에스클로비놀(INN)	0	0	0	0
29055900	- - 기타	0	0	0	0
29061100	- - 멘톨	0	0	0	0
29061200	- -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0	0	0	0
29061300	- - 스테롤과 이노시톨	0	0	0	0
29061900	- - 기타	0	0	0	0
29062100	- - 벤질알코올	0	0	0	0
29062900	- - 기타	0	0	0	0
29071100	- - 페놀(석탄산)과 그 염	0	0	0	0
29071200	- - 크레졸과 그 염	0	0	0	0
29071300	- -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0	0	0	0
29071500	- - 나프톨과 이들의 염	0	0	0	0
29071900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072100	- - 레소르시놀과 그 염	0	0	0	0
29072200	-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0	0	0	0
29072300	- - 4,4 '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0	0	0	0
29072910	- - - 페놀-알코올	0	0	0	0
29072990	- - - 기타	0	0	0	0
29081100	- - 펜타클로로페놀(ISO)	0	0	0	0
29081900	- - 기타	0	0	0	0
29089100	- - 디노셉(ISO)과 그 염	0	0	0	0
29089200	- -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0	0	0	0
29089900	- - 기타	0	0	0	0
29091100	- - 디에틸에테르	0	0	0	0
29091900	- - 기타	0	0	0	0
29092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2909300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29094100	-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0	0	0	0
29094300	-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0	0	0	0
29094400	-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0	0	0	0
29094900	- - 기타	0	0	0	0
2909500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29096000	-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2910100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0	0	0	0
2910200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0	0	0	0
2910300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0	0	0	0
29104000	- 디엘드린(ISO, INN)	0	0	0	0
29109000	- 기타	0	0	0	0
291100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29121110	- - - 포르말린	0	0	0	0
29121190	- - - 기타	0	0	0	0
29121200	-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0	0	0	0
29121910	- - - 부탄알	0	0	0	0
29121990	- - - 기타	0	0	0	0
29122100	- - 벤즈알데히드	0	0	0	0
29122900	- - 기타	0	0	0	0
29124100	-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124200	-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0	0	0	0
29124900	- - 기타	0	0	0	0
2912500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0	0	0	0
29126000	- 파라포름알데히드	0	0	0	0
291300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29141100	- - 아세톤	0	0	0	0
29141200	-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0	0	0	0
29141300	-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0	0	0	0
29141900	- - 기타	0	0	0	0
29142200	- -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0	0	0	0
29142300	-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0	0	0	0
29142910	- - - 캄퍼	0	0	0	0
29142990	- - - 기타	0	0	0	0
29143100	-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0	0	0	0
29143900	- - 기타	0	0	0	0
29144000	-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0	0	0	0
29145000	-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0	0	0	0
29146100	- - 안트라퀴논	0	0	0	0
29146900	- - 기타	0	0	0	0
29147000	-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0	0	0	0
29151100	- - 포름산	0	0	0	0
29151200	- - 포름산의 염	0	0	0	0
29151300	- - 포름산의 에스테르	0	0	0	0
29152100	- - 초산	0	0	0	0
29152400	- - 무수(無水)초산	0	0	0	0
29152910	- - - 초산나트륨, 초산코발트	0	0	0	0
29152990	- - - 기타	0	0	0	0
29153100	- - 초산에틸	0	0	0	0
29153200	- - 초산비닐	0	0	0	0
29153300	- - 초산노르말부틸	0	0	0	0
29153600	- - 초산디노셉(ISO)	0	0	0	0
29153910	- - - 초산이소부틸	0	0	0	0
29153920	- - - 초산 2-에톡시에틸	0	0	0	0
29153990	- - - 기타	0	0	0	0
2915400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55000	-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56000	-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57010	- -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57020	- - 스테아르산	0	0	0	0
29157030	- - 스테아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159010	- - 염화아세틸	0	0	0	0
29159020	- - 라우르산, 미리스트 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59090	- - 기타	0	0	0	0
29161100	- - 아크릴산과 그 염	0	0	0	0
29161200	-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0	0	0	0
29161300	-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0	0	0	0
29161410	- - - 메타아크릴산메틸	0	0	0	0
29161490	- - - 기타	0	0	0	0
29161500	- - 올레산・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61600	- - 비나파크릴(ISO)	0	0	0	0
29161900	- - 기타	0	0	0	0
29162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163100	- -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63200	-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0	0	0	0
29163400	-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0	0	0	0
29163910	- - - 2,4-디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과 그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63920	- - -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0	0	0	0
29163990	- - - 기타	0	0	0	0
29171100	- -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71210	- - - 아디프산 디옥틸	0	0	0	0
29171290	- - - 기타	0	0	0	0
29171300	- - 아젤라산・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71400	- - 무수말레산	0	0	0	0
29171900	- - 기타	0	0	0	0
29172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173500	- - 무수프탈산	0	0	0	0
29173600	- - 테레프탈산과 그 염	0	0	0	0
29173700	- - 테레프탈산디메틸	0	0	0	0
29173910	- - - 트리옥틸트리멜리테이트	0	0	0	0
29173920	- - - 그 밖의 프탈 화합물(가소제용과 무수프탈산의 에스테르로 한정한다)	0	0	0	0
29173990	- - - 기타	0	0	0	0
29181100	- -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81200	- - 타르타르산	0	0	0	0
29181300	-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81400	- - 시트르산	0	0	0	0
29181510	- - - 시트르산 칼슘	0	0	0	0
29181590	- - - 기타	0	0	0	0
29181600	- -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181800	-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0	0	0	0
29181900	- - 기타	0	0	0	0
29182100	- - 살리실산과 그 염	0	0	0	0
29182200	-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82300	-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0	0	0	0
29182910	- - - 페놀의 알킬술폰 에스테르	0	0	0	0
29182990	- - - 기타	0	0	0	0
29183000	-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189100	- -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0	0	0	0
29189900	- 기타	0	0	0	0
2919100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0	0	0	0
29199000	- 기타	0	0	0	0
29201100	- -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0	0	0	0
29201900	- - 기타	0	0	0	0
29209010	- - 디메틸황산	0	0	0	0
29209090	- - 기타	0	0	0	0
29211100	- - 메틸아민·디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0	0	0	0
29211900	- - 기타	0	0	0	0
29212100	-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0	0	0	0
29212200	-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0	0	0	0
29212900	- - 기타	0	0	0	0
29213000	-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이나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29214100	- - 아닐린과 그 염	0	0	0	0
29214200	- -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0	0	0	0
29214300	-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29214400	-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29214500	-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29214600	- -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와 펜터민(INN), 이들의 염	0	0	0	0
29214900	- - 기타	0	0	0	0
29215100	- -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29215900	- - 기타	0	0	0	0
29221100	-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0	0	0	0
29221200	-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0	0	0	0
29221300	- -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0	0	0	0
29221400	- -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221910	- - - 에탐부톨과 그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항결핵제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221920	- - - 디-2-아미노-엔-부틸-알코올	0	0	0	0
29221990	- - - 기타	0	0	0	0
29222100	-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0	0	0	0
29222900	- - 기타	0	0	0	0
29223100	- -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과 노르메타돈(INN), 이들의 염	0	0	0	0
29223900	- - 기타	0	0	0	0
29224210	- - - 글루탐산	0	0	0	0
29224300	- - 안트라닐산과 그 염	0	0	0	0
29224400	- - 틸리딘(INN)과 그 염	0	0	0	0
29224910	- - - 메페남산과 그 염	0	0	0	0
29224990	- - - 기타	0	0	0	0
29225010	- -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0	0	0	0
29225090	- - 기타	0	0	0	0
29231000	- 콜린과 그 염	0	0	0	0
29232010	- - 레시틴(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29232090	- - 기타	0	0	0	0
29239000	- 기타	0	0	0	0
29241100	- - 메프로바메이트(INN)	0	0	0	0
29241200	-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0	0	0	0
29241900	- - 기타	0	0	0	0
29242110	- - - 4-에톡시페닐유리아 (둘신)	0	0	0	0
29242120	- - - 디우론과 모뉴론	0	0	0	0
29242190	- - - 기타	0	0	0	0
29242300	-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0	0	0	0
29242400	- - 에치나메이트(INN)	0	0	0	0
29242910	- - - 아스파탐	0	0	0	0
29242920	- - - 부틸페닐메틸 카바메이트, 메틸 이소프로필 페닐 카바메이트	0	0	0	0
29242990	- - - 기타	0	0	0	0
29251100	- - 사카린과 그 염	0	0	0	0
29251200	- - 구루테치미드(INN)	0	0	0	0
29251900	- - 기타	0	0	0	0
29252100	- - 클로르디메포름(ISO)	0	0	0	0
29252900	- - 기타	0	0	0	0
29261000	- 아크릴로니트릴	0	0	0	0
2926200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0	0	0	0
29263000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0	0	0	0
29269000	- 기타	0	0	0	0
29270010	- 아조디카본아미드	0	0	0	0
29270090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280010	- 리누론	0	0	0	0
29280090	- 기타	0	0	0	0
29291010	- -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엠디아이)	0	0	0	0
29291020	-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0	0	0	0
29291090	- - 기타	0	0	0	0
29299010	- - 사이클라민산나트륨	0	0	0	0
29299020	- - 그 밖의 사이클러메이트	0	0	0	0
29299090	- - 기타	0	0	0	0
29302000	-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0	0	0	0
29303000	-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0	0	0	0
29304000	- 메티오닌	0	0	0	0
29305000	-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0	0	0	0
29309010	- - 디티오탄산염	0	0	0	0
29309090	- - 기타	0	0	0	0
29311010	- - 테트라메틸납	0	0	0	0
29311020	- - 테트라에틸납	0	0	0	0
29312000	- 트리부틸틴 화합물	0	0	0	0
29319020	- - 엔-(포스포노메틸) 글리세린과 그 염	0	0	0	0
29319030	- - 에테폰	0	0	0	0
29319041	- - - 액체 형태의 것	0	0	0	0
29319049	- - - 기타	0	0	0	0
29319090	- - 기타	0	0	0	0
29321100	- - 테트라히드로푸란	0	0	0	0
29321200	-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0	0	0	0
29321300	- -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0	0	0	0
29321900	- - 기타	0	0	0	0
29322000	- 락톤	0	0	0	0
29329100	- - 이소사프롤	0	0	0	0
29329200	-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0	0	0	0
29329300	- - 피페로날	0	0	0	0
29329400	- - 사프롤	0	0	0	0
29329500	-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0	0	0	0
29329910	- - - 카보퓨란	0	0	0	0
29329990	- - - 기타	0	0	0	0
29331110	- - - 디프론(아날긴)	0	0	0	0
29331190	- - - 기타	0	0	0	0
29331900	- - 기타	0	0	0	0
29332100	-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0	0	0	0
29332910	- - - 시메티딘	0	0	0	0
29332990	- - - 기타	0	0	0	0
29333100	- - 피리딘과 그 염	0	0	0	0
29333200	- - 피페리딘과 그 염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333300	- -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이들의 염	0	0	0	0
29333910	- - - 클로르페니라민과 이소니아지드	0	0	0	0
29333930	- - - 파라콰트 염	0	0	0	0
29333990	- - - 기타	0	0	0	0
29334100	- - 레보파놀(INN)과 그 염	0	0	0	0
29334900	- - 기타	0	0	0	0
29335200	-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0	0	0	0
29335300	- -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0	0	0	0
29335400	-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 이들의 염	0	0	0	0
29335500	- -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 및 지페프롤(INN), 이들의 염	0	0	0	0
29335910	- - - 다이아지논	0	0	0	0
29335990	- - - 기타	0	0	0	0
29336100	- - 멜라민	0	0	0	0
29336900	- - 기타	0	0	0	0
29337100	-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0	0	0	0
29337200	-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0	0	0	0
29337900	- - 그 밖의 락탐	0	0	0	0
29339100	- -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이들의 염	0	0	0	0
29339910	- - - 메벤다졸이나 파르벤다졸	0	0	0	0
29339990	- - - 기타	0	0	0	0
29341000	-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0	0	0	0
2934200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43000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49100	- -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이들의 염				
29349910	- - - 핵산과 그 염	5	5	5	0
29349920	- - - 술톤, 술탐, 딜티아젬	0	0	0	0
29349930	- - - 6-아미노페니실린산	0	0	0	0
29349940	- - - 3-아지도-3-디옥시티미딘	0	0	0	0
29349950	- - - 옥사디아존(최저 순도가 전 중량의 100 분의 94 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29349990	- - - 기타	0	0	0	0
29350000	술폰아미드	0	0	0	0
29362100	- -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362200	- -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362300	- -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362400	-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362500	- -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362600	- -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362700	- - 비타민 C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362800	- - 비타민 E 와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362900	- -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0	0	0	0
2936900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0	0	0	0
29371100	- -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0	0	0
29371200	- - 인슐린과 그 염	0	0	0	0
29371900	- - 기타	0	0	0	0
29372100	- -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 및 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0	0	0	0
29372200	-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0	0	0	0
29372300	- -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0	0	0	0
29372900	- - 기타	0	0	0	0
2937500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0	0	0	0
29379010	-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의 것	0	0	0	0
29379090	- - 기타	0	0	0	0
2938100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0	0	0	0
29389000	- 기타	0	0	0	0
29391110	- - - 양귀비 줄기 농축물과 이들의 염	0	0	0	0
29391190	- - - 기타	0	0	0	0
29391900	- - 기타	0	0	0	0
29392010	- - 키닌제제와 그 염	0	0	0	0
29392090	- - 기타	0	0	0	0
29393000	- 카페인과 그 염	0	0	0	0
29394100	- - 에페드린과 그 염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29394200	-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0	0	0	0
29394300	- - 캐친(INN)과 그 염	0	0	0	0
29394400	- - 놀에페드린과 그 염	0	0	0	0
29394900	- - 기타	0	0	0	0
29395100	- - 페네틸린(INN)과 그 염	0	0	0	0
29395900	- - 기타	0	0	0	0
29396100	-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0	0	0	0
29396200	- - 엘고타민(INN)과 그 염	0	0	0	0
29396300	- - 리세르그산과 그 염	0	0	0	0
29396900	- - 기타	0	0	0	0
29399110	- - - 코카인과 그 유도체	0	0	0	0
29399190	- - - 기타	0	0	0	0
29399910	- - - 황산 니코틴	0	0	0	0
29399990	- - - 기타	0	0	0	0
294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에 한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과 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 또는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0	0	0
29411090	- - 기타	0	0	0	0
2941200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29413000	-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2941400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29415000	-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0	0	0	0
29419000	- 기타	0	0	0	0
2942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0	0	0	0
30012000	-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0	0	0	0
30019000	- 기타	0	0	0	0
30021010	- - 혈장(단백)용액	0	0	0	0
30021030	- - 면역혈청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30021040	- - 헤모글로빈 가루	0	0	0	0
30021090	- - 기타	0	0	0	0
30022010	- - 파상풍톡소이드	0	0	0	0
30022020	- - 백일해(百日咳)・홍역・뇌수막염이나 소아마비 백신	0	0	0	0
30022090	- - 기타	0	0	0	0
30023000	- 백신(동물용의약품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29000	- 기타	0	0	0	0
30031010	- - 아목시실린 (INN)과 그 염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0031020	- - 암피실린 (INN)과 그 염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0031090	- - 기타	0	0	0	0
30032000	-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0	0	0	0
300331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0	0	0
30033900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0034000	-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호르몬 또는 제 2937 호의 그 밖의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0	0	0	0
30039000	- 기타	0	0	0	0
30041019	- - - 기타	0	0	0	0
30041021	- - - 연고 형태의 것	0	0	0	0
30041029	- - - 기타	0	0	0	0
30042010	- - 겐타마이신・린코마이신・설파메톡사졸이나 이들의 유도체(복용용이나 연고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30042039	- - - 기타	0	0	0	0
30042079	- - - 기타	0	0	0	0
30042091	- - - 복용용의 것이나 연고 형태의 것	0	0	0	0
30042099	- - - 기타	0	0	0	0
300431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0	0	0	0
30043210	- - - 덱사메타손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0	0	0	0
30043240	- - - 호박산히드로코르티손나트륨이나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니드를 함유한 것	0	0	0	0
30043290	- - - 기타	0	0	0	0
30043900	- - 기타	0	0	0	0
30044010	- - 모르핀이나 그 유도체를 함유한 것(주사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4020	- - 염산 키니네나 염화 디히드로퀴닌을 함유한 것(주사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4030	- - 황산 키니네나 중황산염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4040	- - 키니네나 그 염이나 그 밖의 말라리아 예방물질을 함유한 것(소호 제 3004.40.20 호나 제 3004.40.3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0	0	0
30044050	- - 파파베린이나 베르베린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4060	- - 데오피린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4070	- - 황산 아트로핀을 함유한 것	0	0	0	0
30044090	- - 기타	0	0	0	0
30045010	- - 아동용으로 적합한 것(시럽 형태로 한정한다)	0	0	0	0
30045021	- - - 복용용의 것	0	0	0	0
30045029	- - - 기타	0	0	0	0
30045091	- - - 비타민 A・B 나 C 를 함유한 것	0	0	0	0
30045099	- - - 기타	0	0	0	0
30049010	- - 경피흡수시스템 패치(암이나 심장질환 치료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9020	- - 내복용 멸균수(밀봉된 제약용에 한정한다)	0	0	0	0
30049030	- - 소독제	0	0	0	0
30049041	- - - 국소마취제를 함유한 것	0	0	0	0
30049049	- - - 기타	0	0	0	0
30049051	- - - 아세틸살리실산,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다이피론 (INN)을 함유하는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9052	- - -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을 함유한 것	0	0	0	0
30049053	- - - 디클로페낙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9054	- - - 피록시캄(INN)이나 이부프로펜을 함유한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0049055	- - - 기타[도찰제(塗擦制)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9059	- - - 기타	0	0	0	0
30049061	- - - 알테미시닌, 알테수네이트나 클로로퀸을 함유한 것	0	0	0	0
30049062	- - - 프리마퀸을 함유한 것	0	0	0	0
30049063	- - - - 한약(한약제)	0	0	0	0
30049069	- - - - 기타	0	0	0	0
30049071	- - - 피페라진이나 메벤다졸(INN)을 함유한 것	0	0	0	0
30049072	- - - - 한약(한약제)	0	0	0	0
30049079	- - - - 기타	0	0	0	0
30049081	- - - 디페록사민을 함유한 것(주사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9082	- - - 항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약품	0	0	0	0
30049089	- - - 기타	0	0	0	0
30049091	- - - 염화나트륨이나 포도당을 함유하는 것(주입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9092	- - - 소르비톨이나 살부타몰을 함유하는 것(주입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9093	- - - 소르비톨이나 살부타몰을 함유하는 것(그 밖의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9094	- - - 시메티딘 (INN)이나 라니티딘 (INN)을 함유한 것(주사용은 제외한다)	0	0	0	0
30049095	- - - 페노바르비탈, 디아제팜이나 클로르프로마진을 함유한 것(주사용이나 주입용은 제외한다)	0	0	0	0
30049096	- - - 점비액(點鼻液) 약품(나파졸린, 키실로메타졸린이나 옥시메타졸린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49098	- - - - 한약(한약제)	0	0	0	0
30049099	- - - - 기타	0	0	0	0
30051010	- -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	5	5	5	0
30051090	- - 기타	0	0	0	0
30059010	- - 붕대	0	0	0	0
30059020	- - 거즈	0	0	0	0
30059090	- - 기타	5	0	0	0
30061010	- -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30061090	- - 기타	0	0	0	0
3006200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0	0	0	0
30063010	- - 황산 바륨(복용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63020	- - 미생물로 된 시약(동물용 생물학적 진단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0063030	- - 그 밖의 미생물 진단용 시약	0	0	0	0
30063090	- - 기타	0	0	0	0
30064010	-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0	0	0	0
30064020	- - 뼈 형성용 시멘트	0	0	0	0
30065000	- 구급상자와 구급대	0	0	0	0
30066000	- 제 2937 호의 호르몬, 그 밖의 제품 또는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006700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0	0	0	0
30069100	-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0	0	0	0
31010011	- - 액체 형태의 보조 비료(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1010012	- - 기타(화학적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1010019	- - 기타	0	0	0	0
31010091	- - 액체 형태의 보조 비료(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1010092	- - 기타[동물성 물질(구아노를 제외한다)로 화학적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1010099	- - 기타	0	0	0	0
3102100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31022100	- - 황산암모늄	0	0	0	0
31022900	- - 기타	0	0	0	0
3102300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3102400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1025000	- 질산나트륨	0	0	0	0
31026000	-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0	0	0	0
31028000	-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1029000	-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0	0	0	0
31039090	- - 기타	0	0	0	0
31042000	- 염화칼륨	0	0	0	0
31043000	- 황산칼륨	0	0	0	0
31049000	- 기타	0	0	0	0
3105300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0	0	0	0
3105400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0	0	0	0
31055100	-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0	0	0	0
31055900	- - 기타	0	0	0	0
31056000	-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0	0	0	0
31059000	- 기타	0	0	0	0
32011000	-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0	0	0	0
32012000	-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0	0	0	0
32019010	- - 갬비어(gambier)	0	0	0	0
32019090	- - 기타	0	0	0	0
32021000	- 합성 유기유연제	0	0	0	0
32029000	- 기타	0	0	0	0
32030010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0	0	0	0
32030090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2041110	- - - 정제하지 않은 것	0	0	0	0
32041190	- - - 기타	0	0	0	0
32041210	- - - 산성 염료	0	0	0	0
32041290	- - - 기타	0	0	0	0
32041300	- -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400	- -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500	- -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600	- -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700	- -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0	0	0	0
32041900	- - 기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제 3204.19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	0	0	0
32042000	-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0	0	0	0
32049000	- 기타	0	0	0	0
32050000	레이크 안료,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2061110	- - - 안료	0	0	0	0
32061190	- - - 기타	0	0	0	0
32061910	- - - 안료	0	0	0	0
32061990	- - - 기타	0	0	0	0
32062010	-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재료로 한 크로뮴 옐로・크로뮴 그린・몰리브덴오렌지 또는 레드	0	0	0	0
32062090	- - 기타	0	0	0	0
32064110	- - - 조제품	0	0	0	0
32064190	- - - 기타	0	0	0	0
32064210	- - - 조제품	0	0	0	0
32064290	- - - 기타	0	0	0	0
32064910	- - - 조제품	0	0	0	0
32064990	- - - 기타	0	0	0	0
32065010	- - 조제품	0	0	0	0
32065090	- - 기타	0	0	0	0
32071000	-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0	0	0
32072010	- - 에나멜 유약	0	0	0	0
32072090	- - 기타	0	0	0	0
32073000	- 액상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0	0	0
32074000	-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2081011	- - - 치과용의 것	0	0	0	0
32081019	- - - 기타	5	0	0	0
32081090	- - 기타				
3208109010	- - - 선체(船體)의 오염이나 부식 방지용 페인트	5	5	5	0
32082040	- - 선체(船體)의 오염이나 부식 방지용 페인트	5	5	5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2082070	-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치과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2082090	- - 기타				
3208209010	- -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내열성(耐熱性)이 100 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2089011	- - - 치과용의 것	0	0	0	0
32089019	- - - 기타	5	5	5	0
32089021	- - - 치과용의 것	0	0	0	0
32089090	- - 기타				
3208909010	- - - 선체(船體)의 오염이나 부식 방지용 페인트	5	5	5	0
32091010	-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3209101010	- - - 내열성(耐熱性)이 100 도를 초과하는 것	0	0	0	0
32091040	- - 가죽 페인트	0	0	0	0
32091050	- - 선체(船體)의 오염이나 부식 방지용 페인트	0	0	0	0
32099000	- 기타				
3209900010	-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내열성(耐熱性)이 100 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209900020	- - 가죽 페인트	0	0	0	0
3209900030	- - 선체(船體)의 오염이나 부식 방지용 페인트	0	0	0	0
32100010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0	0	0	0
32100020	- 디스템퍼(distemper)	0	0	0	0
32100030	-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0	0	0	0
32100091	- - 선체(船體)의 오염이나 부식 방지용 페인트	0	0	0	0
32110000	조제 드라이어	0	0	0	0
32121000	- 스탬프용 박(箔)	0	0	0	0
32129011	- - - 알루미늄 페이스트	0	0	0	0
32129013	- - - 기름에 분산시킨 연백(鉛白)	0	0	0	0
32129014	- - - 기타(가죽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2129019	- - - 기타	0	0	0	0
32129021	- -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0	0	0	0
32129022	- - - 기타(염료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2129029	- - - 기타	0	0	0	0
32131000	- 세트인 것	0	0	0	0
32139000	- 기타	0	0	0	0
32141000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0	0	0	0
32149000	- 기타	0	0	0	0
32151110	- - - 자외선 경화형 잉크	0	0	0	0
32151190	- - - 기타	0	0	0	0
32151900	- - 기타	0	0	0	0
32159010	- - 카본 매스(mass)(일회용 카본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2159060	- - 제도용 잉크와 필기용 잉크	0	0	0	0
32159070	- - 제 8472 호의 등사기용으로 적합한 잉크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2159090	- - 기타	5	5	5	0
33011200	- - 오렌지유	0	0	0	0
33011300	- - 레몬유	0	0	0	0
33011900	- - 기타	0	0	0	0
33012400	-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0	0	0	0
33012500	- -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0	0	0	0
33012900	- - 기타	0	0	0	0
33013000	- 레지노이드(resinoid)	0	0	0	0
33019010	- -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의약용에 적합한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3019090	- - 기타	0	0	0	0
33021010	- - 방향성(芳香性) 알코올 조제품(알코올 음료 제조용으로 액체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3021020	- - 방향성(芳香性) 알코올 조제품(알코올 음료 제조용으로 그 밖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3021090	- - 기타	5	5	5	0
33029000	- 기타	0	0	0	0
33051010	- - 항진균 성분을 갖고 있는 것	0	0	0	0
33051090	- - 기타	10	10	10	0
33053000	- 헤어 래커(hair lacquer)	0	0	0	0
33061010	- - 예방용 페이스트(paste) 또는 가루	5	0	0	0
33061090	- - 기타	5	5	5	0
33062000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0	0	0	0
33069000	- 기타	0	0	0	0
3307200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0	0	0	0
33074110	- - - 향 가루(incense)(종교의식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3074190	- - - 기타	0	0	0	0
33074910	- - - 실내용 가향 조제품(소독제를 포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33074990	- - - 기타	0	0	0	0
33079010	- - 동물용 화장용품	0	0	0	0
33079030	- -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와 티슈	0	0	0	0
33079040	- - 그 밖의 조제향료 또는 화장품(탈모제를 포함한다)	0	0	0	0
33079050	- -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의 수용액	0	0	0	0
33079090	- - 기타	10	10	10	0
34012020	- - 비누 칩(chips)	0	0	0	0
34012091	- - - 재활용 종이의 부유 잉크 제거용의 것	0	0	0	0
34012099	- - - 기타	0	0	0	0
34021110	- - - 황산화 지방성 알코올	0	0	0	0
34021140	- - - 설폰화 알킬벤젠	0	0	0	0
34021191	- - - - 습윤제(제초제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4021199	- - - - 기타	5	5	5	0
34021210	- - - 습윤제(제초제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4021290	- - - 기타	5	5	5	0
34021310	- - - 하이드록시-터미네이트(Hydroxyl-terminated) 폴리부타디엔	5	0	0	0
34021390	- - - 기타	5	5	5	0
34021910	- - - 소화용 조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0	0	0	0
34021990	- - - 기타	5	5	5	0
34022011	- - - 음이온성 조제계면활성제	0	0	0	0
34022012	- - - 음이온성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5	5	5	0
34022013	- - - 그 밖의 조제계면활성제	5	0	0	0
34022019	- - - 그 밖의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5	5	5	0
34022091	- - - 음이온성 조제계면활성제	0	0	0	0
34022092	- - - 음이온성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0	0	0	0
34022093	- - - 그 밖의 조제계면활성제	0	0	0	0
34022099	- - - 그 밖의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0	0	0	0
34029011	- - - - 습윤제	0	0	0	0
34029012	- - - - 기타	5	0	0	0
34029013	- - - 음이온성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5	5	5	0
34029014	- - - - 습윤제	0	0	0	0
34029015	- - - - 기타	5	5	5	0
34029019	- - - 그 밖의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5	5	5	0
34029091	- - - - 습윤제	0	0	0	0
34029092	- - - - 기타	0	0	0	0
34029093	- - - 음이온성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5	5	5	0
34029094	- - - - 습윤제	0	0	0	0
34029095	- - - - 기타	5	0	0	0
34029099	- - - 그 밖의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5	5	5	0
34031111	- - - - 조제 윤활유	0	0	0	0
34031119	- - - - 기타	0	0	0	0
34031190	- - - 기타	0	0	0	0
34031911	- - - - 항공기 엔진용	0	0	0	0
34031912	- - - - 그 밖의 조제품(실리콘 오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4031990	- - - 기타	5	5	5	0
34039111	- - - - 조제품(실리콘 오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4039119	- - - - 기타	0	0	0	0
34039190	- - - 기타	0	0	0	0
34039911	- - - - 항공기 엔진용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4039912	- - - - 그 밖의 조제품(실리콘 오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404200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0	0	0	0
34049010	- -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0	0	0	0
34049090	- - 기타	0	0	0	0
34051000	-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0	0	0
34052000	-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0	0	0	0
3405300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0	0	0	0
34054010	- -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및 조제 연마가루	0	0	0	0
34054090	- - 기타	0	0	0	0
34059010	- - 금속용 광택제	0	0	0	0
34059090	- - 기타	0	0	0	0
3406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34070010	-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으로 포장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34070020	-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또는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4070030	-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0	0	0	0
35011000	- 카세인(casein)	0	0	0	0
35019010	- - 카제인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제인(casein) 유도체	0	0	0	0
35019020	- 카제인 글루(casein glue)	0	0	0	0
35021100	- - 건조한 것	0	0	0	0
35021900	- - 기타	0	0	0	0
3502200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0	0	0	0
35029000	- 기타	0	0	0	0
35030011	- - 어류 아교	0	0	0	0
35030019	- - 기타	0	0	0	0
35030030	- 아이징글라스(isinglass)	0	0	0	0
35030041	- - 가루 모양인 것[팽창 레벨이 블룸 스케일(Bloom scale) 기준으로 에이(A)-250 또는 비(B)-230 이거나 그보다 높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5030049	- - 기타	5	5	5	0
350400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35051010	- - 덱스트린, 가용성이나 볶은 전분	0	0	0	0
35051090	- - 기타	5	0	0	0
35052000	- 글루(glue)	5	5	5	0
35061000	-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35071000	-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5079000	- 기타	0	0	0	0
36010000	화약	0	0	0	0
3602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0	0	0	0
36030010	- 세미 퓨즈, 소자 캡, 시그널 튜브	0	0	0	0
36030020	- 도화선이나 도폭선	0	0	0	0
36030090	- 기타	0	0	0	0
36041000	- 불꽃제품	0	0	0	0
36049020	- - 발화성 모형 군수품과 장난감용 뇌관	0	0	0	0
36049030	- - 신호용 조명탄이나 로켓	0	0	0	0
36049090	- - 기타	0	0	0	0
360500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0	0	0	0
36061000	-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0	0	0	0
36069010	- - 고체나 반고체 연료, 고체 알코올과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	0	0	0	0
36069020	- - 라이터 돌	0	0	0	0
36069030	- - 그 밖의 페로세륨 및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0	0	0	0
36069040	- - 수지 토치(torch), 불쏘시개(firelight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36069090	- - 기타	0	0	0	0
37011000	- 엑스선용	0	0	0	0
3701200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0	0	0	0
37013000	-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7019110	- - - 인쇄 공업용에 적합한 것	0	0	0	0
37019190	- - - 기타	0	0	0	0
37019910	- - - 인쇄 공업용에 적합한 것	0	0	0	0
37019990	- - - 기타	0	0	0	0
37021000	- 엑스선용	0	0	0	0
37023100	-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0	0	0	0
37023200	- -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7023900	- - 기타	0	0	0	0
37024100	-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0	0	0	0
37024200	-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0	0	0	0
37024300	- -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0	0	0	0
37024400	- -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3702522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0	0	0
37025290	- - - 기타	0	0	0	0
37025300	- -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7025440	-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이나 인쇄공업용으로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적합한 것				
37025490	- - - 기타	0	0	0	0
3702552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0	0	0
37025550	-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이나 인쇄공업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37025590	- - - 기타	0	0	0	0
3702562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0	0	0
37025690	- - - 기타	0	0	0	0
3702961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0	0	0
37029690	- - - 기타	0	0	0	0
3702971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0	0	0
37029790	- - - 기타	0	0	0	0
3702981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0	0	0
37029830	- - - 기타(길이가 120m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7029890	- - - 기타	0	0	0	0
37031010	- - 폭이 1,000mm 이하인 것	0	0	0	0
37031090	- - 기타	0	0	0	0
37032000	-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0	0	0	0
37039000	- 기타	0	0	0	0
37040010	- 엑스선 플레이트나 필름	0	0	0	0
37040090	- 기타	0	0	0	0
37051000	- 오프셋 복사용	0	0	0	0
37059010	- - 엑스선	0	0	0	0
37059020	- - 마이크로필름	0	0	0	0
37059090	- - 기타	0	0	0	0
37061010	- - 뉴스・여행・기술 및 과학 영화용 필름	0	0	0	0
37061030	- - 그 밖의 다큐멘터리 영화용 필름	0	0	0	0
37061040	- - 기타(사운드 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7061090	- - 기타	0	0	0	0
37069010	- - 뉴스・여행・기술 및 과학 영화용 필름	0	0	0	0
37069030	- - 그 밖의 다큐멘터리 영화용 필름	0	0	0	0
37069040	- - 기타(사운드 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7069090	- - 기타	0	0	0	0
37071000	- 감광유제	0	0	0	0
37079010	- - 섬광재료	0	0	0	0
37079090	- - 기타	0	0	0	0
38011000	- 인조흑연	0	0	0	0
38012000	-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0	0	0	0
3801300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0	0	0	0
38019000	- 기타	0	0	0	0
38021000	- 활성탄	0	0	0	0
38029010	- - 활성 보크사이트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8029020	- - 활성토	0	0	0	0
38029090	- - 기타	0	0	0	0
3803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38040010	- 농축 아황산 폐액	0	0	0	0
38040090	- 기타	0	0	0	0
38051000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0	0	0	0
38059000	- 기타	0	0	0	0
38061000	- 로진(rosin)과 수지산	0	0	0	0
38062000	- 로진염, 수지산염 또는 로진(rosin)이나 수지산의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0	0	0	0
38063010	- - 블록 모양	0	0	0	0
38063090	- - 기타	0	0	0	0
38069010	- - 런검(run gum)(블록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069090	- - 기타	0	0	0	0
380700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085010	- - 살충제	0	0	0	0
38085021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0	0	0	0
38085029	- - - 기타	0	0	0	0
38085031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0	0	0	0
38085039	- - - 기타	0	0	0	0
38085040	- - 발아억제제	0	0	0	0
38085050	- - 식물성장조절제	0	0	0	0
38085060	- - 소독제	0	0	0	0
38085091	- - - 목재방부재(살충제나 살균제를 함유한 표면 코팅제는 제외한다)	0	0	0	0
38085099	- - - 기타	0	0	0	0
38089111	- - - - 2- (1- 메틸 프로필) 페놀 카르밤산메틸을 함유한 것	0	0	0	0
38089119	- - - - 기타	0	0	0	0
38089120	- - - 코일 모양의 모기향	0	0	0	0
38089130	- - - 매트 모양의 모기향	0	0	0	0
38089191	- - - - - 탈취 기능이 있는 것	0	0	0	0
38089192	- - - - - 기타	0	0	0	0
38089193	- - - - - 탈취 기능이 있는 것	0	0	0	0
38089199	- - - - - 기타	0	0	0	0
38089211	- - - - 바리다마이신(validamycin) 함유량이 순중량의 100 분의 3 이하인 것	0	0	0	0
38089219	- - - - 기타	0	0	0	0
38089290	- - - 기타	0	0	0	0
38089311	-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0	0	0	0
38089319	-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8089320	- - - 발아억제제	0	0	0	0
38089330	- - - 식물성장조절제	0	0	0	0
38089410	- - - 콜타르산과 알칼리의 혼합물을 함유한 것	0	0	0	0
38089420	- - - 기타(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089490	- - - 기타	0	0	0	0
38089910	- - - 목재 방부제(살충제나 살균제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089990	- - - 기타	0	0	0	0
38091000	-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8099110	- - - 유연제	5	5	5	0
38099190	- - - 기타	0	0	0	0
38099200	- -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0	0	0
38099300	- -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0	0	0	0
38101000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0	0	0	0
38109000	- 기타	0	0	0	0
38111100	- -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38111900	- - 기타	0	0	0	0
38112110	- - - 소매용	0	0	0	0
38112190	- - - 기타	0	0	0	0
38112900	- - 기타	0	0	0	0
38119010	- - 녹 방지제(Rust preventatives)나 부식 억제제(corrosion inhibitors)	0	0	0	0
38119090	- - 기타	0	0	0	0
3812100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0	0	0	0
38122000	-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0	0	0	0
38123000	-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0	0	0	0
381300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0	0	0	0
381400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vanish) 제거제	0	0	0	0
38151100	-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0	0	0	0
38151200	-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0	0	0	0
38151900	- - 기타	0	0	0	0
38159000	- 기타	0	0	0	0
38160010	- 내화시멘트	5	0	0	0
38160090	- 기타	5	5	5	0
3817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 또는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0	0	0
38180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0	0	0	0
381900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8200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0	0	0	0
38210010	- 미생물 성장용 조제배양제	0	0	0	0
38210090	- 기타	0	0	0	0
38220010	-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으로 도포되거나 침투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strip)	0	0	0	0
38220020	-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으로 도포되거나 침투된 판지・셀룰로오스웨딩과 셀룰로오스 섬유의 웹	0	0	0	0
38220030	- 스트립(strip)과 테이프(tapes)된 멸균 지시약	0	0	0	0
38220090	- 기타	0	0	0	0
38231100	- - 스테아르산	5	0	0	0
38231200	- - 올레인산	0	0	0	0
38231300	- - 톨유(tall oil) 지방산	0	0	0	0
38231910	- - -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0	0	0	0
38231990	- - - 기타	0	0	0	0
38237010	- - 왁스 형태의 것	0	0	0	0
38237090	- - 기타	0	0	0	0
3824100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43000	-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44000	-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0	0	0	0
3824500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0	0	0	0
38246000	-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38247110	- - - 변압기와 차단기 오일(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47190	- - - 기타	0	0	0	0
382472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47300	- -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47410	- - - 변압기와 차단기 오일(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8247490	- - - 기타	0	0	0	0
38247500	-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0	0	0	0
38247600	-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47700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47800	- -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0	0	0	0
38247900	- - 기타	0	0	0	0
38248100	-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0	0	0	0
382482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48300	-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8249010	- -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등사판화지 수정제・그 밖의 수정액과 수정테이프(제 9612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38249030	- - 젤라틴을 기본재료로 한 복사용 페이스트(pastes)[벌크로 되어 있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예: 종이나 방직용 섬유로 뒷면을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38249040	- - 혼합무기용제	0	0	0	0
38249050	- - 아세톤 오일	0	0	0	0
38249060	- - 글루탐산모노나트륨을 함유한 화학조제품	0	0	0	0
38249070	- - 그 밖의 화학 조제품(식료품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38249091	- - - 나프텐산,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0	0	0	0
38249099	- - - 기타	0	0	0	0
38256100	-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0	0	0	0
38256900	- - 기타	0	0	0	0
38259000	- 기타	0	0	0	0
38260010	- 코코넛 메틸에스테르(CME)	0	0	0	0
38260090	- 기타	0	0	0	0
39011012	- - -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0	0	0	0
39011019	- - - 기타	0	0	0	0
39011092	- - -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0	0	0	0
39011099	- - - 기타	0	0	0	0
39012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01300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0	0	0	0
39019040	- - 분산액인 것	0	0	0	0
39019090	- - 기타	0	0	0	0
39021030	- - 분산액인 것	0	0	0	0
39021090	- - 기타	0	0	0	0
39022000	- 폴리이소부틸렌	0	0	0	0
39023030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0	0	0	0
39023090	- - 기타	0	0	0	0
39029010	- - 프린트 잉크 배합용으로 적합한 염소화폴리프로필렌	0	0	0	0
39029090	- - 기타	0	0	0	0
39031110	- - - 알갱이	0	0	0	0
39031190	- - - 기타	0	0	0	0
39031910	- - - 분산액인 것	0	0	0	0
39031921	- - - - 내충격성 폴리스틸렌(HIPS)	0	0	0	0
39031929	- - - - 기타	0	0	0	0
39031991	- - - - 내충격성 폴리스틸렌(HIPS)	0	0	0	0
39031999	- - - - 기타	0	0	0	0
39032050	- - 비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0	0	0	0
39032090	- - 기타	0	0	0	0
39033050	- - 비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0	0	0	0
39033090	- - 기타	0	0	0	0
39039030	- - 분산액인 것	5	5	5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9039091	- - - 내충격성 폴리스틸렌(HIPS)	0	0	0	0
39039099	- - - 기타	0	0	0	0
39041092	- - - 가루	0	0	0	0
39041099	- - - 기타	0	0	0	0
39042190	- - - 기타	0	0	0	0
39042210	- - - 분산액인 것	0	0	0	0
39042230	- - - 가루	0	0	0	0
39042290	- - - 기타	0	0	0	0
39043010	- - 알갱이	0	0	0	0
39043020	- - 가루	0	0	0	0
39043090	- - 기타	0	0	0	0
39044010	- - 알갱이	0	0	0	0
39044020	- - 가루	0	0	0	0
39044090	- - 기타	0	0	0	0
39045040	- - 분산액인 것	0	0	0	0
39045050	- - 알갱이	0	0	0	0
39045060	- - 가루	0	0	0	0
39045090	- - 기타	0	0	0	0
39046110	- - - 알갱이	0	0	0	0
39046120	- - - 가루	0	0	0	0
39046190	- - - 기타	0	0	0	0
39046930	- - - 분산액인 것	0	0	0	0
39046940	- - - 알갱이	0	0	0	0
39046950	- - - 가루	0	0	0	0
39046990	- - - 기타	0	0	0	0
39049030	- - 분산액인 것	0	0	0	0
39049040	- - 알갱이	0	0	0	0
39049050	- - 가루	0	0	0	0
39049090	- - 기타	0	0	0	0
39051910	-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0	0	0	0
39051990	- - - 기타	0	0	0	0
39052900	- - 기타	0	0	0	0
39053010	- - 분산액인 것	0	0	0	0
39053090	- - 기타	0	0	0	0
39059110	- - - 분산액인 것	0	0	0	0
39059190	- - - 기타	0	0	0	0
39059920	- - 비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0	0	0	0
39059990	- - - 기타	0	0	0	0
39061090	- - 기타	0	0	0	0
39069020	- - 분산액인 것				
3906902090	- - - 기타	0	0	0	0
39069092	- - - 폴리아크릴산나트륨	0	0	0	0
39069099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9071000	- 폴리아세탈수지	0	0	0	0
39072010	- - 폴리 테트라 메틸렌 에테르 글리콜	0	0	0	0
39072090	- - 기타	0	0	0	0
39073020	- - 코팅에 사용되는 것(가루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073030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0	0	0	0
39073090	- - 기타	0	0	0	0
39074000	- 폴리카보네이트	0	0	0	0
39075010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0	0	0	0
39075090	- - 기타	0	0	0	0
39076010	- 분산액인 것	0	0	0	0
39076020	- - 알갱이	0	0	0	0
39076090	- - 기타	0	0	0	0
39077000	- 폴리(락트산)	0	0	0	0
39079120	- - - 칩 형태의 것	0	0	0	0
39079130	-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0	0	0	0
39079190	- - - 기타	0	0	0	0
39079940	- - - 코팅에 사용되는 것(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079990	- - - 기타	0	0	0	0
39081010	- - 폴리아미드 -6	0	0	0	0
39081090	- - 기타	0	0	0	0
39089000	- 기타	0	0	0	0
39091010	- - 몰딩 화합물	0	0	0	0
39091090	- - 기타	0	0	0	0
39092010	- - 몰딩 화합물	0	0	0	0
39092090	- - 기타	0	0	0	0
39093010	- - 몰딩 화합물	0	0	0	0
39093091	- - - 글리옥살 모노우레인 수지	0	0	0	0
39093099	- - - 기타	0	0	0	0
39094010	- - 몰딩 화합물(페놀포름알데히드는 제외한다)	0	0	0	0
39094090	- - 기타	0	0	0	0
39095000	- 폴리우레탄	0	0	0	0
39100020	- 분산물이나 용액 모양인 것	0	0	0	0
39100090	- 기타	0	0	0	0
39111000	- 석유수지·쿠마론·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0	0	0	0
39119000	- 기타	0	0	0	0
39121100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0	0	0	0
39121200	- - 가소화한 것	0	0	0	0
39122011	- - - 물을 기본 재료로 한 반가공의 니트로셀룰로오스	0	0	0	0
39122019	- - - 기타	0	0	0	0
39122020	- - 가소화한 것	0	0	0	0
39123100	-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0	0	0	0
39123900	- - 기타	0	0	0	0
39129020	- - 알갱이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9129090	- - 기타	0	0	0	0
39131000	- 알긴산, 그 염 및 에스테르	0	0	0	0
39139010	- - 경화단백질	0	0	0	0
39139020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0	0	0	0
39139030	- - 전분을 기본재료로 한 중합체	0	0	0	0
39139090	- - 기타	0	0	0	0
391400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151010	- - 비경질 셀룰러 물품으로 만든 것	0	0	0	0
39151090	- - 기타	0	0	0	0
39152010	- - 비경질 셀룰러 물품으로 만든 것	0	0	0	0
39152090	- - 기타	0	0	0	0
39153010	- - 비경질 셀룰러 물품으로 만든 것	0	0	0	0
39153090	- - 기타	0	0	0	0
3915900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5	5	0
39161010	- - 모노필라멘트	0	0	0	0
39161020	- - 막대(rod · stick)와 형재	5	5	5	0
39162010	- - 모노필라멘트	0	0	0	0
39162020	- - 막대(rod · stick)와 형재	5	5	5	0
39169041	- - - 모노필라멘트	0	0	0	0
39169049	- - - 기타	5	0	0	0
39169050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0	0	0	0
39169060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0	0	0	0
39169091	- - - 모노필라멘트	0	0	0	0
39169099	- - - 기타	5	5	5	0
39171010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0	0	0	0
39171090	- - 기타	0	0	0	0
39172100	-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5	5	0
39172200	-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0	0	0
3917230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5	5	0
39172900	-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5	5	0
39173100	- - 연질(軟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5	5	5	0
39173210	- - - 소시지나 햄 케이싱	0	0	0	0
39173290	- - - 기타	5	5	5	0
39173300	- -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39173900	- - 기타	5	5	5	0
3919101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0	0	0
39191020	- -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				
3919102010	- - - 전화선이나 전선 제조용 테이프	5	5	5	0
3919901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5	5	0
39199020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9199090	- - 기타	5	5	5	0
3920100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5	5	0
39202090	- - 기타				
3920209010	- - 용해하여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로 만든 것	0	0	0	0
3920209020	- - - 전화선이나 전선 제조용 테이프	0	0	0	0
39203010	- - 용해하여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로 만든 것	5	5	5	0
39203020	- - 냉장고 제조용의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BS) 판	0	0	0	0
39203090	- - 기타	5	5	5	0
39204300	- -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3920430010	- - - 전화선이나 전선 제조용 테이프	5	5	5	0
39204900	- - 기타	5	5	5	0
39205100	-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205900	- - 기타	5	5	5	0
39206110	- - - 플레이트와 판	5	5	5	0
39206190	- - - 기타	5	0	0	0
39206200	-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0	0	0	0
39206300	-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0	0	0	0
39206900	-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5	0	0	0
39207110	- - - 셀로판 필름	0	0	0	0
39207190	- - - 기타	5	0	0	0
39207300	-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5	0	0	0
39207910	- - - 니트로셀룰로오스(솜화약)의 것	0	0	0	0
39207990	- - - 기타	0	0	0	0
39209110	- - - 안전유리용 필름(두께가 0.38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0.76 밀리미터 이하이며, 폭이 2 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209190	- - - 기타	0	0	0	0
39209210	- - - 폴리아미드-6 으로 만든 것	0	0	0	0
39209290	- - - 기타	5	0	0	0
39209300	-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0	0	0	0
39209410	- - - 페놀포름알데히드(베이클라이트) 시트(sheets)	5	0	0	0
39209490	- - - 기타	5	0	0	0
39209910	- - - 경화단백질이나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0	0	0	0
39209990	- - - 기타	5	5	5	0
39211120	- - - 경질의 것	5	0	0	0
39211190	- - - 기타	5	5	5	0
3921120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5	5	5	0
39211310	- - - 경질의 것	5	0	0	0
39211390	- - - 기타	5	5	5	0
39211420	- - - 경질의 것	5	0	0	0
39211490	- - - 기타	0	0	0	0
39211920	- - - 경질의 것	5	0	0	0
39211990	- - - 기타	5	5	5	0
39219010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9219020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5	5	5	0
39219030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0	0	0	0
39219090	- - 기타	5	5	5	0
39231010	- - 필름・테이프와 광학 디스크의 케이스	0	0	0	0
39231090	- - 기타	5	5	5	0
39232111	- - - - 폭이 315 밀리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410 밀리미터 이상인 것(뚜껑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232119	- - - - 기타	5	5	5	0
39232191	- - - - 알루미늄 박(箔)으로 보강하지 않은 살균 백[두께가 315 밀리미터 이상, 길이가 41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뚜껑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레토르트 포장용은 제외한다)]	5	5	5	0
39232199	- - - - 기타	5	5	5	0
39232910	- - - 살균백 [알루미늄 박(箔)으로 보강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315 밀리미터 이상, 길이가 41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뚜껑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레토르트 포장용은 제외한다)]	5	0	0	0
39232990	- - - 기타	5	5	5	0
39233020	- - 다층 유리섬유로 보강된 연료 용기	0	0	0	0
39233090	- - 기타	5	5	5	0
39234010	- - 제 8444 호・제 8445 호나 제 8448 호의 기계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39234090	- - 기타	0	0	0	0
39235000	-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5	5	5	0
39239010	- - 치약용 튜브	0	0	0	0
39239090	- - 기타	5	5	5	0
39261000	-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10	0	0	0
39262060	- - 화학물질・방사능이나 화재 보호용 의류	0	0	0	0
39262090	- - 기타	10	10	10	0
3926400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10	10	10	0
39269010	- - 어망용 찌(Floats)	5	0	0	0
39269020	- - 팬과 핸드스크린・이들의 프레임과 손잡이와 이들의 부분품	5	0	0	0
39269032	- - - 의치 거푸집을 갖춘 플라스틱 몰드	0	0	0	0
39269039	- - - 기타	5	5	5	0
39269041	- - - 경찰 방패	0	0	0	0
39269042	- - - 용접 및 이와 유사한 작업용 보호 마스크	0	0	0	0
39269044	- - - 생명구조 쿠션(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람 구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39269049	- - - 기타	0	0	0	0
39269053	- - -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belting)	5	0	0	0
39269055	- - - 기폭장치용 플라스틱 제이형 훅(J-hooks)이나 번치 블록	5	5	5	0
39269059	- - - 기타	5	5	5	0
39269060	- - 가금류 급이기(Poultry feeders)	0	0	0	0
39269070	- -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용의 패딩	5	5	5	0
39269081	- - - 신발의 골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39269082	- - - 묵주용 구슬	0	0	0	0
39269089	- - - 기타	5	0	0	0
39269091	- - - 곡물 저장용의 것	0	0	0	0
39269092	- -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0	0	0	0
39269099	- - - 기타	5	5	5	0
40011011	- - - 원심분리한 농축물	0	0	0	0
40011019	- - - 기타	0	0	0	0
40011021	- - - 원심분리한 농축물	0	0	0	0
40011029	- - - 기타	0	0	0	0
40012110	- - - 알・에스・에스(RSS) 1 등급	0	0	0	0
40012120	- - - 알・에스・에스(RSS) 2 등급	0	0	0	0
40012130	- - - 알・에스・에스(RSS) 3 등급	0	0	0	0
40012140	- - - 알・에스・에스(RSS) 4 등급	0	0	0	0
40012150	- - - 알・에스・에스(RSS) 5 등급	0	0	0	0
40012190	- - - 기타	0	0	0	0
40012210	-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10	0	0	0	0
40012220	-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20	0	0	0	0
40012230	-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L	0	0	0	0
40012240	-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CV	0	0	0	0
40012250	- -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GP	0	0	0	0
40012290	- - - 기타	0	0	0	0
40012910	- - - 에어드라이(air-dried)한 시트(sheets)	0	0	0	0
40012920	- - - 라텍스 크레이프	0	0	0	0
40012930	- - - 바닥 크레이프	0	0	0	0
40012940	- - - 리밀 크레이프[플랫 바크 크레이프(flat bark crepe)를 포함한다]	0	0	0	0
40012950	- - - 그 밖의 크레이프	0	0	0	0
40012960	- - - 슈퍼리오 가공 고무	0	0	0	0
40012970	- - - 탈지 고무	0	0	0	0
40012980	- - - 스크랩(나무·흙 또는 훈연의 것으로 한정한다) 및 컵 모양의 덩어리	0	0	0	0
40012991	- - - - 일차제품인 것	0	0	0	0
40012999	- - - - 기타	0	0	0	0
40013011	- - - 일차제품인 것	0	0	0	0
40013019	- - - 기타	0	0	0	0
40013091	- - - 일차제품인 것	0	0	0	0
40013099	- - - 기타	0	0	0	0
40021100	- - 라텍스	0	0	0	0
40021910	- - - 일차제품 또는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플레이트(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021990	- - - 기타	0	0	0	0
40022010	- - 일차제품인 것	0	0	0	0
40022090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0023110	- - -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플레이트(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023190	- - - 기타	0	0	0	0
40023910	- - -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플레이트(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023990	- - - 기타	0	0	0	0
40024100	- - 라텍스	0	0	0	0
40024910	- - - 일차제품인 것	0	0	0	0
40024990	- - - 기타	0	0	0	0
40025100	- - 라텍스	0	0	0	0
40025910	- - - 일차제품인 것	0	0	0	0
40025990	- - - 기타	0	0	0	0
40026010	- - 일차제품인 것	0	0	0	0
40026090	- - 기타	0	0	0	0
40027010	- - 일차제품인 것	0	0	0	0
40027090	- - 기타	0	0	0	0
40028010	- - 천연고무 라텍스와 합성고무 라텍스의 혼합물	0	0	0	0
40028090	- - 기타	0	0	0	0
40029100	- - 라텍스	0	0	0	0
40029920	- - - 일차제품 또는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플레이트(시트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029990	- - - 기타	0	0	0	0
4003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04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 및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0	0	0	0
40051010	- - 천연 검의 것	0	0	0	0
40051090	- - 기타	0	0	0	0
40052000	-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0	0	0	0
40059110	- - - 천연 검의 것	0	0	0	0
40059190	- - - 기타	0	0	0	0
40059910	- - - 라텍스	0	0	0	0
40059990	- - - 기타	0	0	0	0
4006100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0	0	0	0
40069010	- - 천연 검의 것	0	0	0	0
40069090	- - 기타	0	0	0	0
400700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081110	- - - 두께가 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방직용 섬유로 한쪽 면을 댄 것에 한정한다)	0	0	0	0
40081120	- - - 기타(바닥 타일과 벽 타일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081190	- - - 기타	0	0	0	0
40081900	- - 기타	0	0	0	0
40082110	- - - 두께가 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방직용 섬유로 한쪽 면을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댄 것에 한정한다)				
40082120	- - - 기타(바닥 타일과 벽 타일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082190	- - - 기타	0	0	0	0
40082900	- - 기타	0	0	0	0
400911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	0	0	0
40091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0	0	0
40091290	- - - 기타	0	0	0	0
400921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0	0	0
40092190	- - - 기타	0	0	0	0
40092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0	0	0
40092290	- - - 기타	0	0	0	0
400931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0	0	0
40093191	- - - -제 8702 호·제 8703 호·제 8704 호 또는 제 8711 호의 자동차용 연료호스·히터호스 및 워터호스	0	0	0	0
40093199	- - - - 기타	0	0	0	0
40093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0	0	0
40093290	- - - 기타	0	0	0	0
400941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0	0	0	0
40094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0	0	0	0
40094290	- - - 기타	0	0	0	0
40101100	-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0	0	0	0
40101200	-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0	0	0	0
40101900	- - 기타	0	0	0	0
401031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0	0
401032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401033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1034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401035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01036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0103900	- - 기타	0	0	0	0
40113000	- 항공기용	0	0	0	0
40116110	- - - 제 8701 호의 농업용이나 임업용 트랙터의 것 또는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농업용이나 임업용 기계류의 것	0	0	0	0
40116190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0116210	- - - 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트랙터의 것·기계류의 것(지게차나 그 밖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116290	- - - 기타	0	0	0	0
40116310	- - - 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트랙터의 것·기계류의 것(지게차나 그 밖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116390	- - - 기타	0	0	0	0
40116900	- - 기타	0	0	0	0
40119210	- - - 트랙터의 것,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의 것이나 일륜 손수레의 것	0	0	0	0
40119290	- - - 기타	0	0	0	0
40119310	- - - 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트랙터의 것·기계류의 것(지게차·일륜 손수레 또는 그 밖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0	0
40119390	- - - 기타	0	0	0	0
40119410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의 것	0	0	0	0
40119420	- - - 트랙터의 것, 지게차의 것 또는 그 밖의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0	0	0	0
40119490	- - - 기타	0	0	0	0
40119910	- - - 제 87 류의 차량용의 것	0	0	0	0
40119920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 기계류용의 것	0	0	0	0
40121100	-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	0	0	0
40121210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0121290	- - - 기타	0	0	0	0
40121300	- - 항공기용	0	0	0	0
40121910	- - - 모터사이클용	0	0	0	0
40121920	- - - 자전거용	0	0	0	0
40121930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 기계류용의 것	0	0	0	0
40121940	- - - 제 87 류의 그 밖의 차량용의 것	0	0	0	0
40121990	- - - 기타	0	0	0	0
40122010	-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0	0	0	0
4012202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0122029	- - - 기타	0	0	0	0
40122030	- - 항공기용	0	0	0	0
40122040	- - 모터사이클용	0	0	0	0
40122050	- - 자전거용	0	0	0	0
40122060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 기계류용의 것	0	0	0	0
40122070	- - 제 87 류의 그 밖의 차량용의 것	0	0	0	0
40122091	- - - 버프드(Buffed) 타이어	0	0	0	0
40122099	- - - 기타	0	0	0	0
40129014	- - - 솔리드 타이어(바깥지름이 2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0129015	- - - 제 8709 호의 차량용 솔리드 타이어(바깥지름이 2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129016	- - - 그 밖의 솔리드 타이어(바깥지름이 2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129019	- - - 기타	0	0	0	0
4012902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0129022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40129070	- - 대체용 타이어 트레드(tread)(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0129080	- - 타이어 플랩	0	0	0	0
40129090	- - 기타	0	0	0	0
4013901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0	0	0
4013903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0	0	0
40139039	- - - 폭이 4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0	0	0
40139040	- - 항공기용	0	0	0	0
40139091	- - - 폭이 450 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0	0	0	0
40141000	- 콘돔	0	0	0	0
40149010	- - 젖병용과 이와 유사한 제품용 젖꼭지	0	0	0	0
40149040	- - 제약용 마개	0	0	0	0
40149090	- - 기타	0	0	0	0
40151100	- - 외과용	0	0	0	0
40151900	- - 기타	5	5	5	0
40159010	- - 방사능 방호복	0	0	0	0
40159020	- - 잠수복(웨트 슈트)	0	0	0	0
40159090	- - 기타	5	5	5	0
40169110	- - - 매트(mat)	0	0	0	0
40169120	- - - 타일	0	0	0	0
40169190	- - - 기타	10	10	10	0
40169210	- - - 지우개 팁(tips)	0	0	0	0
40169290	- - - 기타	0	0	0	0
40169310	- - - 전해질 축전기의 접속 단자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40169320	- - - 개스킷(gasket)과 오-링(제 8702 호・제 8703 호・제 8704 호나 제 8711 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40169390	- - - 기타	0	0	0	0
40169400	- -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0169500	- - 그 밖의 팽창성 제품	0	0	0	0
40169915	- - - - 제 8709 호・제 8713 호・제 8715 호나 제 8716 호의 차량용	0	0	0	0
40169916	- - - - 자전거 흙받이	0	0	0	0
40169917	- - - - 자전거 부분품	0	0	0	0
40169918	- - - - 그 밖의 자전거 부속품	0	0	0	0
40169919	- - - - 기타	0	0	0	0
40169920	- - - 제 8804 호 로터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40169930	- - - 고무밴드	0	0	0	0
40169940	- - - 벽 타일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0169951	- - - - 고무 롤러	0	0	0	0
40169952	- - - - 타이어 주형 주머니	0	0	0	0
40169953	- - - - 애자 후드	0	0	0	0
40169954	- - - - 고무로 만든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용 그로밋과 커버	0	0	0	0
40169959	- - - - 기타	0	0	0	0
40169960	- - - 레일 패드	0	0	0	0
40169970	- - - 구조 베어링(브릿지 베어링을 포함한다)	0	0	0	0
40169991	- - - - 테이블 커버	0	0	0	0
40169999	- - - - 기타	0	0	0	0
40170010	- 바닥 타일과 벽 타일	0	0	0	0
40170020	- 그 밖의 경질(硬質)고무 제품	0	0	0	0
40170090	- 기타	5	0	0	0
41012010	- - 유연 전처리 한 것	0	0	0	0
41012090	- - 기타	0	0	0	0
41015010	- - 유연 전처리 한 것	0	0	0	0
41015090	- - 기타	0	0	0	0
41019010	- - 유연 전처리 한 것	0	0	0	0
41019090	- - 기타	0	0	0	0
41021000	-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0	0	0
41022100	- - 산처리한 것	0	0	0	0
41022910	- - - 유연 전처리 한 것	0	0	0	0
41022990	- - - 기타	0	0	0	0
41032010	- - 유연 전처리 한 것	0	0	0	0
41032090	- - 기타	0	0	0	0
41033000	- 돼지의 원피	0	0	0	0
41039000	- 기타	0	0	0	0
41041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 (grain split)	0	0	0	0
41041900	- - 기타	0	0	0	0
41044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 (grain split)	0	0	0	0
41044900	- - 기타	0	0	0	0
4105100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41053000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41062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41062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41063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41063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4106401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4106402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41069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0	0	0	0
41069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0	0	0	0
41071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5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10712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0	0	0
41071900	- - 기타	5	5	5	0
41079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0	0	0	0
410792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0	0	0	0
41079900	- - 기타	5	5	5	0
4112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5	0	0	0
41131000	- 산양의 가죽	5	0	0	0
41132000	- 돼지의 가죽	5	5	5	0
41133000	- 파충류의 가죽	0	0	0	0
41139000	- 기타	5	5	5	0
41141000	-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0	0	0	0
41142000	-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0	0	0	0
41151000	-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41152000	-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0	0	0	0
420100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0	0	0	0
42021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0	0	0
42021211	- - - - 외부 표면을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로 만든 것	0	0	0	0
42021219	- - - - 기타	0	0	0	0
42021291	- - - - 외부 표면을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로 만든 것	0	0	0	0
42021299	- - - - 기타	0	0	0	0
42021920	- - - 외부 표면을 판지로 만든 것	0	0	0	0
42021990	- - - 기타	0	0	0	0
42022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0	0	0
42022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42022900	- - 기타	10	10	10	0
42023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0	0	0
42023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것				
42023910	- - -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42023920	- - -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42023930	- - - 나무의 것 또는 아연의 것 또는 동물 또는 식물 또는 광물의 조각용 재료로 작업한 것	0	0	0	0
42023990	- - - 기타	0	0	0	0
42029111	- - - - 볼링용구가방	0	0	0	0
42029119	- - - - 기타	0	0	0	0
42029190	- - - 기타	0	0	0	0
42029210	- - - 세면용품 가방(플라스틱 시트로 만든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2029220	- - - 볼링용구가방	0	0	0	0
42029290	- - - 기타	10	0	0	0
42029910	- - - 외부 표면을 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나 판지로 만든 것	0	0	0	0
42029920	- - - 구리로 만든것	0	0	0	0
42029930	- - -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42029940	- - - 아연으로 만든것이나 동물 또는 식물 또는 광물의 조각용 재료로 작업한 것	0	0	0	0
42029990	- - - 기타	10	0	0	0
42031000	- 의류	0	0	0	0
42032100	-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0	0	0	0
42032910	- - - 작업용 보호 장갑	0	0	0	0
42032990	- - - 기타	0	0	0	0
42033000	- 벨트와 띠	10	0	0	0
4203400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10	0	0	0
42050010	- 부츠 끈, 매트	0	0	0	0
42050020	- 산업용 안전 벨트와 하네스	0	0	0	0
42050030	- 주얼리(jewellery)용 가죽 끈이나 현 또는 신변장식용품	0	0	0	0
42050040	- 기계류나 기계식의 기구 또는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제품	0	0	0	0
42050090	- 기타	5	0	0	0
42060010	- 담배 파우치	0	0	0	0
42060090	- 기타	0	0	0	0
43011000	-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301300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3016000	-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3018000	-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3019000	-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모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피제품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3021100	- - 밍크의 것	0	0	0	0
43021900	- - 기타	0	0	0	0
43022000	-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3023000	-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3031000	-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10	10	10	0
43039020	- - 산업용 제품	0	0	0	0
43039090	- - 기타	10	0	0	0
43040010	- 인조모피	5	5	5	0
43040020	- 산업용 제품	0	0	0	0
43040091	- - 운동용구가방	0	0	0	0
43040099	- - 기타	10	0	0	0
44011000	-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012100	- - 침엽수류	0	0	0	0
44012200	- - 활엽수류	0	0	0	0
44013100	- - 목재 펠릿(pellet)	0	0	0	0
44013900	- - 기타	0	0	0	0
44021000	-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4029010	- - 코코넛 쉘(shell)로 만든 것	0	0	0	0
44029090	- - 기타	0	0	0	0
44031010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031090	- - 기타	0	0	0	0
44032010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032090	- - 기타	0	0	0	0
440341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034190	- - - 기타	0	0	0	0
440349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034990	- - - 기타	0	0	0	0
440391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039190	- - - 기타	0	0	0	0
440392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039290	- - - 기타	0	0	0	0
440399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039990	- - - 기타	0	0	0	0
44041000	- 침엽수류	0	0	0	0
44042010	- - 칩우드(chipwood)	0	0	0	0
44042090	- - 기타	0	0	0	0
44050010	- 목모(wood wool)	0	0	0	0
44050020	- 목분(wood flour)	0	0	0	0
44061000	-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0	0	0	0
44069000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4071000	- 침엽수류	0	0	0	0
440721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190	- - - 기타	0	0	0	0
440722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290	- - - 기타	0	0	0	0
44072511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519	- - - - 기타	0	0	0	0
44072521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529	- - - - 기타	0	0	0	0
440726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690	- - - 기타	0	0	0	0
440727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790	- - - 기타	0	0	0	0
440728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890	- - - 기타	0	0	0	0
44072911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919	- - - - 기타	0	0	0	0
44072921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929	- - - - 기타	0	0	0	0
44072931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939	- - - - 기타	0	0	0	0
44072941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949	- - - - 기타	0	0	0	0
44072951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959	- - - - 기타	0	0	0	0
44072961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969	- - - - 기타	0	0	0	0
44072971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979	- - - - 기타	0	0	0	0
44072981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989	- - - - 기타	0	0	0	0
44072991	- - - -종콩[닥틸로클라두스(Dactylocladus) 종]과 멜바우[인씨아(Intsia) 종][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2992	- - - -종콩[닥틸로클라두스(Dactylocladus) 종]과 멜바우[인씨아(Intsia) 종](기타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072993	- - - -기타(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072999	- - - - 기타	0	0	0	0
440791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9190	- - - 기타	0	0	0	0
440792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9290	- - - 기타	0	0	0	0
440793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4079390	- - - 기타	0	0	0	0
440794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9490	- - - 기타	0	0	0	0
440795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9590	- - - 기타	0	0	0	0
440799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0	0	0	0
44079990	- - - 기타	0	0	0	0
44081010	- - 연필 제조용 향나무 목재 슬랫(slats), 블록보드 제조용 라디아타(radiata) 소나무 목재	0	0	0	0
44081030	- - 앞판 베니어 시트(sheets)	0	0	0	0
44081090	- - 기타	0	0	0	0
44083100	-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0	0	0	0
44083910	- - - 연필제조용 제루통 목재 슬랫(slats)	0	0	0	0
44083990	- - - 기타	0	0	0	0
44089000	- 기타	0	0	0	0
44091000	- 침엽수류	0	0	0	0
44092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4092900	- - 기타	0	0	0	0
44101100	-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0	0	0	0
44101200	- -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0	0	0	0
44101900	- - 기타	0	0	0	0
44109000	- 기타	5	0	0	0
44111200	- -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4111300	- - 두께가 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4111400	- -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0	0	0
44119200	- -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44119300	- -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을 초과하고 0.8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44119400	- -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44121000	-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4123100	-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0	0	0	0
441232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123900	- - 기타	0	0	0	0
44129400	-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5	0	0	0
44129900	- - 기타	0	0	0	0
4413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 또는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14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4151000	-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0	0	0	0
44152000	-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과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5	0	0	0
44160010	- 통재(staves)	0	0	0	0
44160090	- 기타	0	0	0	0
44170010	- 부츠나 신발의 골	0	0	0	0
44170090	- 기타	0	0	0	0
44181000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0	0	0	0
44182000	- 문과 문틀과 문지방	0	0	0	0
4418400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0	0	0	0
44185000	- 지붕을 이는 판자	0	0	0	0
44186000	- 기둥과 들보	0	0	0	0
44187100	- - 모자이크 마루용	0	0	0	0
44187200	- -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4187900	- - 기타	0	0	0	0
44189010	- - 셀룰러우드패널	0	0	0	0
44189090	- - 기타	0	0	0	0
44190000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0	0	0	0
44201000	-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0	0	0	0
44209010	- -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0	0	0	0
44209090	- - 기타	0	0	0	0
44211000	- 옷걸이	0	0	0	0
44219010	- - 스풀(spool)・콥(cop)과 보빈(bobbin)・릴(reel)과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44219020	- - 성냥개비의 나무	0	0	0	0
44219030	- - 신발용 나무 못이나 핀	0	0	0	0
44219040	- - 캔디 스틱・아이스 크림 스틱과 아이스크림 스푼	0	0	0	0
44219070	- - 팬과 핸드스크린・이들의 프레임과 손잡이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44219080	- - 이쑤시개	0	0	0	0
44219093	- - - 묵주용 구슬	0	0	0	0
44219094	- - - 그 밖의 구슬	0	0	0	0
44219099	- - - 기타	10	0	0	0
45011000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5019000	- 기타	0	0	0	0
4502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0	0	0	0
45031000	- 마개	0	0	0	0
45039000	- 기타	0	0	0	0
45041000	- 블록・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상관없다),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45049000	- 기타	0	0	0	0
46012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6012200	- -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6012900	- - 기타	0	0	0	0
4601921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46019290	- - - 기타	0	0	0	0
4601931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46019390	- - - 기타	0	0	0	0
4601941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46019490	- - - 기타	0	0	0	0
46019910	- - - 매트류	0	0	0	0
4601992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46019990	- - - 기타	10	0	0	0
46021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6021200	- -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6021900	- - 기타	0	0	0	0
46029000	- 기타	0	0	0	0
47010000	기계목재펄프	0	0	0	0
4702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47031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31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32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32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41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41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42100	- - 침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42900	- - 활엽수류로 만든 것	0	0	0	0
4705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0	0	0	0
47061000	-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0	0	0	0
47062000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0	0	0	0
47063000	-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7069100	- - 기계펄프	0	0	0	0
47069200	- - 화학펄프	0	0	0	0
47069300	- -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0	0	0	0
47071000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것	0	0	0	0
4707200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707300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와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0	0	0
47079000	-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0	0
48022010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시트	0	0	0	0
48022090	- - 기타	0	0	0	0
48024010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시트	0	0	0	0
48024090	- - 기타	0	0	0	0
48025411	-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이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시트	0	0	0	0
48025419	- - - - 기타	0	0	0	0
48025421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시트	0	0	0	0
48025429	- - - - 기타	0	0	0	0
48025430	- - - 알루미늄 도포종이 제조용 원지(原紙)	0	0	0	0
48025531	-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8025539	- - - - 기타	0	0	0	0
48025540	- - - 알루미늄 도포종이 제조용 원지(原紙)	0	0	0	0
48025631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이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0	0
48025639	- - - - 기타	0	0	0	0
48025711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이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0	0
48025719	- - - - 기타	0	0	0	0
48026140	- - - 알루미늄 도포종이 제조용 원지(原紙)	0	0	0	0
48026290	- - - 기타	0	0	0	0
48026900	- - 기타				
4802690010	- - - 탄화 원지	0	0	0	0
4802690020	- - - 알루미늄 종이 베이스 (base)	0	0	0	0
48030030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0	0	0	0
48030090	- 기타	10	0	0	0
4804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48041900	- - 기타	5	0	0	0
48042110	- - - 시멘트 백 제조용의 것	0	0	0	0
48042900	- - 기타	0	0	0	0
48043110	- - - 전기 절연 크라프트지	0	0	0	0
48043130	- - - 합판 접착 테이프 제조용으로 습윤 강도가 40 그램에서 60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그램 인 것				
48043140	- - - 사포 원지	0	0	0	0
48043150	- - - 시멘트 백 제조용의 것	0	0	0	0
48043190	- - - 기타	5	5	5	0
48043910	- - - 합판 접착 테이프 제조용으로 습윤 강도가 40 그램에서 60 그램 인 것	0	0	0	0
48043920	- - - 식품포장용	0	0	0	0
48043990	- - - 기타	5	5	5	0
48044110	- - - 전기 절연 크라프트지	0	0	0	0
480442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48044910	- - - 식품포장용	0	0	0	0
48044990	- - - 기타	5	0	0	0
48045110	- - - 전기 절연 크라프트종이	0	0	0	0
48045120	- - - 1 제곱미터당 600 그램 이상의 프레스보드(pressboard)	0	0	0	0
48045130	- - - 합판 접착 테이프 제조용으로 습윤 강도가 40 그램에서 60 그램 인 것	0	0	0	0
48045190	- - - 기타	0	0	0	0
48045200	-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48045900	- - 기타	5	0	0	0
48051100	- -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0	0	0	0
48051210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0	0	0	0
48051290	- - - 기타	0	0	0	0
48051910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0	0	0	0
48051990	- - - 기타	5	0	0	0
480524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5	0	0	0
48053010	- - 착색한 성냥갑 포장지	0	0	0	0
48053090	- - 기타	0	0	0	0
48054000	- 여과지와 판지	5	5	5	0
48055000	- 펠트지와 판지	0	0	0	0
48059110	- - - 판유리 제품 포장용 간지로 사용되는 종류의 종이(수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8059120	- - - 조스 페이퍼(Joss paper)	0	0	0	0
48059190	- - - 기타	0	0	0	0
48059210	- - -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	0	0	0	0
48059290	- - - 기타	5	0	0	0
48059310	- - -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	0	0	0	0
48059320	- - - 압지(Blotting paper)	0	0	0	0
48059390	- - - 기타	5	5	5	0
48061000	- 황산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8062000	- 내지지(耐脂紙)	0	0	0	0
4806300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0	0	0	0
4806400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0	0	0	0
4807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5	5	5	0
48081000	-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5	0	0	0
48084000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0	0	0	0
48089020	- -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종이	0	0	0	0
48089030	- - 올록볼록한(embossed) 종이	5	0	0	0
48089090	- - 기타	5	0	0	0
48092000	- 셀프복사지	0	0	0	0
48099010	- - 카본지와 이와 유사한 복사지	0	0	0	0
48099090	- - 기타	0	0	0	0
48101311	- - - - 심전도계·초음파 검사·호흡계·뇌파계와 태아용 모니터링 지	0	0	0	0
48101319	- - - - 기타	0	0	0	0
48101391	-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48101399	- - - - 기타	0	0	0	0
48101411	- - - - 심전도계·초음파 검사·호흡계·뇌파계와 태아용 모니터링 지	0	0	0	0
48101419	- - - - 기타	0	0	0	0
48101491	- - -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0	0
48101499	- - - - 기타	0	0	0	0
48101911	- - - - 심전도계·초음파 검사·호흡계·뇌파계와 태아용 모니터링 지	0	0	0	0
48101919	- - - - 기타	0	0	0	0
48101991	- - -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0	0
48101999	- - - - 기타	0	0	0	0
48102211	- - - - 심전도계·초음파 검사·호흡계·뇌파계와 태아용 모니터링 지	0	0	0	0
48102219	- - - - 기타	0	0	0	0
48102291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0	0	0	0
48102299	- - - - 기타	0	0	0	0
48102911	- - - - 심전도계·초음파 검사·호흡계·뇌파계와 태아용 모니터링 지	0	0	0	0
48102919	- - - - 기타	0	0	0	0
48102991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0	0	0	0
48102999	- - - - 기타	0	0	0	0
48103131	- - - - 알루미늄 도포종이 제조용 원지(原紙)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8103139	- - - - 기타	0	0	0	0
48103191	- - - - 알루미늄 도포종이 제조용 원지(原紙)	0	0	0	0
48103199	- - - - 기타	0	0	0	0
48103230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0	0	0	0
48103290	- - - 기타	0	0	0	0
48103930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0	0	0	0
48103990	- - - 기타	5	5	5	0
48109240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5	0	0	0
48109290	- - - 기타	5	5	5	0
48109940	- - - 폭이 150 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0	0	0	0
48109990	- - - 기타	5	0	0	0
48111021	- - -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111029	- - - 기타	0	0	0	0
48111091	- - -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111099	- - - 기타	0	0	0	0
48114120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시트	0	0	0	0
48114190	- - - 기타	5	5	5	0
48114920	-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시트	0	0	0	0
48114990	- - - 기타	0	0	0	0
48115131	- - - -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115139	- - - - 기타	0	0	0	0
48115191	- - - -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115199	- - - - 기타	5	5	5	0
48115920	- - - 양 표면을 플라스틱 투명 시트로 피복하고 알루미늄 포일로 안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액체 식품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48115941	- - - -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115949	- - - - 기타	5	0	0	0
48115991	- - - -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115999	- - - - 기타	5	5	5	0
48116020	- - 폭이 1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 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시트	0	0	0	0
48116090	- - 기타	5	0	0	0
48119041	- - -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119049	- - - 기타	5	0	0	0
48119091	- - -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8119099	- - - 기타	5	5	5	0
4812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와 필터플레이트	0	0	0	0
48131000	-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0	0	0	0
48132000	-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0	0	0	0
48139010	- - 폭이 5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것(도포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8139090	- - 기타	0	0	0	0
48162010	- - 폭이 1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의 것	0	0	0	0
48162090	- - 기타	0	0	0	0
48169010	- - 카본지	0	0	0	0
48169020	- - 그 밖의 복사지	0	0	0	0
48169030	- -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	0	0	0	0
48169040	- - 열 전사지	5	0	0	0
48169090	- - 기타	0	0	0	0
48171000	- 봉투	0	0	0	0
48172000	- 봉함엽서・우편엽서와 통신용카드	0	0	0	0
4817300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 및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8181000	- 화장지	0	0	0	0
48182000	- 손수건・클렌징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와 타월	10	0	0	0
48183010	- - 책상보	0	0	0	0
48183020	- - 서비에트(serviette)	0	0	0	0
48185000	- 의류와 의류 부속품	10	0	0	0
48189000	- 기타	10	0	0	0
48193000	-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5	0	0	0
4819400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10	10	10	0
48195000	-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5	5	5	0
48196000	-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8201000	-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48202000	- 연습장	0	0	0	0
48203000	-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와 서류철 표지	0	0	0	0
48204000	-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0	0	0	0
48205000	-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0	0	0	0
48209000	- 기타	10	10	10	0
48221010	- - 콘	0	0	0	0
48221090	- - 기타	0	0	0	0
48229010	- - 콘	0	0	0	0
48229090	- - 기타	0	0	0	0
48232010	- - 스트립・롤 또는 시트 모양의 것	0	0	0	0
48232090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8234021	- - - 심박동 기록지	0	0	0	0
48234029	- - - 기타	0	0	0	0
48234090	- - 기타	0	0	0	0
48236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0	0	0	0
48236900	- - 기타	10	0	0	0
48237000	- 제지용 펄프를 몰드 또는 프레스한 제품	0	0	0	0
48239010	- - 누에용 고치 프레임	0	0	0	0
48239020	- - 보석용 디스플레이 카드(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개인용품을 포함한다)	0	0	0	0
48239030	- - 폴리에틸렌으로 도포된 종이컵 제조용 다이-컷(Die-cut)판지	0	0	0	0
48239040	- - 불꽃제품 제조용 종이관 세트	0	0	0	0
48239051	-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0	0	0	0
48239059	- - - 기타	5	5	5	0
48239060	- - 구멍 뚫은 자카드 카드	0	0	0	0
48239070	- - 팬과 핸드스크린	0	0	0	0
48239092	- - - 조스 페이퍼(Joss paper)	0	0	0	0
48239094	- - -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전체적으로 착색하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은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8239095	- - -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깔개	0	0	0	0
48239096	- - - 기타(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8239099	- - - 기타	5	5	5	0
49011000	-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49019100	- - 사전과 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0	0	0	0
49019910	- - - 교양・기술・과학・역사나 문학 서적	0	0	0	0
49019990	- - - 기타	0	0	0	0
49021000	-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0	0	0	0
49029010	- - 교양・기술・과학・역사나 문학 저널과 정기 간행물	0	0	0	0
49029090	- - 기타	0	0	0	0
4903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0	0	0	0
4904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9051000	- 지구의	0	0	0	0
49059100	- - 책자로 된 것	0	0	0	0
49059900	- - 기타	0	0	0	0
49060010	- 설계도와 도안(감광성 종이에 사진복제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49060090	- 기타	0	0	0	0
49070010	- 지폐(법정통화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9070021	- - 우표	0	0	0	0
49070029	- - 기타	0	0	0	0
49070040	- 주식・주권 또는 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수표	0	0	0	0
49070090	- 기타	0	0	0	0
4908100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49089000	- 기타	5	5	5	0
490900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49100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0	0	0	0
49111010	- - 카탈로그(교육·기술·과학·역사나 문학 서적과 간행물 목록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49111090	- - 기타	0	0	0	0
49119121	- - - - 해부학이나 식물학 도표와 챠트	0	0	0	0
49119129	- - - - 기타	0	0	0	0
49119131	- - - - 해부학이나 식물학 도표와 챠트	0	0	0	0
49119139	- - - - 기타	0	0	0	0
49119190	- - - 기타	0	0	0	0
49119910	- - - 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는 보석용이나 소형 신변장식용품 또는 개인용품용으로 인쇄된 카드	0	0	0	0
49119920	- - - 폭발물용으로 인쇄된 라벨	0	0	0	0
49119930	- - - 카드세트에 인쇄된 교양·기술·과학·역사나 문화 자료	0	0	0	0
49119990	- - - 기타	5	5	5	0
5001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00200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0	0	0	0
500300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0	0	0	0
5004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0	0	0	0
500500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0	0	0	0
50060000	견사와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한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0	0	0	0
50071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0071090	- - 기타	0	0	0	0
50072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0072090	- - 기타	0	0	0	0
50079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0079090	- - 기타	0	0	0	0
51011100	- - 깎은 양모	0	0	0	0
51011900	- - 기타	0	0	0	0
51012100	- - 깎은 양모	0	0	0	0
51012900	- - 기타	0	0	0	0
51013000	- 탄화처리한 것	0	0	0	0
510211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0	0
51021900	- - 기타	0	0	0	0
51022000	- 동물의 거친 털	0	0	0	0
5103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0	0	0	0
5103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51033000	-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1040000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0	0
51051000	- 카드(card)한 양모	0	0	0	0
51052100	- -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51052900	- - 기타	0	0	0	0
510531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0	0	0	0
51053900	- - 기타	0	0	0	0
51054000	-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1061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0	0	0	0
51062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0	0	0	0
51071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	0	0	0
51072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0	0	0	0
51081000	- 카드(card)한 것	0	0	0	0
51082000	- 코움(comb)한 것	0	0	0	0
5109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0	0	0	0
51099000	- 기타	5	5	5	0
511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51111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1111190	- - - 기타	10	0	0	0
51111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1111990	- - - 기타	0	0	0	0
51112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1113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51119000	- 기타	10	10	10	0
51121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1121190	- - - 기타	0	0	0	0
51121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1121990	- - - 기타	10	10	10	0
51122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51123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51129000	- 기타	10	0	0	0
5113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520100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21000	-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0	0	0	0
52029100	-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2029900	- - 기타	0	0	0	0
5203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41100	-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0	0	0	0
52041900	- - 기타	5	0	0	0
52042000	- 소매용	0	0	0	0
52051100	- -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0	0	0
52051200	-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0	0
52051300	-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0	0	0
52051400	-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52051500	- -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0	0	0
52052100	- -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0	0	0
52052200	-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0	0
52052300	-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0	0
52052400	-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0	0	0
52052600	- -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5	0	0	0
52052700	- -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5	0	0	0
52052800	- -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0	0	0	0
52053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0	0	0
52053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0	0	0
52053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0	0
52053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52053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0	0	0
52054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0	0	0
52054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0	0
52054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0	0
52054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520546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52054700	-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0	0	0	0
52054800	-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0	0	0	0
52061100	- -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5	0	0	0
52061200	-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0	0
52061300	-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0	0
52061400	-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52061500	- -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0	0	0
52062100	- -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0	0	0
52062200	- -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5	0	0	0
52062300	- -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5	0	0	0
52062400	- -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5	0	0	0
52062500	- -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0	0	0
52063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0	0	0
52063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0	0	0
52063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0	0	0
52063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52063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0	0	0
52064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0	0	0	0
52064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0	0	0	0
52064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0	0	0	0
52064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0	0	0	0
52064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0	0	0	0
52071000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	0	0	0
52079000	- 기타	0	0	0	0
520811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한정한다)				
520813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0	0
520821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22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23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82900	- - 그 밖의 직물의 것	10	0	0	0
520831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520832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0	0	0
520833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841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4200	- -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20843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84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2085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2085190	- - - 기타	10	0	0	0
52085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2085990	- - - 기타	0	0	0	0
52091100	- - 평직물(平織物)	10	0	0	0
52091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0	0
52091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2092100	- -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092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93100	- - 평직물(平織物)	10	0	0	0
52093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0	0
52093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2094100	- -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094300	- -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095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2095190	- - - 기타	0	0	0	0
52095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2095290	- - - 기타	0	0	0	0
52095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2095990	- - - 기타	10	0	0	0
52101100	- - 평직물(平織物)	10	0	0	0
52101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2102100	- -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02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2103100	- - 평직물(平織物)	10	0	0	0
52103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0	0
52104900	- - 그 밖의직물	10	0	0	0
52105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2105190	- - - 기타	10	0	0	0
52105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2105990	- - - 기타	10	0	0	0
52111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2112000	- 표백한 것	10	0	0	0
52113100	- -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13200	- -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10	0	0	0
52113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2114100	- - 평직물(平織物)	0	0	0	0
52114200	- - 데님(denim)	10	0	0	0
52114300	- -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2114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2115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2115190	- - - 기타	0	0	0	0
521152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2115290	- - - 기타	0	0	0	0
52115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10	0	0	0
52115990	- - - 기타	10	0	0	0
521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52121200	- - 표백한 것	0	0	0	0
521214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0	0
521215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2121590	- - - 기타	10	0	0	0
5212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10	0	0	0
52122200	- - 표백한 것	0	0	0	0
52122300	- - 염색한 것	10	0	0	0
521224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0	0
521225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2122590	- - - 기타	1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3011000	-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0	0	0	0
53012100	-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0	0	0	0
53012900	- - 기타	0	0	0	0
53013000	- 아마 토우(tow)나 웨이스트(waste)	0	0	0	0
53021000	-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0	0	0	0
53029000	- 기타	0	0	0	0
53031000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3039000	- 기타	0	0	0	0
53050010	-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0	0	0	0
53050020	- 코코넛 섬유(코이어)와 아바카 섬유	0	0	0	0
53050090	- 기타	0	0	0	0
53061000	- 단사	0	0	0	0
5306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53071000	- 단사	0	0	0	0
5307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53081000	- 코이어(coir)사	0	0	0	0
53082000	- 대마사	0	0	0	0
53089010	- - 종이실(paper yarn)	0	0	0	0
53089090	- - 기타	0	0	0	0
53091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3091190	- - - 기타	0	0	0	0
53091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3091990	- - - 기타	10	0	0	0
530921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3092190	- - - 기타	0	0	0	0
53092910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3092990	- - - 기타	10	0	0	0
53101000	-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53109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3109090	- - 기타	0	0	0	0
53110010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53110090	- 기타	0	0	0	0
54011010	- - 소매용	5	0	0	0
54011090	- - 기타	5	0	0	0
54012010	- - 소매용	5	0	0	0
54012090	- - 기타	5	0	0	0
54021100	- - 아라미드의 것	0	0	0	0
54021900	- - 기타	0	0	0	0
5402200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23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232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233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234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54023900	- - 기타	0	0	0	0
54024400	- - 탄성사	0	0	0	0
54024500	- -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246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247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248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24900	- - 기타	0	0	0	0
54025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252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25910	- -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54025990	- - - 기타	0	0	0	0
54026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40262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4026910	- -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54026990	- - - 기타	0	0	0	0
5403100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33110	- - - 텍스처드사	0	0	0	0
54033190	- - - 기타	0	0	0	0
54033210	- - - 텍스처드사	0	0	0	0
54033290	- - - 기타	0	0	0	0
54033310	- - - 텍스처드사	0	0	0	0
54033390	- - - 기타	0	0	0	0
54033910	- - - 텍스처드사	0	0	0	0
54033990	- - - 기타	0	0	0	0
54034110	- - - 텍스처드사	0	0	0	0
54034190	- - - 기타	0	0	0	0
54034210	- - - 텍스처드사	0	0	0	0
54034290	- - - 기타	0	0	0	0
54034910	- - - 텍스처드사	0	0	0	0
54034990	- - - 기타	0	0	0	0
54041100	- - 탄성사	0	0	0	0
540412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41900	- - 기타	0	0	0	0
54049000	- 기타	0	0	0	0
540500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600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54071020	- - 타이어 직물, 컨베이어 덕(duck)	10	0	0	0
5407200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10	0	0	0
54073000	-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10	0	0	0
54074110	- - - 방수포(tarpaulin) 보강 재료용으로 적합한 꼬임이 없는 필라멘트사로 만든 나일론 메쉬(mesh) 직물	10	0	0	0
54074190	- - - 기타	10	0	0	0
54074200	- - 염색한 것	10	0	0	0
54074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0	0
54074400	- - 날염한 것	10	0	0	0
54075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0	0
54075200	- - 염색한 것	10	0	0	0
54075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0	0
54075400	- - 날염한 것	10	0	0	0
54076100	-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10	0	0	0
54076900	- - 기타	10	0	0	0
54077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4077200	- - 염색한 것	10	0	0	0
54077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4077400	- - 날염한 것	0	0	0	0
54078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0	0
54078200	- - 염색한 것	10	0	0	0
54078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0	0
54078400	- - 날염한 것	10	0	0	0
5407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0	0
54079200	- - 염색한 것	10	0	0	0
54079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0	0
54079400	- - 날염한 것	10	0	0	0
540810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10	0	0	0
5408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4082200	- - 염색한 것	10	0	0	0
5408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4082400	- - 날염한 것	0	0	0	0
5408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0	0
54083200	- - 염색한 것	10	0	0	0
54083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0	0
54083400	- - 날염한 것	0	0	0	0
5501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01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501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01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5019000	- 기타	0	0	0	0
55020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0	0	0	0
55031100	- - 아라미드의 것	0	0	0	0
55031900	- - 기타	0	0	0	0
5503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503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03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0	0	0	0
55039000	- 기타	0	0	0	0
55041000	-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0	0	0	0
55049000	- 기타	0	0	0	0
55051000	- 합성섬유의 것	0	0	0	0
55052000	-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0	0	0	0
5506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0	0	0	0
5506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0	0	0	0
5506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0	0	0	0
55069000	- 기타	0	0	0	0
5507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5081010	- - 소매용	5	0	0	0
55081090	- - 기타	5	0	0	0
55082010	- - 소매용	0	0	0	0
55082090	- - 기타	5	0	0	0
55091100	- - 단사	0	0	0	0
55091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55092100	- - 단사	5	0	0	0
55092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0	0	0
55093100	- - 단사	0	0	0	0
55093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0	0	0
55094100	- - 단사	0	0	0	0
55094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	0	0	0
55095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0	0	0	0
55095210	- - - 단사	0	0	0	0
55095290	- - - 기타	0	0	0	0
550953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5	0	0	0
55095900	- - 기타	5	0	0	0
55096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	0	0	0
55096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0	0	0	0
55096900	- - 기타	5	0	0	0
55099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0	0	0	0
55099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0	0	0	0
55099900	- - 기타	5	0	0	0
55101100	- - 단사	5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5101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0	0	0	0
55102000	-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5103000	-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	0	0	0
55109000	- 그 밖의 실	0	0	0	0
55111010	- - 편물실・뜨개질 실과 자수실	0	0	0	0
55111090	- - 기타	5	0	0	0
55112010	- - 편물실・뜨개질 실과 자수실	0	0	0	0
55112090	- - 기타	5	0	0	0
5511300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0	0	0	0
5512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0	0
55122900	- - 기타	10	0	0	0
5512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31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0	0
55131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0	0
55131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	0	0	0
55132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0	0
55132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0	0
55132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5133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0	0
55133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5134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0	0	0
55134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5141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10	0	0	0
55141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	0	0	0
55141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5142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0	0	0
55142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10	0	0	0
55142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10	0	0	0
55142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51430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0	0
55144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0	0	0	0
55144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0	0	0	0
55144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0	0	0	0
55144900	- - 그 밖의 직물	10	0	0	0
55151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0	0	0	0
551513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10	0	0	0
55152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0	0	0	0
55152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1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5152900	- - 기타	10	0	0	0
55159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10	0	0	0
55159910	-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10	0	0	0
55159990	- - - 기타	10	0	0	0
5516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0	0
55161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0	0	0
55161400	- - 날염한 것	10	0	0	0
5516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0	0
55162200	- - 염색한 것	10	0	0	0
5516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5162400	- - 날염한 것	0	0	0	0
5516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63200	- - 염색한 것	10	0	0	0
55163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5163400	- - 날염한 것	0	0	0	0
5516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0	0	0	0
55164200	- - 염색한 것	10	0	0	0
55164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5164400	- - 날염한 것	0	0	0	0
5516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0	0
55169200	- - 염색한 것	10	0	0	0
55169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55169400	- - 날염한 것	0	0	0	0
56012100	- - 면으로 만든 것	5	0	0	0
5601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	5	5	0
56012900	- - 기타	5	5	5	0
56013010	- - 폴리아미드 섬유 플록(flock)	0	0	0	0
56013020	- - 폴리프로필렌 섬유 플록(flock)	0	0	0	0
56013090	- - 기타	0	0	0	0
56021000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 직물	10	10	10	0
56022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5602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0	0
56029000	- 기타	10	10	10	0
560311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5	5	5	0
560312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5	5	5	0
560313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5	0	0	0
560314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5	5	5	0
560391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5	5	5	0
560393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5	5	5	0
56041000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56049010	- - 모조 캣거트(견사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6049020	- - 고무를 침투한 방직용 섬유 사	0	0	0	0
56049030	-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나일론의 것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또는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6049090	- - 기타	5	5	5	0
5605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 또는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60600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	5	5	0
56072100	- - 포장용 끈	0	0	0	0
56072900	- - 기타	5	5	5	0
56074100	- - 포장용 끈	5	0	0	0
56074900	- - 기타	5	5	5	0
56075010	- - 브이-벨트 코드(cord)(레소르시놀 포름알데히드로 처리한 인조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폴리아미드와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실로서 1 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실링 펌프・밸브와 이와 유사한 제품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56075090	- - 기타	5	5	5	0
56079010	- -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0	0	0	0
56079020	- - 아바카[(마닐라삼이나 마닐라삼 파초기(Musa textilis Nee)]나 그 밖의 경화(잎) 섬유의 것	0	0	0	0
56079030	- - 제 5303 호의 황마 또는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6079090	- - 기타	5	5	5	0
56081100	- - 제품으로 된 어망	0	0	0	0
56081920	- - - 망태 가방	0	0	0	0
56081990	- - - 기타	5	5	5	0
56089010	- - 망태 가방	0	0	0	0
56089090	- - 기타	5	5	5	0
56090000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57011010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11090	- - 기타	0	0	0	0
57019011	-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19019	- - - 기타	0	0	0	0
57019091	-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19099	- - - 기타	0	0	0	0
57021000	-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7022000	-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0	0	0	0
5702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57023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23910	-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7023920	-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23990	- - - 기타	0	0	0	0
57024110	-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24190	- - - 기타	0	0	0	0
57024210	-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24290	- - - 기타	0	0	0	0
57024911	- -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24919	- - - - 기타	0	0	0	0
57024920	-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24990	- - - 기타	0	0	0	0
5702501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7025020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25090	- - 기타	0	0	0	0
57029110	-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29190	- - - 기타	0	0	0	0
57029210	-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29290	- - - 기타	0	0	0	0
57029911	- -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29919	- - - - 기타	0	0	0	0
57029920	-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7029990	- - - 기타	0	0	0	0
57031010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0	0	0	0
57031020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31090	- - 기타	0	0	0	0
57032010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32090	- - 기타	0	0	0	0
57033010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33090	- - 기타	0	0	0	0
57039011	-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39019	- - - 기타	0	0	0	0
57039021	-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0	0	0	0
57039029	- - - 기타	0	0	0	0
57039091	-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0	0	0	0
57039099	- - - 기타	0	0	0	0
5704100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7049000	- 기타	0	0	0	0
57050011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50019	- - 기타	0	0	0	0
57050021	- - 부직포로 만든 바닥 깔개(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57050029	- - 기타	0	0	0	0
57050091	- - 기도용 깔개	0	0	0	0
57050092	- - 부직포로 만든 바닥 깔개(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57050099	- - 기타	0	0	0	0
58011010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1090	- - 기타	10	0	0	0
580121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2190	- - - 기타	0	0	0	0
580122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2290	- - - 기타	0	0	0	0
580123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2390	- - - 기타	0	0	0	0
580126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2690	- - - 기타	0	0	0	0
580127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2790	- - - 기타	0	0	0	0
580131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3190	- - - 기타	0	0	0	0
580132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3290	- - - 기타	0	0	0	0
580133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3390	- - - 기타	10	10	10	0
580136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3690	- - - 기타	10	0	0	0
580137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3790	- - - 기타	0	0	0	0
5801901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19019	- - - 기타	0	0	0	0
580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0	0	0	0
58021900	- - 기타	10	0	0	0
58022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0	0	0	0
58023010	- -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0	0	0	0
58023020	- - 면이나 인조 섬유로 만든 직물	0	0	0	0
5802303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직물	0	0	0	0
58023090	- - 기타	10	10	10	0
5803001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80300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8030091	- - 곡물 덮개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	0	0	0	0
58030099	- - 기타	10	10	10	0
5804101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8041019	- - - 기타	10	10	10	0
5804102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41029	- - - 기타	0	0	0	0
580421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42190	- - - 기타	10	10	10	0
580429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0	0	0	0
58042990	- - - 기타	10	10	10	0
58043000	- 손으로 만든 레이스	10	0	0	0
5805001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8050090	- 기타	0	0	0	0
58061010	- -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5806102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8061090	- - 기타	10	10	10	0
58062010	- - 스포츠 장비 그립을 싸는데 사용하는 스포츠 테이프	0	0	0	0
58062090	- - 기타	0	0	0	0
58063110	- - - 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용 잉크 리본 제조에 적합한 세폭(細幅)직물	0	0	0	0
58063120	- - - 전기절연지용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	0	0	0	0
58063190	- - - 기타	0	0	0	0
58063210	- - - 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용 잉크 리본 제조에 적합한 세폭(細幅)직물, 좌석안전 벨트 직물	0	0	0	0
58063240	- - - 전기절연지용의 것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	0	0	0	0
58063290	- - - 기타	10	10	10	0
58063910	- - - 견으로 만든 것	0	0	0	0
58063991	- - - - 전기절연지용의 것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	0	0	0	0
58063999	- - - - 기타	10	10	10	0
58064000	-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10	10	10	0
58071000	- 직조한 것	10	10	10	0
58079000	- 기타	10	10	10	0
58081010	- - 고무실과 결합된 것	10	10	10	0
58081090	- - 기타	10	10	10	0
58089010	- - 고무실과 결합된 것	0	0	0	0
58089090	- - 기타	10	10	10	0
5809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10	10	10	0
5810100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5810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5810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5810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0	0
58110010	-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것	0	0	0	0
58110090	- 기타	10	10	1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59011000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0	0	0	0
59019010	- - 투사포(tracing cloth)	5	5	5	0
59019020	- - 회화용 켄버스	0	0	0	0
59019090	- - 기타	5	5	5	0
59021011	- - - 나일론-6 사의 것	0	0	0	0
59021019	- - - 기타	0	0	0	0
59021091	- - - 나일론-6 사의 것	0	0	0	0
59021099	- - - 기타	0	0	0	0
59022020	- - 고무 가공을 한 체이퍼 직물(Chafer fabric)	0	0	0	0
59022091	- - - 면을 함유한 것	0	0	0	0
59022099	- - - 기타	0	0	0	0
59029010	- - 고무 가공을 한 체이퍼 직물(Chafer fabric)	0	0	0	0
59029090	- - 기타	0	0	0	0
59031000	- 폴리(염화비닐)의 것	5	5	5	0
59032000	- 폴리우레탄의 것	5	5	5	0
59039000	- 기타	5	5	5	0
59041000	- 리놀륨	0	0	0	0
59049000	- 기타	0	0	0	0
59050010	-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것	0	0	0	0
59050090	- 기타	0	0	0	0
59061000	-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5	5	5	0
590691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5	5	5	0
59069910	- - - 병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무 가공을 한 시트	0	0	0	0
59069990	- - - 기타	0	0	0	0
59070010	- 오일이나 오일을 기본 재료로 만든 조제품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5	5	5	0
59070030	- 내화성 물질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0	0	0	0
59070040	- 전체표면이 섬유의 플록으로 도포된 벨벳 플록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0	0	0	0
59070050	- 왁스 ・타르・역청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0	0	0	0
59070060	- 그 밖의 물질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5	5	5	0
59070090	- 기타	5	5	5	0
59080010	- 심지, 백열가스 맨틀(mantle)	0	0	0	0
59080090	- 기타	5	0	0	0
59090010	- 소방 호스	0	0	0	0
59090090	- 기타	0	0	0	0
59100000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59111000	-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와 펠트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59112000	-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591131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0	0	0	0
59113200	- -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0	0	0	0
5911400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0	0	0	0
59119010	- - 개스켓(gasket)과 실(seals)	0	0	0	0
59119090	- - 기타	0	0	0	0
60011000	- 롱파일(long pile) 편물	10	0	0	0
60012100	- - 면으로 만든 것	10	10	10	0
6001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0	0
6001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10	10	0
60019220	- - - 파일편물[(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0 인 것으로 한정한다), 페인트 롤 제조용에 적합한 것으로 폭이 63.5 밀리미터 이상이고, 76.2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60019230	- - - 탄성사나 고무실을 함유한 것	0	0	0	0
60019290	- - - 기타	10	10	10	0
60019911	- - - - 탄성사나 고무실을 함유한 것	0	0	0	0
60019919	- - - - 기타	10	0	0	0
600240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0	0	0	0
6003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003200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003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003400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0039000	- 기타	0	0	0	0
60041010	-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하인 것	10	10	10	0
60041090	- - 기타	10	10	10	0
60049000	- 기타	10	10	10	0
6005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0	0	0
60052200	- - 염색한 것	10	10	10	0
6005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60052400	- - 날염한 것	0	0	0	0
600531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10	10	10	0
60053190	- - - 기타	10	10	10	0
600532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10	10	10	0
60053290	- - - 기타	10	10	10	0
600533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60053390	- - - 기타	10	10	10	0
600534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 (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0	0	0	0
60053490	- - - 기타	10	10	10	0
6005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10	10	0
60054200	- - 염색한 것	0	0	0	0
60054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0	0	0	0
60054400	- - 날염한 것	0	0	0	0
60059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0059090	- - 기타	10	10	10	0
6006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006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10	10	10	0
60062200	- - 염색한 것	10	10	10	0
6006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10	10	10	0
60062400	- - 날염한 것	0	0	0	0
60063110	- - - 모자이크 타일의 뒷면 재료용 나일론 섬유 메쉬	0	0	0	0
6006312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0	0	0
60063190	- - - 기타	10	10	10	0
60063210	- - - 모자이크 타일의 뒷면 재료용 나일론 섬유 메쉬	10	0	0	0
6006322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10	0	0	0
60063290	- - - 기타	10	10	10	0
600633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0	0	0
60063390	- - - 기타	10	10	10	0
600634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0	0	0
60063490	- - - 기타	10	0	0	0
600641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0	0	0
60064190	- - - 기타	0	0	0	0
600642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0	0	0
60064290	- - - 기타	10	10	10	0
600643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0	0	0
60064390	- - - 기타	0	0	0	0
600644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0	0	0	0
60064490	- - - 기타	0	0	0	0
60069000	- 기타	10	10	10	0
6101200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1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0	0
610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2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2200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2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2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1000	- 슈트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1032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3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33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3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34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3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3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1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1920	-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1990	- - - 기타	0	0	0	0
61042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43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44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4400	-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5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45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5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5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6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46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46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46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5100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52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5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6100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62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6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71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71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7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1072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7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7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7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7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11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192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081930	-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81990	- - - 기타	0	0	0	0
61082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8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3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83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08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8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091010	- - 남성용이나 소년용	0	0	0	0
6109102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0	0	0	0
61099010	- - 남성용이나 소년용[라미(ramie)·린넨(linen)이나 실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1099020	- - 남성용이나 소년용(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109903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10	10	10	0
61101100	- - 양모로 만든 것	0	0	0	0
61101200	- -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0	0	0	0
61101900	- - 기타	0	0	0	0
6110200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0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0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1200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1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1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2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2000	- 스키슈트	0	0	0	0
61123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4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2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30010	- 잠수복(웨트슈트)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1130030	- 방화복	0	0	0	0
61130040	- 그 밖의 보호용 작업 의류	0	0	0	0
61130090	- 기타	0	0	0	0
6114200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43020	- - 방화복	0	0	0	0
61143090	- - 기타	0	0	0	0
6114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51010	- -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합성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1151090	- - 기타	0	0	0	0
61152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1152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1152910	-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52990	- - - 기타	0	0	0	0
6115301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53090	- - 기타	0	0	0	0
611594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1595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596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5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1161010	- - 잠수부용 장갑	0	0	0	0
61161090	- - 기타	0	0	0	0
61169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169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69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10	10	10	0
6116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0	0
6117101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1171090	- - 기타	10	10	10	0
61178011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1178019	- - - 기타	0	0	0	0
61178020	- - 손목 밴드·무릎 밴드나 발목 밴드	0	0	0	0
61178090	- - 기타	10	10	10	0
61179000	- 부분품	10	10	10	0
6201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11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11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1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19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19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19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10	0	0	0
6201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2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2021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21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2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29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29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29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2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3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1910	-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31990	- - - 기타	0	0	0	0
62032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3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291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32990	- - - 기타	0	0	0	0
6203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33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3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34210	- -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0	0	0	0
62034290	- - - 기타	0	0	0	0
6203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3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41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1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2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42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43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44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4400	-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5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45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2045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5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6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462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46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46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0	0	0	0
6205200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5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59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59090	- - 기타	0	0	0	0
6206100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0	0	0	0
6206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6300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64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6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1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7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2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7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79910	-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79990	- - - 기타	0	0	0	0
620811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8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82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8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8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8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08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08991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089990	- - - 기타	0	0	0	0
62092030	- - 티셔츠・셔츠・파자마와 이들과 유사한 제품	0	0	0	0
62092090	- - 기타	0	0	0	0
62093010	- - 슈트・팬츠와 이들과 유사한 제품	0	0	0	0
62093030	- - 티셔츠・셔츠・파자마와 이들과 유사한 제품	0	0	0	0
62093040	- - 의류 부속품	0	0	0	0
62093090	- - 기타	0	0	0	0
6209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01011	- - - 화학 물질, 방사능이나 방화용 의류	0	0	0	0
62101019	- - - 기타	0	0	0	0
62101090	- - 기타	0	0	0	0
62102020	- - 방화복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210203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0	0	0
62102040	- - 그 밖의 보호용 작업 의류	0	0	0	0
62102090	- - 기타	0	0	0	0
62103020	- - 방화복	0	0	0	0
6210303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0	0	0
62103040	- - 그 밖의 보호용 작업 의류	0	0	0	0
62103090	- - 기타	0	0	0	0
62104010	- - 방화복	0	0	0	0
6210402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0	0	0
62104090	- - 기타	0	0	0	0
62105010	- - 방화복	0	0	0	0
6210502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0	0	0
62105090	- - 기타	0	0	0	0
62111100	- - 남성용이나 소년용	0	0	0	0
6211120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0	0	0	0
62112000	- 스키슈트	0	0	0	0
621132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0	0	0	0
62113220	- - - 순례자용 로브스(에람)	0	0	0	0
62113290	- - - 기타	0	0	0	0
621133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0	0	0	0
62113320	- - - 방화복	0	0	0	0
62113330	-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0	0	0
62113390	- - - 기타	0	0	0	0
621139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0	0	0	0
62113920	- - - 방화복	0	0	0	0
62113930	-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 보호용 의류	0	0	0	0
62113990	- - - 기타	10	10	10	0
621142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0	0	0	0
62114220	- - - 기도용 클록(cloaks)	0	0	0	0
62114290	- - - 기타	0	0	0	0
62114310	- - - 외과용 가운	0	0	0	0
62114320	- - - 기도용 클록(cloaks)	0	0	0	0
62114330	- - - 방폭 보호 슈트	0	0	0	0
6211434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0	0	0	0
62114350	- - - 화학 물질, 방사능이나 방화용 의류	0	0	0	0
62114390	- - - 기타	0	0	0	0
621149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0	0	0	0
62114920	- - - 화학 물질, 방사능이나 방화용 의류	0	0	0	0
62114930	- - - 기도용 클록(cloaks)	0	0	0	0
62114940	- - - 기타(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2114990	- - - 기타	0	0	0	0
6212101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12109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212201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12209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2301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12309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2129011	- - - 상흔 조직과 피부 이식 처리용 압박복	0	0	0	0
62129012	- - - 애슬레틱(athletic) 서포터(supporters)	0	0	0	0
62129019	- - - 기타	0	0	0	0
62129091	- - - 상흔 조직과 피부 이식 처리용 압박복	0	0	0	0
62129092	- - - 애슬레틱(athletic) 서포터(supporters)	0	0	0	0
62129099	- - - 기타	0	0	0	0
62132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62132090	- - 기타	0	0	0	0
62139011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62139019	- - - 기타	0	0	0	0
62139091	-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62139099	- - - 기타	0	0	0	0
62141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62141090	- - 기타	0	0	0	0
6214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143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62143090	- - 기타	0	0	0	0
62144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62144090	- - 기타	0	0	0	0
62149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62149090	- - 기타	0	0	0	0
62151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62151090	- - 기타	0	0	0	0
62152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62152090	- - 기타	0	0	0	0
62159010	- - 전통바틱(batik)공정으로 날염한 것	0	0	0	0
62159090	- - 기타	0	0	0	0
62160010	- 보호용 작업 장갑, 벙어리장갑	10	0	0	0
6216009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0	0	0	0
62160092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2160099	- - 기타	0	0	0	0
62171010	- - 유도 밸트	0	0	0	0
62171090	- - 기타	10	10	10	0
62179000	- 부분품	10	10	10	0
63011000	- 전기모포	0	0	0	0
6301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0	0	0	0
63013000	-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0	0	0	0
63014000	- 합성 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rug)				
63019000	-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0	0	0	0
63021000	-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0	0	0	0
63022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22210	- - - 부직포로 만든 것	0	0	0	0
63022290	- - - 기타	0	0	0	0
6302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23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23210	- - - 부직포로 만든 것	0	0	0	0
63023290	- - - 기타	0	0	0	0
630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24000	-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0	0	0	0
63025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25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25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26000	-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302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29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2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3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31910	-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31990	- - - 기타	0	0	0	0
6303910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39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3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411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0	0	0	0
63041910	-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41920	- - - 기타(부직포)	0	0	0	0
63041990	- - - 기타	0	0	0	0
63049110	- - - 모기장	0	0	0	0
63049190	- - - 기타	0	0	0	0
63049200	- -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	0	0	0
63049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	0	0	0
6304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0	0	0	0
63051011	- - - 황마사	0	0	0	0
63051019	- - - 기타	0	0	0	0
63051021	- - - 황마사	0	0	0	0
63051029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3052000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53210	- - - 부직포	0	0	0	0
63053220	-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0	0	0	0
63053290	- - - 기타	0	0	0	0
63053310	-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0	0	0	0
63053320	- - -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63053390	- - - 기타	10	0	0	0
63053910	- - - 부직포	0	0	0	0
63053920	-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0	0	0	0
63053990	- - - 기타	0	0	0	0
63059010	- - 제 5305 호의 아마로 만든 것	0	0	0	0
63059020	- - 제 5305 호의 코코넛(코이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59090	- - 기타	10	0	0	0
6306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5	5	5	0
63061910	- - - 제 5305 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61920	-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61990	- - - 기타	0	0	0	0
63062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0	0	0	0
63062910	-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62990	- - - 기타	0	0	0	0
63063000	- 돛	0	0	0	0
63064010	- - 면으로 만든 것	0	0	0	0
63064090	- - 기타	0	0	0	0
63069000	- 기타	0	0	0	0
63071010	- - 부직포(펠트는 제외한다)	0	0	0	0
63071020	- - 펠트로 만든 것	0	0	0	0
63071090	- - 기타	10	10	10	0
63072000	-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0	0	0	0
63079030	- - 우산 커버(삼각형 형태로 사전에 자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3079040	- - 외과용 마스크	0	0	0	0
63079061	- - - 산업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63079069	- - - 기타	0	0	0	0
63079070	- - 선풍기와 소형 햇빛 가리개	0	0	0	0
63079090	- - 기타	5	0	0	0
630800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0	0	0	0
6401100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0	0	0	0
64019200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0	0	0	0
64019900	- - 기타	0	0	0	0
64021200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0	0	0	0
64021910	- - - 레슬링 화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4021990	- - - 기타	0	0	0	0
6402200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4029110	- - - 잠수 부츠	0	0	0	0
64029191	- - -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	0	0	0	0
64029199	- - - - 기타	10	0	0	0
64029910	- -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	0	0	0	0
64029990	- - - 기타	0	0	0	0
64031200	-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0	0	0	0
64031910	- - - 스파이크스・징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붙인 것	0	0	0	0
64031920	- - - 승마용 부츠나 볼링화	0	0	0	0
64031930	- - - 레슬링화・역도화나 체조화	0	0	0	0
64031990	- - - 기타	0	0	0	0
64032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403400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4035100	- - 발목을 덮는 것	0	0	0	0
64035900	- - 기타	0	0	0	0
64039100	- - 발목을 덮는 것	0	0	0	0
64039900	- - 기타	0	0	0	0
64041110	- - - 스파이크스・징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붙인 것	0	0	0	0
64041120	- - - 레슬링화・역도화나 체조화	0	0	0	0
64041190	- - - 기타	0	0	0	0
64041900	- - 기타	0	0	0	0
64042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405100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0	0	0	0
6405200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64059000	- 기타	0	0	0	0
64061010	- - 금속 토캡(toe-cap)	0	0	0	0
64061090	- - 기타	5	5	5	0
64069010	- - 목재로 만든 것	0	0	0	0
64069021	- - - 철강으로 만든 것	0	0	0	0
64069029	- - - 기타	0	0	0	0
64069031	- - - 안창	5	5	5	0
64069032	- - - 완전한 창	0	0	0	0
64069039	- - - 기타	5	0	0	0
64069091	- - - 각반・레깅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0	0	0	0
64069099	- - - 기타	5	5	5	0
6501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모자의 몸체(hat bodies) 및 후드(hood)(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6502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은 것,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5040000	모자 및 그 밖의 모자류[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65050010	- 종교용 모자	0	0	0	0
65050020	- 헤어네트	0	0	0	0
65050090	- 기타	0	0	0	0
65061010	- - 모터사이클 헬멧	0	0	0	0
65061020	- - 산업 안전 헬멧과 소방관 헬멧(철강 헬멧은 제외한다)	0	0	0	0
65061030	- - 철강 헬멧	0	0	0	0
65061040	- - 수구용 헤드기어	0	0	0	0
65061090	- - 기타	0	0	0	0
65069100	- -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65069910	- - - 모피로 만든 것	0	0	0	0
65069990	- - - 기타	0	0	0	0
65070000	모자용의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 및 턱끈	10	10	10	0
66011000	-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0	0	0	0
66019100	- -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0	0	0	0
66019900	- - 기타	0	0	0	0
66020000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66032000	-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5	0	0	0
66039010	- - 제 6601 호의 제품용	0	0	0	0
66039020	- - 제 6602 호의 제품용	0	0	0	0
6701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깃털의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및 깃촉(quill)은 제외한다]	5	5	5	0
67021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67029010	- - 종이로 만든 것	0	0	0	0
67029020	-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0	0	0	0
67029090	- - 기타	0	0	0	0
670300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0	0	0	0
67041100	- - 전체가발	0	0	0	0
67041900	- - 기타	0	0	0	0
67042000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0	0	0	0
67049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68010000	포석・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한다]				
68021000	-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 및 가루	0	0	0	0
68022100	- -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0	0	0	0
68022300	- - 화강암	0	0	0	0
68022910	- -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0	0	0	0
68022990	- - - 기타	0	0	0	0
68029110	- - - 대리석	0	0	0	0
68029190	- - - 기타	0	0	0	0
68029200	-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0	0	0	0
68029300	- - 화강암	0	0	0	0
68029900	- - 그 밖의 돌	0	0	0	0
680300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또는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0	0	0	0
68041000	-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 또는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68042100	- -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8042200	- -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0	0	0	0
68042300	- - 천연석으로 만든 것	0	0	0	0
68043000	- 수지석(手砥石)	0	0	0	0
6805100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5	5	5	0
68052000	-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5	5	5	0
68053000	-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0	0	0	0
68061000	-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68062000	-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0	0	0	0
68069000	- 기타	0	0	0	0
68071000	- 롤 모양인 것	0	0	0	0
68079010	- - 타일	0	0	0	0
68079090	- - 기타	0	0	0	0
68080010	- 기와(지붕타일)・패널・보드・블록과 이와 유사한 제품	0	0	0	0
68080090	- 기타	0	0	0	0
68091100	- -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0	0	0	0
68091910	- - - 타일	0	0	0	0
68091990	- - - 기타	5	0	0	0
68099010	- - 플라스터(plaster)로 만든 치아 주형	0	0	0	0
68099090	- - 기타	0	0	0	0
68101100	- - 건축용 블록과 벽돌	5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8101910	- - - 타일	0	0	0	0
68101990	- - - 기타	0	0	0	0
68109900	- - 기타	0	0	0	0
68114010	-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0	0	0	0
68114021	- - - 플라스틱을 함유한 바닥이나 벽 타일	0	0	0	0
68114029	- - - 기타	0	0	0	0
68114030	- - 관이나 파이프	0	0	0	0
68114040	- - 관(管) 연결구류	0	0	0	0
68114090	- - 기타	0	0	0	0
68118100	-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0	0	0	0
68118210	- - - 플라스틱을 함유한 바닥이나 벽 타일	0	0	0	0
68118290	- - - 기타	0	0	0	0
68118910	- - - 관이나 파이프	0	0	0	0
68118920	- - - 관(管) 연결구류	0	0	0	0
68118990	- - - 기타	5	0	0	0
68128020	- - 의류	0	0	0	0
68128030	- - 종이・표지용 판지 및 펠트(felt)	0	0	0	0
68128040	- - 바닥이나 벽 타일	0	0	0	0
68128050	- - 의류 부속품・신발과 모자류, 가공한 청석면 섬유, 청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또는 청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사와 실, 코드와 줄(엮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직물이나 메리야스 편물	0	0	0	0
68128090	- - 기타	0	0	0	0
68129110	- - - 의류	0	0	0	0
68129190	- - - 기타	0	0	0	0
68129200	- - 종이・표지용 판지 및 펠트(felt)	0	0	0	0
68129300	- -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0	0	0	0
68129911	- - - -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이나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제 6813 호의 물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68129919	- - - - 기타	0	0	0	0
68129920	- - - 바닥이나 벽 타일	0	0	0	0
68129990	- - - 기타	0	0	0	0
68132010	- -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0	0	0	0
68132090	- - 기타	0	0	0	0
68138100	- -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0	0	0	0
68138900	- - 기타	0	0	0	0
68141000	- 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68149000	- 기타	5	0	0	0
68151010	- - 사(yarn)나 실	0	0	0	0
68151020	- - 벽돌・포장용 평판・바닥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0	0	0	0
68151091	- - - 카본섬유	5	5	5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8151099	- - - 기타	5	0	0	0
68152000	- 이탄(泥炭)제품	0	0	0	0
68159100	- -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0	0	0	0
68159900	- - 기타	0	0	0	0
690100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69021000	-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69022000	- 알루미나・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69029000	- 기타	0	0	0	0
69031000	-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69032000	- 알루미나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69039000	- 기타	0	0	0	0
69041000	- 건축용 벽돌	10	10	10	0
69049000	- 기타	10	10	10	0
69051000	- 기와(지붕타일)	0	0	0	0
69059000	- 기타	0	0	0	0
690600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0	0	0	0
69071010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	0	0	0	0
69071090	- - 기타	10	10	10	0
69079010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	10	10	10	0
69079020	- - 분쇄기용 라이닝 타일	0	0	0	0
69079090	- - 기타	10	10	10	0
69081010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	10	10	10	0
69081090	- - 기타	0	0	0	0
69089011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	10	10	10	0
69089019	- - - 기타	10	10	10	0
69089091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	10	10	10	0
69089099	- - - 기타	10	10	10	0
69091100	- - 자기제의 것	0	0	0	0
69091200	-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0	0	0	0
69091900	- - 기타	0	0	0	0
69099000	- 기타	0	0	0	0
69101000	- 자기제의 것	10	10	10	0
69109000	- 기타	10	0	0	0
69131010	- - 장식용 담배상자와 재떨이	0	0	0	0
69131090	- - 기타	10	10	10	0
69139010	- - 장식용 담배상자와 재떨이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69139090	- - 기타	0	0	0	0
69141000	- 자기제의 것	0	0	0	0
69149000	- 기타	10	10	10	0
70010000	깨진 유리와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0	0	0	0
70021000	- 구(球)	0	0	0	0
70022000	- 막대(rod)	0	0	0	0
70023110	- - - 진공관 제조용의 것	0	0	0	0
70023190	- - - 기타	0	0	0	0
70023210	- - - 진공관 제조용의 것	0	0	0	0
70023220	- - - 기타(투명하고 중성인 붕규산 유리로 만든 것으로 지름이 3 밀리미터 이상이고 2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0	0	0
70023290	- - - 기타	0	0	0	0
70023910	- - - 진공관 제조용의 것	0	0	0	0
70023920	- - - 기타(투명하고 중성인 붕규산 유리로 만든 것으로 지름이 3 밀리미터 이상이고 2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023990	- - - 기타	0	0	0	0
700312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0319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042010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049010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051010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0521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0529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060010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071120	- - - 제 88 류의 항공기용이나 우주선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70071130	- - - 제 86 류의 철도용이나 궤도 기관차 또는 철도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70071140	- - - 제 89 류의 선박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70071910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70071990	- - - 기타	0	0	0	0
70072120	- - - 제 88 류의 항공기용이나 우주선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70072130	- - - 제 86 류의 철도용이나 궤도 기관차 또는 철도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70072140	- - - 제 89 류의 선박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70072910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70072990	- - - 기타	0	0	0	0
70101000	- 앰플	0	0	0	0
70102000	-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0	0	0	0
70109010	- - 카보이(carboy)와 디미존스(demijohns)	0	0	0	0
70109040	- - 항생제・혈청과 그 밖의 주사 액체용 병과 약병, 수액용의 병	0	0	0	0
70109090	- - 기타	0	0	0	0
70111010	- - 스템(Stems)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0111090	- - 기타	0	0	0	0
70112000	- 음극선관용	0	0	0	0
70119000	- 기타	0	0	0	0
701391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0	0	0	0
70140010	-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70140090	- 기타	0	0	0	0
7015100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0	0	0	0
70159010	- - 시계용 유리	0	0	0	0
70159090	- - 기타	0	0	0	0
70171010	- -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0	0	0
70171090	- - 기타	0	0	0	0
70172000	-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1 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0	0	0	0
70179000	- 기타	0	0	0	0
70182000	-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0	0	0	0
70189000	- 기타				
7018900010	- - 유리안구	0	0	0	0
70191100	- -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191200	- - 로빙(roving)	0	0	0	0
70191910	- - - 실	0	0	0	0
70191990	- - - 기타	0	0	0	0
70193100	- - 매트(mat)	0	0	0	0
70193200	- - 얇은 시트(sheet)(보일)	0	0	0	0
70193910	- - - 파이프라인용의 것으로 아스팔트나 콜타르를 침투시킨 유리섬유 외피	0	0	0	0
70193990	- - - 기타	5	5	5	0
70194000	- 로빙(roving) 직물	0	0	0	0
70195100	- -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0195200	- -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0195900	- - 기타	0	0	0	0
70199010	- - 유리 섬유[글라스울(glass wool)을 포함한다]	0	0	0	0
70199090	- - 기타	0	0	0	0
70200011	- - 아크릴 물품의 제조용의 것	0	0	0	0
70200019	- - 기타	0	0	0	0
70200020	-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0	0	0	0
70200040	- 태양열 집열기용으로 진공처리된 튜브	0	0	0	0
70200091	- - 블라인드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0200099	- - 기타	0	0	0	0
71011000	- 천연진주	0	0	0	0
71012100	- -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71012200	- - 가공한 것	0	0	0	0
71021000	- 선별하지 않은 것	0	0	0	0
71022100	- -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또는 갈린 것	0	0	0	0
71022900	- - 기타	0	0	0	0
71023100	- -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또는 갈린 것	0	0	0	0
71023900	- - 기타	0	0	0	0
71031010	- - 루비	0	0	0	0
71031020	- - 비취[연옥(軟玉)과 경옥(硬玉)]	0	0	0	0
71031090	- - 기타	0	0	0	0
71039110	- - - 루비	0	0	0	0
71039190	- - - 기타	0	0	0	0
71039900	- - 기타	0	0	0	0
71041010	- -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71041020	- - 가공한 것	0	0	0	0
7104200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1049000	- 기타	0	0	0	0
71051000	- 다이아몬드의 것	0	0	0	0
71059000	- 기타	0	0	0	0
71061000	- 가루	0	0	0	0
71069100	- -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71069200	- - 반가공한 것	0	0	0	0
710700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1081100	- - 가루	0	0	0	0
71081200	- -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0	0	0	0
71081300	-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0	0	0	0
71082000	- 화폐용	0	0	0	0
7109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1101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71101900	- - 기타	0	0	0	0
71102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71102900	- - 기타	0	0	0	0
71103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71103900	- - 기타	0	0	0	0
71104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0	0	0	0
71104900	- - 기타	0	0	0	0
71110010	- 백금을 입힌 은 또는 금	0	0	0	0
71110090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1123000	-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0	0	0	0
71129100	-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0	0	0
71129200	-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0	0	0
71129910	- - - 은의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0	0	0	0
71129990	- - - 기타	0	0	0	0
71131110	- - - 부분품	0	0	0	0
71131190	- - - 기타	0	0	0	0
71131910	- - - 부분품	10	10	10	0
71131990	- - - 기타	0	0	0	0
71132010	- - 부분품	0	0	0	0
71132090	- - 기타	0	0	0	0
71141100	-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71141900	-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7114200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0	0	0	0
71151000	-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1159010	- -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	0	0	0	0
71159020	- - 금이나 은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71159090	- - 기타	0	0	0	0
71161000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0	0	0	0
71162000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0	0	0	0
71171110	- - - 부분품	0	0	0	0
71171190	- - - 기타	0	0	0	0
71171910	- - - 뱅글스(Bangles)	0	0	0	0
71171920	- - - 그 밖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0	0	0	0
71171990	- - - 부분품	0	0	0	0
71179011	- - - 전체가 플라스틱이나 유리인 것	0	0	0	0
71179012	- - - 전체가 우드・가공한 귀갑(龜甲)・상아・뼈・뿔・산호・자개와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 가공한 식물성이나 가공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인 것	0	0	0	0
71179013	- - - 전체가 자기제인 것	0	0	0	0
71179019	- - - 기타	0	0	0	0
71179021	- - - 전체가 플라스틱이나 유리인 것	0	0	0	0
71179022	- - - 전체가 우드・가공한 귀갑(龜甲)・상아・뼈・뿔・산호・자개와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 가공한 식물성이나 가공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인 것	0	0	0	0
71179023	- - - 전체가 자기제인 것	0	0	0	0
71179029	- - - 기타	0	0	0	0
71179091	- - - 전체가 플라스틱이나 유리인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1179092	- - - 전체가 우드・가공한 귀갑(龜甲)・상아・뼈・뿔・산호・자개와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 가공한 식물성이나 가공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인 것	0	0	0	0
71179093	- - - 전체가 자기제인 것	0	0	0	0
71179099	- - - 기타	0	0	0	0
71181010	- - 은화	0	0	0	0
71181090	- - 기타	0	0	0	0
71189010	- - 금화(법정통화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0	0	0	0
71189020	- - 은화(법정통화로 한정한다)	0	0	0	0
71189090	- - 기타	0	0	0	0
72011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012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015000	-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0	0	0	0
720211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2021900	- - 기타	0	0	0	0
72022100	- -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2022900	- - 기타	0	0	0	0
72023000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0	0	0	0
720241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2024900	- - 기타	0	0	0	0
72025000	-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0	0	0	0
72026000	- 페로니켈(ferro-nickel)	0	0	0	0
72027000	-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0	0	0	0
72028000	-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0	0	0	0
72029100	- -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0	0	0	0
72029200	-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0	0	0	0
72029300	-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	0	0	0
72029900	- - 기타	0	0	0	0
7203100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0	0	0	0
72039000	- 기타	0	0	0	0
72041000	-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2042100	- - 스테인리스강의 것	0	0	0	0
72042900	- - 기타	0	0	0	0
7204300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2044100	- -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 및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72044900	- - 기타	0	0	0	0
7204500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2051000	- 알갱이	0	0	0	0
72052100	- - 합금강의 것	0	0	0	0
72052900	- - 기타	0	0	0	0
72061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0.6 을 초과하는 것	0	0	0	0
72061090	- - 기타	0	0	0	0
72069000	- 기타	0	0	0	0
72071900	- - 기타	5	5	5	0
72072010	- - - 슬래브	0	0	0	0
72072021	- - - - 거칠게 성형한 단조된 블록, 시트바(sheet bar)	0	0	0	0
72072091	- - - 슬래브	0	0	0	0
72072092	- - - - 거칠게 성형한 단조된 블록, 시트바(sheet bar)	0	0	0	0
72081000	-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0	0	0	0
720825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720826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082710	- - - 두께가 2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082790	- - 기타	0	0	0	0
720837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0838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0839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08400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0	0	0	0
72085100	-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20852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0853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089000	- 기타	0	0	0	0
72102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02090	- - 기타	0	0	0	0
72105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107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07090	- - 기타	0	0	0	0
72109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09090	- - 기타	0	0	0	0
721113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11390	- - - 기타	0	0	0	0
72112310	- - - 물결 모양의 것	0	0	0	0
7211232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12330	- - - 기타(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12390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2112910	- - - 물결 모양의 것	0	0	0	0
7211292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12930	- - - 기타(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12990	- - - 기타	0	0	0	0
72119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19020	- - 물결 모양의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0	0	0	0
72119030	- - 기타(두께가 0.17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19090	- - 기타	0	0	0	0
72121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21091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0	0	0	0
72121099	- - - 기타	0	0	0	0
72122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22020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22090	- - 기타	0	0	0	0
72123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72123020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23091	- - - 철 아연 합금 도포 방법으로 처리된 아연으로 도포된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04 미만인 것	0	0	0	0
72123099	- - - 기타	5	5	5	0
72124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24020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24090	- - 기타	0	0	0	0
7212501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25012	-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25019	- - - 기타	0	0	0	0
7212502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25022	-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25029	- - - 기타	0	0	0	0
7212509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25092	-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으로서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25099	- - - 기타	0	0	0	0
72126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26020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26090	- - 기타	0	0	0	0
7213100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213100090	- - 기타	0	0	0	0
7213200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39190	- - - 기타	5	5	5	0
72139990	- - - 기타	5	5	5	0
72143000	-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491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미만인 것	0	0	0	0
7214912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6 이상인 것	0	0	0	0
72151000	-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62200	- - 티(T)형강	0	0	0	0
72171022	- - - 비드와이어, 리드와이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강선, 쾌삭강(快削鋼)선	0	0	0	0
72171029	- - - 기타	0	0	0	0
72171031	- - - 스포크와이어(spokes wire), 비드와이어, 리드와이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강선, 쾌삭강(快削鋼)선	0	0	0	0
72171039	- - - 기타	0	0	0	0
7217202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이고 0.45 미만인 것	0	0	0	0
72172091	- - - 강심선[강심 알루미늄 도체(ACSR)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72099	- - - 기타	0	0	0	0
72173021	- -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173029	- - - 기타	0	0	0	0
72173031	- - - 구리합금으로 도포한 강선(비드와이어)(공기타이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73032	- - - 기타(주석으로 도금이나 코팅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173039	- - - 기타	0	0	0	0
72179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0	0	0	0
72179090	- - 기타	0	0	0	0
7218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primary form)인 것	0	0	0	0
721891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0	0	0	0
72189900	- - 기타	0	0	0	0
72191100	-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21912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913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1914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192100	- -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21922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923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1924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193100	- -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72193200	- -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193300	- - 두께가 1 밀리미터 초과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2193400	- -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193500	- -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2199000	- 기타	0	0	0	0
722011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201190	- - - 기타	0	0	0	0
722012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201290	- - - 기타	0	0	0	0
72202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202090	- - 기타	0	0	0	0
72209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209090	- - 기타	0	0	0	0
7221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22211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0	0
72221900	- - 기타	0	0	0	0
72222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0	0
72222090	- - 기타	0	0	0	0
72223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0	0
72223090	- - 기타	0	0	0	0
72224010	- -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72224090	- - 기타	0	0	0	0
7223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0	0	0	0
7224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primary form)인 것	0	0	0	0
72249000	- 기타	0	0	0	0
72251100	- - 방향성(方向性)인 것	0	0	0	0
72251900	- - 기타	0	0	0	0
72253010	- -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3090	- - 기타	0	0	0	0
72254010	- -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4090	- - 기타	0	0	0	0
72255010	- -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5090	- - 기타	0	0	0	0
72259110	- - -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9190	- - - 기타	0	0	0	0
72259210	- - -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9290	- - - 기타	0	0	0	0
72259910	- - -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59990	- - - 기타	0	0	0	0
722611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261190	- - - 기타	0	0	0	0
722619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261990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2262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262090	- - 기타	0	0	0	0
722691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269190	- - - 기타	0	0	0	0
722692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2269290	- - - 기타	0	0	0	0
72269911	-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269919	- - - -기타	0	0	0	0
72269991	-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2269999	- - - -기타	0	0	0	0
72271000	-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72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0	0
72279000	- 기타	0	0	0	0
72281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0	0
72281090	- - 기타	0	0	0	0
72282011	- - -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72282019	- - - 기타	0	0	0	0
72282091	- - -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72282099	- - - 기타	0	0	0	0
72283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0	0
72283090	- - 기타	0	0	0	0
72284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0	0
72284090	- - 기타	0	0	0	0
72285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0	0
72285090	- - 기타	0	0	0	0
72286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0	0
72286090	- - 기타	0	0	0	0
72287010	- - 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72287090	- - 기타	0	0	0	0
72288011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0	0	0	0
72288019	- - - 기타	0	0	0	0
72288090	- - 기타	0	0	0	0
72292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0	0	0	0
72299010	- - 고속도강의 것	0	0	0	0
72299090	- - 기타	0	0	0	0
73011000	- 널말뚝(sheet piling)	0	0	0	0
73012000	- 형강(形鋼)	0	0	0	0
73021000	- 레일(rail)	0	0	0	0
73023000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302400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0	0	0	0
73029010	- - 받침목(침목)	0	0	0	0
73029090	- - 기타	0	0	0	0
73030011	- - 허브리스(hubless) 관	5	5	5	0
73030019	- - 기타	5	0	0	0
73030090	- 기타	0	0	0	0
73041100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0	0	0	0
73041900	- - 기타	0	0	0	0
73042200	-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0	0	0	0
73042300	- - 그 밖의 드릴파이프	0	0	0	0
73042400	-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42900	- - 기타	0	0	0	0
73043110	- - - 드릴로드 케이싱과 튜빙(tubing)[핀(pin)과 박스 스레드(box threads)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43120	- - - 고압력 파이프	0	0	0	0
73043140	- - - 기타(바깥지름이 14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4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43190	- - - 기타	0	0	0	0
73043920	- - - 고압력 파이프	0	0	0	0
73043940	- - - 기타(바깥지름이 14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4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73043990	- - - 기타	0	0	0	0
73044100	- - 냉간인발(冷間引抜)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0	0	0	0
73044900	- - 기타	0	0	0	0
73045110	- - - 드릴로드 케이싱과 튜빙(tubing)[핀(pin)과 박스 스레드(box threads)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45190	- - - 기타	0	0	0	0
73045900	- - 기타	0	0	0	0
73049010	- - 고압력 파이프	0	0	0	0
73049030	- - 기타(바깥지름이 14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탄소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4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73049090	- - 기타	0	0	0	0
73051100	-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0	0	0	0
73051210	- - - 세로방향으로 전기 저항 용접(이・알・더블유)한 것	0	0	0	0
73051290	- - - 기타	0	0	0	0
73051910	- - - 나선이나 나선형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0	0	0	0
73051990	- - - 기타	5	5	5	0
7305200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0	0	0	0
73053110	- - - 스테인리스강 관	0	0	0	0
73053190	- - - 기타	0	0	0	0
73053910	- - - 고압력 파이프	0	0	0	0
73053990	- - - 기타	5	5	5	0
73059000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3061110	- - - 세로방향으로 전기 저항 용접(이・알・더블유)한 것	0	0	0	0
73061120	- - - 나선이나 나선형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0	0	0	0
73061190	- - - 기타	0	0	0	0
73061910	- - - 세로방향으로 전기 저항 용접(이・알・더블유)한 것	0	0	0	0
73061920	- - - 나선이나 나선형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한 것	0	0	0	0
73061990	- - - 기타	0	0	0	0
73062100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62900	- - 기타	0	0	0	0
73063010	- - 보일러 관	5	5	5	0
73063020	- - 바깥지름이 15 밀리미터 이하인 강 튜브(구리로 도금하거나 불소수지로 도포하거나 크롬산아연으로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63030	- - 바깥지름이 12 밀리미터 이하인 파이프[전기다리미나 전기밥솥용 발열체로 사용하는 시드(sheath) 파이프(히터 파이프)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63040	- - 고압력 파이프	0	0	0	0
73063090	- - 기타				
7306309010	- - - 내부지름이 12.5 밀리미터 이상이고 바깥지름이 140 밀리미터 이상인 것	5	5	5	0
73064010	- - 보일러 관	0	0	0	0
73064020	- - 스테인리스강 관과 튜브(바깥지름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64030	- - 최소 30 퍼센트의 니켈을 함유하고 있는 관과 튜브(바깥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64090	- - 기타	0	0	0	0
73065010	- - 보일러 관	0	0	0	0
73065090	- - 기타	0	0	0	0
73066100	- -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0	0	0	0
73066900	- -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0	0	0	0
73069010	- - 구리로 땜질한 관과 튜브	0	0	0	0
73069090	- - 기타	0	0	0	0
73071110	- - - 허브리스(hubless) 관 연결구류	0	0	0	0
73071190	- - - 기타	0	0	0	0
73071900	- - 기타	0	0	0	0
730721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3072190	- - - 기타	0	0	0	0
730722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3072290	- - - 기타	0	0	0	0
730723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3072390	- - - 기타	0	0	0	0
730729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3072990	- - - 기타	0	0	0	0
730791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3079190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30792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3079290	- - - 기타	0	0	0	0
730793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3079390	- - - 기타	0	0	0	0
73079910	- - - 내부 지름이 15 센티미터 미만인 것	0	0	0	0
73079990	- - - 기타	0	0	0	0
73081010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0	0	0	0
73081090	- - 기타	0	0	0	0
73082011	-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0	0	0	0
73082019	- - - 기타	0	0	0	0
73082021	-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0	0	0	0
73082029	- - - 기타	0	0	0	0
73084010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0	0	0	0
73084090	- - 기타	0	0	0	0
73089020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5	5	5	0
73089040	- - 물결모양과 곡면으로 된 판이나 시트(sheets)[도관(conduits), 지하수로(culverts)나 터널용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089060	- - 구멍을 뚫은 케이블 트레이	5	5	5	0
73089092	- - - 가드레일	5	5	5	0
73089099	- - - 기타				
7308909910	- - - - 작업장과 창고용 구조물	5	5	5	0
73090011	- - 내장이나 열절연한 것	0	0	0	0
73090019	- - 기타	0	0	0	0
73090091	- - 내장이나 열절연한 것	0	0	0	0
73090099	- - 기타	0	0	0	0
73101010	- - 주석 도금의 것	0	0	0	0
73101090	- - 기타	5	5	5	0
73102110	- - - 용적이 1 리터 미만인 것	0	0	0	0
73102191	- - - -주석 도금의 것	0	0	0	0
73102199	- - - -기타	5	5	5	0
73102910	- - - 용적이 1 리터 미만인 것	0	0	0	0
73102991	- - - -주석 도금의 것	0	0	0	0
73102999	- - - -기타	5	5	5	0
73110021	- - 용적이 30 리터 미만인 것	0	0	0	0
73110022	- - 용적이 30 리터 이상 110 리터 미만인 것	0	0	0	0
73110029	- - 기타	0	0	0	0
73110093	- - 용적이 30 리터 미만인 것	0	0	0	0
73110094	- - 용적이 30 리터 이상 110 리터 미만인 것	0	0	0	0
73110099	- - 기타	0	0	0	0
73121010	- - 록트(locked) 코일, 플렛튼드(flattened) 스트랜드와 비자전(non-roating) 와이어로프	0	0	0	0
73121020	- - 지름이 3 밀리미터 이하인 황동을 도금이나 도포한 것	0	0	0	0
73121091	- - - 프리스트레싱 강 스트랜드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3121099	- - - 기타	0	0	0	0
73129000	- 기타	0	0	0	0
731300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 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0	0	0	0
73141200	-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141400	-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141910	- -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0	0	0	0
73141990	- - - 기타	5	5	5	0
73142000	-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143100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3143900	- - 기타	0	0	0	0
73144100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0	0	0	0
73144200	-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0	0	0	0
73144900	- - 기타	5	5	5	0
73145000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0	0	0	0
73151191	- - - - 트랜스미션 형[피치(pitch)의 길이가 6 밀리미터 이상이고 3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151199	- - - -기타	0	0	0	0
731512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	0	0	0	0
73151290	- - - 기타	0	0	0	0
73151990	- - - 기타	0	0	0	0
73152000	- 스키드체인(skid chain)	0	0	0	0
73158100	- - 스터드링크(stud-link)	0	0	0	0
73158200	-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3158990	- - - 기타	0	0	0	0
73159090	- - 기타	0	0	0	0
731600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0	0	0	0
73170010	- 머리가 둥근 못(wire nails)	0	0	0	0
73170020	- 스테이플	0	0	0	0
73170090	- 기타	5	5	5	0
73181100	-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0	0	0	0
73181200	-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7318120010	- - - 바깥지름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3181300	-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0	0	0	0
73181400	-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7318140010	- - - 바깥지름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5	0
73181600	- - 너트(nut)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318160010	- - - 바깥지름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5	5	5	0
73182100	-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5	5	5	0
73182200	- - 그 밖의 와셔(washer)	5	5	5	0
73182300	- - 리벳(rivet)	5	5	5	0
73182400	- -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5	5	5	0
73182900	- - 기타	5	5	5	0
73194000	- 안전핀과 그 밖의 핀	0	0	0	0
73199010	- - 수봉침・수편침 또는 자수침	5	0	0	0
73199090	- - 기타	5	5	5	0
73201011	- - - 제 8702 호,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에 적합한 것	0	0	0	0
73201019	- - - 기타	0	0	0	0
73201090	- - 기타	0	0	0	0
73202010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차량이나 기계류에 적합한 것	0	0	0	0
73202090	- - 기타	0	0	0	0
73209010	- - 차량용에 적합한 것	0	0	0	0
73209090	- - 기타	0	0	0	0
73211200	- - 액체연료용	0	0	0	0
73211900	-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0	0	0	0
73218100	-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0	0	0	0
73218200	- - 액체연료용	0	0	0	0
73218900	-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0	0	0	0
73221100	- - 주철로 만든 것	0	0	0	0
73221900	- - 기타	0	0	0	0
73229000	- 기타	0	0	0	0
73231000	-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73239110	- - - 주방용품	0	0	0	0
73239120	- - - 재떨이	0	0	0	0
73239190	- - - 기타	0	0	0	0
73239200	-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0	0	0	0
73239310	- - - 주방용품	5	5	5	0
73239320	- - - 재떨이	0	0	0	0
73239390	- - - 기타	5	5	5	0
73239400	-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5	5	5	0
73239910	- - - 주방용품	5	5	5	0
73239920	- - - 재떨이	0	0	0	0
73239990	- - - 기타	0	0	0	0
73241010	- - 주방용 설거지통	10	10	10	0
73241090	- - 기타	10	10	10	0
73249010	- - 수세식 화장실이나 소변기(고정 형태)	0	0	0	0
73249030	- - 변기와 이동식 소변기	0	0	0	0
73249091	- - - 주방용 설거지통이나 욕조의 부분품	10	10	10	0
73249093	- - - 수세식 화장실이나 소변기(고정형태)의 부분품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3249099	- - - 기타	10	10	10	0
73251020	- - 맨홀 커버・그레이팅과 그들의 프레임	0	0	0	0
73251090	- - 기타	5	5	5	0
732591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73259920	- - - 맨홀 커버・그레이팅과 그들의 프레임	0	0	0	0
73259990	- - - 기타	5	5	5	0
732611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0	0	0	0
73261900	- - 기타	5	5	5	0
73262050	- - 가금류 우리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73262090	- - 기타	5	5	5	0
73269010	- - 배의 키(rudders)	0	0	0	0
73269030	- - 스테인리스강 클램프 조립품(고무 슬리브가 있는 것으로, 허브리스 주철 관과 관 연결구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0	0
73269060	- - 분젠 버너	0	0	0	0
73269091	- - - 담배 케이스와 박스	0	0	0	0
73269099	- - - 기타				
7326909910	- - - - 라텍스 스파우트(spouts)와 라텍스 컵	0	0	0	0
7326909920	- - - - 쥐 덫	0	0	0	0
74010000	구리의 매트(mat), 시멘트동(침전동)	0	0	0	0
74020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0	0	0	0
74031100	- - 음극과 음극의 형재	0	0	0	0
74031200	- - 와이어바(wire-bar)	0	0	0	0
74031300	- - 빌릿(billet)	0	0	0	0
74031900	- - 기타	0	0	0	0
74032100	-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0	0	0	0
74032200	-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0	0	0	0
74032900	- -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0	0	0	0
7404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405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0	0	0	0
74061000	-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0	0	0	0
74062000	- 층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0	0	0	0
74071030	- - 프로파일(profile)	0	0	0	0
74071040	- - 막대(bar, rod)	0	0	0	0
74072100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072900	- - 기타	0	0	0	0
74081900	- - 기타	5	5	5	0
74082100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082200	- -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0	0	0	0
74082900	- - 기타	0	0	0	0
74091100	- - 코일 모양	0	0	0	0
74091900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4092100	- - 코일 모양	0	0	0	0
74092900	- - 기타	0	0	0	0
74093100	- - 코일 모양	0	0	0	0
74093900	- - 기타	0	0	0	0
74094000	-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0	0	0	0
74099000	-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4101100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741012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4102100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741022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411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74112100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112200	- -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0	0	0	0
74112900	- - 기타	0	0	0	0
7412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74122010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0	0	0	0
74122090	- - 기타	0	0	0	0
74130010	- 지름이 28.2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4130090	- 기타	0	0	0	0
74151010	- - 못	0	0	0	0
74151020	- - 스테이플	0	0	0	0
74151090	- - 기타	0	0	0	0
74152100	-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5	5	5	0
74152900	- - 기타	5	5	5	0
74153310	- - - 스크루	0	0	0	0
74153320	- - - 볼트와 너트	5	5	5	0
74153900	- - 기타	5	5	5	0
74181010	- -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74181030	- - 조리나 가열용 기구(가정용에 사용되는 전기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74181090	- - 기타	0	0	0	0
74182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0	0	0	0
74191000	- 체인과 그 부분품	0	0	0	0
74199100	- -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4199931	- - - -기계류의 것	0	0	0	0
74199939	- - - -기타	0	0	0	0
74199940	- - - 스프링	0	0	0	0
74199950	- - - 담배 케이스나 박스	0	0	0	0
74199960	- - - 조리나 가열용 기구(가정용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들의 부분품				
74199970	- - - 특별히 종교 의식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제품	0	0	0	0
74199990	- - - 기타	0	0	0	0
75011000	- 니켈의 매트(mat)	0	0	0	0
75012000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0	0	0	0
7502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0	0	0	0
75022000	- 니켈 합금	0	0	0	0
7503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50400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0	0	0
75051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75051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5052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75052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506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7506200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5071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0	0	0	0
75071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5072000	- 관(管) 연결구류	0	0	0	0
75081000	-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 및 망	0	0	0	0
75089030	- - 볼트와 너트	0	0	0	0
75089040	- - 그밖의 건설용에 적합한 것	0	0	0	0
75089050	- - 전기도금용 양극(전기분해에 의해 생산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75089090	- - 기타	0	0	0	0
7601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0	0	0	0
76012000	- 알루미늄 합금	0	0	0	0
76020000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0	0	0	0
76031000	-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0	0	0	0
76032000	- 층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0	0	0	0
76041010	- - 막대(bar, rod)	0	0	0	0
76041090	- - 기타	5	0	0	0
76042110	- - - 천공된 튜브 프로파일(자동차용 에어컨디셔닝 기계의 증발기 코일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6042190	- - - 기타	0	0	0	0
76042910	- - - 압출한 막대	0	0	0	0
76042930	- - - 지퍼용의 와이(Y)형 프로파일(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76042990	- - - 기타	5	5	5	0
76051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5	5	5	0
76051910	- - - 지름이 0.050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6051990	- - - 기타	5	5	5	0
76052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76052900	- - 기타	0	0	0	0
76061110	- - - 롤링이나 프레싱으로 평평하거나 무늬가 있는 것(그 밖의 방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법으로 표면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6061210	- - - 캔 스톡(stock)(엔드 스톡과 탭 스톡을 포함하며,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76061220	- - - 알루미늄 판(감광처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인쇄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6061231	- - - - 알루미늄합금 5082 호나 5182 호의 것(폭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0	0	0	0
76061239	- - - -기타	0	0	0	0
76061290	- - - 기타	0	0	0	0
76069100	-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0	0	0
76069200	-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6071100	-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0	0	0	0
76071900	- - 기타	0	0	0	0
76072000	- 뒷면을 붙인 것	0	0	0	0
7608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0	0	0
7608200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7609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	0	0	0
761010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5	5	5	0
76109020	- - 저장 탱크용 내부나 외부용 플로팅 루프	0	0	0	0
76109090	- - 기타	0	0	0	0
7611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7612100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0	0	0	0
76129010	- - 신선한 밀크용의 이음매 없는 용기	0	0	0	0
76129090	- - 기타	5	5	5	0
7613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76141011	- - - 지름이 25.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6141012	- - - 지름이 25.3 밀리미터 초과 28.2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6141019	- - - 기타	5	5	5	0
76141090	- - 기타	0	0	0	0
76149011	- - - 지름이 25.3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6149012	- - - 지름이 25.3 밀리미터 초과 28.28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76149019	- - - 기타	0	0	0	0
76149090	- - 기타	0	0	0	0
76151010	- -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0	0	0	0
76151090	- - 기타	10	10	10	0
76152020	- - 요강・소변기와 침실용 변기	0	0	0	0
76152090	- - 기타	10	0	0	0
76161010	- - 못	5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76161020	- - 스테이플과 훅, 볼트와 너트	0	0	0	0
76161090	- - 기타	5	0	0	0
76169100	-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0	0	0	0
76169920	- - - 연필 제조용의 끼움고리(ferrules)	0	0	0	0
76169930	- - - 슬러그(slugs)(둥근 것으로, 치수는 두께가 직경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6169940	- - - 보빈・스풀・릴 및 이와 유사한 지지구(방직용 섬유실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76169960	- - - 라텍스 수집용 스파우트와 컵	0	0	0	0
76169991	- - - - 담배 케이스나 상자, 블라인드	0	0	0	0
76169992	- -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0	0	0	0
76169999	- - - -기타	5	5	5	0
78011000	- 정제한 납	0	0	0	0
78019100	-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0	0	0	0
78019900	- - 기타	0	0	0	0
7802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8041100	- - 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78041900	- - 기타	0	0	0	0
78042000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0	0	0	0
78060020	-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	0	0	0	0
7806003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	0	0	0
78060090	- 기타	0	0	0	0
790111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0	0	0	0
790112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0	0	0	0
79012000	- 아연 합금	0	0	0	0
7902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79031000	- 아연 더스트(dust)	0	0	0	0
79039000	- 기타	0	0	0	0
790400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	0	0	0	0
79050030	- 두께가 0.25 밀리미터 이하인 박	0	0	0	0
79050090	- 기타	0	0	0	0
79070030	- 홈통・지붕덮개・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0	0	0	0
7907004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	0	0	0
79070091	- - 담배케이스나 박스, 재떨이	0	0	0	0
79070092	- - 그밖의 가정용 물품	0	0	0	0
79070099	- - 기타	5	5	5	0
8001100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0	0	0	0
80012000	- 주석 합금	0	0	0	0
8002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0030010	- 납땜 바	5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0030090	- 기타	0	0	0	0
80070020	- 판・시트(sheet)와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0070030	- 박[인쇄 여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를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루와 플레이크	0	0	0	0
8007004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0	0	0	0
80070091	- - 담배케이스나 박스, 재떨이	0	0	0	0
80070092	- - 그밖의 가정용 제품	0	0	0	0
80070099	- - 기타	5	0	0	0
81011000	- 가루	0	0	0	0
81019400	- -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	0	0	0
81019600	- - 선	0	0	0	0
810197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19910	- - -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0	0	0	0
81019990	- - - 기타	0	0	0	0
81021000	- 가루	0	0	0	0
81029400	- - 몰리브데늄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0	0	0	0
81029500	- -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0	0	0	0
81029600	- - 선	0	0	0	0
810297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29900	- - 기타	0	0	0	0
81032000	- 탄탈륨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0	0	0	0
8103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39000	- 기타	0	0	0	0
81041100	-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0	0	0	0
81041900	- - 기타	0	0	0	0
8104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4300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ming) 및 알갱이, 가루	0	0	0	0
81049000	- 기타	0	0	0	0
81052010	- - 코발트의 괴(塊)	0	0	0	0
81052090	- - 기타	0	0	0	0
8105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59000	- 기타	0	0	0	0
81060010	- 비스무트(bismuth)의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0	0	0	0
81060090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1072000	- 카드뮴의 괴(塊), 가루	0	0	0	0
8107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79000	- 기타	0	0	0	0
8108200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0	0	0	0
8108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89000	- 기타	0	0	0	0
81092000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0	0	0	0
8109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099000	- 기타	0	0	0	0
81101000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0	0	0	0
8110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109000	- 기타	0	0	0	0
8111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0	0
81121200	- - 괴(塊), 가루	0	0	0	0
811213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121900	- - 기타	0	0	0	0
81122100	- - 괴(塊), 가루	0	0	0	0
811222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122900	- - 기타	0	0	0	0
81125100	- - 괴(塊), 가루	0	0	0	0
811252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	0	0
81125900	- - 기타	0	0	0	0
81129200	-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0	0	0	0
81129900	- - 기타	0	0	0	0
8113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0	0	0	0
82011000	- 가래와 삽	0	0	0	0
82013010	- - 괭이와 쇠스랑	0	0	0	0
82013090	- - 기타	0	0	0	0
82014000	-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0	0	0	0
82015000	-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0	0	0	0
82016000	-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0	0	0	0
82019000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수공구	0	0	0	0
82021000	- 수동식 톱	0	0	0	0
82022010	- - 블랭크	0	0	0	0
82022090	- - 기타	0	0	0	0
82023110	- - - 블랭크	0	0	0	0
82023190	- - - 기타	0	0	0	0
82023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0	0	0
82024000	- 체인톱의 날	0	0	0	0
82029100	-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2029910	- - - 직선형 톱날	0	0	0	0
82029990	- - - 기타	0	0	0	0
8203100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0	0	0	0
82033000	-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0	0	0	0
82034000	-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0	0	0	0
82041100	- - 조절할 수 없는 것	5	0	0	0
82041200	- - 조절할 수 있는 것	0	0	0	0
82042000	-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82051000	-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0	0	0	0
8205200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0	0	0	0
82053000	-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0	0	0	0
82054000	-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0	0	0	0
82055110	- - - 다리미	0	0	0	0
82055190	- - - 기타	0	0	0	0
82055900	- - 기타	0	0	0	0
82056000	- 블로램프(blow lamp)	0	0	0	0
82057000	-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5	0	0	0
82059000	-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0	0	0	0
820600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5	0	0	0
82071300	- -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0	0	0	0
82071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0	0	0
82072000	-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0	0	0	0
82073000	-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 또는 펀칭(punching)용 공구	0	0	0	0
82074000	-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0	0	0	0
82075000	-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0	0	0	0
82076000	-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0	0	0	0
82077000	- 밀링(milling)용 공구	0	0	0	0
82078000	- 터닝(turning)용 공구	0	0	0	0
82079000	- 그 밖의 호환성 공구	0	0	0	0
82081000	- 금속 가공용	0	0	0	0
82082000	- 목재 가공용	0	0	0	0
82083000	-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5	0	0	0
82084000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0	0	0	0
82089000	- 기타	0	0	0	0
820900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2100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211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0	0	0	0
82119100	-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0	0	0	0
82119250	- -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것	0	0	0	0
82119290	- - - 기타	0	0	0	0
82119320	- -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것	0	0	0	0
82119390	- - - 기타	0	0	0	0
82119410	- -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것	0	0	0	0
82119490	- - - 기타	0	0	0	0
821195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0	0	0	0
82121000	- 면도기	5	0	0	0
82122010	- - 양쪽날의 레이저(razor) 면도기	0	0	0	0
82122090	- - 기타	5	0	0	0
82129000	- 그 밖의 부분품	0	0	0	0
82141000	-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0	0	0	0
82149000	- 기타	0	0	0	0
8215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21591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0	0	0	0
82159900	- - 기타	5	0	0	0
83013000	-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5	0	0	0
83014010	- - 수갑	0	0	0	0
83015000	-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0	0	0	0
8301700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5	5	5	0
83023010	- - 잠금쇠	0	0	0	0
83023090	- - 기타	5	0	0	0
83024220	- - - 잠금쇠	0	0	0	0
83024290	- - - 기타	5	5	5	0
83025000	-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5	5	5	0
83040010	- 서류정리함과 카드인덱스함	0	0	0	0
83040091	- - 알루미늄의 것	0	0	0	0
83040099	- - 기타	5	5	5	0
83051010	- - 이중 고리 와이어 바인더용의 것	0	0	0	0
83051090	- - 기타	0	0	0	0
83052010	- - 사무용으로 만든 것	0	0	0	0
83052020	- - 기타(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3052090	- - 기타	0	0	0	0
83059010	- - 서류용 클립	0	0	0	0
83059090	- - 기타	0	0	0	0
83061010	- - 자전거용	0	0	0	0
83061020	- - 기타(구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3061090	- - 기타	0	0	0	0
830621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5	0	0	0
83062910	- - - 구리나 납으로 만든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3062920	- - - 니켈의 것	0	0	0	0
83062930	- - -알루미늄의 것	0	0	0	0
83062990	- - - 기타	5	5	5	0
83063010	- - 구리로 만든 것	0	0	0	0
83063091	- - - 교차로 또는 급커브 구간에 교통현황을 보여주는 금속제 거울	0	0	0	0
83063099	- - - 기타	0	0	0	0
83071000	- 철강으로 만든 것	5	5	5	0
8307900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5	0	0	0
83089010	- - 비드(bead)	5	0	0	0
83089090	- - 기타	5	5	5	0
8309100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5	0	0	0
83099010	- - 병용 마개	0	0	0	0
83099020	- - 알루미늄 캔의 탑 엔드(Top ends)	5	0	0	0
83099060	- - 에어졸 캔의 엔드(ends)(주석도금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3099070	- - 그 밖의 캔용 캡	5	5	5	0
83099081	- - - 병과 스크루 캡	0	0	0	0
83099089	- - - 기타	5	5	5	0
83099091	- - - 병과 스크루 캡	0	0	0	0
83099099	- - - 기타	5	5	5	0
831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5	5	5	0
83111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5	5	5	0
83112020	- - 플럭스를 심에 충전한 합금강선(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5 이상이며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3112090	- - 기타	5	5	5	0
83119000	- 기타	5	5	5	0
84011000	- 원자로	0	0	0	0
8401200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0	0	0	0
8401300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0	0	0	0
84014000	- 원자로의 부분품	0	0	0	0
8402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02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021211	- - - - 증기생산량이 1 시간당 15 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0	0	0	0
84021219	- - - -기타	0	0	0	0
84021221	- - - - 증기생산량이 1 시간당 15 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0	0	0	0
84021229	- - - -기타	0	0	0	0
84021911	- - - - 증기생산량이 1 시간당 15 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0	0	0	0
84021919	- - - -기타	0	0	0	0
84021921	- - - - 증기생산량이 1 시간당 15 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0	0	0	0
84021929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02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02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029010	- - 보일러 몸체나 동체	0	0	0	0
84029090	- - 기타	0	0	0	0
84031000	- 보일러	0	0	0	0
84039010	- - 보일러 몸체나 동체	0	0	0	0
84039090	- - 기타	0	0	0	0
84041010	- - 제 8402 호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것	0	0	0	0
84041020	- - 제 8403 호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것	0	0	0	0
8404200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0	0	0	0
84049011	- - -보일러 몸체나 동체	0	0	0	0
84049019	- - - 기타	0	0	0	0
84049021	- - -보일러 몸체나 동체	0	0	0	0
84049029	- - - 기타	0	0	0	0
84049090	- - 기타	0	0	0	0
8405100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84059000	- 부분품	0	0	0	0
84061000	- 선박추진용 터빈	0	0	0	0
84068100	- -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068200	- -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069000	- 부분품	0	0	0	0
84071000	- 항공기용 엔진	0	0	0	0
84072190	- - - 기타	0	0	0	0
84072920	- - - 출력이 22.38 킬로와트(30hp) 이하인 것	0	0	0	0
84072990	- - - 기타	0	0	0	0
84079010	- - 출력이 18.65 킬로와트 이하인 것	5	5	5	0
84079020	- - 출력이 18.65 킬로와트 초과 22.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079090	- - 기타	0	0	0	0
84081020	- - 출력이 22.38 킬로와트 초과 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081090	- - 기타	0	0	0	0
84082010	- - - 소호 제 8701.10 호의 차량용	0	0	0	0
84082021	- - -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0	0	0
84089010	- - 18.65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089050	- - 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089091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	5	0	0	0
84089099	- - - 기타	5	0	0	0
84091000	- 항공기 엔진용	0	0	0	0
84099111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0	0	0
84099112	- - - -실린더 블록	0	0	0	0
84099113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099114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0	0	0
84099115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0	0	0
84099116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117	- - - -그 밖의 피스톤	0	0	0	0
84099118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0	0	0
84099119	- - - -기타	0	0	0	0
84099121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0	0	0
84099122	- - - -실린더 블록	0	0	0	0
84099123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124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0	0	0
84099125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0	0	0
84099126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127	- - - -그 밖의 피스톤	0	0	0	0
84099128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0	0	0
84099129	- - - -기타	0	0	0	0
8409915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0	0	0
8409915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15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0	0	0
8409915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155	- - - - - 그 밖의 피스톤	5	0	0	0
84099159	- - - - - 기타	0	0	0	0
8409916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0	0	0
8409916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16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0	0	0
8409916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165	- - - - - 그 밖의 피스톤	0	0	0	0
84099169	- - - - - 기타	0	0	0	0
84099911	- - - -기화기와 그의 부분품	0	0	0	0
84099912	- - - -실린더 블록	0	0	0	0
84099913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914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0	0	0
84099915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0	0	0
84099916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917	- - - -그 밖의 피스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099918	-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0	0	0
84099919	- - - -기타	0	0	0	0
84099921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0	0	0	0
84099922	- - - -실린더 블록	0	0	0	0
84099923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924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0	0	0
84099925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0	0	0	0
84099926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927	- - - -그 밖의 피스톤	0	0	0	0
84099928	- - - -피스톤 링과 거드전 핀	0	0	0	0
84099929	- - - -기타	0	0	0	0
8409995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0	0	0
8409995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95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0	0	0
8409995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955	- - - - - 그 밖의 피스톤	0	0	0	0
84099959	- - - - - 기타	0	0	0	0
8409996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0	0	0	0
8409996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96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0	0	0	0
8409996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 밀리미터 이상 15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099965	- - - - - 그 밖의 피스톤	0	0	0	0
84099969	- - - - - 기타	0	0	0	0
84101100	- - 출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101200	- - 출력이 1,00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101300	- - 출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10900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0	0	0	0
84111100	- -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0	0	0	0
84111200	- -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4112100	- -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112200	- -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118100	- -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118200	- -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119100	-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0	0	0	0
84119900	- - 기타	0	0	0	0
8412100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0	0	0	0
841221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122900	- - 기타	0	0	0	0
841231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0	0	0	0
84123900	- - 기타	0	0	0	0
84128000	- 기타	0	0	0	0
84129010	- - 소호 제 8412.10 호의 엔진용의 것	0	0	0	0
84129090	- - 기타	0	0	0	0
84131100	-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0	0	0	0
84131900	- - 기타	0	0	0	0
84133012	- - - 제 8702 호,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엔진에 사용되는 워터 펌프나 연료 펌프	0	0	0	0
84133019	- - - 기타	0	0	0	0
84133021	- - - 제 8702 호,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엔진에 사용되는 워터 펌프나 연료 펌프	0	0	0	0
84133029	- - - 기타	0	0	0	0
84133092	- - - 제 8702 호,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엔진에 사용되는 워터 펌프나 연료 펌프	0	0	0	0
84133099	- - - 기타	0	0	0	0
84134000	- 콘크리트 펌프	0	0	0	0
84135030	- - 워터 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84135040	- - 워터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초과 13,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135090	- - 기타	0	0	0	0
84136030	- - 워터 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413603090	- - - 기타	0	0	0	0
84136040	- - 워터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초과 13,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136090	- - 기타	0	0	0	0
84137091	- - - 흡입구 지름이 2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137099	- - - 기타	0	0	0	0
84138111	- - - 워터 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413811190	- - - - 기타	0	0	0	0
84138112	- - - 워터펌프(유속이 1 시간당 8,000 세제곱미터 초과 13,000 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138119	- - - 기타	0	0	0	0
84138200	- - 액체엘리베이터	0	0	0	0
84139190	- - - 그 밖의 펌프의 것	0	0	0	0
84139200	-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0	0	0	0
84141000	- 진공펌프	5	5	5	0
84144000	-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0	0	0	0
84145920	- - - -광산에 쓰이는 방폭용 에어팬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145930	- - - -송풍기	5	5	5	0
84145941	- - - - - 보호용 차폐가 있는 것	5	5	5	0
84145949	- - - - - 기타	5	5	5	0
84145950	- - - -송풍기	5	0	0	0
84145991	- - - - - 보호용 차폐가 있는 것	5	0	0	0
84145999	- - - - - 기타	5	5	5	0
84146011	- - - 층류 방식 캐비닛	0	0	0	0
84146019	- - - 기타	5	5	5	0
84146091	- - - 산업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84146099	- - - 기타	0	0	0	0
84148013	- - - -층류 방식 캐비닛	0	0	0	0
84148014	- - - -기타	0	0	0	0
84148015	- - - 필터를 부착하지 않은 산업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4148019	- - - 필터를 부착하지 않은 산업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	0	0	0
84148030	- - 가스 터빈용 자유 피스톤식 제너레이터	0	0	0	0
84148041	- - - 오일 드릴링 작업용으로 적합한 가스 압축기	0	0	0	0
84148049	- - - 기타	5	5	5	0
84148050	- - 기체펌프	0	0	0	0
84148090	- - 기타	0	0	0	0
84149013	- - - 소호 제 8414.1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149014	- - - 소호 제 8414.2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149015	- - - 소호 제 8414.3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149016	- - - 소호 제 8414.4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149019	- - - 기타	0	0	0	0
84149031	- - - 소호 제 8414.6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149032	- - - 소호 제 8414.8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151090	- - 기타	5	5	5	0
84158112	- - - - 출력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158119	- - - - 기타	0	0	0	0
84158129	- - - - 기타	5	5	5	0
84158139	- - - - 기타	0	0	0	0
84158191	- - - - 출력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8415819190	- - - - - 기타	0	0	0	0
84158199	- - - - - 기타	5	5	5	0
84158211	- - - - 출력이 21.1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증발기의 송풍량이 1 분당 67.96 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158219	- - - -기타	0	0	0	0
84158229	- - - -기타	0	0	0	0
84158239	- - - -기타	0	0	0	0
84158299	- - - -기타	5	5	5	0
84159013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159014	- - - 차량용에 사용되는 공기정화용 증발기나 압축기	5	5	5	0
84159019	- - - 기타	0	0	0	0
84159024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것	0	0	0	0
84159025	- - - -기타	0	0	0	0
84159026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것	0	0	0	0
84159029	- - - -기타	0	0	0	0
84159034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것	0	0	0	0
84159035	- - - -기타	0	0	0	0
84159036	-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것	0	0	0	0
84159039	- - - -기타	0	0	0	0
84159044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것	0	0	0	0
84159045	- - - -기타	0	0	0	0
84159046	- - - -항공기나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것	0	0	0	0
84159049	- - - -기타	0	0	0	0
84161000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0	0	0	0
84162000	-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0	0	0	0
84163000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0	0	0	0
84169000	- 부분품	0	0	0	0
84171000	-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17200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0	0	0	0
84178000	- 기타	0	0	0	0
84179000	- 부분품	0	0	0	0
84181090	- - 기타	0	0	0	0
84185011	- - -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0	0	0	0
84185091	- - -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0	0	0	0
84186100	- -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0	0	0	0
84186910	- - - 음료 쿨러	0	0	0	0
84186930	- - - 음료용 냉수기	5	0	0	0
84186941	- - - -공기조절기용	0	0	0	0
84186949	- - - -기타	5	5	5	0
84186950	- - - 스케일 얼음제조 기기	0	0	0	0
84186990	- - - 기타	5	5	5	0
84189100	-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0	0	0	0
84189910	- - - 증발기나 응축기	0	0	0	0
84189940	- - - 소호 제 8418.10.10 호, 제 8418.21.00 호 또는 제 8418.29.00 호의 제품용 알루미늄 롤 밴드 패널	0	0	0	0
84189990	- - - 기타	0	0	0	0
84191110	- - - 가정용의 것	0	0	0	0
84191190	- - - 기타	0	0	0	0
84191910	- - - 가정용의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191990	- - - 기타	0	0	0	0
84192000	-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0	0	0	0
84193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193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193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193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193911	- - - - 열과 연관된 과정에 의한 물질의 처리용 기계로 인쇄 회로판,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용의 것	0	0	0	0
84193919	- - - -기타	0	0	0	0
8419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19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19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195010	- - 냉각탑	0	0	0	0
84195090	- - 기타	0	0	0	0
84196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196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198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5	0	0	0
84198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198913	- - - - 열과 연관된 과정에 의한 물질의 처리용 기계로 인쇄 회로판,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용의 것	0	0	0	0
84198919	- - - - 기타	0	0	0	0
84198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199012	- - - 열과 연관된 과정에 의한 물질의 처리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인쇄 회로판,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용의 것	0	0	0	0
84199013	- - - 냉각탑용 케이싱	0	0	0	0
84199019	- - - 기타	0	0	0	0
84199021	- - - 가정용의 것	0	0	0	0
84199029	- - - 기타	0	0	0	0
84201010	- -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또는 그 구성부품에 드라이 필름 또는 액상 포토레지스트, 감광층, 납땜 페이스트, 납땜 또는 접착 물질을 바르기 위한 기계	0	0	0	0
84201020	- - 가정용에 적합한 다리미나 탈수기	0	0	0	0
84201090	- - 기타	0	0	0	0
84209110	- - -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또는 그 구성부품에 드라이 필름 또는 액상 포토레지스트, 감광층, 납땜 페이스트, 납땜 또는 접착 물질을 바르기 위한 기계의 부분품	0	0	0	0
84209190	- - - 기타	0	0	0	0
84209910	- - -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또는 그 구성부품에 드라이 필름 또는 액상 포토레지스트, 감광층, 납땜 페이스트, 납땜 또는 접착 물질을 바르기 위한 기계의 부분품	0	0	0	0
84209990	- - - 기타	0	0	0	0
84211100	- - 크림분리기	0	0	0	0
84211910	- - - 설탕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211990	- - - 기타	0	0	0	0
84212111	- - - -가정용 여과기기	0	0	0	0
84212119	- - - -기타	0	0	0	0
84212122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212123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5	0	0	0
84212230	- - - 용적이 1 시간당 500 리터를 초과하는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것	0	0	0	0
84212290	- - - 기타	0	0	0	0
84212311	- - - -오일 필터	0	0	0	0
84212319	- - - -기타	0	0	0	0
84212321	- - - -오일 필터	5	5	5	0
84212329	- - - -기타	5	5	5	0
84212391	- - - -오일 필터	0	0	0	0
84212399	- - - -기타	0	0	0	0
84212910	- - -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4212920	- - - 설탕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	0	0	0	0
84212930	- - - 오일 드릴링 작업에 사용하는 것	0	0	0	0
84212940	- - - 기타(휘발유 여과기로 한정한다)	0	0	0	0
84212950	- - - 기타(유류 여과기로 한정한다)	0	0	0	0
84212990	- - - 기타	0	0	0	0
84213110	-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의 것	0	0	0	0
84213190	- - - 기타	0	0	0	0
84213920	- - - 공기 정화기	0	0	0	0
84213990	- - - 기타	0	0	0	0
84219110	- - - 소호 제 8421.12.0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219120	- - - 소호 제 8421.19.1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219190	- - - 소호 제 8421.11.00 호나 제 8421.19.9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219920	- - - 소호 제 8421.23 호의 제품의 필터용 필터 카트리지의 것	0	0	0	0
84219930	- - - 소호 제 8421.31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219991	- - - - 소호 제 8421.29.2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219994	- - - - 소호 제 8421.21.11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219995	- - - - 소호 제 8421.23.11 호, 제 8421.23.19 호, 제 8421.23.91 호나 제 8421.23.99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219999	- - - -기타	0	0	0	0
84221900	- - 기타	5	5	5	0
84222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0	0	0	0
84223000	-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0	0	0	0
84224000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0	0	0	0
84229010	- - 소호 제 8422.11 호의 기계용의 것	0	0	0	0
84229090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23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23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23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23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23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23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238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5	0	0	0
84238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238211	- - - - 최대 측정용량이 1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84238219	- - - - 기타	0	0	0	0
84238221	- - - - 최대 측정용량이 1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84238229	- - - - 기타	0	0	0	0
84238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238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239010	- - 저울 추	0	0	0	0
84239021	- - -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것	5	0	0	0
84239029	- - -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의 것	0	0	0	0
84241010	- - 항공기용으로 적합한 것	0	0	0	0
84241090	- - 기타	0	0	0	0
84242011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0	0	0	0
84242019	- - - 기타	0	0	0	0
84242021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0	0	0	0
84242029	- - - 기타	0	0	0	0
8424300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0	0	0	0
84248110	- - - 점적 관개 시스템	0	0	0	0
84248130	- - - 수동식 살충 스프레이	0	0	0	0
8424814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24815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248910	- - - 용량이 3 리터 이하인 수동식 가정용 스프레이	0	0	0	0
84248920	- - - 딥 튜브가 부착된 분무기 노즐	0	0	0	0
84248940	- - -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물질에 화학 또는 전기화학 솔루션을 분사・살포 또는 분무하는 습식 프로세싱 기구,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또는 그 구성부품에 액체・납땜 페이스트・솔더 볼(solder ball)・접착제 또는 실런트를 점처리하기 위한 기계,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물질 또는 그 구성부품에 드라이 필름 또는 액상 포토레지스트・감광층・납땜 페이스트・납땜 또는 접착 물질을 바르기 위한 기계	0	0	0	0
8424895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24899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249010	- - 소화기의 것	0	0	0	0
84249021	- - - - 소호 제 8424.20.11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249023	- - - - 기타	0	0	0	0
84249024	- - - - 소호 제 8424.20.21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249029	- - - - 기타	0	0	0	0
84249030	-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0	0	0	0
84249093	- - - 소호 제 8424.81.1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249094	- - - 소호 제 8424.81.30 호나 제 8424.81.4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249095	- - - 소호 제 8424.81.5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249099	- - - 기타	0	0	0	0
84251100	- - 전동식	0	0	0	0
84251900	- - 기타	0	0	0	0
84253100	- - 전동식	0	0	0	0
84253900	- - 기타	0	0	0	0
84254100	-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0	0	0	0
84254210	- - - 대형 트럭용 티핑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잭	0	0	0	0
84254290	- - - 기타	0	0	0	0
84254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254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261100	- -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0	0	0	0
84261200	-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0	0	0	0
84261920	- - - 교각(橋脚)형 크레인	0	0	0	0
84261930	- - - 갠트리 크레인	0	0	0	0
84261990	- - - 기타	0	0	0	0
8426200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0	0	0	0
84263000	-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0	0	0	0
84264100	- - 타이어가 달린 것	0	0	0	0
84264900	- - 기타	0	0	0	0
84269100	-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0	0	0	0
84269900	- - 기타	0	0	0	0
8427100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0	0	0	0
84272000	-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0	0	0	0
84279000	- 그 밖의 작업트럭	0	0	0	0
84281010	- - 승객용 리프트	5	5	5	0
84281021	- - - 빌딩에 사용하는 것	5	5	5	0
84281029	- - - 기타	5	5	5	0
84281090	-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0	0	0	0
84282010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428202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운송・하역 및 보관용 자동화 기계	0	0	0	0
84282090	- - 기타	0	0	0	0
84283100	-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0	0	0	0
84283210	-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4283290	- - - 기타	0	0	0	0
84283310	-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4283320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운송・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하역 및 보관용 자동화 기계				
84283390	- - - 기타	0	0	0	0
84283910	-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4283930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운송・하역 및 보관용 자동화 기계	0	0	0	0
84283990	- - - 기타	0	0	0	0
8428400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0	0	0	0
84286000	-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0	0	0	0
8428902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운송・하역 및 보관용 자동화 기계	0	0	0	0
84289030	- - 광산용 왜건푸셔・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화차 경사기 및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0	0	0	0
84289090	- - 기타	0	0	0	0
84291100	- - 무한 궤도식	0	0	0	0
84291900	- - 기타	0	0	0	0
84292000	-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0	0	0	0
84293000	- 스크래퍼(scraper)	0	0	0	0
84294030	- - 탬핑머신(tamping machine)	0	0	0	0
84294040	- - 진동 드럼 롤러(중량이 20 톤 이하인 원심 드럼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294050	- - 그 밖의 진동 로드 롤러	0	0	0	0
84294090	- - 기타	0	0	0	0
84295100	-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0	0	0	0
84295200	- -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0	0	0	0
84295900	- - 기타	0	0	0	0
84301000	-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0	0	0	0
8430200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0	0	0	0
84303100	- - 자주식(自走式)	0	0	0	0
84303900	- - 기타	0	0	0	0
84304100	- - 자주식(自走式)	0	0	0	0
84304910	- - - 드릴 작업용에 적합한 웰헤드 플랫폼과 통합생산 모듈	0	0	0	0
84304990	- - - 기타	0	0	0	0
8430500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306100	- -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0	0	0	0
84306900	- - 기타	0	0	0	0
84311013	- - - 소호 제 8425.11.00 호, 제 8425.31.00 호나 제 8425.49.1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311019	- - - 기타	0	0	0	0
84311022	- - - 소호 제 8425.19.00 호, 제 8425.39.00 호, 제 8425.41.00 호, 제 8425.42.10 호 또는 제 8425.42.9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311029	- - - 기타	0	0	0	0
84312000	-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313110	- - - 소호 제 8428.10.21 호, 제 8428.10.29 호나 제 8428.10.9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313120	- - - 소호 제 8428.10.10 호나 제 8428.40.0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313910	- - - 소호 제 8428.20.10 호, 제 8428.32.10 호, 제 8428.33.10 호나 제 8428.39.1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313920	- - - 소호 제 8428.9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313940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운송・하역 및 보관용 자동화 기계의 것	0	0	0	0
84313990	- - - 기타	0	0	0	0
84314110	- - - 제 8426 호의 기계류에 사용되는 것	5	0	0	0
84314190	- - - 기타	5	0	0	0
84314200	- -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0	0	0	0
84314300	- -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0	0	0	0
84314910	- - - 제 8426 호의 기계류의 부분품	0	0	0	0
84314920	- - - 스크래퍼, 그레이더나 레벨러용의 절단면이나 엔드(end)	0	0	0	0
84314940	- - - 불도저나 앵글도저 블레이드용의 절단면이나 엔드(end)	0	0	0	0
84314950	- - - 로드 롤러의 것	0	0	0	0
84314960	- - - 소호 제 8430.20.00 호 물품의 것	0	0	0	0
84314990	- - - 기타	0	0	0	0
84321000	- 플라우(쟁기)	0	0	0	0
84322100	-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0	0	0	0
84322900	- - 기타	0	0	0	0
84323000	- 파종기・식부기(植付機) 및 이식기	0	0	0	0
84324000	-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0	0	0	0
84328010	- - 농업이나 원예용의 것	0	0	0	0
84328020	- - 잔디나 운동장용의 롤러	0	0	0	0
84328090	- - 기타	0	0	0	0
84329010	- - 소호 제 8432.80.90 호의 기계의 것	0	0	0	0
84329020	- - 잔디나 운동장용의 롤러의 것	0	0	0	0
84329090	- - 기타	0	0	0	0
84331100	- -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331910	- - - 동력식이 아닌 것	0	0	0	0
84331990	- - - 기타	0	0	0	0
84332000	-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0	0	0	0
84333000	-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0	0	0	0
84334000	-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0	0	0	0
84335100	- - 수확・탈곡 겸용기	0	0	0	0
84335200	- - 그 밖의 탈곡기	0	0	0	0
84335300	-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0	0	0	0
84335910	- - - 채면기와 조면기	0	0	0	0
84335990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336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36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39010	- - 타이어를 포함한 바퀴(어떠한 바퀴나 타이어의 폭이 30 밀리미터를 초과할 경우, 지름이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339020	- - 기타(소호 제 8433.11 호나 제 8433.19.90 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339030	- - 기타(소호 제 8433.19.10 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339090	- - 기타	0	0	0	0
8434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4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4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4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49010	- -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것	0	0	0	0
84349020	- -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의 것	0	0	0	0
8435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5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59010	- -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것	0	0	0	0
84359020	- -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의 것	0	0	0	0
8436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5	5	5	0
8436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62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62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6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6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68011	- - - 농업이나 원예용의 것	0	0	0	0
84368019	- - - 기타	0	0	0	0
84368021	- - - 농업이나 원예용의 것	0	0	0	0
84368029	- - - 기타	0	0	0	0
84369110	- - -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기구	0	0	0	0
84369120	- - -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와 기구	0	0	0	0
84369911	- - - -농업이나 원예용의 것	0	0	0	0
84369919	- - - -기타	0	0	0	0
84369921	- - - -농업이나 원예용의 것	0	0	0	0
84369929	- - - -기타	0	0	0	0
84371010	- - 곡물용으로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것,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키질(winnowing) 및 이와 유사한 세정용 기계	0	0	0	0
84371020	- - 곡물용으로 전기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전기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키질(winnowing) 및 이와 유사한 세정용 기계	0	0	0	0
8437103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7104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78010	- - 정미기와 원뿔형 정미기(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78020	- - 정미기와 원뿔형 정미기(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378030	- - 산업용 커피와 옥수수 제분기(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78040	- - 산업용 커피와 옥수수 제분기(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78051	- - - 쌀용 광택기·시프팅기와 체분석기·겨 세척 기구와 옥수수 껍질 벗기기 기계	0	0	0	0
84378059	- - - 기타	0	0	0	0
84378061	- - - 쌀용 광택기·시프팅기와 체분석기·겨 세척 기구와 옥수수 껍질 벗기기 기계	0	0	0	0
84378069	- - - 기타	0	0	0	0
84379011	- - - 소호 제 8437.10 호의 기계의 것	0	0	0	0
84379019	- - - 기타	0	0	0	0
84379021	- - - 소호 제 8437.10 호의 기계의 것	0	0	0	0
84379029	- - - 기타	0	0	0	0
8438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8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8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8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8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8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84000	- 양조용 기계	0	0	0	0
84385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85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86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86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88011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8801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88091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38809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389011	- - - 소호 제 8438.30.1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389012	- - - 커피 채취기의 것	0	0	0	0
84389019	- - - 기타	0	0	0	0
84389021	- - - 소호 제 8438.30.2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389022	- - - 커피 채취기의 것	0	0	0	0
84389029	- - - 기타	0	0	0	0
8439100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0	0	0	0
84392000	- 종이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0	0	0	0
84393000	- 종이 또는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0	0	0	0
84399100	-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0	0	0	0
84399900	- - 기타	0	0	0	0
8440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0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09010	- -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것	0	0	0	0
84409020	- -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의 것	0	0	0	0
8441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41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1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1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1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1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1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1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1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1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19010	- -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것	0	0	0	0
84419020	- -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의 것	0	0	0	0
8442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2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24010	- -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것	0	0	0	0
84424020	- -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기구의 것	0	0	0	0
84425000	-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 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0	0	0	0
844311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312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않은 상태의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31300	-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0	0	0	0
844314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0	0	0	0
844315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0	0	0	0
84431600	- - 곡면인쇄용 기계	0	0	0	0
84431700	- -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0	0	0	0
84431900	- - 기타	0	0	0	0
84433110	- - - 프린터-복사기(잉크젯 형식으로 프린트 되는 것)	0	0	0	0
84433120	- - - 프린터-복사기(레이저 형식으로 프린트 되는 것)	0	0	0	0
84433130	- - -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기계 복합기	0	0	0	0
84433190	- - - 기타	0	0	0	0
84433210	- - - 도트 프린터	0	0	0	0
84433220	- - - 잉크젯 프린터	0	0	0	0
84433230	- - - 레이저 프린터	0	0	0	0
84433240	- - - 팩시밀리 기계	0	0	0	0
84433250	- - -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 제조용 스크린 인쇄 기계	0	0	0	0
84433260	- - - 플로터	0	0	0	0
84433290	- - - 기타	0	0	0	0
84433911	- - - -천연색	0	0	0	0
84433919	- - - -기타	0	0	0	0
84433920	- - -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재생산하는 정전기식의 사진복사기기(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433930	- - - 광학기기를 갖춘 그 밖의 사진복사기기	0	0	0	0
84433940	- - - 잉크젯 프린터	0	0	0	0
84433990	- - - 기타	0	0	0	0
84439100	- -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84439910	- - -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 제조용 스크린 인쇄 기계의 것	0	0	0	0
84439920	- - - 잉크로 채워진 프린터 카트리지	0	0	0	0
84439930	- - - 종이 공급기 및 분류기	0	0	0	0
84439990	- - - 기타	0	0	0	0
84440010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40020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5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5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51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51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513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513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51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51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5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5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5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5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5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5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5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5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6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6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62100	-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62900	- - 기타	0	0	0	0
84463000	-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용[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47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7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71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71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7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7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7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7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8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48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81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81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482000	-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84483100	- - 침포	0	0	0	0
84483200	-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0	0	0	0
84483300	- -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 및 링트래블러	0	0	0	0
84483900	- - 기타	0	0	0	0
84484200	- -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0	0	0	0
84484910	- - - 셔틀	0	0	0	0
84484991	- - -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의 부분품	0	0	0	0
84484992	- - - -전기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의 부분품	0	0	0	0
84485100	-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바늘과 그 밖의 물품	0	0	0	0
84485900	- - 기타	0	0	0	0
84490010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490020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509010	- - 소호 제 8450.20.00 호의 기계의 것	10	10	10	0
84509020	- - 소호 제 8450.11 호, 제 8450.12.00 호나 제 8450.19 호의 물품의 것	10	10	10	0
84511000	- 드라이클리닝기	0	0	0	0
84512900	- - 기타	0	0	0	0
84513010	- - 싱글 롤러 타입의 가정용 다리미기기	0	0	0	0
84513090	- - 기타	0	0	0	0
84514000	- 세탁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0	0	0	0
84515000	-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518000	- 그 밖의 기계	0	0	0	0
84519011	- - - 가정용의 것	0	0	0	0
84519019	- - - 기타	0	0	0	0
84519090	- - 기타	0	0	0	0
84522100	- - 자동식	0	0	0	0
84522900	- - 기타	0	0	0	0
84523000	- 재봉기용 바늘	5	5	5	0
84529012	- - - 가구・밑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0	0	0	0
84529091	- - - 요람(arms and beds), 중심 프레임 부착여부가 상관없는 스탠드, 플라이 휠, 벨트 가드, 발판이나 페달	0	0	0	0
84529092	- - - 가구・밑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0	0	0	0
84529099	- - - 기타	0	0	0	0
8453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53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53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53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53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53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539000	- 부분품	0	0	0	0
84541000	- 전로	0	0	0	0
8454200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0	0	0	0
84543000	- 주조기	0	0	0	0
84549000	- 부분품	0	0	0	0
84551000	- 관 압연기	0	0	0	0
84552100	- -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0	0	0	0
84552200	- - 냉간(冷間) 압연기	0	0	0	0
84553000	- 압연기용 롤	0	0	0	0
84559000	- 그 밖의 부분품	0	0	0	0
84561000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0	0	0	0
8456200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0	0	0	0
8456300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0	0	0	0
84569010	- - 각종 재료를 절단, 플라즈마 아크 공법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로 수치제어식의 것(인쇄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569020	- - 전기화학 용액 투입으로 작동하는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의 물질을 제거하는 습식 프로세싱 기구	0	0	0	0
84569090	- - 기타	0	0	0	0
8457100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0	0	0	0
8457200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0	0	0	0
8457300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0	0	0	0
84581100	- - 수치제어식	0	0	0	0
84581910	- - - 주축과 베드 간의 거리가 3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581990	- - - 기타	0	0	0	0
84589100	- - 수치제어식	0	0	0	0
84589910	- - - 주축과 베드 간의 거리가 3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589990	- - - 기타	0	0	0	0
8459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59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592100	- - 수치제어식	0	0	0	0
8459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59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593100	- - 수치제어식	0	0	0	0
84593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59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59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59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595100	- - 수치제어식	0	0	0	0
84595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595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596100	- - 수치제어식	0	0	0	0
84596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596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597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597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01100	- - 수치제어식	0	0	0	0
84601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01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02100	- - 수치제어식	0	0	0	0
8460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0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03110	- - - 가공 공작기계로 수치제어식의 것[카바이드(carbide) 드릴 날(drilling bits)을 샤프닝하기 위한, 생크 지름이 3.175 밀리미터 이하인, 고정된 콜릿(collet)과 함께 제공되고 출력이 0.74 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0	0
84603190	- - - 기타	0	0	0	0
84603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0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0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0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0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0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1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1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1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1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1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1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15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15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19011	- - - 평삭기	0	0	0	0
84619019	- - - 기타	0	0	0	0
84619091	- - - 평삭기	0	0	0	0
84619099	- - - 기타	0	0	0	0
8462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2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22100	- - 수치제어식	0	0	0	0
8462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2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23100	- - 수치제어식	0	0	0	0
84623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2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624100	- - 수치제어식	0	0	0	0
84624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24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29100	- - 액압 프레스	0	0	0	0
84629910	- - - 주석 판의 박스, 캔과 이와 유사한 용기 제조용 기계(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29920	- - - 주석 판의 박스, 캔과 이와 유사한 용기 제조용 기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2995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2996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3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3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3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3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3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3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3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3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4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0	0	0	0
84641020	- -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42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42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49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49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51000	-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659110	- - -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판 물질 또는 인쇄배전판 물질을 스코어링(scoring)하는 용도의 것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59120	- - - 기타(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59190	- - - 기타	0	0	0	0
84659210	- - -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판 물질 또는 인쇄배전판 물질을 라우팅(routing)하는 용도로, 생크지름이 3.175 밀리미터 이하인 라우터 비트,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전판 또는 인쇄회로판 물질 또는 인쇄배전판 물질을 스코어링(scoring)하는 용도의 것	0	0	0	0
84659220	- - - 기타(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59290	- - - 기타	0	0	0	0
84659310	-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59320	-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59410	-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59420	-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59510	- - - 인쇄회로판이나 인쇄배선판 제조용 드릴링 머신(drilling machine)(스핀들 속도가 50000 알피엠을 초과하고 생크지름이 3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175 밀리미터 이하인 단말수신 드릴 비트에 한정한다)				
84659530	- - - 기타(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59590	- - - 기타	0	0	0	0
84659610	-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59620	-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659930	- - - 선반(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59940	- - - 선반(비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59950	- - - 제조중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의 표면을 디버링(deburring)하는 기기,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판 물질 또는 인쇄배선판 물질을 스코어링(scoring)하는 기기,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의 제조용 적층 압축기	0	0	0	0
84659960	- - - 기타(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659990	- - - 기타	0	0	0	0
84661010	- - 소호 제 8456.90.10 호・ 제 8456.90.20 호・ 제 8460.31.10 호・제 8465.91.10 호・ 제 8465.92.10 호・ 제 8465.95.10 호나 제 8465.99.50 호의 기계도구용의 것	0	0	0	0
84661090	- - 기타	0	0	0	0
84662010	- - 소호 제 8456.90.10 호・ 제 8456.90.20 호・ 제 8460.31.10 호・제 8465.91.10 호・ 제 8465.92.10 호・ 제 8465.95.10 호나 제 8465.99.50 호의 기계도구용의 것	0	0	0	0
84662090	- - 기타	0	0	0	0
84663010	- - 소호 제 8456.90.10 호・ 제 8456.90.20 호・ 제 8460.31.10 호・제 8465.91.10 호・ 제 8465.92.10 호・ 제 8465.95.10 호나 제 8465.99.50 호의 기계도구용의 것	0	0	0	0
84663090	- - 기타	0	0	0	0
84669100	- - 제 8464 호의 기계용	0	0	0	0
84669210	- - - 소호 제 8465.91.10 호, 제 8465.92.10 호, 제 8465.95.10 호나 제 8465.99.50 호의 기계의 도구	0	0	0	0
84669290	- - - 기타	0	0	0	0
84669320	- - -소호 제 8456.90.10 호・ 8456.90.20 호나 8460.31.10 호의 기계용의 것	0	0	0	0
84669390	- - - 기타	0	0	0	0
84669400	- -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0	0	0	0
84671100	-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4671900	- - 기타	0	0	0	0
84672100	- - 각종 드릴	5	5	5	0
84672200	- - 톱	0	0	0	0
84672900	- - 기타	5	5	5	0
84678100	- - 체인톱	0	0	0	0
84678900	- - 기타	0	0	0	0
84679110	- - - 전기 기계식의 것	0	0	0	0
84679190	- - - 기타	0	0	0	0
84679200	-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0	0	0	0
84679910	- - -소호 제 8467.21.00 호, 제 8467.22.00 호나 제 8467.29.00 호의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물품의 것				
84679990	- - - 기타	0	0	0	0
84681000	- 수지식 취관(吹管)	0	0	0	0
84682010	- - 수동식(수지식이 아닌것) 가스 용접기이나 금속용 땜질 기구	0	0	0	0
84682090	- - 기타	0	0	0	0
84688000	- 그 밖의 기기	0	0	0	0
84689010	- -소호 제 8468.10.0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689020	- -소호 제 8468.20.0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689090	- - 기타	0	0	0	0
84690010	- 워드프로세싱 머신	0	0	0	0
84690090	- 기타	0	0	0	0
8470100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0	0	0	0
84702100	-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0	0	0	0
84702900	- - 기타	0	0	0	0
84703000	- 그 밖의 계산기	0	0	0	0
84705000	- 금전 등록기	0	0	0	0
84709010	- - 우편요금계기	0	0	0	0
84709020	- - 회계기	0	0	0	0
84709090	- - 기타	0	0	0	0
84713010	- - 휴대용 컴퓨터(팜탑과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를 포함한다.)	0	0	0	0
84713020	- - 랩탑(노트북 및 서브노트북을 포함함)	0	0	0	0
84713090	- - 기타	0	0	0	0
84714110	- - - 소호 제 8471.30 호의 휴대용 컴퓨터를 제외한 개인용 컴퓨터	0	0	0	0
84714190	- - - 기타	0	0	0	0
84714910	- - - 소호 제 8471.30 호의 휴대용 컴퓨터를 제외한 개인용 컴퓨터	0	0	0	0
84714990	- - - 기타	0	0	0	0
84715010	- - 개인용 컴퓨터용 처리장치(휴대용을 포함함)	0	0	0	0
84715090	- - 기타	0	0	0	0
84716030	- - 컴퓨터 키보드	0	0	0	0
84716040	- - 마우스・ 라이트 펜・조이스틱・트랙 볼과 터치 센서티브 스크린을 포함하는 X-Y 좌표 입력 기구	0	0	0	0
84716090	- - 기타	0	0	0	0
84717010	-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0	0	0	0
84717020	-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0	0	0	0
84717030	- - 테이프 드라이브	0	0	0	0
84717040	- - 시디 롬 드라이브・ 디브디 드라이브와 시디-알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	0	0	0	0
84717050	- - 독점적 포맷 저장 장치(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용 매체・제거 가능한 매체 여부와 자석・광학 또는 기타 기술 불문함)	0	0	0	0
84717091	- - - 자동백업 시스템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717099	- - - 기타	0	0	0	0
84718010	- - 제어용과 접속용의 기기	0	0	0	0
84718070	- - 사운드 카드 또는 비디오 카드	0	0	0	0
84718090	- - 기타	0	0	0	0
84719010	- - 바 코드 리더	0	0	0	0
84719020	- -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서류나 이미지 스캐너	0	0	0	0
84719090	- - 기타	0	0	0	0
84721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21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23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23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29010	- - 현금 자동 처리기	0	0	0	0
84729020	- - 전자 지문 인식 시스템	0	0	0	0
84729030	- - 기타(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29090	- - 기타(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31010	- - 워드프로세싱 기계용 인쇄 회로 조립품	0	0	0	0
84731090	- - 기타	0	0	0	0
84732100	- -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0	0	0
84732900	- - 기타	0	0	0	0
84733010	- - 조립된 인쇄회로판	0	0	0	0
84733090	- - 기타	0	0	0	0
84734011	- - -현금 자동 출납기용 인쇄 회로 부속품을 포함하는 부분품	0	0	0	0
84734019	- - - 기타	0	0	0	0
84734020	- - 비전기구동식의 기계의 것	0	0	0	0
84735011	- - - 제 8471 호의 기계와 함께 쓰는데 적합한 것	0	0	0	0
84735019	- - - 기타	0	0	0	0
84735020	- - 비전기 구동식의 기계의 것	0	0	0	0
84741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41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42011	- - - 석재용의 것	0	0	0	0
84742019	- - - 기타	0	0	0	0
84742021	- - - 석재용의 것	0	0	0	0
84742029	- - - 기타	0	0	0	0
84743110	-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43120	-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43211	- - - -출력이시간당 80 톤 이하인 것	0	0	0	0
84743219	- - - -기타	0	0	0	0
84743221	- - - -출력이시간당 80 톤 이하인 것	0	0	0	0
84743229	- - - -기타	0	0	0	0
84743910	-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43920	-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48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748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49010	- -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기계의 것	0	0	0	0
84749020	- - 전기적으로 구동하지 않는 기계의 것	0	0	0	0
84751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51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52100	- -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0	0	0	0
84752900	- - 기타	0	0	0	0
84759010	- -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기계의 것	0	0	0	0
84759020	- - 전기적으로 구동하지 않는 기계의 것	0	0	0	0
847621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0	0	0	0
84762900	- - 기타	0	0	0	0
847681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0	0	0	0
84768900	- - 기타	0	0	0	0
84769000	- 부분품	0	0	0	0
84771010	- - 성형 고무기의 것	0	0	0	0
84771031	- - - 폴리(염화 비닐)사출 성형기	0	0	0	0
84771039	- - - 기타	0	0	0	0
84772010	- - 고무 압출용의 것	0	0	0	0
84772020	- - 플라스틱 압출용의 것	0	0	0	0
84773000	- 취입 성형기	0	0	0	0
84774010	- - 고무 성형용의 것	0	0	0	0
84774020	- - 플라스틱 성형용의 것	0	0	0	0
84775100	-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 (inner tube) 성형기	0	0	0	0
84775910	- - - 고무용의 것	0	0	0	0
84775920	- - - 플라스틱용의 것	0	0	0	0
84778010	- -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구동식의 것)	0	0	0	0
84778020	- -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비전기구동식의 것)	0	0	0	0
84778031	- - - 인쇄 회로 기판이나 인쇄 배선판의 제조용 라미네이션 압축기	0	0	0	0
84778039	- - - 기타	0	0	0	0
84778040	- -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비전기구동식의 것)	0	0	0	0
84779010	- - 전기 구동식으로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0	0	0	0
84779020	- - 비전기 구동식으로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0	0	0	0
84779032	- - - 인쇄회로판이나 인쇄배선판의 제조용 라미네이션 압축기의 부분품	0	0	0	0
84779039	- - - 기타	0	0	0	0
84779040	- - 비전기 구동식으로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플라스틱으로 제품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을 제조하는 기계				
84781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81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89010	- - 전기적으로 구동하는 기계의 것	0	0	0	0
84789020	- - 전기적으로 구동하지 않는 기계의 것	0	0	0	0
84791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91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92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92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93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93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94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94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9500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796000	- 증발식 에어쿨러	0	0	0	0
84797100	-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0	0	0	0
84797900	- - 기타	0	0	0	0
84798110	-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98120	-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98210	-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98220	-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98920	- - - 플라스틱 케이스 또는 하우징 안의 중앙처리장치 도터보드(daughter boards)를 조립하는 기계,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의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적 솔루션의 재생용 기기,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선판의 제조중의 그 표면을 기계적으로 세정하는 장비, 구성품 또는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전판 또는 그밖의 물질의 접촉요소(contact elements)의 배치 또는 제거용 자동화 기계, 인쇄회로판 또는 인쇄배전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 과정 중 정렬(alignment)용 등록 장비	0	0	0	0
84798930	- - - 기타(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84798940	- - - 기타(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4799020	- -소호 제 8479.89.2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4799030	- - 기타 전기 구동식 기계의 것	0	0	0	0
84799040	- - 전기적으로 구동하지 않는 기계의 것	0	0	0	0
84801000	- 금속 주조용 주형틀	0	0	0	0
84802000	- 주형 베이스	0	0	0	0
84803010	- - 구리로 만든것	0	0	0	0
84803090	- - 기타	0	0	0	0
84804100	- - 사출식이나 압축식	0	0	0	0
84804900	- - 기타	0	0	0	0
84805000	- 유리 성형용 주형	0	0	0	0
84806000	-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0	0	0	0
84807110	- - - 신발 바닥용 몰드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807190	- - - 기타	0	0	0	0
84807910	- - - 신발 바닥용 몰드	0	0	0	0
84807990	- - - 기타	0	0	0	0
84811011	- - - 내부 지름이 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40 센티미터 이하인 주입구나 배출구가 있는 수동식의 수문 또는 게이트 밸브	0	0	0	0
84811019	- - - 기타	0	0	0	0
84811021	- - -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811022	- - -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 초과하는 것	0	0	0	0
84811091	- - - 내부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인 플라스틱의 것	0	0	0	0
84811099	- - - 기타	0	0	0	0
84812010	- - - 내부 지름이 5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40 센티미터 이하인 주입구나 배출구가 있는 수동식의 수문 또는 게이트 밸브	0	0	0	0
84812020	- - 동 또는 동합금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내부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 및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812090	- - 기타	0	0	0	0
84813010	- - 스윙 체크 밸브, 캐스트 아이론의 것으로, 내부 지름이 4 센티미터 이상 6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813020	- -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81303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지름이 10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를 이하인 것	0	0	0	0
84813090	- - 기타	0	0	0	0
84814010	- - 동이나 동합금으로만든 것으로 내부 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81402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지름이 10 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를 이하인 것	0	0	0	0
84814090	- - 기타	0	0	0	0
84818011	- - - 구리나 구리합금의 것	0	0	0	0
84818012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84818013	- - - 구리나 구리합금의 것	0	0	0	0
84818014	- - - 기타 물질의 것	0	0	0	0
84818021	- - - 주입구나 배출구 내부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818022	- - - 주입구나 배출구 내부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818030	- - 코크와 밸브(가스 스토브와레인지용 압전기 점화기장착여부는 상관없다)	0	0	0	0
84818041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지름 1 센티미터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의 것	0	0	0	0
84818049	- - - 기타	0	0	0	0
84818064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지름 1 센티미터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의 것	0	0	0	0
84818065	- - - 기타	0	0	0	0
84818066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지름 1 센티미터이상 2.5 센티미터 이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하의 것				
84818067	- - - 기타	5	5	5	0
84818071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지름 1 센티미터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의 것	0	0	0	0
84818072	- - - -기타	5	5	5	0
84818073	- - - -주입구과 배출구 내부지름이 5 센티미터 초과 40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818074	- - - -주입구와 배출구가 내부지름이 4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818075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지름 1 센티미터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의 것	0	0	0	0
84818076	- - - -기타	0	0	0	0
84818081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지름 1 센티미터이상 2.5 센티미터 이하의 것	0	0	0	0
84818082	- - - -기타	0	0	0	0
84818083	- - - -주입구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이며 배출구 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818084	- - - -주입구 지름이 1 센티미터 이상이며 배출구 지름이 2.5 센티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818087	- - -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연료 공급 차단 밸브	0	0	0	0
84818088	- - - - - 기타	0	0	0	0
84818089	- - - 기타(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중량이 3 킬로그램 미만이며· 표면처리가 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니켈로 만들어진 것)	0	0	0	0
84818091	- - - -구리나 구리합금의 수도꼭지로 내부지름이 2.5 센티미터 이하인 것	5	0	0	0
84818092	- - - - - 제 8702 호·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연료 공급 차단 밸브	0	0	0	0
84818099	- - - - - 기타	5	5	5	0
84819010	- - 수문이나 게이트밸브용 하우징으로 흡입구나 배출구의 내부 지름이 50 밀리미터 초과 400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84819021	- - - 수도꼭지용 몸통	5	0	0	0
84819022	- - - 액화 석유가스(LPG) 실린더 밸브용 몸통	0	0	0	0
84819023	- - - 기타(몸통)	0	0	0	0
84819029	- - - 기타	0	0	0	0
84819031	- - -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84819039	- - - 기타	0	0	0	0
84819041	- - -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0	0	0	0
84819049	- - - 기타	0	0	0	0
84819090	- - 기타	0	0	0	0
84821000	- 볼베어링(ball bearing)	0	0	0	0
84822000	-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0	0	0	0
84823000	-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82400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0	0	0
8482500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0	0	0	0
84828000	-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84829100	- - 볼・니들・롤러	0	0	0	0
84829900	- - 기타	0	0	0	0
84831010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용	5	5	5	0
84831025	- - - - 차량용으로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 이하인 것	0	0	0	0
84831026	- - - - 차량용으로 실린더 용량이 2,0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0	0	0	0
84831027	- - - - 차량용으로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4831031	- - - 출력이 22.38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4831039	- - - 기타	0	0	0	0
84832020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	0	0	0	0
84832030	- - 제 87 류 차량의 엔진용	0	0	0	0
84832090	- - 기타	0	0	0	0
84833020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용	0	0	0	0
84833030	- - 제 87 류 차량의 엔진용	0	0	0	0
84833090	- - 기타	0	0	0	0
84834020	- - 선박용	5	0	0	0
84834030	- - 제 8429 호나 제 8430 호의 기계류용	5	0	0	0
84834090	- - 기타	5	5	5	0
84835000	-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5	5	5	0
84836000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0	0	0	0
84839011	- - - 소호 제 8701.10 호나 제 8701.90 호의 트랙터의 것	0	0	0	0
84839013	- - - 제 8701 호의 그밖의 트랙터용	0	0	0	0
84839019	- - - 기타	0	0	0	0
84839091	- - - 소호 제 8701.10 호나 제 8701.90 호의 물품용	0	0	0	0
84839093	- - - 제 8701 호의 그밖의 트랙터용	0	0	0	0
84839099	- - - 기타	5	5	5	0
84841000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842000	-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0	0	0	0
84849000	- 기타	0	0	0	0
84861010	- -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0	0	0
84861020	- -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스핀 드라이어	0	0	0	0
84861030	- - 각종 재료의 가공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의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861040	- - 단결정 반도체 보울을 얇게 절단하거나 웨이퍼를 칩으로 절단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하는 기계				
84861050	- - 반도체 웨이퍼의 가공용 연삭기・광택기와 래핑기계	0	0	0	0
84861060	- - 단결정 반도체 보울을 성장 또는 풀링용 기계	0	0	0	0
84861090	- - 기타	0	0	0	0
84862011	- - - 반도체 생산용 화학 기상 증착기	0	0	0	0
84862012	- - - 반도체 웨이퍼용 에피택시얼 증착기, 반도체 웨이퍼 위에 감광 유제를 도포 하는 스피너	0	0	0	0
84862013	- - - 반도체 웨이퍼의 스퍼터링(sputtering)방식의 물리적 증착기, 반도체 생산용 물리적 증착기	0	0	0	0
84862019	- - - 기타	0	0	0	0
84862021	- - -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0	0	0	0
84862029	- - - 기타	0	0	0	0
84862031	- - -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이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	0	0	0	0
84862032	- - - 반도체재료용 건식 식각 패턴용의 기기	0	0	0	0
84862033	- - -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현상・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0	0	0	0
84862039	- - - 기타	0	0	0	0
84862041	- - - 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0	0	0	0
84862042	- - -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0	0	0	0
84862049	- - - 기타	0	0	0	0
84862051	- - -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이나 스코어링을 위한 다이싱기	0	0	0	0
84862059	- - - 기타	0	0	0	0
84862091	- - - 반도체 제조시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0	0	0	0
84862092	- - - 반도체 리드의 굽힘용・접음용 및 교정용 기계	0	0	0	0
84862093	- - -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를 위한 저항 가열식의 노와 오븐	0	0	0	0
84862094	- - -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를 위한 유도용량이나 유전체 노와 오븐	0	0	0	0
84862095	- - - 반도체 재료의 구성품 또는 접촉 요소(contract elements)의 배치 또는 제거용 자동화 기계	0	0	0	0
84862099	- - - 기타	0	0	0	0
84863010	- - 평판디스플레이 기판의 건식식각 패턴용 기기	0	0	0	0
84863020	- - 평판디스플레이의 습식 식각・현상・스트리핑(stripping)이나 세척하는 기기	0	0	0	0
84863030	- - 평판 디스플레이 생산용 화학적 기상 증착법, 평판 디스플레이 기판에 감광 유제를 도포하는 스피너, 평판 디스플레이의 물리적 증착용 기구	0	0	0	0
84863090	- - 기타	0	0	0	0
84864010	- - 반도체 디바이스의 패턴용의 마스크와 레티클의 생산이나 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0	0	0	0
84864020	-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테이프 자동 접착기・와이어 접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착기와 인캡슐레이션 (encapsulation) 기기, 반도체 웨이퍼・웨이퍼 카세트・웨이퍼상자와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용 재료의 이송・취급 및 저장을 위한 자동 기기				
84864030	- -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용 몰드	0	0	0	0
84864040	- - 광학 입체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864050	- - 사진 촬영용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864060	- - 전자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864070	- -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 또는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0	0	0	0
84864090	- - 기타	0	0	0	0
84869011	- - -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0	0	0	0
84869012	- - -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스핀 드라이어	0	0	0	0
84869013	- - - 각종 재료의 가공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의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869014	- - - -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가공용 홀더(holder),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0	0	0	0
84869015	- - - -기타	0	0	0	0
84869016	- - -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광택기 또는 래핑기의 것	0	0	0	0
84869017	- - - 단결정 반도체 보울의 성장 또는 풀링용의 것	0	0	0	0
84869019	- - - 기타	0	0	0	0
84869021	- - - 반도체생산품용의 화학 기상 증착기의 것	0	0	0	0
84869022	- - - 반도체 웨이퍼용 에피택시얼 증착기, 반도체 웨이퍼 위에 감광 유제를 도포 하는 스피너	0	0	0	0
84869023	- - - 반도체 재료의 도핑용 이온주입기, 반도체 웨이퍼의 스퍼터링(sputtering)방식의 물리적 증착기, 반도체 생산용 물리적 증착기, 반도체 웨이퍼 상에 직접 그리는 기기, 스텝 앤 리피트 얼라이너 및 그밖의 리소그래피 장비	0	0	0	0
84869024	- - - -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가공용 홀더(holder),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0	0	0	0
84869025	- - - -기타	0	0	0	0
84869026	- - - - 툴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가공용 홀더(holder),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0	0	0	0
84869027	- - - -기타	0	0	0	0
84869028	- - - 반도체 웨이퍼용 반도체 기기 제조용 저항가열식의 노와 오븐의 것, 반도체 웨이퍼상의 반도체 소자 제조용의 전자 유도식이나 유전식의 노와 오븐의 것	0	0	0	0
84869029	- - - 기타	0	0	0	0
84869031	- - - 평판 디스플레이 물질용 건식식각 패턴용의 기기	0	0	0	0
84869032	- - - -툴홀더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가공물 홀더, 분할대와 그밖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4869033	- - - -기타	0	0	0	0
84869034	- - - 평판 디스플레이 생산용 화학적 기상 증착기의 것	0	0	0	0
84869035	- - -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감광 유제 도포용 스피너	0	0	0	0
84869036	- - - 평판 디스플레이용 물리적 증착기 기구의 것	0	0	0	0
84869039	- - - 기타	0	0	0	0
84869041	- - - 반도체디바이스의 패턴용의 마스크 또는 레티클을 생산용이나 수리용의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의 것	0	0	0	0
84869042	- - -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테이프 자동 접착기・와이어 접착기 및 인캡슐레이션 (encapsulation) 기기의 것	0	0	0	0
84869043	- - -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 및 그 밖의 반도체기기 재료의 운송, 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 기기	0	0	0	0
84869044	- - - 입체 현미경과 사진 촬영용 현미경의 것(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에 한정한다)	0	0	0	0
84869045	- - - 전자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4869046	- - - 패턴형성기의 것(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나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함)	0	0	0	0
84869049	- - - 기타	0	0	0	0
84871000	-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0	0	0	0
84879000	- 기타	0	0	0	0
85011030	- - - 스핀들 모터	0	0	0	0
8501104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5011049	- - - -기타	5	5	5	0
8501321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에 사용되는 모터	0	0	0	0
85013212	- - - -그 밖의 모터	0	0	0	0
85013213	- - - - 발전기	0	0	0	0
8501329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에 사용되는 모터	0	0	0	0
85013292	- - - -그 밖의 모터	0	0	0	0
85013293	- - - - 발전기	0	0	0	0
85013300	- -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013400	- -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1511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5	5	5	0
85015119	- - - 기타	5	0	0	0
8501521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5015219	- - - -기타	5	5	5	0
8501522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015229	- - - -기타	5	5	5	0
85015231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9 호나 제 8516 호의 것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5015239	- - - -기타	0	0	0	0
85015300	- -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16210	- - -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며 1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0	0	0
85016290	- - - 출력이 1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며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16300	- -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16400	- -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21210	- - - 출력이 12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5	5	5	0
85021220	- - - 출력이 12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5	5	5	0
85021310	- - - 출력이 12,500 킬로볼트암페어(10,000 킬로와트) 이상인 것	0	0	0	0
85021390	- - - 기타	0	0	0	0
85022020	- - 출력이 75 킬로볼트 암페어를 초과하고 100 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2030	- - 출력이 1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2041	- - - 출력이 12,500 킬로볼트암페어(10,000 킬로와트) 이상인 것	0	0	0	0
85022049	- - - 기타	0	0	0	0
85023110	- - - 출력이 10,000 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3120	- - - 출력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23910	- - - 출력이 1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3920	- - - 출력이 1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며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23931	- - - -출력이 12,500 킬로볼트암페어(10,000 킬로와트) 이상인 것	0	0	0	0
85023939	- - - -기타	0	0	0	0
85024000	- 회전변환기	0	0	0	0
85030010	- 제 85.01 호의 전기 모터의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 출력이 10,000 킬로와트 이상의 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부분품	0	0	0	0
85030090	- 기타	0	0	0	0
85041000	-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5	0	0	0
85042310	- - - 용량이 15,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2321	----용량이 2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2322	- - - -20,0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2329	- - - -기타	0	0	0	0
85043130	- - - 고압 변압기	0	0	0	0
85043230	- - - 기타(3 메가헤르츠의 최소 주파수로 한정한다)	0	0	0	0
85044011	- - - 무정전 전원장치	0	0	0	0
85044019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044020	- - 출력이 1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밧데리 충전기	0	0	0	0
85044030	- - 그밖의 정류기	0	0	0	0
85044040	- - 인버터	0	0	0	0
85044090	- - 기타	0	0	0	0
85045010	- - 자동 데이터 처리 기계와 그 유닛용 및 전기 통신 기구용 파워 공급기용 유도자	0	0	0	0
85045020	- - 칩 유형의 고정 유도자	0	0	0	0
85045093	- - - 용량이 2,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5094	- - - 용량이 2,500 킬로볼트암페어 초과하고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지 않는 것	0	0	0	0
85045095	- - -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49010	- - 소호 제 8504.1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85049020	- - 소호 제 8504.40.11 호・제 8504.40.19 호나 제 8504.50.10 호의 상품용 인쇄회로조립품	0	0	0	0
85049031	- - - 방열기 패널, 배전용과 변압기용의 편평한 튜브 방열기 조립품	0	0	0	0
85049039	- - - 기타	0	0	0	0
85049041	- - - 방열기 패널, 배전용과 변압기용의 편평한 튜브 방열기 조립품	0	0	0	0
85049049	- - - 기타	0	0	0	0
85049050	- - 기타(유도자의 용량이 2,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0	0	0	0
85049060	- - 기타(유도자의 용량이 2,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049090	- - 기타	0	0	0	0
85051100	- -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85051900	- - 기타	0	0	0	0
85052000	-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0	0	0	0
8505900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0	0	0
85061090	- - 기타	0	0	0	0
85066090	- - 기타	0	0	0	0
85068020	- - 외부용적이 300 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아연 탄소로 만든 것	0	0	0	0
85068099	- - - 기타	0	0	0	0
85069000	- 부분품	0	0	0	0
85071010	- - 항공기용	0	0	0	0
85072010	- - 항공기용	0	0	0	0
85073010	- - 항공기용	0	0	0	0
85074010	- - 항공기용	0	0	0	0
85075000	-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0	0	0	0
85076010	- - 랩탑용(노트북과 서브노트북을 포함한다)	0	0	0	0
85076090	- - 기타	0	0	0	0
85078010	- - 항공기용	0	0	0	0
85078091	- - - 랩탑용(노트북과 서브노트북을 포함한다)	0	0	0	0
85078099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079011	- - -소호 제 8507.10.92 호, 제 8507.10.93 호, 제 8507.10.94 호나 제 8507.10.99 호의 물품	0	0	0	0
85079012	- - - 항공기용	0	0	0	0
85079019	- - - 기타	0	0	0	0
85079091	- - - 항공기용	0	0	0	0
85079092	- -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분리기[폴리(염화 비닐)는 제외한다]	0	0	0	0
85079093	- - - 기타(소호 제 8507.10.92 호, 제 8507.10.93 호, 제 8507.10.94 호나 제 8507.10.99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079099	- - - 기타	0	0	0	0
85081990	- - - 기타	0	0	0	0
8508600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0	0	0	0
85087010	- - 진공청소기(소호 제 8508.11.00 호나 제 8508.19.10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087090	- - 기타	0	0	0	0
85098020	-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10	10	10	0
85099010	- - 소호 제 8509.80.10 호의 물품	0	0	0	0
85099090	- - 기타	0	0	0	0
85101000	- 면도기	0	0	0	0
85102000	- 이발기	0	0	0	0
85103000	- 모발제거기	0	0	0	0
85109000	- 부분품	0	0	0	0
85111010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0	0	0	0
85111020	- - 차량엔진에 적합한 것	0	0	0	0
85111090	- - 기타	0	0	0	0
85112010	-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0	0	0	0
85112021	- - - 조립되지않은 것	0	0	0	0
85112029	- - - 기타	0	0	0	0
85112091	- - - 조립되지않은 것	0	0	0	0
85112099	- - - 기타	0	0	0	0
85113030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0	0	0	0
85113041	- - - 조립되지않은 것	0	0	0	0
85113049	- - - 기타	5	5	5	0
85113091	- - - 조립되지않은 것	0	0	0	0
85113099	- - - 기타	0	0	0	0
85114010	-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0	0	0	0
85114021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14029	- - - 기타	0	0	0	0
85114031	- - - 차량엔진용(제 8701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14032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85114033	- - - 차량엔진용(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114091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14099	- - - 기타	5	5	5	0
85115010	- - 항공기엔진용	0	0	0	0
85115021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15029	- - - 기타	0	0	0	0
85115031	- - - 차량엔진용(제 8701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15032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나 제 8704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5	0	0	0
85115033	- - - 차량엔진용(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15091	- - - 차량엔진용(제 8702 호, 제 8703 호, 제 8704 호나 제 87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15099	- - - 기타	0	0	0	0
85118010	-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0	0	0	0
85118020	- - 차량엔진에 적합한 것	5	5	5	0
85118090	- - 기타	0	0	0	0
85119010	-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0	0	0	0
85119020	- - 차량엔진에 적합한 것	0	0	0	0
85119090	- - 기타	0	0	0	0
85121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0	0	0	0
85123010	- - 혼(horns) 과 사이렌(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5	0	0	0
85123020	- - 조립되지않은 음향신호용 기구	0	0	0	0
85123091	- - - 차량용 장애물 감지(경고) 장치	0	0	0	0
85123099	- - - 기타	0	0	0	0
8512400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5	5	5	0
85129010	- -소호 제 8512.10 호의 물품	0	0	0	0
85129020	- -소호 제 8512.20 호, 제 8512.30 호나 제 8512.40 호의 물품	5	5	5	0
85131010	- - 광부용 헬멧 램프	0	0	0	0
85131020	- - 채석용 램프	0	0	0	0
85131090	- - 기타	5	5	5	0
85139010	- - 광부용 헬멧 램프나 채석용 램프의 것	0	0	0	0
85139030	- - 섬광 반사기, 플라스틱의 손전등 스위치 슬라이더	0	0	0	0
85139090	- - 기타	0	0	0	0
85141000	-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0	0	0	0
85142020	- - 전기식 노(爐) 또는 오븐(인쇄회로판, 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판 조립품 제조용)	0	0	0	0
85142090	- - 기타	0	0	0	0
85143020	- - 전기식 노(爐) 또는 오븐(인쇄회로판, 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판 조립품 제조용)	0	0	0	0
85143090	- - 기타	0	0	0	0
85144000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149020	- - 공업용이나 실험용 전기식 노(爐) 또는 오븐의 부분품(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또는 인쇄회로판 조립품 제조용)	0	0	0	0
85149090	- - 기타	0	0	0	0
85151100	- - 납땜용 인두와 건(gun)	0	0	0	0
85151910	- - - 인쇄회로기판/인쇄배선 납땜 구성품용 기기	0	0	0	0
85151990	- - - 기타	0	0	0	0
851521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0	0	0	0
85152900	- - 기타	0	0	0	0
851531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0	0	0	0
85153910	- - - 교류아크 용접기(트랜스포머 방식)	0	0	0	0
85153990	- - - 기타	0	0	0	0
85158010	- -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카바이드 가열분사용 전기기기	0	0	0	0
85158090	- - 기타	0	0	0	0
85159010	- - 교류아크 용접기의 것(트랜스포머 방식)	0	0	0	0
85159020	- - 인쇄회로기판/ 인쇄 배선판용 납땜 구성품용 기기의 부분품	0	0	0	0
85159090	- - 기타	0	0	0	0
85168010	- - 활자주조나 주식기(鑄植機)용, 공업 노(爐)용	0	0	0	0
85168090	- - 기타	5	5	5	0
85169029	- - - 기타	0	0	0	0
85169030	- -소호 제 8516.10 호의 물품	0	0	0	0
85169040	- - 활자 주조 또는 주식기(鑄植機)용 전열용 저항체의 것	0	0	0	0
85169090	- - 기타	0	0	0	0
85171100	- - 유선전화기 세트[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85171200	-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0	0	0	0
85171800	- - 기타	5	5	5	0
85176100	- - 기지국	0	0	0	0
85176210	- - - 다국어 회의에서 동시통역에 사용되는 라디오 송신기기와 라디오 수신기기	0	0	0	0
85176221	- - - - 제어 및 어댑터 유닛(게이트 웨이・브리지와 라우터를 포함함)	0	0	0	0
85176229	- - - - 기타	0	0	0	0
85176230	- -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0	0	0	0
85176241	- - - - 모뎀(케이블 모뎀과 모뎀카드를 포함한다)	0	0	0	0
85176242	- - - - 컨센트레이터나 멀티플렉서	0	0	0	0
85176249	- - - - 기타	0	0	0	0
85176251	- - - - 무선랜	0	0	0	0
85176252	- - - - 송신기기와 수신기기(다국어 컨퍼런스에서 동시통역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것)	0	0	0	0
85176253	- - - - 그 밖의 송신기기(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0	0	0	0
85176259	- - - - 기타	0	0	0	0
85176261	-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0	0	0	0
85176269	-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176291	- - - -호출, 경보 또는 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 및 페이징 알람기기(무선호출기를 포함한다.)	0	0	0	0
85176299	- - - - 기타	0	0	0	0
85176900	- - 기타	5	5	5	0
85177010	- - 제어 및 어탭터 유닛(게이트웨이·브리지와 라우터를 포함한다)의 것	0	0	0	0
85177021	- - - 휴대전화의 것	0	0	0	0
85177029	- - - 기타	0	0	0	0
85177031	- - - 유선전화나 유선전신용 물품	0	0	0	0
85177032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물품	0	0	0	0
85177039	- - - 기타	0	0	0	0
85177040	- -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안테나	0	0	0	0
85177091	- - - 유선전화나 유선전신용 물품	0	0	0	0
85177092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물품	5	0	0	0
85177099	- - - 기타	0	0	0	0
85181011	- - -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 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 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 헤르츠부터 3,400 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181019	- - - 그 밖의 마이크로폰(스탠드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	5	5	0
85181090	- - 기타	5	5	5	0
85182110	- - - 박스 스피커 타입	0	0	0	0
85182190	- - - 기타	5	0	0	0
85182210	- - - 박스 스피커 타입	5	0	0	0
85182290	- - - 기타	0	0	0	0
85182920	- - - 전기통신용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지름이 50 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 대역인 300 헤르츠부터 3,400 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85182990	- - - 기타	5	5	5	0
85183010	- - 헤드폰	0	0	0	0
85183020	- - 이어폰	5	5	5	0
85183040	- - 유선전화 핸드세트	0	0	0	0
85183051	- - -소호 제 8517.12.00 호용의 것	0	0	0	0
85183059	- - - 기타	0	0	0	0
85183090	- - 기타	0	0	0	0
85189010	- -소호 제 8518.10.11 호, 제 8518.29.20 호, 제 8518.30.40 호나 제 8518.40.20 호의 물품(인쇄회로조립품을 포함한다)	5	5	5	0
85189020	- -소호 제 8518.40.40 호의 물품	0	0	0	0
85189030	- -소호 제 8518.21 호나 제 8518.22 호의 물품	0	0	0	0
85189040	- -소호 제 8518.29.90 호의 물품	5	5	5	0
85189090	- - 기타	0	0	0	0
85195000	- 전화응답기	0	0	0	0
85198150	- - -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19816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19817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19819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198930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211010	- - 영화용이나 텔레비전 방송용	0	0	0	0
85219011	- - - 영화용이나 텔레비전 방송용	0	0	0	0
85219091	- - - 영화용이나 텔레비전 방송용	0	0	0	0
85221000	- 픽업 카트리지	0	0	0	0
85229020	- - 인쇄회로판 조립품(전화응답기용)	0	0	0	0
85229030	- - 인쇄회로판 조립품(영화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용)	0	0	0	0
85229040	- - 오디오나 비디오 테입데크(tapedeck)와 컴팩트 디스크 기계장치	0	0	0	0
85229050	- - 오디오나 비디오 복제기 헤드・ 마그네틱 유형, 마그네틱 이레이징 헤드와 로드	0	0	0	0
85229091	- -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영화 음성기록이나 재생기용)	0	0	0	0
85229092	- - - 그 밖의 전화응답기의 부분품	0	0	0	0
85229093	- -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소호 제 8519.81 호나 제 8521 호의 물품용)	0	0	0	0
85229099	- - - 기타	0	0	0	0
85232110	- - - 기록이 안 된 것	5	5	5	0
85232190	- - - 기타	0	0	0	0
85232911	- - - - - 컴퓨터 테이프	0	0	0	0
85232919	- - - - - 기타	0	0	0	0
85232921	- - - - - 비디오 테이프	0	0	0	0
85232929	- - - - - 기타	0	0	0	0
85232931	- - - - - 컴퓨터 테이프	0	0	0	0
85232933	- - - - - 비디오 테이프	0	0	0	0
85232939	- - - - - 기타	0	0	0	0
85232941	- - - - - 컴퓨터 테이프	0	0	0	0
85232942	- -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232943	- - - - - 그 밖의 비디오 테이프	0	0	0	0
85232949	- - - - - 기타	0	0	0	0
85232951	- - - - - 컴퓨터 테이프	0	0	0	0
85232952	- - - - - 비디오 테이프	0	0	0	0
85232959	- - - - - 기타	0	0	0	0
85232961	- - - - -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 (기록)미디어	0	0	0	0
85232962	- -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232963	- - - - - 그 밖의 비디오 테이프	0	0	0	0
85232969	- - - - - 기타	0	0	0	0
85232971	- - - - -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디스켓	0	0	0	0
85232979	- - -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232981	- - - - - -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용도의 것	0	0	0	0
85232982	- - - - - - 기타	0	0	0	0
85232983	- - - - - 기타의 제품,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 (녹화된)미디어	0	0	0	0
85232984	- - - - - 기타(영화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232989	- - - - - 기타	0	0	0	0
85232991	- -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232992	- - - - - 기타	0	0	0	0
85232993	- - -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232994	- - - - - - 기타	0	0	0	0
85232995	- - - - - 그 밖의 제품,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 (기록)미디어	0	0	0	0
85232999	- - - - - 기타	0	0	0	0
85234110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234190	- - - 기타	0	0	0	0
85234911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0	0	0
85234912	- - - - - 교육용, 기술용, 과학용, 역사적이나 문화적 디스크의 것	0	0	0	0
85234913	- - - - - 기타	0	0	0	0
85234914	- - - -그 밖의 제품,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 (기록)미디어	0	0	0	0
85234919	- - - - 기타	0	0	0	0
85234991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0	0	0
85234992	- - - -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0	0	0	0
85234993	- - - - 그 밖의 제품,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 (기록)미디어	0	0	0	0
85234999	- - - - 기타	0	0	0	0
85235111	-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235119	- - - - 기타	0	0	0	0
85235121	- -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235129	- - - - - 기타	5	5	5	0
85235130	- - - -그 밖의 제품,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 (기록)미디어	0	0	0	0
85235190	- - - - 기타	5	5	5	0
85235200	- - 스마트카드	0	0	0	0
85235910	- - -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0	0	0	0
85235921	-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235929	- - - - 기타	0	0	0	0
85235930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0	0	0
85235940	- - - - 그 밖의 제품,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 (기록)미디어				
85235990	- - - - 기타	0	0	0	0
85238040	- - 축음기용 레코드판	0	0	0	0
85238051	- - - 컴퓨터 사용에 적합한 것	0	0	0	0
85238059	- - - 기타	0	0	0	0
85238091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0	0	0	0
85238092	- - - 그 밖의 제품, 명령・데이타・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멧 저장 (기록)미디어	0	0	0	0
85238099	- - - 기타	0	0	0	0
85255000	- 송신기기	0	0	0	0
8525600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0	0	0	0
85258031	- - - 방송용의 것	0	0	0	0
85258039	- - - 기타	5	5	5	0
85258050	- - 그 밖의 디지털 카메라	5	5	5	0
85261010	- - 레이더 기기, 방어기기나 민항기에 사용되는 것이나 항양선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5261090	- - 기타	0	0	0	0
85269110	- - - 항행용 무선기기, 민항기에 사용되는 것이나 항양선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	0	0	0	0
85269190	- - - 기타	0	0	0	0
85269200	- - 무선원격조절기기	0	0	0	0
85284110	- - - 천연색	0	0	0	0
85284120	- - - 단색	0	0	0	0
85284920	- - - 단색	0	0	0	0
85285110	- - - 프로젝션 방식(평판디스플레이 유닛)	0	0	0	0
85285120	- - -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285130	- - - 기타(단색)	0	0	0	0
85285920	- - - 단색	0	0	0	0
85286110	- - - 평판디스플레이 방식	0	0	0	0
85286190	- - - 기타	0	0	0	0
85286910	- - - 용적이 300 인치 이상의 스크린 보호에 사용되는 것	0	0	0	0
85287111	- - - - 주 작동식의 것	0	0	0	0
85287119	- - - - 기타	0	0	0	0
85291060	- - 피드혼(도파관)	0	0	0	0
85291092	- - -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에 쓰이는 것	0	0	0	0
85291099	- - - 기타	5	5	5	0
85299020	- - 디코더(decoders)의 것	0	0	0	0
85299040	- -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 기록기	0	0	0	0
85299051	- - -소호 제 8525.50 호나 제 8525.60 호의 물품용	0	0	0	0
85299052	- - -소호 제 8527.13 호, 제 8527.19 호, 제 8527.21 호, 제 8527.29 호, 제 8527.91 호나 제 8527.99 호의 물품용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299053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0	0	0	0
85299054	- - - - 기타(텔레비전 수신용)	5	5	5	0
85299055	- - - - 기타	0	0	0	0
85299059	- - - 기타	0	0	0	0
85299091	- - - 텔레비전 수신용	0	0	0	0
85299094	- - - 평판디스플레이용	0	0	0	0
85299099	- - - 기타	0	0	0	0
8530100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0	0	0	0
85308000	- 그 밖의 기기	0	0	0	0
85309000	- 부분품	0	0	0	0
85311010	- - 도난경보기	0	0	0	0
85311020	- - 화재경보기	0	0	0	0
85311030	- - 연기 탐지기, 휴대용 개인용 알람(슈릴 알람)	0	0	0	0
85311090	- - 기타	0	0	0	0
8531200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0	0	0	0
85318011	- - - 도어벨과 그밖의 소리 신호용 기기	0	0	0	0
85318019	- - - 기타	5	0	0	0
85318021	- - - 진공 형광 디스플레이 패널	0	0	0	0
85318029	- - - 기타	0	0	0	0
85318090	- - 기타	0	0	0	0
85319010	- -소호 제 8531.20 호, 제 8531.80.21 호나 제 8531.80.29 호의 인쇄배선 조립품을 포함하는 부분품	0	0	0	0
85319020	- - 도어벨이나 그밖의 소리 신호용 기기	0	0	0	0
85319030	- - 도어벨이나 소리 신호용 기기	0	0	0	0
85319090	- - 기타	0	0	0	0
8532100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0	0	0	0
85322100	- - 탄탈륨의 것	0	0	0	0
85322200	- - 알루미늄 전해의 것	0	0	0	0
853223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0	0	0	0
853224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0	0	0	0
85322500	-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0	0	0	0
85322900	- - 기타	0	0	0	0
85323000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0	0	0	0
85329000	- 부분품	0	0	0	0
85331010	- - 표면을 고정시킨 것	0	0	0	0
85331090	- - 기타	0	0	0	0
85332100	- -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332900	- - 기타	0	0	0	0
85333100	- -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0	0	0	0
85333900	- - 기타	0	0	0	0
85334000	-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339000	- 부분품	0	0	0	0
85340010	- 단면의 것	0	0	0	0
85340020	- 양면의 것	0	0	0	0
85340030	- 다층의 것	0	0	0	0
85340090	- 기타	0	0	0	0
85351000	- 퓨즈	0	0	0	0
85352110	- - - 몰드 유형의 것	0	0	0	0
85352190	- - - 기타	0	0	0	0
85352900	- - 기타	0	0	0	0
85353011	- - - 단로기(전압이 36 킬로 볼트 미만인 것)	0	0	0	0
85353019	- - - 기타	0	0	0	0
85353020	- - 전압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것	0	0	0	0
85353090	- - 기타	0	0	0	0
85354000	-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0	0	0	0
85359010	- - 전기 공급이나 전력 변압기용 투관 조립품과 탭 전환기 조립품	0	0	0	0
85359090	- - 기타	0	0	0	0
85363010	- - 피뢰기	0	0	0	0
85365020	- - 과전류 및 잔류전류 자동 계폐기	5	5	5	0
85365051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5	5	5	0
85365059	- - - 기타	5	5	5	0
85366110	- - - 컴팩트 램프나 할로겐 램프용	0	0	0	0
85366191	-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0	0	0	0
85366199	- - - - 기타	5	5	5	0
85366932	-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5	5	5	0
85366939	- - - - 기타	5	5	5	0
85367010	- - 도자제의 것	0	0	0	0
85367020	- - 구리로 만든것	0	0	0	0
85367090	- - 기타	0	0	0	0
85369012	- - - 전류가 16 암페어 미만인 것	5	5	5	0
85369019	- - - 기타	5	5	5	0
85371011	- - - 분산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제어 패널	0	0	0	0
85371012	- - - 프로그램 가능한 프로세서가 포함된 컨트롤 패널	0	0	0	0
85371013	- - - 제 8415 호, 제 8418 호, 제 8450 호, 제 8508 호,제 8509 호나 제 8516 호에 적합한 그밖의 제어 패널	0	0	0	0
85371019	- - - 기타	5	5	5	0
85371020	- - 제 8471 호・제 8517 호나 제 8525 호의 상품과 단독이나 주로 사용하는 배선판(백 패널과 백 플레인을 포함함)	5	5	5	0
85371030	- - 반도체기기를 위한 다이(die)의 이송·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용 기구의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제어기	0	0	0	0
85371091	- - - 무선장비나 전자팬에 사용되는 것	0	0	0	0
85371092	- - - 분산제어 시스템에 적합한 것	0	0	0	0
85371099	- - - 기타	5	5	5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372011	- - - 전압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차단기, 연결기나 보호 전기 회로 결합 전기 기기	0	0	0	0
85372019	- - - 기타	0	0	0	0
85372021	- - - 전압이 66 킬로볼트 이상인 차단기, 연결기나 보호 전기 회로 결합 전기 기기	0	0	0	0
85372029	- - - 기타	0	0	0	0
85372090	- - 기타	0	0	0	0
85381011	- - - 반도체기기를 위한 다이(die)의 이송·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용 기계의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제어기의 부분품	0	0	0	0
85381012	- - - 무선장비용	0	0	0	0
85381019	- - - 기타	5	5	5	0
85381021	- - - 반도체기기를 위한 다이(die)의 이송·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용 기계의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제어기의 부분품	0	0	0	0
85381022	- - - 무선장비용	0	0	0	0
85381029	- - - 기타	0	0	0	0
85389011	- - - 전화 플러그의 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하는 부분품,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웨이퍼 프로브	5	5	5	0
85389012	- - - 부분품(소호 제 8536.50.51 호, 제 8536.50.59 호, 제 8536.69.32 호, 제 8536.69.39 호, 제 8536.90.12 호나 제 8536.90.19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5	5	5	0
85389013	- - - 부분품(소호 제 8537.10.20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389019	- - - 기타	5	5	5	0
85389021	- - - 전화 플러그의 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하는 부분품,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웨이퍼 프로브	0	0	0	0
85389029	- - - 기타	0	0	0	0
85391090	- - 기타	0	0	0	0
85392120	- - - 의료장비용	0	0	0	0
85392140	- - - 그 밖의 반사형 전구	0	0	0	0
85392190	- - - 기타	0	0	0	0
85392220	- - - 의료장비용	0	0	0	0
85392230	- - - 그 밖의 반사구	0	0	0	0
85392910	- - - 의료장비용	0	0	0	0
85392930	- - - 그 밖의 반사형 전구	0	0	0	0
85392941	- - - - 의료기기용에 적합한것	0	0	0	0
85392949	- - - - 기타	0	0	0	0
85392960	- - -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 전압이 100 볼트 이하인 것)	0	0	0	0
85392990	- - - 기타	0	0	0	0
85393200	-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0	0	0	0
85393910	- - - 소형 형광등 튜브	0	0	0	0
85393930	- - - 그 밖의 냉음극형 형광등	0	0	0	0
85393990	- - - 기타	0	0	0	0
85394100	- - 아크램프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394900	- - 기타	0	0	0	0
85399010	- - 형광등용 알루미늄 엔드캡(end cap), 백열등용 알루미늄 스크루 캡(screw cap)	0	0	0	0
85399020	- - 기타(승용차 램프에 적합한 것)	0	0	0	0
85399090	- - 기타	0	0	0	0
85401100	- - 천연색	0	0	0	0
85401200	- - 단색	0	0	0	0
85402000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0	0	0	0
85404010	- - 제 8525 호 물품용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 컬러의 것	0	0	0	0
85404090	- - 기타	0	0	0	0
85406000	- 그 밖의 음극선관	0	0	0	0
85407100	- - 자전관(magnetron)	0	0	0	0
85407900	- - 기타	0	0	0	0
85408100	- - 수신관이나 증폭관	0	0	0	0
85408900	- - 기타	0	0	0	0
85409100	- - 음극선관의 것	0	0	0	0
85409910	- - - 마이크로웨이브관	0	0	0	0
85409990	- - - 기타	0	0	0	0
8541100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0	0	0	0
85412100	- -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0	0	0	0
85412900	- - 기타	0	0	0	0
8541300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0	0	0	0
85414010	- - 발광다이오드	0	0	0	0
85414021	- - - 광전지(조립되지 않을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414022	- -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414029	- - - 기타	0	0	0	0
85414090	- - 기타	0	0	0	0
85415000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0	0	0	0
8541600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0	0	0	0
85419000	- 부분품	0	0	0	0
85423100	-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 및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0	0	0	0
85423200	- - 메모리	0	0	0	0
85423300	- - 증폭기	0	0	0	0
85423900	- - 기타	0	0	0	0
85429000	- 부분품	0	0	0	0
85431000	- 입자가속기	0	0	0	0
85432000	- 신호발생기	0	0	0	0
85433020	- - 화학 또는 전기화학 용액의 투입식(immersion) 습식 프로세싱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기구(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의 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85433090	- - 기타	0	0	0	0
85437010	- -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0	0	0	0
85437020	- - 리모컨(무선원격조절기기를 제외한다)	0	0	0	0
85437030	- - 번역이나 사전 기능이 있는 전자 기계와 기기	0	0	0	0
8543704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생산 중 먼지 제거 또는 정전하 제거용 장비,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 제조용 자외선에 의한 양생재(curing material)용 기계	0	0	0	0
85437050	- - 직접 방송 멀티미디어 시스템용 통합 수신기/디코더(IRD)	0	0	0	0
85437090	- - 기타	0	0	0	0
85439010	- -소호 제 8543.10 호나 제 8543.20 호의 물품	0	0	0	0
85439020	- -소호 제 8543.30.20 호의 물품	0	0	0	0
85439030	- -소호 제 8543.70.30 호의 물품	0	0	0	0
85439040	- -소호 제 8543.70.40 호의 물품	0	0	0	0
85439050	- -소호 제 8543.70.50 호의 물품	0	0	0	0
85439090	- - 기타	0	0	0	0
85441900	- - 기타	0	0	0	0
8544203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0	0	0	0
85442039	- - - 기타	0	0	0	0
8544204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0	0	0	0
85442049	- - - 기타	0	0	0	0
8544309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0	0	0	0
85443099	- - - 기타	0	0	0	0
8544421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0	0	0	0
85444219	- - - - 기타	0	0	0	0
8544422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0	0	0	0
85444222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기타)	0	0	0	0
85444229	- - - - 기타	0	0	0	0
8544491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0	0	0	0
85444912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기타)	0	0	0	0
85444919	- - - - 기타	0	0	0	0
8544493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0	0	0	0
85446011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케이블(지름인 22.7 밀리미터 미만인 것)	5	5	5	0
85446019	- - - 기타	0	0	0	0
85446021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케이블(지름인 22.7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85446029	- - - 기타	0	0	0	0
85446030	- - 전압이 66 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5447010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0	0	0	0
85447090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5451100	- - 노(爐)용	0	0	0	0
85451900	- - 기타	0	0	0	0
85452000	- 브러시	0	0	0	0
85459000	- 기타	0	0	0	0
85461000	- 유리로 만든 것	0	0	0	0
85462010	- - 변압기 부싱 및 회로 차단기 절연체	0	0	0	0
85462090	- - 기타	0	0	0	0
85469000	- 기타	0	0	0	0
85471000	-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0	0	0	0
85472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0	0	0	0
85479010	- -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비금속(卑金屬)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5479090	- - 기타	0	0	0	0
85481012	- - - 항공기용의 것	0	0	0	0
85481019	- - - 기타	0	0	0	0
85481022	- - - 일차전지와 일차 배터리	0	0	0	0
85481023	- - - 항공기용 축전지의 것	0	0	0	0
85481029	- - - 기타	0	0	0	0
85481032	- - - 일차전지와 일차 배터리	0	0	0	0
85481033	- - - 항공기용 축전지의 것	0	0	0	0
85481039	- - - 기타	0	0	0	0
85481091	- - - 일차전지와 일차 배터리	0	0	0	0
85481092	- - - 항공기용 축전지의 것	0	0	0	0
85481099	- - - 기타	0	0	0	0
85489010	- - 광전도형 센서 요소, 전기 저장 콘덴서, 발광 다이오드의 광원, 박막 트랜지스터 매트릭스 및 문자 스캔이 가능한 스캐닝 콘덴서를 구성하는 밀착식 이미지 센서,	0	0	0	0
85489020	- - 인쇄 회로 조립품(외부 커넥터용 조립품을 포함한다)	0	0	0	0
85489090	- - 기타	0	0	0	0
8601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	0	0	0
8601200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0	0	0	0
86021000	- 디젤 전기기관차	0	0	0	0
86029000	- 기타	0	0	0	0
8603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0	0	0	0
86039000	- 기타	0	0	0	0
860400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0	0	0	0
86050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6061000	-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6063000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86069100	-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0	0	0	0
86069200	- -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0	0	0	0
86069900	- - 기타	0	0	0	0
86071100	-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0	0	0	0
86071200	-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0	0	0	0
86071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0	0	0	0
86072100	-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0	0	0	0
86072900	- - 기타	0	0	0	0
86073000	- 훅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86079100	- - 기관차용	0	0	0	0
86079900	- - 기타	0	0	0	0
86080020	- 전기기계식 기기	0	0	0	0
86080090	- 기타	0	0	0	0
860900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7012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0	0	0	0
87012090	- - 기타	0	0	0	0
87013000	- 무한궤도식 트랙터	0	0	0	0
87019010	- - 농업용 트랙터	0	0	0	0
87019090	- - 기타	0	0	0	0
87021071	- - - - 총중량이 6 톤 이상이고 18 톤 이하인 것	0	0	0	0
87021079	- - - - 기타	0	0	0	0
87029093	- - - - 공항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	0	0	0	0
87032291	- - - - 구급차	5	5	5	0
87032310	- - - 구급차	5	5	5	0
87032329	- - - - 기타	0	0	0	0
87032339	- - - - 기타	0	0	0	0
87032410	- - - 구급차	0	0	0	0
87032429	- - - - 기타	0	0	0	0
87032439	- - - - 기타	0	0	0	0
87033140	- - - 구급차	5	5	5	0
87033210	- - - 구급차	5	5	5	0
87033229	- - - - 기타	0	0	0	0
87033239	- - - - 기타	5	5	5	0
87033310	- - - 구급차	0	0	0	0
87033329	- - - - 기타	0	0	0	0
87033339	- - - - 기타	0	0	0	0
87039011	- - - 구급차	0	0	0	0
87051000	- 기중기차(crane lorry)	0	0	0	0
8705200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7053000	- 소방차	0	0	0	0
8705400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5	5	5	0
87059050	- - 도로 청소차,분뇨차,이동진료차,모든 종류의 살포차	0	0	0	0
87059090	- - 기타	0	0	0	0
87060011	- - 농업 트렉터(소호 제 8701.10 호나 제 8701.90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의 것	0	0	0	0
87060019	- - 기타	0	0	0	0
87079010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1010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2100	- - 안전벨트	5	5	5	0
87082911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2992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3010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4014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402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501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502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5091	- - - - 크라운 휠(wheels)과 피니언	0	0	0	0
87085092	- - - - 기타	0	0	0	0
87085099	- - - 기타	5	5	5	0
8708701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7017	- - - 제 8702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7021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7031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709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7096	- - - 제 8702 호나 제 8704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8015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9115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9210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9350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89494	- - - - 제 8701 호의 차량용	0	0	0	0
87091100	- - 전기식의 것	0	0	0	0
87091900	- - 기타	0	0	0	0
87099000	- 부분품	0	0	0	0
87100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0	0	0	0
87120010	- 경기용 자전거	0	0	0	0
8713100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87139000	- 기타	0	0	0	0
87142011	- - - 지름이(타이어 포함) 7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00 밀리미터 이하인 것(장착된 모든 바퀴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 밀리미터 이상인 것)	0	0	0	0
87142012	- - - 지름이(타이어 포함)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50 밀리미터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이하인 것(장착된 모든 바퀴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 밀리미터 이상인 것)				
87142019	- - - 기타	0	0	0	0
87142090	- - 기타	0	0	0	0
8715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0	0	0	0
8716100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8716200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	0	0	0
87163100	-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0	0	0	0
87163940	- - - 농업용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0	0	0	0
87163991	- - - - 적재량(페이로드)이 2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7163999	- - - - 기타	0	0	0	0
87164000	-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0	0	0	0
87168010	- - 카트와 왜건・색 트럭(sack trucks)・핸드 트레이와 이와 유사한 수동구동식의 차량(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외바퀴 손수레는 제외한다)	5	5	5	0
87168020	- - 외바퀴 손수레	0	0	0	0
87168090	- - 기타	5	5	5	0
87169013	- - - 소호 제 8716.20 호의 물품용	0	0	0	0
87169019	- - - 기타	0	0	0	0
87169092	- - - - 카스터(castor)[지름(타이어를 포함한다)이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휠이나 타이어가 부착된 경우에는 폭이 3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7169093	- - - - 기타	0	0	0	0
87169094	- - - - 스포크와 니플(spokes and nipples)	0	0	0	0
87169095	- - - - 카스터(castor)[소호 제 8716.80.90 호의 물품의 것으로 지름(타이어를 포함한다)이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휠이나 타이어가 부착된 경우에는 폭이 3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7169096	- - - - 그 밖의 카스터(castor)	0	0	0	0
87169099	- - - - 기타	0	0	0	0
88010000	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0	0	0	0
88021100	-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0	0	0	0
88021200	- -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8022010	- - 비행기	0	0	0	0
88022090	- - 기타	0	0	0	0
88023010	- - 비행기	0	0	0	0
88023090	- - 기타	0	0	0	0
88024010	- - 비행기	0	0	0	0
88024090	- - 기타	0	0	0	0
8802600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suborbital)과 우주선 운반로켓	0	0	0	0
88031000	-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803200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0	0	0	0
88033000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0	0	0	0
88039010	- - 통신위성의 것	0	0	0	0
88039020	- - 기구・글라이더나 카이트(kites)의 것	0	0	0	0
88039090	- - 기타	0	0	0	0
88040010	- 로토슈트(rotochute)와그 부분품	0	0	0	0
88040090	- 기타	0	0	0	0
88051000	- 항공기 발진기어와 그 부분품, 갑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와 그 부분품	0	0	0	0
88052100	- -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0	0	0	0
88052910	- - - 지상비행 훈련장치	0	0	0	0
88052990	- - - 기타	0	0	0	0
89011010	- - 총톤수 26 톤이하인 것	0	0	0	0
89011020	- - 총톤수 26 톤을 초과하고 5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1060	- - 총톤수 500 톤을 초과하고 1,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1070	- - 총톤수 1,000 톤을 초과하고 4,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1080	- - 총톤수 4,000 톤을 초과하고 5,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1090	- - 총톤수 5,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9012050	- - 총톤수 5,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2070	- - 총톤수 5,000 톤을 초과하고 50,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2080	- - 총톤수 50,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9013050	- - 총톤수 5,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3070	- - 총톤수 5,000 톤을 초과하고 50,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3080	- - 총톤수 50,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9019011	- - - 총톤수 26 톤이하인 것	0	0	0	0
89019012	- - - 총톤수 26 톤을 초과하고 5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9014	- - - 총톤수가 5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9019031	- - - 총톤수 26 톤이하인 것	0	0	0	0
89019032	- - - 총톤수 26 톤을 초과하고 5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9033	- - - 총톤수 500 톤을 초과하고 1,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9034	- - - 총톤수 1,000 톤을 초과하고 4,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9035	- - - 총톤수 4,000 톤을 초과하고 5,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9036	- - - 총톤수 5,000 톤을 초과하고 50,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19037	- - - 총톤수 50,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9020023	- - 총톤수 40 톤 이상이고 250 톤 이하인 것				
8902002390	- - - 기타	0	0	0	0
89020024	- - 총톤수 250 톤을 초과하고 1,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20025	- - 총톤수 1,000 톤을 초과하고 4,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20026	- - 총톤수 4,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9020093	- - 총톤수 40 톤 이상이고 250 톤 이하인 것				
8902009390	- - - 기타	0	0	0	0
89020094	- - 총톤수 250 톤을 초과하고 1,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20095	- - 총톤수 1,000 톤을 초과하고 4,000 톤 이하인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89020096	- - 총톤수 4,000 톤을 초과하는 것	0	0	0	0
8903100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5	0	0	0
89039100	-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89039200	-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0	0	0	0
89039900	- - 기타	0	0	0	0
89040010	- 총톤수 26 톤이하인 것	0	0	0	0
89040031	- - 동력이 4,000 마력(hp) 이하인 것	0	0	0	0
89040039	- - 기타	0	0	0	0
89051000	- 준설선	0	0	0	0
89052000	-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89059010	- - 부선거(艀船渠)	0	0	0	0
89059090	- - 기타	0	0	0	0
89061000	- 군함	0	0	0	0
89069010	- - 배수량이 3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69020	- - 배수량이 30 톤을 초과하고 300 톤 이하인 것	0	0	0	0
89069090	- - 기타	0	0	0	0
8907100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0	0	0	0
89079010	- - 부표	0	0	0	0
89079090	- - 기타	0	0	0	0
890800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011010	- - 통신용과 그 밖의 전기용	0	0	0	0
90011090	- - 기타	0	0	0	0
90012000	-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0	0	0	0
90013000	- 콘택트렌즈	0	0	0	0
90014000	-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0	0	0	0
90015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0	0	0	0
90019010	- - 사진용 또는 영화용 카메라 또는 프로젝터용	0	0	0	0
90019090	- - 기타	0	0	0	0
90021110	- - - 영화 프로젝터용	0	0	0	0
90021190	- - - 기타	0	0	0	0
90021900	- - 기타	0	0	0	0
90022010	- - 영화용 프로젝터	0	0	0	0
90022020	- - 영상카메라, 사진기와 그 밖의 프로젝터용	0	0	0	0
90022030	- - 망원경이나 현미경용	0	0	0	0
90022090	- - 기타	0	0	0	0
90029020	- - 영화용 프로젝터	0	0	0	0
90029030	- - 영상카메라, 사진기와 그 밖의 영사기용	0	0	0	0
90029090	- - 기타	0	0	0	0
900311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003190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5	0	0	0
90039000	- 부분품	0	0	0	0
90041000	- 선글라스	0	0	0	0
90049010	- - 시력교정용 안경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049050	- - 보호용 고글	0	0	0	0
90049090	- - 기타	0	0	0	0
90051000	- 쌍안경	0	0	0	0
90058010	- - 천체관측용 기기(전파 천문용 기기는 제외한다)	0	0	0	0
90058090	- - 기타	0	0	0	0
90059010	- - 천체관측 기기용(전파 천문용 기기는 제외한다)	0	0	0	0
90059090	- - 기타	0	0	0	0
90061010	- - 레이저 사진플로터	0	0	0	0
90061090	- - 기타	0	0	0	0
90063000	-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또는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0	0	0	0
90064000	- 즉석인화 사진기	0	0	0	0
90065100	- - 측광방식의 뷰파인더(일반 반사식)으로 롤 필름의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것	0	0	0	0
90065200	- -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의 롤 필름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065300	- -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롤 필름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065910	- - - 레스터 영상 프로세스가 있는 레이저 사진플로터나 영상 세터	0	0	0	0
90065990	- - - 기타	0	0	0	0
90066100	-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에 한정한다)	0	0	0	0
90066900	- - 기타	0	0	0	0
90069110	- - -소호 제 9006.10.10 호의 레이저 사진플로터용	0	0	0	0
90069130	- - - 기타(소호 제 9006.40 호부터 제 9006.53 호까지의 카메라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069190	- - - 기타	0	0	0	0
90069910	- - - 사진용 섬광기구	0	0	0	0
90069990	- - - 기타	0	0	0	0
90071000	- 촬영기	0	0	0	0
90072010	- - 폭이 16 밀리미터 미만인 것	0	0	0	0
90072090	- - 기타	0	0	0	0
90079100	- - 카메라 용	0	0	0	0
90079200	- - 영사기용	0	0	0	0
90085010	- -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피셰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0	0	0	0
90085090	- - 기타	0	0	0	0
90089020	- -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0	0	0	0
90089090	- - 기타	0	0	0	0
90101000	-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0	0	0	0
9010501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 감광성물질에회로패턴을 투사하거나 그리는 기기	0	0	0	0
90105090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106010	- - 300 인치 이상의 것	0	0	0	0
90106090	- - 기타	0	0	0	0
90109010	- - 소호 제 9010.10 호나 제 9013.20 호의 물품	0	0	0	0
9010903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 회로패턴 위의 감광성물질에 투사하거나 도형을 그리는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09090	- - 기타	0	0	0	0
90111000	- 입체현미경	0	0	0	0
90112000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118000	- 그 밖의 현미경	0	0	0	0
9011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2100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0	0	0	0
9012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31000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0	0	0	0
9013200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0	0	0	0
9013801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 배선 회로 조립품용 광학 오류 검사 및 수리 기기	0	0	0	0
90138020	- - 액정 디바이스	0	0	0	0
90138090	- - 기타	0	0	0	0
90139010	- - 소호 제 9013.2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90139050	- - 소호 제 9013.80.2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90139060	- - 소호 제 9013.80.1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90139090	- - 기타	0	0	0	0
90141000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0	0	0	0
90142000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0	0	0	0
90148010	- - 선박용의 것(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148090	- - 기타	0	0	0	0
90149010	- - 선박용의 기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149090	- - 기타	0	0	0	0
90151010	- - 사진용이나 영화용의 것	0	0	0	0
90151090	- - 기타	0	0	0	0
90152000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0	0	0	0
90153000	- 수준기(水準器)	0	0	0	0
90154000	- 사진측량기기	0	0	0	0
90158010	- - 라디오존데(radio sonde)와 무선 풍력 기기	0	0	0	0
90158090	- - 기타	0	0	0	0
90159000	-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600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90171010	- - 플로터	0	0	0	0
90171090	- - 기타	0	0	0	0
90172010	- - 자	0	0	0	0
9017203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 회로패턴 위의 감광성물질에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투사하거나 도형을 그리는 기기				
9017204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 포토플로터	0	0	0	0
90172050	- - 그 밖의 플로터	0	0	0	0
90172090	- - 기타	0	0	0	0
90173000	-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0	0	0	0
90178000	- 그 밖의 기기	0	0	0	0
9017902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 회로패턴 위의 감광성물질에 투사하거나 도형을 그리는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7903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제조용의 포토플로터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179040	- - 그 밖의 플로터의 부분품과 부속품(인쇄회로 조립품을 포함한다)	0	0	0	0
90179090	- - 기타	0	0	0	0
90181100	- - 심전계	0	0	0	0
90181200	- - 초음파 영상진단기	0	0	0	0
90181300	- - 자기공명 촬영기기	0	0	0	0
90181400	-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0	0	0	0
90181900	- - 기타	0	0	0	0
9018200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0	0	0	0
90183110	- - - 일회용 주사기	0	0	0	0
90183190	- - - 기타	0	0	0	0
90183200	-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0	0	0	0
90183910	- - - 카테터(catheter)	0	0	0	0
90183990	- - - 기타	0	0	0	0
90184100	-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90184900	- - 기타	0	0	0	0
90185000	- 안과용 그 밖의 기기	0	0	0	0
90189020	- - 수액투여 세트	0	0	0	0
90189030	- - 전기식 기기	0	0	0	0
90189090	- - 기타	0	0	0	0
90191010	- - 전기식	0	0	0	0
90191090	- - 기타	0	0	0	0
90192000	-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0	0	0	0
90200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0	0	0	0
90211000	-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0	0	0	0
90212100	- - 의치	0	0	0	0
90212900	- - 기타	0	0	0	0
90213100	- - 인조관절	0	0	0	0
90213900	- - 기타	0	0	0	0
9021400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0	0
9021500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219000	- 기타	0	0	0	0
90221200	-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0	0	0	0
90221300	-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221400	- - 기타(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221910	- - - 인쇄회로판/인쇄 배선판의 납땜 이음 물리적 검사용 X-ray 기기	0	0	0	0
90221990	- - - 기타	0	0	0	0
90222100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0	0	0	0
90222900	- - 그 밖의 용도의 것	0	0	0	0
90223000	- 엑스선관	0	0	0	0
90229010	- - 인쇄회로 조립품의 용접 접합부분의 물리적 검사용 엑스선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0229090	- - 기타	0	0	0	0
902300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241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241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48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248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49010	- - 전기 구동식 기기용	0	0	0	0
90249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기기용	0	0	0	0
90251100	-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251911	- - - - 차량용 온도계	0	0	0	0
90251919	- - - - 기타	0	0	0	0
90251920	-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5802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25803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59010	- - 전기 구동식 기기용	0	0	0	0
90259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기기용	0	0	0	0
90261010	- - 차량용 액면계(전기 구동식)	0	0	0	0
90261020	- - 차량용 액면계(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61030	- - 기타(전기 구동식)	0	0	0	0
90261090	- - 기타(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62010	- - 차량용 압력계(전기 구동식)	0	0	0	0
90262020	- - 차량용 압력계(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62030	- - 기타(전기 구동식)	0	0	0	0
90262040	- - 기타(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68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268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69010	- - 전기 구동식 기기용	0	0	0	0
90269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기기용	0	0	0	0
90271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271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272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272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73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273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75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275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78010	- - 노출계	0	0	0	0
90278030	- - 기타(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278040	- - 기타(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279010	- - 부분품과 부속품(제 9027 호의 물품용 인쇄회로어셈블리를 포함하나 가스나 매연 분석기나 마이크로톰을 제외한다)	0	0	0	0
90279091	-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279099	- - - 기타	0	0	0	0
90281010	- - 기체용 계기(가스 컨테이너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281090	- - 기타	0	0	0	0
90282020	- - 수량계	0	0	0	0
90282090	- - 기타	0	0	0	0
90283010	- - 킬로와트 시계	5	0	0	0
90283090	- - 기타	0	0	0	0
90289010	- - 수량계 하우징이나 바디(bodies)	0	0	0	0
90289090	- - 기타	0	0	0	0
90291020	- - 택시미터	0	0	0	0
90291090	- - 기타	0	0	0	0
90292010	- - 차량용 속도계	5	5	5	0
90292020	- - 차량용 회전 속도계(Tachometers)	0	0	0	0
90292090	- - 기타	0	0	0	0
90299010	- - 소호 제 9029.10 호의 물품이나 소호 제 9029.20 호의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0	0	0	0
90299020	- - 그 밖의 소호 제 9029.20 호의 물품의 것	0	0	0	0
90301000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0	0	0	0
9030200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0	0	0	0
90303100	-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0	0	0	0
90303200	-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0	0	0	0
90303310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이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0	0	0	0
90303320	- - - 전기 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전기 방전 상태에 대한 시각적 및/또는 청각적 경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임피던스 측정기기, 정전기 제어 기구 및 정전기 지락 장치/부착물용 검사 기기	0	0	0	0
90303330	- - - 차량용 전류계와 전압계	0	0	0	0
90303390	- - - 기타	0	0	0	0
903039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30400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90308210	- - - 웨이퍼 프로버(Wafer probers)	0	0	0	0
90308290	- - - 기타	0	0	0	0
90308410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판 조립품의 전기량 측정이나 검사에 이용되는 기기	0	0	0	0
90308490	- - - 기타	0	0	0	0
90308910	- - - 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판 조립품의 전기량 측정이나 검사에 이용되는 기기(소호 제 9030.39 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다)	0	0	0	0
90308990	- - - 기타	0	0	0	0
90309010	- - 소호 제 9030.40 호 또는 소호 제 9030.82 호의 인쇄회로 조립품을 포함하는 부분품 및 액세사리	0	0	0	0
9030903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판 조립품의 측정이나 검사에 이용되는 광학 기기 및 기구의 부분품과 액세사리	0	0	0	0
90309040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및 인쇄회로판 조립품의 전기량 측정이나 검사에 이용되는 기기 및 기구의 부분품과 액세사리	0	0	0	0
90309090	- - 기타	0	0	0	0
90311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311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312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312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314100	- -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0	0	0	0
90314910	- - -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미립자 오염 측정용 광학기구 및 기기	0	0	0	0
90314920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그리고 인쇄 회로 조립품용 광학 오차 검증 및 수리 기기	0	0	0	0
90314930	- - - 그밖의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그리고 인쇄 회로 조립품 측정 및 검사용 광학 기기	0	0	0	0
90314990	- - - 기타	0	0	0	0
90318010	- - 케이블 테스터(cable tester)	0	0	0	0
90318090	- - 기타	0	0	0	0
90319011	- - - 부분품과 액세사리(반도체 웨이퍼나 장치 검사용 또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마스크, 포토마스트 또는 레티클 검사용 광학기기의 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한다), 반도체 웨이퍼용 표면 미립자 오염을 측정하는 광학 기기의 부분품 및 액세사리	0	0	0	0
90319012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그리고 인쇄 회로 조립품용 광학 오차 검증 및 수리 기기	0	0	0	0
90319013	- - - 그밖의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그리고 인쇄 회로 조립품 측정 및 검사용 광학 기기	0	0	0	0
90319019	- - - 기타	0	0	0	0
90319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기기용	0	0	0	0
90321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321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032201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322020	-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0328100	- - 액압식이나 공기식	0	0	0	0
90328910	-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된 기기(선박의 추진력·밸러스트나 화물 처리시스템의 자동 조절이나 통제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0328920	- - - 인쇄회로판/인쇄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 생산의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솔루션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0	0	0	0
90328931	- - - - 자동 조정 전압기(스태빌라이저)	0	0	0	0
90328939	- - - - 기타	0	0	0	0
90328990	- - - 기타	0	0	0	0
90329010	- - 소호 제 9032.89.10 호의 물품	0	0	0	0
90329020	- - 소호 제 9032.89.20 호의 물품	0	0	0	0
90329030	- - 그 밖의 전기 구동식의 물품	0	0	0	0
90329090	- - 기타	0	0	0	0
90330010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0330020	- 전기 구동식이 아닌 것	0	0	0	0
9101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91011900	- - 기타	0	0	0	0
91012100	- - 자동권(自動捲)식	0	0	0	0
91012900	- - 기타	0	0	0	0
9101910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1019900	- - 기타	0	0	0	0
9102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10	0	0	0
910212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91021900	- - 기타	0	0	0	0
91022100	- - 자동권(自動捲)식	0	0	0	0
91022900	- - 기타	0	0	0	0
91029110	- - - 스톱워치	0	0	0	0
91029190	- - - 기타	0	0	0	0
91029900	- - 기타	0	0	0	0
91031000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1039000	- 기타	0	0	0	0
91040010	- 차량용	5	5	5	0
91040020	- 항공기용	0	0	0	0
91040030	- 선박용	0	0	0	0
91040090	- 기타	0	0	0	0
9105110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1051900	- - 기타	0	0	0	0
91052100	-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1052900	- - 기타	0	0	0	0
91059110	- - - 마린 크로노매트릭(Marine choronometers)	0	0	0	0
91059190	- - - 기타	0	0	0	0
91059910	- - - 마린 크로노매트릭(Marine choronometers)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1059990	- - - 기타	0	0	0	0
9106100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타임레코더(time-recorder)	0	0	0	0
91069010	- - 주차시간 기록계	0	0	0	0
91069090	- - 기타	0	0	0	0
9107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108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0	0	0	0
910812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0	0	0	0
91081900	- - 기타	0	0	0	0
91082000	- 자동권(自動捲)식	0	0	0	0
91089000	- 기타	0	0	0	0
91091000	- 전기 구동식의 것	0	0	0	0
91099000	- 기타	0	0	0	0
91101100	- -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0	0	0	0
91101200	- -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1101900	- -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0	0	0	0
91109000	- 기타	0	0	0	0
9111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0	0	0	0
9111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91118000	- 그 밖의 케이스	0	0	0	0
91119000	- 부분품	0	0	0	0
91122000	- 케이스	0	0	0	0
91129000	- 부분품	0	0	0	0
9113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9113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91139000	- 기타	5	0	0	0
9114100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0	0	0	0
91143000	- 문자판	0	0	0	0
91144000	- 지판과 브리지(bridge)	0	0	0	0
91149000	- 기타	0	0	0	0
9201100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0	0	0	0
92012000	- 그랜드 피아노	0	0	0	0
92019000	- 기타	0	0	0	0
92021000	- 활을 사용하는 것	0	0	0	0
92029000	- 기타	0	0	0	0
92051000	- 금관악기	0	0	0	0
92059010	- - 건반이 있는 파이프오르간, 하모늄과 이와 유사한 프리메탈 리드식 건반악기	0	0	0	0
92059090	- - 기타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2060000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0	0	0	0
9207100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0	0	0	0
92079000	- 기타	0	0	0	0
92081000	- 뮤지컬박스	0	0	0	0
92089010	- -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기	0	0	0	0
92089090	- - 기타	0	0	0	0
92093000	- 악기용 현	0	0	0	0
92099110	- - - 스크럭 백(Strung back)・ 키보드와 업라이트 피아노(upright piano)용금속프레임	0	0	0	0
92099190	- - - 기타	0	0	0	0
92099200	- -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2099400	- -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2099900	- - 기타	0	0	0	0
93011000	- 포병 무기(예: 평사포・곡사포와 박격포)	0	0	0	0
9301200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0	0	0	0
93019000	- 기타	0	0	0	0
930200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 9303 호나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0	0	0	0
93031000	- 총구장전 화기	0	0	0	0
9303200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0	0	0	0
9303300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0	0	0	0
93039000	- 기타	0	0	0	0
93040010	- 공기총(1 제곱센티미터당 7 킬로그램중 미만의 압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3040090	- 기타	0	0	0	0
93051000	-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0	0	0	0
93052000	- 산탄총과 라이플(rifle)의 것(제 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3059110	- - - 가죽이나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0	0	0	0
93059190	- - - 기타	0	0	0	0
93059911	- - - - 가죽이나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0	0	0	0
93059919	- - - - 기타	0	0	0	0
93059991	- - - - 가죽이나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0	0	0	0
93059999	- - - - 기타	0	0	0	0
93062100	- - 탄약	0	0	0	0
93062900	- - 기타	0	0	0	0
93063011	- - - 22 구경 탄약	0	0	0	0
93063019	- - - 기타	0	0	0	0
93063020	- -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0	0	0	0
93063091	- - - 22 구경 탄약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3063099	- - - 기타	0	0	0	0
93069000	- 기타	0	0	0	0
930700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0	0	0	0
94011000	- 항공기용 의자	0	0	0	0
94012010	- - 제 8702 호・제 8703 호・제 8704 호의 차량용	10	10	10	0
94012090	- - 기타	10	10	10	0
94013000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4014000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0	0	0	0
94015100	- -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94015900	- - 기타	0	0	0	0
94016100	-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0	0	0	0
94016900	- - 기타	0	0	0	0
94017100	-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10	0	0	0
94017900	- - 기타	10	10	10	0
94018000	- 그 밖의 의자	10	0	0	0
94019010	- - 소호 제 9401.10.00 호의 의자	0	0	0	0
94019031	- - - 헤드레스트(headrest) 보강제(소호 제 9401.20.10 호의 의자용)	0	0	0	0
94019039	- - - 기타	10	10	10	0
94019040	- - 소호 제 9401.30.00 호의 의자의 것	10	10	10	0
94019092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10	10	10	0
94019099	- - - 기타	10	10	10	0
94021010	- - 치과용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94021030	- - 이발용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94021090	- - 기타	0	0	0	0
94029010	- - 내과용・외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가구와 이들의 부분품	0	0	0	0
94029090	- - 기타	0	0	0	0
94032010	- - 환기통	0	0	0	0
94032090	- - 기타	5	5	5	0
94033000	- 사무실용 목제가구	10	0	0	0
94034000	- 주방용 목제가구	0	0	0	0
94035000	- 침실용 목제가구	0	0	0	0
94036010	- - 환기통	0	0	0	0
94036090	- - 기타	5	5	5	0
94037010	- - 보행기	0	0	0	0
94037020	- - 환기통	0	0	0	0
94038100	- -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0	0	0	0
94038910	- - - 환기통	0	0	0	0
94038990	- - - 기타	5	0	0	0
94039010	- - 소호 제 9403.70.10 호의 보행기의 것	0	0	0	0
94039090	- - 기타	10	10	10	0
9404100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0	0	0	0
94042100	- -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다)				
94042910	- - - 스프링 매트리스	0	0	0	0
94042920	- - - 기타(발열형의 것)	10	0	0	0
94042990	- - - 기타	10	0	0	0
94043000	- 침낭(sleeping bag)	0	0	0	0
94049010	- - 퀼트(quilts)·침대덮개와 매트리스 보호용품	0	0	0	0
94049090	- - 기타	10	10	10	0
94051020	- - 수술실용 램프	0	0	0	0
94051030	- - - 스포트라이트(spotlight)	0	0	0	0
94051040	- - - 형광등과 조명기구	10	0	0	0
94051090	- - - 기타	10	10	10	0
94052010	- - 수술실용 램프	0	0	0	0
94052090	- - 기타	0	0	0	0
9405300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0	0	0	0
94054020	- - 서치라이트(searchlight)	5	0	0	0
94054040	- - 그 밖의 스포트라이트(spotlight)	0	0	0	0
94054050	- - 기타(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조명으로 한정한다)	0	0	0	0
94054060	- - 그 밖의 옥외조명	5	0	0	0
94054070	- - 이착륙장의 비점멸 표시등,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램프(철도 차량·기관차·비행기·선박이나 등대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4054080	- - 제 8516 호의 가정용 전열기기의 장착용 파일럿 램프(pilot lamp)	0	0	0	0
94054091	- - - 의학용으로 제작된 광섬유 헤드밴드 램프	0	0	0	0
94054099	- - - 기타	5	5	5	0
94055011	- - -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촛대	0	0	0	0
94055019	- - - 기타	0	0	0	0
94055040	- - 허리케인 램프(Hurricane lamp)	0	0	0	0
94055090	- - 기타	0	0	0	0
94056010	- - 경보사인·도로명 사인·선로와 교통 사인	0	0	0	0
94056090	- - 기타	5	0	0	0
94059110	- - - 수술실 램프용	0	0	0	0
94059120	- -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용	0	0	0	0
94059140	- - - 글로브(globe)나 굴뚝	0	0	0	0
94059150	- - - 서치라이트(searchlight)용	0	0	0	0
94059190	- - - 기타	0	0	0	0
94059210	- - - 수술실 램프용	0	0	0	0
94059220	- -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용	0	0	0	0
94059230	- - - 서치라이트(searchlight)용	0	0	0	0
94059290	- - - 기타	0	0	0	0
94059910	- -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램프갓	0	0	0	0
94059920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램프갓	0	0	0	0
94059930	- - - 소호 제 9405.50.11 호나 제 9405.50.19 호의 램프의 것	0	0	0	0
94059940	- - - 서치라이트(searchlight)이나 스포트라이트(spotlight)용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4059990	- - - 기타	0	0	0	0
95030010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0	0	0	0
95030021	- -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는 상관없다)	0	0	0	0
95030022	- - - 의류와 의류부속품, 신발과 모자류	0	0	0	0
95030029	- - - 기타	0	0	0	0
95030030	- 전기식 기차(궤도・신호기기와 부속품은 포함한다)	0	0	0	0
95030040	-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95030050	-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플라스틱 재료로 만든것을 제외한다)	0	0	0	0
95030060	-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5	0	0	0
95030070	- 각종 퍼즐	0	0	0	0
95030091	- - 숫자・알파벳 또는 동물 블록이나 오리기 완구, 낱말 쌓기 세트, 낱말 만들기 및 말하기 세트, 완구 미술세트, 완구용 주판(주판), 바느질 완구, 완구용 타자기 완구	0	0	0	0
95030092	- - 줄넘기 줄	0	0	0	0
95030093	- - 구슬	0	0	0	0
95030099	- - 기타	0	0	0	0
95042020	- - 모든 종류의 당구용 테이블	0	0	0	0
95042030	- - 당구분필	0	0	0	0
95042090	- - 기타	0	0	0	0
95043010	- - 핀테이블나 슬롯 기계	0	0	0	0
95043020	- - 나무・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분품	0	0	0	0
95043090	- - 기타	0	0	0	0
95044000	- 오락용 카드	0	0	0	0
95045000	-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계(소호 제 9504.30 호의 것을 제외한다)	0	0	0	0
95049010	- - 모든 종류의 당구 필수품	0	0	0	0
95049020	- - 다트(darts)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0	0	0	0
95049031	- - - 카지노 게임용으로 제작된 테이블	0	0	0	0
95049039	- - - 기타	0	0	0	0
95049092	- - - -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5049093	- - - - 기타	0	0	0	0
95049094	- - - -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5049099	- - - - 기타	5	0	0	0
9505100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0	0	0	0
95059000	- 기타	0	0	0	0
95061100	- - 스키	0	0	0	0
95061200	- -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0	0	0	0
95061900	- - 기타	0	0	0	0
95062100	- - 세일보드(sailboard)	0	0	0	0
95062900	- - 기타	0	0	0	0
95063100	-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5063200	- - 구(球)	0	0	0	0
95063900	- - 기타	0	0	0	0
95064010	- - 탁구대	0	0	0	0
95064090	- - 기타	0	0	0	0
95065100	- -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0
95065900	- - 기타	0	0	0	0
95066100	- - 론테니스(lawn-tennis) 공	0	0	0	0
95066200	- -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0	0	0	0
95066900	- - 기타	0	0	0	0
95067000	-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0	0	0	0
95069100	-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0	0	0	0
95069900	- - 기타	0	0	0	0
95071000	- 낚싯대	0	0	0	0
95072000	-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0	0	0	0
95073000	- 낚시 릴	0	0	0	0
95079000	- 기타	0	0	0	0
9508100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0	0	0	0
95089000	- 기타	0	0	0	0
96011000	-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0	0	0	0
96019010	- - 가공된 자개 또는 귀갑(龜甲) 및 앞에 언급된 것	0	0	0	0
96019091	- - - 담배나 담배 케이스, 담배항아리, 장식용 물품의 것	0	0	0	0
96019099	- - - 기타	0	0	0	0
96020010	- 제약용 젤라틴 캡슐	0	0	0	0
96020020	- 담배나 담배 케이스, 담배항아리, 장식용 물품	0	0	0	0
96020090	- 기타	0	0	0	0
96031010	- - 브러시	5	0	0	0
96031020	- - 비	5	5	5	0
96032100	-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5	5	5	0
96032900	- - 기타	0	0	0	0
96033000	-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0	0	0	0
96034000	-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5	0	0	0
96035000	-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나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6039010	- -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s)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5	0	0	0
96039020	- -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 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	0	0	0	0
96039040	- - 그밖의 브러시	5	0	0	0
96039090	- - 기타	5	0	0	0
96040010	- 금속으로 만든 것	5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6040090	- 기타	0	0	0	0
9605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6062900	- - 기타	5	5	5	0
96063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6063090	- - 기타	5	0	0	0
96072000	- 부분품	5	5	5	0
96081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5	5	5	0
96081090	- - 기타	0	0	0	0
96082000	-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5	0	0	0
96083010	- - 인디언 잉크용의 드로잉 펜	0	0	0	0
96083090	- - 기타	0	0	0	0
9608400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0	0	0	0
9608500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0	0	0	0
96086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6086090	- - 기타	0	0	0	0
96089110	- - - 금이나 금으로 도금한 것	0	0	0	0
96089190	- - - 기타	0	0	0	0
96089910	- - - 복사용 만년필	0	0	0	0
96089991	-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볼펜 부분품	0	0	0	0
96089999	- - - - 기타	0	0	0	0
96091010	- - 검은색 연필	0	0	0	0
96091090	- - 기타	0	0	0	0
96092000	-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5	0	0	0
96099010	- - 칠판용 필기구	0	0	0	0
96099030	- - 연필과 크래용(소호 제 9609.10 호를 제외한다.)	0	0	0	0
96099091	- - - 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	0	0	0	0
96099099	- - - 기타	0	0	0	0
96100010	- 칠판	0	0	0	0
96100090	- 기타	0	0	0	0
96110000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0	0	0	0
96121010	- - 방직용 직물로 만든 것	0	0	0	0
96121090	- - 기타	5	0	0	0
96122000	- 잉크 패드	0	0	0	0
96131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6131090	- - 기타	0	0	0	0
96132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6132090	- - 기타	0	0	0	0
96138010	- - 스토브와 렌지용 압전 라이터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613802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담배라이터나 테이블 라이터	0	0	0	0
96138030	- - 담배라이터나 테이블 라이터(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0	0	0	0
96138090	- - 기타	0	0	0	0
96139010	- - 액체연료를 담는 기계식 라이터의 부분품인 재생가능한 카트리지 또는 그밖의 용기	0	0	0	0
96139090	- - 기타	0	0	0	0
96140010	- 나무나 뿌리로 거칠게 성형한 블록(파이프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0	0	0
96140090	- 기타	0	0	0	0
96151120	- - - 경화고무로 만든 것	0	0	0	0
96151130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6151900	- - 기타	0	0	0	0
96159011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0	0	0
96159012	- - - 철강으로 만든 것	0	0	0	0
96159013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6159019	- - - 기타	0	0	0	0
96159021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6159022	- - - 철강으로 만든 것	0	0	0	0
96159023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0	0	0
96159029	- - - 기타	0	0	0	0
96159091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0	0	0	0
96159092	- - - 철강으로 만든 것	0	0	0	0
96159093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6159099	- - - 기타	0	0	0	0
96161010	- - 분무기	0	0	0	0
96161020	- -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5	0	0	0
96170020	- 부분품	0	0	0	0
961800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0	0	0	0
96190011	- - 흡수성 코어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으로 된 것	0	0	0	0
96190019	- - 기타	0	0	0	0
96190091	- - 뜨개질 편물이나 메리야스 편물로 만든 것	0	0	0	0
96190099	- - 기타	0	0	0	0
97011000	- 회화·데생과 파스텔	0	0	0	0
97019000	- 기타	0	0	0	0
970200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와 석판화	0	0	0	0
97030010	- 금속으로 만든 것	0	0	0	0
97030020	- 석재로 만든 것	0	0	0	0
9703003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0	0	0	0
97030040	- 목재로 만든 것	0	0	0	0
97030050	- 점토로 만든 것	0	0	0	0
9703009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0	0	0	0

HS 2012	품목명	기준관세율 (2015)	2016	2017	2018 년 이후
97040000	우표 또는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0	0	0	0
9705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970600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0	0	0	0

제 3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3.1조
원산지 기준

1.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은 그것이 다음 어느 하나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고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3.2조에 규정되고 정의된 바와 같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나. 상품이 제3.3조 또는 제3.4조 또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한 그 상품, 또는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2. 제3.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수출국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2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1조제1항가호의 의미 내에서,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과 식물성 제품

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라.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으로 획득된 상품, 또는 그 당사국의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어로 또는 양식으로 획득된 상품

마. 그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그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로 상품과 그 밖의 해양 상품, 그리고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잡힌 그 밖의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국제법[1]상 그러한 수역, 해저, 그리고 해저 하부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탐사할 권리[2]가 있어야 한다.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바호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생산되고/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아.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이 상품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어야 한다.

자.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그리고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1) 당사국 영역에서의 생산,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는 상품

1. 제3.1조제1항나호의 목적상,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라 한다)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 중 한가지이다.[3]

가. 직접법/집적법

---

[1] 이 호의 "국제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을 지칭한다.

[2] 양 당사국은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이 호의 "권리"는 당사국과 그 연안국의 정부 간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민간 기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그 밖의 약정에서 비롯되는 연안국의 어로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을 양해한다.

[3] 양 당사국은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서, 집적법 또는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의 원산지재료비용, 노무비, 간접비, 이윤과 그 밖의 비용의 가치를 포함한다.

1) 재료비용은 그 상품의 생산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자가 생산된 원산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가치이다.

2) 노무비는 임금, 보수 및 그 밖의 피고용인 수당을 포함한다.

3) 간접비는 총 간접비용이다. 그리고,

4) 그 밖의 비용은 수출을 위하여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 상품을 적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국내운송비용, 보관 및 창고, 항만, 중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한다.

또는

나. 간접법/공제법

$$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그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또는

2)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이 된,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제1항과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관련 품목별원산지규정의 목적상, 사용된 재료가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4. 원산지 상품이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3.4조
품목별원산지규정

제3.1조의 목적상,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은 그 상품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3.5조
특정 상품의 취급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이 한반도에 위치한 개성공업지구에서,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생산 가공 또는 공정이 이루어져 그 이후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부속서 3-나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6조
누적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4]

제3.7조
불인정 공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영역에서 다음의 공정이 그 자체로만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상품이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4]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그 시점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발효중인 경제통합 협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조를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다. 단순한[5]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공정

아. 단순한[5]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6]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7]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또는

너. 동물의 도살[8]

2.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

[5] "단순한" 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HS 0801.32에 적용되지 아니 한다.

[7] "단순한 혼합" 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화학반응이란 (생화학 가공을 포함하여)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을 말한다.

[8] "도살" 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저장과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그 이후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제3.8조
직접 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의 모든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3.10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1. 가. 상품이 제3.3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그 포장 및 포장재가 그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시 고려된다.

나. 상품이 제3.3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 외의 기준의 대상이 된다면,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는, 그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가 제3.3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3.11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 또는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품, 예비 부품, 공구 및 사용 설명서 또는 그 밖의 안내서는 수입 당사국에 의하여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상품과 함께 관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제3.12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아니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공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3.13조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

1.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가 원산지인지 여부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사용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2.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이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된다.

제2절
원산지 절차

제3.14조
원산지 증명서

1. 한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서식의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 상품은, 제3.17조에 명시된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서 없이도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원산지 증명서는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의 책임 하에서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으로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가. A4 크기의 용지에 부속서 3-다의 첨부1 서식으로 인쇄된다. 다수의 품목을 신고할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3-다의 첨부2 서식을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되는 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한장의 원본과 두장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원본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달한다. 제2사본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이 보관한다.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한다.

다. 영어로 작성되며, 하나의 탁송물에 있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라.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인쇄된다.

마. 수출되는 탁송물에 해당하는 그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을 포함한다. 그리고,

바. 발급 당국에 의하여 부여 받은 고유한 일련의 참조번호를 포함한다.

4.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9] 이내에 발급된다. 원산지 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이나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행될 수 있다.

5.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상품의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은, 국내 법령에 따른 그러한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6.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발급 당국에 발급 당국이 보관 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의 12번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된다.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 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다.

7. 원산지 증명서상의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변경 시에는 잘못된 부분은 줄을 그어 지우고 필요한 추가 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에 의하여 승인 되고 발급 당국에 의하여 인증 받는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여백은 차후의 추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그어 지운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 당국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한다.

제3.15조
발급 당국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당국 이름과 인장의 최신 등록부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당국의 이름과 인발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3. 등록부에 대한 변경은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되고 통보일부터 15일 후 또는 그러한 통보에 명시된 더 늦은 날에 발효된다.

4. 각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이, 명시된 대로, 수출되는 탁송물과 일치할 것, 그리고,

   나.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 당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한 일련의 참조번호를 포함할 것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3근무일"은 선적일 자체를 포함한다.

제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나. 제2항가호에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제3.14조에 기술된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그리고

다.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요청시, 원산지 증명서, 송장,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과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3. 원산지 증명서는 그 발급일 후 1년 동안 유효하다.

4.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수입자가 수입 당시 특혜관세대우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수입자가 수입일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입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시하는 경우,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납부하였던 초과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나.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

제3.17조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당사국은 수입의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18조
기록유지요건

1. 검증 과정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신청을 위한 증빙 기록을 보관한다.

2.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한다.

3. 원산지 증명서의 신청 및 그러한 신청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발급 당국에 의하여 발급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된다.

4.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에 의하여 제공되고 적절한 정부 당국에 의하여 인증된다.

5. 양 당사국 간 교환된 모든 정보는 제4.6조(비밀유지)에 따라 비밀로 취급되고 원산지 증명서의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제3.19조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의 처리

1.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무효화되지는 아니한다.

2.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원산지 증명서상의 사소한 오류를 발견할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 원산지 증명서가 수용될 수 없도록 한 오류를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3. 수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 후 30일 이내에 제3.14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의 적절한 수정본을 제출하거나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발급된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

4. 수입자가 제3항에 언급된 기간 내에 수정본이나 신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제3.21조에 따라 검증의 수행을 진행할 수 있다.

5.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상에 다수의 품목이 신고된 경우, 열거된 품목들 중 하나에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그 원산지 증명서에 열거된 나머지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및 통관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되지 아니 한다.

제3.20조
비당사국 송장

수입 당사국은 송장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발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제3.21조
검증

1.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10]에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또는 해당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사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사후 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사후 검증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요청은 관련 원산지 증명서를 수반하고 그 이유와 해당 원산지 증명서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은 경우,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요청 당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하여 그 요청의 접수 확인을 신속하게 제공한다.

다. 사후 검증에 대한 요청을 접수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신속하게 그 요청에 응답하고 그 요청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수입 당사국은 사후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사기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마.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검증 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후 검증의 전 과정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10개월 이내에 완료된다. 사후 검증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제1항라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검증을 요청하기 전에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한 정보 또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이 사후 검증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출 당사국에 검증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에,

[10] 한국의 경우, 이 조에 따른 원산지 검증의 목적상 “발급 당국”은 한국의 관세법과 규정에 따른 관세 당국을 지칭한다.

가.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2)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 당국

3)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관세 당국, 그리고

4) 검증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나. 제4항가호에서 언급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고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 당국의 이름

2)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이름

3) 제안된 검증방문 날짜

4) 검증대상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제안된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

다. 수입당사국은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라. 제4항가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검증방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원산지 증명서에서 언급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마. 통보를 받은 발급 당국은 제안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연기에도 불구하고, 모든 검증방문은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간 내에 수행된다.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및 관련 발급 당국에 그러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6. 정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제5항에 언급된 서면 결정서에 따라 복원된다.

7.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동안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상품의 자격에 대한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된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서나 추가 정보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서면결정서가 관련 발급 당국에 통지된다.

8. 최초의 검증방문이 수행된 첫날부터 최대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실제방문과 그러한 검증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제5항의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가 수행되고, 그 결과는 관련 발급 당국에 통보된다. 검증절차가 수행되는 동안, 제1항마호가 적용된다.

제3.22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3조
직접 운송의 이행

제3.8조 이행의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 증명서

다.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라. 제3.8조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3.24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제3.8조와 제3.23조에 따라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3.25조
이행

양 당사국은 인증수출자제도에 있어서 국내 이행 절차의 발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년 후 원산지 증명서 외의 원산지증명방식을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제3절
정의

제3.26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양식이란 정기적인 방류, 급식 또는 천적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이, 생산 증대를 위한 사육 또는 성장 과정에 개입하여, 어류 · 연체동물 · 갑각류 · 그 밖의 수생 무척추 동물 및 수생 식물을 포함한 수생 생물을 알 · 치어 · 작은 물고기 및 유생동물 같은 종자로부터 기르는 것을 말한다.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본선인도가격(FOB)이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를 말한다. 평가는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시한다.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하여서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발급 당국이란 이 장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정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재료란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및 하위 조립품을 포함한다.

비원산지 상품이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르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인을 말한다.

품목별원산지규정이란 재료가 세번의 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두주

1. 이 부속서의 품목별원산지규정은 2012 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이 부속서의 품목명과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하여 수립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법적 텍스트에 규정된 품목명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후자에 규정된 품목명이 우선한다.

2. 특정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원산지 규정 또는 특정 원산지 규정들은 그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3. 소호가 품목별원산지규정상 선택 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그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품목별원산지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면,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도록 요구된다.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된다.

5. 품목별원산지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규정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세번에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당사국은 해석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 단위를 말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 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 단위를 말한다.

7. 이 부속서 제 5 열의 목적상,

2 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 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 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 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XX 퍼센트 이상일 것(RVC(XX))이란 제 3.3 조에 따라 계산된 해당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XX 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 그리고

완전생산기준(WO)이란 제 3.2 조에 따라 완전하게 생산되거나 획득될 것을 말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1 부 살아 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				
01			**살아 있는 동물**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 및 버새**	
			-말	
		0101.2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1.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1.30	-당나귀	완전생산기준
		01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		**살아 있는 소**	
			-축우(畜牛)	
		0102.2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버팔로	
		0102.31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3		**살아 있는 돼지**	
		0103.10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기타	
		0103.91	--중량이 50 킬로그램 미만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3.92	--중량이 50 킬로그램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	-면양	완전생산기준
		0104.20	-산양	완전생산기준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중량이 185 그램 이하인 것	
		0105.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12	--칠면조	완전생산기준
		0105.13	--오리	완전생산기준
		0105.14	--거위	완전생산기준
		0105.15	--기니아새	완전생산기준
			-기타	
		0105.94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포유동물	
		0106.11	--영장류	완전생산기준
		0106.1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완전생산기준
		0106.13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완전생산기준
		0106.14	--토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1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20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조류	
		0106.31	--맹금류	완전생산기준
		0106.32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3	--타조, 에뮤(emus)[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애(Dromaius novaehollandiae)]	완전생산기준
		0106.39	--기타	완전생산기준
			-곤충류	
		0106.41	--벌	완전생산기준
		0106.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			**육과 식용설육**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1.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1.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1.30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1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2.2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2.30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1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3.1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냉동한 것	
		0203.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3.22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4		**면양 또는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1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2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4.2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4.23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4.30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41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4.42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4.43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4.50	-산양의 고기	완전생산기준
	02.05	0205.00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21	--혀	완전생산기준
		0206.22	--간	완전생산기준
		0206.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6.3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41	--간	완전생산기준
		0206.4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6.8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9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		**제 0105 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1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3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4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칠면조의 것	
		0207.24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5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6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7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오리의 것	
		0207.4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3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4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5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거위의 것	
		0207.51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2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3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207.54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5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60	-기니아새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10	-토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30	-영장류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40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5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208.6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염장한 것・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10	-돼지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9.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한 것・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돼지고기	
		0210.11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10.12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10.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210.20	-쇠고기	완전생산기준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91	--영장류의 것	완전생산기준
		0210.92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10.93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210.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			**어류 및 갑각류·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03.01		활어	
			-관상용	
		0301.11	--민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3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활어	
		0301.9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1.92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1.93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완전생산기준
		0301.94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1.95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연어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11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2.13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완전생산기준
		0302.14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2.19	--기타	완전생산기준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2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2.2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완전생산기준
		0302.23	--서대[솔레아(Solea)종]	완전생산기준
		0302.24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완전생산기준
		030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31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완전생산기준
		0302.3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완전생산기준
		0302.3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완전생산기준
		0302.3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완전생산기준
		0302.35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2.36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및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4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2.42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완전생산기준
		0302.4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완전생산기준
		0302.4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완전생산기준
		0302.45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2.4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완전생산기준
		0302.4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5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2.5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완전생산기준
		0302.5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완전생산기준
		0302.54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2.5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2.56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완전생산기준
		0302.59	--기타	완전생산기준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7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2.7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2.73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완전생산기준
		0302.74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2.7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2.81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2.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2.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2.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2.85	--돔[스파리대(Spar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2.8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90	-간과 어란(魚卵)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3		**냉동어류[제 0304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연어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11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완전생산기준
		0303.12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완전생산기준
		0303.13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3.14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2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3.24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3.25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완전생산기준
		0303.26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3.29	--기타	완전생산기준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31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완전생산기준
		0303.32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완전생산기준
		0303.33	--서대[솔레아(Solea)종]	완전생산기준
		0303.34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완전생산기준
		030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41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룽가(Thunnus alalunga)]	완전생산기준
		0303.42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완전생산기준
		0303.43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완전생산기준
		0303.44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완전생산기준
		0303.45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 (Thunnus thynnus)・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3.46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3.49	--기타	완전생산기준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및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5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3.53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완전생산기준
		0303.54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완전생산기준
		0303.55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3.56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완전생산기준
		0303.57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63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3.64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완전생산기준
		0303.65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완전생산기준
		0303.66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3.67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3.68	--블루 화이팅스(blue whi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완전생산기준
		0303.6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어류. 다만, 간과 어란(魚卵)은 제외한다.	
		0303.81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3.82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3.8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3.84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3.8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90	-간과 어란(魚卵)	완전생산기준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4.3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4.3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완전생산기준
		0304.3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4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4.42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4.4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4.44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0304.45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46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4.4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4.5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4.52	--연어과	완전생산기준
		0304.53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4.5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5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4.59	--기타	완전생산기준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6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4.6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4.63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완전생산기준
		0304.69	--기타	완전생산기준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7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4.72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완전생산기준
		0304.73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완전생산기준
		0304.74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4.75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4.7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8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4.82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0304.83	-- 넙치류[플루로넥티대(Pleuronectidae)과・바디대(Bothidae)과・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솔레이대(Soleidae)과・스코프탈미대(Scophthal 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4.84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85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4.86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4.87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완전생산기준
		0304.8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4.91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92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4.93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4.94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4.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과정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1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5.20	-어류의 간과 어란(魚卵)(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31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5.32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0305.39	--기타	완전생산기준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41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5.42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5.43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소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5.4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0305.49	--기타	완전생산기준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51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5.59	--기타	완전생산기준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및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61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5.62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5.63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완전생산기준
		0305.64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카라시우스 카라시우스(Carassius carassius)・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뱀장어[앙귈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5.69	--기타	완전생산기준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위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5.71	--상어 지느러미	완전생산기준
		0305.72	--어류의 머리・꼬리 및 위	완전생산기준
		0305.7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과정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냉동한 것	
		0306.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완전생산기준
		0306.1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306.14	--게	완전생산기준
		0306.1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완전생산기준
		0306.16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완전생산기준
		0306.17	--그 밖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19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냉동하지 않은 것	
		0306.2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완전생산기준
		0306.22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완전생산기준
		0306.24	--게	완전생산기준
		0306.25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완전생산기준
		0306.26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완전생산기준
		0306.27	--그 밖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29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과정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굴	
		0307.1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 또는 프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홍합[미틸루스(Mytilus)종・페르나(Perna)종]	
		0307.3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39	--기타	완전생산기준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0307.4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4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문어[옥토퍼스(Octopus)종]	
		0307.5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60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아르치대(Arcidae)과・아르크티치대(Arcticidae)과・카르디대(Cardiidae)과・도나치대(Donacidae)과・히아텔리대(Hiatellidae)과・마르크트리대(Mactridae)과・메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마이이대(Myidae)과・세멜리대(Semelidae)과・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솔레니대(Solenidae)과・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 및 베네리대(Veneridae)과]	
		0307.7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79	--기타	완전생산기준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0307.8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8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9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과정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리오이대(Holothurioidea)과]	
		0308.1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19	--기타	완전생산기준
			- 성게[스트론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종・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에치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chinus esculentus)]	
		0308.21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8.30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종]	완전생산기준
		0308.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물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401.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고 100 분의 6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4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6 을 초과하고 100 분의 10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5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10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5 를 초과하는 것	
		0402.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0402.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0402.9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0402.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이나 과실·견과류 또는 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10	-요구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403 호 물품의 우유성분 중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 총중량이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0403.90	-기타	4 단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제 0403 호 물품의 우유성분 중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 총중량이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4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	-버터	완전생산기준
		0405.2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완전생산기준
		04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curd)	완전생산기준
		0406.2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6.3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0406.30 호 물품의 우유성분 중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성분 총중량이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0406.4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6.90	-그 밖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부화용 수정란	
		0407.1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신선란	
		0407.2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의 노른자위	
		0408.1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0408.91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9	0409.00	**천연꿀**	완전생산기준
	04.10	0410.0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05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0501.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사람 머리카락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1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4	0504.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및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	-충전재용 깃털, 솜털	완전생산기준
		05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1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10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8	0508.00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10	0510.0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 1 류나 제 3 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511.10	-소의 정액	완전생산기준
			-기타	
		0511.91	--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 3 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완전생산기준
		051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				
06			**살아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 및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 1212 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1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 및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완전생산기준
		0601.20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 및 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	완전생산기준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 및 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10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완전생산기준
		0602.20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3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4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신선한 것	
		0603.11	--장미	완전생산기준
		0603.12	--카네이션	완전생산기준
		0603.13	--난	완전생산기준
		0603.14	--국화	완전생산기준
		0603.15	--백합[릴리움(Lilium)종]	완전생산기준
		0603.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풀・이끼와 지의(地衣)(신선한 것・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2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6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			**식용의 채소와 뿌리 및 괴경**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1.10	-종자	완전생산기준
		07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2	0702.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	-양파와 쪽파	완전생산기준
		0703.20	-마늘	완전생산기준
		0703.9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1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완전생산기준
		0704.20	-방울다다기 양배추	완전생산기준
		07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상추	
		0705.11	--결구(結球) 상추	완전생산기준
		0705.19	--기타	완전생산기준
			-치커리(chicory)	
		0705.21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완전생산기준
		0705.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706.10	-당근과 순무	완전생산기준
		0706.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7	0707.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08.2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08.9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완전생산기준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2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완전생산기준
		0709.30	-가지(에그플랜트)	완전생산기준
		0709.4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9.60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완전생산기준
		0709.7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기타	
		0709.91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완전생산기준
		0709.92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09.93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완전생산기준
		07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10	-감자	완전생산기준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710.21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0.22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10.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30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10.40	-스위트콘	완전생산기준
		0710.80	-그 밖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10.90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11.40	-오이류	완전생산기준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1.59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711.90	-그 밖의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또는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20	-양파	완전생산기준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및 송로(松露)	
		0712.31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2.32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완전생산기준
		0712.33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완전생산기준
		0712.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2.90	-그 밖의 채소,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3.1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3.2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완전생산기준
			-콩[비그나(Vigna)종 및 파세러스(Phaseolus)종)]	
		0713.31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 또는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완전생산기준
		0713.32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 또는 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완전생산기준
		0713.33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완전생산기준
		0713.34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 또는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완전생산기준
		0713.35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완전생산기준
		0713.39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3.40	-렌즈콩	완전생산기준
		0713.5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완전생산기준
		0713.6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완전생산기준
		071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4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및 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완전생산기준
		0714.20	-고구마	완전생산기준
		0714.30	-얌[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완전생산기준
		0714.40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완전생산기준
		0714.50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완전생산기준
		07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8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 및 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코코넛	
		0801.11	--말린 것	완전생산기준
		0801.12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브라질너트	
		0801.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2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캐슈너트(cashew nut)	
		0801.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32	--껍데기를 벗긴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아몬드	
		0802.1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12	--껍데기를 벗긴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코리루스(Corylus)종]	
		0802.2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2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호두	
		0802.3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3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0802.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4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피스타치오(pistachio)	
		0802.5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5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0802.6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62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7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완전생산기준
		0802.80	-빈랑자(areca nut)	완전생산기준
		08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10	-플랜틴(plantain)	완전생산기준
		08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 및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으로 한정한다)	
		0804.10	-대추야자	완전생산기준
		0804.20	-무화과	완전생산기준
		0804.30	-파인애플	완전생산기준
		0804.40	-아보카도(avocado)	완전생산기준
		0804.50	-구아바(guava)·망고(mango) 및 망고스틴(mangosteen)	완전생산기준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10	-오렌지	완전생산기준
		0805.20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 및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g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완전생산기준
		0805.4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5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 및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완전생산기준
		08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10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6.20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	--수박	완전생산기준
		0807.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7.20	-포포(papaw)[파파야(papaya)]	완전생산기준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1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08.30	-배	완전생산기준
		0808.40	-마르멜로(quince)	완전생산기준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 및 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10	-살구	완전생산기준
			-체리	
		0809.21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완전생산기준
		08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9.3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9.40	-자두와 슬로(sloe)	완전생산기준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0.2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loganberry)	완전생산기준
		0810.30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0.4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완전생산기준
		0810.60	-두리안(durian)	완전생산기준
		0810.70	-감	완전생산기준
		08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1.2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 및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10	-체리	완전생산기준
		081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3		**건조한 과실(제 0801 호부터 제 0806 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	-살구	완전생산기준
		0813.20	-프룬(prune)	완전생산기준
		0813.30	-사과	완전생산기준
		0813.40	-그 밖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3.5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8.14	0814.00	**감귤류의 껍질 또는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또는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		**커피(볶았는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22	--카페인을 제거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0901.90	-기타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2.1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2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 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4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완전생산기준
	09.03	0903.00	**마테(maté)**	완전생산기준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후추	
		0904.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21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5		**바닐라**	
		0905.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5.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6.11	--계피[신나모멈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완전생산기준
		0906.19	-기타	완전생산기준
		0906.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9.07		**정향(丁香)(과실・꽃 및 꽃대로 한정한다)**	
		0907.1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7.2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8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 및 소두구(小荳蔻)**	
			-육두구(肉荳蔻)	
		0908.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메이스(mace)	
		0908.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소두구(小荳蔻)	
		0908.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9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茴香)・코리앤더(coriander**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커민(cumin) 또는 캐러웨이(caraway)의 씨, 주니퍼(juniper)의 열매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0909.2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2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커민(cumin)의 씨	
		0909.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3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캐러웨이(caraway) 또는 회향(茴香)의 씨,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6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6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		**생강・사프란(saffron)・심황[강황(薑黃)]・타임(thyme)・월계수 잎・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생강	
		0910.1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10.12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20	-사프란(saffron)	완전생산기준
		0910.30	-심황[강황(薑黃)]	완전생산기준
			-그 밖의 향신료	
		0910.91	--혼합물(제 9 류의 주 제 1 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0910.99	--기타	A. 타임, 월계수잎 : 완전생산기준 B. 기타 :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0			**곡물**	
	10.01		**밀과 메슬린(meslin)**	
			-듀럼종 밀(Durum wheat)	
		1001.1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1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1001.9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2		**호밀**	
		1002.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2.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3		**보리**	
		1003.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3.90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0.04		**귀리**	
		1004.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5		**옥수수**	
		1005.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6		**쌀**	
		1006.10	-벼	완전생산기준
		1006.20	-현미	완전생산기준
		1006.30	-정미(연마 또는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006.40	-쇄미(broken rice)	완전생산기준
	10.07		**수수**	
		1007.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7.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 그 밖의 곡물**	
		1008.10	-메밀	완전생산기준
			-밀리트(millet)	
		1008.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8.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30	-카나리시드(canary seed)	완전생산기준
		1008.40	-포니오(Fonio)[디지타리아(Digitaria)종]	완전생산기준
		1008.5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완전생산기준
		1008.60	-라이밀(triticale)	완전생산기준
		1008.90	-그 밖의 곡물	완전생산기준
11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11.01	1101.00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2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2.20	-옥수수가루	완전생산기준
		1102.90	-기타	A. 쌀가루, 호밀가루 : 완전생산기준 B. 기타 :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정한다)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1	--밀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3.13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103.20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 1006 호의 쌀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또는 잘게 부순 것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2	--귀리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4.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003 호 및 제 1006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	
		1104.22	--귀리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23	--옥수수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2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30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축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또는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 및 펠릿(pellet)**	
		1105.10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가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5.20	-플레이크(flake)・알갱이 및 펠릿(pellet)	완전생산기준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 0713 호의 것), 사고(sago) 또는 뿌리나 괴경(塊莖)(제 0714 호의 것) 또는 제 8 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가루**	
		1106.1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 071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6.20	-사고(sago) 또는 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 0714 호의 것으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6.30	-제 8 류 물품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10	-볶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107.20	-볶은 것	완전생산기준
	11.08		**전분, 이눌린(inulin)**	
			-전분	
		1108.11	--밀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8.12	--옥수수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8.13	--감자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8.14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8.19	--그 밖의 전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8.20	-이눌린(inuli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1.09	1109.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곡물,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10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또는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202.30	-종자	완전생산기준
			-기타	
		1202.41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1202.42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3	1203.00	**코프라(copra)**	완전생산기준
	12.04	1204.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완전생산기준
		1205.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6	1206.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7.1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완전생산기준
			-목화씨	
		1207.21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7.30	-피마자	완전생산기준
		1207.40	-참깨	완전생산기준
		1207.50	-겨자씨	완전생산기준
		1207.6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70	-멜론 종자	완전생산기준
			-기타	
		1207.91	--양귀비씨	완전생산기준
		1207.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8.10	-대두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2.09		**파종용 종자·과실 및 포자(胞子)**	
		1209.10	-사탕무 종자	완전생산기준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2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3	--페스큐(fescue)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4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5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209.2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3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완전생산기준
			-기타	
		1209.91	--채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0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lupulin)**	
		1210.10	-홉(hop)[잘게 부순 것 또는 가루 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1210.2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완전생산기준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20	-인삼	완전생산기준
		1211.30	-코카잎	완전생산기준
		1211.40	-양귀비줄기	완전생산기준
		121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21	--식용	완전생산기준
		1212.29	--기타	완전생산기준
			-기타	
		1212.91	--사탕무	완전생산기준
		1212.92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완전생산기준
		1212.93	--사탕수수	완전생산기준
		1212.94	--치커리(chicory) 뿌리	완전생산기준
		1212.99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3	1213.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14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10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214.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3			**락(lac), 검·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락(lac), 천연 검・수지・검 수지 및 올레오레진(oleoresin)[예: 발삼(balsam)]**	
		1301.20	-아라비아 검	완전생산기준
		13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및 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1	--아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2	--감초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3	--홉(hop)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21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1302.20	-펙틴질・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1	--한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2	--로커스트콩(locust bean)・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1.10	-대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20	-등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90	-기타	완전생산기준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4.20	-면(綿) 린터(linter)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3 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				
15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 0209 호나 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	-라드(l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1.2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 15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10	-탤로우(tallo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3	1503.00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및 탤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나 혼합 또는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4.20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4.30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5	1505.00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6	1506.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	-버진(virg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0	151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 1509 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10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 또는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1512.21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또는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1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2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 또는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514.1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1514.9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1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	--조유(粗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10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6.20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7		**마가린,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 1516 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51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18	1518.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151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15.20	152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및 글리세롤 폐액(廢液)**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21		**식물성 납(蠟)[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는**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밀랍(蜜蠟)・그 밖의 곤충납(昆蟲蠟) 및 경납(鯨蠟)(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1521.10	-식물성 납(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2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5.22	1522.00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4 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 및 식초,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16			**육류·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1601.00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2.10	-균질화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20	-동물 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제 02 류 및 제 05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01 류, 제 02 류 및 제 05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 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31	--칠면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 02 류 및 제 05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01 류, 제 02 류 및 제 05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602.32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돼지의 것	
		1602.41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42	--어깨살과 그 절단육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1 류, 제 02 류 및 제 05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01 류, 제 02 류 및 제 05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1602.4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50	-소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2.90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3	1603.00	**육·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및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	--연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2	--청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3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 및 브리스링(brisling) 또는 스프랫(spra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bonito)[사르다(Sarda)종]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5	--고등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6	--멸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7	--뱀장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20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1	--캐비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4.32	--캐비아 대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10	-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새우류	
		1605.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30	-바닷가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40	-그 밖의 갑각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연체동물	
		1605.51	--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605.52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3	--홍합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4	--갑오징어와 오징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5	--문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6	-클램(clam), 새조개 및 피조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7	--전복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8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61	--해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2	--성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3	--해파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1605.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			**설탕 및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12	--사탕무당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1701.13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기타	
		1701.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1701.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11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20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702.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4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이고 100 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5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60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2.90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409 호 및 제 17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1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409 호 및 제 17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1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7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1801.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2	1802.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및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3.2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4	1804.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5	1805.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1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20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 또는 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 또는 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31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32	--속을 채우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 추출물(extract),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 0401 호부터 제 040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유아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1.20	-제 1905 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쿠스쿠스(couscous)(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2.11	--새의 알을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2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30	-그 밖의 파스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2.40	-쿠스쿠스(couscou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3	1903.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낟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10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20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또는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30	-불거 밀(bulgur whe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0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10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귀리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20	-생강과자(gingerbread)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위트 비스킷, 와플과 웨이퍼	
		1905.31	--스위트 비스킷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32	--와플과 웨이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40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905.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오이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4.90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2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균질화한 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20	-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4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2005.51	--껍데기를 벗긴 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6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70	-올리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80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1	--죽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6	2006.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및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10	-균질화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007.91	--감귤류의 과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견과류·땅콩 및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	--땅콩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8 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8.20	-파인애플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8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08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008.30	-감귤류의 과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40	-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50	-살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60	-체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70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80	-초본류 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 2008.19 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	--팜 하트(palm hear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93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97	--혼합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8.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오렌지주스	
		2009.11	--냉동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12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주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009.2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파인애플주스	
		2009.4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8 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9.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8 류의 것은 제외한다)
		2009.50	-토마토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	--브릭스(Brix) 값이 3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사과주스	
		2009.71	--브릭스(Brix) 값이 20 을 초과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009.81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8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009.90	-혼합 주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		**커피・차 또는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 또는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 및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및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1.12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또는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1.20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또는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1.30	-볶은 치커리(chicory)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 및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와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의 백신은 제외한다),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	-활성 효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2.20	-불활성 효모,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2.3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10	-간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20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30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4		**수프 및 브로드(broth)와 수프 및 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4.10	-수프 및 브로드(broth)와 수프 및 브로드(broth)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104.2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 호, 제 1212.20 호 및 제 1302.19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1.05	2105.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 호, 제 1212.20 호 및 제 1302.19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2			**음료·주류 및 식초**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얼음과 눈**	
		2201.10	-광천수와 탄산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 2009 호의 과실 주스나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2.90	-기타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 호 및 제 1302.19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2.03	2203.00	**맥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 포도즙(제 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포도주,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21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4.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4.30	-그 밖의 포도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의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5.10	-2 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6	2206.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00 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7.2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 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30	-위스키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4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50	-진(gin)과 제네바(geneva)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60	-보드카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70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2.09	2209.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			**식품공업에서 생긴 잔재물과 웨이스트, 조제 사료**	
	23.01		**육 또는 설육(屑肉)·어류 또는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지박	
		2301.1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수지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1.20	-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2 단위 세번변경기준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 또는 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또는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10	-옥수수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2.30	-밀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2.40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2.5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1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3.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3.30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4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5	2305.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304 호나 제 2305 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10	-목화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20	-아마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3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2306.41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50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8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08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정한다)
		2306.6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7	2307.00	와인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8	2308.00	**사료용 식물성 물질과 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08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제 08 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4			**담배 및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잎담배, 담배 부산물**	
		2401.10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1.20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1.30	-담배 부산물	완전생산기준
	24.02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10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402.20	-궐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2403 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11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기타	
		2403.91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2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제 5 부 : 광물성 생산품				
25			**소금, 황, 토속류, 석고, 석회와 시멘트**	
	25.01	2501.00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과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바닷물	완전생산기준
	25.02	2502.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3	2503.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4		천연 흑연	
		2504.10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6 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505.10	-규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6.10	-석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6.20	-규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7	2507.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		그 밖의 점토(제 6806 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硅線石)[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8.10	-벤토나이트(benton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30	-내화(耐火)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40	-그 밖의 점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50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硅線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508.60	-멀라이트(mulli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8.70	-샤모트(chamotte) 또는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09	2509.00	초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0		천연 인산칼슘·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및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잘게 부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0.20	-잘게 부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1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16 호의 산화바륨은 제외한다]	
		2511.10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1.20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2	2512.00	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 및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3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3.10	-부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3.20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밖의 천연 연마재료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4	2514.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5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리석과 트래버틴(travertine)	
		2515.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5.1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5.2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碑石)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설화 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화강암	
		2516.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12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20	-사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6.90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 및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10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 또는 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2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 2517.10 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3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515 호나 제 2516 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 및 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41	--대리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8		백운석(白雲石)[하소(煆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10	-하소(煆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8.20	-하소(煆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8.3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그 밖의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1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煆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10	-석고, 무수(無水)석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0.20	-플라스터(pl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1	2521.00	석회석 융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2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및 수경성(水硬性) 석회(제 2825 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	-생석회(生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2.20	-소석회(消石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2.30	-수경성(水硬性) 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슬래그(slag) 시멘트・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10	-시멘트 클링커(clink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3.3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3.90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4		석면	
		2524.10	-청(靑)석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5		운모(쪼갠 것을 포함한다), 운모 웨이스트(waste)	
		2525.1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갠 운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5.20	-운모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5.30	-운모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6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활석	
		2526.10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6.20	-부수거나 가루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8	2528.00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煆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장석(長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형석(螢石)	
		2529.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9.22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7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29.30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10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및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530.2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5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			**광·슬랙 및 회**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	--응결시키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1.12	--응결시킨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1.2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2	2602.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3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4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5	2605.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6	2606.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7	2607.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8	2608.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09	2609.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0	261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1	2611.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2.1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2.2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3.10	-배소(焙燒)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4	2614.00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5		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 또는 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5.1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6.10	-은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8	2618.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19	2619.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		슬래그(slag), 회(灰) 및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2620.21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3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4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60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620.91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1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6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			**광물성 연료 ·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7.01		석탄,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11	--무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1.12	--유연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1.19	--그 밖의 석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1.2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2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2.1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2.20	-응결시킨 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3	2703.00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4	2704.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5	2705.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6	2706.00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인지 상관없으며,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7.10	-벤조올(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20	-톨루올(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30	-크실롤(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40	-나프탈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5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 도에서 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 의 방법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 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707.91	--크레오소트(creosote)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8.10	-피치(pitc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8.20	-피치코크스(pitch coke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09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27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青油)(원유는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91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액화한 것	
		2711.1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2	--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3	--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4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 및 부타디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가스 상태인 것	
		2711.21	--천연가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2		석유젤리, 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	-석유젤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2.2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		석유코크스・석유역청(瀝青)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석유코크스	
		2713.11	--하소(煆燒)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12	--하소(煆燒)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20	-석유역청(瀝青)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3.9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4		천연의 역청(瀝青) 및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 또는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역청질 혈암(瀝青質 頁巖) 또는 유모 혈암(油母 頁巖) 및 타르샌드(tar san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5	2715.00	역청질(瀝青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青), 석유역청(瀝青), 광물성 타르 또는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 컷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7.16	2716.00	전기에너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6 부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 및 요드	
		2801.10	-염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1.20	-요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1.30	-플루오르, 브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2	2802.00	승화황(昇華黃) 또는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3	2803.00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10	-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희가스(rare gas)	
		2804.21	--아르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30	-질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40	-산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50	-붕소, 텔루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규소	
		2804.61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70	-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80	-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4.90	-셀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	--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12	--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30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5.40	-수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6		염화수소(염산), 클로로황산	
		2806.10	-염화수소(염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6.20	-클로로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7	2807.00	황산, 발연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8	2808.00	질산, 황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	-오산화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09.20	-인산과 폴리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0	2810.00	붕소의 산화물, 붕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그 밖의 무기산	
		2811.11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	--이산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22	--이산화규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10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3		비(非)금속 황화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2813.10	-이황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4.10	-무수(無水)암모니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4.20	-암모니아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 또는 과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815.11	--고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12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2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5.30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16		수산화마그네슘 및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2816.10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6.4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7	2817.00	산화아연, 과산화아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8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8.2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8.30	-수산화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삼산화크로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0		산화망간	
		2820.10	-이산화망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1		산화철 및 수산화철, 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산화철과 수산화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1.20	-어스컬러(earth colou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2	2822.00	산화코발트 및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3	2823.00	산화티타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4		산화납, 연단(鉛丹) 및 오렌지납	
		2824.10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		히드라진 및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 그 밖의 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 및 금속과산화물	
		2825.10	-히드라진 및 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30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25.40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60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70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80	-산화안티모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플루오르화물	
		2826.12	--플루오르화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3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 및 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 및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산화브롬화물, 요드화물 및 산화요드화물	
		2827.10	-염화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20	-염화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염화물	
		2827.31	--마그네슘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32	--알루미늄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35	--니켈 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41	--구리염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51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7.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27.60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아염소산염,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염소산염	
		2829.11	--염소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0		황화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0.10	-황화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1.10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2		아황산염, 티오황산염	
		2832.10	-아황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2.20	-그 밖의 아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2.30	-티오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		황산염, 명반,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황산나트륨	
		2833.11	--황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황산염	
		2833.21	--황산마그네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2	--황산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4	--황산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5	--황산구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7	--황산바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30	-명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3.40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4		아질산염, 질산염	
		2834.10	-아질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질산염	
		2834.21	--질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및 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10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인산염	
		2835.22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4	--인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35.25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6	--그 밖의 인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폴리인산염	
		2835.31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밤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20	-탄산이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3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40	-탄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50	-탄산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60	-탄산바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36.91	--탄산리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92	--탄산스트론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7		시안화물·산화시안화물 및 시안착염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837.11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7.20	-시안착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9		규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규산나트륨	
		2839.11	--메타규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3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		붕산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2840.11	--무수물(無水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20	-그 밖의 붕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0.3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30	-중크롬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50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망간산염·망간산염 및 과망간산염	
		2841.61	--과망간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70	-몰리브덴산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8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3.10	-콜로이드 귀금속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은 화합물	
		2843.21	--질산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30	-금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3.90	-그 밖의 화합물, 아말감(amalga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		방사성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4.10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20	-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30	-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 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40	-방사성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 2844.10 호・제 2844.20 호 또는 제 2844.30 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4.5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5		동위원소(제 2844 호의 것은 제외한다),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 또는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유기 화합물	
		2846.10	-세륨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7	2847.00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8	2848.00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10	-탄화칼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9.20	-탄화규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4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0	285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2849 호의 탄화물인 화합물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2		무기나 유기의 수은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2.10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8.53	2853.00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			**유기화학물**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포화비환식탄화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	--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01.22	--프로펜(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3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4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		환식탄화수소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및 시클로테르펜	
		2902.11	--시클로헥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20	-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30	-톨루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크실렌	
		2902.41	--오르토-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42	--메타-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43	--파라-크실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44	--혼합크실렌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50	-스티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60	-에틸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70	-큐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2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3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4	--사염화탄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5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21	--염화비닐(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22	--삼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23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롬화 또는 요드화유도체	
		2903.31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2903.71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3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4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5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6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및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7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8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81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82	--앨드린(ISO), 클로르덴(ISO) 및 헵타클로르(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91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및 파라-디클로로벤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03.92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04.10	-술폰화유도체,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20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포화 1 가알코올	
		2905.11	--메탄올(메틸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2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4	--그 밖의 부탄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6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7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불포화 1 가알코올	
		2905.22	--비환식테르펜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 가알코올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32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1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2	--펜타에리트리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3	--만니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4	--디-글루시톨(소르비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5	--글리세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	--에스클로비놀(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	
		2906.11	--멘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12	--시클로헥산올・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13	--스테롤과 이노시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방향족(芳香族)	
		2906.21	--벤질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		페놀, 페놀알코올	
			-1 가페놀	
		2907.11	--페놀(석탄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2	--크레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3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5	--나프톨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21	--레소르시놀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22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7.23	--4,4 ' -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할로겐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2908.11	-펜타클로로페놀(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908.91	--디노셉(ISO)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92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	--디에틸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44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09.60	-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		3 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10.20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3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40	-디엘드린(ISO, 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1	2911.00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11	--메탄알(포름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12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21	--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알데히드	
		2912.41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42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50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2.60	-파라포름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3	2913.00	제 2912 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		케톤 및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11	--아세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13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22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23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31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40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50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퀴논	
		2914.61	--안트라퀴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4.70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5.11	--포름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12	--포름산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13	--포름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2915.21	--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24	--무수(無水)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초산에스테르	
		2915.31	--초산에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2	--초산비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3	--초산노르말부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6	--초산디노셉(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4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5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6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70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916.11	--아크릴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16.12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3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4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5	--올레산・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6	--비나파크릴(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916.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32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34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		폴리카르복시산・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917.11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2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3	--아젤라산・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4	--무수말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2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917.32	--오르토프탈산디옥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3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4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5	--무수프탈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6	--테레프탈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7	--테레프탈산디메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 및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알코올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918.11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2	--타르타르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3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4	--시트르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5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6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8	--클로로벤질레이트(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페놀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2918.21	--살리실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22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23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30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918.91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		아민관능화합물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11	--메틸아민・디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21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22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30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 또는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1	--아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4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5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2-나프틸아민(베타- 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46	--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 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 ・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2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51	--오르토-페닐렌디아민・메타-페닐렌디아민・파라- 페닐렌디아민・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에테르 및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11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2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3	--트리에탄올아민과 그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4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미노나프톨 및 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에테르 및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21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미노-알데히드・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2922.31	--암페프라몬(INN)・메타돈(INN) 및 노르메타돈(INN),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41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2	--글루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3	--안트라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4	--틸리딘(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2.5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을 갖는아미노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		제 4 암모늄염과 수산화 제 4 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10	-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23.20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3.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11	--메프로바메이트(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및 포스파미돈(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3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4	--에치나메이트(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25.11	--사카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12	--구루테치미드(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21	--클로르디메포름(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아크릴로니트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2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3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7	2927.00	디아조화합물・아조화합물 또는 아족시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8	2928.00	히드라진 또는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9		그 밖의 질소관능을 갖는 화합물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		유기-황화합물	
		2930.2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40	-메티오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50	-캡타폴(ISO)과 메타미도포스(IS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테트라메칠납과 테트라에칠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20	-트리부틸틴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붙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	--테트라히드로푸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12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13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20	-락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932.91	--이소사프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2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3	--피페로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4	--사프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5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붙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붙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21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붙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31	--피리딘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32	--피페리딘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33	-- 알펜타닐(INN)・아닐레리딘(INN)・베지트라마이드(INN)・브로마제팜(INN)・디페녹신(INN)・디펜옥실레이트(INN)・디피파논(INN)・펜타일(INN)・케토베미돈(INN)・메틸페니데이트(INN)・펜타조신(INN)・페치딘(INN)・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펜사이클리딘(INN)(PCP)・페노페리딘(INN)・피프라드롤(INN)・피리트라미드(INN)・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3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41	--레보파놀(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3	-- 아로바르비탈(INN)・아모바르비탈(INN)・바르비탈(INN)・부탈비탈(INN)・부토바르비탈(INN)・싸이클로바르비탈(INN)・메틸페노바르비탈(INN)・펜토바르비탈(INN)・페노바르비탈(INN)・섹부타바르비탈(INN)・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4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5	--로프라졸람(INN)・메크로콰론(INN)・메타콰론(INN) 및 지페프롤(INN),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	--멜라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2933.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락탐	
		2933.71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72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79	--그 밖의 락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933.91	-- 알프라졸람(INN)・카마제팜(INN)・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클로나제팜(INN)・클로라제페이트・델로라제팜(INN)・디아제팜(INN)・에스타졸람(INN)・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플르디아제팜(INN)・플루니트라제팜(INN)・플루라제팜(INN)・할라제팜(INN)・로라제팜(INN)・로르메타제팜(INN)・마진돌(INN)・메다제팜(INN)・미다졸람(INN)・니메타제팜(INN)・니트라제팜(INN)・놀다제팜(INN)・옥사제팜(INN)・피나제팜(INN)・프라제팜(INN)・피로발레톤(INN)・테마제팜(INN)・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10	-붙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30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붙지 않은 것으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정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934.91	-- 아미노렉스(INN)・브로티졸람(INN)・클로티아제팜(INN)・클록사졸람(INN)・덱스트로모라마이드(INN)・할록사졸람(INN)・케타졸람(INN)・메소카브(INN)・옥사졸람(INN)・페몰린(INN)・펜디메트라진(INN)・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5	2935.00	술폰아미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이나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6.21	--비타민 A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2	--비타민 B1 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3	--비타민 B2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4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 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5	--비타민 B6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6	--비타민 B12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7	--비타민 C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8	--비타민 E 와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29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6.90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트롬복산 및 류코트리엔(천연의 것이나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프로테인 호르몬 및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12	--인슐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	--코르티손·히드로코르티손·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 및 프레드니소론(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22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23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50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이나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및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2938.10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		식물 알칼로이드(천연의 것이나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및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11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INN)・코데인・디히드로코데인(INN)・에틸모르핀・에토르핀(INN)・헤로인・히드로코돈(INN)・히드로모르폰(INN)・모르핀・니코모르핀(INN)・옥시코돈(INN)・옥시모르폰(INN)・폴코딘(INN)・테바콘(INN) 및 테바인,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20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30	-카페인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41	--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2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3	--캐친(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4	--놀에페드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테오피린 및 아미노피린(테오피린-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51	--페네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2939.61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62	--엘고타민(INN)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63	--리세르그산과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2939.91	-- 코카인・에크코닌・레보메탐페타민・메탐페타민(INN)・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에스테르 및 그 밖의 이들의 유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0	294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당아세탈 및 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제 2937 호・제 2938 호 또는 제 29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		항생물질	
		2941.10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4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50	-에리즈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29.42	2942.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			**의약용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1.20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0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20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30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 3002 호・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2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3.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4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3002 호・제 3005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또는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20	-그 밖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937 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항생물질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3004.31	--인슐린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32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40	-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제 2937 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물품이나 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50	-그 밖의 의약품(제 2936 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	
		3005.10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 4 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3006.10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및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006.20	-혈액형 분류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3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40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50	-구급상자와 구급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60	-제 2937 호의 호르몬,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7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인체의약용이나 동물 의약용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006.91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006.92	--폐(廢)의료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			**비료**	
	31.01	3101.00	동물성이나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 또는 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 및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102.21	--황산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3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4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50	-질산나트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60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80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2.90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10	-과인산석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20	-염화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30	-황산칼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20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4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3105.51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105.6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			**유연용 또는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3201.10	-퀘브라쵸 추출물(quebracho extrac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2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2		합성 유기유연제, 무기유연제, 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효소계 조제품	
		3202.10	-합성 유기유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3	3203.00	식물성 또는 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2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3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4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5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6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7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19	--기타(소호 제 3204.11 호부터 제 3204.19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2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5	3205.00	레이크 안료,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		그 밖의 착색제, 조제품(제 3203 호・제 3204 호 또는 제 32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 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2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41	--군청(群青)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2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lithopone) 및 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6.50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 및 조제 그림물감·법랑 및 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 또는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20	-법랑과 유약·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30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7.4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4 호의 용액	
		3208.10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2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0	3210.0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 및 디스템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가죽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1	3211.00	조제 드라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와 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스탬프용 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3		화가용・학생용 또는 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	-세트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 또는 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쇄용 잉크	
		3215.11	--흑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	
		3301.12	--오렌지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13	--레몬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정유(essential oil)(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3301.24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25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30	-레지노이드(resinoid)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1211.20 호 및 제 1302.19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소호 제 1211.20 호 및 제 1302.19 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3	3303.00	향수와 화장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 또는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 또는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304.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	-샴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5.2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5.30	-헤어 래커(hair lacqu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6		구강 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6.10	-치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6.20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10	-면도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2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3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비누 및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 및 부직포	
		3401.11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1.2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 및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4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11	--음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12	--양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13	--비이온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20	-소매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3403.1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403.91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2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 또는 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 및 연마가루와 이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 또는 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 3404 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10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20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3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4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및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6	3406.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4.07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로 알려진 조제품[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또는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35.01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1.10	-카세인(case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11	--건조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20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3	3503.00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 3501 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4	3504.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 또는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5.20	-글루(glu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506.91	--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7		효소,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10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3601.00	화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2	3602.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3	3603.00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4		불꽃제품・신호용 조명탄・레인로켓(rain rocket)・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4.10	-불꽃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5	3605.00	성냥(제 3604 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6		페로세륨 및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 2 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6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및 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 또는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1.10	-엑스선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1.2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1.30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701.9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		롤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 또는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2.10	-엑스선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702.31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32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702.41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42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43	--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44	--폭이 10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3702.52	--폭이 16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53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54	--폭이 16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55	--폭이 16 밀리미터 초과하고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56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702.96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97	--폭이 35 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 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2.98	--폭이 3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3		사진 인화지·판지 및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10	-롤 모양(폭이 6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3.20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4	3704.00	사진플레이트·필름·인화지·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5.10	-오프셋 복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10	-폭이 3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arnish)・글루(glue)・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707.10	-감광유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7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			**각종 화학공업 물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또는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	-인조흑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1.2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1.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2.10	-활성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3	3803.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4	3804.00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 3803 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5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10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6		로진(rosin)과 수지산 및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6.10	-로진(rosin)과 수지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6.20	로진염, 수지산염 또는 로진(rosin)이나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6.30	-에스테르 검(ester g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7	3807.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또는 조제품으로 한 것이나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와 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50	-이 류의 소호주 제 1 호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808.91	--살충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2	--살균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3	--제초제·발아억제제 및 식물성장조절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8.94	--소독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8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 또는 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와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1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809.91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9.92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09.93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 또는 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1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안티녹(anti-knock)제	
		3811.11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윤활유 첨가제	
		3811.21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10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2.20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2.30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3	3813.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4	3814.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vanish) 제거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 및 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11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5.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6	3816.00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 3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7	3817.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 2707 호 또는 제 2902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8	3818.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19	3819.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青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0	382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1	3821.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이나 식물・인간 또는 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2	3822.00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3002 호 또는 제 3006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823.11	--스테아르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3.12	--올레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3.13	--톨유(tall oil) 지방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3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40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5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824.6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 2905.44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하는 혼합물	
		3824.71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2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3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4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5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6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7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8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또는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혼합물과 조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824.81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82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83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 6 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10	-생활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20	-하수 찌꺼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30	-감염성 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폐유기용제	
		3825.41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5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825.61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8.26	3826.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7 부 :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	-폴리프로필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2.20	-폴리이소부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폴리스티렌	
		3903.11	--발포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3.2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3904.21	--가소화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2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3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4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5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폴리(초산비닐)	
		3905.12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	--물에 분산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9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5.3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3905.91	--공중합체(共重合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10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10	-폴리아세탈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20	-그 밖의 폴리에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30	-에폭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40	-폴리카보네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50	-알키드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70	-폴리(락트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3907.91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10	-폴리아미드-6, -11, -12, -6,6, -6,9, -6,10 또는 -6,12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9		아미노수지·페놀수지 및 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10	-요소수지, 티오요소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9.20	-멜라민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9.30	-그 밖의 아미노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9.40	-페놀수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09.50	-폴리우레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0	3910.0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1		석유수지·쿠마론- 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그 밖의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10	-석유수지·쿠마론·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초산셀룰로오스	
		3912.11	--가소화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2.12	--가소화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2.2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31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10	-알긴산과 그 염 및 에스테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4	3914.00	-이온교환수지[제 3901 호부터 제 3913 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과 스크랩(scrap)	
		3915.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5.2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5.3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5.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 및 형재(形材)(표면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6.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6.2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6.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10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경질(硬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	
		3917.21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22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23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관·파이프 및 호스:	
		3917.31	--연질(軟質)의 관·파이프 및 호스[파열압(破裂壓)이 27.6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32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33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7.40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 9 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8.9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롤 모양인 것(폭이 20 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 및 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2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3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43	--가소제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6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3920.51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 에스테르 또는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61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6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6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69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920.71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73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79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0.91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92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93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94	--페놀수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0.9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 및 스트립	
			-셀룰러	
		3921.11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1.12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3921.13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1.14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1.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 및 세면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2.2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 또는 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3923.21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3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40	-스풀(spool)・콥(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5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3924.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5.1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5.2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5.3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 호부터 제 3914 호까지의 그 밖의 물품의 제품	
		3926.10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6.2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6.30	-가구・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6.4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39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			**고무와 그 제품**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21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1.30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 percha)・구아율(guayule)・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할로이소부텐- 이소프렌고무(CIIR 또는 BIIR)	
		4002.31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60	-이소프렌 고무(I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80	-제 4001 호의 물품과 제 4002 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002.91	--라텍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3	4003.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4	4004.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과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5.10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05.20	-용액, 분산액(소호 제 4005.10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005.91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예: 막대(rod)・관 및 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 및 링)	
		4006.10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7	4007.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8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 및 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08.11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	
		4008.21	--판・시트(sheet) 및 스트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1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된 것	
		4009.2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2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된 것	
		4009.3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3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되지 않은 것	
		4009.41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09.42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 또는 전동(transmission)용 벨트 또는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11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12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동(transmission)용 벨트 또는 벨팅(belting):	
		4010.31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2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3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4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 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5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5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6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 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98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20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30	-항공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40	-모터사이클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5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011.61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62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63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011.92	--농경용 또는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93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94	--건설용 또는 산업용 차량 및 기계의 것으로서 림(rim)의 지름이 61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 또는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타이어 트레드(tread) 및 타이어 플랩(flap)	
			-재생타이어	
		4012.11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12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13	--항공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20	-중고 공기타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3.20	-자전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 또는 의약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4.10	-콘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과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장갑, 벙어리장갑	
		4015.11	--외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1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타	
		4016.91	--바닥깔개와 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92	--지우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93	--개스킷(gasket)・와셔(washer) 및 그 밖의 실(se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94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95	--그 밖의 팽창성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0.17	4017.00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 부 :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1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2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 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1.50	-전신 원피(16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1.90	-기타[버트(butt), 벤드(bend) 및 벨리(belly)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2.1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털을 제거한 것	
		4102.21	--산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 또는 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 1 호 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20	-파충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3.30	-돼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4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1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5.3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산양의 것	
		4106.2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2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돼지의 것	
		4106.3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3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40	-파충류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106.9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6.92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7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전신 원피	
		4107.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7.1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4107.9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7.9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2	4112.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3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4114 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10	-산양의 원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3.20	-돼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3.30	-파충류의 원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4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4.10	-샤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샤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4.2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5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가루	
		4115.10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115.20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	
	42.01	4201.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 또는 콤퍼지션 레더·플라스틱의 시트·방직용 섬유 ·벌커나이즈드파이버 또는 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1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2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2.3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3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202.91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9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203.10	-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장갑, 벙어리장갑	
		4203.21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3.30	-벨트와 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3.4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5	4205.00	그 밖의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2.06	4206.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방광 또는 건(腱)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43.01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 4101 호·제 4102 호 또는 제 4103 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1.1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1.3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1.6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1.80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1.9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사용에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2		모피(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30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2.11	--밍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2.20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2.3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3		모피의류・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3.10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3.04	4304.00	인조모피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9 부 :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과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1.10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4401.2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1.22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톱밥과 목재의 웨이스트(waste) 및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1.31	--목재 펠릿(pel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2		목탄[쉘(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		원목[껍질 또는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3.10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20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4403.4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403.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92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4		후프우드(Hoopwood), 쪼갠 말뚝, 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산류(傘類)·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4.20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5	4405.00	목모(wood wool), 목분(wood flou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6		궤도용 침목	
		4406.10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열대산 목재(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407.21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2	--비롤라(Virola)・임부아(Imbuia) 및 발사(Balsa):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5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6	--화이트라왕(White Lauan)・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및 아란(Ala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7	--사팰리(Sapelli)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8	-이로코(Iroko)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407.91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2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3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4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5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및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열대산 목재(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408.31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Red Meranti) 및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10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활엽수류	
		4409.2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목재로 만든 것	
		4410.11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0.12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1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	--두께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1.13	-두께가 5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9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1.14	-두께가 9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411.92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8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1.93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을 초과하고 0.8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1.94	--밀도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5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10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두께 6 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4412.3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 류의 소호주 제 2 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2.32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412.94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와 배튼보드(batten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3	4413.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 또는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4	4414.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5		나무로 만든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 및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4415.1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5.20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 및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6	4416.00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텁(tub)과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7	4417.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 나무로 만든 부츠 또는 신발의 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20	문과 문틀 및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4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50	-지붕을 이는 판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60	-기둥과 들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1	--모자이크 마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72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19	4419.00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20		마르퀘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나무로 만든 신변장식용품이나 칼붙이용의 상자와 용기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 94 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4420.10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21		그 밖의 목제품	
		4421.10	-옷걸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4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또는 잘게 부순 코르크(cork)	
		4501.1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2	4502.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3		천연 코르크(cork) 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503.10	-마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4		응집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집 코르크(cork)의 제품	
		4504.10	-블록・판・시트(sheet)와 스트립(strip),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4601.2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1.22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601.92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1.93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1.94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 4601 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602.1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2.12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0 부 :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 및 판지와 이들의 제품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1	4701.00	기계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2	4702.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4703.1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3.1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3.2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3.2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4704.1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4.1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4.21	--침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4.29	--활엽수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5	4705.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706.1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6.2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6.30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706.91	--기계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6.92	--화학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6.93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7.1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7.20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7.3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707.9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	
	48.01	4801.00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와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 4801 호 또는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802.1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2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 또는 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40	-벽지용 원지(原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5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55	--롤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56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57	--그 밖의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40 그램 이상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58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61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62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2.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3	4803.00	화장지 또는 안면용 티슈스톡, 타월 또는 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또는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2 호나 제 48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804.1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4804.2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3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4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4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5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5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 3 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플루팅지(fluting paper)	
		4805.11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12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테스트라이너(testliner)(재생라이너판)	
		4805.2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25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30	-아황산포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40	-여과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50	-펠트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805.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고 225 그램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5.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25 그램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6		황산지・내지지(耐脂紙)・트레이싱지(tracing paper) 및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6.10	-황산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6.20	-내지지(耐脂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6.3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6.40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7	4807.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8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의 종이는 제외한다]	
		4808.1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8.40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09		카본지, 셀프복사지 및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나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9.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8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		한 면이나 양면에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 또는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하고, 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13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14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22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4810.31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32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95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0.92	--두 겹 이상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 또는 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 4803 호・제 4809 호 또는 제 4810 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	-타르・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접착지와 판지	
		4811.41	--셀프접착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플라스틱을 도포,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4811.51	--표백한 것(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6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 또는 글리세롤을 도포,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1.90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2	4812.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와 필터플레이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3		궐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3.1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3.20	-폭이 5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창용 투명지	
		4814.20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또는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 48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20	-셀프복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우편엽서와 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7.10	-봉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7.20	-봉함엽서・우편엽서와 통신용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7.3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적합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	-화장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8.20	-손수건・클렌징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와 타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8.3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8.50	-의류와 의류의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류・포장대 및 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상자류(물결 모양의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20	-접는 상자류(물결 모양의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30	-폭이 40 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4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50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19.6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 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 pad)・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0.10	-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 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0.20	-연습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0.3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와 서류철 표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0.4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0.5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인쇄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2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1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3		그 밖의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적합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	-여과지와 판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3.4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와 다이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접시・플레이트・컵과 이와 유사한 것	
		4823.61	--대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3.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3.7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 또는 프레스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82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10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901.91	--사전과 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 연속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2.10	-1 주에 4 회 이상 간행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3	4903.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4	4904.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5.10	-지구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905.91	--책자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6	4906.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한 것과 카본복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7	4907.00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 또는 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	
		4908.1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09	4909.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 또는 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10	491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911.91	--서화・디자인 및 사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49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1 부 :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50			견	
	50.01	5001.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2	5002.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3	5003.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4	5004.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5	5005.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6	5006.00	견사와 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004 호 부터 제 5005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7		견직물[견 또는 견 웨이스트(waste)의 것으로 한정한다]	
		5007.10	-견 노일(noil)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7.20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007.90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양모[카드(card) 또는 코움(comb)한 것을 제외한다]	
			-그리지(greasy)[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1.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5101.21	--깎은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1.30	-탄화처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 또는 코움(comb)한 것을 제외한다]	
			-동물의 부드러운 털	
		5102.1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2.20	-동물의 거친 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3.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103.3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4	5104.00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5		양모와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카드(card)한 양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울톱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5105.21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5.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동물의 부드러운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105.31	--캐시미어 산양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5.4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6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6.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6.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7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1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7.20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10	-카드(car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8.20	-코움(comb)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09.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 호부터 제 5108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106 호부터 제 5108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0	511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카드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상인 것	
		5111.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3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코움한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112.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2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30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1.13	5113.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			면	
	52.01	5201.00	면[카드(card) 또는 코움(comb)한 것을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2.1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202.91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2.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3	5203.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4.20	-소매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26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27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28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6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 106.38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9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7	--구성하는 단사가 106.38 데시텍스 미만 83.33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94 수 초과 12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5.48	--구성하는 단사가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2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1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1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1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1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1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단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21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22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23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24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25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3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3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3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206.3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41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4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 데시텍스 미만 232.56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 수 초과 43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43	--구성하는 단사가 232.56 데시텍스 미만 192.31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 수 초과 52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44	--구성하는 단사가 192.31 데시텍스 미만 125 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 수 초과 80 수 이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6.45	--구성하는 단사가 125 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 수 초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7.10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204 호부터 제 520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204 호부터 제 520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208.1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1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1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5208.2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2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2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08.3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8.4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3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08.51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52	--평직물(平織物)(1 제곱미터당 중량이 100 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8.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09.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포함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5209.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2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09.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9.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43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09.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09.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10.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표백한 것	
		5210.2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10.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0.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10.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0.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	
		5211.1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1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20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211.3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3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4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42	--데님(deni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43	--3 올이나 4 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211.51	--평직물(平織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52	--3 올이나 4 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1.5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		그 밖의 면직물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5212.1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1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00 그램 이하인 것	
		5212.21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2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3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4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212.25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1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훑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5301.21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1.30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1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아마・대마와 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3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5	5305.00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과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6		아마사	
		5306.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6.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7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사	
		5307.10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7.2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 종이실(paper yarn)	
		5308.10	-코이어(coir)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8.20	-대마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9		아마직물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309.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309.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10		제 5303 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의 직물	
		5310.10	-표백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3.11	5311.00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합성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1.20	-재생 또는 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2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텍스처드사	
		5402.3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32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 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33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34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50 회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4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45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46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47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48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402.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 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402.5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5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5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2.61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62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2.6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3		재생 또는 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 데시텍스 미만인 재생 또는 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단사)	
		5403.31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 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3.32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 회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3.33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3.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3.41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3.42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3.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모노필라멘트	
		5404.11	--탄성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4.12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5	5405.00	재생 또는 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 또는 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6	5406.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4 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2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30	-제 11 부의 주 제 9 호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407.5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5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5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5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61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7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7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7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7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407.8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8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407.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7.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		재생 또는 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제 5405 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재생 또는 반(半)합성 필라멘트 또는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8.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408.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408.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1.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501.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2	5502.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	-아라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40	-폴리프로필렌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4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1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505.10	-합성섬유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5.2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6.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20	-폴리에스테르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3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7	5507.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8.2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2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2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09.3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09.4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4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5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5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5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6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6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실	
		5509.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92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0.11	--단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1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20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30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0.90	-그 밖의 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1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508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1.20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508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1.3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5508 호부터 제 5510 호까지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2.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2.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512.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3.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513.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1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513.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3.3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3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513.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3.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70 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4.1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1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1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염색한 것	
		5514.2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2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3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날염한 것	
		5514.41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42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 올이나 4 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43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4.49	--그 밖의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3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2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515.91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이상인 것	
		5516.1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1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1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1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85 미만인 것	
		551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516.9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9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9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516.9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와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 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워딩(wadding),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5601.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1.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1.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1.30	-섬유의 플록(flock)과 더스트(dust) 및 밀네프(mill nep)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2.10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펠트(felt)(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2.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2.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1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1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1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603.9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 그램을 초과하고 7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3	--1 제곱미터당 중량이 70 그램을 초과하고 150 그램 이하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3.94	--1 제곱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 및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5	5605.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 또는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6	5606.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 5605 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와 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사이잘(sisal)마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607.2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2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5607.41	--포장용 끈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4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5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 또는 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및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8.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6.09	5609.00	제 5404 호나 제 5405 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1.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5702.10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2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4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5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702.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2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3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3.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4.1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 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7.05	5705.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파일(pile)직물과 셔닐(chenille)직물(제 5802 호나 제 5806 호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면으로 만든 것	
		5801.2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27	--경(經)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31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2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3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6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37	--경(經)파일(pi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 57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5802.11	--표백하지 않은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2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2.30	-터프트(tuft)한 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3	5803.00	거즈[제 5806 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4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 6002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5804.10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계로 만든 레이스	
		5804.2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4.30	-손으로 만든 레이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5	5805.00	-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직·오뷔송(aubusson)직·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및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		세폭(細幅)직물(제 580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5806.10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을 포함한다]과 셔닐(chenille)직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2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5806.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6.4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 또는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직조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8.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09	5809.00	금속사의 직물과 제 5605 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 또는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0.1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자수천	
		5810.91	--면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0.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0.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8.11	5811.00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 5810 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 또는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2.1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2.2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	-폴리(염화비닐)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5903.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깔개(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04.10	-리놀륨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4.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5	5905.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 5902 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	-폭이 20 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5906.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6.9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7	5907.00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8	5908.00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 또는 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09	5909.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0	5910.00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 7 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10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및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 및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2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5911.31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미만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32	--1 제곱미터당 중량이 650 그램 이상인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4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5911.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1.10	-롱파일(long pile) 편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001.21	--면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001.91	--면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1.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 6001 호나 제 60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20	-면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 6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 6001 호부터 제 6004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면으로 만든 것	
		6005.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5.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5.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면으로 만든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006.2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2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2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2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6.3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3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3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3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6.41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42	--염색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43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44	--날염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0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1.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 6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2.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	-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103.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1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3.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104.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104.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4.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드레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04.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커트와 치마바지	
		6104.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5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104.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5.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와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107.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1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07.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108.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브리프(brief)와 팬티	
		6108.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08.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8.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9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0.11	--양모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12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0.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1.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1.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		트랙슈트·스키슈트와 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트랙슈트	
		6112.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6112.31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6112.41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2.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3	6113.00	의류(제 5903 호・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4.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115.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6115.21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30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 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15.94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95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5.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1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116.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6.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117.10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80	-그 밖의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1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3 호의 것은 제외한다)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1.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1.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1.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 62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2.9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9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203.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203.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2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3.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슈트	
		6204.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앙상블(ensemble)	
		6204.2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4.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드레스	
		6204.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4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5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	
		6204.6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6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4.6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와 셔츠블라우스	
		6206.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206.3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207.1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207.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208.11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타	
		6208.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8.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09.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		의류(제 5602 호・제 5603 호・제 5903 호・제 5906 호 또는 제 5907 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6210.10	-제 5602 호나 제 5603 호의 직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2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1.11 호부터 제 6201.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30	-그 밖의 의류(소호 제 6202.11 호부터 제 6202.19 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40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0.50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와 수영복, 그 밖의 의류	
			-수영복	
		6211.11	--남성용이나 소년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12	--여성용이나 소녀용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20	-스키슈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3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3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6211.42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1.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및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6212.10	-브래지어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20	-거들과 팬티거들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30	-코르슬렛(corselette)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2.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3		손수건	
		6213.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3.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30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4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4.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5		넥타이류	
		6215.1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5.20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6	6216.00	장갑, 벙어리장갑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 6212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	-부속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217.90	-부분품	2 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 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6301.10	-전기모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2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3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4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1.9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 및 주방린넨(kitchen linen)	
		6302.10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6302.2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6302.3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4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6302.5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5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6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302.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2.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과 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3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303.91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3.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 9404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침대덮개	
		6304.1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1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304.91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2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3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4.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5.10	-황마나 제 5303 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靭皮)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20	-면으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05.32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39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5.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		방수포(tarpaulin)·차양과 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 또는 랜드크래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방수포(tarpaulin)·천막과 차양	
		6306.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텐트	
		6306.22	--합성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30	-돛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40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6.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10	-마루닦이포・접시닦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2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7.90	-기타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8	6308.00	러그(rug)용・태피스트리(tapestry)용・자수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2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3.09	6309.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완전생산기준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및 케이블의 스크랩(scrap)과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또는 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10	-선별한 것	완전생산기준
		6310.90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 12 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4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신발	
		6401.92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2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신발	
		6402.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4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5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신발	
		6403.91	--발목을 덮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4.2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5		그 밖의 신발	
		6405.1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5.2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힐쿠션(heel cushion)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20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4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6501.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숑(manchon)[슬릿망숑(slit manchon)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2	6502.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고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4	6504.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5	6505.00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 또는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10	-안전모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506.91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6.9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5.07	6507.00	-모자용의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 및 턱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1.1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601.91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2	6602.00	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3		제 6601 호나 제 6602 호의 물품의 부분품・트리밍(trimming)과 부속품	
		6603.2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			**조제 깃털 및 솜털과 깃털 또는 솜털로 만든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6701.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깃털의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 0505 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및 깃촉(quill)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2		인조 꽃・잎 및 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 또는 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2.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3	6703.00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4		가발・가수염・눈썹 및 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 또는 동물의 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704.11	-전체가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4.20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704.9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3 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8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6801.00	포석・연석과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		가공한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 6801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 및 가루	
		6802.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 및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6802.21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2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2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802.91	--대리석・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92	--그 밖의 석회질 암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93	--화강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2.99	--그 밖의 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3	6803.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또는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4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 또는 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1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 또는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21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4.22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4.23	--천연석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4.30	-수지석(手砥石)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5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 또는 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10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5.2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5.3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6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 또는 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 6811 호 또는 제 6812 호나 제 69 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6.2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7.10	-롤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8	6808.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 또는 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보드·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은 제외한다)	
		6809.11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09.90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또는 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	--건축용 블록과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제품	
		6810.91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1		석면시멘트 제품·셀룰로오스파이버시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1.81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811.82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1.89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또는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또는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직물·의류·모자·신발·개스킷(gasket)](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 6811 호나 제 6813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청석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6812.91	--의류·의류부속품·신발 및 모자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92	--종이·표지용 판지 및 펠트(fel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93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롤·스트립(strip)·세그먼트·디스크(disc)·와셔(washer)·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그 밖의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3.20	-석면을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3.81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3.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1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10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5.20	-이탄(泥炭)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제품	
		6815.91	--마그네사이트・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8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			**도자제품**	
	69.01	6901.00	벽돌・블록・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	-마그네슘・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2.20	-알루미나・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 및 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3.20	-알루미나(Al2O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바닥깔개용 블록・서포트타일(support tile) 또는 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	-건축용 벽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5		기와・굴뚝통・굴뚝갓・굴뚝용 내장재・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905.10	-기와(지붕타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6	6906.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홈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7.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8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908.1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6909.12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1.1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2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3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 제품	
		6913.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	-자기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69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			**유리와 유리제품**	
	70.01	7001.00	깨진 유리 및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 7018 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10	-구(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20	-막대(ro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관(管)	
		7002.31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3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12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2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3.30	-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20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4.90	-그 밖의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반사층 또는 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7005.21	--전 부분을 착색한 것(엷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5.30	-망입(網入) 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6	7006.00	제 7003 호・제 7004 호 또는 제 7005 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강화 안전유리	
		7007.1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접합 안전유리	
		7007.21	--차량・항공기・우주선 또는 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8	7008.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009.91	--틀이 붙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09.92	--틀이 붙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0		유리로 만든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10	-앰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0.2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전등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1.20	-음극선관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 7010 호나 제 7018 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유리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28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37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 또는 주방용 유리제품(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42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유리제품	
		7013.91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4	7014.00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 7015 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015.1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쉘(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7		실험실용・위생용 또는 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1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7.20	-선팽창계수가 섭씨 0 도에서 300 도의 범위 내에서 1 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 또는 반귀석과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및 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018.10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 또는 반귀석과 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8.20	-지름이 1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슬리버(sliver)・로빙(roving)・실 및 단연사	
		7019.11	--단연사(길이가 50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12	--로빙(rov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제품	
		7019.31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32	--얇은 시트(sheet)(보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40	-로빙(roving) 직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직물	
		7019.51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52	--폭이 30 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 제곱미터당 중량이 250 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 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0.20	7020.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4 부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1.10	-천연진주	완전생산기준
			-양식진주	
		7101.21	--가공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7101.22	--가공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10	-선별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공업용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102.21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또는 갈린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갠 것 또는 갈린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3.10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	--루비·사파이어 및 에메랄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3.9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4		합성 또는 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	
		7104.10	-압전기용 석영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4.20	-기타(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	-다이아몬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106.91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6.92	--반가공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7	7107.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13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8.20	-화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09	7109.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 또는 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티늄(platinum)	
		7110.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팔라듐(palladium)	
		7110.2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로듐(rhodium)	
		7110.3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이리듐(iridium)·오스뮴(osmium) 및 루테늄(ruthenium)	
		7110.4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1	7111.00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은 또는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3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112.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2.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3.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113.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4.19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4.20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5.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의 제품	
		7116.10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6.20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1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7.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8		주화	
		7118.1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11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72			**철과 강**	
	72.01		선철(銑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1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1.2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 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1.50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		합금철(ferro-alloy)	
			-페로망간	
		7202.1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2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 분의 55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3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4 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5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70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8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02.91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92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순도가 최저 전 중량의 100 분의 99.94 인 철[럼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21	--스테인리스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3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204.41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 및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4.5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5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7205.10	-알갱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가루	
		7205.21	--합금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제 7203 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잉곳(ingo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7207.11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7.12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7.2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7208.25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26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27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36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37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208.38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39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4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5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5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5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5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1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16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1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1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25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26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27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28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11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12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210.2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함석판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3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41	--물결 모양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5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7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13	--4 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 밀리미터 이상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14	--기타(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23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25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 또는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2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3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40	-페인팅한 것·바니시한 것 또는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5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2.60	-클래드(clad)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3.2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13.91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단조(鍛造)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2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또는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30	-기타[쾌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14.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	-쾌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5.5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10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	--엘(L)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22	--티(T)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	--유(U)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32	--아이(I)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33	--에이치(H)형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40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5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6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16.91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7.2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7.3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primary form)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primary form)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18.91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1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1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7219.21	--두께가 1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22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 10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23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24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9.3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2	--두께가 3 밀리미터 이상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3	--두께가 1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3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4	--두께가 0.5 밀리미터 이상 1 밀리미터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35	--두께가 0.5 밀리미터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19.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20.11	--두께가 4.75 밀리미터 이상인 것	4 단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세번변경기준(제 72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12	--두께가 4.75 밀리미터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2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2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1	7221.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11	--횡단면이 원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2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3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2.4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3	7223.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primary form)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primary form)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30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40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50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25.91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225.92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방향성(方向性)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2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226.91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92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	-고속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7.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	-고속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20	-실리코망간강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30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抜)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40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50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60	-그 밖의 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7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8.80	-중공(中空)드릴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20	-실리코망간강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2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	-널말뚝(sheet pil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1.20	-형강(形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첵레일(check-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스타이)·이음매판(fish-plate)·좌철(座鐵)·좌철(座鐵)쐐기·밑판(sole plate)(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침판(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료로 한정한다]	
		7302.10	-레일(rai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3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4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3	7303.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라인파이프	
		7304.11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튜빙 및 드릴파이프	
		7304.22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23	--그 밖의 드릴파이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24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31	--냉간인발(冷間引抜)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41	--냉간인발(冷間引抜)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30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51	--냉간인발(冷間引抜)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라인파이프	
		7305.11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12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2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31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 또는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라인파이프	
		7306.1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정용이나 가스정용의 케이싱과 튜빙	
		7306.21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3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4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50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7306.61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69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2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2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 및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307.91	--플랜지(flan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2	--나선가공한 엘보(elbow)·벤드(bend) 및 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3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 및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	-다리와 교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20	-탑과 격자주(格子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3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40	-비계(飛階)・차단기・지주 또는 갱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09	7309.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1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용적이 50 리터 미만인 것	
		7310.21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1	7311.00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로프・케이블・엷은 밴드・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연선(stranded wire)・로프 및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3	7313.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銑), 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 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그릴・망 및 울타리, 철강의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14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20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14.31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7314.41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42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4.5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	--롤러체인(roller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12	--그 밖의 체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19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20	-스키드체인(skid cha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체인	
		7315.81	--스터드링크(stud-li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82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6	7316.00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7	7317.00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 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	--코치 스크루(coach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2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3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4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5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6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21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2	--그 밖의 와셔(wash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3	--리벳(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4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돗바늘・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40	-안전핀과 그 밖의 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1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판상 스프링과 그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20	-나선용 스프링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레인지(range)・화상(火床)・조리기(중앙난방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바비큐(barbecue)・화로・가스풍로・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12	--액체연료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1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구	
		7321.81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82	--액체연료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89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	--주철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	철강의 울,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타	
		7323.91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가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2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3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랑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목욕통	
		7324.21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4.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타	
		7325.9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11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2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32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			**구리와 그 제품**	
	74.01	7401.00	구리의 매트(mat), 시멘트동(침전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2	7402.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정제한 구리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12	--와이어바(wire-ba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13	--빌릿(bil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합금	
		7403.21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22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3.29	--그 밖의 구리합금[제 7405 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4	7404.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5	7405.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6.20	-층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8		구리의 선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8.22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15 밀리미터를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7409.2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주석 합금(청동)으로 만든 것	
		7409.31	--코일 모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40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09.90	-기타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 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0.1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뒷면을 붙인 것	
		7410.2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0.22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21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1.22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7412.1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2.2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3	7413.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408 호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7415.21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8.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10	-체인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419.91	--주조・주형・압착 또는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41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1.10	-니켈의 매트(m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1.20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2		니켈의 괴(塊)	
		7502.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2.20	-니켈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3	7503.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4	7504.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봉과 프로파일(profile)	
		7505.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5.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선	
		7505.2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5.2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6		니켈의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7506.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6.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7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관(管)	
		7507.11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7.12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7.20	-관(管) 연결구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8		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	
		7508.1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 및 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508.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塊)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1.20	-알루미늄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2	7602.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10	-비(非)층상조직인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3.20	-층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알루미늄 합금	
		7604.21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4.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6.05		알루미늄의 선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5.1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5.21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1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606.91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6.9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607.11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7.20	-뒷면을 붙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8.2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09	7609.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 9406 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봉・프로파일(profile)・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610.1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1	7611.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10	-연질의 튜브형 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3	7613.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614.10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5 호 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제 7605 호 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615.10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5.20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10	-못・압정・스테이플(제 83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616.91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61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			**납과 그 제품**	
	78.01		납의 괴(塊)	
		7801.10	-정제한 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7801.91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2	7802.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4		납의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납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804.11	--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4.20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8.06	7806.00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괴(塊)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11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1.12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99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1.20	-아연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2	7902.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3		아연의 더스트(dust)·가루 및 플레이크(flake)	
		7903.10	-아연 더스트(du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79.04	7904.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5	7905.00	아연의 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79.07	7907.00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塊)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1.20	-주석 합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2	8002.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3	8003.00	주석의 봉・프로파일(profile) 및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0.07	8007.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101.94	--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1.96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1.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10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102.94	-- 몰리브데늄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5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프로파일(profile)·판·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6	--선(線)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7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 탄탈륨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3.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마그네슘의 괴(塊)	
		8104.11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99.8 이상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30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ming) 및 알갱이, 가루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4.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5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5.2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5.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1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6	8106.00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20	-카드뮴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7.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8.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20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09.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1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1	8111.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 븀(컬럼븀)・레늄 및 탈륨과 이 금속들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베릴륨	
		8112.12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13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크로뮴	
		8112.21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2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탈륨	
		8112.51	--괴(塊),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52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112.92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1.13	8113.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들의 부분품**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울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공구	
		8201.10	-가래와 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30	-곡괭이・픽스(picks)・괭이 및 쇠스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4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5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6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1.90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수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 또는 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	-수동식 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20	-띠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3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40	-체인톱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톱날	
		8202.91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 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2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3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3.40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	
		8204.11	--조절할 수 없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4.12	--조절할 수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4.2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5.10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20	-망치(hammer, sledge hamm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30	-목재 가공용 대패·끌·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4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	--가정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60	-블로램프(blow lam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70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5.90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2.06	8206.00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 또는 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8207.13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20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30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 또는 펀칭(punch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40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50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60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70	-밀링(mill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207.80	-터닝(turning)용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7.90	-그 밖의 호환성 공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금속 가공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20	-목재 가공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3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40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09	8209.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0	821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 8208 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1.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타	
		8211.91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2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3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4	--칼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1.9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2.10	-면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2.2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2.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3	8213.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4.2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215.1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5.2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215.9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21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 또는 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10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2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301.3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40	-그 밖의 자물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5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6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1.7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	-경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20	-카스터(casto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3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8302.41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42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5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2.60	-자동도어 폐지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3	8303.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4	8304.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 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서신용 클립・레터코너(letter corner)・서류용 클립・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예: 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의 것)	
		8305.1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5.2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6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1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306.21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6.3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7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	-철강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7.90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구슬과 스팽글(spangle)	
		8308.10	-훅(hook)・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2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8.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9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 및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0	83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 9405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 또는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3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납접 또는 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3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6 부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및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및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			**원자로, 보일러, 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	-원자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1.2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1.3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1.40	-원자로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12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 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19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2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3		중앙난방용 보일러(제 8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	-보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10	-제 8402 호나 제 8403 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2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5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405.10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		증기터빈	
		8406.10	-선박추진용 터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터빈	
		8406.81	--출력이 40 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82	--출력이 40 메가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	-항공기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	--아웃보드(outboard) 모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엔진	
		8407.31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2	--실린더용량이 5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3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를 초과하고 1,000 시시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7.90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08.10	-선박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20	-제 87 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8.90	-그 밖의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		제 8407 호나 제 8408 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10	-항공기 엔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		수력터빈·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	-동력이 1,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0.12 호 및 제 8410.13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12	-동력이 1,000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10,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0.11 호 및 제 8410.13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13	-동력이 10,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소호 제 8410.11 호 및 제 8410.12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0.90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터보제트	
		8411.11	--추진력이 25 킬로뉴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12	--추진력이 25 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터보프로펠러	
		8411.21	--출력이 1,1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22	--출력이 1,1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가스터빈	
		8411.81	--출력이 5,000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82	--출력이 5,000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11.91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10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8412.2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8412.31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액체엘리베이터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1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20	-수지식 펌프(소호 제 8413.11 호나 제 8413.19 호의 것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40	-콘크리트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50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60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70	-그 밖의 원심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펌프,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82	--액체엘리베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13.91	--펌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3.92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10	-진공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30	-냉장 설비용 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40	-예인용 바퀴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팬	
		8414.51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 또는 지붕용 팬(출력이 125 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60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 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15.10	-창형이나 벽형(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20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15.81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2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83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20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3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2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8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가정형 냉장고	
		8418.21	--압축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3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4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 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50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 열펌프	
		8418.61	--열펌프(제 8415 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18.91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 또는 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 8514 호의 노(爐)・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8419.11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20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건조기	
		8419.31	--농산물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19.32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 또는 판지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40	-증류기나 정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50	-열교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60	-기체 액화용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기	
		8419.81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20.91	--실린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	--크림분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2	--의류탈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1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2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1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21.9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접시세척기	
		8422.11	--가정형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2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30	-병・깡통・상자・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40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나 검사기를 포함한다], 각종 저울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추	
		8423.10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 가정형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20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30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8423.81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2	--최대 측정용량이 3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5,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3.90	-각종 저울 추, 저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 또는 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20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3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구	
		8424.81	--농업용이나 원예용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1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윈치(winch), 캡스턴(capstan)	
		8425.31	--전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잭(jack),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2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hoist)(액압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5.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및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교각(橋脚)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 및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1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2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20	-타워크레인(tower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30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8426.41	--타이어가 달린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계	
		8426.91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7.10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20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7.90	-그 밖의 작업트럭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 또는 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8428.10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20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8428.31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2	--그 밖의 버켓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3	--그 밖의 벨트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40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60	-텔레페릭(teleferic)·의자 양하기·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8.90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앵글도저(angledozer)·그레이더(grader)·레벨러(leveller)·스크래퍼(scraper)·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엑스커베이터(excavator)·셔블로더(shovel loader)·탬핑머신(tamping machine) 및 로드롤러(road roller)	
			-불도저(bulldozer) 및 앵글도저(angledozer)	
		8429.11	--무한 궤도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2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30	-스크래퍼(scrap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40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 엑스커베이터(excavator)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셔블로더(shovel loader)	
		8429.51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2	--360 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2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		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 또는 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 또는 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430.1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2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8430.3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8430.41	--자주식(自走式)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5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8430.61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0.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		제 8425 호부터 제 8430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제 8425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20	-제 8427 호의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428 호의 기계의 것	
		8431.31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426 호・제 8429 호 또는 제 8430 호의 기계의 것	
		8431.41	--버켓(bucket)・셔블(shovel)・그랩(grab)과 그립(grip)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2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3	--소호 제 8430.41 호나 제 8430.49 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8432.10	-플라우(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8432.21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30	-파종기・식부기(植付機) 및 이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40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제 8437 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8433.11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2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3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4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수확기, 탈곡기	
		8433.51	--수확·탈곡 겸용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2	--그 밖의 탈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3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5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60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34.10	-착유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20	-낙농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한 기계	
		8435.10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가금(家禽) 사육용 또는 양봉용 기계(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36.91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종자・곡물 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또는 선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		식음료의 조제 또는 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10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티 또는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20	-과자・코코아 또는 초콜릿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30	-설탕 제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40	-양조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50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60	-과실·견과 또는 채소의 조제용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또는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8439.10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20	-종이나 판지의 제조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30	-종이나 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39.91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3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20	-종이백·봉지 또는 봉투 제조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30	-카톤(carton)·박스·케이스·튜브·드럼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40	-제지용 펄프·종이나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80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 및 장비(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기계류·장치 및 장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40	-위의 기계류·장치 또는 장비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2.5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43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2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 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 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않은 상태의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3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4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5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6	--곡면인쇄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7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1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 또는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2	--기타(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으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과 부속품	
		8443.91	--제 8442 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4	8444.00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늘림(drawing)용·텍스처(texture)용 또는 절단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합사기(合絲機) 또는 연사기(撚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와 제 8446 호나 제 8447 호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방적준비기계	
		8445.11	--카드기(car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2	--코밍기(comb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3	--연조기나 조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20	-방적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30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撚絲機)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40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		직기(직조기)	
		8446.10	-폭이 30 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형으로 한정한다)	
		8446.21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6.30	-폭이 3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		편직기, 스티치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및 짐프사(gimped yarn)・튈(tulle)・레이스・자수천・트리밍(trimming)・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 및 터프팅(tufting) 기계	
			-원형 편기	
		8447.11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12	--실린더 지름이 165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47.20	-횡(橫) 편직기, 스티치 본딩기(stitch-bond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예: 도비(dobby)기・자카드기・자동정지기・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예: 스핀들 및 스핀들 플라이어・침포・코움(comb)・방사니플・셔틀・종광(heald) 및 종광 프레임・메리야스용 바늘]	
			-제 8444 호・제 8445 호・제 8446 호 또는 제 8447 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11	--도비(dobby)기와 자카드기,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복사용・천공용 또는 조립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20	-제 8444 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445 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	--침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2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3	--스핀들・스핀들 플라이어・스피닝 링 및 링트래블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42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447 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바늘과 그 밖의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49	8449.00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 모자 제조용 형(型)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1 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	--완전자동 세탁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2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0.20	-1 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 또는 침지(沈漬)용 기계류[제 8450 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	
		8451.10	-드라이클리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건조기	
		8451.21	--1 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30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40	-세탁기・표백기 또는 염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5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80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		재봉기(제 8440 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 및 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	-가정형 재봉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재봉기	
		8452.21	--자동식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30	-재봉기용 바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2.9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 또는 가공기계, 원피나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유피(柔皮)기 또는 가공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2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80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4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8454.10	-전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2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30	-주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	-관 압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압연기	
		8455.21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22	--냉간(冷間) 압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30	-압연기용 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5.90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워터제트 절단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56.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2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30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및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457.10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2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7.3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수평 선반	
		8458.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선반	
		8458.9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보링(boring)·밀링(milling)·나선가공 또는 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 8458 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8459.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8459.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40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5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6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59.70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 또는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 8461 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평면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 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8460.1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연삭기(축 고정정밀도가 0.01 밀리미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8460.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40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 또는 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	-쉐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3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40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또는 기어완성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50	-톱기계나 절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 또는 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 또는 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62.10	-단조기(鍛造機)·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굽힘기·접음기·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2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3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펀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	--수치제어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62.91	--액압 프레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63.10	-드로우벤치(draw-bench)[봉・관・프로파일(profile)・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20	-나사 전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30	-선 가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	
		8464.10	-톱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20	-연마기나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		목재・코르크・뼈・경질 고무・경질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용 공작기계(네일용・스테이플용・접착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65.91	--톱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2	--평삭기・밀링머신(milling machine)이나 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3	--연삭기・샌딩머신(sanding machine)이나 광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4	--굽힘기나 조립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5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6	--스플리팅(splitting)기・슬라이싱(slicing)기나 박피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		제 8456 호부터 제 8465 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1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20	-가공용 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30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466.91	--제 8464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66.92	--제 8465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3	제 8456 호부터 제 8461 호까지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6.94	--제 8462 호나 제 8463 호의 기계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압축공기식의 것	
		8467.11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동기를 갖춘 것	
		8467.21	--각종 드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2	--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공구	
		8467.81	--체인톱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67.91	--체인톱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2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이 가능한지에 상관없으며 제 8515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8.10	-수지식 취관(吹管)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20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69	8469.00	타자기(제 8443 호의 프린터기는 제외한다), 워드프로세싱머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전자계산기	
		8470.21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30	-그 밖의 계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50	-금전 등록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 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와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49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 8471.41 호나 제 8471.49 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60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70	-기억장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8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1.90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나 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나 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	-등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30	-우편물의 분류기나 접음기 또는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함기나 실링기 그리고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10	-제 8469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8470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	--소호 제 8470.10 호・제 8470.21 호나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30	-제 8471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40	-제 8472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3.50	-제 8469 호부터 제 8472 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나 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나 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1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나 세척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20	-파쇄기나 분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혼합기나 반죽기	
		8474.31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2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80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나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1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나 밸브 또는 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21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이나 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계	
		8476.81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10	-사출 성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20	-압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30	-취입 성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4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성형기	
		8477.51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80	-그 밖의 기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10	-기계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10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3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그리고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4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50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60	-증발식 에어쿨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탑승교	
		8479.71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기	
		8479.81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2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sifting machine)・균질기・유화기나 교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7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10	-금속 주조용 주형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20	-주형 베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30	-주형 제조용 모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8480.41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50	-유리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6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71	--사출식이나 압축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0.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감압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20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30	-체크(논리턴)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40	-안전밸브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80	-그 밖의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볼베어링(ball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482.2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3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4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5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8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482.91	--볼・니들과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10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과 크랭크(cra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2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30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40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5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60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3.90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10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2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나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기,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20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	-이 류의 주 제 9 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1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48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 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그 밖의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8501.3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2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고 3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34	--출력이 3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40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8501.51	--출력이 75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2	--출력이 750 와트를 초과하고 75 킬로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53	--출력이 75 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교류 발전기	
		8501.6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750 킬로볼트암페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이하인 것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1.64	--출력이 7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502.11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2	--출력이 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375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13	--출력이 375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20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발전세트	
		8502.31	--풍력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2.40	-회전변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3	8503.00	부분품(제 8501 호나 제 8502 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04.10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유입식 변압기	
		8504.21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용량이 65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0,0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용량이 10,0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변압기	
		8504.31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용량이 1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16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용량이 16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00 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용량이 500 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정지형 변환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그 밖의 유도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	--금속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20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브레이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5.9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		일차전지	
		8506.10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3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40	-산화은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50	-리튬으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60	-에어징크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06.80	-그 밖의 일차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2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30	-니켈-카드뮴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40	-니켈-철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5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80	-그 밖의 축전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7.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		진공청소기	
			-전동기를 갖춘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08.11	--출력이 1,500 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 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그 밖의 진공청소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08 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이나 채소즙 추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80	-그 밖의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		면도기・이발기와 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10	-면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20	-이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30	-모발제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이나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와 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	-점화플러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20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 마그네틱 플라이휠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30	-배전기, 점화코일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40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그 밖의 발전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 8539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12.20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30	-음향신호용 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4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12 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13.10	-전등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10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20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식(dielectric loss) 노(爐)와 오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4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4.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이나 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이나 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	
			-땜질용이나 납땜용기기	
		8515.11	--납땜용 인두와 건(gun)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		전기식의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와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 8545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전기식의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8516.21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나 손 건조기	
		8516.31	--헤어드라이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2	--그 밖의 이용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33	--손 건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40	-전기다리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60	-그 밖의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와 로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71	--커피나 차를 끓이는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2	--토스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전열용 저항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이나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이나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 8443 호・제 8525 호・제 8527 호나 제 8528 호의 송신용이나 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18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음성이나 영상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이나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이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	--기지국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 및 송신용 또는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7.7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18.21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가청주파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음향증폭세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30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50	-전화응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기	
		8519.81	--자기식・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1.10	-마그네틱 테이프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 8519 호나 제 8521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22.10	-픽업 카트리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 37 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자기식 매체	
		8523.21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광학식 매체	
		8523.41	--기록이 안 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반도체 매체	
		8523.51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스마트카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3.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23.8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기기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50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5.80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8526.10	-레이더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526.91	--항행용 무선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6.92	--무선원격조절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12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3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527.91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2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음극선관 모니터	
		8528.4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모니터	
		8528.5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프로젝터(projector)	
		8528.61	--제 8471 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 또는 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71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8.73	--기타(단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 8525 호부터 제 8528 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2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이나 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기기(제 8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 다만, 제 8512 호나 제 8530 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2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8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	
		8532.10	-고정식 축전기로 50/60 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 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8532.21	--탄탈륨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2	--알루미늄 전해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3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4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5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30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세트) 축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콤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533.2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8533.31	--용량이 20 와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33.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40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4	8534.00	인쇄회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이나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퓨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자동차단기	
		8535.21	--전압이 72.5 킬로볼트 미만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30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40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이나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8536.10	-퓨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20	-자동차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3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계전기(繼電器)	
		8536.41	--전압이 6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50	-그 밖의 개폐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램프홀더・플러그와 소켓	
		8536.61	--램프홀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70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이나 케이블용 커넥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6.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5 호나 제 8536 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 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 8517 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7.20	-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 8535 호・제 8536 호나 제 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 8537 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8539.10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제외한다)	
		8539.21	--텅스텐 할로겐의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2	--기타(전력이 200 와트 이하 전압이 1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2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	--아크램프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4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3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		열전자관・냉음극관이나 광전관[예: 진공관 또는 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수은아크정류관・음극선관・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8540.11	--천연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12	--단색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2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40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0.4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60	-그 밖의 음극선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마이크로웨이브관[예: 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klystron)·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	--자전관(magnetron)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7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관	
		8540.81	--수신관이나 증폭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8540.91	--음극선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0.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	--전력 낭비율이 1 와트 미만인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과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50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60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		전자집적회로	
			-전자집적회로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과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2	--메모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3	--증폭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3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10	-입자가속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20	-신호발생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30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이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그 밖의 기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권선(捲線)용 전선	
		8544.11	--구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2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이나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60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 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4.70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전극	
		8545.11	--노(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20	-브러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5.46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8546.10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20	-도자제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 8546 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1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2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10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54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7 부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1.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1.2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 탄수차(炭水車)	
		8602.10	-디젤 전기기관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4	8604.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와 궤도검사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5	8605.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 8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30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 8606.10 호의 것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제외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606.91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92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 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보기(bogie)·비셀보기(bissel-bogie)·차축·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8607.11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12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19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1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30	-훅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기타	
		8607.91	--기관차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7.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8	8608.00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이나 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이나 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6.09	8609.00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트랙터(제 8709 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보행운전형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20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30	-무한궤도식 트랙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 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기타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 8702 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차량(왕복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고 1,5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3,0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31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 시시를 초과하고 2,500 시시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	--실린더용량이 2,5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기타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2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고 20 톤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4.23	총중량이 20 톤을 초과하는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31	--총중량이 5 톤 이하인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4.32	--총중량이 5 톤을 초과하는 것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4.90	-기타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	
		8705.10	-기중기차(crane lorry)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2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30	-소방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4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6	8706.00	엔진을 갖춘 섀시(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8707.10	제 8703 호의 차량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완충기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안전벨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A. 기어박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B.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과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A.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자축과 비구동 자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B.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8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방열기와 그 부분품	A. 방열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B.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그 부분품	A.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B.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클러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과 운전박스, 그 부분품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		공장・창고・부두나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차량	
		8709.11	--전기식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09.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0	871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20	-실린더용량이 50 시시를 초과하고 25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30	-실린더용량이 250 시시를 초과하고 5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40	-실린더용량이 500 시시를 초과하고 800 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50	-실린더용량이 800 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2	8712.00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1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 8711 호부터 제 8713 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20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714.91	--프레임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2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3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와 프리휠(free-wheel) 스프로켓 휠(sprocket-wheel)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4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5	--안장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6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4.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5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이나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2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4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80	-그 밖의 차량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716.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	8801.00	기구・비행선, 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suborbital)과 우주선 운반로켓	
			-헬리콥터	
		8802.11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12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2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30	-자체 중량이 2,000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00 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40	-자체 중량이 15,00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2.6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과 서보비틀(suborbital)과 우주선 운반로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		부분품(제 8801 호나 제 8802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	-프로펠러와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2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4	8804.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o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10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및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8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			선박과 수상구조물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20	-탱커(tank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30	-냉동선(소호 제 890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1.90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2	8902.00	어선,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		요트 및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8903.91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2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3.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4	8904.00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艀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	-준설선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		그 밖의 선박(군함과 노를 젓는 보트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군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부잔교(landing stage)・부표와 수로부표]	
		8907.1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 퍼센트 이상일 것
		89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89.08	8908.00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8 부 :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 이들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 8544 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2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30	-콘택트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40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5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대물렌즈	
		9002.11	--카메라용・영사기용이나 사진 확대기용이나 사진 축소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20	-필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	
			-테와 장착구	
		9003.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1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선글라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쌍안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5.90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 8539 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10	-인쇄제판용 사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30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이나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40	-즉석인화 사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사진기	
		9006.51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 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52	--기타(폭이 35 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53	--기타(폭이 35 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61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	--카메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007.10	-촬영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20	-영사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과 부속품	
		9007.91	--카메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7.92	--영사기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8		투영기,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	
		9008.50	-프로젝터, 확대기와 축소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0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0.10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5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60	-영사용 스크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이나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1.10	-입체현미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20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이나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80	-그 밖의 현미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9012.10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10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 16 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2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3.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10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2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8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수로측량기기·해양측량기기·수리계측기기·기상관 측기기나 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거리측정기	
		9015.10	-거리측정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2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30	-수준기(水準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40	-사진측량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6	9016.00	감량(感量) 50 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나 계산용구(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20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나 계산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30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7.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심전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4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2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2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41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8.50	-안과용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018.9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19.20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0	902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및 결함이나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1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의치와 치과용품	
		9021.21	--의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9021.31	--인조관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4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5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3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4	--기타(내과용・외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19	--그 밖의 용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알파선・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022.29	--그 밖의 용도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30	-엑스선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2.90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3	9023.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	
		9024.10	-금속재료 시험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4.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5.11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5.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 9014 호・제 9015 호・제 9028 호・제 9032 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10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20	-압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6.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나 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2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30	-분광계・분광광도계와 분광사진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027.50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7.90	-마이크로톰(microtome),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		기체・액체나 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기체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20	-액체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30	-전기용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8.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 9014 호나 제 9015 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9029.10	-적산(積算)회전계・생산량계・택시미터・주행거리계・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2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29.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 9028 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2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전압·전류·저항이나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1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32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33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39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기	
		9030.82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84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0.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윤곽 투영기	
		9031.10	-균형시험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20	-테스트벤치(Test bench)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41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4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80	-그 밖의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1.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20	-매노우스타트(manosta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기기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032.81	--액압식이나 공기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8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2.90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0.33	9033.00	제 90 류의 기계・기기・장치나 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1.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1.91	--전기 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101.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 9101 호의 것은 제외한다)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21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2.91	--전기 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2.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 91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3.10	--전기 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1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4	9104.00	차량용・항공기용・우주선용・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		그 밖의 클록(clock)	
			-자명종시계	
		9105.11	--전기 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벽시계	
		9105.21	--전기 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105.91	--전기 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기록하거나 알리는 기기[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타임레코더(time-recorder)]	
		9106.1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더(time-recorder)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1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7	9107.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전기구동식	
		9108.11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12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20	--자동권(自動捲)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10	--전기구동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휴대용 시계의 것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2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19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0.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80	-그 밖의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2		클록(clock) 케이스 및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케이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2.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		휴대용 시곗줄·휴대용 시계밴드와 휴대용 시계팔찌 및 이들의 부분품	
		9113.1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2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1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30	-문자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40	-지판과 브리지(bridg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11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하프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1.20	-그랜드 피아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2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바이올린・하프)	
		9202.10	-활을 사용하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5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아코디언・클라리넷・트럼펫・백파이프)[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9205.10	-금관악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6	9206.00	타악기[예: 북・목금・심벌・캐스터네츠・마라카스(maracas)]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기타・아코디언)	
		9207.10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8		뮤지컬박스・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뮤지컬소(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208.10	-뮤지컬박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디스크와 롤), 박절기(metronom)・소리굽쇠 및 각종 조율관(調律管)	
		9209.30	-악기용 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209.91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2	--제 9202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4	--제 9207 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209.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19 부 :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피스톨(pistol)과 제 9307 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9301.10	-포병 무기(예: 평사포・곡사포와 박격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1.2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3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2	9302.00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 9303 호 · 93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과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과 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3.10	-총구장전 화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20	-그 밖의 스포츠용 · 수렵용이나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30	-그 밖의 스포츠용 · 수렵용이나 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4	9304.00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 · 공기총 · 가스총 · 경찰봉)(제 93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 9301 호부터 제 9304 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10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20	-산탄총과 라이플(rifle)의 것(제 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305.91	--제 9301 호의 군용 무기의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과 그 밖의 총포탄 및 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	--탄약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30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6.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3.07	9307.00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0 부 : 잡품				
94			**가구, 침구·메트리스·메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 94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	-항공기용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20	-차량용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30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40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51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6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71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7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80	-그 밖의 의자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1.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2.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20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30	-사무실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40	-주방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50	-침실용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60	-그 밖의 목제가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70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버드나무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9403.81	--대나무나 등나무로 만든 것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89	--기타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와 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1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매트리스	
		9404.21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29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30	-침낭(sleeping bag)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와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이나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20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나 마루스탠드 램프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30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40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5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60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분품	
		9405.91	--유리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5.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4.06	9406.00	조립식 건축물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			**완구·게임용구 및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	9503.00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완구, 인형용 차, 인형,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20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30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40	-오락용 카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50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 9504.30 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4.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이나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11	--스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12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21	--세일보드(sailboard)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9506.31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32	--골프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3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40	-탁구용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51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5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	--론테니스(lawn-tennis) 공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62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6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7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506.91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나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6.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 9208 호나 제 97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7.10	-낚싯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20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7.30	-낚시 릴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507.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순회극장 용품	
		9508.1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508.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와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2	9602.00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나 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 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나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와 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1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30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40	-페인트용・디스템퍼(distemper)용・바니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 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5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나 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3.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4	9604.00	수동식 체와 어레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5	9605.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이나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와 프레스스터드(press-stud)・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1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너(snap fastener)와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단추	
		9606.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2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2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6.3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9607.11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7.2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 96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볼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2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30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5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6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9608.91	--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8.9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		연필(제 9608 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목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2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09.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0	9610.0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1	9611.00	날짜 도장·봉합용 스탬프나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9612.10	-리본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2.20	-잉크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		담배 라이터와 그 밖의 라이터(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라이터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20	-포켓형 라이터(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80	-그 밖의 라이터	6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3.90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4	9614.00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와 시가홀더나 시가렛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5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9615.19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5.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및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6.20	화장용 분첩과 패드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7	9617.00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8	9618.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6.19	9619.00	위생 타월(패드)과 탐폰(tampon),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제 21 부 :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1		회화・데생과 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 4906 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회화・데생과 파스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1.90	-기타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2	9702.00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와 석판화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 2012)	품목명	적용가능한 원산지 규정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3	9703.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4	9704.00	우표나 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 4907 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5	9705.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이나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97.06	9706.00	골동품(제작 후 100 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4 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1. 원산지 부여

   가. 수출을 위하여 재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제3.7조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품으로 재수입되고, 제7항에 언급된 목록과 이후의 개정에 반영된 제3.5조에 언급된 "특정 물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비원산지 투입의 총 가치[11] 는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관련 규정은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부여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2. 제3.5조의 이행을 위한 특별 절차

   가.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이 장의 제2절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12]에 의하여 발급된다.

   나.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은 그 상품에 제3.5조가 적용됨을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한다.

   다. 이 부속서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는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라. 한국은 이 장 제2절의 관련 조에 따라 베트남 관세 당국이 제3.5조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3.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가. 한쪽 당사국이 제3.5조가 적용되는 상품이 그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양과 그러한 조건 하에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의 증가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그러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제3.5조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나. 가호에 따라 제3.5조의 적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은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2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제안된 정지와

[11]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란 운송비를 포함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역외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 및 누적된 그 밖의 비용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12] 한국의 경우, 이 부속서의 목적상, "발급 당국"은 한국의 관세 당국을 말한다.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다. 가호에 언급된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정지 조치를 한 당사국이 그 정지가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어야 한다.

라.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가호에 따른 제3.5조의 적용의 정지는 다른 쪽 당사국에 2개월 사전통보 없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당사국이 가호에 언급된 결정을 내리고 나호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관련 당사국은 제3.5조의 적용을 다음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1) 심각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

2) 사전 협의에 대한 의무가 없다.

3) 정지의 기간 또는 빈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4) 보상의 의무가 없다.

4. 연례 검토

가.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제3.5조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 수출 당사국은 전년도 일년 동안 수입 당사국에 대한 제7항에 나열된 각 상품의 수출 통계를 포함하여, 제3.5조의 운영에 대한 간략한 사실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2) 수입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락되지 않은 원산지 증명서의 건수 및 거부 이유를 포함하여, 특혜관세대우 신청에 대한 거부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한다.

나. 공동위원회는 제3.5조의 이행과 운영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 정보를 수출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다. 공동위원회는 가호에 규정된 검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동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5. 분쟁해결

이 부속서의 해석, 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분쟁도 제15장(분쟁해결)에 규정된 절차와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제7.1조(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를 포함하여 이 협정하의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상품 목록

다음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이다. 한쪽 당사국은 이 항에 언급된 목록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은 이를 신의성실에 따라 고려한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채택된다.

번호	소호 (2012)	품목명 (소호)
1	121221	식용
2	321310	세트상의 회구류
3	3407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로 알려진 조제품[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또는 판 모양・말굽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	350610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	391740	연결구류
6	39231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7	39232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8	39235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9	392690	기타
10	401699	기타
11	420229	기타
12	48194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13	520839	그 밖의 직물
14	550932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15	560811	제품으로 된 어망
16	580421	인조섬유로 만든 것
17	5810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18	6102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19	6102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0	610711	면으로 만든 것
21	610791	면으로 만든 것
22	610821	면으로 만든 것

번호	소호 (2012)	품목명 (소호)
23	610822	인조섬유로 만든 것
24	610891	면으로 만든 것
25	610910	면으로 만든 것
26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7	611011	양모로 만든 것
28	611120	면으로 만든 것
29	611130	합성섬유의 것
30	6115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1	6115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2	611594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33	611595	면으로 만든 것
34	6115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35	6115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6	6201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37	6201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38	6201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39	62021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0	620213	인조섬유로 만든 것
41	620293	인조섬유로 만든 것
42	6203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43	6203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4	62033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5	620333	합성섬유의 것
46	6203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7	620342	면으로 만든 것
48	62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49	62043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0	6204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1	62045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2	620462	면으로 만든 것
53	620463	합성섬유로 만든 것
54	620520	면으로 만든 것
55	6205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	620640	인조섬유로 만든 것
57	6206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8	620711	면으로 만든 것
59	62071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0	6207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번호	소호 (2012)	품목명 (소호)
61	620892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	6211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63	621600	장갑류
64	630231	면으로 만든 것
65	630493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6	630532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67	630533	기타[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8	630612	합성섬유로 만든 것
69	630790	기타
70	650700	모자용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 및 턱끈
71	6912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72	691490	기타
73	732393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74	761699	기타
75	84133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76	842123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77	848490	기타
78	8501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9	850300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0	851240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 및 제무기(demister)
81	851290	부분품
82	851610	전기식의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83	851660	그 밖의 오븐, 쿠커・조리판・보일링링・그릴러 및 로스터
84	851690	부분품
85	851770	부분품
86	852990	기타
87	853669	기타
88	853670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 또는 케이블용 커넥터
89	853890	기타
90	853990	부분품
91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 또는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92	854442	접속자가 부착된 것
93	870892	소음기(머플러) 및 배기관, 그 부분품

번호	소호 (2012)	품목명 (소호)
94	870894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과 운전박스, 그 부분품
95	870899	기타
96	940510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또는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
97	9405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8	940599	기타
99	96082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100	960910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첨부 1

원본(제2사본/제3사본)

1. 송하인(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	참조번호 한국-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서식 KV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참조
2. 수하인(수하인의 이름, 주소, 국가)	
3.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항일 선명/편명 적출항	4. 담당자란 ☐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관세대우 ☐ 특혜관세대우 비부여 (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입국의 서명권자의 서명

5. 품목번호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HS번호를 포함합니다)	8. 원산지 기준(뒷면의 주해를 참조합니다)	9.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RVC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FOB를 기재합니다)	10. 송장 번호 및 일자

11.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상기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국가) 그리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 ..... 장소 및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12.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 장소 및 일자, 서명 및 증명 기관의 관인
13. 비고	

뒷면 주해

1. 한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KVFTA)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조건: KV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 상기에 명시된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1) 목적지 국가에서 양허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된다.

2) KVFTA의 제3.8조(직접운송)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한다.

3) KVFTA의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한다.

3.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이 서식의 제8란에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서식 제11란에 이름이 기재된 수출 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 환경	제8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CTC"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RVC": 예, "RVC 45퍼센트"
– RVC + 세번변경	–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 예, "CTH + RVC 40퍼센트"
– 특정 공정	– "특정 공정"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PE"
라. 제3.5조를 충족하는 상품	"제3.5조"

4. 각 품목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탁송물의 모든 상품은 각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다른 크기의 유사한 품목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 특히 관련이 있다.

5. 상품명: 상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상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6. 본선인도가격(FOB):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RVC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9란에 FOB가격을 반영한다.

7.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수입 당사국의 번호를 말한다.

8. 수출자: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9. 담당자 기재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 표시한다.

10. 제13란의 비고:

1) 송장이 비당사국에 의하여 발급되는 경우, “비당사국 송장”이라고 기록되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 같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2) 필요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이 기록된다.

첨부 2

원본(제2사본/제3사본)
(추가면)

참조번호

5. 품목 번호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및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HS 번호를 포함합니다)	8. 원산지 기준 (뒷면 주해를 참조합니다)	9. 총 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RVC기준이 사용된 때에만 FOB를 기재합니다)	10. 송장 번호 및 일자

11. 수출자 신고	12. 증명
아래의 서명자는 상기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 (국가) 그리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 (수입국) ..... 장소 및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 장소 및 일자,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

13. 비고

제 4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4.1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영어로, 자국의 관세 법, 규정 및 일반 행정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2.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질의를 다루는 하나 이상의 질의처를 지정하거나 유지하며, 그러한 질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고자 하는 관세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사전에 공표하며, 이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4.2조
상품의 반출

1. 양자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자국의 관세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상품을 반출하도록 규정하는 절차

   나.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반출될 수 있도록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통관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하는 절차

   다. 창고 또는 그 밖의 시설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도착지점에서 상품이 반출되도록 허용하는 절차, 그리고

   라. 상품의 도착 전 또는 도착 즉시 관세, 조세 및 수수료가 결정되지 아니할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한 최종 결정 이전에 수입자가 상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 다만,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제4.3조
자동화

[1] 당사국은 수입자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조세 및 수수료의 지불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담보·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상품의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가. 세관 이용자가 전자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나. 국제 표준을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다. 국제무역 데이터의 양자 간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시스템과 호환가능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의 관세데이터모델과 WCO의 관련 권고사항 및 지침에 따른 일련의 공통적인 데이터 자료요소와 처리절차를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4.4조
위험관리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검사 활동을 고위험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저위험 상품의 통관과 이동을 간소화하는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된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5조
협력

가능한 한도 내에서, 양 당사국은 상품의 합법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약속을 확인하며, 전산화 시스템에 관한 세관 기술과 절차들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및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한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교환한다.

제4.6조
비밀유지

1. 당사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모든 비밀유지의 위반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정보는, 행정 절차 또는 후속 항소 절차에서 공개되도록 요구될 수 있는 한도 외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 또는 정부의 명시적 허락 없이 공개되지 아니 한다.

제4.7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특송화물에 대하여 적절한 세관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그 무게 또는 과세가격과 무관하게,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가. 특송화물을 위한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규정한다.

나.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특송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

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

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

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그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일정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나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2]

제4.8조
재심 및 불복청구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대하여 자국의 영역에 있는 수입자가 다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 또는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행정적 재심[3],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재심을 실시하는 당사국에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당사국이 제4.6조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4.9조
벌칙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국가 및 특혜관세 대우의 신청을 규율하는 것을 포함한 자국의 관세법, 규정 및 절차적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한 벌칙의 부과를 허용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

[2] 이 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송화물이 항공화물 운송장이나 다른 선하증권을 수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입제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한국의 경우, 이 호에 따른 행정적 재심은 대한민국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포함할 수 있다.

제4.10조
사전심사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수입자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다음의 사안에 대한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관세 당국을 통하여 서면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4]

가. 품목분류

나.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특정한 사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다.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2. 각 당사국은, 자국이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자국 관세 당국을 통하여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다만, 신청인은 당사국이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서를 발급할 때, 그 당사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서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전심사서가 발급된 날, 또는 그 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서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

4. 발급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가. 그 심사가 사실 또는 법률의 오류에 근거하였을 경우(사람에 의한 오류 포함)

나.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할 경우

다. 이 협정과 일치하는 자국의 국내 법에 변경이 있을 경우, 또는

라. 그 심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을 경우

5. 발급 당사국은 심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였던 경우에만 사전심사 결과를 소급하여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6. 각 당사국은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행정적 재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받은 대표자를 통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7.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의 비밀유지 요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 결과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한다.

제4.11조
협의

1. 각 관세 당국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대 관세 당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관련 접촉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그러한 협의가 모든 그러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실패할 경우, 요청 당사국은 그 사안을 제4.12조에 언급된 관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12조
관세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으로 구성된 관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립한다.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고 이 장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모니터링과 이행

   나.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적인 해석을 위한 통일된 지침 수립

   다. HS 전환에 기초한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규정)의 개정

   라. 필요시, 이 장 또는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이행 과정에서 품목분류, 관세평가, 역내부가가치의 계산과 관련된 사안 및 양 당사국 간의 무역 원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그 밖의 관세사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 그리고

   마. 이 장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개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합의를 도출할 것

4. 위원회는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양국 간 교대로 회합한다.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목적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양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다.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기술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는 것

제5.2조
적용범위와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양자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채택 또는 시행에 적용된다.

2. 이 장의 목적상,

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가에 포함된 정의가 적용된다.

제5.3조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기술협력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양 당사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신뢰를 획득하며, 그리고 양자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의 기술협력을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협력을 적절히 고려한다. 그러한 협력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르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국제 표준 및 국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경험교환 및 협력 강화

나. 특히 위험 분석 방법론, 질병 또는 병해충 관리 방법, 그리고 실험실 시험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

다. 동물 질병과 식물 병해충 관리에 대한 양 당사국의 역량과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의 관련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개발

라.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대한 동물 질병이나 식품안전 관련 사고의 발생 및 관련된 국내 규정과 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마. 양 당사국의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문의처 간의 협력 및 경험 교환 강화

바. 동물 질병, 식물 병해충 및 식품안전을 포함한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수행 및 그 연구 결과의 공유, 그리고

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제5.5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점검

나.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포럼 제공

다.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와 검토 수행, 그리고 필요시,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의하여 합의된 조건을 기초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술작업반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

라.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러한 조치에 관련된 규제 절차에 대하여 상호 이해 증진

마.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노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의 기술협력 확인, 논의 및 검토, 그리고

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그 밖의 기능 수행

3. 각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을 담당하는 적절한 대표들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에 의한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로 한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최소한 연 1회 또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결정된 때에 직접 회합한다. 회의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5. 양자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양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에 대한 상호 관심 사안을 다룰 목적으로, 그 요청일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원회에 의하여 합의된 조건을 기초로 협의를 개시한다.

6.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각 당사국 수석대표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의 교환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7. 위원회 회의를 조율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보교환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제공된 정보가 최신임을 보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접촉선을 지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농업농촌개발부,

또는 그들 각자의 승계기관

제5.6조
분쟁해결

제15장(분쟁해결)의 규정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6.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이행의 개선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원활히 하는 것,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다. 양 당사국 간 공동협력의 증진

제6.2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6.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부속서1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4조
국제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제5.4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TBT위원회”라 한다)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1]을 적용한다.

제6.5조
기술규정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6.6조
적합성 평가절차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의 효율을 높이고, 중복을 방지하며, 비용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상황 및 관련되는 특정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한 합의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또는 지명 절차의 채택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인정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1] G/TBT/1/Rev.11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와 그 후 개정사항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3.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의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2항가호부터 바호까지의 접근법 및 그 밖의 적절한 접근법에 대한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양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추천하고 자국의 영역에 주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승인 또는 달리 인지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6. 양 당사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통신장비 적합성 평가를 위한 상호인정 협정」과 관련하여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7조
투명성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제2.9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보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문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연결 또는 그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2.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공중 및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한쪽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양 당사국은 언제든지 가능한 경우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6.8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나. 투명성,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조화,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과 같은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

다. 이 장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발생하는 도량형 요구의 효과적이고 충분한 준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지원,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

3.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추가 협력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한 특정 분야, 예를 들면 건축자재,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한다.

제6.9조
정보교환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일반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수용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10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원활히 하는 것

나.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을 점검하는 것

다.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라. 제6.8조에 규정된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공동 협력을 조율하고 제고하는 것

마.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제안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고된 협력을 위하여 상호 합의된 우선 순위 분야를 확인하는 것

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아.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협의하는 것

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

차.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그리고

타.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

3. 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제2항아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한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15.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5. 위원회는 다음의 기관이 조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과학기술부의 표준계량품질국 또는 그 승계기관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의 조정을 담당하는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이 지정된 접촉선의 이름과 전화, 팩시밀리, 전자메일 및 그 밖의 관련

세부사항을 포함한 그 조직 내의 관련 공무원의 연락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의 변경 또는 관련 공무원의 정보에 대한 수정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6.11조
정의

1.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1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7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수입 당사국 영역 내에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 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 형태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그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2) 제2.3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7.2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그 조치를 적용하기 이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다호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 및 제4.2조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 및 제4.2조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존속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3조
잠정 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 공고를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를 공표한 날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4.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5. 그 당사국은 제7.2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7.1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4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모든 보상은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 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5.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적용되고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제7.5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가.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7.6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국 간 반덤핑 또는 상계 조치 사안에 있어 다음의 관행을 준수한다.

가. 반덤핑협정 제2.4조제2항상의 비교 기준과 관계 없이, 반덤핑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반덤핑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최소 관세'가 적절할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조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질의서에 대한 적시의 대답을 요구한다. 조사 당사국이 마감시한 전에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또는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명확화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 당사국은 누락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관한 정보의 명확화를 요청한다. 이 절차는 조사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상의 마감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다.

제7.7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한 때,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7.8조
약속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가격에 대한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실행 가능한 경우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한다.

2. 반덤핑 조사에 있어,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국내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국내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7.9조
재심에 의한 종료 이후의 조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면서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 개시 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7.10조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3절
무역구제위원회

제7.11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구제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나.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

   다. 무역구제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당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라. 양 당사국이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마. 양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

      1)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2) “이용가능한 사실” 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있어서의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력하는 것

3.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제4절
정의

제7.1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아니한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 후 10년 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을 말한다.

제8장
서비스무역

제8.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되어진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그리고

   다. 상업적 주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에 의한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 그리고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나.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부여방식과 관계없이 항공 운항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항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다. 해상운송서비스의 연안운송

   라. 제8.16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또는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계속적 수령에 부과되는 조건, 또는

   마.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 내로의 입국 또는 자국 내에서의 일시적인 체류를 규제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혜택[1]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는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2조
내국민 대우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8.3조
최혜국 대우

1. 이 협정의 발효 후에,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동종의 상황에서 그 비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비당사국과의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이 협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을 하는 당사국과 혜택의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대우는 다음과 같은 협정 상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된 어떠한 특혜대우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기존의 비당사국과의 양자, 지역 또는 국제 협정, 또는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모든 양자 또는 복수국 간 협정

제8.4조
시장접근

[1] 특정 국가의 자연인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의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제8.20조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3]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에 대한 제한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바. 외국인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8.5조
추가적 약속

당사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8.6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2] 당사국이 제8.20조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로서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서비스 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에, 그 당사국은 이에 의하여 그러한 자본의 이동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당사국이 제8.20조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한 경우에는 그 당사국은 이에 의하여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3] 이 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8.2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요건 및 자격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그리고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8.2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8.2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하고, 제8.4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제8.4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이 장에 부속되어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7조
투명성

제14장(투명성)에 더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나. 당사국이 제14.1조(공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하여 사전공고와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하게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둔다.

제8.8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가.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그러한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그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실제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가호의 규정은 자국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개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자신이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마련한다. 그러한 규율은 그러한 요건들이 특히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할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5. 가.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는 제4항에 따라 마련되는 각 분야별 규율이 발효될 때까지 당사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항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식, 그리고

2) 그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으로부터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나. 당사국이 가호의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련 국제기구[4]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충분한 절차를 규정한다.

---

[4]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적어도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 기구를 지칭한다.

제8.9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각국의 표준 또는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또는 관련 권한 있는 기관 간의 협정 또는 약정에 근거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경험·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3.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자국의 기존 인정 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며,

   나.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교섭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이 그 교섭에의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사전에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교섭의 개시를 공동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다. 새로운 인정 조치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인정 조치에 중대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공동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조치가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국제공통표준의 수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제8.10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 장에 따른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는, 그리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 또는 제휴 법인을 통하여 경쟁을 할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 관련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는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나. 자국의 영역 내에서 그러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막는 경우

제8.11조
영업 관행

1. 양 당사국은 제8.10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 관행 외의 서비스 공급자의 일정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하 “요청당사국”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이하 “피요청당사국”이라 한다)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피요청당사국은 또한 자국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요청당사국에 의한 해당 정보의 비밀성 보호와 관련된 합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입수 가능한 정보도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제8.12조
지급 및 송금[5]

1. 제8.13조에 상정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급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사용을 포함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문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다(송금)는 이 조에 적용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8.13조나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하여도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3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GATS 제12조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이나 이에 대한 변경은 신속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다.

제8.14조
혜택의 부인

1. 당사국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당사국이 입증할 경우, 해당 서비스의 공급

   나.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로서, 부인하는 당사국이

      1) 비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2) 비당사국의 인이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하거나 사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다. 부인하는 당사국이,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그러한 서비스 공급자

2.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그 법인이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또는

   나. 그 법인이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8.15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협의

이 장의 이행이 당사국의 서비스 분야에 실질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분야에 관한 조치를 논의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취하여지는 어떠한 조치도 양 당사국에 의하여 상호 합의된다. 다른 쪽 당사국은 특정 사안의 상황을 고려하고 조치를 취하려는 당사국에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8.16조
보조금

1. 당사국의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이 장에 따라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중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이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장에 따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장에 따라 약속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8.17조
양허표의 수정

1. 당사국은 약속의 발효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가. 그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개월 이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보한다. 그리고

   나. 필요한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보상조정을 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이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아니한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보장한다.

제8.18조
그 밖의 조항

부속서 8-가부터 8-라까지, 그리고 이 장에 따라 합의될 모든 장래의 법률 문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19조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1. 이 협정의 발효 후,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과 네거티브 목록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을 비준할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하여 서비스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장과 부속서들을 재협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요청이 있으면, 그리고 각 당사국의 국내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양 당사국은 1년 이내에 협상을 종료할 것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분야에 있어서 양 당사국 간 혜택의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협상을 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 당사국은 협상에서 이 협정의 자유화 약속 수준을 감소시키지 아니한다.

4.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5장(분쟁 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8.20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활동을 말하며,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업적 주재란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아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서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2) 가호에 명시된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법인은,

1)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2)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또는

3)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독점 서비스 공급자란 당사국 영역 내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그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서비스 분야란 다음을 말한다.

가.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서는,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서비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하위 분야, 또는

나. 그 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하위 분야 모두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 전체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 조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비스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나.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 공급되지도 아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6]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다.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또는

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그리고

운송권이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 내에서, 또는 영역 상공으로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운항하거나 여객, 화물 및 우편을 운송하는 정기적 및 비정기적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운항지점, 취항항로,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능력, 부과운임 및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를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

---

[6]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이 장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확장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다른 부분에까지 확장될 필요는 없다.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건전성 조치 예외[7], 환율 및 금융 안정성

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 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금융제도의 무결성과 안정성의 보장, 또는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8]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9]로 다음을 조건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1)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2)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의 경우, 그러한 조치는 필요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1년 이내 또는 조건들이 그 시행 또는 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 할 수 없을 시 해제된다. 그리고

3)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의 경우, 그러한 조치는 최혜국을 기초로 적용된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서비스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3. 투명성

---

[7]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그 당사국의 금융감독당국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감독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항에 맞게 취하여진다.

[8]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는 어느 특정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 또는 유지되지 아니한다.

[9]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가.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원활히 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나.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가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을 한다.

1)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부속서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2)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10]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3) 자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라.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마.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바.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사.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관련 법과 규정에 명시된 시한 내에 신청자에 통보한다.

아.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80일[11]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1)목에 기술된 대로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들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주소이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11] 양 당사국은 180 일의 기간이 신청자가 관련 허가에 대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자.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청거부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4.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항은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5.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이 새로운 법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기존 법 또는 규정의 수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국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12]

6. 데이터 처리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의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 가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건전성 고려를 기초로 개인 자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정보를 이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자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7. 구체적 예외

가.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베트남의 경우, 합리적인 기간의 파일럿 테스트 후 그리고 베트남의 은행 및 금융제도의 발전 수준에 맞게 신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인가한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수행하면서 행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그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그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분쟁 해결

가. 제15장(분쟁해결)은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속서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나. 제15.8조(중재패널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이 부속서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패널과 중재인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 또는 관행에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가진 인이 된다.

9. 인정

가.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이 협정의 발효 시 또는 그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가호에 언급된 유형의 제3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들 간의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10. 금융서비스 위원회

가.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융서비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2)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 및 금융부

또는 그 승계기관

나. 위원회는

1) 이 부속서의 이행을 감독한다.

2)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3) 이 부속서의 제8항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한다.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11. 협의

가.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나. 이 항에 따른 협의에는 이 부속서의 제10항가호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12.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가.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2) 재보험 및 재재보험

3)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2)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3) 금융리스

4)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5) 보증 및 약정

6)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나) 외환

   다)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마) 양도성 증권, 그리고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7)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8) 자금중개업

9)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10)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11)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12)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1)목부터 11)목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 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

부속서 8-나

통신

1. 적용범위

가. 이 부속서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나. 방송국 및 케이블 시스템을 운영하는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케이블로 배급하는 것에 관한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공중에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 구축, 취득, 임대, 운영 또는 공급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2)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이나 케이블 배급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사의 방송 또는 케이블 설비를 공중 통신 전송 망으로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강제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2. 접근 및 이용[13]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용회선을 포함하여 자국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제공되는 모든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나호부터 바호까지 규정된 조건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보장한다.

나.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1) 공중 통신 전송 망에 상호 연결되고,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부착하는 것

2) 소유 또는 전용 회선을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소유 또는 전용회선과 접속하는 것,[14] 그리고

[13] 베트남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국내 통신 기반시설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통신서비스 무역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 할 수 있다.

3)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운용규약을 사용하는 것

다.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또는 국경을 건너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되거나 달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다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메시지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 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을 보호하는 것

2)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 또는

3)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약속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바. 마호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조건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그러한 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사용에 대한 제한

2) 인터페이스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하여 특정의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3) 필요한 경우, 그러한 망 및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건

4) 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치 또는 그 밖의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과 그 장비를 그러한 망에 부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

[14] 베트남의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폐쇄 이용자 그룹 회원 간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도록 인가된 망들은 통신규제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승인된 경우에만 직접 상호접속을 할 수 있다.

5) 사설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임차 또는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한, 또는

6) 통보, 등록 및 허가

3. 경쟁보장장치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 이 항에서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2)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3) 다른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또는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4. 허가 절차

가. 당사국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공개한다.

1) 자국이 적용하는 모든 허가 기준 및 절차

2)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3) 발효 중인 모든 허가의 조건

나.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를 신청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상호접속[15]

[15] 가호1)목부터 3)목까지에 대하여, 한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3항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호 4)목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지배적 사업자의 망 내의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제공된다.

1)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일 것

2) 상호접속을 하고자 하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하게 세분화되어 있을 것

3)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그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일 것, 그리고

4)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될 것

나.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 사업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 간의 상호접속에 관한 (기술표준과 규격을 포함하는) 조건 및 요율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

1) 상업적 협상, 또는

2)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통신규제기관에서 승인 또는 규정한 일련의 표준 조건 및 요율의 참조

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접속에 관한 절차를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상호접속협정의 결과로 얻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및 최종이용자의, 또는 이들에 관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정보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6. 설비 병설[16]

[16] 베트남의 경우, 설비 병설은 해저케이블 육양국과 국제 관문국 같은 필수 통신 기반시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필수 통신 기반시설은 권한 있는 규제 기관에 의하여 명시된다. 이 의무는 베트남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된다. 이 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한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음을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1)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설비기반 사업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상호접속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 제공, 그리고

2) 1)목에 언급된 물리적 설비 병설이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설비기반 사업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협력하여 실현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 및 이행[17]

나.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가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물리적 설비 병설 또는 실현 가능하고 상업적 유효성이 있는 대안적 해결책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기술표준과 규격을 포함하는)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다. 각 당사국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물리적 설비 병설을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거나 가호에 언급된 실행가능한 그리고 상업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대안적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다.

7. 전용회선 서비스[18]

각 당사국은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지 아니하는 한,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고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한 (기술표준과 규격을 포함하는) 조건 및 요율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8. 재판매[19]

---

[17] 그러한 해결책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근처 건물에 장비를 두고 그러한 장비를 지배적 사업자의 망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허가
나. 추가적인 장비의 공간 확보 또는 가상 설비병설
다. 기존 공간 사용의 최적화, 그리고
라. 인접한 공간의 탐색

[18] 베트남의 경우, 이 의무는 베트남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된다. 한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보다 불리한 요율 및 조건을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그러한 요율 및 조건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제13항에 규정된 대로 통신규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9] 베트남의 경우, 서비스공급자가 재판매 허가를 받으면 재판매에 나설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재판매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9. 번호이동성[20]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합리적 조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하여 번호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10. 통신규제기관

가.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체제의 일부로서 통신규제기관을 설립 또는 유지한다.

나. 각 당사국은 자국이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통신규제기관이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분리되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 각 당사국은 제5항에서 규정된 약속의 이행, 그리고 기구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포함하는 통신규제기관의 기능과 책임이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명시되도록 보장한다.

라. 각 당사국은 통신규제기관의 의사결정과 동 기관이 사용하는 절차가 모든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공정하도록 보장한다.

마.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행정, 중재 또는 사법 재판소 또는 당국 또는 행정적, 중재 및 사법적 절차에 따라 그 판정 또는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절차가 통신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심을 실제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11.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자국이 정의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2.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가.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 및 선로 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통신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20] 이 의무는 베트남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적절히 반영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적용된다.

나. 각 당사국은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특정한 정부 사용을 위하여 분배하거나 할당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다. 전파를 분배하고 할당하며 주파수를 관리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그 자체로 제8.4조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의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파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그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러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수요와 전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13. 통신 분쟁의 해결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 또는 분쟁 해결 기구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나. 각 당사국은 관련 통신규제기관의 최종 판정 또는 결정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그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련 사법기관이 그 판정 또는 결정을 보류, 중지 또는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심사가 통신규제기관의 판정 또는 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구성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4. 투명성

제14.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다음을 포함한 관련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가. 서비스의 요율 및 그 밖의 조건

나. 그러한 전송 망 및 서비스와의 기술적 인터페이스의 규격

다. 표준 관련 조치를 준비, 수정 및 채택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

라. 공중 통신 전송 망에 단말장비 또는 그 밖의 장비 부착 시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마.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으면, 그러한 요건

15.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통신 망 및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 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하여,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16.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물리적) 설비 병설이란 지배적 사업자가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통제하고 사용하는 장소에서 장비를 설치, 유지 또는 수리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접근을 말한다.

원가지향이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 외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란 다음과 같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 설비를 소유한 서비스 공급자, 그리고

나.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설비기반 사업자

상호접속이란 하나의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회선이란 특정 이용자의 전용 사용 또는 이용가능성을 위하여 따로 둔 둘 이상의 지정된 지점 간의 통신 설비를 말한다.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 또는 그 부분의 공급을 위한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를 말한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비차별적이란 동종의 상황에서 동종의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그 밖의 모든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번호이동성이란 동일한 유형(이동통신서비스)의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공급자 간에 전환할 때에 동일한 번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 최종이용자의 능력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망이란 명시된 망 종단점 간에 통신을 허용하는 공중 통신 기반시설을 말한다.

공중 통신 전송 서비스란 당사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된 모든 통신 전송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특히 고객의 정보를 형태나 내용 면에서 종단 간의 변경 없이 둘 이상의 정해진 지점 사이에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전신, 전화 및 데이터 전송이 포함될 수 있다.

통신이란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통신규제기관이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법률 체제에 따라 통신 규제를 책임지는 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이용자란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 또는 공급자를 말한다.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1. 적용범위

가.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한 부속서 8-라에 명시된 범주에 속하는,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입국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나. 이 부속서는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또는 거주나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전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입국 또는 자국 영역 내의 일시 체류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출입국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 서비스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목적

이 부속서의 목적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양 당사국 간의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된 내용에 추가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3. 신청 절차

가. 출입국 절차를 위한 완전한 신청을 수령한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승인되었을 경우, 체류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한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완전한 출입국 절차 신청을 접수한 한쪽 당사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체류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포함한 최종 결정 결과를 일시 입국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그의 고용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보한다.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당사국은 신청을 완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추가적인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 신청이 거부된 경우, 각 당사국은 최대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처분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지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라. 출입국 절차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수수료는,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또는 서비스무역, 또는 투자활동의 수행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4.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조건 및 제한

가.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각 범주에 대하여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조건 및 제한을 명시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자국 영역으로의 이동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부속서 8-라에 규정한다.

나. 각 당사국은 가호에 언급된 구체적 약속의 적용을 받는 자연인에게 부속서 8-라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른 입국 및 일시 체류를 보장한다. 다만, 그러한 자연인은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적용가능한 이민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한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연인이 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어떠한 면허 또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5. 투명성

가.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 당사국으로의 입국, 일시 체류 또는 그 갱신을 위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구체적 약속과 관련한 신청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에 다른 방식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나.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접촉선 또는 그 밖의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둔다.

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 당사국은 일시 입국을 위한 신청의 처리와 관련된 현행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마.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모든 새로운 요건 및 절차의 도입 또는 그 당사국으로의 입국, 최초의 일시 체류, 또는 그에 따른 갱신 허가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효율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가호에 언급된 기존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변경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6. 분쟁해결

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15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1)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2) 영향을 받은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적 행정 구제 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재심 또는 불복청구 절차를 포함한 구제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관련된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호 2)목에 언급된 구제조치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가. 양 당사국은 출입국 공무원을 포함한 각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회합한다.

나. 위원회는,

1) 이 부속서에 따른 자연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절차를 수립한다.

2) 이 부속서에 따른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을 고려한다.

3)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을 고려한다.

4)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양 당사국의 합의에 기반하여,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리고

5) 상호 합의 하에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그 밖의 관심사항을 논의한다.

8. 협력

양 당사국은 사증 처리, 국경 안보, 그리고 자연인의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양 당사국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상호 합의된 협력 활동을 행할 것을 고려한다.

가. 비자 전자 처리 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조언 제공

나. 국경 안보 및 자연인의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경험, 규정 및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다.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사항과 같은 처리 향상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 포럼에서의 협력

9.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출입국 절차란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문서를 말한다. 그리고

자연인의 이동이란 영구적 거주의 의도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한쪽 당사국 영역 내로 일시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8-라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한국[1]

[1] 이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에 부속된 한쪽 당사국의 구체적인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한국-아세안 서비스 무역 협정」에 부속된 상응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각각의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CPC(UN 잠정 중앙상품분류: 통계문서시리즈 M No. 77, 국제 경제사회국, UN 통계사무소, 뉴욕, 1991)코드 번호 위의 별표(*)는 이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 하위 분야가 주어진 CPC 코드 번호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 하위 분야의 일부 또는 일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한다. “ 약속 안함*”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이 양허에 포함된 모든 분야	3) 베트남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과 같은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신규로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될 수 있음.	3) 토지 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 (ii)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점의 토지 취득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합법적 사업 목적으로 허용됨. •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세제 혜택을 포함하여 보조금에 대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기업에 제한될 수 있음. 연구 및 개발 보조금은 약속 안함.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주자는 한국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시 내국민대우를 부여받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다음과 같이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외에는 약속 안 함. A. 기업 내 전근자(ICT)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 지사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인 자연인 (i) 임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휘만을 받는 자. 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과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함. (ii) 고위관리자 – 조직 내에서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및 해고 또는 다른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고위관리자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주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아니함. (iii) 전문가 –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설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자	4) 기업 내 전근자(ICT), 기업인 방문자(BV), 서비스 판매자(SS)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계약서비스공급자(CSS)는 약속 안함. 토지 취득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함. 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수혜 자격은 관련법상의 거주자에 제한될 수 있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항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에 의하여 상기 조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면, 체류 기간의 갱신이 가능함.		
다음의 정의는 투명성 목적으로 규정한다. 1. "자회사" 는 그 회사의 모회사가 총지분의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기업, 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로 정의함. 2. "지사" 는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로 정의하고, 그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영역 내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함. 그리고 3. "지정된 계열사" 는 동일한 모기업에 의하여 소유 또는 관리되는 두 개의 자회사 중의 하나, 또는 파트너쉽, 기업 또는 다른 법적 실체의 파트너로 두 법적 실체의 각각의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두 법적 실체 각각의 총투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동일한 주주단체에 의해 소유 또는 관리되는 두 개의 법적 실체 중 하나로 정의함.			
	B. 기업인방문자(BV) A항 (i) 또는 (ii)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연인으로서 베트남 서비스 공급자의 한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이 있는 자이며, 한국 내에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가 없어야 하며 직접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됨. C. 서비스판매자(SS) 한국 영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며, 한국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연인으로서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이며, 일반대중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B항과 C항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90일로 제한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계약서비스공급자 (CSS) - 법인의 피고용인 한국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관여하는 자연인. 다음의 조건과 세부분야[2]에 기재된 추가 조건의 적용을 받음. 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한국에 설립된 법인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계약을 취득하여야 함. 그 계약은 한국의 법과 규정에 부합하여야 함. 입국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그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입국허가 신청 직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공급 하여야 함. 자연인은 한국의 법과 규정 또는 요구 조건 및 워싱턴 어코드, EMF 국제 등록 전문 엔지니어와 APEC 엔지니어와 같은 관련국제기구의 인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전문적 자격과 전문적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자연인은 한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여야 함.		

[2] 이 카테고리의 수평적 또는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8-다에 따라 한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영구적인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약속은 특정 하위 분야에 달리 명시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적 제한(신청 양식 및 수준은 추후 결정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계약은 한국의 직업적 명칭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행위 또는 하위 분야에서 체결될 것이 요구됨. – 베트남에 소재한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장비 또는 기계를 구입하는 한국의 법인을 위한 건설 및 발전 장비 외의 산업 장비 또는 기계의 설치,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명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공학 및 환경 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과 관한 기술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 한국의 회계법인 또는 회원 계약을 통한 사무소에 대한 외국의 회계 표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 기술의 이전 및 회계, 감사와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 – 공동계약의 형태로 한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 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경영 컨설팅 서비스 다음 서비스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서비스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이행 서비스 - 자료관리 서비스 - 자료시스템 서비스 -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설계서비스 D 유형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 기간으로 제한됨.		
*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1. 입국과 일시 체류가 허가된 자연인은 「출입국 관리법」과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함. 2.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과 관련된 한국의 약속은 노사분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다음을 제외함. (i) 법원 및 그 밖의 정부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 (ii) 공정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	1)2)3) (a)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한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 공증인의 사무소는 해당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함.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개설할 수 있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러한 법적 실체에 투자할 수 없음.	1)2)3) 시장접근 열 (b)에 명기된 것과 동일한 제한이 적용됨.	1. 국제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허용됨. 다만, 중재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법과 실체법이 외국법자문사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법 또는 국제 규범이어야 함. 2. 원자격국 직명의 본국 언어로의 사용이 허용됨. 다만, 한글로 "외국법자문사"라는 직명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노동 분야 자문 서비스 또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또는 한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 (iv)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b) (a)[3]에서 공급이 허용된 법률서비스 외의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다만, 다음을 제외함. (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베트남 법무회사(로펌)가 한국에 대표사무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베트남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 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하여 외국법자문사로서 한국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그리고 (ii)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대표사무소로 하여금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특정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iii) 이 협정 발효일부터 3년 이내에 한국은 이 협정에 합치되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베트남 법무회사(로펌)가 한국 법무회사(로펌)와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한국은 그 합작기업의		3. 회사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다만, 한글로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

[3] 한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한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자격 부여, 승인, 등록, 허용과 감독 및 그 밖의 요건에 대한 제한. (b)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한국 변호사, 법무회사(로펌),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와 동업, 상사연합, 제휴 또는 법적 형태를 막론하고 그 밖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c) 외국에서 변호사에 상응하는 법률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법무회사(로펌)로 하여금 한국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그리고 (d) 외국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실체의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한 제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의결권 또는 지분 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러한 합작기업은 일정한 요건 아래 한국 변호사를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로 고용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자연인의 이동은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서만 허용됨. 외국 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관할 지역의 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서비스만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주석

아래 정보는 오직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함.

1.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하며,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

2. 한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7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하였어야 함.

3.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하여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함.

4.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베트남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베트남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베트남이 아닌 국가의 지사,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기업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법무회사(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

5. 외국법자문사는 일년에 최소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CPC 862)	1)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만 허용됨.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의 공인회계사만 감사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2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1)2)3)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 – 외국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에 대한 자문,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기법전수, 그리고 정보교환 4) 본국의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이러한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으로 제한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세무 서비스 (CPC 863)	1)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세무조정서비스 및 세무대리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3)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세무 조정반, 세무대리 법인(유한회사)만이 허용됨. 세무 조정반, 세무대리법인(유한회사)의 세무사만이 세무 조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d. 건축 서비스 (CPC 8671)	1) 한국법상 자격있는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을 통하여 외국 건축사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4) 한국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5년의 전문 경력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그 자격이 한국 건축사와 동등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외국 건축사 자격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인턴 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들은 건축사자격시험의 다음 두 과목에 합격함으로써 한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가능함. (a) 건축설계 I, 그리고 (b) 건축설계 II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a. 컴퓨터설비 설치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연구개발 서비스			
a.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하여야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부동산 서비스			
중개 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감정평가 서비스 (CPC 82201*, 82202*) 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과 같은 정부의 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리스 서비스			
a. 선박 관련 (CPC 831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 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정하여 허용.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CPC 83101, 83105*)[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개인 또는 가정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 한정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기타 사업 서비스			
a. 광고 서비스 (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컨설팅 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및 기타 경영 서비스 (CPC 86601, 866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심사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술적 진단 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6]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 86761*: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만을 포함.
[6] 86763*, 86769*: CPC 86763, 86769 중 전자 제품의 검사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1* ,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가금류 감별 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항공에 의한 산불 진화 및 병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외한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직업 소개 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상법」에 따른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투명성 목적의 주석 1.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칙을 준수함. 2. 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공급자가 추가로 지점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지점 사업소당 2천만원 씩 총 납입자본금이 가산됨.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 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지표 밑 조사 서비스 (CPC 867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지표조사 서비스 (CPC 86753*)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도제작 서비스 (CPC 86754*)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빌딩 청소 서비스 (CPC 874*, 다만, 87409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 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q. 포장 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인쇄 (CPC 88442*)[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출판 (CPC 88442*)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출판 서비스는 제외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속기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7] 88442*: CPC 88442 중 스크린 인쇄, 그라비어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B. 쿠리어 서비스 특급 배달 서비스[8]를 포함하는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우편법」에 따른 한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9]를 가지는 신서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는 제외[10]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형태로 제한됨. 2) 제한없음. 3)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 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운송 형태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8] "특급배달서비스" 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a) 군복무자 또는 이와 동등한 신분을 지닌 자가 우체국에 대한 지원업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b)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미래창조과학부에 속하는 차량 총수 결정과 우체국에의 차량 배정

[10]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3조는 민간 쿠리어 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 관련 서류, c) 외자 또는 기술 관련 서류, 그리고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 서류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및 그 운영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 이 약속은 자기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함. 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 운항 면장 및 항공기를 보유한 배달 사업자에게의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아니함.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화물운송업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통신 서비스			
a. 음성전화 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 d. 텔렉스 서비스 e. 전신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g. 민간전용회선 서비스 o. 기타	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한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 2) 제한 없음. 3)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첨부 1(참조 문서) 참조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디지털 셀룰러 서비스 - 무선호출 서비스 - PCS(개인통신 서비스) - TRS(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 무선 데이터 서비스 - IAS(인터넷접속 서비스) - PSTN(공중교환 전화망)과 연결된 VoIP(인터넷전화) 서비스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 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러한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아니함.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의제법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는 제외함. *“외국인의제법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고,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부가서비스[11]: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처리(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 전송서비스[13] 공급이 허용됨.
D. 시청각 서비스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CPC 96112*, 96113*)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1] "부가서비스" 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함.
[12]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함.
[13] 이용자의 데이터를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서비스(음성전화, 텔렉스, 팩스 서비스 및 전용회선의 단순 재판매는 제외)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건설 서비스 (CPC 511-518)	1) CPC 5111 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1 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유통 서비스[14]			
A. 위탁 중개인 서비스 (CPC 621, 다만,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 중개인 서비스는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상품은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4] 다음 서비스는 제외함.
(a) 총포, 화약 및 도검류 거래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 서비스
(i)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 그리고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시장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도매 서비스 (CPC 622, 다만, 62211 중 곡물 도매업, 62223, 인삼, 홍삼 도매업 및 62229 중 곡분 및 62276 중 비료 도매업은 제외)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 중고자동차 도매업 –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주요 기준: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주류 도매 유통업을 하는 인은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소매 서비스 (CPC 6111, 61130, 61210, 613*(LPG 관련 소매거래 및 주유소 사업 제외), 631*(담배, 쌀, 인삼 및 홍삼 제외), 632	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기존 국내 공급자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특징과 공공의 이익. 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 면허를 받은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인당 1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 의약품 소매 유통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자는 약국을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랜차이징 (CPC 8929*)[1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주석 다음의 설명은 소매 서비스에 적용됨. 일반 공중에 대한 의약품의 직접 공급(약국)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하여 허가 받은 약사에 의해서만 허용됨.			

[15]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및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에 한정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교육 서비스[16]			
C. 고등 교육 서비스[17] (CPC 923*) 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인평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민간 고등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교육 서비스 다음을 제외함. (i) 보건 및 의료 관련 고등교육 (ii) 유아·초등 및 중등 교원양성 고등교육 서비스 (iii)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iv)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학교 법인[18]만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 불필요) – 첨부 2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함. – 사내 대학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19]의 고등교육기관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 – 전문대학, 대학 및 산업 대학과의 공동운영은 외국공인인정기구의 인정을 받거나 대학(전문대학)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야에 그 외국 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받은 외국 대학에 한정됨. – 교육부장관은 각 교육기관의 학생수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고등 교육기관의 총수를 제한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6] 모든 서비스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국에서 전문직 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위 인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17]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교육 서비스에 관한 첨부 2에 기재됨.

[18] "학교 법인"이란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정규 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함.

[19] "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성인 교육 서비스[20] (CPC 924*) 민간 성인 교육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성인 교육 서비스 다음을 제외함. (i) 교육 자격을 인정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 학점,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 (ii)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선원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iii) 방송을 통한 교육 서비스, 그리고 (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하는 직업훈련 서비스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 교육 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이 한국에 설립할 수 있는 성인 교육 기관의 형태는 다음으로 제한됨. (a) 평생 및 직업교육 관련 학원(성인 대상 민간 교육기관)[21], 그리고 (b) 교육 자격 인정 또는 학위 수여 외 목적의 성인 평생교육시설로서 (i) 사업장, 비정부기구(NGO), 학교 및 언론기관에 부설된 것, (ii) 지식 및 인력 개발과 관련된 것이면서 성인대상으로 설립된 것 수도권 지역에서 총 건평 3,000제곱미터 이상의 성인교육시설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 교육 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학원(성인 대상 민간 교육기관)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인은 최소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동등 학력소지자로서 국내에 거주하여야 함.	

[20] 성인 교육 기관의 형태는 성인 교육 서비스에 관한 첨부 2에 기재됨.
[21] 이 제한의 목적상, "학원(성인 대상 민간 교육기관)"이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 또는 직업교육 관련 과목에 관한 교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6. 환경 서비스			
A. 폐수 서비스 폐수 처리 서비스 (CPC 9401*)[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 저감서비스 (CPC 9404, 94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 시험 및 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2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2] 9401*: CPC 9401 중 산업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23] 9402*: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24]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 영향 평가 서비스만 해당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토질개선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CPC 940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환경자문서비스 (CPC 94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금융 서비스에 대한 주해

1. 금융 분야는 기본적으로 부속서 8-가의 카테고리에 따라 재분류됨. 그러므로 하위 분야의 순서는 GATS/SC/48/Suppl.3/Rev.1의 약속상의 하위 분야와 다름.
2. 하위분야의 기재사항은 오직 현존하는 국내 금융 서비스에만 적용됨.

7. 금융 서비스

모든 금융 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부속서 8-가 제 2 항가호에 따른 건전성 사유로 한국은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 직원의 면허 및 승인을 포함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함.

(2)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서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다른 영업활동을 겸할 수 없음.

(3)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및 소비자 이동을 통한 공급은 원화로 결제되지 아니함. 상업적 주재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 원화로 표시되고 결제된 거래만 다룰 수 있음. 외화로 표시 또는 결제된 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승인이 필요함.

(4) 지점소유 자산은 한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본점 자본금은 국내 지점의 자본금 조달 및 대출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인정되지 아니함. (5) 요구불예금 금리가 규제됨. (6) 금융기관의 자산 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 (7)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 (8) 파생상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함.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i) 직접보험 a) 생명보험 서비스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서비스를 포함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생명보험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한국 생명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매원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손해보험 서비스	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보험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한국 손해보험회사와의 합작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함. 판매원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하여야 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재보험 및 재재보험 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판매원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이 제한됨. 한국 재보험회사나 재재보험 회사와의 합작 투자기업 설립은 허용되지 아니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ii) 보험중개 및 대리 서비스 a) 보험 중개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의 보험중개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보험 대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v) 보험 부수 서비스: 하위분야 a) 및 b)에만 적용됨. a) 손해사정 서비스[25] b) 보험계리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의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 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 다음의 하위분야에만 적용됨.			
(i) 예금[26] (ii) 대출[27] (iii) 금융 리스 (iv) 지급 및 송금 (v) 보증 및 약정 (vi) 외환 서비스[28] (vii) 결제 및 청산[29]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금융리스는 제외)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없이 은행 지분의 10퍼센트까지(비금융 서비스 기관의 경우 4퍼센트까지), 그리고 지방은행 지분의 15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30] 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하에 은행 및 지방은행의 100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됨.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은 미화 500 만 달러 또는 자본금의 3 퍼센트 중 큰 금액임. 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 가능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25]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
[26] 예금의 수취 또는 양도성 상품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인수하는 업무
[27] 융자 또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
[28] 외환의 발행, 송금 및 추심 행위
[29]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른 은행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한 결제 및 청산 행위
[30] "인" 및 "비금융 서비스 기관" 의 정의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증권저축과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에 따름. 카드론과 같은 수단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대출은 제한됨.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과 같은 각종 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는 30일을 초과함. 외환거래 시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됨. 선물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요건이 면제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있음. 외환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됨. 금융 리스, 신용 공여 및 증권저축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viii)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 하는 것 : 다음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됨. a)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포함) b) 외환 c) 금융파생상품(선물 및 옵션 포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본국에서도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하여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및 선도금리계약 포함) e) 양도성 증권 f)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 자산(금괴 포함)			
(ix)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 a) 증권발행 b) 증권인수 c) 증권모집 d) 그 밖의 증권 관련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모든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금융기관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 자산 운용 :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b)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 운용 c) 보관 d) 신탁[31](투자일임업 포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자산운용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업인 은행업 외의 업무에 종사 및 신탁업에 종사한다는 금융 위원회의 승인(두 종류)이 요구됨. 부동산 신탁 사업은 약속 안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1]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xi) 신용정보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기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50퍼센트 미만의 지분참여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i)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 다음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			
a) 투자 자문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투자자문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신용평가 및 분석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무보증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는 관련 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가 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및 레스토랑 (CPC 641, 642, 6431*) 다만, 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여행 알선 대행 서비스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관광객 안내 서비스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1, 96192) 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과 같이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2] 이 제외는 CPC 642의 케이터링에 관한 약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1. 운송 서비스			
A. 해상 운송 서비스[33] 국제 운송 (CPC 7211*, 7212*) 연안운송은 제외함.	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한국 국적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상법」에 명시된 주식회사만이 허용됨 b)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 4) a) 선박승무원: 약속 안함. b) 항만 노무자: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 주석

관련 국내법상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연안운송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 함. 연안운송 서비스에는 한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항만 또는 지점 간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 그리고 한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동일 항만이나 지점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수송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수송은 한국 수역 내에 머물러야 한다.

[33] 해상 운송 서비스에 관한 첨부 3 참조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 부수 서비스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만 내 창고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관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대리업 서비스 (CPC 748*)[3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4] CPC 748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외국운송사업 포함)을 주선하는 대리업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CPC 741*)[3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3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중개 서비스 (CPC 748*, 749*)[3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 유지 및 보수[38]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5] CPC 741 중 항만 지역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36] CPC 748 중 주선인의 명의(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37] 748*, 749*: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 또는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38]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선원 포함 선박 임대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예선 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 (CPC 74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항공 운송 서비스			
컴퓨터예약시스템(CRS) 서비스[3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4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기 유지 및 보수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9] 제8.20조의 정의에 따름.

[40] 「항공법」 제2조제39호(항공운송 총대리점업)에 정의된 서비스.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서비스” 란 보수를 받으며 항공운송회사를 대신하여 항공기를 통한 여객 또는 화물 국제운송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함(타인을 위하여 비자나 여권 획득 절차를 수행하는 업무 제외).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철도 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 (CPC 7111) b. 화물 운송 (CPC 711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철도 산업에서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철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41] d. 철도 운송 부수 서비스 (CPC 741, CPC 7113의 일부)[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도로 운송 서비스 연안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CPC 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파이프라인 운송 (CPC 7131*) 오직 석유제품 운송에 한정. 다만, LPG 운송은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1] 철도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사유 철도 설비에만 적용된다.
[42] 철도 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사유 철도 설비에만 적용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H.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 b. 항만 구역 외의 보관 및 창고업 (CPC 742*) 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그 밖의 운송 서비스 복합 운송 서비스 철도 화물 주선[4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그 밖의 서비스 b. 이발 및 기타 미용 서비스(CPC 97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3] "철도 화물 주선"은 철로 운송의 끝 지점에서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보조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 철도공사와의 철도화물 운송계약, 화물 하역 및 배달이 포함된다.

첨부 1

참조 문서

적용범위

다음은 기본통신 서비스를 위한 규제적 틀에 대한 정의 및 원칙이다.

정의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을 말한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이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보장장치

1.1 통신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1.2 보장장치

상기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는 것, 그리고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것

2. 상호접속

2.1 이 부분은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에 적용된다.

2.2 보장되는 상호접속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될 것이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된다.

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2.3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될 것이다.

2.4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할 것이 보장된다.

2.5 상호접속: 분쟁 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가. 언제라도, 또는

나.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이후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이 이전에 수립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제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일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것이다.

3.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당사국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4.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이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할 것이다.

가. 모든 허가 기준 및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나. 개별 허가의 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는 신청자에게 통지될 것이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도 분리되어 있고 어떠한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이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할 것이나, 특정한 정부의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첨부 2

교육 서비스

1.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전문대학(기능대학은 제외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부터 3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나.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다. 산업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라. 기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마.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립 및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2. 성인 교육 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학원(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설 교육 기관)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과목을 교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교육시설을 말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된다.

      1)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 및 의복, 광업 자원, 국토 개발, 농업 및 임업, 해양 산업, 에너지, 공예, 환경, 교통, 안전관리

      2)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 및 미용 관리, 식품 및 음료,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3) 컴퓨터: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 인터넷, 컴퓨터, 게임

      4) 간호보조: 간호조무사

      5) 문화 및 관광: 출판, 영상 및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상품, 관광

      6) 국제: 성인대상 어학, 번역, 통역

      7) 경영 및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회계,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및 속독

8)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공무원시험

9)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회화, 무용, 웅변, 모델, 만화, 바둑, 연극, 모델, 꽃꽂이, 꽃공예

나.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거나 교육부에 등록이 되거나 교육부에 신고가 된 시설을 말한다. 평생성인교육시설은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그리고 언론기관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과 지식 및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첨부 3
해상 운송 서비스

1. 국제해운, 3.b):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자가 지점을 설립하고 그들의 고객에게 해운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해상화물취급서비스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 화물의 고정/분리, 그리고
-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3. 통관서비스

이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4.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5. 해운대리업 서비스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그리고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 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또는

- 필요한 때,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 수행

6.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편성 및 점검하는 활동

7.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

- 검수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하역하는 경우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검량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하역하는 경우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감정서비스: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증명, 조사 및 감정으로 구성된 활동

부속서 8-라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베트남[1]

1 이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 무역에 관한 장에 부속된 한쪽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쪽 당사국에게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한국-아세안 서비스 무역 협정」에 부속된 상응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각각의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약속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이 양허표의 각 구체적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 사업협력계약[2], 합작투자기업, 100 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수 있음.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 사무소가 베트남에 설립되는 것은 허용되나, 이들은 어떠한 직접적인 영리창출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함.[3] 이 양허표의 각 구체적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지점 설립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기존의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영업이나 서비스공급을 수립하거나 허가한 각 허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승인에 규정된 소유권, 영업 및 법적 형태와 활동 범위의 조건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조건보다 더 제한적이 되지 아니함.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보조금 수령 자격은 베트남 서비스 공급자, 즉 베트남 영역 내 또는 그 일부에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될 수 있음. 주식화 과정을 증진하고 촉진하기 위한 일회성 보조금 지급은 이 약속의 위반이 아님. 연구 및 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보건, 교육 및 시청각 분야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소수 민족의 복지 및 고용 증진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사업협력계약은 두 명 이상의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된 문서이고(최소한 한 당사자는 베트남의 법적 실체이고 한 당사자는 외국의 법적 실체이어야 함) 법적 실체를 설립하지 아니하고 베트남에서 투자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책임 및 양 당사자 간 사업결과 공유를 규정한 문서이다.

[3] 대표사무소는 무역 및 관광기회를 추구하고 증진하고자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의 하위조직이지만 어떠한 직접적인 영리창출활동에도 종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 임차를 위하여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토지 임차 기간은 해당 기업의 운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이고, 투자 허가에 규정되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운영기간이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연장될 때마다 연장됨.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출자하는 것이 허용됨. 합자 상업은행의 주식 매수 형태의 출자 및 이 양허표에서 약속되지 아니한 분야의 경우, 베트남 법에 달리 규정되거나 권한 있는 베트남 당국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 투자자가 각 기업에 보유하는 총 지분은 그 기업의 설립 자본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이 양허표에 약속된 그 밖의 분야 및 하위분야의 경우, 베트남 기업 인수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취득 수준은, 적용 가능한 경우, 과도기 형태의 제한을 포함하여 그에 규정된 외국 자본 참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에 상응함.		
	4)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조치 외에는 약속 안함. (a) <u>기업 내 전근자</u> 베트남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기업의 아래 정의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로 그 외국 기업에 최소 1년 동안 고용되었고 해당 상업적 주재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기업 내 전근자는 입국 및 최초 3년 동안의 체류가 허용되며, 해당 기업의 베트남 내 운영 기간에 따라 체류가 연장될 수 있음.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 총 수의 최소 20퍼센트는 베트남 국민이어야 함. 그러나, 각 기업당 최소 3명의 비베트남인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가 허용됨. 관리자 및 임원은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의 경영을 주로 지시하고, 기업 또는 기업의 부서나 하부 조직에 대한 지휘를 포함하여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으며,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직원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고, 단독으로 고용 및 해고하거나 고용, 해고 또는 다른 인사상 조치를 권고할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실제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임. 전문가는 조직 내에서 근무하며 고도의 전문적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그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자연인임. 그러한 지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상업적 주재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지식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업무나 거래의 유형에 관한 고도의 기술 또는 자격의 보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유 여부도 고려됨. 전문가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의 일원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b) 그 밖의 인력 베트남인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외국 기업의 베트남 내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베트남 영역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한 외국 기업에 의해 베트남 영역 외부에서 고용된 자로, 위 (a)에 정의된 관리자, 임원 및 전문가는 입국 및 해당 고용계약의 기간에 합치하는 기간 또는 최초 3년 중에서 짧은 기간 동안 체류가 허용되며, 해당 인력과 상업적 주재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따라 체류가 연장될 수 있음. (c) 서비스 판매인 베트남 영역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베트남 내에 소재한 소득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i) 그러한 판매가 직접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ii) 판매자가 직접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자의 서비스 판매 협상을 위하여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것에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자. 이러한 판매자의 체류는 90일 기간으로 제한됨. (d) 상업적 주재 설립을 담당하는 자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직접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ii) 서비스 공급자가 베트남 외의 당사국 영역에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내에 그 밖의 상업적 주재가 없는 경우, 베트남에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책임을 지는 법인 내 관리자 및 임원(위 (a)에 정의). 이들의 체류는 90일 기간으로 제한됨. (e) 계약 서비스 공급자(CSS)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 기업의 피고용인인 자연인은 베트남에 입국하여 90일의 기간 동안 또는 계약 존속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음. 다만, 다음 조건과 요건이 적용됨. - 그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서비스 계약을 수주하였음.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계약의 선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할 수 있어야 함. - 이들은 다음 자격을 보유해야 함: (a)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식을 입증하는 기술 자격 문서, (b) 베트남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그 전문 자격, 그리고 (c) 그 분야에서 최소 5년의 전문적 경험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서비스 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인력의 수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많아서는 아니 되며, 이는 베트남 법과 규정 및 요건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음. - 이들은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 기업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자이어야 하며, 위에 기재된 "전문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이러한 인의 입국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P 841-845, 849)및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에 대하여 허용됨.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 다만, 다음 사항 제외 - 베트남 법원에서 고객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 절차에 참가 - 베트남법에 대한 법률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변호사 조직[4]은 베트남에 다음 형태로의 상업적 주재의 설립이 허용됨. - 외국 변호사 조직의 지점 - 외국 변호사 조직의 자회사 - 외국 법무회사(로펌)[5] - 외국 변호사 조직과 베트남 법률 파트너십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외국 변호사 조직"은 하나 이상의 외국 변호사 또는 법무회사에 의하여 어떠한 상업적 법인 형태로든 외국에서 설립된 개업 변호사의 조직이다(회사, 기업, 법인 등을 포함한다).

[5] 외국 법무회사는 베트남에서 법률 사무를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외국 변호사 조직에 의하여 베트남에 설립된 조직이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문서 작성 및 공증서비스)	간의 파트너십 자문 변호사가 베트남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동종의 베트남 법률 전문가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변호사 조직의 상업적 주재는 베트남법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세무 서비스 (CPC 86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건축 서비스 (CPC 86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기업은 한국의 법인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기업은 한국의 법인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도시-농촌 개발 계획, 부문별 개발 계획을 위한 지형학, 지질공학, 수문지질학 및 환경 조사와 기술 조사 관련 서비스 공급은 베트남 정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함.[6]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일부 분야에서, 국가 안보 및 사회 안정을 위한 베트남정부의 규정에 따라,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7]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사적 개업활동의 수행을 위해서만 그리고 수의료 당국의 허가에 따라 자연인의 접근이 허용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6]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정당화되는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제한이나 규제의 유지 또는 채택을 허용한다.
[7]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정당화되는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제한이나 규제의 유지 또는 채택을 허용한다.
[8] 수의료용 미생물 변종 보관은 제외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 841−845, CPC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지점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연구 개발 서비스			
(a)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임대/리스 서비스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9)	1) 제한 없음.[9]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출자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10]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11] 2) 제한 없음. 3)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12]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베트남으로 들여오는 장비는 수출입, 표준, 기술요건, 국가 안보, 국가 통신 기간설비의 관리에 대한 관련 베트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리고 통신 허가와 주파수 및 라디오 장비 사용 허가에 대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함.
F. 그 밖의 사업 서비스			
(a) 광고서비스 (CPC 871, 다만, 담배 광고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광고 서비스를 하도록 법적으로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 합작투자 또는 사업협력계약을 설립하도록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포도주 및 증류주 광고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규정을 따름.
(b) 시장조사 서비스 (CPC 864, 다만, 86402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인 출자가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1퍼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9] 광업 및 유전장비, 상업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는 제외한다.
[10] 광업 및 유전장비, 상업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는 제외한다.
[11] 광업 및 유전장비, 상업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는 제외한다.
[12] 광업 및 유전장비, 상업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는 제외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컨설팅 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지점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경영 컨설팅 관련 서비스 - CPC 866(다만, CPC 86602 제외) - 사업자간 상업적 분쟁에 대한 중재 및 조정 서비스(CPC 866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지점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다만, 운송 차량의 적합성검사 및 운송 차량 인증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서비스가 정부의 권한 행사로 제공된다는 이유로 이전에 민간분야 경쟁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던 분야에 대한 민간 공급자의 접근을 베트남이 허용하는 경우, 민간분야 경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쟁에 대한 그러한 접근이 허용되는 날부터 3년 후부터 외국인 소유에 대한 제한 없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합작투자가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민간 분야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한 접근이 허용된 날부터 5년 후부터 제한 없음. 특정 지리적 지역에 대한 접근은 국가 안보를 사유로 제한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농업·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합작투자 또는 사업협력계약의 형태에 한정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법정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특정 지리적 지역에 대한 접근은 제한될 수 있음.[14]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1. 이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은 다음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되지 아니함: 장비, 재료 및 화학물 공급, 공급기반 서비스, 연안/해양 지원선박, 숙박 및 케이터링, 헬리콥터 서비스.			

[13] 산림개발, 희귀 야생동물 수렵 및 포획, 항공촬영, 항공파종 및 항공약제 분무 및 살포, 농업에서의 미생물 식물, 동물의 유전자원을 포함한 천연림 조사, 평가 및 개발 관련 서비스는 제외된다. 모호성 회피를 위하여, 축산업 및 종축개선은 이 약속에 포함된다.

[14]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는 GATS의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한 제한이나 규제의 유지 및 채택을 허용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이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은 GATS에 따른 베트남의 권리 및 의무와 완전히 합치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영역 또는 관할권 내에서 수행되는 석유 및 가스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베트남 정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			
	1)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상업적 주재가 없는 회사는 베트남의 적용 가능한 법에 기술된 조건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인 출자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CPC 884 및 88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인 출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15] (CPC 86751, 86752 및 86753에 한정함)	1)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상업적 주재가 없는 회사는 베트남의 적용 가능한 법에 기술된 조건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등록하도록 요구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인 출자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보수(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장비는 포함되지 아니함) (CPC 63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인 출자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B.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1) 제한 없음.[19]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는 경쟁활동에

[15] 탐사, 조사, 탐험 및 개발 관련 서비스 공급은 베트남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따른다.
[19]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은 수집 또는 배송을 위하여 현지 서비스 공급자와 제휴 하에 수행될 수 있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특급 배달 서비스,[16] 즉, 국내 또는 해외 목적지를 불문하고 다음 항목의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로 구성된 서비스: (a) 다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에 담긴 서신 송달[17]. -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 - 다이렉트 메일(DM) 가격이 다음보다 적은 서신 송달 항목의 취급은 제외됨. - 국내 배송의 경우 최하위 중량등급에 속하는 표준 국내 우편 취급에 대한 관세의 10배 - 국제 배송의 경우 US$9 다만, 이러한 항목의 총 무게가 2,000그램 미만일 경우에 한정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있어서 베트남 우체국 또는 그 자회사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됨.

[16] 특급 배달 서비스는 빠른 속도와 신뢰성에 추가하여 발신지로부터 수집,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 배송 추적, 배송 중 목적지 및 주소 변경 가능, 수취 확인과 같은 부가가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17] 서신 송달에는 편지, 엽서, 수기문 또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 등의 인쇄물 또는 청구서와 송장 등의 상업적 문서가 포함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소포[18] 및 그 밖의 물품 * 주소지 불명 물품의 취급			
C. 통신 서비스 이 양허표의 약속은 "기본통신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허를 위한 주해" (S/GBT/W/2/Rev.1) 및 "주파수 가용성에 관한 시장 접근 제한"(S/GBT/W/3)에 따라 작성됨. 이들 약속의 목적상 "비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란 전송 용량은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해저 케이블 전송 용량을 포함한 그러한 전송용량계약(장기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말함. 비 설비기반 공급자는 사내 및 허용된 공공서비스공급지점(POP) 내에서 통신 장비를 소유하는 것을 달리 배제하는 것은 아님.			
기본 통신 서비스 (a) 음성 전화 서비스 (CPC 7521) (b) 패킷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 (c) 회선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 (d) 텔렉스 서비스 (CPC 7523**) (e) 전신 서비스 (CPC 7523**)	1)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유선기반 및 이동통신 서비스:*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공급 허가를 받은 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베트남의 국제 위성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 대표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1) 제한 없음.	베트남은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 베트남이 회원국인 해저 케이블 링크 컨소시엄의 경우,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내 허가받은 케이블 육양국까지 연결된 100퍼센트 자기 소유 해저 케이블 전송 용량(예, 장기계약을 통한 회선 임대(IRU) 또는 컨소시엄 소유권)을 통제하도록 허용되고 베트남 내 허가받은 국제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와 국제 VPN 및 IXP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한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18] 도서, 카탈로그는 이 양허표에 포함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1**+7529**)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22] 2)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g) 전용 회선 서비스 (CPC 7522**+7523**) (o*) 그 밖의 서비스 - 화상회의 서비스 (CPC 75292) - 방송[20]을 제외한 비디오 전송 서비스 - 전파 기반 서비스는 다음 사항을 포함함: + 이동 전화(지상 및 위성) + 이동 데이터(지상 및 위성) + 호출 + PCS + 주파수 공용 - 인터넷 교환 서비스 (IXP)[21]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비 설비기반 서비스:* 파트너 선택에 대한 제한 없이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6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설비기반 서비스*: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합작투자 지분의 51퍼센트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 통신 분야에서 사업협력계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계약을 갱신하거나 현재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0] 방송은 일반 대중에게 TV 및 라디오프로그램 신호를 배급하는 데 필요한 연속적 전송고리로 정의되나, 사업자 간 기여회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1] 인터넷 접속 서비스(IAS) 공급자에게 그들 간 연결 및 국제인터넷백본망과의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2] 다국적 기업은 다음조건을 갖춘 법인을 의미함: a)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고 있음 b) 최소 하나의 다른 당사국에서 운영 중임. c) 최소 5년 동안 사업을 운영함. d) 당사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음. 그리고 e) 최소 하나의 당사국에서 위성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기본 통신서비스: (o*) 그 밖의 서비스 - 가상개인통신망 (VPN)[23]	1)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유선 및 이동통신 서비스:* 베트남에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공급 허가를 받은 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베트남의 국제 위성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의 대표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22]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베트남은 이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 베트남이 회원국인 해저 케이블 링크 컨소시엄의 경우,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내 허가받은 케이블 육양국까지 연결된 100퍼센트 자기 소유 해저 케이블 전송 역량(예, 장기계약을 통한 회선 임대(IRU) 또는 컨소시엄 소유권)을 통제하도록 허용되고 베트남 내 허가받은 국제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와 국제 VPN 및 IXP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러한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23] VPN 생성 전에 정의된 폐쇄 이용자 그룹의 회원들 간에 비영리목적으로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공유) 네트워크 위에 사설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로 상업적 조건으로 제공된다. 그러한 그룹은 기업그룹이나 조직, 또는 공통의 이익추구를 통하여 제휴관계가 형성된 법적 실체들의 그룹을 포함할 수 있다. VPN 서비스를 이용하는 폐쇄이용자 그룹의 초기 회원들은 권한 있는 당국이 승인한 다이얼 또는 경로 계획에 기재되어야 하며 권한 있는 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VPN 서비스 공급자는 실제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기 최소 2주(영업일 기준) 전에 회원 변경을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하고 이 2주(영업일 기준) 동안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면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회원들은 제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VPN 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없다. VPN은 제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또는 제3자 간 트래픽을 수행 또는 이전할 수 없다. VPN 서비스는 허가받은 외국인의 투자를 받은 서비스공급자에 의하여 인터넷접속서비스 및 (h)부터 (n)까지에 기재된 부가서비스와 함께 공급될 수 있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비 설비기반 서비스:* 파트너 선택에 대한 제한없이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설비기반 서비스*: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가서비스 (h) 전자메일 (CPC 7523**) (i) 음성메일 (CPC 7523**)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 (CPC 7523**) (k) 전자적 데이터교환 (EDI) (CPC 7523**)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	1)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유선 및 이동통신 서비스:*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공급 허가를 받은 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베트남 국제 위성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	1) 제한 없음.	베트남은 이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가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3**)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CPC 843**)	발 센터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22]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비 설비기반 서비스:*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6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설비기반 서비스:*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합작투자 지분의 51퍼센트를 보유하면 경영권을 확보함. 통신 분야에서 사업협력계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계약을 갱신하거나 현재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형태의 설립체로 전환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부가서비스</u> (o) 기타	1) *유선 및 이동통신 서비스:* 베트남에서 설립되고, 국제 통신 서비스 공급면허를 받은 실체와의 상업적 약정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베트남은 이 양허표에 첨부된 참조 문서의 의무를 약속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인터넷 접속 서비스 (IAS)[24]	*위성 기반 서비스:* 다음 대상에게 제공되는 위성 기반 서비스 외에는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베트남 국제 위성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따름.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역외/해상 기반 기업 고객, 정부 기관, 설비기반 서비스 공급자,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 공식 국제기구 대표 사무소, 외교대표부 및 영사관, 첨단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센터 - 위성 지구국 사용 허가를 받은 다국적 기업[22] 2) 제한 없음. 3) *비 설비기반 서비스:*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공급자와의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6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설비기반 서비스:*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허가받은 통신 서비스 공급자와의 합작투자가 허용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4] 최종 이용자에게 인터넷접근을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시청각 서비스 영화 제작, 배급 및 상영 서비스의 경우 모든 영화의 내용은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검열되어야 함.			
(a) 영화 제작 (CPC 96112, 비디오테이프 제외)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베트남에서 이들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파트너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영화 배급 (CPC 96113, 비디오테이프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베트남에서 이들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 법정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영화 상영 서비스 (CPC 9612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베트남에서 이들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법정자본의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베트남의 문화회관, 영화상영관, 공공영화 클럽 및 협회와 이동 상영팀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와 사업협력계약 또는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녹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A. 빌딩 관련 일반 건설업 (CPC 512) B. 토목 관련 일반 건설업 (CPC 513) C. 설치 및 조립 (CPC 514, 516) 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지점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에 기인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기타 (CPC 511, 515, 518)			
4. <u>유통 서비스</u>			
<u>유통 서비스의 모든 하위 분야에 적용 가능한 조치</u>: 담배와 시가, 도서, 신문과 잡지, 매체를 불문한 영상 녹화물, 귀금속 및 보석, 의약품과 약[25], 폭발물, 가공유와 원유, 쌀, 수수설탕과 첨채당은 약속에서 제외됨.			
A. 위탁 중개인서비스 (CPC 621, 61111,6113, 6121) B. 도매 서비스 (CPC 622, 61111,6113, 6121) C. 소매 서비스 (CPC 631+632, 61112, 6113, 6121)[26]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한 없음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개인적 사용을 위한 상품 유통 - 개인적 및 상업적 사용을 위한 합법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통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유통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회사는 모든 합법적 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에 관한 위탁중개업, 도매업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됨. 소매 서비스를 위한 아웃렛의 설립은 (첫 번째 아웃렛 제외) 경제적 수요 심사(ENT)[27]를 기반으로 허용됨.	1) 공급형태 1, 시장접근란에 표시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25] 이 양허표의 목적상 "의약품과 약"은 정제, 캡슐 또는 분말형태의 비의약품 영양보조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6]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적절한 훈련과 인증을 받고 자신의 판매노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된 유통업자에 의한 추가판매로 이어지는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 고정된 장소에서 벗어나서 활동하는 베트남 개별 위탁중개인에 의한 다단계판매도 포함한다.

[27] 하나를 초과하는 아웃렛 설립 신청은 미리 수립되어 대중에게 공개된 절차를 따르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승인된다. 경제적 수요 심사의 주요 기준은 특정 지리적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프랜차이징 서비스 (CPC 8929)	1)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지점 설립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제한 없음. 3) 지점의 장이 베트남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 교육 서비스 기술과학, 자연과학 및 기술, 경영관리와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국제법 및 언어교육 분야에 한정함. 아래 (C), (D) 및 (E)의 경우, 교육내용은 베트남 교육훈련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B. 중등 교육 서비스 (CPC 9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고등 교육 서비스 (CPC 923) D. 성인 교육 서비스 (CPC 92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투자 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교사는 최소 5년의 교수 경험을 보유하고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구역 내의 기존 서비스 공급자의 수, 시장안정성 및 지리적 규모를 포함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그 밖의 교육 서비스 (CPC 929, 외국어 교육 포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6. 환경 서비스 특정 지리적 구역에 대한 접근은 국가 안보에 관한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28].			
A. 폐수 서비스 (CPC 9401)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GATS I:3(c)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BOT(건설-운영-이전) 및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으로 사업 활동하는 것이 허용됨.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29]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GATS I:3(c)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공공복지 보장을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가정으로부터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것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외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BOT(건설-운영-이전) 및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으로 사업 활동하는 것이 허용됨.

[28]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약속은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정당화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이나 규제를 유지 또는 채택하는 것이 허용된다.
[29] 폐기물 수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다. 유해성 폐기물 처리 및 처분은 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이 제한됨. 이들은 현지 시도 당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수거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그 밖의 서비스 - 배기가스 정화서비스 (CPC 94040) 및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0)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GATS 1:3(c)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부 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관련 자문 서비스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환경 영향 평가 서비스 (CPC 9409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7. 금융 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a. 직접보험	1)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 외국인투자자본기업, 베트남 내 근무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보험 서비스 - 재보험 서비스	1)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외한 생명보험 (b) 손해보험 서비스 b. 재보험 및 재재보험 c.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d. 보험 부수 서비스(상담,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 사정 포함)	- 다음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을 포함한 국제 운송 관련 보험 서비스: + 다음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국제 해상 운송 및 국제 상업 항공: 운송 중의 화물, 화물 운송 차량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 국제 운송 화물 - 보험 중개 및 재보험 중개 서비스 - 상담, 계리, 위험 평가 및 손해 사정 서비스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보험회사의 손해보험 지점은 건전성 규제를 조건으로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에 관한 약속은 GATS 제6조 및 금융 서비스 부속서 제2항가호와 합치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포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약속됨. 일반 규칙으로서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의 권유는 관련 제도적 및 법적 형식 요건을 조건으로 함.			
(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1) B(k) 및 B(l)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B(k) 및 B(l)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인수 (b) 소비자 대출, 주택담보 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융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여신 (c) 금융 리스 (d)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 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한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e) 보증 및 약정 (f)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 단기금융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외환 -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선도 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 - 금괴 (h) 자금중개업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외국신용기관은 다음 형태로만 베트남에 상업적 주재 설립이 허용됨. (i) 외국 상업은행의 경우: 대표사무소, 외국 상업은행의 지점, 외국인 출자가 설립자본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업 합작투자 은행, 합작투자 금융리스회사,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리스회사, 합작투자 금융회사 및 100퍼센트 외국인투자 금융회사, 그리고 100퍼센트 외국인 소유 은행. (ii) 외국 금융회사의 경우: 대표사무소, 합작투자 금융회사, 100퍼센트 외국인투자 금융회사, 합작투자 금융리스회사 및 100퍼센트 외국인투자 금융리스회사. (iii) 외국 금융 리스회사의 경우: 대표사무소, 합작투자 금융리스회사 및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리스회사. (b) 지분 참여: (i) 베트남은 지분화된 베트남 국영은행에 대한 외국신용기관의 지분 참여를 베트남 은행의 지분 참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음. (ii) 주식매수 형태의 출자의 경우, 외국 기관 및 개인이 보유하는 각 베트남 합자상업은행의 총 지분은 달리 베트남 법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a) 베트남에 외국 상업은행의 지점 설립을 위한 조건: - 신청 전년도말 기준으로 모은행의 총 자산이 미화 200억 달러 초과. (b) 합작투자은행 또는 100퍼센트 외국인 소유 은행의 설립 조건: - 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모은행의 총 자산이 미화 100억 달러 초과.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기금 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 운용 (j) 증권, 파생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 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k)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정보와 금융 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l)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a)부터 (k)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	에 의해 규정되거나 베트남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은행 설립자본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c) 외국 상업 은행의 지점: - 지점 사무소 외부에 다른 거래점을 개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d) 외국신용기관은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100퍼센트 외국인투자 금융회사 또는 합작투자 금융회사,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 금융리스회사 또는 합작투자 금융리스회사의 설립 조건: - 신청 전년도 말 기준으로 외국신용기관의 총 자산이 미화 100억 달러 초과.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C. 증권</u> (f)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1) C(k) 및 C(l)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자기 계좌 또는 고객 계좌로 거래하는 것: -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한 파생 상품 - 양도성 증권 - 금괴를 제외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 자산	3) 외국 증권 서비스 공급자는 대표사무소 및 외국인 출자가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설립이 허용됨.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 자본에 의한 증권 서비스 공급자는 허용됨.	3) 제한 없음.	
(g)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C(i)부터 C(l)까지의 서비스에 대하여 외국 증권 서비스 공급자의 지점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운용, 연기금 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 서비스와 같은 자산 운용			
(j) 증권, 파생 상품 및 그 밖의 증권 관련 상품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k) 증권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 정보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l) (f)를 제외하고, 투자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증권 관련 서비스((l)의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은행 분야의 (l) 참고).			
8. 보건 관련 및 사회복지 서비스			
A. 병원 서비스 (CPC 9311) B. 의료 및 치과 서비스 (CPC 93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100퍼센트 외국인 투자병원,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나 사업협력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병원 서비스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최소 투자 자본은 병원의 경우 미화 2000만 달러, 외래 진료소의 경우 200만 달러 그리고 전문의 진료소의 경우 20만 달러임.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9.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			
A. 다음을 포함한 호텔 및 레스토랑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호텔 숙박 서비스 (CPC 64110) - 구내 소비를 위한 음식제공서비스 (CPC 642) 및 음료제공서비스 (CPC 643)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여행 알선 대행 서비스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에 대한 제한 없이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투자기업의 관광안내원은 베트남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서비스 공급회사는 인바운드 서비스 및 인바운드 서비스의 불가결한 일부로 입국 관광객을 위한 국내 여행 서비스만을 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연극, 라이브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 포함) (CPC 961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출자가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허용된다는 점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 전자게임업 (CPC 96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가를 받은 베트남 파트너와의 사업협력계약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함. 외국인 출자는 합작투자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1. 운송 서비스			
A. 해상운송 서비스 (a) 연안운송을 제외한 여객 운송 (CPC 7211) (b) 연안운송을 제외한 화물 운송 (CPC 7212)	1) 국제 화물 운송 외에는 약속 안함.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베트남 국적 선단 운영 목적의 등록 회사 설립: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전체 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됨. 외국 선원은 베트남 합작투자가 소유한 베트남 국적 선박(또는 베트남에 등록된 선박)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선박 전체 피고용인의 1/3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선장 또는 최초 최고책임자는 베트남 시민이어야 함. (b) 국제 해운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30]:	1) 국제 화물 운송 외에는 약속 안함.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국제 해운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다음 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1. 도선 2. 예선지원 3. 식량, 연료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항만 관리인 서비스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 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 보수 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서비스

[30] "국제 해운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외국운송회사가 자신이 운송하는 화물과 관련되고 고객에게 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현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서 국제해운은 실질적인 요소를 구성하며 해당 외국운송회사에 의하여 제공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외국 운송회사는 100퍼센트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 기재된 (1)에서 (7)까지의 활동만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 1. 견적부터 송장작성까지 고객과의 직접 연락을 통한 해운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2. 화물 소유주를 대신한 업무수행 3. 요구되는 사업 정보의 제공 4. 통관 문서 또는 운송되는 화물의 원산지와 성격 관련 그 밖의 문서를 포함한 운송 문서에 관한 서류 작성 5. 통합운송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연안운송 서비스를 포함한 베트남 국적 선박에 의한 해운 서비스 공급 6. 필요한 때, 선박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수행 7. 회사에 의하여 운송되는 화물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 내륙 수로 운송 계약의 협상 및 서명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해운대리업 서비스 접근[31]
해운 부수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1] 추가적 약속란에 언급된 해운대리업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 내륙수상, 해안 및 내륙운송과 관련 부수 서비스가 이 양허표에 달리 완전하게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복합운송사업자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국제화물의 지속적인 운송을 위하여 베트남 해운대리업 서비스 공급자를 통하여 트럭, 철도차량 또는 바지선 및 관련 장비를 임차하거나 빌릴 수 있어야 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CPC 7411)[32]	3) 외국인 출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 설립이 가능한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통관 서비스[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소유 제한없이 합작투자가 설립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3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내륙 수상 운송 (a) 여객 운송 (CPC 7221) (b) 화물 운송 (CPC 722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서비스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총 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베트남 파트너와 설립한 합작투자를 통하여서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32] 공공영역 점거의 경우, 공공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33] "통관 서비스" (또는 "관세사서비스")는 이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 이 공급형태에 대한 약속은 실현 가능하지 아니하다.

[34]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는 컨테이너의 하역, 수선 및 선적준비작업을 위하여 항구나 내륙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안함.	안함.	
C. 항공 운송 서비스 (a)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항공사는 베트남에 있는 발권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컴퓨터 예약 서비스	1)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베트남 통신당국의 관리 하에 있는 공공 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 외에는 제한 없음. 2) 공급형태 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3) 공급형태 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항공기 유지 및 보수 (CPC 886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100퍼센트 외국인투자 기업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철도 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 (CPC 7111) (b) 화물 운송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외국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총 법정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베트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PC 7112)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투자를 통하여 화물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도로 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 (CPC 7121+7122) (b) 화물 운송 (CPC 712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사업협력계약 또는 외국인 출자가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를 통하여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시장의 필요성[35]을 조건으로 외국인 출자가 5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작투자가 화물 운송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설립될 수 있음. 합작투자의 운전인력은 100퍼센트 베트남 시민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모든 운송 형태의 부수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외국인 출자가 50퍼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35] 고려되는 기준은 특히 다음과 같다: 신규 일자리 창출, 외환계정 흑자, 경영기법을 포함한 선진 기술의 도입, 산업공해 감소, 베트남 종업원 직업교육 등.

공급형태: 1) 국경 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및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a)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제외) (CPC 7411의 일부)	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보관 및 창고 서비스 (CPC 742) (c)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 (CPC 748)[3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CPC 749의 일부)[37]	1) 화물 중개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베트남 파트너와 함께 설립한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화물 중개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6] 화물 운송 주선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인수, 문서 작성 및 영업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송하인을 대신하여 선적물 운영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 이 공급형태에 대한 약속은 실현 가능하지 아니하다.

[37] 다음 활동을 포함: 청구서 감사,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계근 및 샘플링 서비스, 화물 수취 및 인수 서비스, 운송서류 작성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화물주를 대리하여 제공된다.

참조 문서

I. 적용범위

다음은 기본통신 서비스를 위한 규제적 틀에 대한 정의 및 원칙이다.

정의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할 수 없는 것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을 말한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이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1. 경쟁보장장치

1.1 통신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1.2 보장장치

상기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는 것, 그리고

다.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를 그 공급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2. 상호접속

2.1 이 부분은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 통신 전송 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에 적용된다.

2.2 보장되는 상호접속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될 것이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요율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의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품질로 제공된다.

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아니하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요율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종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2.3 상호접속 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 가능한 절차는 공개될 것이다.

2.4 상호접속 약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접속협정이나 표준상호접속제안을 공개할 것이 보장된다.

2.5 상호접속: 분쟁 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가. 언제라도, 또는

나.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이후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이 이전에 수립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제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일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것이다.

3. 보편적 서비스

어떠한 당사국이라도 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당사국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4.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이 공개될 것이다.

가. 모든 허가 기준 및 허가 신청에 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나. 개별 허가의 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는 신청자에게 통지될 것이다.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로부터도 분리되어 있고 어떠한 기본통신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이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다.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 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될 것이나, 특정한 정부의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8.3조 면제 리스트

분야 또는 하위분야	제8.3조와의 불합치성을 보여주는 (분야에 적용될) 조치에 대한 설명	조치가 적용되는 국가	의도되는 존속기간	최혜국 대우 면제 필요성을 창출하는 조건
모든 분야 상업적 주재	양자투자협약에 따라 특혜대우를 제공하는 조치	베트남과 양자투자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	무기한	베트남 내 투자 촉진
시청각 서비스 -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상물의 제작, 배급 및 상영	시청각 작품 공동제작협정의 적용 대상인 시청각 작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그러한 협정을 기반으로 하는 조치	현재 또는 미래에 그러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이 발효되는 WTO 회원국	무기한	이러한 협정의 목표는 관련 국가들 간의 문화적 연계성을 증진하는 것임.
시청각 서비스 -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상물의 제작 및 배급	시청각 작품 및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그러한 작품의 공급자에게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	문화협력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약을 서명한 WTO 회원국	무기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베트남이 장기적인 문화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임.
시청각 서비스 - 대중에 대한 방송 전송을 통한 시청각 작품의 제작 및 배급	방송 전송 접근에 관한 특정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작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제공하는 조치	문화협력분야에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 WTO 회원국	무기한	이러한 조치들은 그 분야 내에서 베트남 내부 및 지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운	외국 운송회사가 완전히 소유하는 자회사의 통상적인 영업 활동에 해당되는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조치	해운협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 모든 WTO 회원국	5년	양자 협약
해상운송 서비스 - 내륙 육로 트럭 화물 운송 - 화물 보관과 창고, 및 - 컨테이너 야적장	3가지 하위분야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간의 해운협약에 따른 특혜 대우의 대상이 됨.	싱가포르 공화국	10년	양자 협약

제9장
투자

제1절
투자

제9.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다. 제9.9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1]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3.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나. 제9.9조를 제외하고,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가 배타적으로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에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나,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에 수반된 모든 조건, 또는

다. 특정 서비스 분야[2]가 부속서 8-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한쪽 당사국의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8장(서비스무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4. 제3항다호에도 불구하고,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 그리고 제9.14조 및 제2절[3]은 그것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제8장(서비스무역)의 규정에 따라 한쪽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는 이 장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 이 장과 제8장(서비스무역) 간 관계의 목적상, 양 당사국은 서비스가 1991년 7월 10일자의 MTN.GNS/W/120 문서에 포함된 WTO 서비스분야별분류표에 기재된 서비스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분류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분야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에 언급된 조에 대한 부속서 및 예외는 이 항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업적 주재[4]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9.2조
제8장(서비스무역)과의 관계

이 장과 제8장(서비스무역)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제8장(서비스무역)이 우선한다.

제9.3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 및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9.4조
최혜국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영역 내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대우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기존의 모든 양자, 지역 또는 국제협정, 또는 모든 형태의 비당사국과의 경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에 따라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특혜적 대우, 그리고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모든 협정이나 약정에서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모든 특혜적 대우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이 자신이 당사자인 어떠한 미래의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비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그러한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로 인하여 부여되는 혜택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4] 상업적 주재는 제8장(서비스무역)에서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9.5조
대우의 기준[5]

1. 각 당사국은 국제관습법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이 조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국제관습법의 적용 가능한 규칙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심판 절차에서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적용대상투자의 물리적 안전에 관련된,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각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3.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아니한다.

제9.6조
손실에 대한 보상

1. 각 당사국은 전쟁 또는 그 밖의 무력충돌, 또는 반란, 폭동, 소요 또는 그 밖의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의 결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손실을 입는 경우,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징발, 또는

   나. 상황의 필요상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다른 쪽 당사국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적용대상투자 또는 그 일부의 파괴

다른 쪽 당사국은 그 투자자에게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각 경우에 맞게,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한다. 모든 보상은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이도록 한다.

제9.7조
수용 및 보상[6]

[5] 이 조는 부속서 9-가에 따라 해석된다.
[6] 이 조는 부속서 9-나에 따라 해석된다.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수용이나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를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보상은

가. 과도한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수용이 발생하기 직전이나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때 중 적용가능한 시점에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다.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그 통화에 대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수용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적절한 이자를 포함한다. 모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보상은 수용 당사국의 통화나,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지불된다.

4. 투자자가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지불을 요청하는 경우, 모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는 제1항다호에 언급된 보상은 지불일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지불통화로 환산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수용 당사국인 경우,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는 베트남 국내 법 및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은 토지 관련 모든 수용 조치는 보상의 목적으로 이를 지불할 때 상기 법 및 규정에 따른다. 그러한 보상은 보상액 관련 상기 법과 규정의 후속적 개정이 토지 시장가격의 일반적 경향을 따르는 경우 그러한 개정에 따른다.

6. 이 조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이나 지식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8조
송금[7]

1.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모든 송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다는 이 조에 적용된다.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액

나. 이윤, 배당, 자본이득, 그리고 적용대상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청산에 따른 대금

다. 이자, 로열티 지불, 관리 수수료, 그리고 기술지원 및 그 밖의 수수료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현물수익이 한쪽 당사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승인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바. 사회보장, 공적 퇴직 연금 또는 강제 저금 제도,

사. 피고용인의 퇴직금, 그리고

아. 과세

제9.9조
이행요건

1.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부과 또는 강요하지 아니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사용을 달성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이에 대하여 선호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투자자의 투자와 연계된 외화유입액과 관련시킬 것

라. 투자자의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자국 영역 내에서의 상품의 판매를 수출량이나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관련시킴으로써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마.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을 수출할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기술,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지식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세계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제1항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이나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익의 수령 또는 지속적 수령을 제1항마호부터 제1항사호까지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규정된 것 외의 어떠한 요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조는 사적 당사자 간 약속, 의무부담 또는 요건의 강제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있는 「무역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10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 국적의 자연인을 임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인 자국 기업의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요건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1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그리고

나.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이나 그 기업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9.12조
비합치 조치

1.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에서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 정부, 또는

2) 지방정부[8]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에 대하여 부속서 I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의 그 개정

2.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채택되고 부속서 II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달리 처분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후원 하에 체결된 그 밖의 조약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5.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발효 직후 부속서 I 및 II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

가. 제9.3조, 제9.4조, 제9.9조 및 제9.10조는 부속서 I 및 II가 발효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전반적인 이익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상 시점에서 양국의 투자에 관한 협정의 유보 목록에 있는 가장 발전된 수준의 자유화 약속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9]

제9.13조
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1. 제9.3조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대상투자가 한쪽 당사국의 법과 규정[10]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한쪽 당사국이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특별형식을 규정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형식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는 보호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9.3조 및 제9.4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정보수집 또는 통계상의 목적을 위해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게 그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투자자 또는 적용대상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모든 비밀 영업정보를 보호한다.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관련하여 정보를 달리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14조
대위변제

1. 한쪽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자국 투자자에 의한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이나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보장을 부여하고, 이 계약 또는 재정적 보장에 따라 한쪽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지불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대위변제의 원칙에 따라 그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권리를 인정한다.[11]

2. 한쪽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그 투자자에게 지불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및 청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국 또는 그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I과 II의 유보 목록에 대한 협상은 이 장 및 이 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경우, 이 요건은 적용대상투자가 베트남의 법과 규정에 따라 등록되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한다.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위변제 또는 이전되는 권리 또는 청구는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보다 크지 아니한다.

당사국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추구하지 아니 한다.

제2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9.15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의 적용범위[12]

1. 이 절은 적용대상투자의 경영·영업·운영 또는 매각이나 그 밖의 처분과 관련하여, 한쪽 당사국이 제9.11조부터 제9.14조까지를 제외한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가 다음에 대하여 초래되었다는 청구와 관련하여, 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에 적용된다.

가. 그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또는

나. 그 투자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용대상투자

2. 한쪽 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자연인은 이 장에 따라 그 당사국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9.16조
협의 및 교섭

투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및 분쟁당사국은 우선 협의 및 교섭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협의는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의사통보 제출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제9.17조
중재 청구 제기를 위한 의사 통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서면 의사 통보(이하 “의사 통보”라 한다)를 청구 제기 전 최소 90일 전에 분쟁당사국에 전달한다. 의사 통보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 및 주소

나.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장의 규정과 그 밖의 모든 관련 규정

다. 쟁점이 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청구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12] 투자는 이 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구하는 구제조치와 청구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2.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또한 의사 통보와 함께 그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전달한다.

제9.18조
중재 청구 제기에 대한 선행 조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9.1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에 동의할 것

나. 청구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최소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다. 주장되는 위반에 대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최초로 인지하였거나 최초로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제9.17조에 따라 요구되는 의사 통보를 전달하였을 것, 그리고

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그리고 청구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에 대한 지분에 손실 또는 손해를 위한 것인 경우, 그 기업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른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9.15조제1항에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분쟁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른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시 가처분 절차는 예외로 한다.[13]

2. 이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동의 및 포기는 분쟁당사자국에 전달되며, 중재 청구 제기에 포함된다.

3. 제1항마호에 따른 기업의 포기는 분쟁당사국이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지배권을 박탈한 경우에 한정하여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9.20조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동의는 무효화된다.

제9.19조
중재 청구 제기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시 가처분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될 수 있다.

1. 제9.18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다음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14]

가. 양 당사국이 모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절차의 절차규칙

나. 한쪽 당사국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또는

라.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그 밖의 모든 중재기관에 대하여, 또는 그 밖의 모든 중재규칙

2. 이 절에 의하여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이 중재를 규율 한다.

3. 투자자가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제1항에 규정된 어떠한 중재 메커니즘에 그 분쟁을 제기하면, 그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4. 청구는 다음의 시점에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재 요청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제3부제2조에 따른 중재 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 통보가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라. 제1항라호에 따라 선택된 어떠한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에 언급된 중재 통보나 중재 요청이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제9.20조
중재에 대한 동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동의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 의한 중재 청구 제기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2장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9.15조에 언급된 분쟁을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2조

제 9.21조
중재인

1.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중재인은

가. 국제공법, 국제 무역 또는 국제투자 규칙, 또는 국제 무역 또는 국제 투자 협정에서 야기된 분쟁 해결에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독립적이며, 제휴 관계도 없고 지시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들은 중재인의 보수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일반적인 중재인 보수가 적용된다.

4. 제9.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 외의 중재판정부가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날부터 90일 내에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하나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의장 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9.22조
병합

1.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되며, 이 절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규칙에 따라 절차를 수행한다.

2.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9.19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복수의 청구가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그러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나. 중재판정부가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국은 임명권자가 중재판정부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을 구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의 성명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명령의 근거

4. 분쟁당사국은 명령을 구하는 대상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에게 요청 사본을 송달한다.

5. 사무총장은 요청의 접수 후 60일 내에 사무총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설치한다.

6. 중재판정부가 이 조에 따라 설치된 경우, 제9.19조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였고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중재판정부에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이 포함되도록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명령의 근거

7. 제9.19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23조
중재의 수행

1. 중재판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서면 통보하고, 중재판정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 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2.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중재를 개최하며, 다음에 따라 선택된다.

가. 중재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따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나. 중재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경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3.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회의 및 심리를 위한 장소로 법적 중재지가 아닌 곳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하게 결정할 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 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성을 고려한다.

4. 관할권 또는 청구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쟁점이 선결적 항변으로 제기된 경우, 중재판정부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본안 절차 전에 그 문제를 결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에 자신들의 견해 및 관찰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받는다. 중재판정부는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달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또는 권한 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경우, 그러한 취지의 판정을 내린다.

5. 중재판정부는, 정당한 경우, 항변을 제출하거나 반박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및 수수료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불되도록 판정할 수 있다. 그러한 판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청구 또는 항변이 경솔하거나 명백히 근거가 없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6.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지 아니하며, 제9.15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할 수도 없다. 이 조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7.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 결정 및 판정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의 언어는 다음으로 한다.

가. 한국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나. 베트남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베트남어와 영어

제9.24조
공동 해석

1. 이 협정의 규정[15]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이 절에 따른 판정은 그 해석에 합치한다.

2.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 또는 예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분쟁당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그 문제를 해석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 요청의 전달 후 60일 내에, 공동위원회는 중재판정부에 자신의 해석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그 해석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공동위원회가 60일 내에 해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9.25조
최종 판정

1.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1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모든 부속서를 포함한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또는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을 판정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국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지 아니한다.

제9.26조
판정의 최종성과 집행

1.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 간 그리고 그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제3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3.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하지 아니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5. 이 절에 따라 설치된 투자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 분쟁당사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있다.

7.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1조의 목적상, 상업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9.27조
문서의 송달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아래 장소로 송부된다.

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하노이 트란 푸 스트리트 60
베트남 법무부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제3절
정의

제9.28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임명권자란 다음을 말한다.

가. 제9.19조제1항가호 및 나호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중재 또는 조정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

나. 제9.19조제1항다호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의 경우,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 또는

다. 분쟁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인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되고, 그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16],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1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경우 "허용된"의 의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서면으로 등록되거나 승인된" 것을 말한다.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란 제2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한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자들이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란 제2절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분쟁당사국 중 하나를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1인기업・합작투자 또는 협회 그리고 기업의 지점[17]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 및 규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점[18]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 협정 및 그에 대한 모든 개정에 따라 지정한 모든 통화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국에 의한 절차행정을 위한 추가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을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년 3월 18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이 투자의 특징을 지닌 것을 말한다.[19]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의 지분 참여, 그리고 선물과 옵션을 포함한 그로부터 파생한 권리

다.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로부터 파생한 권리를 포함한 기업의 그 밖의 형태의 채무증서[20]

---

[1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국의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용어에서 지점이란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고 구성된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비당사국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국의 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9]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에 들어있는 명령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 채권, 회사채 및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라.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 그리고 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계약에 따른 그 밖의 사업 허가권[21]

마. 지식재산권, 그리고

바.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저당권·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

그러나, **투자**는 오직 다음으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 한쪽 당사국 영역 내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의 자연인 또는 기업에 판매하기 위한 상업적 계약, 또는

아. 무역 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확장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22]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고자 시도하거나[23],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한쪽 당사국[24]의 자연인 또는 한쪽 당사국의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소유한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뉴욕협약이란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 당사국이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당사국을 말한다.

수익이란 투자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투자로부터 파생된 금액을 말하며, 특히 모든 이윤, 이자, 자본수익, 배당금, 로열티 또는 수수료가 해당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무총장이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그리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2010년 개정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25]

---

[21] 사업 허가권은 건설운영양도 및 건설소유운영과 같은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기금을 포함할 수 있다.
[2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하고자 "시도하는" 투자자란, 적용 가능한 경우,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승인 절차 개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비당사국의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2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하고자 "시도하는" 투자자란, 적용 가능한 경우,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승인 절차 개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이해한다.
[2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2절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에 대한 투명성 규칙은 이 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9-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9.5조 및 부속서 9-나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 "국제관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 인하여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9.5조에 대하여, 국제관습법상 적용 가능한 규칙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및 이해를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지칭한다.

부속서 9-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나. 제9.7조제1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다. 제9.7조제1항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1)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한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요구한다.

가)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한다.

나)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다)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26]

2)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과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27] [28]

[2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의 경우,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 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혹은 투자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다.

[2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는 당사국이 자국의 헌법에 따라 규제 행위를 행사할 권리를 포함한다.

[2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 의 목록은 포괄적이지 아니하다. 이는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부속서 9-다

송금

1. 이 장 또는 제8장(서비스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경우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나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경제적 또는 금융적 혼란이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 내에 또는 상황이 더 이상 그러한 조치의 도입이나 유지를 정당화하지 아니할 때 점진적으로 폐지된다.[29]

나. 「국제통화기금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협정에 합치한다.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마. 일시적이며,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바.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그리고,

사. 부속서 I, 부속서 II[30] 및 부속서 8-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유보목록에 따라, 제9.3조 및 제8.2조(내국민 대우)와 제9.4조 및 제8.3조(최혜국 대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31]

3. 이 장 또는 제8장(서비스무역)의 어떠한 규정도 협정에 합치되는 환율 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당사국이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2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는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넘어 연장될 수 있다.
[30] 이 호는 양 당사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의 유보목록이 발효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3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에 규정된 유보목록에 따라 제9.3조 및 제9.4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8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부속서 8-라(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유보목록에 따라 제8.2조 및 제8.3조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각각 적용된다.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0.1조
일반 규정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리고, 양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 증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한 양 당사국 간 협력 제고 및 세계적으로 보다 폭넓은 전자상거래의 사용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0.2조
관세

1.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세계무역기구 하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협정에 합치되게, 전자적 전송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내용물에 대하여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전자인증, 전자서명 및 디지털 인증서

1. 각 당사국은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법령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전자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기술 및 실행 모델을 상호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전자거래가 전자인증에 대한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허용하는 법령, 그리고

   다. 인증 기술 및 실행 모델의 인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법령

2.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당사국이 국제적으로 수용된 기준에 근거하여 발행하거나 인정한 디지털 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업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인증서의 상호 운용성을 장려한다.

제10.4조
국내 규제의 틀

각 당사국은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5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소비자를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자국의 관련 국내 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그 밖의 형태의 상거래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한다.[1]

제10.6조
개인정보 보호

1.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전자상거래상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국제 표준 및 관련 국제 기구의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이전되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10.7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2]

3.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종이 없는 무역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8조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

[1]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이나 규정을 제정하거나 또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는 날 전에는,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니지 아니한다.

[2] 베트남의 경우, 이 의무는 가능한 경우 각 분야에 대한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할 수 있는 연구 및 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나. 개인정보 및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와 사기 사건의 신속한 조사 및 해결 촉진 등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의 보안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사용하는 무역행정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사용하도록 장려

라. 전자상거래의 법적 틀을 이행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 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모색, 그리고

마. 전자상거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겪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국경을 넘어 이전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권한 있는 당국과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협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10.9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디지털 인증서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참가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그 참가자와 달리 관련된 전자 문서 또는 파일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제11장
경쟁

제11.1조
목적

양 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관계에서 왜곡되지 아니한 경쟁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 경쟁법[1] 및 정책의 이행, 그리고 경쟁 사안에 대한 협력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양해한다.

제11.2조
법 집행 원칙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자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증진하는 포괄적인 경쟁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며,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당사국의 경쟁법 집행은 투명성, 시의적절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과 합치한다.

제11.3조
이행

1. 양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 집행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법과 규정에 규정된 면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정 경쟁을 다루고 있는 자국 법과 규정을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에 규정된 모든 면제는 투명하고 공공 정책이나 공익에 근거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 위반을 판정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모든 공식적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관련 사실의 조사 결과와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논거 및 법률적 분석을 기술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그 결정이 관련 당사자에 통보되도록 더욱 보장한다. 그 결정본은 자국 국내 법과 규정에 의하여 대중 공개로부터

---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경쟁법은 다음을 효과적으로 다룬다.

가. 시장 내 신규 진입 방해, 경쟁의 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이나 효과로서 가지는 기업 간 합의, 기업 단체의 결정 및 동조적 관행

나. 하나 이상의 기업에 의한 지배적 또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다. 기업의 흡수합병, 기업의 신설합병, 기업의 영업양수, 기업 간 합작투자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 결합을 구성하는 기업의 행위인 경제적 결합

보호되는 영업비밀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자국 경쟁법의 집행 정책과 관행에 관한 공공 정보를 요청 당사국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5. 각 당사국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인에게 심리에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하여 제재 또는 구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 인에게 자국 경쟁법에 따라 행정 재심과 사법적 재심을 통하여 그 제재 또는 구제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1.4조
경쟁법의 적용

1.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들은, 국가 소유이든 민간 소유이든 그 소유권에 관계없이, 제11.2조에 언급된 경쟁법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그러한 규칙의 적용은 그 기업에게 맡겨진 특정한 공공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가 독점 분야 및 영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자국 경쟁법에 근거하여 어떠한 반경쟁적 행위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11.5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시키고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당국 간 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국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협력하는 것에 합의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인지했을 때,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활동을 자국의 경쟁당국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적절한 때에 통보한다. 다만, 그 통보는 각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어떠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자국의 중요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때에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은 관련 경쟁당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완전한 자유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그리고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호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

제11.6조
정보의 교환

한쪽 당사국의 경쟁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 경쟁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 경쟁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이는 비밀 정보가 아니어야 한다.

제11.7조
비밀 유지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경쟁당국에 의하여 비밀로 제공된 모든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2. 한쪽 당사국 경쟁당국은 정보를 제공한 경쟁당국이 승인하지 아니한 그 어떤 실체에게도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8조
협의

1. 양 당사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거나 이 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그리고 자국 경쟁법 및 정책을 개발, 유지, 및 집행할 각 당사국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한 요청 시, 각 당사국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2.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11.9조
기술 지원

양 당사국은 경쟁 분야에서 양국의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다음의 기술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가. 경쟁법 및 정책의 증진과 집행에 관련된 경험의 교환

나.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교환

다. 훈련 목적의 공무원 교환

라. 경쟁법 및 정책에 관한 자문가 및 전문가 교환

마. 강연자, 자문가, 또는 참석자로서의 공무원의 경쟁법 및 정책에 대한 훈련 과정 참여

바. 경쟁 주창 프로그램에 대한 공무원의 참여

사. 경쟁 주창 및 경쟁 문화 증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기술협력

제11.10조
분쟁해결

제15장(분쟁해결)의 규정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경쟁청 및 경쟁위원회

또는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나.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경쟁법」과 그 이행 규정, 그리고

다. 이 협정 발효 후 상기 언급된 법령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2.1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특히 기술 혁신, 기술 이전과 보급 및 무역과 관련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의 역할 제고

나.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 및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법 제도의 차이점을 감안하여,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창출, 활용, 보호 및 집행을 통하여 무역과 투자에의 장애를 감소

다. 지식재산 소유자의 권리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에 대한 사용자 및 공동체의 정당한 이익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 그리고

라.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교역을 제거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집행조치와 절차가 그 자체로 적법한 교역에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

제12.2조
일반 원칙

1. 각 당사국은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부여하고, 그러한 권리의 집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2. 이 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범주의 지식재산에 관하여, 각 당사국은 그러한 지식재산권의 보호[1]와 향유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와 제5조에 따라 그러한 권리로부터 유래하는 모든 혜택과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2]에게 부여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조항들을 이행하는 적절한 방법을 자국의 법 제도와 관행 내에서 자유로이 결정한다.

---

[1] 제2항의 목적상, "보호"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가용성, 취득, 범위, 유지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그리고

나. 제12.8조에서 규정하는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신호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

[2] 이 장의 목적상, "국민"이라는 용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4. 각 당사국은 개발 및 기술 목표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의 내재된 공공정책 목표를 인식한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3조
국제 협정의 확인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른 지식재산 협정 하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협정 하에서 양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 권리와 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의 협정을 비준하거나 가입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가.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라 한다) 저작권 조약」(1996년), 그리고

나. 「WIPO 실연·음반 조약」(1996년)

한쪽 당사국이 위의 협정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으로부터 그러한 협정의 가입과 이행의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4조
더 광범위한 보호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하게 할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5조
상표

상표 보호

1. 각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상표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하지만,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도형적인 요소나 상품의 형상 또는 그의 포장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표권의 예외

3.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명상표

4.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상표가 유명상표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상표가 그 당사국에서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5.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967년)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3]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준용된다. 다만,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6.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가.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표와 선행 유명상표와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나. 그 상표의 사용이 오인을 초래하거나, 그 상표와 선행 유명상표의 소유자와의 관계를 기만하는 경우, 또는

다. 그 상표의 사용이 선행 유명상표의 명성에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유명상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조치를 준용하도록 권장된다.

상표의 등록과 출원

7. 각 당사국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자적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출원인은 그러한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상표 등록 제도를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상표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한다.

---

[3] 어떤 표지가 유명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목적상, 어떤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대중의 분야 이상으로 확장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과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제12.6조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부정경쟁으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공정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행위는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특히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성격의 모든 행위

나. 경쟁자의 영업소, 상품 또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신용을 해하게 하는 성격의 거래상의 허위 주장

다. 상품의 성질, 제조방법, 특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수량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거래상의 표시 또는 주장, 그리고

라.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유발할 목적과 같이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명시된 목적으로 각 당사국 내의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 취득 또는 사용할 권리를 보유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에 따른 미공개 정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적절한 구제책을 수립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자신의 사업 이익이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침해된다고 간주하는 어떤 사람도 소송을 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의 중단 또는 금지, 그러한 행위를 구성하는 상품의 폐기, 그러한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와 도구의 제거, 또는 그러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
특허

1. 각 당사국은 특허가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특허 대상에서 다음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거나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용을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한 발명. 다만, 그러한 제외는 그 이용이 자국 국내 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나.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외과적 방법, 그리고

다.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비생물적이고 미생물적인 방법 외에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적인 방법

3. 각 당사국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의 통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공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지에 포함된 정보를 무시한다.

가. 공지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실시 또는 승인되거나, 특허출원인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4], 그리고

나. 공지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우선심사

5. 각 당사국은 청구된 발명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조건으로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출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 출원의 공개 이후에 출원인 외의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 또는

나. 특허 출원인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를 위한 준비 중인 경우

제12.8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방식과 형태를 불문하고, 그의 저작물, 실연, 음반 및 방송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4] 양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호에 포함된 특허 대상의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 예외의 확대를 검토하는 데 동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미 발행된 음반을 방송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사람[5] 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이들에게 보상금[6]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권리의 집중관리

3. 양 당사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집중관리 단체들에 위임된 권리의 효과적인 관리와,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의 사용에 비례하여 징수된 보상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우수한 관리 관행의 문맥에서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저작물 또는 그 밖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물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의 상호 송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에 콘텐츠의 더욱 용이한 접근 및 전달을 상호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의 징수단체 간의 약정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그들 각각의 징수단체의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의 보호

5. 각 당사국은 다음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행정 또는 형사 조치를 제공한다.

가. 장치 또는 시스템이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신호를 그러한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하는 데 주로 도움이 될 것을 알거나 알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그 장치 또는 시스템을 제조, 조립, 변경, 수입, 수출, 판매, 리스 또는 달리 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나. 암호화된 위성 신호로 고안된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그 신호의 적법한 배포자의 허락 없이 해독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로 수신하거나, 또는 재배포하는 행위

제한과 예외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서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특별한 경우로 국한한다.

제12.9조
지식재산권의 집행

일반 의무

[5] "사람"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양해된다.

[6] 보상은 사용자와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 간에 합의하거나, 또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달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1. 양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특히 동 협정 제41조부터 제61조까지 규정된 지식재산권의 집행 규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저작자 또는 소유권자의 추정

2.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과 관련된 민사, 형사 및 적용 가능한 경우 행정 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 성명이 표시되는 인을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의 지정된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한다.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

3. 각 당사국은 민사 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이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결과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4. 각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국내 법과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국의 사법 당국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 특허 침해 또는 상표 침해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의 종결 시 패소자로 하여금 승소자에게 소송비용 또는 수수료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5.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최소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및 실연에 대하여, 그리고 상표위조의 경우에, 법정손해배상액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액수로 설정된다.[7]

6.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 사법절차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사법당국이 침해 행위와 관련된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재료 및 도구의 압류 그리고 최소한 상표 위조에 대하여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서류의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8]

7.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와 관련하여, 사법당국이 소송절차에서 생산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또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인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8. 각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민사 구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국의 사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잠정조치

9. 각 당사국은 사법당국이,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사법당국은 또한, 적절한 경우, 특히 지연으로 인하여

[7] 어느 당사국도 제5항을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승인이나 동의 하에 행동한 제3자에 대한 침해 소송에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8] 당사국은 이 의무를 잠정조치를 통하여 완수할 수 있다.

권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증거가 훼손될 입증할 만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일방 절차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0. 각 당사국은 잠정조치에 대하여 사법당국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하였다고 충분한 정도의 확실성으로 사법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구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피고를 보호하고 권리남용을 방지하는 데 충분하며 그러한 절차의 이용을 불합리하게 억지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정하여진 합리적인 담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

11. 각 당사국은 위조된 상표 상품이나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9] 이 반출되어 자유로이 유통되는 것을 권한 있는 당국이 정지시키는 절차를 개시하는 모든 권리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상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견 성립된다고 권한 있는 당국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이 의심 상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12. 각 당사국은, 프라이버시 또는 비밀정보에 관한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유치 또는 압류한 경우, 지원을 요청한 권리자에게 그 권리자가 구제를 추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상품의 물품 명세 및 수량, 탁송인,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탁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알려진 경우 그 상품의 원산지국과 그 상품의 제조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13. 각 당사국은 세관당국에 의하여 반출이 정지되고, 불법복제 또는 위조로 몰수된 상품은 권리자에게 어떤 손해도 가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폐기되거나 상거래에서 제거되도록 규정한다. 위조된 상표 상품에 대하여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으로는 그 상품의 상거래로의 반출을 허용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형사 절차와 구제

14.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 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 범죄의 경중에 상응하여 적용되는 처벌의 수준에 합치되게, 이용 가능한 구제는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을 포함한다.

인터넷 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특별 조치

15. 각 당사국은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9] 이 항의 목적상, "위조된 상표 상품"과 "불법복제된 저작권 상품"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51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12.10조
협력

1.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 제도의 효율과 발전을 유익하고 균형있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한다.

2.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 당사국은, 가능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요청한 당사국의 국내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획득, 보호, 활용 및 집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당사국에 제공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 제도, 행정, 등록 및 보호에 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또한, 각국의 지식재산 부서를 통하여, 다음의 쟁점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가. 지식재산권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역량 강화

나. 대중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지식재산 행정 및 등록 시스템

다. 지식재산권 교육 및 대중 인식

라. 지식재산 상업화 및 기술 이전

마. 품질관리 절차의 개선,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영역

5. 양 당사국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행정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그 밖의 대상의 출원과 등록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 제공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추가로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지식재산 쟁점에 대한 대화를 증진하기로 또한 합의한다.

가. 이 조항에 따른 협력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접촉선 지정, 그리고

나. 상대국의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이해관계자 간의 교류 권장

7. 협력 활동은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재원의 가용성의 제한을 받아 수행된다.

제12.1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지식재산”은 이 장 및/또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부 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대상이 되는 모든 지식재산 분류를 일컫는다.

제13장
경제협력

제13.1조
기본원칙

1. 양 당사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2. 경제협력의 이행을 증진하고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각 정부 간의 협력을 수행하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상대방이 양 당사국의 정부가 아닌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양 당사국이 상호 관심을 가지는 협력 분야에 대한 양 당사국의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은 적절한 형태의 활동으로 협력할 것이다.

3. 양 당사국 간에 진행 중인 경제협력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양 당사국은 이 협정 외의 틀에 따른 기존의 경제협력을 존중하고 장려한다.

4.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규정된 경제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규정들을 인정한다.

제13.2조
협력 분야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협력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한다.

2. 산업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

   나. 철강 및 금속

   다. 석유화학제품

   라. 전자제품

   마. 기계

   바. 의류, 섬유 및 신발

   사. 유통 및 물류,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3. 농업, 수산업 및 임업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축산 및 작물 생산

나. 원예

다.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의 투자여건 개선

라.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 법과 규정에 따른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 투자자의 수요 충족

마. 수산 자원 관리

바. 산림 관리

사. 농업 기반 및 식품 가공,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4. 무역 규칙 및 절차 관련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나. 통관절차

다. 원산지 규정 및 그 밖의 관세양허 이행의 측면

라. 지식재산,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5. 그 밖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

나. 통계

다. 공정 경쟁

라. 사회기반시설

마. 투자

바. 문화 관련 서비스,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제13.3조
협력 형태

경제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기술 지원

나. 인적자원 훈련

다. 의견 및 정보 교환

라. 전문가 교류

마. 세미나 및 워크샵

바. 제도의 설계 및 개선

사. 분야별 종합추진계획 수립

아. 발전전략 수립

자. 모범사례 공유

차. 기초연구

카. 공동연구 및 개발

타. 공동의 무역 및 투자 증진 활동

파. 모델 및 기술 이전, 그리고

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형태

제13.4조
이행

1. 협력은 각 당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위하여, 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의 형태 및 기능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체결한다.

3.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된 기간에 협력사업을 수행한다. 그러한 사업의 이행은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하여 감독 및 검토된다.

4. 양 당사국은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협력 분야의 이행을 위한 자금조달은 이행약정에 상세하게 규정된다.

제13.5조
경제협력 자원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경제협력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3. 이 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자금조달은 양 당사국의 상이한 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부담된다.

부속서 13-가

문화 관련 서비스 협력

1. 협력이 양 당사국 간의 이해 증진 및 양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시청각, 관광, 엔터테인먼트(극장, 라이브 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를 포함한다), 문화유산,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관련 산업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의 국내정책, 표준 기술과 관련 법 및 규정과 관련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 및 경험 교환을 통해서도 촉진된다.

제14장
투명성

제14.1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국내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국내 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1]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단일의 공식 저널[2]에 그러한 법 및 규정을 공표하고 추가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들의 배포를 장려한다.

4. 제2항가호에 따라 공표되고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제안하는 법안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3]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제안된 법 및 규정을 공중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상 전에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제14.2조
정보의 제공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제14.1조에 언급된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제14.3조
행정절차

---

[1] 이 항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란, 한국의 경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베트남의 경우, 국가주석 명령 및 결정, 정부령, 총리 결정 및 장관 회람을 말한다.

[2] 이 항의 목적상, "단일의 공식 저널"이란, 베트남의 경우, 관보를 말한다.

[3] 이 항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란, 한국의 경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며, 베트남의 경우, 정부령, 총리 결정 및 장관 회람을 말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국내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및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절차가 개시된 때에 적용 가능한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제공할 것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하는 때에는, 절차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 그리고

다. 자국의 절차는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를 것

제14.4조
재심 및 불복청구

1.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을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 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국내 법 및 규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국내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 재심을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에 의하여 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결정이 이행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14.5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15장
분쟁해결

제15.1조
목 적

1.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회피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이 장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15.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11장(경쟁) 및 제13장(경제협력), 제8.19조(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반한 재협상) 및 부속서 3-나(특정 상품의 취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3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가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15.4조
협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사유를 제시한다.

3. 협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응답한다.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양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5. 협의가 개시되면 양 당사국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정보는 비밀로 취급한다.

6. 이 조항에 따른 협의는 비밀이며 이 협정 또는 그 밖의 절차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5.5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들은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중재패널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계속될 수 있다.

3.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이 협정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 또는 그 밖의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5.6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제15.4조에 따라 협의 요청을 한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서면으로 피소 당사국에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2.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한다.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 그리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적시한다.

제15.7조
중재패널의 위임사항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설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15.6조에 따른 중재패널 설치의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이 협정과 그 조치의 합치성에 관하여 이유와 함께 판정을 내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한 그러한 판정의 이유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발급하는 것"

제15.8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각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관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자국의 국민이어도 무방하다)을 한 명씩 임명하고, 중재패널의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인 역할을 할 최고 세 명의 후보자를 제안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관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제안된 후보자를 고려하여, 중재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제3의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45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7일 이내 회합하여 양 당사국에 의하여 제안된 후보자 명부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제3의 중재인 후보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며, 어느 당사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으며,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도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분쟁을 다루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4.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5. 모든 중재인은 이 협정과 관련된 법, 국제무역 또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각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분쟁과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기관과 연계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부속서 15-나를 준수한다.

6. 한쪽 당사국이 중재인이 부속서 15-나의 요건들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합의 하에 그 중재인을 제7항에 따라 교체한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후임자는 15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임명 방식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선정된다. 후임자는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날부터 정지된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 재개된다.

제15.9조
중재패널 절차

1.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초청을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어도 하나의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절차상 발표, 진술 또는 반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 또는 서면입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4. 중재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중재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포함한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제17.1조(공동위원회)제4항에 따라 채택한 해석 및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을 선의로 수행하며 자국의 의무에 대한 우회를 회피한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을 해석한다.

6.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보고서를 포함하여 과반수 투표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모든 관련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정 측면에 관한 의견이나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에 모든 획득된 조언이나 의견의 사본 및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8.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자료는 비밀로 취급된다.

9. 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분쟁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하여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와 서면입장은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된 정보 또는 서면입장을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비밀이 아닌 정보 또는 서면입장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10.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재패널에 제공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11.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의 입장 및/또는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과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모두 포함한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어떠한 권고도 이 협정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12. 중재패널 절차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장소는 양 당사국의 수도가 교대로 되며 중재패널절차의 첫 번째 회의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제15.10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러하게 합의한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자신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지된 중재패널 절차는 재개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중재패널의 업무와 관련된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중재패널 업무의 정지의 각각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권한은 실효된다. 이 실효는 제소 당사국이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언제든지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지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판정을 내리기 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양 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제15.11조
잠정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중재패널이 내린 모든 조사결과에 대한 기본 근거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한 서술적 부분,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권고를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나.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2.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 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정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잠정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15.12조
최종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 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5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패널은 제15.11조제1항 및 제15.12조제1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내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제15.13조
최종보고서의 이행

1.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의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그 불합치를 즉시, 또는 그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거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의 제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으며, 동 중재패널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4.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행한 이행 조치를 양 당사국이 합의한 또는 제3항에 따라 원 중재패널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피소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제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제15.14조
불이행, 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또는 제15.13조제4항에 따라 사안이 회부된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치를 제거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러하게 요청받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언제든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정지의 통보로부터 30일 후에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그 정지 통보는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보상과 제2항에 언급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다. 보상과 정지 모두 중재패널 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선호되지 아니한다. 정지는 불합치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떠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가. 제소 당사국은 제15.12조에 언급된 중재패널 보고서가 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그 동일 분야에서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를 우선 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그러한 정지에 대한 통보는 그 기초가 되는 근거를 적시한다. 그리고

   다.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5. 피소 당사국이 제소 당사국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에 있어서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6. 이 조 또는 제15.13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 또는 제15.13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15.8조에 따라 임명된다. 이 조 또는 제15.13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상기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양 당사국의 동의 하에 최대 30일까지 중재패널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15.15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중재절차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협의하여, 이 부속서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이 장과 부속서 15-가에 규정된 모든 기한 또는 그 밖의 중재패널 절차 규칙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또한 언제라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15.16조
경비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비용과 자국의 경비 및 법률 비용을 부담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의장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5.17조
부속서

부속서 15-가와 15-나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5.18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재패널이란 제15.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중재인이란 제15.6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후보자란 제15.8조에 따라 제3의 중재인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15.6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이란 제15.2조에 언급된 대로 이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절차란,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중재패널 절차를 말한다.

부속서 15-가

중재절차 규칙

행정 운영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중재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2.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에 의하여 전달되는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전송된다.

3.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자국의 각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4.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베트남의 산업무역부에 각각 전달된다.

5.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6. 문서 전달[1] 마감일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최초 입장

7.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의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중재패널의 운영

8. 중재패널의 의장은 중재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9.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0.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중재인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전달일이란 제출된 문서가 목적지에 도달한 날짜이다.

11. 모든 결정 및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지 아니한다.

12. 이 장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3. 중재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이 장에 규정된 기한을 수정하거나, 절차에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수정 또는 조정에 대한 이유를 필요한 기한 또는 조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1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비용은 통상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기준에 따를 것이다.

심리

1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소한 한번의 심리가 개최된다. 의장은 양 당사국 및 중재패널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 중재패널의 의장은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부속서 제20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심리를 공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6.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17.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18. 당사국의 대표자, 당사국의 자문인, 전문가, 행정 인력, 통역사, 번역사, 법원서기, 그리고 중재인의 보조인은 심리가 공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19. 각 당사국은 심리일의 최소 5일 전에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이나 발언을 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그 당사국의 대표자, 자문인, 통역사 및 번역사의 명부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20. 중재패널의 심리는 공중에게 비공개된다. 양 당사국은 심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1.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주장,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주장

반박 주장

가. 제소 당사국의 답변, 그리고

나.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

22.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

23.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속기록 사본을 양 당사국에 전달한다. 양 당사국은 속기록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중재패널은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4. 각 당사국은 심리일부터 10일 이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문

25. 중재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질문이 제시된 당사국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질문서 사본을 보낸다.

26. 중재패널이 질문서를 제시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중재패널에 모든 서면 답변서 사본을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일방적 의사소통

27.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안에 관하여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아니한다.

28. 어떠한 중재인도 나머지 중재인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적 조언 요청에 의한 기한 정지

29.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가가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추가 기간이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의 절반을 넘지 아니한다.

30. 전문가의 서면 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보고서가 중재패널에게 전달되는 날까지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한은 정지된다.

외부조언자의 입장

31.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3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면입장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간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아니하여야 하고,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실적 및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32. 제31항에 언급된 입장은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활동 성격 및 자금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 그 인의 국적 또는 설립 장소 및 그 인이 중재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그 서면입장은 제34항에 따른 공동 작업언어로 작성된다.

33.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1항 및 제32항에 부합하는 모든 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중재패널은 그러한 입장에서 제기된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아니한다.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에 따라 중재패널이 획득한 모든 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된다.

번역 및 통역

34. 제15.4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 그리고 제8항에서 언급된 회합 이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의 공동 작업언어는 영어이다. 당사국이 절차 중에 통역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준비 및 비용 부담은 그 당사국이 한다.

35. 이 장에 따라 절차의 사용을 위하여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기한 계산

36.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계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이 된다.

37. 제6항의 이행을 이유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동일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러한 접수에 의존하여 기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기산된다.

그 밖의 절차

38. 제15.13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5.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안을 회부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의 서면입장을 사안의 회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달하고, 피소 당사국은 최초로 서면입장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39. 제15.13조 및 제15.14조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중재패널 절차의 기한에 따라 각 당사국에 같은 수의 서면입장 작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중재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 서면입장 전달 기한을 정한다.

40.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는 제15.13조 및 제15.14조에 따라 정하여진 절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정의

41. 이 장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하거나 당사국을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중재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임명한 모든 인을 말한다.

부속서 15-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절차에 대한 책임

1. 모든 후보자와 중재인은 분쟁해결 절차의 완전 무결성과 공평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중재인들은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개 의무

2. 제15.8조에 따라 중재인으로서 자신의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3. 일단 선정되면, 중재인은 제2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중재인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중재인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공개한다.

의무

4. 선정되는 경우, 중재인은 절차의 과정 내내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5. 중재인은 모든 임무를 공정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6. 중재인은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7. 중재인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15항, 제16항 및 제17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중재인은 부속서 15-가의 제27항 및 제28항에 따라 절차에 관한 일방적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한다.

중재패널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평성

9.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다. 중재인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공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다.

11. 중재인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재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중재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2. 중재인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13. 중재인은 자신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전임 중재인의 의무

14. 모든 전임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도출하였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하여야 한다.

비밀 유지

15.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16. 중재인은 공표에 앞서 중재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7.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중재패널의 심의 또는 어느 중재인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정의

18. 이 장의 목적상,

직원이란, 중재인에 대하여, 보조인을 제외하고 그 중재인의 지시와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제16장
예외

제16.1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8장(서비스무역) 및 제9장(투자)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16.2조
안보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대 시설에 공급하거나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3) 통신, 전력 및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 사회기반시설을 불능화 또는 기능 저하를 시키고자 하는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 또는

      4) 국내적 비상시, 또는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공동위원회는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와 그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16.3조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16.1조제2항은 과세조치에 적용된다.[1]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그 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한도 내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5. 제9.8조(송금)제4항아호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6. 과세조치가 특정한 사실 상황에서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하며, 그러한 조사는 부속서 9-나(수용)에 열거된 요소들과 다음의 고려사항들을 포함하여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가.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의 과세조치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 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히, 과세조치의 기피 또는 회피를 막기

[1] 이 항의 목적상, 제16.1조제2항의 과세조치에의 적용은 GATS 제14조라항 및 마항을 지칭한다.

위한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더 적다. 그리고

라. 투자가 이루어진 때에 과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였다면, 그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7. 가. 이 호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9.7조(수용 및 보상)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9.7조(수용 및 보상)를 원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제9.17조(중재 청구 제기를 위한 의사 통보)에 따른 의사 통보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이 아닌지 여부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 요청을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그 요청은 의사 통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9.19조(중재 청구 제기)제1항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 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리고

2) 베트남의 경우, 재무부 조세총국장

또는 각각의 승계인

8. 이 조의 목적상

가. **조세협약**이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나. 세금 및 과세조치는 제1.5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관세, 그리고 그 정의 중 예외 나호, 다호, 라호 및 마호에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제1절
제도규정

제17.1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장관급 공무원,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회합 일정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의제를 정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고 점검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

   다.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4. 공동위원회는

   가.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을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이 협정의 개정을 양 당사국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라. 권고할 수 있다.

5.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동위원회,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제17.2조
공동위원회의 절차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2. 공동위원회의 회합은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가능한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7.3조
위원회 및 작업반

1.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은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수 있다.

2.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의 구성, 회합의 빈도 및 기능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이 협정과 합치하게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은 자신의 회합에 충분히 앞서,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그들은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의 창설 또는 존재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어떠한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직접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하거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모든 기관을 해산할 수 있다.

제2절
최종규정

제17.4조
접촉선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 접촉선을 수립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 기관,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산업무역부 또는 그 승계 기관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계된 모든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의적절하게 다른 쪽 당사국에 이를 통보한다.

제17.5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7.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17.5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17.7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7.8조
발효

1. 이 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국내적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의 다음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17.9조
기간

1.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있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폐기 의사를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할 수 있다.

3. 폐기는 제2항에 따른 통보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7.10조
정본

이 협정은 한국어본, 베트남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년 월 일 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